



Karl Marx, Friedrich Engels, Vladimir Lenin, Joseph Stalin, Enver Hoxha

5 Classics of Marxism

Comintern (Stalinist-Hoxhaists)

<http://ciml.250x.com>



GEORGIA

Georgian Section
www.joseph-stalin.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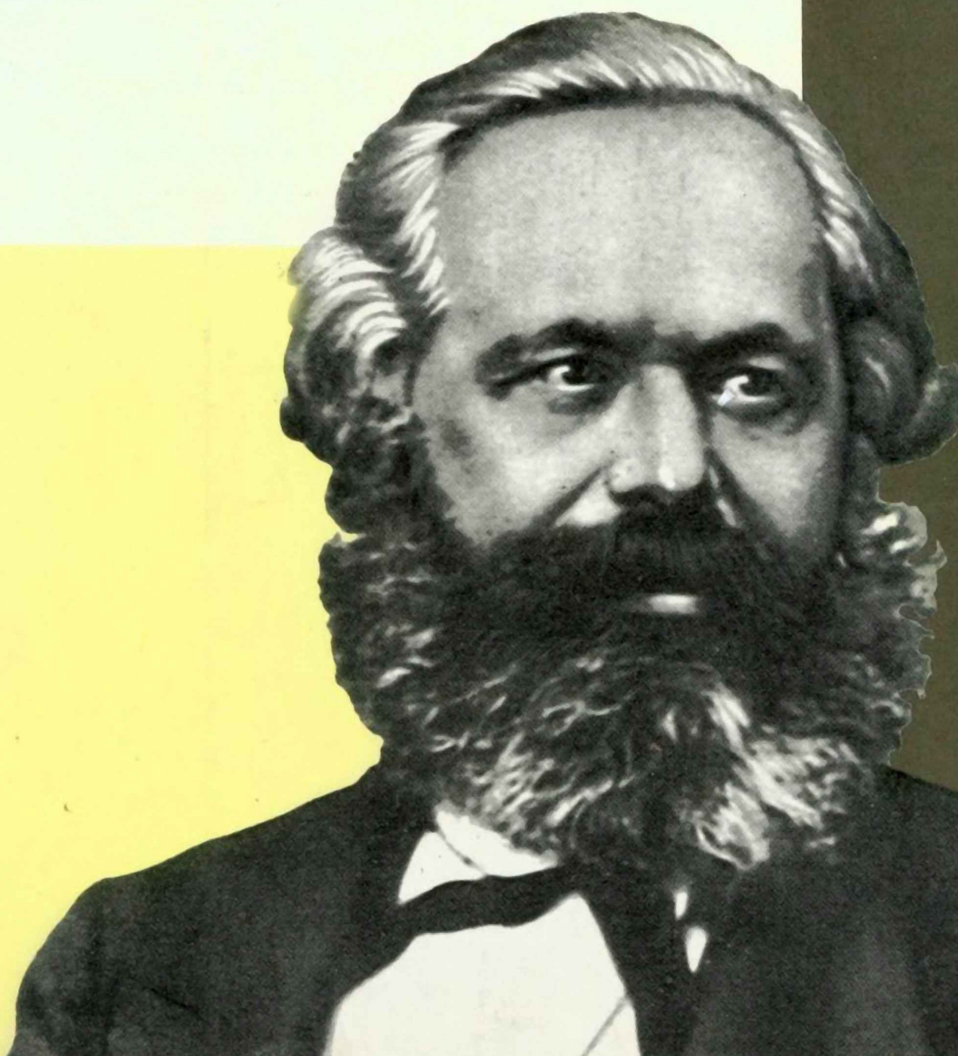
SHMG Press

Karl Marx Press of the Georgian section of
Comintern (SH) – Stalinist-Hoxhaists Movement of Georgia

칼 맑스 자본론

제 3권 (1)

서
판 白衣



K. 맑스

자 본 론

정치경제학 비판

제 III 권 (1)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F. 엥겔스 엮음

도서
출판 백의

일러두기

1. 이 판(版)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간(刊) 『맑스-엔겔스전집 제25권 1분책』(1983)을 대본으로 삼았으며, 극히 일부만을 수정하여 편집·발행한 것이다.
2. 두음법칙은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예) 로동→노동, 년년(年年)→연년 등
3. 띄어쓰기와 지명, 인명 등 외국어는 새로 시행된 한글맞춤법개정안(89년 3월 1일 시행)을 위주로 하였다.
4. MEW(독일어판 맑스-엔겔스 전집, Dietz Verlag)에서 이탤릭체로 강조한 것은 방점처리하였다.
5. 〈 〉의 인용은 모두 “ ”로 바꿨으며, 〈 〉의 인용 중 문장이 긴 것은 1행을 띄고 글자의 크기를 작게 하였다.

차례/제Ⅲ권(1)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로부터 11

머리말 13

제1편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화와 잉여가치율의 이윤율로의 전화

제1장 생산비와 이윤 39

제2장 이윤율 55

제3장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관계 65

제4장 이윤율에 미치는 회전율의 영향 91

제5장 불변자본의 적용에서의 절약 99

제1절 일반적 명제 99

제2절 노동자를 희생으로 하는 노동조건들의 절약 111

제3절 동력의 생산 및 전달에서의 건물에서의 절약 122

제4절 생산에서 나오는 폐물의 이용 126

제5절 발명에 의한 절약 129

제6장 가격변동의 영향 131

제1절 원료가격의 변동과 이윤율에 미치는 그 직접적 영향 131

제2절 자본의 가치증대와 가치감소, 자본이
풀려나오는 것과 매이는 것 137

제3절 일반적 예증. 1861~1865년의 목화공황 152

제7장 보충 171

제2편 이윤의 평균이윤으로의 전화

제8장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에서의 자본구성의 차이와 이 차이에서 오는 이윤율의 차이	177
제9장 일반적 이윤율(평균이윤율)의 형성과 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	191
제10장 경쟁에 의한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 시장가격과 시장가치, 초과이윤	211
제11장 임금의 일반적 변동이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241
제12장 보충	247
제1절 생산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247
제2절 평균구성의 상품의 생산가격	249
제3절 자본가의 보상이유	250

제3편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의 법칙

제13장 법칙 그 자체	257
제14장 반대로 작용하는 원인들	281
제1절 노동의 착취정도가 높아지는 것	281
제2절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	285
제3절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값이 싸지는 것	285
제4절 상대적 과잉인구	286
제5절 대외무역	286
제6절 주식자본의 증가	290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의 발전	293
제1절 개론	293
제2절 생산확대와 가치증식의 충돌	299
제3절 인구과잉 경우의 자본과잉	303
제4절 보충	313

제4편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의 전화(상인자본)

제16장 상품거래자본	323
제17장 상업이윤	339
제18장 상인자본의 회전 가격	363
제19장 화폐거래자본	377
제20장 상인자본의 역사적 고찰	387

제5편 이자와 기업이득으로의 이윤의 분할, 이자불는 자본

제21장 이자불는 자본	405
제22장 이윤의 분할, 이자율, 이자의 자연율	429
제23장 이자와 기업이득	443
제24장 이자불는 자본형태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표면화	467
제25장 신용과 의제자본	479
제26장 화폐자본의 축적, 이자율에 미치는 그 영향	501
제27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신용의 역할	529
제28장 유통수단의 자본, 투크와 풀라톤의 견해	537

차례/제Ⅲ권(2)

제5편 이자와 기업이익으로의 이윤의 분할 이자불는 자본(계속)

제29장 은행자본의 구성부분

제30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1)

제31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2)

제1절 화폐의 대부자본으로의 전화

제2절 대부자본으로 전화되는

화폐로의 자본 또는 소득의 전화

제32장 화폐자본과 실제적 자본(3)

제33장 신용제도하에서의 유통자본

제34장 통화주의와 1844년의 영국의 은행입법

제35장 귀금속과 환자시세

제1절 금예비의 운동

제2절 환자시세

제3절 아시아와의 환자시세

제4절 영국의 무역균형

제36장 전자본주의적 관계

제1절 중세기의 이자

제2절 이자의 금지와 교회에 주는 이득

제6편 초과이윤의 지대로의 전화

제37장 서론

제38장 차액지대. 개론

- 제39장 차액지대의 첫째 형태(차액지대Ⅰ)
- 제40장 차액지대의 둘째 형태(차액지대Ⅱ). 개론
- 제41장 차액지대Ⅱ. 첫째 경우—생산가격이 변함없는 경우
- 제42장 차액지대Ⅱ. 둘째 경우—생산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 제43장 차액지대Ⅱ. 세째 경우—생산가격이 오르는 경우. 결론
- 제44장 가장 나쁜 경지에서도 생기는 차액지대
- 제45장 절대지대
- 제46장 건축부지지대. 광산지대. 땅값.
- 제47장 자본주의적 지대의 발생사
 - 제1절 서론
 - 제2절 노동지대
 - 제3절 생산물지대
 - 제4절 화폐지대
 - 제5절 분익경리 및 농민의 분할지 소유

제7편 소득과 그 원천

- 제48장 삼위일체의 공식
- 제49장 생산과정의 분석
- 제50장 경쟁의 외관
- 제51장 분배관계와 생산관계
- 제52장 계급

- ☐ F. 엥겔스 「자본론」 제Ⅲ권에 대한 보충
- ☐ 주
- ☐ 색인

자본론 제Ⅲ권(1)

자본주의적 생산의 총과정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로부터

맑스·엔겔스 전집 제25권에는 맑스의 「자본론」 제3권과 또한 이 권을 위하여 쓴 엔겔스의 머리말과 보충이 들어 있다.

「자본론」 제3권의 이 판은 엔겔스의 편집으로 1894년에 나온 독문판 제1판을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종전의 노문판(제1부는 1939년에, 제2부는 1947년에)과 마찬가지로 I. I. 스크워르쑈브-스제빠노브가 편집하여 번역한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 판을 마련함에 있어서 상당한 양의 수정과 정정이 이 번역에 가해졌다. 독문판 제1판을 맑스의 원고와 대조함으로써 독문판 제1판에 있던 일련의 오기와 오식을 찾아내고 고칠 수 있었다. 여러 저자들의 저서에서 맑스가 인용한 인용문들도 또한 다시 검토하고 정확성을 기하며 번역하였다. 맑스가 이러저러한 인용문을 줄여서 인용하였거나 저자의 사상을 자기 말로 옮긴 경우에 이 판에서는 이 인용문의 번역을 독문판 원문과 일치시켰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숫자와 그 밖의 사실자료들을 검토하고 시정하였다. V. I. 레닌이 「자본론」 제3권의 독문판에서 개별적 부분들을 번역하여 자기의 저서들에서 인용한 모든 것을 참작하였고 또한 그가 번역한 개별적 표현과 술어들을 그대로 썼다.

1894년의 독문판과 마찬가지로 「자본론」 제3권의 새 판은 그 분량이 많으므로 두 분책으로 발행한다. 매 분책에는 편집부 주와 색인들 즉 인명색인, 문헌색인, 노어로 번역된 문헌색인(이 권에는 이것을 넣지 않았다)이 들어 있다. 「자본론」 제3권의 제2분책에는 또한 전권에 대한 내용색인이 들어 있다.

맑스와 엔겔스의 난외 주는 1894년의 독문판에서처럼 반괄호에 든 숫자로 표시하였다. 엔겔스의 주는 그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를 써 넣었다. 난외에 있는 편집부의 주는 *를 붙이고 편집부라고 밝혔다. 그리고 권말

에 있는 편집부 주는 괄호없는 숫자로 표시하였다. 문헌에 관한 저자의 일부 주에 편집부가 덧붙인 것은 중괄호 속에 넣었다. 저자의 본문이나 인용문에 앵겔스가 써넣은 것은 대괄호 속에 넣었다.

번역하기 어려운 일부 독일어나 전문술어들은 그 번역과 함께 원어를 중괄호 안에 넣었다.

머 리 말

마침내 나는 맑스의 주요저작에서 이론적 부분의 마감을 짓는 이 제3부를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1885년 제2부를 출판할 때 제3부는 물론 몇 개의 아주 중요한 편들은 예외이지만 다만 기술적 곤란이 있을 뿐일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사실 바로 그러하였다. 그러나 그때에 나는 전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바로 이 편들에서 내가 부닥치게 될 곤란에 대해서는 이 책의 마련을 그렇게도 지연시킨 그 밖의 장애들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나에게 지장을 준 것은 시력이 계속 약해진 것인데 이 때문에 나는 글을 쓰기 위하여 일하는 시간을 여러 해 동안 최소한으로 줄였으며 지금도 계속 인공광선에 의하여 겨우 이따금 붓을 들 수 있을 따름이다. 게다가 또 미룰 수 없는 다른 일들 즉, 이전에 낸 맑스와 나의 저작들의 새 판과 번역, 따라서 흔히 새로 연구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수정, 머리말, 보충 등의 일이 겹쳤다. 무엇보다 먼저 제1부의 영문판을 들어야 하겠는데 이 판의 본문에 대한 책임이 결국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에 나는 많은 시간을 빼앗겼다. 최근 10년 동안에 국제적 사회주의문헌이 굉장히 불어났고 특히 이전에 나간 맑스와 나의 저작들이 수많은 번역되었다는 것을 얼마만큼이라도 알아본 사람은 누구나 내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다행으로 여긴다 하더라도 나를 나무라지 않을 것이다. 즉 그 사실이란 내가 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역자의 번역 교열을 거절해서는 안될 그 언어의 수가 아주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헌이 불어난 것은 그만큼 국제노동운동 자체가 자라난 하나의 징조일 따름이었다. 그리고 이는 나에게 새로운 의무를 지니게 하였다. 우리의 사회활동의 첫날부터 여러 나라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의 민족운동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적지 않은

일이 맑스와 나에게 맡겨졌었다. 이 일은 전체 운동이 강화됨에 따라 늘어났다. 그런데 이 일에서도 주로 부담은 맑스가 걸머지고 있었는데 그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그 일을 나 혼자서 맡게 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각국 노동자당들이 서로 직접 연계를 맺는 것이 예사로 되었으며 또 다행히도 날이 갈수록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론사업을 위해서는 그만 하였으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자주 나의 도움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나처럼 50년 이상이나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해온 사람으로서는 이 운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지체함이 없이 즉시 수행해야 할 의무인 것이다. 16세기에도 그러하였지만 오늘날의 격동기에는 사회적 이해관계의 영역에서의 순수한 이론가들이란 오직 반동측에서만 볼 수 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들은 사실상 전혀 이론가인 것이 아니라 이 반동의 단순한 변호론자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런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적 연계를 겨울에는 주로 편지로 맺고 여름에는 대부분 직접 사람을 만나서 맺고 있다. 이런 일과 또 점점 더 많은 나라들에서 진행되는 운동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많아지는 기관지들을 살펴볼 필요로 하여 중단해서는 안되는 일들을 나는 겨울, 특히 연초의 석 달밖에 할 수 없었다. 사람이 칠십고개를 넘으면 뇌수의 마이네르 연상섬유의 작용이 곱떠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그래서 어려운 이론적 사업이 중단되면 그것을 되살리기가 벌써 그전처럼 쉽고 빠르지 못하다. 그러므로 어느 한 겨울의 사업을 완전히 끝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겨울에 그 대부분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특히 가장 힘든 제5편에서 그러하였다.

본문의 서술에서 독자들이 알게 되겠지만 이 제3부의 편집사업은 제2부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랐다. 제3부를 위해서는 단 하나의 맨 처음 초고가 있었을 뿐인데 그나마 빠진 데가 아주 많은 것이었다. 대체로 각편의 첫머리는 어지간히 면밀하게 작성되어 있었으며 또 문장도 대부분 다듬어져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 나갈수록 원고는 정리되어 있지 않고 빠진 데가 많아졌으며 연구과정에 나서는 부차적 문제들에 관한 결가지가 많아지고 자료를 결국 어디에 넣는가 하는 것은 후에 정리하게 되어 있었으며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사상을 적어 놓은 부분은 길어지고

복잡해졌다. 글씨와 서술을 보면 과로로 하여 병의 발작이 시작되어 점점 더 심해졌다는 것을 여러 군데서 너무나 똑똑히 알 수 있는데 저자는 이것으로 하여 처음에는 혼자의 힘으로는 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으며 마침내는 한때 아주 한숨을 쉬고 있었던 것이다. 이상할 것이 없다. 1863년과 1867년 사이에 맑스는 『자본론』의 마지막 두 부의 초고를 쓰고 제1부의 원고를 인쇄에 넘길 수 있게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국제노동자협회의 창립 및 활동과 관련된 거창한 사업도 하였다. 그러나 그 때문에 벌써 1864년 1865년에 건강이 나빠진 엄중한 징조가 나타났었는데 그 때문에 맑스는 그 자신이 제2부와 제3부를 완성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내가 할 일은 나 자신도 흔히 겨우 알아볼 수 있는 초고를 가지고 그것을 불러주어 필사시키는 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것만 하여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비로소 본래의 편집을 시작할 수 있었다. 나는 이러한 편집을 꼭 필요한 곳에서만 하였다. 이해될 수 있는 데라면 어디서나 맨 처음 초고의 특징을 될 수 있는 대로 살렸으며 되풀이된 것도 맑스가 보통 그렇게 하고 있듯이 문제를 매번 다른 측면에서 보고 있거나 적어도 표현방식을 달리 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나하나 빼버리지 않았다. 내가 고쳤거나 보충한 것이 단순히 편집상 성질의 것이 아닌 경우 또는 맑스가 내놓은 사실자료에 내가 손을 대어——될수록 맑스의 정신에 부합되게 하기는 하였지만——내 자신의 결론을 짓지 않으면 안된 경우에는 그 부분 전체를 중괄호*에 넣고 나의 이름과 성의 첫글자를 적어두었다. 내가 단 난외 주에는 괄호없는 것도 여기저기 있다. 그러나 나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체 주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

맨 처음의 초고로서 보면 자명한 일이지만 원고에는 후에 전개하겠다고 한 문제들에 대한 지적들이 수없이 있는데 이 약속을 모든 경우에 다 지키고 있지는 않다. 이 지적들은 앞으로 완성하겠다는 저자의 의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나는 그것들을 그대로 두었다.

이제는 하나하나의 문제들로 넘어가자.

* 이 책에서는 { }로 표시하였다. 편집부

제1편에서 기본원고는 많은 제한성을 가지고서야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원고의 맨 처음에는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의 관계에 대한 모든 수학적 계산(이 책의 제3장을 이루는 것)이 나와 있는데 이 책 제1장에서 서술된 문제는 후에 가서야 그리고 지나가는 김에 취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각각 2절판 8페이지 분의 개작하기 시작한 두 개의 원고가 도움으로 되었으나 이것들도 완전히 연결되면서 작성되어 있지는 않았다. 지금 보는 제1장은 이 원고들로 이루어졌다. 제2장은 기본원고에서 나왔다. 제3장에서는 끝나지 않은 수학적 계산이 아주 많았으며 또 70년대에 쓴 것으로서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표시한 거의 끝난 온전한 노트도 한 권 있었다. 제1부의 영문판 번역의 대부분도 맡아서 한 나의 벗 사무엘 무어는 나를 위하여 이 노트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 주었는데 이 일에는 케임브리지대학 출신의 오랜 수학자인 그가 나보다 훨씬 나왔다.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요약한 것으로 제3장을 완성하였는데 때로는 기본원고도 이용하였다. 제4장은 제목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취급되는 문제인 이윤율에 미치는 회전의 영향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그 장은 나 자신이 작성하였으며 따라서 본문 안의 전체 장을 역시 괄호 안에 넣었다. 그리하여 제3장에서 내놓은 이윤율 공식이 일반적으로 들어맞으려면 그것을 사실상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5장부터는 기본원고가 이 편의 나머지부분을 위한 유일한 원천이다. 물론 여기에서도 아주 많은 자리바꿈과 보충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 다음 세 개 편에서는 문장상의 편집을 제쳐놓고는 원래의 원고를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었다. 대부분이 회전의 영향과 관련된 몇 군데는 내가 끼워넣은 제4장과 일치하게 다듬어졌다. 그것들도 괄호 안에 넣고 나의 이름과 성의 첫 글자를 써넣었다.

주로 애로로 된 것은 전권을 통하여 가장 복잡한 문제를 취급하고 있는 제5편이었다. 바로 이 편을 쓰다가 맑스는 위에서 말한 병으로 심한 발작을 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다 된 초고는 없으며 내용을 채워야 할 개요조차 없고 다만 작성하기 시작한 것이 있었을 뿐인데 이것은 흔히 무질서한 한 무더기의 주, 평, 발췌 형식의 재료에 그치고

있다. 나는 처음에 이 편을 내가 제1편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것처럼 빠진 데를 채우고 압시한 데 지나지 않는 토막토막을 다듬어 완성하여 이 편이 적어도 저자가 주려고 생각하였던 모든 것을 거의 비슷하게나마 제공하도록 하여 보려고 시도하였다. 나는 적어도 세 번 이렇게 시도하였으나 매번 실패하였는데 이렇게 잃어버린 시간에 이 책이 늦어진 주되는 원인의 하나가 있다. 마침내 나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하자면 나는 이 영역의 방대한 문헌을 모조리 읽어보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며 그리하여 결국 무엇인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맑스가 쓴 책은 아닐 것이다. 나는 이렇게 더 시도하는 것을 단념하고 이미 있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정리하는 데 그치며 다만 아주 필요한 보충만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1893년 봄에 이 편에 대한 기본작업을 마쳤다.

하나하나의 장들 가운데서 제21장~제24장은 기본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제25장과 제26장은 인증자료를 추려내고 다른 데 있던 자료를 여기에다 끼워 넣을 필요가 있었다. 제27장과 제29장은 원고를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었는데 제28장은 반대로 곳곳에서 배열을 바꾸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진짜 곤란은 제30장부터 시작되었다. 이 장부터는 인증자료를 알맞춤하게 정리할 뿐 아니라 삽입문과 결가지 등으로 하여 그때 그때마다 중단되고 또 다른 곳에서 흔히 완전히 지나가는 김에 더 더듬어나간 사상을 알맞춤하게 정리해야 하였다. 그리하여 제30장은 하나하나의 토막토막을 그 자리를 바꾸고 또 빼버리는 것으로 마련되었는데 빼버린 것은 다른 데서 이용하였다. 제31장은 다시 문맥이 더 닿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원고에는 그 다음에 「혼란」이라는 제목을 단 긴 한 편이 있는데 이것은 1848년과 1857년의 공황에 관한 의회보고에서 전적으로 발췌한 것이다. 그곳에는 특히 화폐와 자본, 금의 유출, 지나친 투기 등에 관한 23명의 실업가와 경제학자들의 증언을 모아놓고 여기 저기에서 의상스럽게 단평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화폐와 자본의 관계에 관하여 당시 유행한 견해가 거의 모두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충분히 주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맑스는 화폐시장에서 무엇이 화폐이고 무엇이 자본인가에 관하여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혼란」을 비판적으로

그리고 풍자적으로 취급하려고 하였다. 나는 많은 시도를 하여본 끝에 이 장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자료 특히 맑스의 평이 가해진 자료는 문맥이 통하는 곳에서 이용하였다.

그 다음에는 내가 제32장에 넣은 것이 어지간히 정리되어 계속되고 있으나 바로 그 뒤에는 이 편에서 다루고 있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의회 보고에서 취한 새로운 일련의 발췌문이 있는데 이것이 저자의 길거나 짧은 평과 뒤섞여 있다. 끝날 무렵에는 발췌문과 평들이 더욱더 화폐금속의 운동과 환자시세의 변동에 집중되고 있으며 그리고 또다시 온갖 보충적 설명으로 끝나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에 앞선 제관계」(제36장)는 완전히 작성되어 있었다.

「혼란」 이후의 것으로 이미 앞에서 실리지 않은 이 모든 자료로 나는 제33장~제35장을 만들어냈다. 문맥이 통하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이 많은 것을 써넣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렇게 써넣은 것이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닌 한에서는 그것은 내가 써넣은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표시하였다. 이와같이 하여 마침내 나는 조금이라도 문제에 관계가 있는 저자의 표현은 모두 본문에 넣을 수 있었다. 발췌한 것 가운데서 다른 데서 이미 실은 것을 되풀이한 데 지나지 않거나 원고에서 자세히 취급되고 있지 않은 문제들에 관계되는 얼마 되지 않은 부분을 내놓고는 빼버린 것이 없다.

지대에 관한 편은 그것이 결코 정리된 것은 아니었지만, 훨씬 더 완전하게 작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맑스가 제43장(원고에서는 지대에 관한 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전체 편의 요강을 간단히 개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원고가 제37장에서 시작되어 제45장~제47장이 계속되고 그것에 뒤이어 비로소 제38장~제44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출판을 위하여 더욱 요망되는 것이었다. 가장 많은 품이 든 것은 차액지대 II의 표들인데 이것은 제43장에서 취급되어야 할 이 종류의 지대의 세제 경우가 여기에서 전혀 연구되지 않았다는 것과 관련된다.

지대에 관한 이 편은 맑스가 70년대에 완전히 새롭게 따로 연구하였다. 그는 러시아에서 1861년에 있는 개혁 후 피할 수 없게 된, 토지소유에

관한 통계조사자료와 그 밖의 출판물들——러시아의 벗들로부터 더 바랄 나위 없이 빠짐없이 받고 있었던——을 몇 해 동안 원어로 연구하고 발췌하였으며¹ 이 편을 새로 작성할 때에 그것들을 이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 러시아에서는 토지소유의 형태도, 농업생산자들을 착취하는 형태도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지대에 관한 편에서 러시아가 놀아야 할 역할은 제1부에서 산업임금노동의 경우에 영국이 논 역할과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맑스는 이 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끝으로 제7편은 원고로는 완성되어 있었으나 맨 처음의 초고로서 쓰여져 있을 따름이므로 인쇄할 수 있게 하자면 그 초고의 끝없이 영킨 문장들을 우선 갈라놓지 않으면 안되었다. 마지막 장은 첫머리가 있을 뿐이다. 여기에서는 세 개의 큰 소득형태들인 지대, 이윤, 임금에 상응하는 발전된 자본주의사회의 세 개의 큰 계급들인 토지소유자, 자본가, 임금노동자를 서술하고 이 계급들의 존재와 필연적으로 결부된 계급투쟁을 자본주의사대의 현실적 산물로서 서술하게 되어 있었다. 맑스는 이와같이 마지막으로 개괄하는 것을 마지막에 쓸 작정으로 인쇄 직전까지 미루어두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그리하여 최근대사의 사건들은 필연적인 합병칙성으로 그의 이론적 명제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증거로 되었던 것이다.

인용문과 예증은 제2부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제1부에서보다 훨씬 적다. 제1부에서 인용한 것에는 제2판과 제3판의 페이지수를 적어넣는다. * 원고에서 이전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견해를 참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곳에서는 대체로 이름만 들고 인용문 자체는 마지막으로 손질할 때에 주게 되어 있었다. 나는 이것을 물론 그대로 두는 수밖에 없었다. 의회보고 가운데서 이용하고 있는 것은 네 개뿐이었으나 이것들은 어지간히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그 보고들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회의 보고」(하원의) 제8권, 「상업위기」, 제2권, 제1부, 1847~1848년, 증언록. —「상업위기」, 1847~1848년이라고 인용하고 있다.
- 2) 「1847년의 상업위기에 관한 상원비밀위원회. 보고는 1848년에 인쇄.

* 이 권에서는 독문 제4판의 페이지수를 달고 이 전집 제23권의 해당한 페이지를 지적하였다. 편집부

증언은 1857년에 인쇄」(1848년은 너무나 영예롭지 못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상업위기」, 1848~1857년이라고 인용하고 있다.²

3) 「은행법에 관한 보고」, 1857년. 같은 보고, 1858년. 1844년과 1845년의 은행법의 영향에 관한 하원위원회의 보고. 증언 불음. —「은행법」(때로는 「은행위원회」), 1857년 또는 1858년이라고 인용하고 있다.³

내가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곧 제4부——잉여가치학설사——에 착수할 것이다.⁴

「자본론」 제2권의 머리말에서 나는 그 무렵에 “로드베르투스가 맑스의 이론의 비밀원천이며 탁월한 선구자”라고 굉장히 떠들어대던 나라들과 맞다들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는 그들에게 “로드베르투스의 경제학이 무엇을 줄 수 있는가”를 보여줄 기회를 주었다. 나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여 가치법칙에 어긋나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가치법칙에 기초하여 균등한 평균이윤율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당시 주관적이거나 객관적인 이유로 하여, 그러나 대체로 어쨌든 과학적이 아닌 것만은 틀림없는 이유로 하여 착한 로드베르투스를 가장 위대한 경제학자라고 떠들어대던 바로 그 나라들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대답을 못하고 있다. 그런데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이 문제에 손을 대는 것을 해볼만한 일로 생각하였다.

W. 렉시스 교수는 제2권에 대한 자기의 비판(「콘라드 연지(年誌)」⁵ 제1권, 1885년, 452~456페이지)에서 비록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각각 다른 종류의 상품들을 따로따로 본다면 그리고 그 상품들의 가치는 그 교환가치와 같고 이 교환가치는 그 상품들의 가격과 같거나 그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면 이 모순(리카아도-맑스의 가치법칙과 균등한 평균이윤율 사이의)은 해결될 수 없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그 모순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다.
즉

“하나하나의 종류의 상품에 대하여 그 가치를 노동에 따라 재지 말고 오직 상품생산물 전체와 그리고 전체 자본가계급과 전체 노동계급 사이에서의 그 상품생산물의 분배만을 안중에 두는” 경우에만 해결될 수 있다. “...총생산물 가운데서 노동계급이 받는 것은 일정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다른 부분은 맑스가 말하는 잉여생산물을 이루며 따라서 또 잉여가치를 이룬다. 그런데 자본가계급의 성원들은 이 전체 잉여가치를 그들이 고용하는 노동자수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들 각자가 내놓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들 사이에서 분배하는데 이 경우에 토지도 자본가치로서 계산에 들어간다.”

상품들에 구현된 하나하나의 노동에 의하여 규정되는 맑스의 관념적 가치는 가격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 가격에 이르게 하는 혼합의 출발점으로 볼” 수는 있다. “이 실제적 가격은 크기가 같은 자본은 크기가 같은 이윤을 요구한다는 사실에 의하여 제약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일부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상품에 대하여 그 관념적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받으며 다른 자본가들은 관념적 가치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를 잃는 것과 더 얻는 것은 자본가계급 안에서 상쇄되므로 잉여가치의 총량은 모든 가격이 상품들의 관념적 가치에 비례하는 경우와 똑 같다.”

보다시피 여기에서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비록 짚지 못하고 천박하기는 하지만 문제를 대체로 옳게 제기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이 저자와 같이 어느 정도 자람삼아 자기를 속류경제학자라

고 내세우고 있는 사람에게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훌륭한 것이다. 이것은 후에 취급하게 될, 다른 속류경제학자들의 업적과 비교하여 본다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다. 렉시스의 속류경제학은, 확실히 독특한 종류의 것이다. 자본이득은 물론 맑스의 방식으로 끌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견해에 이르도록 강요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말하고 있다. 그와는 반대로 속류경제학은 적어도 더 그럴 듯한 자기의 설명방식을 가지고 있다.

“자본주의적 판매자들인 원료생산자, 공장주, 도매상인, 소매상인은 누구나 자기가 사는 것보다 비싸게 팔아 즉 자기 상품의 원가를 일정한 올만큼 높여 자기 기업에서 이득을 얻는다. 오직 노동자만은 이와같이 가치에 덧붙이기를 할 수 없다. 노동자는 자본가와인 관계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으므로 자기의 노동을 그 노동이 그 자신에게 드는 값으로 즉 생활필수품을 받고 팔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가격의 이 첨가분은 상품을 사는 임금노동자에 대해서는 온전한 의의를 가지며 총생산물가치의 한 부분을 자본가계급에게 넘어가게 한다.”

그런데 자본이윤에 대한 이 속류경제학적 설명이 실제로 맑스의 잉여가치론과 똑같은 결론에 떨어지며, 렉시스의 견해에 의하면 노동자들은 맑스가 말하는 것과 아주 똑같은 불리한 처지에 있으며, 노동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없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인데 그것은 노동자 아닌 사람들은 누구나 가격 이상으로 팔 수 있지만 노동자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이론에 기초하여 적어도 극히 피상적인 속류사회주의체계가 나올 수 있으며 바로 그것이 이곳 영국에서 제본스-맹거의 사용가치설과 한계효용설⁶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알아내기에는 그다지 크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나는 이렇게까지도 생각한다. 즉 만약 조지 버나드 쇼우 씨가 이 이윤론을 알았더라면 그는 아마 두 손으로 이것을 부둥켜안고 제본스와 칼 맹거를 밀어놓고 이 반석 위에다 미래의 페비안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이론은 맑스의 이론을 다른 말로 바꿔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대체 가격에 덧붙이는 것은 모두 어디서 나오는가? 노동자의 총생산물에서 나온다. 그것도 노동 또는 맑스의 말대로 하면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그 가격 이하로 팔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생산비보다 비싸게 팔리는 것이 모든 상품의 공통된 속성이지만 그 가운데서 노동만은 예외로서 늘 생산비대로만 팔린다면 노동은 바로 이 속류경제학의 세계에서 통칙으로 되어 있는 가격보다 낮게 팔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본가 또는 자본가계급에게 돌아가는 초과이윤은 바로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가격에 대한 보상분을 재생산하면서 동시에 그가 댓가를 지불받지 않는 그 이상의 생산물 즉 잉여생산물, 부지불노동의 생산물, 잉여가치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데 있으며 또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만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렉시스는 말을 아주 신중하게 골라 쓰는 사람이다. 그는 위에서 든 견해가 그 자신의 견해라고는 어디서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보통의 속류경제학자 즉 맑스의 눈에는 누구냐 다 “기껏하여 가망없는 바보에 지나지 않는”다고 렉시스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러한 속류경제학자가 아니라 속류경제학자의 탈을 쓴 맑스주의자라는 것이 아주 명백하다. 이렇게 탈을 쓴 것이 의식적인가 무의식적인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흥미가 없는 심리학적 문제이다. 이것을 밝혀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마 렉시스와 같은 의심할 바 없이 분별있는 사람이 한때 복본위제와 같은 엉터리없는 것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도 연구하게 될 것이다.⁷

처음으로 이 문제에 실제로 대답하려고 시도한 것은 콘라트 슈미트 박사(『맑스의 가치법칙에 기초한 평균이윤율』, 슈투트가르트, 디즈 판, 1889년)이다. 슈미트는 시장가격이 이루어지는 자세한 점들을 가치법칙 및 평균이윤율과 일치시키려고 한다. 산업자본가는 자기의 생산물에서 첫째로 자기가 선대한 자본을 보상하며 둘째로 그가 아무런 댓가도 지불하지 않은 잉여생산물을 얻는다. 그러나 이 잉여생산물을 얻으려면 그는 자기의 자본을 생산에 선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그는 이 잉여생산물을 자기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을 적용하지 않

으면 안된다. 따라서 자본가로 보면 그가 선대한 이 자본은 그에게 이 잉여생산물을 마련하여 주는 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이다. 다른 모든 산업자본가를 놓고 보아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생산물들은 가치법칙에 따라 그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에 비례하여 서로 교환되므로 그리고 자본가로 보면 그의 잉여생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은 바로 그의 자본으로 쌓인 과거노동이므로 잉여생산물들은 그 생산에 필요한 자본들에 비례하여 교환되는 것이지 실제로 그것들에 구현된 노동에 따라 교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개개 자본에 돌아가는 몫은 생산된 모든 잉여가치의 총액을 그에 쓰인 자본들의 총액으로 나눈 것과 같다. 따라서 같은 양의 자본들은 같은 기간에 같은 이윤을 낳는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와 같이 계산된 잉여생산물의 생산비 즉 평균이윤이 지불되는 생산물의 생산비에 덧붙여지며 그리고 이 오른 가격으로, 지불되는 생산물과 지불되지 않는 생산물 두 가지 것이 다 팔리기 때문이다. 슈미트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하나의 상품의 평균가격은 가치법칙에 따라 규정됨에도 불구하고 평균이윤율은 이루어진다.

이 구상은 아주 재치있는 것이며 완전히 헤겔의 본을 딴 것이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는 점에서도 헤겔의 구상의 대다수와 마찬가지다. 가치법칙이 평균가격에도 직접 들어맞아야 한다면 잉여생산물이나 지불되는 생산물이나 다 그 생산에 필요하고 그에 소비된 사회적 필요노동에 비례하여 팔리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도 없다. 가치법칙은 처음부터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견해와 맞선다. 즉 자본을 이루는 축적된 과거노동은 일정한 액의 다 된 가치일 뿐 아니라 그것이 생산과 이윤형성의 요인이기 때문에 가치를 형성하는 것이기도 하며 따라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의 원천이기도 하다는 견해와 맞선다.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지는 것은 산 노동만이라는 것을 가치법칙은 확정한다.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균등한 이윤을 기대하며 따라서 자기들이 선대한 자본을 자기들의 이윤의 일종의 생산비로 본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슈미트가 이러한 생각에 의하여 평균이윤율에 따라 계산되는 가격을 가치법칙과 일치시키

기 위하여 이 생각을 이용한다면 그는 가치법칙과 전적으로 모순되는 생각을 함께 규정하는 요인으로 이 법칙에 함침으로써 가치법칙 자체를 없애치우는 것이다.

축적된 노동이 산 노동과 함께 가치를 형성한다고 보아도 가치법칙은 들어맞지 않는다.

또는 축적된 노동이 가치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슈미트의 논증은 가치법칙과 양립할 수 없다.

슈미트는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하게 되었을 때에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개개 상품의 평균가격이 가치법칙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하는 수학적 공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목표에 아주 접근한 여기에서 그릇된 길로 나가는 하였지만 그의 소책자의 나머지 내용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옳은 이해를 가지고 『자본론』의 첫 두 부분(제1권, 제2권)에서 그 다음의 결론들을 끌어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까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해명되지 않았었는데——맑스는 이에 대하여 제3부 제3편에서 해명을 주었다——그것을 독자적으로 옳게 해명한 영예를 슈미트는 지니고 있다. 또한 산업에서 나오는 잉여가치에서 상업이윤을 끌어낸 것과 이자와 지대에 관한 많은 지적들도 역시 그의 공적인데 이것들은 맑스가 제3부 제4편과 제5편에서 설명한 것보다 먼저 한 것들이다.

그 후의 논문(『신시대』, 1892~1893년, 제3호와 제4호)에서 슈미트는 다른 방도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이 방도란 결국 경쟁이 평균이윤율을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경쟁으로 하여 자본이 평균 이하의 이윤을 내는 생산부문으로부터 그 이상의 이윤을 내는 생산부문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쟁이 이윤을 균등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는 것은 새로운 주장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슈미트가 이윤의 이 균등화란 결국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사회가 가치법칙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지불할 수 있는 가치척도로 된다는 것과 같다는 것을 논증하려 하고 있다. 왜 이 방도도 목표에 이를 수 없었는가 하는 것은 이 책에 있는 맑스의 설명 자체에서 넉넉히 알 수 있다.

슈미트 후에 이 문제에 손을 댄 것은 P. 파이어만이다(『콘라드 연지』, 제3집, 제3권, 793페이지). 나는 맑스의 서술의 그 밖의 측면들에 대한 파이어만의 지적들에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 지적들은 맑스가 설명하는 곳에서 정의를 내리려 하고 있다는 오해와 맑스에게서는 일반적으로 고정되고 완성된 그리고 영원히 들어맞는 정의들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오해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 사물과 그 호상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는 만큼 사물의 사유적 반영인 개념도 또한 달라지며 변형된다는 것, 사람들은 사물을 굳어진 정의 속에 틀어박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 역사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에 따라 맑스가 왜 제1부의 첫머리에서 그의 역사적 전제인 단순상품생산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에 기초하여 자본에 이르고 있는가, 그가 왜 거기에서 바로 단순한 상품으로부터 출발하고 논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제2차적 형태인 이미 자본주의적으로 수정된 상품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지 않는가가 물론 명백하게 될 것이다. 물론 파이어만은 이것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 이 밖에도 또 이러저러하게 시비할 수 있는 부차적인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제쳐놓고 곧 문제의 알맹이로 넘어가자. 이론은 파이어만에게 잉여가치율이 주어진 경우에 잉여가치는 적용된 노동력의 수에 비례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경험은 그에게 평균이윤율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윤이 투하된 총자본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파이어만은 이윤이란 하나의 조건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즉 그가 말하는 조건적인 현상이란 일정한 사회구성에 속하며 그와 함께 나타나고 또 사라지는 현상이라는 뜻이다). 즉 이윤의 존재는 오직 자본과만 결부되어 있다. 자본이 이윤을 얻음 만큼 힘이 세다면 자본은 경쟁으로 하여 모든 자본에 균등한 이윤율을 얻는 데 머물지 않을 수 없다. 균등한 이윤율이 없다면 어떠한 자본주의적 생산도 있을 수 없다. 이 생산형태를 전제로 하면 개개 자본가에게 있어서 이윤율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윤의 양은 다만 그의 자본의 크기에만 달려 있다. 한편 또 이윤은 잉여가치로, 부지불노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경우에 노동의 착취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잉여가치

가 어떻게 하여 요구되는 자본의 크기에 따라 크기가 달라지는 이윤으로 전화되는가?

“단순히 …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이 가장 큰 모든 생산부문들에서는 상품이 그 가치 이상으로 팔리지만 이것은 또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 $C:V$ 가 가장 작은 생산부문들에서는 상품이 그 가치 이하로 팔린다는 것, 그리고 $C:V$ 의 비율이 일정한 평균치를 표시하는 곳에서만 상품이 그 진정한 가치대로 팔린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가격이 각각 상품의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가치원칙을 부정하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가격은 다른 한 상품가격이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로 오르기 때문에 가격 총액은 가치 총액과 의연 같다. ‘결국’ 이 불일치는 사라진다.” 이 불일치는 하나의 교란이다. “그러나 정밀한 과학에서는 예견할 수 있는 교란은 결코 법칙의 부정으로는 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806, 808페이지).

이것을 제9장의 해당한 곳과 비교하여 보면 파이어만이 여기에서 사실상 결정적인 점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이어만이 문제를 아주 똑똑하게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을 발견한 후에도 얼마나 많은 중간고리들이 더 필요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그의 논문이 부당하게 냉대를 받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그들은 모두 역시 문제를 잘못 건드리다 혼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파이어만이 자기의 발견을 완전하지 못한 형태로 내버려둔 사실에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맑스의 서술에 대한 그의 이해와 이 이해에 기초하여 맑스의 서술에 대하여 그가 한 전반적 비판에 부인할 수 없는 결함이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어떤 어려운 문제에 손을 대서 남의 웃음거리로 되는 때가 있는 경우에 거기에는 반드시 쾰리히의 교수 율리우스 윌프가 나타난다. 그는 우리에게 모든 문제는 상대적 잉여가치에 의하여 풀린다고 말한다(『콘라드 연지』, 1891년, 제3집, 제2권, 352페이지 이하).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은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이 늘어나는 데 기초하고 있다.

“불변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생산력이 늘어나면(생산수단의 값이 싸지므로) 잉여가치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잉여가치와 총자본 가운데서 늘어나는 불변자본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게 된다. 불변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노동생산력이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가변자본은 그대로이고 불변자본이 늘어나는 경우에 잉여가치는 맑스가 말한 대로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 제기된 문제였다”(358페이지).

물론 맑스는 제1부의 여러 곳에서 이와 정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물론 가변자본이 줄어드는 경우에 상대적 잉여가치가 불변자본이 늘어나는 데 비례하여 늘어난다고 맑스가 말한듯이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회적 표현도 따라가지 못할만큼 놀라운 것이다. 물론 올리우스 윌프 씨는 그의 글의 어느 줄에서나 절대적 잉여가치에 대해서도 상대적 잉여가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나 조금도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 자신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언뜻 보면 여기에서 우리는 참으로 모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다”(361페이지).

말이 났으니 말이지 이것은 그의 전체 논문 가운데서 유일하게 옳은 말이다. 그런데 이것으로 어찌자는 셈인가? 올리우스 윌프 씨는 자기의 천재적인 발견을 두고 뽐내는 나머지 이에 대하여 맑스가 서거한 후에 그에게 찬사를 드리고 자기자신의 이 터무니없이 무의미한 것을

“자본주의경제에 대한 그(맑스)의 비판적 체계가 얼마나 예리하고 또 투철한가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

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다. 윌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리카아도는 자본지출이 같으면 잉여가치(이윤)도 같으며, 노동지출이 같으면 잉여가치도 같다(양적으로 보아)는 두 가지 명제를 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명제가 어떻게 일치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맑스는 문제를 이러한 형태로 세우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제3권에서) 둘째번 주장이 가치법칙의 무조건적인 귀결이기는커녕 그것은 그의 가치법칙과 모순되며 따라서 … 곧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증명하였다”[366페이지].

그리고 나서 그는 나와 맑스, 둘 가운데서 누가 틀렸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그 자신이 틀렸다는 데 대해서는 그는 물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굉장한 구절에 관하여 내가 한마디라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독자들을 모욕하고 그가 차지한 우스꽝스러운 입장을 전혀 모르고 지내게 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것만을 덧붙여 말하여둔다. 그는 이미 무엇을 맑스가 제3권에서 의심할 바 없이 증명하였는가를 대담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도 대담하게 콘라드 슈미트의 위에서 든 저서는 “엔겔스에게서 직접 고무를 받은 것”[366페이지]이라고 이른바 교수적인 잡담을 늘어놓고 있다. 율리우스 윌프 씨여! 당신이 살고 활동하고 있는 세계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이 그 해답을 자기의 친구들에게는 남모르게 알려주는 것이 보통일로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기꺼이 믿으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는 그러한 비열한 짓은 하자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이 머리말이 당신에게 보여줄 것이다.

맑스가 세상을 떠나기가 바쁘게 아킬레 로리아 씨는 맑스에 관한 논문을 『새 신문집』⁸⁾(1883년 4월)에 발표하였다. 그것은 우선 거짓 자료로 가득찬 전기이며 다음에는 사회활동과 정치활동, 문필활동을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맑스의 유물사관을 큰 확신을 가지고 위조, 왜곡하고 있는데 그 확신으로 보아 어떤 큰 목적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목적은 이루어졌다. 즉 1886년에 바로 이 로리아 씨는 『정

치기구에 관한 경제이론』이라는 저서를 발표하였는데 거기에서 그는 1883년에 매우 철저히 그리고 아주 고의적으로 왜곡한 맑스의 역사이론을 자기자신의 발견이라고 선포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물론 이 저서에서는 맑스의 이론이 어지간히 비속화되어 있으며 또 역사적 전거와 실례들은 중학교 4학년생에게도 통할 수 없는 오류투성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조건과 사건들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조건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발견은 이 저서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결코 맑스가 1845년에 한 것이 아니라 로리아 씨가 1886년에 한 것이다. 적어도 그는 다행히 이것을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믿게 하였고 또 그의 저서가 프랑스어로 나온 때부터는 일부 프랑스 사람들에게도 믿게 하였으며 이제 와서는 새로운 획기적 역사이론의 창시자로서 이탈리아에서 뽐낼 수 있지만 때가 오면 마침내 그곳의 사회주의자들은 이름난 로리아가 훔쳐낸 공작의 깃을 그에게서 뽑아버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로리아 씨의 수법의 하나의 작은 표본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우리에게 맑스의 전체 이론은 의식적인 꾀변(un consaputo sofisma)에 기초하고 있다는니, 맑스는 틀린 결론 그 자체를 알고 있는(sapendiali) 경우에도 내버리지 않았다는니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들을 설득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따위 야비한 허튼 소리를 한바탕 늘어 놓음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맑스도 우리의 파두아의 교수와 똑같은 더러운 사기사적 잔꾀로 무대효과를 올리는 로리아 따위의 야심가라고 생각하게 한다. 다음 이제는 독자들에게 하나의 중대한 비밀을 새어나가게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여 우리를 이윤을 문제로 되돌아가게 한다.

로리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맑스의 견해에 의하면 불변자본은 아무런 이윤도 내지 않으므로 자본주의적 산업기업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이것을 로리아 씨는 여기에서 이윤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의 양은 거기에서 적용되는 가변자본에 따른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와 모순된다. 왜냐하면 실지에 있어서 이윤은 가변자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총자본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맑스 자신도 알고 있으며(제1권, 제11장*)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들이 자기의 이론과 모순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는 이 모순을 어떻게 풀고

있는가? 그는 자기의 독자들에게 아직 나오지 않은 다음 권을 보자고 하고 있다. 이 권에 대하여 로리아는 이미 전에 자기의 독자들에게 맑스가 그 권을 쓰려고 한 순간이나마 생각하였다고는 자기에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한 일이 있는데 이제 그는 환성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다.

“세상에 나오지도 않을 제2권을 가지고 맑스는 자기의 논적들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데 이 제2권은 틀림없이 맑스가 과학적 논증에 막힐 경우에 쓴 교활한 핑계(un ingegnoso spediente ideato dal Marx a sostituzione degli argomenti scientifici)였을 수 있다고 내가 주장한 것은 옳았다.”

그러니 이제 와서도 맑스가 이름난 로리아와 똑같은 수준에서 과학적 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로리아 씨의 의견에 의하면 맑스의 잉여가치론은 일반적인 균등한 이윤율이라는 사실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제2부가 나왔으며 그와 함께 바로 이 점에 관하여 내가 공개적으로 제기한 문제가 나왔다.¹⁰ 로리아 씨가 우리와 같은 수준에 하는 독일인의 한 사람이었더라면 그는 좀 당황해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뻔뻔스러운 남쪽나라 사람이며 그가 주장한 바와 같이 뻔뻔스러운 것*이 어느 정도 자연조건으로 되어 있는 더운 지방 출신이다. 이윤율에 관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제기되어 있다. 로리아 씨는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그는 이제 그 문제를 공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전례없는 솜씨를 보여줄 것이다.

이 기적은 『콘라드 연지』(속간, 제20권, [1890년], 272페이지 이하)에 실린 위에서 말한 콘라드 슈미트의 저서에 관한 논문에서 이루어졌다.

* 말의 회롱 : unverfrorenheit는 뻔뻔스러운 것이라는 뜻과 함께 얼지 않음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편집부.

그가 상업이윤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슈미트에게서 배우고 나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단번에 명백하게 되었다.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규정은 자기 자본의 비교적 많은 부분을 임금에 지출하는 자본가들에게 유리하므로 비생산적 자본(상업자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은 이 유리한 자본가들에게서 비교적 높은 이자(이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를 받아내어 개별적 산업자본가들을 균등하게 할 수 있다. …산업자본가들인 A, B, C가 각각 100노동일을 그리고 각각 0, 100, 200의 불변자본을 생산에 적용하여 그리고 100노동일 동안의 임금에는 50노동일이 들어 있다면 이 자본가들은 각각 50노동일의 잉여가치를 얻으며 이윤율은 첫째 자본가는 100%, 둘째 자본가는 33.3%, 세째 자본가는 20%이다. 그러나 네째 자본가 D가 300이라는 비생산적 자본을 축적하고 자본가 A에게서는 40노동일의 가치가 있는 이자(이윤)를 요구하며 자본가 B에게서는 20노동일의 가치가 있는 이자를 요구한다면 A와 B 두 자본가의 이윤율은 C의 그것과 같은 20%로 떨어질 것이며 자본가 D는 300의 자본으로 60의 이윤을, 즉 나머지 자본가들과 마찬가지로 20%의 이윤율을 얻을 것이다.”

이름난 로리아는 그가 10년 전에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한 바로 그 문제를 이처럼 놀라운 솜씨로 잠깐 사이에 해결해치웠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토지소유자가 차지농업가의 초과이윤을 지대로서 제 주머니에 집어넣듯이 이 비생산적 자본이 산업가들에게서 평균이윤율을 넘는 그들의 이 초과이윤을 빼앗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는가 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하여 주지 않았다. 사실상 여기서 상인들은 지대와 아주 비슷한 공납을 산업가들에게서 받아내며 그리하여 평균이윤율이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물론 상업자본은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일반적 이윤율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는 정치경제학 전체에 코방귀를 뀌는 사기사적인 문필가만이 다음과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즉 상업자본은 일반적 이윤율을 넘는, 그것도 그러한 일반적 이윤율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초과잉여가치를 빨아들여 자기자신을 위한 지대로 전화시킬 수 있

는, 더구나 어떠한 토지소유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다. 이에 못지 않게 놀라운 것은 상업자본이 바로 평균이윤율을 보장할 따름인 잉여가치를 얻는 산업가들을 언제나 찾아내며 또 상업자본이 산업가들의 생산물을 공짜로, 심지어 아무런 수수료도 받지 않고 팔아줌으로써 맑스의 가치법칙의 이 불행한 희생자들의 운명을 얼마만큼 덜어주는 것을 영예로 여긴다는 주장이다. 맑스에게 이와 같은 너절한 잔피를 부릴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가소로운 요술쟁이인가!

그러나 우리의 이름난 로리아는 우리가 그를 북쪽에 있는 그의 경쟁자, 예컨대 역시 어제 오늘에 알려진 인물이 아닌 율리우스 월프 씨와 비교하여 볼 때 비로소 가장 영광에 빛난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적 사회질서」라는 월프 씨의 두툼한 저서를 놓고 보더라도 월프 씨는 이 이탈리아 사람에 비하여 얼마나 보잘 것 없는 떠벌이인가! 맑스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지도 덜 하지도 않으며 로리아 씨 자신과 똑같은 의식적인 궤변가이고 역설가이며 허풍선이고 사기꾼이며 맑스가 난처하게 되면 언제나 자기자신도 아주 잘 알고 있다시피 내놓을 수도 없고 또 내놓을 의사도 없는 다음 권에서 자기 이론을 매듭짓겠다고 세상사람들 앞에 빈 약속을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장의 그 고귀한 대담성에 비하면 월프 씨는 얼마나 무력하며 얼마나 겸손하나고 말하고 싶은 정도이다! 꿈쩍못할 처지에서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오는 재간을 겸한 없는 뻔뻔스러움, 발로 걷어채어도 태연한 영웅적 태도, 남의 업적을 재빨리 가로채는 재간, 허풍치기 약장수식의 광고, 동료일당에 의하여 명성을 떨치는 것, 이 모든 점에서 누가 그와 어깨를 겨눌 수 있겠는가?

이탈리아는 고전적인 것의 나라이다. 여기에서 근대세계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위대한 시대 이래 이 나라는 단테에서 가리발디에 이르기까지 이를 수 없이 고전적인 완성을 이룩한 위대한 인물들을 낳았다. 그러나 굴종하여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는 다른 고전적인 인물들도 남겨 놓았는데 그 가운데서 특히 뚜렷한 두 개의 형은 스가나렐형과 들까마라형이었다." 이 두 형이 보다시피 우리의 이름난 로리아에게서 고전적으로 통일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독자들을 대서양 건너쪽으로 안내해야 하겠다. 뉴욕에서 의학박사 조지 C. 스티벨링 씨도 문제의 해결책을, 그것도 간단하기 그지없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얼마나 간단한지 내서양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 그는 대단히 분개하였고 대서양 양쪽의 수많은 소책자와 신문 논설에서 이 불공정에 대한 불평을 크게 늘어놓았다. 그의 전체 해결이 계산을 잘못된 데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신시대」에서 그에게 말하여 주었지만¹² 그래도 그는 태연하였다. 맑스도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하지만 많은 점에서 옳았다. 그러면 스티벨링의 해결을 보기로 하자.

“같은 자본을 가지고 같은 기간 일하지만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이 다른 두 공장을 들어보자. 총자본($c+v$)을 Y 라고 하고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비율의 차를 x 로 표시하자. 공장 I에서는 $y=c+v$ 이고 공장 II에서는 $y=(c-x)+(v+x)$ 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공장 I에서는 m/v 이며 공장 II에서는 $m/(v+x)$ 이다. 총자본 y 또는 $c+v$ 가 주어진 기간에 늘어나는 총잉여가치(m)를 이윤(p)이라고 부르면 $p=m$ 이다. 따라서 이윤율은 공장 I에서 p/y 또는 $m/(c+v)$ 이고 공장 II에서도 똑같이 p/y 또는 $m/(c-x)(v+x)$ 즉 $m/c+v$ 가 될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다음과 같이 해결된다. 즉 동일한 작업시간 동안 동일한 자본을 사용하지만, 사용되는 살아 있는 노동의 양은 서로 다를 경우, 가치법칙에 기초하여 잉여가치율의 변동에 기초하여 동일한 평균이윤율이 성립하는 것이다”(G. C. 스티벨링, 「Das Werthgesetz und die Profitrate」, 뉴욕, 존, 하인리히).

이상의 설명이 아무리 매끈하고 명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티벨링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공장 I에서 생산하는 잉여가치량과 공장 II에서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이 똑같다는 사실을 그는 어디에서 알아낸 것일까? 그는 c , v , y , x 등 계산에 사용되는 나머지 모든 요소들에 관해서는 이들이 두 공장 모두에서 동일한 크기라고 분명히 밝혔으나 m 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언급이 없다. 단지 그가 이 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을 대수적으로 똑같이 m 으로 나타내는 것만으로는 이것이 전혀 해결되지 못한다. 더구나 스티벨링은

이윤(p)까지도 이 잉여가치와 동일시켰으므로 정작 입증되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상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 두 가지 경우뿐이다. 하나는 두 공장의 m이 동일한 경우로서, 즉 두 공장이 동일한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동일한 총자본으로 동일한 이윤을 획득하게 되므로 스티벨링은 처음부터 그가 입증해야 할 것을 아예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던 셈이다. 또는 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양이 다른 공장보다 많을 경우 그의 계산은 모두 뒤집어져 버린다.

스티벨링 씨는 이와 같은 오류 위에서 자신의 계산을 해나가고 또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노력과 비용 모두를 아끼지 않았다. 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위로의 얘기는 이런 그의 계산이 모두 잘못된 것이며 그의 계산이 제대로 된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원래 입증하고자 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입증한 경우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그는 1870년과 1880년의 미국 센서스를 비교하여 이윤율의 실제 하락을 증명하였는데 그는 이것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여 맑스 이론에서 이윤율의 안정성 가정은 경험적 사실에 기초하여 수정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여기 제3부의 제3장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가 생각한 맑스의 고정된 이윤율은 완전히 망상에 지나지 않으며 이윤율 저하 경향의 원인도 스티벨링이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것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스티벨링의 의도는 좋은 것이었다. 그러나 과학적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보다도 자신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를 읽을 때 그 자료의 저자가 기술한 대로 읽는 태도, 특히 그 저자가 그 자료에 써두지 않은 어떤 것을 함부로 추측해서 읽지 않는 그런 태도를 배워야만 한다.

전체 연구의 성과는 이 문제에 관련해 보아도 오로지 맑스 학파만이 어떤 성과를 거두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P. 파이어만과 콘라드가 이 제3권을 읽게 되면 그들 각자는 자신들의 저작에 만족해 할 것이다.

1894년 10월 4일 런던

프리드리히 엥겔스

제1편

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전화와 잉여가치율의 이윤율로의 전화

제1장 생산비와 이윤

제2장 이윤율

제3장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관계

제4장 이윤율에 미치는 회전의 영향

제5장 불변자본의 적용에서의 절약

제6장 가격변동의 영향

제7장 보충

제 1 장 생산비와 이윤

제1부에서는 그 자체로서 본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이 직접적 생산과정으로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연구하였는데 이 직접적 생산과정과 인연이 먼 사정들의 부차적 영향은 모두 제쳐놓고 보았다. 그러나 이 직접적 생산과정은 아직 자본의 생애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현실세계에서는 유통과정에 의하여 보충되는데 이 유통과정은 제2부의 연구대상이었다. 제2부, 특히 제3편에서 유통과정을 사회적 재생산과정을 매개하는 것으로서 살펴볼 때 알게 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전체로서 보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의 통일이다. 이 제3부에서 다루어야 할 과업으로 말하면 그것은 이 통일을 일반적으로 돌이켜보는 것일 수는 없다. 오히려 전체로서 본 자본의 운동과정에서 생기는 구체적 형태들을 찾아내어 보여주어야 한다. 자본은 그 실제적 운동에서는 구체적 형태들로서로 맞서는데 이 구체적 형태들에 있어서는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떠는 자본의 모습(Gestalt)이나 유통과정에서 떠는 자본의 모습이나 특수한 계기들로서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자본이 떠는 모습들은 우리가 이 책에서 전개하다시피 사회의 표면에서, 각각 다른 자본의 호상작용인 경쟁에서 그리고 생산을 맡아 하는 사람들 자신의 일상적 의식에서 나타나는 형태에 한걸음 한걸음 가까와진다.

자본주의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의 가치 W 는 $W=c+v+m$ 이라는 공식으로 표시된다. 이 생산물가치에서 잉여가치 m 을 빼면 생산요소들로 지출된 자본가치 $c+v$ 의 등가분 또는 이것을 상품으로 보상하는 가치만이 남는다.

예컨대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즉 노동수

단의 마멸분으로 20파운드 스텔링, 생산재료에 380파운드 스텔링, 노동력에 100파운드 스텔링을 지출하였다면 그리고 잉여가치율이 100%라면 생산물의 가치는 $400c+100v+100m=600$ 파운드 스텔링이다.

잉여가치 100파운드 스텔링을 빼면 5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가치가 남는데 이것은 500파운드 스텔링의 지출된 자본을 보상할 뿐이다.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과 적용된 노동력의 가격을 보상하는 부분은 자본가 자신이 상품에 들인 것을 보상할 따름이며 따라서 자본가로 보면 상품의 생산비를 이룬다.

자본가가 상품에 들이는 것과 상품의 생산 그 자체에 드는 것과는 물론 두 개의 전혀 다른 크기이다. 상품가치 가운데서 잉여가치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노동자가 부지불노동을 들여서 한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는 아무것도 바치지 않은 것이다. 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노동자 자신은 생산과정에 들어간 후에는 기능을 높고 있는, 그리고 자본가에게 속하는 생산자본의 구성부분을 이루며 따라서 자본가가 실제적 상품생산자이므로 필연적으로 상품의 생산비는 자본가로 보면 상품 자체에 드는 실제적 가치(Kost)로 나타난다. 생산비를 k 라고 하면 $W=c+v+m$ 이라는 공식은 $W=k+m$ 즉 상품가치=생산비+잉여가치라는 공식으로 전화된다.

그러므로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그 생산에 지출된 자본가치만을 보상하는 각각 다른 부분들을 생산비라는 범주로 한데 묶어보는 것은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수한 성격을 표현한다. 자본가가 상품에 들이는 비용은 지출되는 자본으로 재어지며 상품의 실제적 비용은 지출되는 노동으로 재어진다. 그러므로 상품의 자본주의적 생산비는 상품의 가치 또는 상품의 실제적 생산비와 양적으로 다르다. 상품의 자본주의적 생산비는 상품의 가치보다 작다. 왜냐하면 $W=k+m$ 이므로 $k=W-m$ 이기 때문이다. 한편 또 상품의 생산비는 결코 자본주의적 부기에만 있는 한 개 항목이 아니다. 이 가치부분의 자립화는 실제적 상품생산에서 계속 실지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이 가치부분은 유통과정을 통하여 그 상품형태에서 늘 다시 생산자본의 형태로 다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비로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요소들을 끊임없이

되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생산비라는 범주는 상품의 가치형식이나 자본의 가치증식 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6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상품가치의 5/6 즉 500파운드 스텔링이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지출된 자본의 등가분, 그 자본을 보상하는 가치를 이를 따름이며 따라서 이 자본의 소재적 요소들을 되살만할 따름이라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그 생산비를 이루는 이 5/6가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하는 것도 모르며 그 잉여가치를 이루는 나머지 1/6이 어떻게 생산되었는가 하는 것도 모른다. 하지만 생산비가 자본주의적 경제에서 가치생산 그 자체의 하나의 범주라는 거짓외관을 띠는 것을 연구해가는 데 따라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든 예로 되돌아가자. 하루의 사회적 평균노동일에 한 명의 노동자가 생산한 가치가 6실링=6마르크라는 화폐액으로 표시된다고 치면 500파운드 스텔링=400c+100v라는 선대된 자본은 1,666⅓의 10시간노동일에 생산된 가치인데 그 가운데서 1,333⅓노동일은 생산수단의 가치=400c에, 333⅓노동일은 노동력의 가치=100v에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을 100%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새로 만들어야 할 상품 자체의 생산에는 100v+100m=666⅓의 10시간노동일이라는 노동력의 지출이 든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자본론』, 제1부, 제7장, 173페이지 이하를 보라*) 새로 만들어진 600파운드 스텔링의 생산물의 가치는 1) 생산수단에 지출된 400파운드 스텔링의 불변자본의 다시 나타나 있는 가치와 2) 200파운드 스텔링의 새로 생산된 가치로 이루어진다. 상품의 생산비=500파운드 스텔링에는 다시 나타나 있는 400c와 200파운드 스텔링의 새로 생산된 가치의 절반(=100v)이 들어 있으며 따라서 상품가치 가운데서 그 출처가 전혀 서로 다른 두 요소들이 들어 있다.

666⅓의 10시간노동일 동안에 지출된 노동이 목적에 맞는 것으로 하여 4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는 이 생산수단에서 생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254~256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산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이 낡은 가치는 생산물 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다시 나타나지만 이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그 가치가 상품가치의 구성부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다만 그것이 전에 선대된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출된 불변자본은 상품가치 가운데서 그 불변자본 자체가 상품가치에 덧붙이는 부분에 의하여 보상된다. 따라서 생산비의 이 요소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즉 한편으로 이 요소가 상품의 생산비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상품가치 가운데서 지출된 자본을 보상하는 구성부분이기 때문이며 한편 또 이 요소가 상품가치의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지출된 자본의 가치이기 때문이며 또는 생산수단에 그만큼 가치가 들기 때문이다.

생산비의 다른 구성부분은 그와는 정반대이다. 상품을 생산하는 동안에 지출된 $666\frac{2}{3}$ 노동일의 노동은 200파운드 스텔링의 새로운 가치를 이룬다. 이 새로운 가치 가운데서 한 부분은 100파운드 스텔링의 선대된 가변자본 또는 적용된 노동력의 가격을 보상할 따름이다. 자본을 선대하는 데서는 노동력이 가치로서 보아지지만 생산과정에서는 노동력은 가치를 형성하는 요소로서 기능을 논다. 자본을 선대하는 데서 나타나는 노동력의 가치 대신에 실제로 기능을 노는 생산자본으로는 가치를 형성하는 산 노동력 자체가 나선다.

상품가치 가운데서 함께 생산비를 이루는 서로 다른 이 구성부분들의 차이는 가치의 크기에서 변동이 일어나자 즉 하나는 지출된 불변자본부분에서 또 다른 하나는 지출된 가변자본부분에서 일어나자 곧 눈에 띄게 된다. 똑같은 생산수단의 가격 또는 불변자본부분이 400파운드 스텔링에서 600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200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진다고 하자. 첫째 경우에는 상품의 생산비가 500파운드 스텔링에서 $600c+100v=700$ 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를 뿐 아니라 상품가치 자체도 600파운드 스텔링에서 $600c+100v+100m=800$ 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른다. 둘째 경우에는 생산비가 500파운드 스텔링에서 $200c+100v=300$ 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질 뿐 아니라 상품가치 자체도 600파운드 스텔링에서 $200c+100v+100m=400$ 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진다. 지출된 불변자본은 그 자체의 가치를 생산물에 넘겨주기 때문에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

우에 생산물의 가치는 그 자본가치의 절대적 크기에 따라 늘거나 준다. 반대로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에 똑같은 양의 노동력의 가격이 100파운드 스텔링에서 150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르거나 반대로 50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진다고 하자. 물론 첫째 경우에는 생산비가 500파운드 스텔링에서 $400c+150v=550$ 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르며 둘째 경우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에서 $400c+50v=450$ 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지지만 두 경우에 다 상품가치는 변함없이 의연 600파운드 스텔링이어서 첫째 경우에는 $400c+150v+50m$ 이며 둘째 경우에는 $400c+50v+150m$ 이다. 선대된 가변자본은 그 자체의 가치를 생산물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자본의 가치 대신에 노동이 창조한 새로운 가치가 생산물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변자본가치의 절대적 크기에서 생긴 변동이 노동력의 가격에서 생긴 변동을 표현할 따름인 한에서 상품가치의 절대적 크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동하는 노동력이 창조하는 새로운 가치의 절대적 크기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러한 변동으로 하여 영향을 받는 것은 새로운 가치의 두 구성부분들의 양적 비율만인데 그 가운데서 한 부분은 잉여가치를 이루고, 다른 부분은 가변자본을 보상하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비에 들어가는 것이다.

생산비의 두 부분, 우리가 든 경우에 $400c+100v$ 에 공통한 것은 그것들이 상품가치 가운데서 선대된 자본을 보상하는 두 부분이라는 점뿐이다.

그러나 이 실지사태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견지에서는 거꾸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노예제도에 기초한 생산양식과 구별되는 점은 무엇보다도 노동력의 가치 또는 가격이 노동 자체의 가치 또는 가격으로 즉 임금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자본론』, 제1부, 제17장). 그러므로 선대되는 자본의 가치 가운데서 가변부분이 임금으로 지출되는 자본으로서, 생산에 지출되는 모든 노동의 가치 또는 가격을 지불하는 자본가치로서 나타난다. 예컨대 10시간의 평균적인 사회적 노동일이 6실링이라는 화폐량에 구현된다고 가정하면 100파운드 스텔링의 선대되는 가변자본은 $33\frac{1}{3}$ 의 10시간노동일에 생산되는 가치의 화폐표현이다. 그러나 선대되는

자본으로 나타나는, 사들이는 노동력의 이 가치는 실지 기능을 노는 자본의 어떠한 부분도 이루지 않는다. 이 가치 대신에 생산과정 자체에서 산 노동력이 나타난다. 우리가 들고 있는 예에서처럼 노동력의 착취 정도가 100%라면 노동력은 $66\frac{2}{3}\%$ 의 10시간노동일 동안에 지출되며 따라서 생산물에 200파운드 스텔링의 새로운 가치를 덧붙인다. 그러나 자본을 선대하는 데서는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이 임금에 지출되는 자본으로서, 또는 $66\frac{2}{3}\%$ 의 10시간노동일 동안에 수행되는 노동의 가격으로서 나타난다. 100파운드 스텔링을 $66\frac{2}{3}\%$ 로 나누면 10시간노동일의 가격으로서 3실링이 나오는데 이것은 5시간노동이 생산하는 가치이다.

그런데 한편의 선대자본과 다른 편의 상품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I. 선대자본 500파운드 스텔링 = 생산수단에 지출된 자본 400파운드 스텔링 (생산수단의 가격) + 노동에 지출된 자본 100파운드 스텔링 ($66\frac{2}{3}\%$ 노동일의 가격 또는 이에 대한 임금).
- II. 상품가치 600파운드 스텔링 = 생산비 500파운드 스텔링 (지출된 생산수단의 가격 400파운드 스텔링 + 지출된 $66\frac{2}{3}\%$ 노동일의 가격 100파운드 스텔링) + 잉여가치 100파운드 스텔링.

이 공식에서 노동에 지출된 자본부분이 생산수단, 예컨대 목화나 석탄에 지출된 자본부분과 구별되는 것은 다만 그 부분이 소재적으로 다른 생산요소의 댓가를 지불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지 결코 그 부분이 상품의 가치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따라서 또 자본의 가치를 불리는 과정에서 기능상 다른 역할을 놀기 때문이 아니다. 생산수단의 가격은 그것이 이미 자본을 선대하는 데서 나타났던 대로 상품의 생산비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 생산수단이 목적에 맞게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와 꼭 마찬가지로 상품을 생산하는 데 쓰인 $66\frac{2}{3}\%$ 노동일의 가격 또는 이에 대한 임금도 그것이 이미 자본을 선대하는 데서 나타났던 대로 상품의 생산비에서 다시 나타나는데 그것도 이 노동량이 합목적적 형태로 지출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다만 다 되어 이미 있는 가치들——선대자본의 가치 가운데서 생산물의 가치를 형성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들——만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는다. 불변

자본과 가변자본의 차이는 사라져 있다.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전체 생산비는 이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을 얻는다. 즉 첫째로 그것은 6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상품가치 가운데서 상품생산에 지출된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자본을 보상하는 구성부분이라는 것과 둘째로 상품가치의 이 구성부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그것이 이미 이전에 생산수단과 노동이라는 적용된 생산요소들의 생산비로서 즉 선대된 자본으로 존재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가치가 상품의 생산비로서 다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이 자본가치로서 지출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 그러한 한에서이다.

선대된 자본의 가치를 이루는 서로 다른 구성부분들이 소재적으로 서로 다른 생산요소들인 노동수단, 원료, 보조자재와 노동에 지출되어 있다는 사정은 오직 상품의 생산비가 소재적으로 서로 다른 이 생산요소들을 다시 되사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제약할 뿐이다. 그런데 생산비 자체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오직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차이라는 한 가지 차이만이 의의를 가진다. 우리가 든 예에서 20파운드 스텔링은 노동수단의 마멸분으로 계산되어 있었다($400c = \text{노동수단의 마멸분 } 20\text{파운드 스텔링} + \text{생산재료 } 380\text{파운드 스텔링}$). 이 노동수단의 가치가 상품이 생산되기 전에 1,2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면 그 가치는 상품이 생산된 후에는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한다. 즉 20파운드 스텔링은 상품가치의 한 부분으로서 존재하며 1,200—20 또는 1,180파운드 스텔링—은 전과 같이 자본가의 소유로 있는 노동수단의 남아 있는 가치로서 또는 그의 상품자본의 가치요소로서가 아니라 그의 생산자본의 가치요소로서 존재한다. 노동수단과는 달리 생산재료와 임금은 상품의 생산에 전부 지출되며 따라서 그것들의 전체 가치도 생산된 상품의 가치 속에 들어간다. 우리는 선대된 자본을 이루는 서로 다른 이 부분들이 회전과 관련하여 어떻게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라는 형태들을 얻는가 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선대자본은 1,680파운드 스텔링 즉 고정자본 1,200파운드 스텔링 더하기 유동자본 480파운드 스텔링(=생산재료 380파운드 스텔링 더하기 임금 100파운드 스텔링)이다.

이와 반대로 상품의 생산비는 겨우 500파운드 스텔링(고정자본의 마멸

분 20파운드 스텔링, 유동자본 480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러나 상품의 생산비와 선대자본의 이 차이는 상품의 생산비가 전적으로 상품의 생산에 실제로 지출된 자본에 의하여 형성된다는 것을 확증할 따름이다.

상품의 생산에서는 1,2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노동수단이 적용되지만 선대된 이 자본가치 가운데서 20파운드 스텔링만이 생산에서 소비된다. 그러므로 적용된 고정자본은 부분적으로만 상품의 생산비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분적으로만 상품의 생산에 지출되기 때문이다. 적용된 유동자본은 죄다 상품의 생산비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것은 상품의 생산에 죄다 지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소비된 고정자본부분과 유동자본부분이 그것들의 가치크기에 비례하여 똑같이 그 상품의 생산비에 들어간다는 것 그리고 상품가치의 이 구성부분이 일반적으로 오직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자본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무엇을 증명하겠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선대된 1,200파운드 스텔링의 고정자본이 생산과정에서 잃어버리는 20파운드 스텔링뿐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잃어버리지 않는 1,180파운드 스텔링도 생산물가치에 덧붙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비의 계산과 관련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이 차이는 생산비가 분명히 지출된 자본가치에서 또는 노동을 포함한 지출된 생산요소들에 자본가 자신이 들이는 가격에서 생겨난다는 것을 확증할 따름이다. 한편 또 노동력에 지출된 가변자본부분은 가치형성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유동자본이라는 항목으로 명백히 불변자본(생산재료로 있는 자본부분)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며 그리하여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의 신비화가 완성된다.¹⁾

이제까지는 상품가치의 한 요소인 생산비만을 살펴 보았다. 이제는 상품가치를 이루는 다른 부분 즉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 즉 잉여가치도

1)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머리속에 어떠한 혼란이 생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N. W. 시니어를 예로 들어 「자본론」, 제1부, 제7장, 3, 185~191 페이지(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268~274페이지를 보라)에서 보여 주었다.

살펴 보아야 한다. 우선 잉여가치라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그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이다. 그런데 생산비는 지출된 자본의 가치와 같으며 이 자본의 소재적 요소들로 끊임없이 다시 전화되므로 이 가치초과분은 상품의 생산에 지출되었으며 상품의 유통에서 되돌아오는 자본가치의 증가분이다.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잉여가치 m 은 가변자본 v 의 가치가 달라지는 데서만 생기며 따라서 원래는 단순히 가변자본의 증가분이지만 생산과정이 끝난 다음에는 그만 못지 않게 지출된 총자본 $c+v$ 의 가치증가분을 이룬다. m 은 노동력에 선대한 일정한 자본가치 v 가 변동하는 크기로, 따라서 불변의 크기가 가변의 크기로 전화됨으로써 생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식 $c+(v+m)$ 은 또한 $(c+v)+m$ 으로써도 표시된다. 생산이 진행되기 전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있었다. 생산이 진행된 후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 더하기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증가분이 있다.²⁾

그러나 잉여가치는 선대자본 가운데서 가치증식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이룰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을 이루기도 한다. 즉 상품의 생산가격으로 보상되는 지출된 자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산에 적용된 모든 자본에 대해서도 증가분을 이룬다. 생산과정이 진행되기 전에는 1,68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가치가 있었다. 즉 노동수단으로 있는 고정자본 1,200파운드 스텔링——이 가운데서 20파운드 스텔링만이 마멸분으로 상품의 가치에 들어간다——더하기 생산재료와 임금으로 있는 유동자본 480파운드 스텔링이 있었다. 생산과정이 진행된 후에는 생산자본의 가치를 이루는 부분으로서

2) “잉여가치는 단순히 v 에서 일어난, 즉 노동력으로 전화된 자본부분에서 일어난 가치변동의 결과라는 것, 따라서 $v+m=v+\Delta v$ (v 더하기 v 의 증가분)이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인 가치변동과 가치변동의 비율은 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이 증가함에 따라 선대자본 전체도 또한 증가한다는 사정에 의하여 애매하게 된다. 그것은 이전에는 500이었던 것이 이제는 590으로 된다”(『자본론』, 제1부, 제7장, 1, 175페이지[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256페이지를 보라]).

1,180파운드 스텔링 더하기 6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자본이 있다. 이 두 가치액을 합하면 자본가는 이제는 1,78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자본가가 거기에서 1,680파운드 스텔링의 선대한 총자본을 빼면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증가분이 남는다. 그리하여 잉여가치 100파운드 스텔링은 적용된 자본 가운데서 생산하는 동안에 지출된 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나 또 1,68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적용된 자본에 대해서나 다 가치증가분으로 된다.

이제 자본가에게 명백한 것은 이 가치증가분은 자본을 가지고 시작된 생산행정에서 생긴다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자본 자체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치증가분은 생산과정이 진행된 후에 존재하며 생산과정이 진행되기 전에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생산에 지출한 자본으로 말하면 잉여가치는 생산수단과 노동으로 있는 이 자본의 서로 다른 가치요소들에서 똑같이 생기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 요소들은 생산비를 이루는 데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 요소들은 선대자본으로서 있는 자체의 가치들을 생산물가치에 덧붙이는 것이며 불변의 가치량과 가변의 가치량으로서 구별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가 잠시 지출된 모든 자본이 오로지 임금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오로지 생산수단의 가치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치면 명백해진다. 그때에는 첫째 경우에 상품가치는 $400c + 100v + 100m$ 이 아니라 $500v + 100m$ 일 것이다. 임금에 지출된 5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은 600파운드 스텔링의 상품가치를 생산하는 데 들인 모든 노동의 가치이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생산물의 생산비를 이룬다. 그러나 지출한 자본의 가치가 생산물의 가치를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다시 나타나게 하는 이 생산비의 형성은 이 상품가치의 형성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행정이다. 상품가치를 이루는 한 부분인 1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는 모른다. 상품가치가 $500c + 100m$ 일 둘째 경우에도 똑같은 것이다. 두 경우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잉여가치가 주어진 가치에서 생긴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가치가 노동의 형태로건 생산수단의 형태로건 어쨌든 생산자본의 형태로 선대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또 선대된 자본가치는 그것이 이미 지출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비를

이룬다는 이유로만 해서도 잉여가치를 이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바로 선대된 자본가치가 상품의 생산비를 이루는 한에서는 그것은 결코 잉여가치를 이루지는 않으며 다만 지출된 자본의 등가를, 그 자본을 보상하는 가치를 이룰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대된 자본가치가 잉여가치를 이루는 한에서는 그것은 지출된 자본으로서의 그 특수한 속성으로써가 아니라 선대된, 따라서 적용된 자본 일반으로서 잉여가치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는 선대된 자본 가운데서 상품의 생산비에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생산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서도 생긴다. 한마디로 말하여 적용된 자본의 고정적 구성부분과 유동적 구성부분에서 똑같이 생긴다. 총자본은 노동수단이나 생산재료와 노동이나 다같이 소재적으로는 생산물을 이루는 것으로서 쓰인다. 총자본은 그 한 부분만이 가치증식과정에 들어가지만 실지 노동과정에는 소재적으로 다 들어간다. 이것은 아마 총자본이 부분적으로만 생산비를 이루는 데 이바지하지만 잉여가치를 이루는 데는 다 이바지하는 바로 그 이유일 것이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결국 잉여가치는 적용된 자본의 모든 부분들에서 동시에 생긴다는 것으로 된다. 맬더스를 본받아 거칠게 그리고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면 문제는 더욱 매우 간략하게 될 수 있다.

“자본가는 자기가 선대하는 자본의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이익을 얻기를 기대한다.”³⁾

잉여가치가 선대한 총자본에서 생긴다고 볼 때 그것은 이윤이라는 전화된 형태를 띤다. 그러므로 어떤 가치액이 자본인 것은 그 가치액이 이윤을 내기 위하여 지출되기 때문이며⁴⁾ 또는 이윤이 나오는 것은 어떤 가치액이 자본으로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윤을 p 라고 하면 $W=c+v+m=k+m$ 이라는 공식은 $W=k+p$ 또는 상품가치=생산비+이윤이라는 공

3) 맬더스, 『정치경제학원리』, 제2판, 런던, 1836년, 268페이지.

4) “자본이란 이윤을 내기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다”(맬더스,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들』, 런던, 1827년, 86페이지).

식으로 전화된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선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윤은 잉여가치와 똑같은 것인데 다만 신비로운 형태를 띠고 있는 그러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생산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겉으로 보아서는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차이를 알아낼 수 없기 때문에 생산과정에서 일어나는 가치변동의 근원은 가변자본에서 총자본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없다. 한 극에서 노동력의 가격이 임금이라는 전화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반대극에서는 잉여가치가 이윤이라는 전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상품의 생산비는 상품의 가치보다 적다. $W=k+m$ 이므로 $k=W-m$ 이다. $W=k+m$ 이라는 공식은 $m=0$ 인 경우에만 $W=k$ 즉 상품가치=상품의 생산비로 되는데, 그러한 경우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다. 비록 특수한 시장형편에서는 상품의 판매가격이 그 생산비까지 또는 그보다도 더 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면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상품의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과 같은 따라서 상품의 가치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 전체와 같은 이윤이 실현된다. 그러나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팔아도 이윤을 낼 수 있다. 상품의 판매가격이 그 가치 이하라 하더라도 그 생산비를 넘는 한에서는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한 부분은 언제나 실현되며 따라서 언제나 이윤이 생긴다. 우리가 든 예에서는 상품가치는 600파운드 스텔링이며, 생산비는 500파운드 스텔링이다. 상품을 510, 520, 530, 560, 590파운드 스텔링으로 판다면 그것은 각각 90, 80, 70, 40, 10파운드 스텔링만큼 그 가치 이하로 팔리지만 그것이 팔리는데서 각각 10, 20, 30, 60, 90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이 나온다. 상품의 가치와 그 생산비 사이에는 한없이 많은 판매가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상품가치 가운데서 잉여가치로 이루어지는 요소가 크면 클수록 실제로 이 중간가격들이 작용하는 여지도 넓어진다.

이것으로 설명되는 것은 예컨대 헐값판매(underselling)의 어떤 경우들, 일정한 산업부문들에서 상품가격이 여느 때 없이 낮은 것⁵⁾ 등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경쟁현상만이 아니다. 이제까지 정치경제학이 알지 못한

자본주의적 경쟁의 기본법칙, 즉 일반적 이윤율과 이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른바 생산가격을 규제하는 법칙은 후에 보게 되겠지만 상품의 가치와 그 생산비와의 이 차이 그리고 이 차이로 하여 상품을 그 가치 이하로 팔면서도 이윤을 낼 수 있는 가능성에 기초하고 있다.

상품의 판매가격의 최저한계는 그 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된다. 상품이 그 생산비 이하로 팔리면 생산자본을 이루는 지출된 부분들은 판매가격으로 완전히 보상될 수는 없다. 이 과정이 계속되면 선대된 자본가치는 사라지고 만다. 이 관점에서 벌써 자본가는 생산비를 상품의 진짜 내적 가치라고 생각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그의 자본을 다만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에 덧붙는 것은 상품의 생산비는 자본가 자신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하여 지불한 구매가격이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과정 자체에 의하여 규정되는 구매가격이라는 사정이다. 그러므로 상품이 팔려 실현되는 가치초과분 즉 잉여가치가 자본가에게는 상품의 가치가 그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가격이 그 가치를 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나며 그리하여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가 상품의 판매를 통하여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그 자체에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는 이 착각을 이미 「자본론」, 제1부, 제4장, 제2절(「자본의 일반적 공식의 제모순」)에서 자세히 밝혔지만 여기에서 잠깐 정치경제학이 리카아도를 뛰어넘어 이룩한 진보라고 하면서 토렌스 등이 다시 들고나온 그 형태로 되돌아가자.

“생산비로 이루어지는, 다시 말하면 상품의 생산 또는 제조에 지출되는 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자연가격은 이윤을 포함할 수 없다. …차지농업가가 100쿼터의 알곡을 지출하고 그 대신 120쿼터를 되 얻는다면 20쿼터는 지출을 넘는 생산물의 초과분으로서 그의 이윤을 이룬다. 그러나 이 초과분 또는 이윤을 그의 지출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이다. …공장주는 일정한 양의 원료, 도구, 노동을 위한 생존수단을 지출하고 그 대신 일정한 양의 다 된 상품을 얻는다. 이 다 된 상품은 그것을 만드는데 선대한 원료, 도구,

5) 「자본론」, 제1부, 제18장, 511~512페이지(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2분책, 195~196페이지) 참조.

생존수단보다 높은 교환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토렌스는 생산비를 넘는 판매가격의 초과분 또는 이윤은 다음과 같은 데서 생긴다고 결론짓는다. 즉 소비자들이

“직접 교환하거나 에둘러(circuitous) 교환함으로써 자본을 이루는 모든 요소들에 대하여 그 생산에 드는 것보다 얼마만큼 더 많은 것을 주는”⁶⁾ 데서 생긴다고 한다.

사실 주어진 크기를 넘는 초과분은 이 크기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없으며 따라서 상품가치 가운데서 자본가의 지출을 넘는 초과분인 이윤도 이 지출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없다. 따라서 상품의 가치를 이루는 데 자본가가 선대한 가치 밖에 다른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생산에 들어간 것보다 더 많은 가치가 생산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즉 무에서 유가 어떻게 생길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런데 토렌스는 이렇게 무에서 창조되는 것을 상품의 생산분야에서 상품의 유통분야로 옮겨 놓음으로써 그것을 회피하고 있다. 토렌스는 말하기를 이윤은 생산에서 나올 수 없는데 그 이유인즉 이윤이 생산에서 나온다면 이윤은 이미 생산의 비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 비용을 넘는 초과분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램제이는 그에게 대답하기를 이윤은 상품이 교환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면 상품교환에서 나올 수 없다고¹³⁾ 한다. 교환되는 생산물의 가치액은 그 가치액을 가진 생산물의 교환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가치액은 교환 전이나 후나 똑같다. 여기에서 지적해야 할 것은 맬더스가 명백히 토렌스의 권위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이다.⁷⁾ 비록 맬더스 자신은 상품이 그 가치 이상으로 팔리는 것을 달리 설명하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설명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모든 논의는 틀림없이 당시 널리 알려진 연소의 부

6) R. 토렌스, 「부의 생산에 관한 논술」, 런던, 1821년, 51~53 및 349페이지.

7) 맬더스, 「정치경제학에서의 정의들」, 런던, 1853년, 70, 71페이지.

수의 무게와 같은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¹⁴

자본주의적 생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비자본주의적 생산자도 자본주의적 표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무릇 현실관계를 깊이 이해하는 데서 뛰어난 발자크는 그의 마지막 소설인 「농민」에서 소농민이 자기 고리대금업자의 호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리대금업자에게 온갖 일을 거저 해주면서도 자기자신의 노동은 자기자신에게 아무런 현금지출도 들이게 하지 않기 때문에 고리대금업자에게 아무것도 선사하는 것은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을 적절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리하여 고리대금업자로서는 일거양득이다. 그는 임금지출을 절약하며 또 자기자신의 발에서 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영락해가는 농민을 고리대금의 그물에 점점 더 깊이 걸려들게 한다.

상품의 생산비는 상품의 실제적 가치를 이루지만 잉여가치는 상품이 그 가치 이상으로 팔리는 데서 생긴다는, 따라서 상품은 그 판매가격이 그 생산비와 같을 때 즉 상품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격 더하기 임금과 같을 때 그 가치대로 팔린다는 엉터리없는 표상을 프루동은 늘 그러하듯이 학자연하게 뽐내면서 새로 발견한 사회주의의 비밀이라고 떠벌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상품의 가치를 그 생산비로 끌어내리는 것이 사실상 그의 인민은행¹⁵의 기초를 이룬다. 전에 설명한 것처럼 생산물의 가치를 이루는 서로 다른 부분들은 생산물 자체의 비례적 부분들로 표시할 수 있다. 예컨대 「자본론」, 제1부, 제7장, 2, 182페이지)* 20파운드의 실의 가치가 30실링, 즉 생산수단 24실링, 노동력 3실링, 잉여가치 3실링이라고 하면 이 잉여가치는 생산물의 $1/10=2$ 파운드의 실로 표시할 수 있다. 이제 20파운드의 실이 그 생산비대로 27실링으로 팔린다면 사는 사람은 2파운드의 실을 거저 얻는다. 즉 상품은 그 가치보다 $1/10$ 만큼 싸게 팔린다. 그러나 노동자는 전이나 다름없이 자기의 잉여노동을 하였는데 다만 자본주의적 실생산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실을 사는 사람을 위하여 하였다. 모든 상품이 그 생산비대로 팔린다면 그 결과는 사실상 상품이 모두 그 생산비 이상으로 그러나 그 가치대로 팔리는 경우와 똑같은 것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264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 노동일의 길이, 그리고 노동의 착취정도가 어디서나 같다 하더라도 서로 다른 종류의 상품의 가치 속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양은 이 상품들을 생산하는 데 선대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서로 다름에 따라 전혀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⁸⁾

8) “각이한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양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의 착취정도가 같다면 이 자본의 가변적 구성부분의 크기에, 다시 말하면 산 노동력으로 전화된 그 구성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자본론』, 제1부, 제9장, 270페이지[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67페이지를 보라]).

제2장 이윤율

자본의 일반적 공식은 $G-W-G'$ 이다. 즉 더 많은 가치액을 유통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일정한 가치액을 유통에 던져넣는 것이다. 이 더 많은 가치액을 낚는 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이며 이 가치액을 실현하는 과정은 자본의 유통이다. 자본가가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상품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며 상품의 사용가치를 위해서거나 자기의 개인적 소비를 위해서가 아니다. 실제로 자본가가 관심을 가지는 생산물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생산물 그 자체가 아니라 생산물의 가치 가운데서 그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소비한 자본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이다. 자본가는 자본의 구성부분들이 잉여가치의 생산에서 노는 역할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들이켜 보지 않고 총자본을 선대한다. 자본가는 선대한 자본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바로 그 자본의 가치를 넘는 초과분을 생산하기 위하여 이 모든 구성부분들을 한결같이 선대하는 것이다. 자본가는 자기가 선대하는 가변자본의 가치를 산 노동과 교환함으로써만, 산 노동을 착취함으로써만 그것을 더 큰 가치로 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는 동시에 이 노동의 실현조건들인 노동수단과 노동대상, 기계와 원료를 선대함으로써만,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액을 생산조건들의 형태로 전화함으로써만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 그는 노동조건들의 소유자로서 단순한 노동력의 소유자로서의 노동자와 맞서기 때문에만 무릇 자본가인 것이며 일반적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과정에 들어설 수 있다. 앞서 제1부에서* 보여준 것처럼 노동자 아닌 자가 이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정이 노동자를 임금노동자로 전화시키며 노동자 아닌 자를 자본가로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203~204페이지, 제2분책, 379~381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전화시키는 것이다.

자본가가 가변자본에서 이득을 얻어내기 위하여 불변자본을 선대한다고 보든, 또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불리기 위하여 가변자본을 선대한다고 보든, 즉 그가 기계와 원료가 더 많은 가치를 가지게 하기 위하여 화폐를 임금으로 지출한다고 보든, 또는 노동을 착취할 수 있기 위하여 화폐를 기계와 원료에 선대한다고 보든, 그것은 자본가에게는 아무래도 좋다. 오직 자본의 가변부분이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만 자본의 다른 부분들 즉 노동에 필요한 생산조건들이 선대되는 조건에서만 자본의 가변부분은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자본가는 불변자본을 선대해야만 노동을 착취할 수 있으며 가변자본을 선대해야만 불변자본의 가치를 불릴 수 있으므로 이 모든 자본들이 그의 표상에서는 똑같은 것으로 되며 더욱 그렇게 되는 것은 그의 이득의 실제적 정도가 가변자본과의 비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총자본과의 비율에 의하여 즉 잉여가치율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후에 보겠지만 이윤율은 의연 똑같더라도 각각 다른 잉여가치율을 표현할 수 있다.

생산물의 비용에 속하는 것은 생산물의 가치를 이루는 부분들 가운데서 자본가가 그 댓가를 지불한 또는 자본가가 그 동가물을 생산에 집어넣은 모든 부분들이다. 자본을 단순히 보존하려면 또는 자본을 원래의 크기대로 재생산하려면 이 비용들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에 들어 있는 가치는 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드는 노동시간과 같으며 이 노동의 총량은 지불노동과 부지불노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자본가에게서의 상품의 비용은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 가운데서 그가 댓가를 지불한 부분만으로 이루어진다.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노동은 노동자에게는 지불노동과 꼭 마찬가지로 노동을 들이게 하지만 그리고 지불노동과 꼭 마찬가지로 가치를 창조하고 가치를 이루는 요소로서 상품에 들어가지만 자본가에게는 아무것도 들이게 하지 않는다. 자본가의 이윤은 그가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것을 판 데서 나온다. 잉여가치 또는 이윤은 바로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그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 즉 상품에 들어 있는 총노동량 가운데서 상품에 들어 있는 지불노동량을 넘는 초과분에 있다. 그러므로 잉여가치가 무엇에서 생겨나든, 그것은 선대된 총

자본을 넘는 초과분이다. 따라서 총자본에 대한 이 초과분의 비율은 m/C 이라는 분수로 표현되는데 여기에서 C 는 총자본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잉여가치율 m/v 과 구별되는 이윤율 $\frac{m}{C} = \frac{\pi}{c+v}$ 이 나온다.

가변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을 잉여가치율이라고 하며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을 이윤율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똑같은 크기를 각각 다르게 켜 것인데 그것들은 기준이 다른 결과에 똑같은 크기의 각각 다른 비율 또는 관계를 표현한다.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화되는 것은 잉여가치율이 이윤율로 전화되는 데서 끌어내야 하며 거꾸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윤율이 출발점이었다. 잉여가치와 잉여가치율은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연구를 거쳐 찾아내야 할 본질적인 것인데 이윤율, 따라서 이윤율로서의 잉여가치의 형태는 현상의 겉면에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하나의 자본가로 말하면 그가 관심을 가지는 유일한 것은 잉여가치 또는 그가 자기의 상품을 팔아 얻는 가치초과분이 그가 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선대한 총자본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자본의 개별적 구성부분들에 대한 이 초과분의 일정한 비율과 그 구성부분들과의 이 초과분의 내적 연관은 그의 관심을 전혀 끌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의 관심사는 이 일정한 비율과 이 내적 연관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다.

상품의 가치가 상품의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은 직접적 생산과정에서 생기지만 유통과정에서 비로소 실현된다. 그리고 이 초과분이 실현되는가 실현되지 않는가, 실현된다면 어느 정도로 실현되는가 하는 것이 실제로는, 경쟁의 내부에서는, 현실적 시장에서는 시장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이 초과분은 더구나 유통과정에서 생긴 것 같은 외관을 띠는 것이다. 어떤 상품이 그 가치 이상으로 또는 그 가치 이하로 팔리더라도 잉여가치의 분배가 달라질 뿐이라는 것 그리고 이와같이 분배가 달라지더라도 즉 서로 다른 인물들이 잉여가치를 나누어 가지는 비율이 달라지더라도 잉여가치의 크기나 잉여가치의 본성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실제적 유통과정에서는 우리가 『자

본론』 제2부에서 살펴 본 전화들이 진행될 뿐 아니라 이 전화들은 실제적 경쟁, 그 가치 이상 또는 가치 이하로의 상품의 매매와 일치하며 그리하여 개별적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이 실현하는 잉여가치가 노동을 직접 착취하는 데 못지 않게 서로 속여먹는 데 달려 있다.

유통과정에서는 노동기간과 함께 유통기간이 작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실현할 수 있는 잉여가치의 양이 제한된다. 유통에서 생기는 다른 계기들도 직접적 생산과정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직접적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라는 두 과정은 끊임없이 서로 엮바뀌고 엉키며 그렇게 되어 이 두 과정을 구별케 하는 특징적 표식들을 언제나 모호하게 한다. 잉여가치와 가치 일반의 생산은 전에 보여준 바와 같이 유통과정에서 새로운 규정들을 얻는다. 즉 자본은 그 전화들의 원을 돌며, 마침내 말하자면 자체의 내부적인 유기적 생활에서 외부적인 생활관계에 들어가는데 이 관계에서는 자본과 노동이 서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자본과 자본이 서로 맞서며 다른 편으로는 개인들이 또다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으로서 서로 맞선다. 유통기간과 노동기간은 그 회전길에서 서로 엮갈리며 그리하여 두 기간이 다 똑같이 잉여가치를 규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본과 임금노동이 서로 맞서는 원래의 형태는 보기에 이 형태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관계들이 끼여들으로써 가리워진다. 잉여가치 자체는 노동시간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여 생기는 산물로서 나타나지 않고 상품의 판매가격이 상품의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나며 따라서 이 생산비가 상품의 실제적 가치(valeur intrinseque)로서 표시되기 쉬우며 그리하여 이윤은 상품의 판매가격이 상품의 내재적 가치를 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난다.

물론 직접적 생산과정에 잉여가치의 본성이 계속 자본가의 의식 속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이미 잉여가치를 살펴볼 때에 남의 노동시간 등에 대한 자본가의 탐욕이 우리에게 보여준 바와 같다. 그러나 첫째로 직접적 생산과정 자체는 유통과정이 직접적 생산과정으로 넘어오듯이 유통과정으로 끊임없이 넘어가는 일시적인 계기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하여 생산과정에서 얻은 이득의 원천에 대하여 즉 잉여가치의 본성에 대하여 그것이 생산과정에서 어느 정도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추

측은 기껏하여 다음과 같은 표상과 나란히 똑같이 있음직한 계기로서 나타난다. 즉 그 표상이란 실현되는 초과분은 생산과정과는 관계없는 운동, 유통 자체에서 생기는 운동, 따라서 노동과의 자본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자본에 속하는 운동에서 생겨난다는 것이다. 램제이, 맬더스, 시니어, 토렌스 등과 같은 현대 경제학자들까지도 이 유통현상들을 직접 다음과 같은 주장의 증거로 들고 있다. 즉 그 주장이란 자본은 단순히 물적인 그 존재에서, 자본을 바로 자본으로 되게 하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사회적 관계와는 상관없이 노동과 나란히 그리고 노동과는 관계없이 잉여가치의 자립적 원천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원료의 가격과 기계의 마멸분 등과 꼭 마찬가지로 임금도 그 한가지인 비용이라는 항목에서는 부지불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원료를 값싸게 사들인다거나 기계의 마멸을 적게 할 때에 절약되는 것과 똑같이 비용에 들어가는 한 항목의 지불이 절약되는 것으로밖에는, 일정한 노동량에 대한 지불이 적어지는 것으로밖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잉여노동의 착취는 그 특수한 성격을 잃으며 잉여노동과 잉여가치의 특수한 관계는 모호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론」, 제1부 제6편*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가 임금의 형태로 표시됨으로써 더욱 심히 그리고 더 쉽게 그렇게 된다.

자본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초과가치(이윤)의 원천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본주의적 관계는 신비화된다.

그러나 이윤율을 통하여 넘어감으로써 잉여가치가 이윤의 형태로 전화되는 방식은 생산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미 주자와 객자가 뒤바뀌어 거꾸로 된 것이 더욱 발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모든 주자적 노동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으로서 표시된다.** 한편으로는 산 노동을 지배하는 과거노동인 가치가 자본가로 인격화되며 다른 편으로는 반대로 노동자가 단순히 대상적인 노동력으로, 상품으로 나타난다. 이 왜곡된 관계에서는 필연적으로 단순한 생산관계 자체에서 벌써 그에 상응하는 왜곡된 표상, 잘못된 견해가 생기는데 이러한 견해는 본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2분책, 179~187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98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래의 유통과정의 전파들과 변경들로 하여 더욱 심화된다.

리카아도 학파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윤율의 법칙을 직접 잉여가치율의 법칙으로서 설명하려고 하거나 그 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자본가의 머리속에서는 물론 이 법칙들이 차이가 없다. m/C 이라는 표현에서는 잉여가치가 총자본의 가치에 대하여 재어지고 있는데 이 총자본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 선대되어 있고 이 생산에서 그 한 부분은 완전히 소비되고 한 부분은 다만 적용되고 있을 뿐이다. 사실 m/C 이라는 비율은 선대된 전체 자본의 가치가 불어난 정도를 표현한다. 즉 잉여가치의 본질적인 내적 연관과 그 본성에 따라 보면 그것은 선대된 총자본의 크기에 대하여 가변자본의 변화의 크기가 어떠한 비율을 이루는가를 보여준다.

총자본의 가치량은 그 자체로서는 잉여가치의 크기와 어떠한 내적 관계도 없으며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없다. 총자본에서 가변자본을 뺀 것 즉 불변자본은 그 소재적 요소로 보면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소재적 조건들인 노동수단과 노동재료로 이루어진다. 일정한 노동량이 상품에 실현되고 따라서 또 가치를 형성하려면 일정한 양의 노동재료와 노동수단이 필요하다. 덧붙는 노동의 특수한 성격에 따라 노동의 양과 이 산 노동이 덧붙여져야 할 생산수단의 양 사이에는 일정한 기술적 비율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한에서 잉여가치 또한 잉여노동의 양과 생산수단의 양 사이에도 일정한 비율이 있다. 예컨대 임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이 하루에 6시간이라면 노동자는 6시간만큼 잉여노동을 하려면 즉 100%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려면 12시간 노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노동자는 이 12시간에 6시간에 소비하는 것보다 2배의 생산수단을 소비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노동자가 6시간에 덧붙이는 잉여가치는 6시간 또는 12시간에 소비하는 생산수단의 가치와 어떠한 직접적 비례관계도 없다. 이 가치는 여기에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양뿐이다. 원료나 노동수단이 싼가 비싼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 원료나 노동수단이 요구되는 사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또 빨아들여야 할 산 노동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정하여 있는 비율로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만약 한 시간에 a 실링어치의 x 파운드의 목화에서 실을 뽑는다는

것을 안다면 물론 12시간에는 12a실링어치의 12x파운드의 목화에서 실을 뽑는다는 것도 알며 그때에는 6의 가치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12의 가치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생산수단의 가치에 대한 산·노동의 비율은 a실링이 x파운드의 목화로 표시되는 한에서만 있게 된다. 왜냐하면 목화의 값이 달라지지 않는 한 일정한 양의 목화는 일정한 가격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또 반대로 일정한 가격은 일정한 양의 목화의 지표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시간의 잉여노동을 차지하려면 12시간 노동을 시켜야 하며 따라서 12시간분의 목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과 12시간에 필요한 이 목화량의 가격을 안다면 에돌아서 목화의 가격(필요한 양의 지표로서의)과 잉여가치와의 비율이 나오게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원료의 가격에서 예컨대 6시간이 아니라 한 시간에 실로 뽑을 수 있는 원료의 양을 끌어낼 수는 도저히 없다. 그러므로 불변자본의 가치, 따라서 또 총자본의 가치($=c+v$)와 잉여가치 사이에는 어떠한 내적인 필연적 관계도 없다.

잉여가치율이 알려져 있고 잉여가치의 양이 주어져 있다면 이윤율은 그것이 실지 있는 그대로의 것을 표현할 따름이다. 즉 잉여가치를 달리 켜 것, 다시 말하면 자본 가운데서 노동과 교환됨으로써 직접 잉여가치를 낳는 부분의 가치로 잉여가치를 켜 것이 아니라 총자본의 가치로 잉여가치를 켜 것을 표현할 따름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즉 현상세계에서는) 사태가 거꾸로 되어 있다. 잉여가치는 주어져 있으나 상품의 판매가격이 상품의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으로서 주어져 있다. 이 경우에 이 초과분이 어디서 생기는가, 생산과정에서 노동을 착취하는 데서 생기는가, 유통과정에서 사는 사람을 속여먹는 데서 생기는가, 또는 이 두 가지 것에서 다 생기는가 하는 것은 의연 비밀로 남아 있다. 그리고 또 주어져 있는 것은 총자본의 가치에 대한 이 초과분의 비율 즉 이윤율이다. 판매가격이 생산비를 넘는 이 초과분을 선대된 총자본의 가치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또 자연스럽다. 그렇게 계산함으로써 총자본의 가치가 불어나는 비율의 숫자 즉 총자본가치의 증식정도를 실제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이윤율에서 출발하면 초과분과 임금에 지출된 자본부분과의 특수한 관계는 전혀 알아낼 수 없다. 맬더스가 이러한

방법으로 잉여가치의 비밀과 가변자본부분과의 잉여가치의 특수한 관계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할 때 어떤 묘한 요술을 부리는가 하는 것은 후에 나오는 한 장에서 보게 될 것이다.¹⁶ 이윤을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크기가 같은 자본부분들에 대한 초과분의 똑같은 관계인데 자본은 이 관점에서 보면 무릇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차이를 빼놓고는 어떠한 내적 차이도 보여주지 않는다. 그리고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도 다만 초과분의 두 가지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즉 첫째로 단순한 크기로서,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으로서 계산된다. 초과분의 이것째 형태에서는 고정자본은 그 마멸분만이 생산비에 들어가는데 유동자본은 다 생산비에 들어간다. 그리고 또 둘째로는 선대된 자본의 총가치에 대한 이 가치초과분의 비율이 계산된다. 여기에서는 유동자본의 가치와 마찬가지로 전체 고정자본의 가치가 계산에 들어간다. 따라서 유동자본은 두 번 다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가는데 고정자본은 한 번은 유동자본과 다른 방식으로, 또 한 번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의 차이가 여기에서는 유일한 차이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초과분이 헤겔식으로 말하여 이윤율에서 자체 속에 다시 반영된다면, 다시 말하여 초과분이 이윤율에 의하여 더 정확하게 특징지어진다면 그것은 자본이 해마다 또는 일정한 유통기간에 그 자체의 가치 이상으로 생산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잉여가치와 이윤은 실제로 똑같은 것이며 숫자적으로도 같은데 이윤율은 잉여가치율과 숫자적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이윤은 잉여가치의 전화된 형태이며 잉여가치의 기원과 잉여가치의 정재의 비밀이 가리워지고 알 수 없게 된 형태이다. 사실 이윤은 잉여가치의 현상형태인데 잉여가치는 분석을 거쳐 비로소 이윤에서 끌어내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잉여가치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관계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다. 자본과 이윤의 관계에서는 즉 자본과 잉여가치, 한편으로는 상품의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이 유통과정에서 실현되는 것으로서 나타나고 다른 편으로는 총자본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더 정확히 규정되는 초과분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잉여가치와의 관계에서는 자본이 그 자체에 대한 관계로서,

다시 말하여 원래의 가치액으로서의 자본이 그 자체가 덧붙이는 새로운 가치와 구별되는 관계로서 나타난다. 자본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한다는 것, 이것은 의식 속에 있다.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는 신비화되어 있으며 자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숨은 속성으로 하여 그렇게 되는 것같이 보인다.

자본의 가치가 불어나는 과정을 파고들면 들수록 자본주의적 관계는 더욱더 신비화되고 자본주의적 관계의 내부조직의 비밀은 더욱더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 편에서는 이윤율이 숫자적으로 잉여가치율과 다르다. 그런데 이윤과 잉여가치는 형태가 다를 뿐이고 숫자적으로는 똑같은 크기로서 보고 있다.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소외가 더 진행되며 이윤이 숫자적으로도 잉여가치와 다른 크기로서 나타나는가를 보게 될 것이다.

제 3 장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관계

앞장의 마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장에서도——일반적으로 제1편 전체에 걸쳐 그렇지만——어떤 한 자본에 돌아가는 이윤총액은 이 자본이 어떤 한 유통기간에 생산한 잉여가치의 총액과 같다고 친다. 따라서 이 잉여가치가 한편으로는 서로 다른 파생적 형태들인 자본이자, 지대, 세금 등으로 갈라진다는 것과 다른 편으로는 그것이 대부분의 경우에 제2편에서 언급될 일반적 평균이윤율에 의하여 얻게 되는 것과 같은 이윤과는 결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당분간 제쳐놓고 본다.

이윤이 양적으로 잉여가치와 같다고 보는 한에서 이윤의 크기와 이윤율의 크기는 개개 경우에 주어지거나 규정할 수 있는 간단한 숫자들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는 맨 먼저 순전히 수학적인 영역에서 진행된다.

제1부와 제2부에서 쓰던 부호들을 그대로 쓰기로 한다. 총자본 C 는 불변자본 c 와 가변자 v 로 나누어지며 잉여가치 m 을 생산한다. 선대된 가변자본에 대한 이 잉여가치의 비율 즉 m/v 을 잉여가치율이라고 하고 이것을 m' 로 표시한다. 따라서 $m/v = m'$ 이며 그러므로 $m = m'v$ 이다. 이 잉여가치를 가변자본에가 아니라 총자본에 대비하면 그것을 이윤(p)이라고 부르며 총자본 C 에 대한 잉여가치 m 의 비율 즉 m/C 을 이윤율 p' 라고 부른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된다.

$$p' = \frac{m}{C} = \frac{m}{c+v}$$

m 대신에 위에서 알아낸 그 값 $m'v$ 를 놓으면 다음과 같이 된다.

$$p' = m' \cdot \frac{v}{C} = m' \cdot \frac{v}{c+v}$$

이 방정식은 또 다음과 같은 비례로 표시할 수 있다.

$$p' : m' = v : C$$

즉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비례는 가변자본과 총자본의 비례와 같다.

이 비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p' 즉 이윤율은 m' 즉 잉여가치율보다 언제나 작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변자본 v 는 언제나 $v+c$ 즉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총액 C 보다 작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v=C$ 인 경우 즉 자본가가 어떠한 불변자본도, 어떠한 생산수단도 선대하지 않고 임금만을 선대한다는, 실지로는 있을 수 없는 유일한 경우는 제쳐놓는다.

그런데 우리의 연구에서는 c , v , m 의 크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다른 요인들을 더 살펴보게 되며 따라서 이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화폐의 가치이다. 이것은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회전이다. 이 요인은 이윤율에 미치는 그 영향을 뒤에 나오는 한 장에서 따로 취급하므로 당분간 제쳐놓고 본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점만은 미리 말하여 두려고 한다. 즉 $p' = m' \frac{v}{C}$ 라는 공식은 엄밀히 말하여 가변자본의 한 회전기간에 대하여만 옳다는 것이며 그러나 단순한 잉여가치율 m' 대신에 연잉여가치율 $m'n$ ——여기에서 n 은 한 해 동안의 가변자본의 회전수이다——을 놓으면 이 공식은 한 해의 회전에 대하여도 옳다는 것이다. (『자본론』, 제2부, 제16장, 제1절을 보라)—F. E.}

세째로 노동의 생산성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잉여가치율에 미치는 그 영향은 『자본론』, 제1부, 제4편에서 상세히 연구하였다. 그런데 노동의 생산성은 적어도 하나하나의 자본의 경우에 그 이윤율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본론』, 제1부, 제10장, 280~284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하나하나의 자본의 노동의 생산성이 사회적 평균생산성보다 높으며 그 생산물의 가치가 똑같은 상품의 사회적 평균가치보다 낮고 그리하여 추가적 이윤을 실현하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79~382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는 여기에서는 제쳐놓고 보기로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 편에서도 아직 상품은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조건에서 생산되며 그 가치대로 팔린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개개 경우에 노동의 생산성은 의연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실 한 산업부문에 투하된 자본의 가치구성 즉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일정한 비율은 언제나 노동의 생산성의 일정한 정도를 표현한다. 따라서 이 비율이 달라지는 원인이 단순히 불변자본의 소재적 구성부분들의 가치가 달라졌다거나 임금이 달라진 데 있지 않다면 노동의 생산성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c , v , m 이라는 요인들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동시에 노동의 생산성에서 일어난 변화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아주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세 요인들인 노동일의 길이, 노동강도 및 임금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잉여가치의 양과 율에 미치는 이 요인들의 영향은 제1부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문제를 간단하게 보기 위하여 언제나 이 세 요인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더라도 v 와 m 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은 역시 v 와 m 을 규정하는 이 요인의 크기에서 일어난 변동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은 알만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상기하기만 하면 된다. 즉 임금이 잉여가치의 양과 잉여가치율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은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강도가 그것들에 미치는 영향과는 정반대라는 것, 임금이 오르면 잉여가치는 줄어드는데 노동일이 길어지고 노동강도가 높아지면 잉여가치는 늘어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100이라는 자본이 노동자는 20명, 노동시간은 10시간, 한 주일의 총임금은 20으로 20의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80c + 20v + 20m ; m' = 100\%, p' = 20\%$$

임금은 오르지 않고 노동일이 15시간으로 길어진다면 이 때문에 20명의 노동자가 새로 생산하는 총가치는 40에서 60으로 늘어난다($10 : 15 = 40$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23권, 제2분책, 162~173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 60). v 즉 지불된 임금은 의연 똑같으므로 잉여가치는 20에서 40으로 늘어나며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80c + 20v + 40m ; m' = 200\%, p' = 40\%$$

한편 또 10시간노동의 경우에 임금이 20에서 12로 떨어진다면 새로 생산된 총가치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40일 것이지만 그것은 전과 다르게 나누어진다. 즉 v 는 12로 떨어지며 따라서 나머지 28이 m 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80c + 12v + 28m ; m' = 233\frac{1}{3}\% ; p' = 28/92 = 30^{10}/23\%$$

그리하여 노동일이 길어지거나(또는 노동강도가 그만큼 높아지거나) 임금이 떨어지거나 하면 잉여가치량은 늘어나며 이에 따라 잉여가치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 반대로 임금이 높아지면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에는 잉여가치율은 떨어질 것이다. 따라서 임금이 오른 것으로 하여 v 가 늘어난다면 그것은 노동량이 늘어난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노동량의 댓가를 비싸게 지불하였다는 것을 표현할 따름이다. m' 와 p' 는 오르지 않고 떨어진다.

여기에서 벌써 알게 되는 것은 노동일과 노동강도 그리고 임금이 달라지면 반드시 동시에 v 와 m 그리고 이것들의 비율, 따라서 또 총자본인 $c+v$ 에 대한 m 의 비율인 p' 도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v 에 대한 m 의 비율이 달라지면 적어도 위에서 든 세 가지 노동조건들의 어느 하나에 변동이 있다는 것도 명백하다.

여기에서 바로 총자본의 운동과 그 가치중식과의 가변자본의 특수한 유기적 관계와 그리고 불변자본과의 가변자본의 차이를 보게 된다. 불변자본은 가치형성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만 중요하다. 여기에서 1,5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불변자본이 가령 한 톤에 1파운드 스텔링씩 하는 1,500톤의 철을 대표하든, 한 톤에 3파운드 스텔링씩 하는 500톤의 철을 대표하든, 그것은 가치형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아무래도 좋다. 불변자본의 가치가 표시하는 실제적 소재의 양은 가치형성에 대해서나 이윤율에 대해서나 아무래도 좋다. 이윤율은 불변

자본의 가치가 늘거나 주는 것이 불변자본이 표시하는 소재적 사용가치의 양과 어떤 비율을 이루든 간에 관계없이 불변자본의 가치와는 반대방향으로 달라진다.

가변자본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가변자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즉 가변자본에 대상화되어 있는 노동이 아니라 가변자본에 의하여 가동되고 가변자본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는 총노동의 단순한 지표로서의 그 가치이다. 가변자본 자체로 표현되어 있으며 따라서 댓가를 지불하는 노동과 그리고 이 총노동과의 차이 즉 총노동 가운데서 잉여가치를 형성하는 부분은 바로 가변자본 자체에 들어 있는 노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만큼 더 크다. 10시간의 한 노동일이 10실링=10마르크와 같다고 하자. 임금 즉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필요노동이 5시간=5실링이라면 잉여노동은 5시간이고 잉여가치는 5실링이다. 필요노동이 4시간=4실링이라면 잉여노동은 6시간이고 잉여가치는 6실링이다.

따라서 가변자본의 가치의 크기가 가변자본이 가동시키는 노동량의 지표가 아니게 되고 오히려 이 지표 자체의 척도가 달라진다면 이와 함께 잉여가치율은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반비례하여 달라진다.

이제는 위에서 든 이윤율의 방정식 $p' = m' \frac{v}{C}$ 를 있을 수 있는 각이한 경우들에 적용하여 보자. $m' \frac{v}{C}$ 의 하나하나의 요인의 값을 차례차례로 달라지게 하고 이 변화가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정하기로 하자. 그러면 서로 다른 많은 경우들이 나오는데 이 경우들은 똑같은 하나의 자본이 연달아 달라진 작용상태라고도 볼 수 있으며 또는 서로 다른 산업 부문이나 서로 다른 나라에 동시에 나란히 있고 비교하기 위하여 드는 서로 다른 자본들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드는 일부를 똑같은 하나의 자본이 시간상 연달아 달라지는 상태들이라고 보기가 무리이거나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면 그 예들을 독립적인 자본들을 비교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문제는 풀린다.

그리하여 $m' \frac{v}{C}$ 라는 것을 m' 와 v/C 라는 그 두 인수들로 갈라놓자. 먼저 m' 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을 수 있는 v/C 의 변화들의

작용을 연구하자. 그 다음에는 분수 v/C 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고 m' 에서 있을 수 있는 변화들을 다 보자. 끝으로 모든 인수들이 다 달라진다고 하고, 그리하여 이윤율에 관한 법칙들을 끌어낼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보기로 하자.

제1절 m' 는 달라지지 않고 v/C 가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 또 여러 개별적인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 공식을 세울 수 있다. 두 자본 C 와 C_1 이 있는데 그 가변부분들은 각각 v 와 v_1 이고 잉여가치율은 두 자본에 공통되게 m' 이며 이윤율은 p' 와 p_1' 라면 다음과 같이 된다.

$$p' = m' \frac{v}{C} \quad : \quad p_1' = m' \frac{v_1}{C_1}$$

이제 C 와 C_1 그리고 v 와 v_1 의 비율들을 놓고 예컨대 분수 C_1/C 의 값을 E , 분수 v_1/v 의 값을 e 라고 한다면 $C_1 = EC$, $v_1 = ev$ 로 된다. 이제 위에서 든 p_1' 의 방정식에서 이렇게 얻은 값들을 C_1 과 v_1 대신에 놓는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p_1' = m' \frac{e v}{E C}$$

그런데 위에서 든 두 방정식들을 비례가 되도록 함으로써 그것들에서 둘째 공식을 또 끌어낼 수 있다.

$$p' : p_1' = m' \frac{v}{C} : m' \frac{v_1}{C_1} = \frac{v}{C} : \frac{v_1}{C_1}$$

분자와 분모를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더라도 분수의 값은 의연 똑같으므로 v/C 와 v_1/C_1 을 백분율이 되게 즉 C 와 C_1 이 둘 다 100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v/C = v/100$ 이고 $v_1/C_1 = v_1/100$ 로 되며 위에서 든 비례에서 분모들을 버릴 수 있으며 그리하여 다음과 같이 된다.

$$p' : p_1' = v : v_1; \text{ 또는}$$

같은 잉여가치율로 기능을 노는 임의의 두 자본에서 이윤율들의 비례는 각각 총자본에 대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가변자본부분들의 비례와 같다.

이 두 공식에는 v/C 의 변동의 모든 경우들이 다 들어 있다.

이 경우들을 하나하나 연구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지적해 둘 것이 있다. C 는 c 와 v 즉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총액이므로 그리고 잉여가치율은 이윤율과 마찬가지로 보통 백분율로 표시되므로 일반적으로 총액 $c+v$ 도 역시 100과 같다고 즉 c 와 v 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이 편리하다. 물론 이윤율이 아니라 이윤율을 규정하는 데서는 불변자본이 12,000이고 가변자본이 3,000인 15,000이라는 자본이 3,000이라는 잉여가치를 생산한다고 말하든 또는 이 자본을 백분율들로 되게 하든 마찬가지다.

$$15,000C = 12,000c + 3,000v (+3,000m)$$

$$100C = 80c + 20v (+20m)$$

두 경우에 다 잉여가치율 m' 는 100%이며 이윤율은 20%이다.

두 자본을 서로 비교하더라도 예컨대 위에서 든 자본과 다른 한 자본을 비교하더라도 마찬가지다.

$$12,000C = 10,800c + 1,200v (+1,200m)$$

$$100C = 90c + 10v (+10m)$$

여기에서 두 번 다 $m' = 100\%$ 이고 $p' = 10\%$ 이며 그리고 위에서 든 자본과의 비교는 백분율 형태로 하는 것이 훨씬 알기 쉽다.

이와 반대로 똑같은 하나의 자본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문제라면 백분율 형태는 이 변화들을 거의 언제나 알 수 없게 하므로 좀처럼 이용할 수 없다. 한 자본이

$$80c + 20v + 20m$$

이라는 백분율 형태에서

$$90c + 10v + 10m$$

이라는 백분을 형태로 넘어간다면 백분을 구성이 $90c+10v$ 로 달라진 것이 v 가 절대적으로 줄어든 탓인지 또는 c 가 절대적으로 늘어난 탓인지 또는 이 두 가지의 탓인지 알아낼 수 없다. 이것을 알아내자면 절대적인 숫자의 크기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음에 드는 변화의 하나하나의 경우를 연구하는 데서는 문제는 결국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데 귀착된다. 즉 $80c+20v$ 가 $90c+10v$ 로 된 것은 예컨대 $12,000c+3,000v$ 가 가변자본은 의연 그대로인데 불변자본이 늘어나서 $27,000c+3,000v$ (백분율은 $90c+10v$)로 된 때문인가. 그렇지 않으면 불변자본은 의연 그대로인데 가변자본이 줄어든 탓으로 즉 $12,000c+1,333\frac{1}{3}v$ (백분율은 역시 $90c+10v$)로 된 탓으로 그러한 형태를 띠었는가 또는 끝으로 두 자본이 다 달라져 즉 $13,500c+1,500v$ (백분율은 역시 $90c+10v$)로 된 때문인가 하는데 귀착된다. 우리는 바로 이 모든 경우를 차례차례로 연구해야 하며 이에 따라 편리한 백분을 형태를 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m' 와 C 는 달라지지 않고 v 가 달라지는 경우

v 의 크기가 달라진다면 C 의 다른 구성부분 즉 불변자본 c 의 크기가 v 와 똑같은 액만큼 그러나 v 와는 반대방향으로 달라짐으로써만 C 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C 가 맨 처음에 $80c+20v=100$ 인데 그 다음에 v 가 10으로 줄어든다면 c 가 90으로 늘어나는 경우에만 C 는 의연 100일 수 있다. 즉 $90c+10v=100$ 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v 가 $v\pm d$ 로 되면 즉 v 가 d 만큼 늘거나 줄면 이 경우의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c 가 $c\mp d$ 로 즉 똑같은 액만큼 그러나 반대방향으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율 m' 는 의연 그대로이지만 가변자본 v 가 달라지는 경우에 잉여가치량 m 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m=m'v$ 인데 $m'v$ 에서 하나의 인수인 v 의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든 경우의 전제들로부터 맨 처음의 방정식

$$p' = m' \frac{v}{C}$$

와 함께 v 가 달라짐으로써 둘째 방정식

$$p_1' = m \frac{v_1}{C}$$

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v 가 v_1 으로 되어 있고 그 결과 달라진 이윤율 p_1' 를 얻을 수 있다.

이 이윤율은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비례에 의하여 규정된다.

$$p' : p_1' = m' \frac{v}{C} : m' \frac{v_1}{C} = v : v_1$$

즉 잉여가치율과 총자본이 의연 그대로인 경우에 맨 처음의 이윤율과 가변자본이 달라짐으로써 생긴 이윤율과의 비례는 맨 처음의 가변자본과 달라진 가변자본과의 비례와 같다.

자본이 맨 처음에 위에서 말한 것처럼

I. $15,000C = 12,000c + 3,000v (+3,000m)$ 였는데 이제는

II. $15,000C = 13,000c + 2,000v (+2,000m)$ 이라면 두 경우에 다 $C=15,000$ 이고 $m'=100\%$ 이다. 그리고 I의 이윤율 20% 와 II의 이윤율 $13\frac{1}{3}\%$ 와의 비례는 I의 가변자본 $3,000$ 과 II의 가변자본 $2,000$ 과의 비례가 같으면 따라서 $20\% : 13\frac{1}{3}\% = 3,000 : 2,000$ 이다.

그런데 가변자본은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맨 먼저 가변자본이 늘어나는 예를 들어 보자. 어떤 자본이 맨 처음에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기능을 논다고 하자.

I. $100c + 20v + 10m ; C=120, m'=50\%, p'=8\frac{1}{3}\%$.

이제 가변자본이 30으로 늘어난다고 하자. 그러면 전제에 따라 총자본이 달라지지 않고 의연 120으로 되자면 불변자본은 100에서 90으로 줄지 않을 수 없다. 생산된 잉여가치는 잉여가치율이 그대로 50% 라면 15로 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II. $90c + 30v + 15m ; C=120, m'=50\%, p'=12\frac{1}{2}\%$.

우선 임금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자. 그 경우에는 잉여가치율의 다른 요인들인 노동일과 노동강도도 역시 의연 그대로 같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v 가 늘어난다(20에서 30으로)는 것은 고용되는 노동자수가 절반만큼 많아진다는 뜻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 경우에는 새로 생산되는 총생산물가치도 절반만큼 즉 30에서 45로 늘어나며 전과 똑같이 $2/3$ 는 임금으로, $1/3$ 은 잉여가치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노동자수가 늘어난 동시에 생산수단의 가치인 불변자본은 100에서 90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이것은 노동의 생산성이 줄어든 동시에 불변자본도 줄어든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가 경제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

노동의 생산성이 줄어들고 따라서 취업노동자수가 늘어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농업과 채취공업에서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안에서는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는 불변자본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위에서 말한 c 의 감소가 단순히 가격이 떨어진 탓이라 하더라도 하나하나의 자본은 그야말로 예외적인 사정에서만 I에서 II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나라들이나 서로 다른 농업부문과 채취공업부문에 투하된 독립적인 두 자본에 있어서 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고용되는 노동자가 더 많고(따라서 가변자본이 더 많고) 가치가 더 적거나 양적으로 더 적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일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전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임금이 의연 그대로라는 전제를 버리고 임금이 절반만큼 오른 것으로써 가변자본이 20에서 30으로 늘어난 것을 설명한다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생긴다. 똑같은 수의 노동자, 가령 20명의 노동자가 양적으로 똑같거나 얼마 줄지 않은 생산수단을 가지고 일을 더해 나간다. 노동일이 달라지지 않고 예컨대 10시간에 머물러 있다면 새로 생산되는 총생산물가치도 역시 달라지지 않고 전과 다름없이 30이다. 그러나 이 30은 선대된 가변자본 30을 보상하는 데 모두 쓰인다. 잉여가치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율은 달라지지 않고 따라서 I에서와 같이 50%라고 전제하였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노동일이 절반만큼 길어져 15시간으로 되는 경우만이다. 그때에는 20명의 노동자가 15시간에 45라는 총가치를 생산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모든 조건들은 충족될 것이다.

$$\text{II. } 90c + 30v + 15m ; C = 120, m' = 50\%, p' = 12\frac{1}{2}\%.$$

이 경우에 20명의 노동자는 I의 경우보다 더 많은 노동수단 즉 도구, 기계 등을 쓰지 않는다. 다만 자재나 보조자재가 절반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재료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한 전제 밑에서 I에서 II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하나의 자본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본가는 그의 불변자본의 가치가 줄어든 탓으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더 많은 이윤으로 적어도 얼마간 메울 것이다.

이제는 가변자본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위에서 든 예를 거꾸로 놓고 II를 맨 처음의 자본으로 보고 II에서 I로 넘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II. $90c+30v+15m$ 은

I. $100c+20v+10m$ 으로 되는데 이렇게 바꿔놓아도 두 편의 이윤율과 그 호상관계를 규제하는 조건들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틀림 없다.

불변자본은 늘어나는데 취업노동자수가 1/3만큼 줄기 때문에 v 가 30에서 20으로 줄어든다면 이 경우는 근대산업의 정상적인 경우이다. 즉 노동의 생산성은 높아지고 더 적은 수의 노동자들이 더 많은 양의 생산수단을 다루는 경우이다. 이러한 운동이 동시에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과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이 제3부의 제3편에서 밝혀질 것이다.

그런데 취업노동자수는 똑같지만 임금이 낮아졌기 때문에 v 가 30에서 20으로 줄어든다면 노동일이 달라지지 않은 조건에서는 새로 생산되는 총가치는 전과 다름없이 $30v+15m=45$ 일 것이다. v 가 20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잉여가치는 25로 늘 것이며 잉여가치율은 50%에서 125%로 높아질 것인데 이것은 우리의 전제와 모순될 것이다. 우리가 들고 있는 경우의 조건들에 의연 맞게 되려면 잉여가치는 50%의 율로는 오히려 10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 생산되는 총생산물가치는 45에서 30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노동일이 1/3만큼 짧아져야만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위에서 든 것처럼 다음과 같이 된다.

$$100c+20v+10m ; m'=50\%, p'=8\frac{1}{3}\%$$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에 노동시간을 이렇게 단축하는 일이 실지로는 없을 것이라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래도 좋다. 이윤율은 많은 가변수의 함수인데 이 가변수들이 이윤율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알려면 개개 가변수의 하나하나의 작용을 차례차례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그러한 외따른 작용이 똑같은 한 자본에서 경제적으로 있을 수 있든 없든 이에는 관계가 없다.

2) m' 는 달라지지 않고 v 는 달라지며 C 는 v 가 달라짐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는 위에서 든 경우와 정도에서만 차이가 있다. 이 경우에 c 는 v 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만큼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과 다름이 없다. 그러나 대규모의 공업과 농업의 오늘날의 제조조건에서 가변자본은 총자본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총자본이 주는 것과 느는 것이 가변자본의 변동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는 그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우리가 다음과 같은 자본 즉

I. $100c+20v+10m$; $C=120$, $m'=50\%$, $p'=8\frac{1}{3}\%$

라는 자본에서 다시 출발한다면 이 자본은 예컨대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II. $100c+30v+15m$; $C=130$, $m'=50\%$, $p'=11\frac{7}{13}\%$.

가변자본이 줄어드는 반대의 경우도 역시 II에서 I로 거꾸로 넘어감으로써 알게 될 것이다.

경제적 조건들은 본질상 위에서 든 경우와 똑같은 것이며, 따라서 설명을 되풀이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I에서 II로 넘어간다는 것은 노동의 생산성이 절반만큼 떨어진다는 것, $100c$ 를 다루는 데는 I에서보다 II에서는 절반이나 더 많은 노동이 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농업에서 볼 수 있다.⁹⁾

9) 원고에는 여기에 “이 경우가 지대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후에 연구할 것”이라고 쓰여 있다. [F.E.]

위에서 든 경우에는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으로 전화되거나 그 반대로 됨으로써 총자본이 의연 달라지지 않았는데 이 경우에는 가변부분이 늘면 추가자본은 매이게 되고 가변부분이 줄면 전부터 적용되어온 자본이 풀려나오게 된다.

3) m' 와 v 는 달라지지 않고 c 가 달라지며 따라서 C 도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p' = m' \frac{v}{C}$ 라는 방정식은 $p'_1 = m' \frac{v}{C_1}$ 로 달라지며 두 편에 다 있는 인수들을 지워버리면 다음과 같은 비례로 된다.

$$p'_1 : p' = C : C_1;$$

즉 잉여가치율이 같고 가변자본부분이 같으면 이윤율은 총자본에 반비례한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세 자본 또는 똑같은 자본의 각이한 세 구성상태가 있다고 하면

$$\text{I. } 80c + 20v + 20m ; C=100, m'=100\%, p'=20\% ;$$

$$\text{II. } 100c + 20v + 20m ; C=120, m'=100\%, p'=16\frac{2}{3}\% ;$$

$$\text{III. } 60c + 20v + 20m ; C=80, m'=100\%, p'=25\% ;$$

다음과 같은 비례로 된다.

$$20\% : 16\frac{2}{3}\% = 120 : 100 \quad \text{그리고} \quad 20\% : 25\% = 80 : 100.$$

m' 는 달라지지 않았는데 v/C 가 달라지는, 위에서 든 일반적 공식은 $p'_1 = m' \frac{ev}{EC}$ 이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p'_1 = m' \frac{v}{EC}$ 로 된다. 왜냐하면 v 는 달라지지 않으며 따라서 인수 $e = \frac{v_1}{v}$ 은 여기에서는 1로 되기 때문이다.

$m'v$ 는 잉여가치량 m 과 같으며 m' 와 v 는 둘 다 의연 달라지지 않으므로 m 도 C 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잉여가치량은 이 변동의 전과

의연 똑같다.

c 가 0으로 줄어든다면 $p'=m'$ 즉 이윤율은 잉여가치율과 같게 될 것이다.

c 는 불변자본의 소재적 요소들의 가치가 단순히 달라짐으로써 달라질 수 있거나 총자본의 기술적 구성이 달라짐으로써, 따라서 해당한 생산부문에서 노동의 생산성이 달라짐으로써 달라질 수 있다. 뒤에 든 경우에는 대규모의 공업과 농업이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져서(위에서 든 예외) 순서에서 III에서 I로 그리고 I에서 II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것이다. 20의 댓가를 지불받고 40의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량은 처음에는 60의 가치를 가진 양의 노동수단을 다룰 것이다. 생산성이 높아지고 가치가 의연 그대로이면서 다루는 노동수단의 양은 처음에는 80으로, 그 다음에는 100으로 늘 것이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순서는 반대로 될 것이다. 똑같은 노동량이 보다 적은 생산수단을 가동시키면 생산은 줄어들 것인데 농업과 광업 등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불변자본의 절약은 한편으로는 이윤율을 높이고 다른 편으로는 자본을 풀어놓으며 따라서 자본가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이 문제와 그리고 불변자본의 요소들 특히 원료의 가격변동의 영향을 후에* 더 자세히 연구할 것이다.

여기에서도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 c 의 소재적 구성부분들이 늘거나 줄어서이든, 또는 그 구성부분들의 가치가 단순히 달라져서이든 간에 이에 관계없이 불변자본이 달라지면 이윤율도 똑같이 영향을 받는다.

4) m' 는 달라지지 않고 v 와 c 그리고 C 가 모두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위에서 든 달라진 이윤율의 다음과 같은 일반적 공식이 의연 기준으로 된다.

* 이 책, 제5장과 제6장을 보라. 편집부

$$p_1' = m' \frac{ev}{EC}$$

잉여가치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공식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가) E가 e보다 더 큰 경우 즉 총자본이 가변자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늘어나도록 불변자본이 늘어나는 경우에 이윤율은 떨어진다. $80c+20v+20m$ 이라는 자본이 $170c+30v+30m$ 이라는 구성으로 넘어간다면 m' 는 의연 100%이지만 v/C 는 v 와 C 가 다 늘어났으나 $20/100$ 에서 $30/200$ 으로 떨어지며 이에 따라 이윤율은 20%에서 15%로 떨어진다.

나) $e=E$ 인 경우에만 즉 분수 v/C 가 보기에는 달라졌지만 똑같은 값을 그대로 가지는 경우에만 즉 분자와 분모를 똑같은 수로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에만 이윤율은 의연 달라지지 않는다. $80c+20v+20m$ 과 $160c+40v+40m$ 은 명백히 이윤율이 똑같이 20%이다. 왜냐하면 m' 는 의연 100%이며 $v/C=20/100=40/200$ 은 두 예에서 똑같은 값을 표시하기 때문이다.

다) e 가 E 보다 큰 경우 즉 가변자본이 총자본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윤율은 높아진다. $80c+20v+20m$ 이 $120c+40v+40m$ 으로 된다면 이윤율은 20%에서 25%로 높아진다. 왜냐하면 m' 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v/C=20/100$ 은 $40/160$ 으로 즉 $1/5$ 에서 $1/4$ 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v 와 C 가 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이 크기들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두 가지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똑같은 비율로 달라지고 그리하여 이 한계까지는 v/C 가 의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두 크기 중의 하나만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며 그리하여 보다 복잡한 이 경우를 위에서 든 보다 단순한 경우로 바꾸게 된다.

예컨대 $80c+20v+20m$ 이 $100c+30v+30m$ 으로 넘어가면 이 변화과정에 v 와 c 의 비율 따라서 v 와 C 와의 비율도 또한 $100c+25v+25m$ 에 이르기까지 의연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이윤율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제는 $100c+25v+25m$ 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즉 v 가 5만큼 늘어나 $30v$ 로 되고 그리하여 C 가 125에서 130으로 늘어났

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에 따라 v 가 달라질 뿐이고 그 때문에 C 가 달라지는 둘째 경우를 보게 된다. 맨 처음에 20%였던 이윤율은 이와같이 $5v$ 가 덧붙음으로써 잉여가치율이 같은 조건에서 $23\frac{1}{13}\%$ 로 높아진다.

v 와 c 가 반대방향으로 그 크기들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똑같이 단순한 경우로 될 수 있다. 예컨대 다시 $80c+20v+20m$ 에서 출발하여 이것이 $110c+10v+10m$ 형태로 넘어가게 한다면 $40c+10v+10m$ 까지 달라지는 데서는 이윤율은 처음과 똑같이 20%일 것이다. 이 중간형태에 $70c$ 가 덧붙음으로써 이윤율은 $8\frac{1}{3}\%$ 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도 역시 단 하나의 가변수 즉 c 가 달라진 경우로 될 것이다.

따라서 v 와 c 그리고 C 가 동시에 달라진다는 것은 아무런 새로운 관점도 아니며 결국은 늘 단 하나의 요인만이 달라지는 경우로 된다.

단 하나의 경우 즉 v 와 C 가 숫자상으로는 그 크기가 의연 같으나 그것들의 소재적 요소들은 가치가 변동하며 따라서 v 는 가동되는 노동의 양이 달라진 것을 표시하며 c 는 가동되는 생산수단의 양이 달라진 것을 표시하는 경우만이 남아 있는데 이 경우도 사실상 이미 다 따져보았다.

$80c+20v+20m$ 에서 $20v$ 는 맨 처음에 하루 10시간노동을 하는 20명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표시한다고 하자. 매 노동자의 임금이 1에서 $1\frac{1}{4}$ 로 오른다고 하자. 그러면 $20v$ 는 20명이 아니라 16명의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20명이 200노동시간에 40의 가치를 생산하였다면 16명은 하루 10시간, 따라서 모두 160노동시간에 32의 가치밖에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경우에 임금으로 $20v$ 를 빼면 32 가운데서 12만이 잉여가치분으로 남는다. 잉여가치율은 100%에서 60%로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전제에 의하면 잉여가치율은 달라져서는 안되므로 노동일이 $1\frac{1}{4}$ 만큼 즉, 10시간에서 $12\frac{1}{2}$ 시간으로 길어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20명의 노동자들이 하루 10시간에 즉 200노동시간에 80의 가치를 생산한다면 16명의 노동자들은 하루 $12\frac{1}{2}$ 시간 즉 200노동시간에 똑같은 가치를 생산하며 $80c+20v$ 라는 자본은 전과 다름없이 20의 잉여가치를 생산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임금이 떨어져서 $20v$ 가 30명의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된다면 m' 는 노동일이 10시간에서 $6\frac{2}{3}$ 시간으로 짧아지는 경우에만 의연 달라

지지 않을 수 있다. $20 \times 10 = 30 \times 6\frac{2}{3} = 200$ 노동시간이다.

이러한 반대되는 가정 밑에서 c 가 달라진 관계들에 따라 달라진 생산수단의 양을 표시하지만 그 가치의 화폐표현에서 어느 정도로 전과 같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본질상 이미 위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경우는 순수하게는 매우 예외적으로만 있을 수 있을 것이다.

c 의 요소들의 양은 늘거나 줄더라도 c 의 가치 총액은 달라지지 않게 하는 그 요소들의 가치변동으로 말하면 그 가치변동으로 하여 v 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이윤율도 잉여가치율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방정식에서 v 와 c 그리고 C 의 변동의 있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보았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윤율은 잉여가치율이 의연 같은 경우에 떨어지거나 의연 같거나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은 c 또는 C 에 대한 v 의 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이윤율 역시 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v 가 달라지는 경우에 m' 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적으로 있을 수 없게 되는 그런 한계가 언제나 있다는 것을 보았다. c 의 일반적인 모든 변동은 역시 v 가 달라지지 않은 채로 더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한계에까지 이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v/C 의 있을 수 있는 모든 변동에 한계가 있으며 이 한계를 넘으면 m' 도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다. m' 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위의 방정식의 각이한 가변수들의 이 호상작용이 더욱 뚜렷해질 것인데 이제는 이 경우를 연구하기로 하자.

제 2 절 m' 가 달라지는 경우

$$p' = m' \frac{v}{C}$$

이라는 방정식을

$$p'_1 = m'_1 \frac{v_1}{C_1}$$

이라는 다른 방정식——여기에서 p'_1 , m'_1 , v_1 , C_1 은 p' , m' , v , C 의

달라진 값들을 의미한다——으로 넘어가게 하면 v/C 가 의연 달라지지 않든 또는 역시 달라지든 이에는 관계없이 잉여가치율이 각각 다른 경우의 이윤율들에 대한 일반적 공식이 나온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된다.

$$p' : p_1' = m' \cdot \frac{v}{C} : m_1' \cdot \frac{v_1}{C_1}$$

그리고 이로부터 또 다음과 같이 된다.

$$p_1' = \frac{m_1'}{m_1} \times \frac{v_1}{v} \times \frac{C}{C_1} \times p'$$

1) m' 는 달라지고 v/C 는 달라지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들이 나오는데 이 두 방정식들에서 v/C 는 값이 같다.

$$p' = m' \cdot \frac{v}{C} ; p_1' = m_1' \cdot \frac{v}{C}$$

따라서 다음과 같은 비례로 된다.

$$p' : p_1' = m' : m_1'$$

구성이 같은 두 자본의 이윤율들의 비례는 이 두 자본의 잉여가치율들의 비례와 같다. 분수 v/C 에서 중요한 것은 v 와 C 의 절대적 크기가 아니라 다만 이 두 가지 것의 비율이므로 그것들의 절대적 크기가 어떻게든 간에 바로 위에서 한 말은 구성이 같은 모든 자본에 들어맞는다.

$$80c + 20v + 20m : C = 100, \quad m' = 100\%, \quad p' = 20\%$$

$$160c + 40v + 20m : C = 200, \quad m' = 50\%, \quad p' = 10\%$$

$$100\% : 50\% = 20\% : 10\%.$$

v 와 C 의 절대적 크기가 두 경우에 다 같으면 이윤율들의 비례는 또한 잉여가치량들의 비례와 같다. 즉

$$p' : p_1' = m'v : m_1'v = m : m_1$$

예컨대 다음과 같다.

$$80c + 20v + 20m ; m' = 100\%, p' = 20\%$$

$$80c + 20v + 10m ; m' = 50\%, p' = 10\%$$

$$20\% : 10\% = 100 \times 20 : 50 \times 20 = 20m : 10m$$

그런데 절대수로 보나 백분율로 보아 구성이 같은 자본들에 있어서 잉여가치율은 임금이나 노동일의 길이나 노동강도가 각각 다른 경우에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다음과 같은 세 경우에

$$\text{I. } 80c + 20v + 10m ; m' = 50\%, p' = 10\%,$$

$$\text{II. } 80c + 20v + 20m ; m' = 100\%, p' = 20\%,$$

$$\text{III. } 80c + 20v + 40m ; m' = 200\%, p' = 40\%,$$

새로 생산되는 총가치는 I에서는 $30(20v + 10m)$, II에서는 40, III에서는 60이다. 다음과 세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첫째로, 임금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20v$ 가 개개 경우에 서로 다른 노동자수를 표시하는 경우이다. I에서 15명의 노동자들이 $1\frac{1}{3}$ 파운드 스텔링의 임금으로 10시간씩 일하여 3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 가운데서 20파운드 스텔링은 임금을 보상하고 10파운드 스텔링은 잉여가치를 이룬다고 하자. 임금이 1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지면 20명의 노동자들이 10시간씩 일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4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 가운데서 20파운드 스텔링은 임금을 보상하며 20파운드 스텔링은 잉여가치분이다. 임금이 더 떨어져서 $2/3$ 파운드 스텔링으로 되면 30명의 노동자들이 10시간씩 일하여 6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생산하는데, 이 가운데서 임금을 보상하는 데 20파운드 스텔링을 빼고도 잉여가치분으로 40파운드 스텔링이 남는다.

백분율로 본 자본의 구성이 달라지지 않고 노동일이 달라지지 않으며 노동강도가 달라지지 않는데 임금의 변동으로 하여 잉여가치율이 변동하는 이 경우는 리카아도의 다음과 같은 명제가 들어맞는 유일한 경우이다.

“이윤은 임금이 낮거나 높은 데 정확히 비례하여 높거나 낮을 것이다”(『정

치경제학원리』, 제1장, 제3절, 18페이지, 「D. 리카아도 저작집」, 맥컬록 편찬, 1852년)

또는 둘째로, 노동강도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예컨대 20명의 노동자가 똑같은 노동수단으로 하루 10노동시간에 일정한 상품을 I에서는 30개, II에서는 40개, III에서는 60개 만드는데 그 개개 상품은 그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 외에 1파운드 스텔링의 새로운 가치를 표시한다. 매번 20개=20파운드 스텔링은 임금을 보상하므로 잉여가치분으로 남는 것은 I에서는 10개=10파운드 스텔링, II에서는 20개=20파운드 스텔링, III에서는 40개=40파운드 스텔링이다.

또는 세째로, 노동일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경우이다. 노동강도가 같은데 20명의 노동자가 하루 I에서는 9시간, II에서는 12시간, III에서는 18시간 일한다면 그들의 총생산물의 비례 30 : 40 : 60은 9 : 12 : 18의 비례와 같으며 임금은 매번 20이므로 잉여가치분으로는 역시 각각 10, 20, 40이 남는다.

이상과 같이 잉여가치율의 크기에 대하여, 따라서 또 v/C 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윤율에 대하여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은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며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떨어지는 것과 노동일이 길어지거나 짧아지는 것은 똑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2) m' (또는 m)와 v 는 달라지고 C 는 달라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비례가 다음과 같이 된다.

$$p' : p_1' = m' \frac{v_1}{C} = m_1' \frac{v_1}{C} = m'v : m_1'v_1 = m : m_1$$

이윤율들의 비례는 해당한 잉여가치량들의 비례와 같다.

가변자본은 의연 같은데 잉여가치율이 달라진다는 것은 새로 생산된 가치의 크기와 분배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v 와 m' 가 동시에 달라진다는 것 역시 언제나 새로 생산된 가치의 분배가 다르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가치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ㄱ) v 와 m 이 반대방향으로 달라지지만 똑같은 크기만큼 달라지는 경우. 예컨대

$$80c+20v+10m ; m'=50\%, p'=10\%$$

$$90c+10v+20m ; m'=200\%, p'=20\%$$

새로 생산된 가치는 두 경우에 다 같으며 따라서 수행된 노동량도 같다. 즉 $20v+10m=10v+20m=30$ 이다. 차이는 다만 첫째 경우에는 20이 임금으로 지불되고 10이 잉여가치분으로 남는데 둘째 경우에는 임금이 겨우 10이고 따라서 잉여가치가 20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v 와 m 이 동시에 달라지지만 노동자수와 노동강도 그리고 노동일의 길이가 의연 그대로인 유일한 경우이다.

ㄴ) m' 와 v 도 역시 반대방향으로 달라지지만 똑같은 크기만큼 달라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v 가 더 달라지거나 m' 가 더 달라지거나 한다.

$$\text{I. } 80c+20v+20m, m'=100\%, p'=20\%$$

$$\text{II. } 72c+28v+20m, m'=71\frac{3}{7}\%, p'=20\%$$

$$\text{III. } 84c+16v+20m, m'=125\%, p'=20\%$$

I에서는 40의 새로 생산된 가치에 대하여 $20v$ 가 지불되고 II에서는 48의 새로 생산된 가치에 대하여 $28v$ 가 지불되며 III에서는 36의 새로 생산된 가치에 대하여 $16v$ 가 지불된다. 새로 생산된 가치도 임금도 달라졌다. 그러나 새로 생산된 가치의 변동은 수행된 노동량의 변동을 의미하며 따라서 노동자수나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나 또는 이 세 가지 것 가운데서 몇 가지 것의 변동을 의미한다.

ㄷ) m' 와 v 가 똑같은 방향으로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한 요인이 다른 요인의 작용을 강화한다.

$$90c+10v+10m ; m'=100\%, p'=10\%$$

$$80c+20v+30m ; m'=150\%, p'=30\%$$

$$92c+8v+6m ; m'=75\%, p'=6\%$$

여기에서도 이 세 경우에 모두 새로 생산된 가치는 서로 달라 20, 50, 14이다. 그리고 매번 노동량의 크기가 이렇게 다른 것은 결국 역시 노동자수, 노동시간, 노동강도 또는 이 요인들 가운데서 몇 가지 요인이나 그 모든 요인들이 달라졌다는 데 귀결된다.

3) m' 와 v 그리고 C 가 달라지는 경우

이 경우에는 아무런 새로운 관점도 없으며 m' 가 달라지는 경우인 II에서 든 일반적 공식으로 처리된다.

이와같이 잉여가치율의 크기의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생긴다.

1) v/C 가 의연 달라지지 않는다면 p' 는 m' 와 똑같은 비율로 늘거나 준다.

$$80c+20v+20m ; m'=100\%, p'=20\%$$

$$80c+20v+10m ; m'=50\%, p'=10\%$$

$$100\% : 50\% = 20\% : 10\%$$

2) v/C 가 m' 와 똑같은 방향으로 달라진다면 즉 v/C 가 m' 가 늘면 같이 늘고 줄면 같이 준다면 p' 는 m' 보다 더 많은 비율로 오르거나 떨어진다.

$$80c+20v+10m ; m'=50\%, p'=10\%$$

$$70c+30v+20m ; m'=66\frac{2}{3}\%, p'=20\%$$

$$50\% : 66\frac{2}{3}\% < 10\% : 20\%$$

3) v/C 가 m' 와 반대방향으로 달라지지만 m' 보다는 더 작은 비율로 달라진다면 p' 는 m' 보다 더 작은 비율로 오르거나 떨어진다.

$$80c+20v+10m ; m'=50\%, p'=10\%$$

$$90c+10v+15m ; m'=150\%, p'=15\%$$

$$5\% : 150\% > 10\% : 15\%$$

4) v/C 가 m' 와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m' 보다 더 큰 비율로 달라진다면 p' 는 m' 가 떨어지더라도 오르거나 m' 가 오르더라도 떨어진다.

$$80c + 20v + 20m ; m' = 100\%, p' = 20\%$$

$$90c + 10v + 15m ; m' = 150\%, p' = 15\%$$

m' 는 100%에서 150%로 올랐으며 p' 는 20%에서 15%로 떨어졌다.

5) 끝으로 v/C 가 m' 와 반대방향으로 달라지지만 m' 와 똑같은 비율로 달라진다면 p' 는 m' 가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의연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마지막 경우만은 좀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v/C 가 달라지는 경우들에 똑같은 하나의 잉여가치율이 아주 각이한 이윤율들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았듯이 이 경우에는 매우 각이한 잉여가치율들이 똑같이 하나의 이윤율의 기초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m' 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 C 에 대한 v 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져도 이윤율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었는데 m' 의 크기가 달라지는 경우에 이윤율이 의연 똑같기 위해서는 m' 의 크기가 달라지는데 정확히 상응하게 v/C 의 크기가 반대로 달라지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일은 똑같은 하나의 자본에 있어서는 또는 똑같은 나라의 두 자본에 있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만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자본을 들어보자.

$$80c + 20v + 20m ; C = 100, m' = 100\%, p' = 20\%,$$

그리고 임금이 떨어져서 똑같은 수의 노동자들을 이전의 $20v$ 가 아니라 이제 16v로 얻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밖의 사정들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 $4v$ 가 풀려나오면서 다음과 같이 된다.

$$80c + 16v + 24m ; C = 96, m' = 150\%, p' = 25\%.$$

그런데 p' 가 전과 같이 20%로 되려면 총자본은 120으로 따라서 불변자본은 104로 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04c + 16v + 24m ; C = 120, m' = 150\%, p' = 20\%.$$

그러나 이러한 일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들만일 것이다. 즉 임금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노동의 생산성이 달라져서 자본구성이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경우이다. 또는 불변자본의 화폐가치가 80에서 104로 높아지는 경우이다. 요컨대 조건들이 우연히 맞아떨어지는 예외의 경우들에만 있을 수 있다. 사실 v 가 달라지지 않고 따라서 v/C 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m' 가 달라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정한 사정에서만 즉 고정자본과 노동만을 적용하고 노동대상은 자연이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산업부문들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이윤율들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르다. 이 경우에는 똑같은 이윤율이 사실 대체로 각이한 잉여가치율들을 표현한다.

그리하여 위에서 든 모든 다섯 경우들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지어진다. 즉 이윤율이 오르는 것은 잉여가치율이 떨어지거나 오르는 데 상응할 수 있으며,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은 잉여가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것과 상응할 수 있으며, 이윤율이 의연 같은 것은 잉여가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데 상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윤율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의연 같은 것은 또한 잉여가치율이 달라지지 않는 데 상응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I에서 보았다.

그리하여 이윤율은 잉여가치율과 자본의 가치구성이라는 두 개의 주되는 요인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 두 요인들의 영향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구성을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다. 그것은 두 자본부분의 어느 것에서 달라지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다.

두 자본 또는 각각 다른 연달은 두 상태에 있는 똑같은 하나의 자본의 이윤율이

같은 경우는

- 1) 백분율로 본 자본들의 구성이 같고 잉여가치율이 같은 경우.
- 2) 백분율로 본 자본구성이 같지 않고 잉여가치율이 같지 않지만 잉여가치율과 백분율로 본 가변자본부분과의 곱한 값(m' 와 v 의 곱한 값)이

같은 경우 즉 총자본에 대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잉여가치량들($m=m'v$)이 같은 경우, 다시 말하여 두 경우에 다 m' 와 v 라는 두 인수들이 서로 반비례하는 경우이다.

같지 않은 경우는

1) 백분율로 본 자본구성은 같지만 잉여가치율이 같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이윤율들의 비례는 잉여가치율들의 비례와 같다.

2) 잉여가치율은 같고 백분율로 본 자본구성이 같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이윤율들의 비례는 가변자본부분들의 비례와 같다.

3) 잉여가치율이 같지 않고 백분율로 본 자본구성도 같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에 이윤율들의 비례는 $m'v$ 의 곱한 값들의 비례 즉 총자본에 대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잉여가치량들의 비례와 같다.¹⁰⁾

10) 원고에는 또 잉여가치율과 이윤율과의 차이($m'-p'$)에 관한 매우 상세한 계산들이 있는데 이 차이는 여러 가지 흥미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차이의 움직임은 이 두율이 서로 떨어지거나 서로 가까워지는 경우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움직임은 곡선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자료가 이 책의 당면한 목적을 위해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여기에 넣지 않기로 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더 깊이 연구하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그렇다는 것을 알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 F F

제 4 장 이윤율에 미치는 회전의 영향

{잉여가치의 생산, 따라서 또 이윤의 생산에 미치는 회전의 영향은 이미 제2부에서 살펴 보았다. 그 영향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즉 회전에는 일정한 기간이 들기 때문에 전체 자본이 동시에 생산에 쓰일 수는 없다는 것, 따라서 자본의 한 부분은 화폐자본의 형태를 띠든 쌓아놓은 원료의 형태, 다 되었으나 아직 팔리지 않은 상품자본의 형태를 띠든, 또는 아직 기한이 다 되지 않은 채권의 형태를 띠든 어쨌든 줄곧 쉬고 있다는 것, 능동적인 생산에서 즉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차지하는 데서 활동하는 자본은 줄곧 이 부분만큼 줄어들며 또 생산되며 차지하게 되는 잉여가치는 줄곧 같은 비율만큼 적어진다는 것이다. 회전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이 쉬고 있는 자본부분은 전체 자본에 비하여 그만큼 더 작으며 따라서 또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다면 차지하게 되는 잉여가치는 그만큼 더 크다.

회전기간이 짧아지거나 이 기간의 두 부분인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의 어느 하나가 짧아지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미 제2부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윤율이란 생산된 잉여가치의 양과 그것을 생산하는 데 쓰인 총자본과의 비율을 표현할 따름이므로 위에서 말한 어느 것이 짧아져도 이윤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명백하다. 앞서 제2부 제2편에서 잉여가치에 관하여 설명한 것은, 이윤과 이윤율에도 마찬가지로 들어맞으며 여기에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다. 몇 가지 주되는 계기들만을 강조하려고 한다.

생산기간을 줄이는 주되는 수단은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인데 이것을 사람들은 보통 산업의 진보라고 부른다. 노동의 생산성을 높임으로

* 이 전집, 조문판, 제24권, 325~330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써 또한 값비싼 기계 등을 설치하여 총자본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지 않고 따라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 이윤율이 떨어지는 일이 없다면 이윤율은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야금업과 화학공업에서 최근에 이룩된 진보의 많은 경우에 확실히 그러하다. 새로 발견된 베세머, 지멘스, 질크리스트-토마스 등의 제철 및 제강법은 비교적 적은 비용을 들이면서도 전에는 엄청나게 오래 끌던 과정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있다. 콜타르에서 알리자린이나 꼭두서니물감을 뽑아냄으로써 전에는 몇 해 걸려야 얻어내던 똑같은 결과를 불과 몇 주일에, 그것도 지금까지 콜타르 물감을 얻어내기 위하여 이미 쓰고 있던 공장시설로 얻어내고 있다. 꼭두서니를 자라나게 하는 데는 한 해가 걸렸으며 그 다음에도 몇 해 더 뿌리를 길러내야 그 뿌리에서 물감을 얻어냈던 것이다.

유통기간을 줄이는 주되는 수단은 교통의 개선이다. 그리고 이 점에서도 최근 50년 동안에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혁명은 지난 세기 후반기의 산업혁명과만 견줄 수 있는 것이다. 땅 위에서는 부스러진 돌을 깐 도로가 철도에 의하여 뒤로 밀려났고, 바다에서는 느리고 정기적이 아닌 돛배가 빠르고 정기적인 기선에 의하여 밀려났으며, 온 지구가 전신줄로 감기게 되었다. 수에즈 운하는 동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로 기선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그야말로 처음으로 열어 놓았다. 동아시아로 보내는 상품의 유통기간은 1847년에는 아직 적어도 12달(『자본론』, 제2부, 235페이지를 보라*) 걸렸는데 이제는 거의 12주로 줄어들 수 있게 되었다. 1825년과 1857년 공황의 두 큰 근원지였던 아메리카와 인도는 교통수단의 이 변혁으로 하여 구라파의 공업국가들에 70~90%만큼이나 가까워졌으며 그에 따라 그곳들에서 공황이 폭발할 가능성의 큰 부분을 잃었다. 총세계무역의 회전기간도 똑같은 정도로 줄어들었으며 이에 참가한 자본의 활동능력은 두서너 배 이상이나 높아졌다. 이것이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총자본의 회전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순수하게 표시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두 자본에 있어서 다른 모든 사정들은 같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 이 전집, 조문판, 제24권, 279~280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안된다. 따라서 잉여가치율과 노동일뿐 아니라 특히 백분율로 본 자본구성도 같다고 하자. 이제 잉여가치율이 100%이고 한 해에 두 번 회전하는 $80c+20v=100C$ 라는 구성을 가진 자본 A를 들어보자. 그러면 한 해의 생산물은

$160c+40m+40m$ 이다. 그런데 이윤율을 알아내자면 이 $40m$ 을 회전한 자본가치 200에 대해서가 아니라 선대한 자본가치 100에 대하여 계산하며 그리하여 $p'=40\%$ 로 된다.

자본 A와 잉여가치율이 똑같이 100%이지만 한 해에 한 번 밖에 회전하지 않는 $160c+40v=200C$ 라는 자본 B와를 비교하여 보자. 그러면 한 해의 생산물은 위에서와 같이

$160c+40v+40m$ 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40m$ 을 선대한 자본 200에 대하여 계산해야 하며 그리하여 이윤율은 겨우 20% 즉 A의 이윤율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된다. 백분율로 본 구성이 같은 두 자본에 있어서 잉여가치율이 같고 노동일이 같은 경우에 두 자본의 이윤율은 두 자본의 회전기간에 반비례한다. 비교하는 두 경우에 구성이나 잉여가치율이나 노동일이나 임금이나 다 같지 않다면 그 때문에 물론 또 이윤율에서 차이들이 더 생긴다. 그러나 이 차이들은 회전과는 상관이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는다. 게다가 이 차이들은 이미 제3장에서 살펴 보았다.

회전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잉여가치의 생산, 따라서 또 이윤의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그렇게 됨으로써 가변자본부분의 활동이 더 활발해진다는 데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본론」, 제2부, 제16장 「가변자본의 회전」을 볼 것이다. 거기에서 본 바와 같이 한 해에 열 번 회전하는 500이라는 가변자본은 이 기간에 잉여가치율이 같고 임금이 같지만 한 해에 한 번 밖에 회전하지 않는 5,000이라는 가변자본이 차지하는 그만큼 잉여가치를 차지한다.

한 해에 $10\%=1,000$ 이 마멸하는 10,000의 고정자본과 500의 유동적인 불변자본과 500의 가변자본으로 이루어지는 자본 I 을 들어보자. 잉여가치율이 100%인데 가변자본은 한 해에 열 번 회전한다고 하자.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다음의 모든 예에서 유동적 불변자본이 가변자본과 똑같은 회전을 한다고 하자. 실제로도 대체로 그러할 것이다. 그러면 그러한 한 회전기간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100c(\text{마멸분}) + 500c + 500v + 500m = 1,600$$

그리고 온 한 해 그렇게 열 번 회전하는 동안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begin{aligned} 1,000c(\text{마멸분}) + 5,000c + 5,000v + 5,000m &= 16,000, \\ C &= 11,000, \quad m = 5,000, \quad p' = 5,000/11,000 = 45\frac{5}{11}\% \end{aligned}$$

이제는 고정자본은 9,000이고 한 해 동안의 그 마멸분은 1,000, 유동적 불변자본 1,000, 가변자본 1,000, 잉여가치율 100%, 가변자본의 한 해 회전수 5인 자본 II를 들어보자. 그러면 가변자본의 매 회전기간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200c(\text{마멸분}) + 1,000c + 1,000v + 1,000m = 3,200$$

그리고 다섯 번 회전하는 동안의 한 해 총생산물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begin{aligned} 1,000c(\text{마멸분}) + 5,000c + 5,000v + 5,000m &= 16,000, \\ C &= 11,000, \quad m = 5,000, \quad p' = 5,000/11,000 = 45\frac{5}{11}\% \end{aligned}$$

그리고 또 고정자본은 전혀 없는데 유동적 불변자본은 6,000이고 가변자본은 5,000인 자본 III을 들어보자. 잉여가치율은 100%인데 이 자본은 한 해 한 번 회전한다고 하자. 그러면 한 해 총생산물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6,000c + 5,000v + 5,000m &= 16,000, \\ C &= 11,000, \quad m = 5,000, \quad p' = 5,000/11,000 = 45\frac{5}{11}\% \end{aligned}$$

따라서 세 경우에 다 한 해의 잉여가치량은 똑같이 5,000이며 총자본은 세 경우에 다 역시 같으므로 즉 11,000이므로 이윤율도 똑같이 $45\frac{5}{11}\%$ 이다.

이와는 달리 위에서 든 자본 I에서 가변부분이 한 해 10번이 아니라

겨우 5번 회전한다고 하면 사태는 다르게 된다. 그때에는 한 회전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다.

$$200c(\text{마멸분}) + 500c + 500v + 500m = 1,700.$$

또는 한 해의 생산물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1,000c(\text{마멸분}) + 2,500c + 2,500v + 2,500m &= 8,500, \\ C &= 11,000, \quad m = 2,500, \quad p' = 2,500/11,000 = 22\frac{8}{11}\%. \end{aligned}$$

회전기간이 2배로 되었기 때문에 이윤율은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리하여 한 해 동안에 차지하는 잉여가치량은 가변자본의 한 회전기간에 차지하는 잉여가치에 한 해 동안의 그러한 회전수를 곱한 것과 같다. 한 해 동안에 차지하는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M 이라고 하고 한 회전기간에 차지하는 잉여가치를 m , 가변자본의 한 해 회전수를 n 이라고 하면 $M = mn$ 이며 한 해의 잉여가치율은 $M' = m'n$ 인데 이것은 이미 「자본론」, 제2부, 제16장, 제1절에서 설명하였다.*

이윤율의 공식 $p' = m' \frac{v}{C} = m' \frac{v}{c+v}$ 는 분자의 v 가 분모의 v 와 똑같은 경우에만 옳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분모의 v 는 총자본 가운데서 가변자본으로서 임금에 평균적으로 돌린 모든 부분이다. 분자의 v 는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일정한 양의 잉여가치 m 을 생산하여 차지하였다는 것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이 v 에 대한 m 의 비율 m/v 이 잉여가치율이다. 오직 이 길을 거쳐서만 방정식 $p' = \frac{m}{c+v}$ 은 다른 방정식 $p' = m' \frac{v}{c+v}$ 로 전화되었다. 그런데 분자의 v 는 더 엄밀히 규정되어 분모의 v 즉 자본 C 의 모든 가변부분과 같은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면 방정식 $p' = m/c$ 이 흠없이 다른 방정식 $p' = m' \frac{v}{c+v}$ 로 전화될 수 있는 것은 다만 m 이 가변자본의 한 회전기간에 생산된 잉여가치를 의미할 때만이다. m 이 이 잉여가치의 한 부분일 따름이라면 $m =$

* 이 전집, 조문판, 제24권, 325~341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m'v$ 는 물론 옳지만 이 v 는 이 경우에는 $C=c+v$ 에 있는 v 보다 작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금으로 지출된 전체 가변자본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m 이 v 의 한 회전에서 나오는 잉여가치보다 많은 것이라면 이 v 의 한 부분이나 이 v 전체도 두 번 기능을 논다. 즉 맨 처음에 첫번째 회전에서, 그 다음에 둘째번 회전에서 또는 둘째번 회전과 그 다음 회전들에서 그렇게 된다. 따라서 잉여가치를 생산하며 지불된 모든 임금의 총액을 이루는 그 v 는 $c+v$ 에 있는 v 보다 큰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틀리게 된다.

연이윤율의 공식을 완전히 옳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잉여가치를 대신에 연잉여가치율을 놓아야 한다. 즉 m' 대신에 M' 또는 $m'n$ 을 놓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잉여가치율 m' 에——또는 결국 똑같은 것으로 되지만 C 에 들어 있는 가변자본부분 v 에——이 가변자본의 한 해 회전수인 n 을 곱해야 한다. 그리하여 $p' = m'n \cdot \frac{v}{C}$ 가 나오는데 이것이 연이윤율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이다.

그러나 한 기업에서 가변자본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은 대체로 자본가 자신도 모른다. 제2부, 제8장에서 이미 보았으며 또 앞으로도 보게 되겠지만 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에서 유일하게 본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구별은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구별이다. 유동자본 가운데서 화폐형태로 자본가의 손에 있는 부분을 넣어둔 금고에서——그것이 예금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자본가는 임금을 지불하기 위한 화폐를 꺼내고 똑같은 금고에서 원료와 보조자재를 사들이기 위한 화폐도 꺼내며 그리고 이 두 가지 것을 똑같은 하나의 현금계정에 올린다. 그리고 그가 지불하는 임금에 대하여 계정을 따로 한다 하더라도 이 계정은 물론 연말에 가서 임금으로 지불한 총액 즉 vn 을 표시하지, 가변자본 v 자체를 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v 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자본가가 독특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제 그 실례를 하나 들려고 한다.

그러기 위하여 『자본론』 제1부, 180~181*페이지에서 서술한 10,000개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261~263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의 방추를 가진 면방직공장을 들고 1871년 4월 어느 한 주일의 자료가 그대로 그 해 전체에 들어맞는다고 하자. 기계에 들어 있는 고정자본은 10,0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 유동자본은 나와 있지 않았다. 그것이 2,5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고 가정하자. 이것은 어지간히 높이 본 숫자이지만 여기에서는 언제나 가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신용거래가 전혀 없으며 따라서 계속적으로나 일시적으로 남의 자본을 이용하는 일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숫자이다. 한 주일 생산물의 가치는 기계의 마멸분 20파운드 스텔링, 선대한 유동적 불변자본 358파운드 스텔링(집세 6파운드 스텔링, 목화 342파운드 스텔링, 석탄, 가스, 기름, 10파운드 스텔링), 임금으로 지출한 가변자본 52파운드 스텔링과 잉여가치 80파운드 스텔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았다.

$$20c + 358c + 52v + 80m = 510$$

따라서 유동자본으로 한 주일에 선대한 것은 $358c + 52v = 410$ 이었으며 백분율로 본 이것의 구성은 $87.3c + 12.7v$ 이다. 이것을 전체 유동자본 2,500파운드 스텔링에 대하여 계산하면 2,182파운드 스텔링의 불변자본과 318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으로 된다. 임금으로 지출한 총액은 한 해에 52파운드 스텔링의 52배 즉 2,704파운드 스텔링이었으므로 318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은 한 해에 거의 $8\frac{1}{2}$ 번 회전한 것으로 된다. 잉여가치율은 $80/52 = 153^{11}/_{13}\%$ 였다. 이러한 자료들에 의하여 $p' = m'n \frac{v}{C}$ 라는 공식에 $m = 153^{11}/_{13}$, $n = 8\frac{1}{2}$, $v = 318$, $C = 12,500$ 이라는 값들을 넣음으로써 이윤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p' = 153^{11}/_{13} \times 8\frac{1}{2} \times 318 / 12,500 = 33.27\%$$

단순한 공식 $p' = m/C$ 을 이용하여 이에 대한 검산을 하여보자. 총잉여가치 또는 이윤은 한 해에 80파운드 스텔링 $\times 52 = 4,160$ 파운드 스텔링이 된다. 이것을 총자본 12,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나누면 위에서 든 것과 거의 같은 33.28%가 나오는데 흔히 볼 수 없이 높은 이러한 이윤율은 제반 사정이 한때 아주 유리하였다(목화값은 매우 낮았고 실값은 매우

높았다)는 것으로써만 설명되며 또 실제로 온 한 해 동안 내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확실하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공식 $p' = m'n \frac{v}{C}$ 에서 $m'n$ 은 제2부에서 연잉여가치율이라고 부른 것이다. * 이것은 위에서 든 경우에는 $153^{11}/_{13}\% \times 8\frac{1}{2}$ 로 또는 정확히 계산하여 $1,307^9/_{13}\%$ 로 된다. 그러므로 비데르만이란 자가 제2부에서 든 한 예에 나오는 1,000%라는 엄청난 연잉여가치율에 어안이 빙빙하였다면 그는 아마 맨체스터의 생생한 실천에서 여기에 든 1,300%를 넘는 연잉여가치율이라는 사실을 보고 마음을 가라앉힐 것이다. 최고의 번영기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더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한 시기에는 그렇게 높은 율도 결코 드문 것도 아니다.

그런데 그렇고 또 여기에 근대적 대공업에서 보게 되는 실제적 자본구성의 한 실례가 있다. 총자본은 불변자본 12,182파운드 스텔링과 가변자본 318파운드 스텔링으로 나누어지며 모두 12,500파운드 스텔링이다. 또는 백분율로 보면 $97\frac{1}{2}c + 2\frac{1}{2}v = 100C$ 이다. 총자본의 40분의 1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한 해에 8번 이상 회전하면서 임금을 지불하는 데 쓰인다.

자기자신의 기업에 관하여 이러한 계산을 하려고 생각하는 자본가는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것이므로 사회적 총자본의 가변부분에 대한 불변부분의 비율에 관하여 통계는 거의 입을 꽉 다물고 있다. 오직 미국의 국세조사만이 오늘날의 제관계의 실태 즉 매 기업부문에서 지불한 임금 총액과 얻은 이윤 총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자료는 따져볼 수 없는 산업가 자신들의 통보에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매우 귀중한 것이며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구라파에서는 너무나 사람들이 어진 탓으로 대산업가들에게 그와 같이 발가놓을 것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 F.E. }

* 이 전집, 조문판, 제24권, 327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제 5 장 불변자본의 적용에서의 절약

제1절 일반적 명제

가변자본의 크기가 의연 같은 경우 즉 똑같은 수의 노동자들을 명목상 똑같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경우——이 경우에 초과시간에 대한 보수가 지불되건 안되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절대적 잉여가치가 늘어나면 즉 잉여노동 따라서 노동일이 길어지면 불변자본의 가치는 총자본의 가치에 비하여 그리고 가변자본의 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그렇게 됨으로써 이윤율은 또한 잉여가치량이 늘어나고 잉여가치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데는 관계없이 옳다. 불변자본의 고정적 부분인 공장건물, 기계 등은 그것들로 16시간 일하건 12시간 일하건 그 규모는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일이 길어지더라도 불변자본의 이 값비싼 부분에 새로운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그뿐 아니라 고정자본의 가치는 그렇게 되어 더 적은 수의 회전기간에 재생산되며 따라서 일정한 이윤을 얻기 위하여 고정자본을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기간은 짧아진다. 따라서 노동일이 길어지면 초과시간에 대한 보수를 지불하더라도 또 어느 한도까지는 초과시간에 대한 보수가 정상적인 노동시간에 대한 보수보다 높다 하더라도 이윤은 많아진다. 그러므로 근대적 산업체계에서 고정자본을 늘일 필요성이 끊임없이 커졌으며 이것이 이윤에 눈이 어두운 자본가들에게 있어서 노동일을 연장하게 하는 주되는 자극이었다.¹¹⁾

노동일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그러한 관계는 생기지 않는다. 이 경우에 더 많은 양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해서는(여기에서는 임금을

11) “모든 공장에서 막대한 금액의 고정자본이 건물과 기계에 들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시간수가 크면 클수록 이윤은 더 많아질 것이다”(1858년 10월 31일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8페이지).

짜르거나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그것을 떨구는 것은 제쳐놓고 본다.) 노동자들의 수를 늘이며 그와 함께 일정한 비율로 건물, 기계 등 고정자본의 양도 늘여야 한다. 또는 노동강도가 세지거나 노동생산력이 높아져 일반적으로 상대적 잉여가치가 더 많이 생산되는 경우에는 원료를 쓰는 공업부문들에서 주어진 기간에 더 많은 원료 등을 가공하기 때문에 불변자본의 유동적 부분의 양은 늘어난다. 그리고 둘째로 똑같은 수의 노동자들이 가동시키는 기계가 늘어나며 따라서 또 불변자본의 이 부분도 늘어난다. 그리하여 잉여가치의 증가에는 불변자본의 증가가 따라가며 노동을 더 많이 착취하는 데는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인 생산조건들의 가치증대 즉 더 많은 자본지출이 따라간다. 그리하여 이윤율은 이 때문에 한편으로는 줄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늘어난다.

수많은 경상비는 노동일이 길어지건 짧아지건 거의 같거나 완전히 같다. 감독비는 12시간 일하는 750명의 노동자들의 경우보다 18시간 일하는 500명의 노동자들의 경우에 더 적다.

“공장의 경영비는 10시간노동의 경우에 12시간노동의 경우나 거의 같다”(『1848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37페이지).

국세와 지방자치세, 화재보험료, 각이한 고정적 사무원들의 임금, 기계의 가치감소액, 그 밖의 공장의 각종 비용은 노동일이 길건 짧건 변함이 없다. 생산이 주는 데 따라 이러한 비용들은 이윤에 비하여 늘어난다 (『1862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9페이지).

기계와 그 밖에 고정자본을 이루는 부분들의 가치가 재생산되는 기간은 실제로 그것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기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작용하며 이용되는 노동과정의 전기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자들이 하루에 12시간이 아니라 18시간 일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한 주일에 사흘이 더 많아지고 한 주일은 한 주일 반으로 되며 두 해는 세 해로 된다. 초과시간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정상적인 잉여노동시간을 빼놓고도 두 주일이 지나 세째 주일에는, 두 해가 지나 세째 해에는 보수없이 일하는 셈이다. 그리하여 기계가치의 재생산

은 50%만큼 빨라지며 이 재생산에는 12시간노동의 경우에 드는 시간의 2/3만이 든다.

우리는 이것을 연구하는 데서도 원료가격의 변동을 연구하는 데서와 (제6장에서) 마찬가지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잉여가치량과 잉여가치율은 주어져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협업과 분업 그리고 기계의 역할을 분석할 때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대규모생산의 특징으로 되는 생산조건들의 절약은 본질적으로 이 조건들이 사회적 노동, 사회적으로 결합된 노동의 조건들로서, 따라서 노동의 사회적 조건들로서 기능을 논하는 데서 생긴다. 이 생산조건들은 서로 연계가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에 의하여 또는 기껏하여 보잘 것 없는 정도에서 직접 협업하는 노동자들에 의하여 따로따로 흩어진 형태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공동으로, 전체 노동자에 의하여 소비된다. 한두 대의 중앙동력기가 있는 큰 공장에서는 이 동력기들의 비용은 그 마력수와 따라서 그 가능한 작용범위가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또 전도기들의 비용도 그 도움으로 운동을 전달받는 작업기들의 수량과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또 작업기들의 골조 자체의 값도 그 작업기들이 기능을 노는데 그 기관들로 되는 도구의 수가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비싸지는 것은 아니다 등등 그리고 또 생산수단이 집적됨으로써 원래의 작업장뿐 아니라 창고 등으로 쓰는 온갖 종류의 건물들의 비용이 절약된다. 난방비와 조명비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다른 생산조건들은 그 이용자가 많건 적건 의연 똑같다.

그러나 생산수단이 집적되고 그것들을 대량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생기는 이 모든 절약은 본질적 조건으로서 노동자들의 집결과 그 공동작업율, 따라서 노동의 사회적 결합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이 절약은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잉여가치가 따로따로 본 개개 노동자의 잉여노동에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기에서 있을 수 있으며 또 반드시 있게 되는 끊임없는 개량도 전적으로 대규모로 결합된 전체 노동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87~388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자의 생산에서 나오며 또 이루어지는 그 사회적 경험과 관찰에서만 나온다.

생산조건들을 절약하는 또 하나의 큰 부문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른바 폐물이라는, 생산에서 나오는 배설물을 똑같은 공업부문이건 다른 공업부문이건 그 부문의 새로운 생산요소들로 도로 쓰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쳐 이른바 이 배설물은 생산과 따라서 소비——생산적 또는 개인적——의 순환 속에 다시 돌아간다. 후에 좀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이 부문의 절약도 큰 규모의 사회적 노동의 결과이다. 그러한 큰 규모의 사회적 노동에서만 이 폐물은 다량으로 나오게 되어 그 자체가 다시 거래의 대상으로 되며 따라서 새로운 생산요소들로 된다. 폐물은 공동으로 하는 생산, 따라서 큰 규모의 생산의 폐물로서만 생산과정에 대하여 이렇게 중요한 것으로 되며 교환가치를 지닌 것으로 된다. 이 폐물은——그것이 새로운 생산요소들로서 노는 그 역할은 제쳐놓고 보더라도——그것을 다시 팔 수 있게 되는 정도에 따라 원료의 비용을 값싸게 만든다. 그것은 이 원료의 비용에는 언제나 원료에서 정상적으로 떨어져나가는 것 즉 원료를 가공할 때 평균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분량이 계산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불변자본의 이 부분의 비용이 줄어들면 가변자본의 크기가 주어져 있고 또 잉여가치율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이윤율은 그만큼 오른다.

잉여가치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상품생산에 드는 불변자본의 가치가 줄어야만 이윤율은 커질 수 있다. 불변자본이 상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한에서 오직 문제로 되는 것은 그 불변자본의 교환가치가 아니라 그 사용가치이다. 방적공장에서 아마가 노동을 얼마나 빨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노동의 생산성 정도 즉 기술발전 수준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아마의 가치에 달려 있지 않고 아마의 양에 달려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대의 기계가 예컨대 3명의 노동자들에게 주는 방조는 그 기계의 가치에 달려 있지 않고 그 기계의 기계로서의 사용가치에 달려 있다. 기술발전의 어떤 단계에서는 나쁜 기계도 비쌀 수 있으며 다른 단계에서는 좋은 기계도 값이 낮을 수 있다.

어떤 자본가가 예컨대 목화와 방적기계가 값싸져서 얻는 이윤이 많아

진 것은 물론 방적공장에서도가 아니라 아마 기계제작과 목화재배에서 노동의 생산성이 오른 결과일 것이다. 주어진 양의 노동을 대상화하는 데는, 따라서 주어진 양의 잉여노동을 차지하는 데는 이제는 노동조건들에 들이는 지출이 더 적어도 된다. 이 일정한 양의 잉여노동을 차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적어진다.

전체 노동자 즉 사회적으로 결합된 노동자들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적용하는 데서 나오는 절약에 대해서는 이미 말하였다. 더 나아가서 유통기간을 줄이는 데서(여기에서는 교통수단의 발전이 본질적인 물질적 계기이다) 생기는 불변자본지출의 절약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살펴 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곧 생각해 볼 것은 다음과 같이 기계를 줄곧 개량하는 데서 나오는 절약이다. 즉 1) 기계의 소재를 개량하는 것, 예컨대 나무 대신에 쇠를 쓰는 것, 2) 기계제작 일반을 개량함으로써 기계를 값싸게 만드는 것, 그리하여 불변자본의 고정적 부분의 가치는 노동이 대규모로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와 똑같은 정도로는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¹²⁾ 3) 이미 있는 기계를 더 값싸게 그리고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개량하는 것, 예컨대 증기보일러 등을 개량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고 한다. 4) 더 좋은 기계에 의하여 폐물을 줄이는 것.

주어진 한 생산기간에 기계, 일반적으로 고정자본의 마멸을 적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하나의 상품에 해당한 마멸부분이 그 가격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의 상품을 값싸게 할 뿐 아니라 이 기간에 해당한 자본지출을 줄인다. 보수작업 같은 것들은 필요하게 되는 정도에 따라 기계의 원래의 비용에 계산하여 넣는다. 기계가 더 오래 견디게 되는 결과에 보수작업 같은 것들이 적어지면 그만큼 기계의 가격이 줄어든다.

이러한 종류의 모든 절약의 특징은 그것이 대부분 결합된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만 있을 수 있고 흔히 더욱더 큰 규모로 작업이 진행되는 경우에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절약을 하려면

12) 공장을 세우는 데서 이룩한 진보에 관한 유어(Andrew Ure)의 저서를 보라.¹⁷⁾

직접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들을 더욱더 결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또 이 경우에 한 생산부문에서 예컨대 철, 석탄, 기계의 생산, 건축업 등에서 이룩된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발전은 또한 부분적으로는 정신적 생산의 영역 특히 자연과학과 그 응용영역에서 이룩된 진보와 관련될 수 있다——은 다른 생산부문을 예컨대 섬유공업이나 농업에서 생산수단의 가치를 줄이며 따라서 그 비용을 줄이는 조건으로 된다. 한 산업부문에서 생산물로서 나오는 상품은 다른 산업부문에 생산수단으로서 들어가므로 자연 그렇게 된다. 그 상품의 값이 얼마나 싸가 하는 것은 그 상품이 생산물로서 나오는 생산부문에서 이룩된 노동의 생산성에 달렸으며 동시에 그것은 그 상품이 생산수단으로서 들어가 생산되어 나오는 상품들의 값을 싸게 하는 조건일 뿐 아니라 그 상품을 요소로 하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줄이며 따라서 이윤율을 높이는 조건이다.

산업이 더욱더 발전하는 데서 나오는 불변자본의 이러한 절약이 가지는 특징은 이 경우에 한 산업부문에서 이윤율이 높아지는 것은 다른 산업부문에서 노동생산력이 발전한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자본가가 얻는 것은 그 자신이 직접 착취하는 노동자들의 생산물은 아니라 하더라도 사회적 노동의 산물인 이득이다. 그러한 생산력 발전이란 결국 활동하게 되는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서 즉 사회 내부의 분업에서, 정신노동 특히 자연과학의 발전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경우에 자본가가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 분업의 전체계에서 나오는 이익이다. 이 경우에 자본가가 적용하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리며 따라서 이윤율을 높이는 것은 주어진 산업부문이 아니라 이 부문에 생산수단을 대주는 산업부문에서의 노동생산력의 발전이다.

다른 경우에 이윤율이 높아지는 것은 불변자본을 생산하는 노동을 절약하는 데 의해서가 아니라 불변자본 자체의 적용에서의 절약에 의해서이다. 한편 노동자들이 집중되고 그들이 큰 규모에서 협업하면 불변자본은 절약된다. 똑같은 건물과 난방 및 조명시설 등의 비용은 작은 규모의 생산에서보다 큰 규모의 생산에서 비교적 더 적다. 동력기와 작업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기계들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오

른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생산이 확대되는 데 비해서는 그리고 가변자본의 크기 또는 가동되는 노동력의 양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한 자본이 그 자체의 생산부문에서 하는 절약은 무엇보다 먼저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노동을 절약하는 데, 즉 그 자체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의 지불노동을 줄이는 데 있다. 이와 반대로 위에서 말한 절약은 남의 지불노동을 될 수 있는 대로 보다 경제적으로 즉 주어진 생산규모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비용을 들여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차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절약이 이미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불변자본의 생산에서 적용하는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을 이용하는 데 기초하지 않고 불변자본 자체를 절약하여 적용하는 데 기초하고 있는 한에서는 이러한 절약은 직접 일정한 생산부문 자체 내부에서의 협업과 노동의 사회적 형태에서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계 등의 가치가 그 사용가치와 똑같은 정도로는 늘지 않는 규모에서 기계 등을 생산하는 데서 나온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C의 가치가 0이라면 $p' = m'$ 일 것이며 이윤율은 최대한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둘째로 노동 그 자체를 직접 착취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고정자본이건 원료와 보조자재이건 적용하는 착취수단의 가치가 결코 아니다. 이러한 착취수단이 노동을 빨아들이는 것으로서 즉 노동, 따라서 또 잉여노동이 그것에 또는 그것에 의하여 대상화되는 수단으로서 쓰이는 한에서 기계, 건물, 원료 등의 교환가치는 전적으로 아무래도 좋다. 여기에서 오직 문제로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정한 양의 산 노동과 결합되는 데 기술적으로 필요한 그것들의 양이며 또 한편으로는 그것들이 제시된 목적에 맞는가 하는 것 즉 좋은 기계인가 하는 것뿐 아니라 좋은 원료와 보조자재인가 하는 것이다. 이윤율은 부분적으로 원료의 질에 달려 있다. 좋은 재료에서는 폐물이 적게 나온다. 따라서 똑같은 양의 노동을 빨아들이는 데 더 적은 양의 원료가 든다. 그리고 또 작업기가 부딪치는 저항도 더 적게 된다.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잉여가치와 잉여가치율에도 영향을 준다. 원료가 나쁘면 노동자는 똑같은 양의 원료를 가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게 되며 이렇게 되면 임금지불이 의연 같은 경우에는 잉여노동이 줄어든다. 그렇게 되면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은 크게 영향을 받는데 자본의

재생산과 축적은 『자본론』 제1부 568페이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적용되는 노동의 양보다 그 생산성에 더 많이 달려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생산수단을 절약하려고 자본가가 미쳐 날뛰는 것은 알만하다. 아무것도 헛되이 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으며 생산수단을 생산 자체가 요구하는 대로만 써야 하는 그러한 사태는 부분적으로는 노동자들을 길들이고 교양하는 데 달려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자본가가 결합된 노동자들에게 지키게 하는 규율에 달려 있는데, 그 규율은 노동자들이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하는 그러한 사회제도에서는 쓸데없는 것으로 될 것이며 이제에는 도급제 임금의 경우에 벌써 거의 전혀 쓸데없는 것으로 되고 있다. 한편 또 자본가는 생산요소들을 위조하기 위해서도 미쳐 날뛰는데 이것은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의 가치를 떨구며 그리하여 이윤율을 높이는 주되는 수단이다. 속여먹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덧붙이는 것은 또한 이 생산요소들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파는 것인데 이 가치가 생산물에 다시 나타나는 한에서 그러하다. 이 계기는 특히 독일산업에서 결정적 역할을 놀고 있는데 독일산업의 기본원칙은 처음에 좋은 본보기를 보내기만 하면 다음에 나쁜 상품을 보내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쟁의 영역에 속하는 이러한 현상들은 여기에서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불변자본의 가치, 따라서 그 가격이 줄어들어 이윤율이 높아지는 것은 그렇게 이윤율이 높아지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것이 사치품인가 또는 노동자들이 소비하는 생활수단인가 또는 생산수단 일반인가 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정은 본질적으로 노동력의 가치 즉 노동자의 일상적 생활수단의 가치에 달려 있는 잉여가치율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만 중요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잉여가치와 잉여가치율은 주어진 것으로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것이 바로 이윤율을 규정한다——은 오로지 불변자본의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지 결코 불변자본을 이루는 요소들의 사용가치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2분책, 259~260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물론 생산수단이 상대적으로 값싸진다고 하여 생산수단의 절대적 가치가 늘어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적용되는 생산수단의 절대량은 노동생산력의 발전과 이에 따르는 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라 비상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불변자본의 적용에서의 절약은 그것을 어떤 측면에서 살펴보건 간에 부분적으로는 오로지 생산수단이 결합된 노동자의 공동의 생산수단으로서 기능을 놀며 쓰이는 결과이며, 그리하여 이 절약 자체는 직접 생산적인 노동의 사회적 성격의 산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그 절약은 그 자본에 생산수단을 대주는 분야들에서 노동의 생산성이 발전한 결과이며 그리하여 다만 자본가 X가 고용하는 노동자들을 이 자본가 X에게 맞세워 볼 것이 아니라 총노동을 총자본에 맞세워 본다면 이 절약도 역시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이 발전한 산물로서 나타난다. 차이는 다만 자본가 X가 그 자신의 작업장에서 하는 노동의 생산성에서뿐 아니라 남의 작업장들에서 하는 노동의 생산성에서도 이익을 끌어낸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변자본의 절약이 자본가에게는 노동자와 전혀 인연이 없고 그와는 절대로 관계가 없는, 노동자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조건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가 똑같은 화폐로 사는 노동이 많은가 적은가(왜냐하면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거래는 자본가의 의식 속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노동자와 결코 관계가 없지 않다는 것은 자본가에게는 언제나 아주 명백한 것이다. 생산수단의 적용에서의 이 절약, 일정한 성과를 가장 적은 지출로 거두는 이 방법은 노동 속에 있는 다른 힘들의 경우보다 훨씬 더 높은 정도로 자본에 고유한 힘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독특하며 이 생산양식을 특징짓는 방법으로서 나타난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들의 외관이 이 사고방식에 부합되기 때문이며 또 자본주의적 관계가 노동자들을 그들 자신의 노동을 실현하는 조건들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게 만들고 외면케 하며 인연이 멀게 하여 사실상 그 내적 연관을 가리기 때문이다.

첫째로, 불변자본을 이루는 생산수단은 자본가의 화폐만을 표시하며(링게에 의하면 로마에서 채무자의 몸이 그의 채권자의 화폐를 표시하듯

이¹⁸⁾ 자본가와만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데 한편 노동자는 실제적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과 맞닥뜨는 한에서 이것을 노동수단과 노동재료라는, 생산에서의 사용가치들로서만 상대한다. 따라서 이 가치가 줄어들건 늘어나건 그것은 노동자가 동을 가공하는가 철을 가공하는가 하는 사정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와는 상관이 없다. 물론 자본가는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생산수단의 가치가 늘어나서 이윤율이 줄어들자 이 사정을 달리 보려고 한다.

둘째로, 이 생산수단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동시에 노동을 착취하는 수단인 한에서 이 착취수단이 상대적으로 싼가 비싼가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그것은 말을 다루는 고삐와 굴레가 비싼가 싼가 하는 것이 말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것과 마찬가지다.

끝으로, 전에 본 바와 같이* 노동자는 사실 자기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 대하여 즉 공동의 목적을 위한 자기 노동과 다른 노동자들의 노동과의 결합에 대하여 마치 자기와는 인연이 없는 어떤 힘을 대하듯이 대한다. 이 결합을 실현하는 조건들은 노동자에게는 남의 소유물이며 노동자가 이 소유물을 절약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면 이 소유물을 낭비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완전히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예컨대 로치데일에 있는 노동자들 자신에게 속한 공장¹⁹⁾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리하여 한 생산부문에서의 노동의 생산성이 다른 생산부문에서 생산수단을 값싸게 하며 개량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며 그에 따라 이윤율을 올리는 한에서 사회적 노동의 이 전반적 연관이 사실상 자본가만이 생산수단을 사서 자기 것으로 차지하는 만큼 자본가와만 관계되고 노동자에게는 전혀 인연이 없는 것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은 구태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자본가가 자기자신의 생산부문의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을 가지고 남의 생산부문의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을 사고 따라서 자기자신의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을 무상으로 차지한 한에서만 남의 노동자가 생산하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유통과정 등에 의하여 다행히도 가리워져 있는 연관이다.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8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여기에 또 다음과 같은 사정이 덧붙는다. 대규모의 생산은 자본주의적 형태에서 비로소 발전하므로 한편으로는 이윤추구와 또 한편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값싸게 상품을 생산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경쟁으로 하여 불변자본의 적용에서의 이 절약이 마치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독특한 것인 것처럼, 따라서 자본가의 기능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한편으로는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을 다그치게 하며 한편으로는 또 불변자본의 적용에서의 절약을 다그치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한편으로는 산 노동을 맡아 하는 노동자와 다른 편으로는 그의 노동조건들을 경제적으로 즉 합리적으로 그리고 절약하여 적용하는 것 사이에 인연이 멀고 무관심한 관계가 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성이 모순되고 적대적인 것으로 하여 결국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의 손상, 그의 생존조건들 자체의 악화가 불변자본의 적용에서의 절약과 따라서 이윤율을 높이는 수단 때문이라는 데 있다.

노동자는 자기생활의 대부분을 생산과정에서 지내므로 생산과정의 조건들은 대부분 그의 능동적인 생활과정의 조건들, 그의 생활조건들이기도 한데 이 생활조건들의 절약이 이윤율을 높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것은 전에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자를 부림짐승으로 만드는 지나친 노동이 자본의 자체 증식, 잉여가치의 생산을 다그치는 한 가지의 방법인 것과 똑같다. 이러한 절약으로 하여 비좁고 비위생적인 장소에 노동자들을 가득 몰아넣게 되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인 말로는 건물의 절약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절약으로 하여 똑같은 장소에 위험한 기계들을 뻥뻥하게 집어넣고 위험에 대한 보호시설을 하지 않으며, 본래 건강에 해롭거나 광산에서와 같이 위험이 뒤따르는 생산과정들에서 예방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노동자들에게 생산과정이 인도적이고 유쾌하며 하다못해 견딜만한 것으로라도 되게 하는 어떠한 시설도 없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목적도 의의도 없는 낭비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제8장, 276~362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생산은 모든 점에서 인색하지만 인간재료는 마구 낭비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다른 편으로 그 생산물을 상업을 통하여 분배하는 방법과 그 경쟁방식으로 하여 물질적 수단을 매우 낭비하는 것과 똑같으며 여기에서 개별적 자본가가 얻는 이득을 사회는 잃는다.

자본에서는 산 노동을 직접 적용하는 데서 이 산 노동을 필요노동으로 줄이고 또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을 사회적 노동생산력을 이용하여 끊임없이 줄이며 따라서 직접 적용하는 산 노동을 될 수 있는 대로 절약하려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또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에는 필요한 정도로 줄어든 이 노동을 가장 경제적인 조건들에서 적용하려는 즉 적용하는 불변자본의 가치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도로 줄이려는 경향도 있다. 상품의 가치가 일반적으로 그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에 들어 있는 필요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라면, 이 규정을 처음으로 실현하며 또 그와 동시에 이러저러한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을 줄곧 줄여 나가는 것이 바로 자본이다.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에 든 노동의 개개 부분이 최소한도로 줄어들으로써 최소한도로 줄어든다.

불변자본의 적용에서의 절약을 살펴볼 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적용하는 자본의 양이 늘어나고 이와 함께 그 가치액이 늘어난다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손에 자본이 집적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의 손에 의하여 적용되는 자본의 양이 늘어남으로써——이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의 양도 대체로 절대적으로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는 줄어든다——불변자본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개별적 자본가를 놓고 보면 필요한 자본지출의 규모 특히 고정자본의 지출의 규모가 늘어나지만 가공되는 재료와 착취되는 노동과 관련해서는 그 지출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하나의 예증을 들어 간단히 설명하려 한다. 마지막에 든 것으로부터 즉 동시에 노동자의 생존 및 생활조건들이기도 한 한에서의 생산조건들의 절약부터 시작하자.

제2절 노동자들을 희생으로 하는 노동조건들의 절약. 가장 필요한 지출의 무시.

탄광

“탄광소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쟁으로 하여 가장 뚜렷한 육체적 곤란을 이겨내는 데 필요한 지출 이상으로는 어떠한 지출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통 남아돌아가는 탄광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하여 이들은 이웃 농촌의 낱품팔이꾼의 임금을 넘을까 말까 한 임금을 받고 아주 위험한 일과 해롭기 그지없는 영향을 받는 일에 즐겨 몸을 내맡긴다. 그것은 탄광노동에서는 또한 그들의 아이들까지도 유리하게 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이종의 경쟁 만으로도 … 대부분의 탄광작업이 물빼기와 환기가 아주 불완전하고 흔히 갱 건설이 불안전하고 갱목이 나쁘고 기계공은 무능하고 갱도와 차도의 설계도 시공도 다 나쁜 조건에서 진행되어도 무방하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은 생명을 잃고 팔다리를 찢리며 건강을 망치는데 이에 대한 통제가 있다면 무서운 정경을 보여줄 것이다”(『광산과 탄광 등에서의 아동노동에 관한 제1차보고』, 1829년 4월 21일, 102페이지).

영국의 탄광들에서는 1860년경에 매주 평균 15명의 노동자들이 죽었다. 탄광사고에 관한 보고(1862년 2월 6일)에 의하면 1852~1861년의 10년 동안에 모두 8,466명이 죽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그 보고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실제보다 훨씬 적다. 그것은 공장감독관제도가 방금 실시되고 또 그들의 담당구역이 너무 넓었던 첫 몇 해 동안에는 사고와 사망의 많은 건수들이 전혀 통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장감독관들의 수가 적으며 그들의 권한이 보잘 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감독관제도가 나온 이래 사고건수가 펴 줄었다는 바로 이 사정은——물론 현재도 노동자들의 희생은 아직 매우 큰 규모로 지속되고 있지만——자본주의적 착취의 자연적 경향을 가장 뚜렷이 보여준다. 이와같이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은 대부분 탄광소유자들의 더러운 욕심 때문인데 이들은 예컨대 흔히

깡도를 하나밖에 뚫게 하지 않으며 그리하여 환기가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이 깡도가 막히면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은——이것을 유통과정과 그리고 경쟁과 관련된 비용은 제쳐놓고 따로 본다면——이미 실현되어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을 극도로 절약한다.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다른 어떤 생산양식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죽인 노동을 마구 탕진하며 살과 피뿐 아니라 신경과 뇌수도 마구 탕진한다. 사실 개인의 힘을 엄청나게 탕진함으로써만 인류사회의 의식적 개조에 직접 앞서는 역사적 시기에 인류의 발전이 일반적으로 보장되며 실현된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모든 절약은 노동의 사회적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사실 바로 노동의 이 직접적인 사회적 성격으로 하여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이와같이 탕진된다. 이 점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미 공장감독관 A. 베이커가 내놓은 다음과 같은 문제이다.

“공동노동에 기인하는 어린 생명의 이 희생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신중히 생각해볼 만한 문제이다”(『1863년 10월 31일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57페이지).

공장. 여기에서 문제는 고유한 의미의 공장에도 노동자들의 안전과 편의, 건강을 보장하는 예방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산업군의 사상자수를 들고 있는 전투통보는 그 대부분이 이 때문에 나온다(매 해의 공장보고를 보라). 장소가 비좁고 환기가 잘 안되는 것도 공장의 특징이다.

1855년 10월에 와서도, 레오나드 호너는 수평축이 위험하다는 것이 흔히 사망자를 내는 불상사에 의하여 줄곧 증명되고 있고 또 안전장치가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며 생산에 조금도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수평축의 안전장치에 관한 법규정을 수많은 공장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1855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6페이지). 이 법규정과 그 밖의 법규정들을 반대하는 데서 공장주들은 보수를 받지 않는 치안판사들의 다정한 지지를 받았는데 이 치안판사들은 대체로 그

들 자신이 공장주이거나 공장주의 벗으로서 그러한 사건들을 판결하게 되어 있었다. 이 나라들의 판결이 어떠한 것이었겠는가 하는 것은 상급 판사 캠벨이 상소를 받은 그러한 판결의 하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데서 알 수 있다.

“이것은 의회조례를 해석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을 폐기한 것이다”(같은 보고, 11페이지).

똑같은 보고에서 호너는 많은 공장들에서 노동자들에게 미리 알리지도 않고 기계를 돌리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멎어 있는 기계에서도 언제나 무슨 일이건 하여야 하며 그 경우에 언제나 손과 손가락이 기계에 닿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렇게 신호를 하지 않는 데서만도 사고가 줄곧 일어난다(같은 보고, 44페이지). 맨체스터의 공장주들은 당시 공장입법을 반대하기 위하여 이른바 공장법개정 국민연맹이라는 기업가동맹을 결성하고 있었다. 이 동맹은 1855년 3월에 가입금으로서 한 마력당 2실링씩 받아 총액 50,000파운드 스텔링 이상의 기금을 모았으며 이 기금에서 공장감독관의 기소에 대처한 동맹원의 소송비를 대고 또 동맹의 소송비로 썼다. 기업가들은 이윤을 위해서라면 죽이는 것이 살인은 아니다²⁰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썼다. 스코틀랜드의 공장감독관인 존 키키이드 경이 글라스고의 한 상사에 관하여 말한 데 의하면 이 상사는 자기 공장에 있는 고철로 그 공장의 모든 기계에 안전장치를 하였는데 9파운드 스텔링 1실링의 비용이 들었다는 것이다. 이 상사가 위에서 말한 동맹에 들었더라면 이 상사는 그의 110마력에 대하여 11파운드 스텔링의 가입금을 즉 모든 안전장치에 들인 비용보다 더 많은 것을 물지 않으면 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국민연맹은 분명히 그러한 안전장치를 할 것을 지시한 법률에 반대하기 위하여 1854년 창립되었다. 1844~1854년의 전기 간에 공장주들은 그 법률을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공장감독관들은 팔머스톤의 지시에 따라 이제부터는 그 법률을 엄수하여야 한다고 공장주들에게 알렸다. 공장주들은 곧 자기들의 연맹을 창립하였는데 이 연맹의 많은 성원들이 치안판사였으며 이 자격으로 그들은 스스

로가 이 법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될 사람들이었다. 1855년 4월에 새로운 내무대신 조지 그레이 경은 공장주들에게 타협안을 내놓았는데 이에 의하면 정부는 거의 명목상으로만 안전장치를 하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맹은 이 타협안마저 노기 등등하여 일축하였다. 이를 있는 기사인 윌리엄 페어베언은 여러 소송에서 자본의 절약과 짓밟힌 자유를 위하여 자기의 명성을 걸고 나섰다. 수석 공장감독관 레오나드 호너는 공장주들의 온갖 박해와 비방을 받았다.

그렇지만 공장주들은 고등재판소(the Court of Queen's Bench)의 판결을 쟁취한 다음에야 마음을 가라앉혔는데 이 판결의 해석에 의하면 1844년의 법률에는 땅위 7피트보다 높은 데 설치되어 있는 수평축의 경우에는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1856년에 공장주들은 위선자 윌슨-패튼——종교를 간판으로 삼고 돈주머니 기사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더러운 일도 언제나 마다하지 않는 경건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의 하나——을 통하여 그들이 어쨌든 만족할 수 있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었다. 이 법률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어떠한 특별보호도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기계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보통재판소에 가게 하였다(영국에서와 같이 재판비용이 많이 드는 곳에서 이것은 순전한 우롱이다). 한편 또 이 법률은 전문가의 감정실시에 관한 아주 교묘한 규정에 의하여 공장주들이 소송에서 진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 결과 사고전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감독관 베이커의 말에 의하면 1858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반년 동안에 사고는 그 전의 반년 동안에 비하여 21%나 늘어났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전체 사고의 36.7%는 미리 막을 수 있었다. 물론 1858년과 1859년에는 1845년과 1846년에 비하여 공장감독관의 감시를 받는 공업부문들의 노동자수가 20%만큼 늘어났는데도 사고전수는 어지간히 즉 29%나 줄었다. 어떻게 하여 그렇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논쟁이 지금(1865년)까지 낙착된 한에서는 주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 새로운 기계에는 이미 처음부터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 또 이 안전장치에는 비용이 따로 더 들지 않기 때문에 공장주는 그것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또 일부 노동자들은 팔을 잃은 데 대하여

많은 손해배상을 판결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으며 이 판결을 가장 높은 급의 심의에서까지도 확인받을 수 있었다(『1861년 4월 30일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31페이지와, 『1862년 4월 30일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7페이지).

직접 기계를 다루는 데서 생기는 위험에서 노동자들(이 가운데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다)의 생명과 팔다리를 보호하는 수단의 절약에 관해서는 이 정도만 한다.

실내노동 일반. 공간, 따라서 건물의 절약으로 하여 노동자들을 비좁은 곳에 얼마나 마구 몰아넣는가 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게다가 또 환기장치도 절약한다. 노동시간이 길어지는 것과 함께 이 두 가지 원인으로 하여 호흡기질환이 많이 늘어나며 그 결과 사망율이 높아진다. 다음에 드는 예증들은 『공중위생, 제6차보고, 1863년』에서 뽑아온 것들이다. 이 보고는 이 책, 제1부에서 독자들에게 잘 알려진 존 사이몬 박사가 편찬한 것이다.

노동자들의 결합과 그들의 협업이 바로 기계를 대규모로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생산수단을 집적할 수 있게 하며 또 생산수단을 적용하는 데서 절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내에서 그리고 노동자의 건강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물을 보다 성과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 제반 사정에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대규모의 공동작업, 똑같은 작업장에 노동자들이 그와 같이 대규모로 집적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한편으로는 자본가의 이윤을 늘이는 원천이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시간을 줄인다거나 특별한 예방대책을 세워 보상하지 않는 한 그것은 노동자의 생명을 잃게 하고 건강을 손상시키는 원인이다.

사이몬 박사는 다음과 같은 규칙을 내세우고 이것을 수많은 통계자료에 의하여 증명하고 있다.

“한 지방의 폐병에 의한 사망율은 다른 사정들이 같다면 그 지방의 주민들이 실내에서 공동작업을 하는 데 정비례하여 늘어난다(23페이지). 원인은 통풍이 나쁜 것이다. 그리고 실내에 집중된 규모가 큰 공업이 있는 지방마다 여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사망율이 높으며 그것도 그 지방 자체의 사망통계에

서 폐병이 결정적 우세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규칙에서 벗어나는 예외는 아마 전 영국을 통하여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23페이지).

실내에서 운영되는 산업부문에 대하여 1860년과 1861년에 위생당국이 조사한 사망통계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된다. 15살과 55살 사이의 똑같은 수의 남자들에 대하여 잉글랜드의 농촌지방에서 폐결핵과 그 밖의 폐병으로 죽은 사람이 100명이라고 한다면 폐결핵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코벳트리에서는 163명, 블랙번과 스킵튼에서는 167명, 콩글레튼과 브랫포드에서는 168명, 레이체스터에서는 171명, 리크에서는 182명, 맥클래스필드에서는 184명, 볼튼에서는 190명, 노팅검에서는 192명, 로치데일에서는 193명, 더비에서는 198명, 셸포드와 애쉬튼 언더 라인에서는 203명, 리즈에서는 218명, 프레스턴에서는 220명, 맨체스터에서는 263명이다(24페이지). 다음에 드는 표는 더 뚜렷한 예를 보여준다. 이 표는 15살부터 25살까지 폐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를 각각 남녀별로 매 10만명에 대하여 계산한 것이다. 골라서 든 지방들은 부녀자들만이 실내에서 운영되는 공업에서 일하고 남자들은 온갖 노동부문들에서 일하는 그러한 지

지 방	기 본 산 업 부 문	15세부터 25세까지 폐병으로 죽은 사람 의 수(10만 명당)	
		남 자	여 자
버캄스테드	밀집제공업, 여성노동자	219	578
레이튼버자드	밀집제공업, 여성노동자	309	554
뉴포트패그넬	레이스제조업, 여성노동자	301	617
토스터	레이스제조업, 여성노동자	239	577
요 빌	장갑제조업, 대부분 여성노동자	280	409
리 크	견 직 업, 주로 여성노동자	437	856
콩글튼	견 직 업, 주로 여성노동자	566	790
맥클래스필드	견 직 업, 주로 여성노동자	593	890
북부지방	농업	331	333

방들이다.

공장노동에 남자들이 더 많이 참가하고 있는 전직업 지방들에서는 남자들의 사망율도 높다. 여기에서 폐결핵 등으로 인한 남녀의 사망을 숫자는 보고에서 말하고 있듯이 다음과 같은 형편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전직업의 대부분이 한심한(atrocious) 위생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공장주들이 자기들의 공장의 위생조건들은 유일하게 좋은 형편이라고 하면서 13살 아래 어린이들에게 예외적으로 긴 노동시간을 요구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그렇게 일을 시키고 있는데 바로 이 전직업부문이 이런 형편인 것이다(『자본론』, 제1부, 제8장, 6, 256페이지*).

“이제까지 조사한 산업부문을 가운데서 스미드 박사가 재봉업에 대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보다 더 참혹한 정경을 보여준 것은 아마 없을 것.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작업장은 위생면에서 차이가 심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작업장은 노동자들로 차넘치고 있고 환기가 잘 안되며 건강에 매우 좋지 않다. ...그러한 방들은 그렇지 않아도 무덥기 마련이다. 안개 끼는 낮과 겨울 저녁 때면 가스불을 켜는데 이 때에는 온도가 80도 심지어는 90도(화씨로, 섭씨로는 27~33도)로 오르며 그 때문에 노동자들은 땀투성이가 되며 김이 유리창에 서러 물이 줄줄 흘러내리거나 천정에서 떨어진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감기에 걸리기 마련이지만 하는 수 없이 창문을 여러 개 열어놓지 않을 수 없다.’ 그는 런던의 웨스트엔드에 있는 16개의 가장 큰 작업장들의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환기의 나쁜 이러한 방들에서 노동자 한 명당 공간은 가장 큰 것이 270입방피트이고 가장 적은 것이 105입방피트이며 모두 평균하여 156입방피트에 지나지 않는다. 사방이 복도로 되어 있고 천정으로밖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한 작업장에서는 92명 내지 100명이 일하고 있으며, 수많은 가스등에서 가스가 타고, 변소가 작업장 바로 옆에 있으며, 공간은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50~351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한 명당 150입방피트를 넘지 않는다. 또한 작업장은 개우리처럼 마당의 한구석에 있으며 빛과 공기가 지붕에 뚫린 자그마한 틈으로 밖에는 들어오지 않는데 한 명당 112입방피트의 공간에서 대여섯 명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스미드 박사가 서술하고 있는 이 한심한(atrocious) 작업장에서 재봉공들은 보통 하루에 12~13시간씩 일하며 때로는 15~16시간씩이나 일을 계속한다”(25, 26, 28페이지).

종업원수	산업부분과 지방	연령별 사망율(10만 명당)		
		25~35세	35~45세	45~55세
958, 265	농업, 잉글랜드와 웨일즈	743	805	1, 145
남자 22, 301 여자 12, 377	재봉공, 런던	958	1, 262	2, 093
13, 803	채자공과 인쇄공, 런던	894	1, 747	2, 367

지적해야 할 것은——사실 이 점을 의무부장이며 보고작성자인 존 사이몬이 지적하고 있지만——런던의 재봉공, 채자공 및 인쇄공의 사망율은 25~35살에 대해서는 너무 적게 들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이 두 산업부문들에서는 런던의 고용자들이 수많은 젊은이들(아마도 30살까지의)을 농촌에서 도제와 견습공(improvers)으로 즉 일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받기 때문이다. 이들은 런던의 산업인구의 사망을 계산하는 기초로 되는 취업자수를 늘어나게 하지만 같은 비율로 런던의 사망자수를 늘어나게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런던에 임시 거주하는 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기간에 그들이 병에 걸리면 그들은 농촌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죽으면 거기에서 사망자로 신고된다. 이 사정은 더 젊은 연령층에서는 더 심하며 따라서 런던에서 이 연령층에 대한 사망율은 공업이 건강에 해롭다는 지표로서는 아무런 의의도 없게 된다(30페이지).

채자공의 사정도 재봉공의 사정과 비슷한데 그들은 환기가 잘 안되고 독한 공기가 도는 데서 밤일까지 한다. 그들의 노동시간은 보통 12~13시간이며 때로는 15~16시간이다.

“가스불이 켜지면 무척 더워지고 숨이 막힌다. …활자를 주조하는 데서 나오는 증기 또는 기계나 하수도구멍에서 풍기는 악취가 아래층에서 올라와 위층방의 불행을 더 심하게 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아래층방의 더워진 공기로 하여 바닥이 덥혀지는 것만으로도 위층방은 더워지며 또 가스를 많이 쓰는데 방까지 낮으면 이것이야말로 큰 불행이다. 증기가마가 아래층방에 있고 온 집안에 전될 수 없는 열기가 가득 차 있는 경우에 사태는 더 나쁘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환기시설이 매우 불만족하고 전혀 부족하여 해가진 다음에 방안의 열기와 가스가 타면서 생기는 냄새를 뱃 수가 없으며 그리고 많은 작업장들 특히 전에 살림집이었던 작업장들에서는 위생상태가 그야말로 한심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일부 작업장들 특히 주간신문들을 찍어내는 작업장들에서는 역시 12살에서 16살까지의 어린이들이 일하고 있는데 두 낮과 하루 밤 동안 거의 중단없이 작업이 계속된다. 긴급한 일을 맡아 하여야 하는 다른 채자실에서는 노동자는 일요일에는 쉬지 못하며 그리하여 그의 노동일은 매주 6일이 아니라 7일이다(26, 28페이지).

부인복을 만드는 여공들(milliners and dressmakers)에 대해서는 이미 「자본론」, 제1부, 제8장, 3, 215~217페이지*에서 지나친 노동과 관련하여 말하였다. 그들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용한 보고서에서 오드 박사가 서술하고 있다. 낮에는 좀 나은 편이라고 하더라도 가스가 타는 시간에는 작업장이 너무 덥고 공기가 흐리며 건강에 나쁘다. 오드 박사가 조사한 비교적 나은 34개의 작업장들에서 여공 한 명에게 돌아가는 공간은 평균 다음과 같았다.

“500입방피트 이상이 4개소, 400~500입방피트가 4개소, …200~250입방피트가 7개소, 150~200입방피트가 4개소, 끝으로 100~150입방피트밖에 안되는 곳이 9개소. 이 가운데서 조건이 가장 좋은 곳들에서도 환기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일을 계속하는 데 공기가 겨우 자랄까 말까 할 정도이다. …환기가 잘 되더라도 작업장들은 날이 저문 다음에는 가스불을 많이 켜야 하므로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04~305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몹시 무덥고 숨막힐 지경이다.”

그리고 오드 박사는 중개인(middleman)이 대주는 돈으로 경영하는 작은 부류의 작업장에 들러보고 이 작업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한 방은 공간이 1,280입방피트인데 여기에 14명이 있었다. 일인당 공간은 91.5입방피트이다. 여기에서 여공들은 기진맥진한 것같이 보였다. 그들의 수입은 한 주일에 7~15달러로 되어 있고 그 밖에 차를 마시게 되어 있다. …노동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다. 작은 방에 이 14명이 꽂차 있어 공기가 나빴다. 열 수 있는 창문이 두 개, 난로가 하나 있었지만 이 난로는 막혀 있었다. 특별한 환기장치는 아무것도 없었다”(27페이지).

똑같은 보고에서 부인복을 만드는 여공들의 지나친 노동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부인들의 유행복을 만드는 양복점에서 젊은 여성들이 지나친 노동을 하는 것은 한 해에 약 네 달에 지나지 않지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때때로 사람들의 놀라움과 격분을 일으켜 왔다. 이 네 달 동안에는 작업장에서 하루에 꼬박 14시간이나 일하는 것이 예사로 되고 있으며 급한 주문이 쌓일 때에는 하루에 17~18시간이나 일한다. 다른 계절들에도 아마 10~14시간은 일할 것이다. 자기집에서 일하는 이들은 정해놓고 12시간이나 13시간은 일한다. 부인외투, 갓, 속옷 등을 만드는 데서는 재봉틀을 돌리면서 하는 노동을 포함하여 공동작업장에서 하는 노동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고 대체로 10~12시간을 넘지 않는다. 그러나 오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어떤 양복점에서는 정해놓은 노동시간이 어떤 때에는 특별보수를 주는 과외시간으로 하여 매우 길어지며 다른 양복점에서는 정해놓은 노동시간 후에 일감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완성한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과외노동은 흔히 강제적이라는 것을 덧붙여 말할 수 있다”(28페이지).

존 사이몬은 이 페이지에 단 한 주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방역협회 서기인 레드클리프 씨는 일류급 양복점에서 부인복을 만드는 여공들의 건강상태를 조사할 기회를 특히 많이 가졌었는데 ‘아주 건강하다’고 스스로 말한 때 20명 가운데서 실제로 건강한 여공은 단 한 명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나머지 여공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력이 없고 신경이 쇠약하며 따라서 여러 가지 기능장애를 받고 있었다. 그 원인으로서 그가 듣고 있는 것은 첫째로 노동시간이 긴 것인데 이 노동시간이 한가한 계절에도 하루 최소한 12시간이라고 그는 보고 있다. 둘째로 작업장이 비좁고 환기가 나쁘며 가스불로 공기가 흐려지고 먹는 것이 모자라거나 나쁘며 실내의 편의를 잘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이몬 박사는 결국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다.

“이론상으로 건강에 대한 노동자들의 초보적 권리로 되는 다음과 같은 권리 즉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작업을 시키건 간에 이 공동작업을 하는데서 쓸데없이 건강에 해로운 모든 조건들을 고용주가 가능한 한에서 그리고 그의 부담으로 없애치우게 하라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에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노동자들 자신이 위생상의 이 정당한 권리를 자기들의 힘으로 쟁취할 수 없는 동안에는 그들은 입법자의 의도에는 관계없이 노동위생법을 실시하여야 할 당국의 어떠한 효과적인 방조도 바랄 수 없다”(29페이지). “고용주들이 법률에 복종하여야 할 한계를 정확히 규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곤란한 점들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건강을 보호하라는 요구는 원칙상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전적으로 그들의 작업의 성격 때문에 받는 끝없는 육체적 고통으로 하여 지금 쓸데없이 생명이 해를 입고 또 줄어드는 수백만 남녀노동자들을 위하여 나는 감히 다음과 같은 희망을 말하여둔다. 즉 일반적으로 노동의 위생조건들은 어디서나 응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며 적어도 모든 실내작업장에 환기가 잘 되도록 하며 또 성질상 건강에 해로운 노동부문에서는 어디서나 특히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될수록 제한하여야 한다”(31페이지).

제 3 절 동력의 생산 및 전달에서와 건물에서의 절약

I. 호너는 1852년 10월의 자기 보고에서 증기망치를 발명한 이름 있는 기사인 페트리크로프트의 제임스 네이스미드의 편지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편지 속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구조변경과 개량(증기기관들의)으로 하여 동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늘어났는가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우리 지방(랭카셔)의 기계의 힘은 거의 40년 동안이나 겹겹이 편협한 인습에 갇혀 있었으나 이제는 다행히 이 인습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최근 15년 동안에, 특히 최근 4년 동안에(따라서 1848년 이후) 압축증기기관들을 돌리는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 똑같은 기관들이 석탄을 펍 적게 쓰면서도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이 지방의 공장들에 증기의 힘을 도입한 이후 아주 여러 해 동안에 압축증기기관들의 피스톤 가동속도는 1분간에 근 220피트였다. 즉 피스톤 행정이 5피트인 기관은 이미 분당 크랭크샤프트의 회전수 22로 제한되어 있었다. 이보다 더 빨리 기관을 돌리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모든 장치가 1분간에 220피트라는 피스톤의 이 운동속도에 맞게 되어 있었으므로 이렇게 느리고 쓸데없이 제한된 속도가 여러 해 동안이나 전체 산업에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규정을 다행히 모르고 그랬던지 어떤 대담한 혁신자가 의식적으로 그랬던지 누가 한 번 속도를 규정보다 더 높여 보았으며 그 결과가 극히 좋았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그 모범을 따랐다. 당시 사람들이 말한 바와 같이 기계의 고평가 늦추어졌으며 전도기의 주되는 바퀴가 개조되어 장치는 이전 속도를 유지하였지만 증기기관은 분당 300피트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었다. ...증기기관의 속도가 이렇게 빨라진 것은 이제는 거의 일반적이다. 그것은 똑같은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동력을 더 많이 얻을 뿐 아니라 관성바퀴의 탄력이 커진 결과 운동 자체가 훨씬 규칙적으로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증기압력과 압축기의 진공도가 의연 같다면 피스톤의 운동속도가 빨라지는 것만으로도 더 많은 동력을 얻는다. 예컨대 분당 200피트의 속도로 40마력을 내는 증기기관을 고쳐 증기압력과 진공도가 같은 조건에서 분당 400피트의

속도를 내게 할 수 있다면 꼭 2배의 동력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증기압력과 진공도는 두 경우에 다 똑같으므로 기계의 개별적 부분들의 긴장, 따라서 사고의 위험성은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여도 그다지 커지지는 않을 것이다. 차이는 다만 피스톤의 운동속도가 빨라지는 데 비례하여 비슷하게 더 많은 증기를 쓴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또 베어링 즉 마찰되는 부분들이 좀 빨리 마멸되게 되는데 이것은 거의 문제도 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스톤의 운동을 빠르게 하여 똑같은 기관에서 더 많은 동력을 얻자면 똑같은 증기가마에 더 많은 석탄을 때거나 증기를 만드는 능력이 더 큰 가마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더 많은 증기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그렇게 되었는데 증기를 내는 능력이 더 큰 가마를 속도가 빨라진 낡은 기관에 설치하였다. 그리하여 이 기관은 많은 경우에 100%나 더 많은 일을 하였다. 콘월 광산의 증기기관이 매우 값싸게 동력을 얻어냈는데 이것은 1842년경에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 시작하였다. 면방직공업에서의 경쟁으로 하여 공장주들은 이윤의 주되는 원천을 절약에서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콘월식 기관과 다른 기관들 사이에 시간당 및 마력당 석탄소비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과 또한 울프의 쌍기통식 기관이 매우 경제적이라는 것으로 하여 우리 지방에서도 연료절약문제가 전면에 나서게 된다. 콘월식 기관과 울프의 쌍기통식 기관은 시간당 한 마력을 내는 데 $3\frac{1}{2}$ 내지 4파운드씩 석탄을 썼는데 면방직공업지방의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8~12파운드의 석탄을 써야 한 시간에 한 마력을 냈다. 이렇듯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 공장주들과 기계제작업자들도 콘월과 프랑스에서는 벌써 보통으로 된 것과 비슷한 수단으로 그러한 매우 경제적인 성과를 거두려고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석탄값이 비싸서 공장주들은 그들의 기업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이 항목을 될수록 줄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어 매우 중요한 결과들이 이루어졌다. 첫째로, 이윤이 높았던 이전 호경기 때에는 상반신을 찬 바깥 공기에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던 많은 가마들을 이제는 두꺼운 모직천이나 벽돌과 모르타르 또는 그 밖의 재료로 싸주게 되어 그토록 많은 비용으로 얻은 열이 날아가지 않게 되었다. 증기관도 똑같은 방식으로 보호하였으며 또한 기통도 모직천과 나무로 싸주었다. 둘째로, 고압을 쓰게 되었다. 전에는 안전밸이 1평방인치당 4~6파운드나 8파운드의 증기압력을 받아도 열렸으나 이제는 압력을 14파운드나 20파운드로 끌어올림으로써 ...석탄이 매우 절약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장에서 석탄을

훨씬 더 적게 쓰면서 일하게 되었다. …자금이 있고 진취성이 있는 사람들은 압력을 최고로 높여 그에 맞게 만든 증기가마를 썼는데 이러한 증기가마는 1평방인치당 30, 40, 60, 70파운드 압력의 증기를 냈다. 낡은 식에 물젖은 기사가 이러한 압력을 보면 놀라 자빠질 것이다. 그러나 높아진 증기압력의 경제적 성과는 …파운드, 실링, 페니라는 뚜렷한 형태로 알려졌으므로 압축기에서 고압가마를 쓰는 것은 거의 일반적으로 되었다. 개량을 철저히 한 사람들은 울프식 기관을 썼는데 요즘 지은 공장들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하였다. 특히 쌍기통의 울프식 기관을 썼는데 그중 한 기통에서는 가마에서 오는 증기의 압력이 대기의 압력보다 높으므로 그 증기가 동력을 내며 그 다음에 그 증기가 전과 같이 피스톤이 운동할 때마다 공중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용적이 근 4배나 큰 저압기통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더 팽창된 후에 압축기로 들어간다. 이러한 기관을 쓴 결과로 얻는 절약은 한 시간에 한 마력을 내는 데 $3\frac{1}{2}$ ~4파운드 석탄이면 된다는 데 있다. 그런데 낡은 식의 기관들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12~14파운드의 석탄이 들었던 것이다. 묘하게 장치하여 기통이 두 대 달린 즉 고압과 저압을 결합한 기관인 울프식을 이미 있는 낡은 기관에 적용할 수 있었으며 그리하여 석탄은 더 적게 쓰면서도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다. 고압기계에서 쓴 증기가 압축기가 넘어가서 이것을 돌리도록 고압기계와 압축기를 결합시킴으로써 똑같은 결과가 최근 8~10년 동안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체계는 많은 경우에 이로운 것이었다.

이전의 기관에 이 새로운 개량의 일부나 전부를 적용하여 그 기관의 작업능력이 얼마나 커지는가를 정확히 알아내기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똑같은 무게의 증기기관으로 우리가 지금 적어도 평균 50%나 더 많은 작업량을 얻고 있으며 또 많은 경우에 속도가 분당 220피트로 제한되었던 때에 50마력을 낸 똑같은 증기기관이 지금은 100마력 이상을 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압축기에 고압을 적용하여 얻는 경제적 성과가 아주 크며 또 기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낡은 증기기관에 대한 요구가 훨씬 높아져서 최근 3년 동안에 관형가마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증기를 만들어내는 비용이 또다시 크게 줄어들었다”(「1852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23~27페이지).

동력기에 대하여 한 말은 전도기와 작업기에 대하여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최근 몇 해 동안에 기계가 빠른 속도로 개량되었기 때문에 공장주들은 동력을 늘이지 않고도 생산을 확대할 수 있었다. 노동일이 짧아졌기 때문에 노동력을 아껴쓸 필요가 있게 되었으며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공장들에서는 대부분 언제나 어떻게 하면 지출을 적게 하면서도 생산을 늘일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있다. 우리 지방의 매우 유식한 한 공장주의 호의로 나는 1840년부터 지금까지의 기간에 그의 공장에서 일한 노동자들의 수와 나이, 적용한 기계와 지불한 임금에 관한 자료를 얻게 되었다. 1840년 10월에 그의 상사에 속한 공장에서는 600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200명은 13살 아래였다. 1852년 10월에는 350명의 노동자들밖에 없었으며 그 가운데서 겨우 60명이 13살 아래였다. 이 두 해에 공장에서 돌린 기계의 수는 거의 똑같았으며 지불한 임금액도 같았다”(『1852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58~59페이지에 있는 레드그레이브의 보고).

기계의 이러한 개량은 그 기계를 목적에 맞게 새로 지은 공장건물에 설치할 때에 비로소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

“기계의 개량과 관련하여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무엇보다 먼저 이 새로운 기계를 설치하는 데 알맞게 되어 있는 건물을 짓는 데서 큰 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나는 아래층에서 실을 모두 꼬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만 29,000개의 연사가락을 설치하고 있다. 이 방과 여기에 곁붙인 방에서만도 나는 노력을 적어도 10% 절약하고 있다. 이것은 실꼬는 방법 자체를 개량한 결과라기보다 기계들을 유일한 조종을 받도록 집중시킨 결과이다. 그리고 나는 똑같은 수의 가락을 단 하나의 전도축으로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나는 다른 상사들에 비하여 전도장치에서만도 60~80%를 절약한다. 그 밖에도 기름, 지방 등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나는 공장건설을 개량하고 기계를 개량하여 적게 잡아도 노력을 10% 절약하였으며 그와 함께 동력, 석탄, 석유, 윤활유, 동력축, 띠 등을 크게 절약하였다”(『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09, 110페이지에 있는 한 면방직업자의 진술).

제4절 생산에서 나오는 폐물의 이용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과 소비에서 나오는 폐물의 이용범위는 넓어진다. 생산에서 나오는 폐물이란 공업과 농업의 폐물을 말하며 소비에서 나오는 폐물이란 일부는 사람의 자연적 물질대사에서 나오는 배설물, 일부는 소비품이 소비된 다음에 떠는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생산에서 나오는 폐물은 화학공업에서는 부산물——이것은 소규모생산에서는 잃어버리고 만다——이며 기계제작에서 폐물로 되어 나와 다시 원료로서 철생산에 들어가는 쇠밥 등이다. 소비에서 나오는 폐물은 사람의 유기체에서 떨어져나오는 자연물질, 누더기가 된 옷 등이다. 소비에서 나오는 폐물은 농업에 가장 중요하다. 이 폐물을 이용하는 면에서 자본주의경제는 엄청난 낭비를 한다. 자본주의경제는 예컨대 런던에서 450만명의 똥오줌을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템즈강에 흘려보내 그 강을 더럽히는 것보다 더 좋은 사용방도를 모른다.

원료의 값이 오르는 것이 폐물을 이용하게 하는 자극으로 되는 것은 물론이다.

대체로 이렇게 다시 이용하게 하는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폐물의 양이 많다는 것인데 이것은 오직 대규모의 노동에서만 나온다. 그리고 기계의 개량인데 이것으로 하여 주어진 형태로는 전에 쓸 수 없었던 재료가 새로운 생산에 쓰일 수 있는 모습을 띠게 된다. 그리고 또 과학, 특히 화학의 진보인데 이 진보로 하여 이러한 폐물의 쓸모있는 속성들을 알아내게 된다. 물론 예컨대 롬바르디아와 중국 남부, 일본에서처럼 원예식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의 농업에서도 이러한 종류의 많은 절약이 생긴다. 그러나 대체로 이러한 체계에서 농업의 생산성은 사람의 노동력을 크게 낭비하여 얻어지는 것인데 이 노동력은 결국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끌어들인다.

이른바 폐물은 거의 모든 산업부문에서 큰 역할을 논다. 예컨대 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에서 잉글랜드와 아일랜드의 많은 지방들에서 차지농업가들이 아마재배를 마지못해 드물게밖에 하지 않는 주되는

이유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고 있다.

“많은 폐물이 ...수력으로 돌리는 작은 아마타기 공장(scutch mills)에서 아마를 가공할 때 생긴다. ...폐물은 목화를 가공할 때에는 비교적 적지만 아마를 가공할 때에는 아주 많다. 물에 담그고 기계로 빋질할 때 잘 처리하면서 이 손실은 어지간히 제한할 수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아마의 빋질이 흔히 아주 서툴러 28~30%나 잃어버린다”(『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39, 142 페이지).

이 모든 것은 더 좋은 기계를 쓰면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에 아마폐물이 너무나 많아서 공장감독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몇 개 아마타기 공장에서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마를 타는 노동자들은 거기에서 생긴 폐물을 흔히 집으로 가지고 가서 난로의 연료로 쓴다는데 이 폐물이야말로 아주 값나가는 것이다”(같은 보고, 140페이지).

숨폐물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원료의 가격변동을 취급하는 곳에서 말할 것이다.

양털공업에서는 아마를 가공하는 공업에서보다 숨씨가 있었다.

“전에는 양털폐물과 양털누더기를 다시 가공하기 위하여 수집하는 것을 보통 창피한 일로 보았으나 이 편견은 재생양털공업(shoddy trade)과 관련하여 완전히 사라졌다. 이 재생양털공업은 요크셔 지방의 양털공업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또 숨폐물을 가공하는 기업도 얼마 안가서 공인된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 기업부문으로서 똑같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30년 전에는 양털누더기 즉 순모직 천조각 등은 그 값이 톤당 평균 4파운드 스텔링 4실링이었는데 최근 몇 해 동안에 톤당 44파운드 스텔링으로 되었다. 그리고 수요가 펴 늘어나서 털과 숨의 혼방직도 이용되고 있는데 그것은 털은 상하지 않고 숨만 없애버리는 방법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재생양털을 만드는 데 종사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소비자는 큰 이익을 보고 있다. 그것은 소비자가 지금 대체로 질이 좋은

천을 아주 싼 값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다”(『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07페이지).

이와같이 재생되는 양털은 1862년 말에 벌써 영국공업의 양털 총소비량의 1/3에 이르렀다(『1862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81페이지). 소비자가 보는 큰 이익은 그의 모직옷이 전에 입던 기간의 3분의 1만 입으면 해지고 6분의 1만 입으면 실율이 보이게 된다는 데 있다.

영국의 견직공업도 똑같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1839~1862년 사이에 진짜 생고치실의 소비는 좀 줄었는데 한편 고치실 폐물의 소비는 2배로 늘었다. 개량된 기계로 다른 조건에서는 거의 값없는 이 재료에서 여러 가지 목적에 쓸 수 있는 견직물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폐물 이용의 가장 뚜렷한 실례를 보여주는 것은 화학공업이다. 화학공업은 새로운 이용방도를 찾아냄으로써 그 자체의 폐물을 소비할 뿐 아니라 다종다양한 다른 공업들의 폐물도 소비한다. 예컨대 전에는 거의 쓸모없는 가스타르로 아닐린물감, 알리자린을 만들며 요즘은 또 약재도 만든다.

생산에서 나오는 폐물을 다시 이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이 절약과 구별해야 할 것은 폐물 자체를 줄임으로써 이루어지는 절약 즉 생산에서 나오는 폐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생산에 들어가는 모든 원료와 보조자재를 최대한으로 직접 이용하는 것이다.

폐물의 절약은 부분적으로는 적용하는 기계의 좋은 품질에 의하여 절약된다. 기계의 부분품들이 더 정확히 만들어져 있고 더 잘 닦아져 있으면 있을수록 기름, 비누 등은 더 절약된다. 이것은 보조자재와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원료가 생산과정에서 폐물로 되어 나오는 부분이 더 많은가 또는 더 적은가 하는 것은 적용하는 기계와 도구의 품질에 달려 있다. 끝으로 이것은 원료 자체의 품질에도 달려 있다. 원료 자체의 품질은 이번에는 부분적으로 원료를 생산하는 채취공업과 농업의 발전수준에(원래 뜻의 개발의 진보에) 달려 있으며 부분적으로 원료가 가공공업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과정들의 발전정도에 달려 있다.

“파르망띠에가 증명한 데 의하면 그다지 멀지 않은 시기, 예컨대 루이 14세 시대 이래 프랑스에서는 알곡제분술이 크게 발전하여 새로운 제분기에서는 낫은 제분기에 비하여 똑같은 양의 알곡으로 거의 배반(倍半)이나 되는 빵을 낼 수 있다. 사실 파리주민의 한 명당 한 해 알곡소비량은 처음에는 4스피에, 다음에는 3스피에, 마지막에는 2스피에로 보았는데 지금은 $1\frac{1}{3}$ 스피에 즉 약 342파운드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오랫동안 살아온 페르쉐에서는 화강암과 트라프암으로 된 맷돌이 있는 거칠게 만든 제분기가 대부분 최근 30년간 크게 발전한 기계학의 원리에 따라 개조되었다. 그 제분기에는 라 페르페에서 나는 좋은 맷돌을 달고 알곡을 두 번 갈았으며 체를 빙글빙글 돌게 하였다. 그리하여 똑같은 양의 알곡에서 $1/6$ 이나 더 많은 가루를 냈다. 그래서 나는 로마 사람들과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알곡량에서 크나큰 차이가 있는 것을 쉽게 납득하게 된다. 그 원인은 전적으로 가루를 내고 빵을 만드는 방법들의 결합에 있다. 또한 플리니우스가 제18권, 제20장, 제2절에서 …로마에서는 밀가루가 품질에 따라 각각 모디우스*당 40, 48 또는 96아스**로 팔렸다고 하는 주목할만한 사실도 나는 그와 같이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시의 알곡가격에 비하여 밀가루가격이 그렇게 높았던 것은 당시 제분기가 아직 유치하고 불완전하였으며 따라서 가루내는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듀로 드 라 말, 『로마 사람들의 정치경제학』, 파리, 1840년, 제1권, 280~281페이지).

제5절 발명에 의한 절약

고정자본을 적용하는 데서 생기는 이상과 같은 절약들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동조건들이 큰 규모로 적용되는 결과이다. 요컨대 노동조건들이 직접 사회적인, 사회화된 노동의 조건들으로써 또는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접적 협업의 조건들로서 쓰이는 결과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조건에서만 기계적 및 화학적 발명들이 상품의 가격을 비싸게 하지

* 고대 로마에서 알곡을 되는 단위. 1모디우스는 약 9리터이다. 편집부

** 고대 로마의 화폐단위. 편집부

않으면서 적용될 수 있는데 마지막에 말한 이 사정은 언제나 없어서는 안될 조건이다. 또 한편으로는 생산이 큰 규모로 진행되어야 비로소 공동으로 하는 생산적 소비에서 절약이 나올 수 있다. 끝으로 어디서 어떻게 절약할 것인가, 이미 이루어진 발견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손쉽게 이용할 것인가, 이론의 요구대로 따르면서 즉 이론을 생산과정에 적용하면서 나서는 실제적 애로를 어떻게 하면 뚫고 나가겠는가 하는 것 등은 결합된 노동자의 경험이 비로소 알아내고 보여준다.

그건 그렇고 또 일반적 노동과 공동노동을 구별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노동은 생산과정에서 각각 자기 역할을 놓고 이것이 저것으로 되고 저것이 이것으로 되지만 그것들 사이에는 또한 차이도 있다. 일반적 노동이란 온갖 과학적 노동, 온갖 발견, 온갖 발명이다. 일반적 노동은 부분적으로는 현시대 사람들의 협업에 의하여 제약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지난날의 사람들의 노동을 이용하는 것에 의하여 제약되어 있다. 공동노동이란 개인들의 직접적 협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위에서 말한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본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의하여 새로 확증된다.

1) 새 기계를 처음 만들 때의 비용과 그것을 재생산할 때의 비용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유어와 바베지의 저서들²¹을 참조하라.

2) 일반적으로 새로운 발명을 처음으로 적용하는 기업의 경영비는 언제나 나중에 이 기업의 폐허 위에서, 그 유골 위에서 일어서는 기업의 경영비보다 훨씬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새로운 어린 기업가는 대체로 파산당하기 마련이고 그 건물, 기계 등을 보다 헐값으로 손에 넣는 후의 기업가가 비로소 성하게 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 노동과 인간정신의 모든 새로운 발전에서 그리고 결합된 노동에 의하여 그 발전을 사회적으로 적용하는 데서 가장 큰 이윤을 끌어내는 것은 대체로 한 푼의 값도 없고 가련하기 그지없는 화폐자본의 대표자들이다.

제 6 장 가격변동의 영향

제1절 원료가격의 변동과 이윤율에 미치는 그 직접적 영향

여기에서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잉여가치율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다고 전제한다. 이러한 전제는 주어진 경우를 순수한 상태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잉여가치율이 의연 같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살펴보아야 할 원료가격의 변동으로 하여 원료가 줄어들거나 늘어남에 따라 한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의 수가 늘거나 주는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잉여가치율은 달라지지 않아도 잉여가치량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여기에서는 제쳐놓아야 한다. 기계의 개량과 원료가격의 변동이 주어진 자본이 사용하는 노동자의 수나 임금의 크기에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1) 불변자본의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과 2) 임금의 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해답은 저절로 나온다.

그러나 전에 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불변자본을 절약한 결과이건 원료가격의 변동의 결과이건 변동이 일어난다면 그 변동으로 하여 임금과 따라서 잉여가치율과 잉여가치량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윤율은 언제나 영향을 받는다. 그 변동은 $m' \frac{v}{C}$ 에서 C의 크기를 달라지게 하며 따라서 분수 전체의 값을 달라지게 한다. 따라서 이 변동이 어떤 생산분야에서 일어나는가, 이 변동의 영향을 받는 산업부문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을 생산하는가 또는 그러한 생활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불변자본을 생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잉여가치를 살펴보던 경우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전혀 아무래도 좋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두 그 변동이 사치품생산에서 일어나는 경우에도 똑같이 들어맞는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치품생산이란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치 않는 모든 생산을 두고 말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원료에는 인디고, 석탄, 가스 등과 같은 보조자재도 들어간다. 그리고 또 기계를 이 항목에서 살펴보는 한에서는 기계 자체의 원료는 쇠, 나무, 가죽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기계 자체의 가격은 그것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료의 가격변동으로 하여 영향을 받는다. 기계의 가격이 그 기계를 이루는 원료이건 그 기계를 돌리는 데 쓰는 보조자재이건 그 가격변동으로 하여 오르면 그만큼 이윤율도 떨어진다. 반대의 경우에는 결과도 반대로 된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상품의 생산에 직접 들어가는 원료의 가격변동에만 그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원료가 노동수단으로서 기능을 노는 기계생산의 원료이거나 그 기계를 돌리는 데 들어가는 보조자재인 한에서는 그 원료를 제쳐놓고 본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것만은 여기에서 말해두어야 하겠다. 즉 기계를 만들고 적용하는 데 드는 주되는 요소들인 쇠, 석탄, 나무 등의 자연적 부는 여기에서는 자본의 자연적 생산성으로서 나타나며 임금수준이 높은가 낮은가에는 관계없이 이윤율을 규정하는 한 가지 요소이다.

이윤율은 m/C 또는 $\frac{m}{c+v}$ 이므로 m 과 v 그리고 이것들의 호상비율이 의연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c 따라서 C 의 크기에 변동을 가져오는 모든 사정은 또한 이윤율에도 변동을 가져온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원료는 불변자본을 이루는 한 주요부분이다. 고유한 의미의 원료가 조금도 들어가지 않는 사업부문들에도 원료는 보조자재로나 기계의 구성부분 등으로 들어가며 그리하여 원료의 가격변동은 그만큼 이윤율에 영향을 미친다. 원료의 가격이 d 액만큼 떨어지면 m/C 또는 $\frac{m}{c+v}$ 은 $\frac{m}{C-d}$ 또는 $\frac{m}{(c-d)+v}$ 으로 된다. 따라서 이윤율은 오른다. 반대로 원료의 가격이 오르면 m/C 또는 $\frac{m}{c+v}$ 은 이제는 $\frac{m}{C+d}$ 또는 $\frac{m}{(c+d)+v}$ 으로 되며, 따라서 이윤율은 떨어진다. 그러므로 그 밖의 사정들이 같다면 이윤율은

원료의 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오르내린다. 이로부터 특히 원료가격의 변동에 따라 생산물의 판매분야에서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도, 따라서 수요와 공급 관계를 전혀 제쳐놓고 보더라도 공업국에 있어서 원료의 낮은 가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대외무역이 생활필수품의 값을 싸게 함으로써 임금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이윤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대외무역은 공업이나 농업에서 쓰는 원료나 보조자재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이윤율의 본성과 그리고 잉여가치율과의 특수한 차이를 전혀 꿰뚫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경제학자들은 실제적 경험에 매달려 이윤율에 미치는 원료가격의 큰 영향을 강조하면서도 이것을 이론적으로 그릇되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토렌스²⁾ 다른 편으로는 리카아도²³처럼 일반적 원리에 매달리고 있는 어떤 경제학자들은 예컨대 이윤율에 미치는 세계무역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원료에 대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는 것이 공업에 아주 중요하다는 것은 알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를 될수록 자유롭게 수입하자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진 보호관세제도의 주되는 명제였다. 이것은 곡물관세²⁴의 폐지와 함께 목화에 대한 관세도 폐지하려고 특히 애를 쓴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주되는 목표였다.

원래의 원료가 아니라 보조자재——동시에 주된 음식물이기도 한——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로 될 수 있는 것은 면방직업에서 밀가루를 쓰는 것이다. 1837년에 벌써 R. H. 그레그¹³⁾가 계산한 데 의하면 당시 대영제국의 면방직업에서 돌리는 10만대의 역직기와 25만대의 수직기는 해마다 4,100만파운드의 밀가루를 낱실의 풀떡이에 썼다. 여기에 또 이 양의 3분의 1이 표백과 그 밖의 공정들에 더 들었다. 이렇게 쓴 밀가루의 총가치를 그는 최근 10년 동안에 해마다 342,0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고 보고 있다. 대륙의 밀가루가격과 비교해 보면 곡물관세로 하여 공장주들은 밀가루에만도 해마다 17만파운드 스텔링을 더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3) R. H. 그레그, 「공장문제와 10시간노동법안」, 런던, 1837년, 115페이지.

1837년에는 그렇게 더 지불한 것이 적어도 20만파운드 스텔링이었다고 그레그는 보고 있으며 밀가루에 더 지불한 가격이 해마다 1,000파운드 스텔링에 이른 한 상사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세심하고 타산이 센 기업가들인 대공장주들은 곡물관세가 폐지되면 하루 10시간노동으로도 아주 넉넉할 것이라고 말하였다”(『1848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98페이지).

곡물관세는 폐지되었다. 그 밖에 목화와 다른 원료들에 대한 관세도 폐지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되자 10시간노동법안²⁵에 대한 공장주들의 반대는 어느때보다도 심해졌다. 그렇지만 그후 곧 10시간공장노동이 법으로 되었을 때 그 첫 결과로서 나타난 것은 임금을 전반적으로 낮추려는 시도였다.

고정자본의 요소들의 가치는 그 고정자본이 마멸되는 정도에 따라서만, 따라서 점차적으로만 생산물에 들어가는데 원료와 보조자재의 가치는 그것들을 써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가치에 몽땅 한꺼번에 들어간다. 그러므로 이윤율은 적용되는 자본 가운데서 어느 부분이 소비되건 이에는 관계 없이 적용되는 자본의 총가치액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생산물의 가격은 고정자본의 가격보다도 원료가격의 영향을 훨씬 더 받게 된다. 그러나 시장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것은 개별적 상품의 가격에 달렸으며 이 가격이 오르내리는 데 반비례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그저 스쳐지나가는 김에 말해 둘 따름인데 그것은 여기서 우리는 아직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리며 따라서 경쟁으로 하여 생기는 가격변동은 전혀 도외시된다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제품의 가격이 원료의 가격이 오르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니며 또 원료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리는 경우에 비하여 이윤율은 어떤 경우에는 더 떨어지며 또 어떤 경우에는 더 오른다.

그리고 또 적용되는 기계의 양과 가치는 노동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늘어나지만 이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 즉 이 기계에서 나오는 생산력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원료가 들어가는 산업부문들 즉 노동대상 자체가 이미 이전 노동의 생산물인 그러한 산업부문들에서는 늘어나는 노동생산력이 바로 더 많은 양의 원료가 일정한 양의 노동을 빨아들이는 비율에서, 따라서 예컨대 한 노동시간에 생산물로 전화되고 상품으로 가공되는 원료의 양이 늘어나는 데서 표현된다. 따라서 노동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원료의 가치는 상품생산물의 가치 가운데서 더욱더 늘어나는 구성부분을 이루는데 이것은 원료의 가치가 상품생산물의 가치 속에 몽땅 들어가기 때문만이 아니라 생산물 전체의 각 부분에서 기계의 마멸로 이루어지는 부분과 새로 덧붙은 노동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둘 다 끊임없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부분이 줄어드는 결과에 원료로 이루어지는 다른 가치부분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 그런데 이 원료 자체를 생산하는 데 돌리는 노동생산성이 늘어나 원료의 가치가 이에 따라 줄어들음으로써 이 상대적 장성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그러하다.

원료와 보조자재는 임금과 꼭 마찬가지로 유동자본의 구성부분들을 이루며 따라서 생산물이 팔릴 때마다 언제나 몽땅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한편 기계는 그 마멸분만이 그것도 처음에는 예비금의 형태로 보상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 생산물이 팔릴 때마다 그 마멸분이 이 예비금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며 다만 한 해 동안에 팔리는 전액에서 그 해 동안의 마멸분이 예비금으로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또 보게 되는 것은 원료가격이 오르면 재생산과정 전체가 제한되거나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상품을 팔아 손에 넣은 가격으로는 상품의 모든 요소들을 다 보상할 수 없거나 또 그 가격으로는 생산과정을 그 기술적 기초에 맞는 규모로 계속해나갈 수 없으며 그리하여 일부 기계만을 돌리거나 모든 기계를 여느 때처럼 웅근 시간 다 돌릴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하다.

끝으로 폐물로 하여 드는 비용은 원료가격의 변동에 정비례하여 달라지는데 원료의 가격이 오르면 그 비용도 오르고 원료의 가격이 떨어지면 그 비용도 떨어진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1850년에

벌써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원료가격이 올라 보게 되는 큰 손실의 한 원천은 실지 방적업자가 아니라면 거의 누구도 모를 것이다. 그것은 곧 폐물로 하여 보게 되는 손실이다. 내가 들건대 목화가격이 오르면 방적업자, 특히 질이 낮은 실을 뽑는 방적업자의 비용은 그가 더 지불한 가격보다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한다. 굵은 실을 뽑을 때 나오는 폐물은 15% 이상이나 된다. 따라서 이 올대로 하여 목화가격이 파운드당 3½페니일 때에 파운드당 1/2페니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 목화가격이 파운드당 7페니로 오르면 손실은 벌써 파운드당 1페니로 된다”(1850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7페이지).

그러나 미국의 국내전쟁으로 하여 목화가격이 거의 100년 이래 있어 본 적이 없는 높이로 올랐을 때 우리는 전혀 판판의 보고내용을 보게 된다.

“지금 목화폐물에 대하여 받는 가격과 그 폐물을 원료로 공장에서 다시 쓰는 것으로 해서 인도목화와 미국목화 사이에 폐물에 의한 손실에서 생기는 차이가 어느 정도 메워진다. 이 차이는 약 12½%이다. 인도목화를 가공하는 경우에 입는 손실은 25%이며 그리하여 방적업자가 실제로 그 목화에 들이는 비용은 그가 그 목화에 지불하는 것보다 1/4이나 더 많다. 폐물로 인한 손실은 미국목화가 파운드당 5~6페니였을 때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손실은 파운드당 3/4페니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파운드의 목화에 2실링이 들며 따라서 폐물에 의한 손실이 6페니나 되는 오늘날에는 그 손실은 아주 중요하다”(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06페이지).

-
- 14) 보고의 마지막 구절에는 잘못이 있다. 폐물에 의한 손실은 6페니가 아니라 3페니로 되어야 한다. 이 손실은 물론 인도목화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25%가 되지만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미국목화를 가공하는 경우에는 12½~15%에 지나지 않으며 가격이 5~6페니였을 때에 바로 이 올은 옳게 계산되었다. 국내전쟁의 마지막 몇 해 동안에 구라파에 들어온 미국목화의 경우에도 폐물의 비율이 전에 비하여 흔히 훨씬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F.E.

제2절 자본의 가치증대와 가치감소, 자본이 풀려나오는 것과 매이는 것

우리가 이 장에서 연구하는 현상들이 충분히 발전하는 데서 전제로 되는 것은 신용제도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인데 세계시장은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이며 생활환경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더 구체적인 이 형태들은 자본의 일반적 본성을 파악한 후에야만 남김없이 연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이 형태들의 연구는 우리 저작의 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으며 이 저작의 계속이라도 쓴다면 그곳에서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제목에 제시된 현상들은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 현상들은 첫째로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둘째로 이윤율과도 이윤량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현상들은 이윤율뿐 아니라 이윤량——이것은 사실상 잉여가치량과 같은 것이다——도 사실상 잉여가치의 양과 잉여가치의 율의 움직임과는 관계없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 듯한 환상이 조성되기 때문에도 이 현상들을 간단히나마 살펴보아야 한다.

한편으로는 자본이 풀려나오는 것과 매이는 것, 다른 편으로는 자본의 가치증대와 가치감소, 이것들을 각각 다른 현상들이라고 볼 수 있는가?

우선 문제로 되는 것은 자본이 풀려나오는 것과 매이는 것이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이다. 자본의 가치증대와 가치감소는 설명하지 않아도 알만하다. 그것은 이미 있는 자본이 어떤 일반적인 경제사정으로——임의의 어떤 사적 자본의 특수한 운명은 여기서는 문제시되지 않기 때문에——그 가치가 늘거나 준다는 것, 따라서 생산에 선대한 자본의 가치가 그 자본이 적용하는 잉여노동에 의하여 그 자본의 가치가 불어나는 것과는 관계없이 늘거나 준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자본이 매이는 것이란 생산을 전과 같은 규모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생산물의 총가치 가운데서 일정한 주어진 부분들이 불변자본이나 가변자본의 요소들로 새로 다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이 풀려나오는 것이란 생산물의 총가치 가운데서 지금까지 불변자본이나 가변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한 부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것이 남아돌아가게 된다는 것——물론 생산은 전과 같은 규모로 진행되지만——을 의미한다. 이렇게 자본이 풀려나오는 것 또는 매이는 것은 소득이 풀려나오는 것 또는 매이는 것과는 다르다. 자본 C의 한 해 잉여가치가 x 라면 자본가들의 소비로 들어가는 상품들의 값이 싸지는 결과에 전과 같은 향락품을 마련하는데 $x-a$ 면 넉넉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한 부분인 a 는 풀려나오며 이것은 이제는 소비를 늘이는 데 쓰이거나 자본으로 다시 전화하는 데(축적하는 데) 쓰일 수 있다. 반대로 똑같은 생활양식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x+a$ 가 필요하다면 이 생활양식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되거나 전에는 축적되었던 소득의 한 부분 a 를 이제는 소득으로서 지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치증대와 가치감소는 불변자본이나 가변자본에서 또는 이 두 자본에서 다 볼 수 있으며 또 불변자본의 경우에는 역시 그 고정적 부분이나 유동적 부분 또는 이 두 부분에서 다 볼 수 있다.

불변자본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원료와 보조자재——여기에는 반제품도 들어가는데 이것들을 통털어 우리는 여기에서 원료라고 한다——그리고 기계와 그 밖의 고정자본이다.

위에서 우리는 특히 원료의 가격 또는 가치의 변동과 그것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밖의 사정들이 같다면 이윤율은 원료가치의 크기에 반비례한다는 일반적 법칙을 세워놓았다. 그리고 이 법칙은 새로 기업에 투하되는 자본에서는, 따라서 투자 즉 생산자본으로의 화폐의 전화가 처음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무조건 옳다.

그러나 이 새로 투하되는 자본을 제쳐놓고 보면 이미 기능을 놓고 있는 자본의 한 큰 부분은 유통분야에 있는데 다른 한 부분은 생산분야에 있다. 한 부분은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으며 화폐로 전화되어야 한다. 다른 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건 화폐로서 있으며 생산조건들로 다시 전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또 한 부분은 생산분야 안에 있는데 일부는 원료와 보조자재, 시장에서 나온 반제품, 기계와 그 밖의 고정자본이라는 생산수단의 원래의 형태로 있고 또 일부는 아직 만들고 있는 생산물로서 있다. 이 경우에 가치증대나 가치감소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은 이 구성부분들의 호상비례관계에 크게 달려 있다.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우선 고정자본은 모두 제쳐놓고 다만 불변자본 가운데서 원료와 보조자재, 반제품, 만들고 있는 상품과 다 되어 시장에 있는 상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만을 보기로 하자.

원래 예컨대 목화가격이 오르면 그보다 값싼 목화로 만든 면제품——실과 같은 반제품과 천과 같은 다 된 상품 등——의 가격도 오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 가공 중에 있는 목화의 가치나, 아직 가공되지 않고 창고에 있는 목화의 가치가 다 오른다. 가공 중에 있는 목화는 달라진 조건의 반대적 작용으로 하여 더 많은 노동시간을 표현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목화는 그것이 구성부분으로서 들어가는 생산물에다 그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으며 자본가가 그것에 지불한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덧붙인다.

그리하여 시장에서의 원료가격이 오르는 것과 함께 다 된 상품——그 완성정도가 어떻든지 간에——의 양이 많다면 이 상품의 가치가 오르며 따라서 이미 있는 자본의 가치도 오른다. 생산자들의 손에 있는 원료예비 등에 대하여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가치증대로 하여 개별적 자본가나 한 산업분야 전체의 자본가들까지도 원료가격이 오른 결과에 이윤율이 떨어지는 데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경쟁의 영향을 세세히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1) 창고에 있는 원료예비가 어지간히 많다면 그것은 원료생산지에서 가격이 오르는 데 반작용한다. 2) 시장에 있는 반제품이나 다 된 상품이 시장에 아주 무거운 부담으로 된다면 그것들은 다 된 상품과 반제품의 가격이 원료의 가격에 비례하여 오르지 못하게 한다.

반대로 원료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정들이 같다면 이윤율이 오른다. 시장에 있는 상품들, 아직 만들고 있는 제품, 원료예비는 가치가 떨어지며 이에 따라 이윤율이 동시에 오르는 데 반작용한다.

예컨대 생산년도 말에, 원료가 새로 대량적으로 공급되는 시기에, 따라서 농업생산에서는 수확이 끝난 후에 생산분야와 시장에 있는 예비가 적으면 적을수록 원료의 가격변동의 영향은 더욱더 순수하게 나타난다.

우리의 모든 연구에서는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은 실제적 가치변동의

표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가격변동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로 되고 있으므로 이 가격변동 자체의 원인은 사실상 아무래도 좋다. 따라서 여기에서 전개하고 있는 결론은 가격이 오르내리는 것이 가치변동의 결과가 아니라 신용제도, 경쟁 등의 영향을 받은 결과인 경우에도 역시 옳은 것이다.

이윤율은 선대한 총자본에 대한 생산물가치의 초과분의 비율과 같으므로 선대한 자본의 가치감소로 하여 이윤율이 오르는 것은 자본가치의 손실과 결부되는데 이것은 선대한 자본의 가치증대로 하여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이 자본가치의 이득과 결부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다.

불변자본의 다른 부분인 기계와 일반적으로 고정자본으로 말하면 여기에서 보게 되는 그리고 특히 건축물과 토지투자 등과 관련된 가치증대는 지대에 관한 학설과 결부시키지 않고서는 서술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기에서는 취급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자본부분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들 가운데서 일반적 의의를 가지는 것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먼저 들어야 할 것은 끊임없는 개량인데 이것으로 하여 이미 있는 기계, 공장건물 등은 일정한 정도로 그 사용가치를 잃으며 이에 따라 그 가치도 잃는다. 이 과정은 특히 새로운 기계를 도입한 첫 시기에는 이 기계가 아직 완전한 것으로 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이 기계는 그 가치를 미처 재생산하기 전에 끊임없이 낡아지는 것이다. 이 시기에 보통 노동시간을 한정없이 연장하며 낮과 밤에 교대작업으로 계속 일을 시키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렇게 하여 기계의 마멸분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액을 공제하지 않고 기계의 가치를 될수록 짧은 기간에 재생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하여 기계의 작용기간이 짧아지는 데 대하여(예전되는 새로운 개량으로 하여 기계의 수명이 짧아지는 데 대하여)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그 기계는 도덕적 마멸분으로 너무 많은 가치부분을 생산물에 옮겨 놓으며 그리하여 그 기계는 손노동과도 경쟁할 수 없다.¹⁵⁾

15) 실례는 특히 바베지의 저서²⁶⁾를 보라. 임금을 낮추는 것과 같은 보복 쓰는 수단이 이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끊임없는 가치감

기계, 건축물, 일반적으로 고정자본이 일정하게 완전한 것으로 되고 그리하여 그것들이 비교적 오랫동안 적어도 그 기본구조에서는 변함없다면 그와 같은 가치감소가 일어나는 것은 이 고정자본을 재생산하는 방법이 개량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 기계 등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그 기계가 더 새롭고 더 생산적인 기계가 나와 빨리 밀려나거나 어느 정도 그 가치가 감소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더 값싸게 재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큰 기업체가 흔히 그 첫번째 소유자가 파산당한 다음에 두번째 소유자의 손에서 융성하는 원인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그 기업체를 값싸게 사들이는 두번째 소유자는 그 때문에 애초부터 더 적은 투자로 자기의 생산을 시작한다.

농업에서 특히 뚜렷한 것은 생산물 가격을 오르내리게 하는 똑같은 원인으로 하여 자본가치도 또한 오르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자본 자체가 대부분 알곡, 짐짐승과 같은 생산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리카아도²⁷).

가변자본에 대하여 몇 마디 더 말해야 할 것이다.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생활수단의 가치가 오르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가 오르며 반대로 이 생활수단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는 한에서는——그런데 가변자본의 가치증대와 가치감소는 이 두 경우 밖에는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는다. 노동일의 길이가 의연 같은 경우에 생활수단의 가치가 오르면 잉여가치는 떨어지며 생활수단의 가치가 떨어지면 잉여가치는 늘어난다. 그러나 동시에 다른 사정들——자본이 풀려나오는 것과 매이는 것——도 이와 결부될 수 있다. 이 사정들은 아직 연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이제 간단히 살펴보아야 하겠다.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는(이 경우에 노동의 실질적 가격은 심지어 오를 수도 있다) 탓으로 임금이 떨어지면 이제까지 임금에 지출되었던

소는 케어리 씨가 자기의 조화된 머리속에서 꿈꾸는 것과는 판판으로 작용한다.

자본의 한 부분은 풀려나온다. 즉 가변자본이 풀려나오게 된다. 그리하여 새로 투하되는 자본이 받는 영향은 이 자본이 높아진 잉여가치율로 기능을 논다는 것뿐이다. 전보다 적은 화폐를 가지고 똑같은 양의 노동을 가동시키며 그리하여 노동의 부지불부분이 지불부분을 희생으로 하여 늘어난다. 그러나 이제까지 일해오던 자본으로 말하면 그 잉여가치율이 오를 뿐 아니라 그 밖에도 이제까지 임금에 지출된 자본의 한 부분이 풀려나온다. 이 부분은 이제까지 매어 있었으며 늘 생산물의 판매대금에서 떨어져나와 기업을 전과 같은 규모로 계속해 나가자면 임금으로 지출되고 가변자본으로서 기능을 놀지 않으면 안되었던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바로 같은 기업을 늘이기 위해서이건 다른 어떤 생산분야에서 기능을 놀도록 하기 위해서이건 새로운 투자로서 이용할 수 있다.

예컨대 한 주일에 500명의 노동자들을 가동시키는 데 처음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이 들었으나 이제는 400파운드 스텔링밖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생산된 가치의 양이 두 경우에 다 1,000파운드 스텔링이라면 한 주일 동안의 잉여가치의 양은 첫째 경우에는 500파운드 스텔링이고 잉여가치율은 $500/500=100\%$ 이다. 그러나 임금이 떨어진 다음에 잉여가치량은 1,000파운드 스텔링-400파운드 스텔링=600파운드 스텔링으로 되며 잉여가치율은 $600/400=150\%$ 로 될 것이다. 그리고 잉여가치율이 이렇게 오른 것은 400파운드 스텔링과 그에 해당하는 불변자본을 가지고 똑같은 생산분야에서 새로운 기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미 기능을 놀고 있는 기업에서는 이 경우에 가변자본의 가치가 떨어진 탓으로 잉여가치량이 500파운드 스텔링에서 600파운드 스텔링으로 오르고 잉여가치율이 100%에서 150%로 올랐을 뿐 아니라 그 밖에 100파운드 스텔링이 가변자본에서 풀려나왔으며 이것으로 다시 노동을 착취할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노동량을 더 유리하게 착취할 뿐 아니라 이 100파운드 스텔링이 풀려나옴으로써 똑같은 500파운드 스텔링을 가지고 전보다 더 많은 노동자들을 전보다 높아진 잉여가치율로 착취할 수 있다.

이제는 반대의 경우를 보자. 노동자가 500명인 경우에 맨 처음에 생산

물이 분배되는 비율이 $400v+600m=1,000$ 이며 따라서 잉여가치율이 150%라고 하자. 따라서 이 경우에 노동자는 한 주일에 $4/5$ 파운드 스텔링=16실링을 받는다. 가변자본의 가치가 늘어난 탓으로 이제는 500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으로 한 주일에 500파운드 스텔링이 든다면 개개 노동자의 한 주일의 임금은 1파운드 스텔링이며 400파운드 스텔링으로는 400명의 노동자들밖에 가동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전과 똑같은 수의 노동자들을 가동시킨다면 $500v+500m=1,000$ 으로 된다. 잉여가치율은 150%에서 100%로 즉 $1/3$ 만큼 떨어질 것이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에서는 잉여가치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유일한 결과일 것이다. 그 밖의 사정들이 같다면 이윤율도 그에 따라 같은 비율로는 아니더라도 떨어질 것이다. 예컨대 $c=2,000$ 이라면 첫째 경우에는 $2,000c+400v+600m=3,000$ 이며 $m'=150\%$, $p'=600/2,400=25\%$ 이다. 둘째 경우에는 $2,000c+500v+500m=3,000$, $m'=100\%$, $p'=500/2,500=20\%$ 이다. 이와 반대로 이미 기능을 놓고 있는 자본에서는 결과는 두 가지로 될 것이다. 4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400명의 노동자들밖에는 그것도 100%의 잉여가치율로밖에 쓸 수 없다. 따라서 그들이 생산한 잉여가치는 모두 400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리고 또 2,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불변자본을 가동시키자면 500명의 노동자들이 필요하므로 400명의 노동자들은 1,6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불변자본밖에 가동시킬 수 없다. 따라서 생산을 전과 같은 규모로 계속해 나가자면 가변자본을 100파운드 스텔링만큼 늘이며 또 전과 같이 500명의 노동자를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까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자본을 매이게 해야만 이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생산을 늘이는데 써야 할 축적의 한 부분은 이제는 다만 모자라는 것을 채우는 데 쓰이거나 또는 소득으로서 지출하게 되어 있던 부분은 이전의 자본에 추가된다. 그리하여 100파운드 스텔링만큼 늘어난 가변자본의 지출은 100파운드 스텔링만큼 적은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똑같은 수의 노동자들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더 많은 자본이 필요하며 동시에 개개 노동자가 가져다 주는 잉여가치는 줄어든다.

가변자본이 풀려나오는 데서 나오는 이득과 그것이 매이는 데서 나오

는 손실은 어느 것이나 다 이미 기능을 놓고 있는 따라서 주어진 비율들로 재생산되고 있는 자본에서만 있게 된다. 새로 투하되는 자본에서는 한편에서의 이득과 다른 편에서의 손실은 잉여가치율을 오르거나 떨어지게 하며 그리고 이에 따라 결코 같은 비례로는 아니더라도 이윤율의 변동을 가져온다.

바로 위에서 연구한, 가변자본이 풀려나오는 것과 매이는 것은 가변자본의 요소들의 가치 즉 노동력의 재생산비가 떨어지거나 오른 결과이다. 그러나 임금율이 의연 같은 경우에 생산력이 발전한 결과 똑같은 양의 불변자본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노동자들이 적어지더라도 가변자본은 풀려나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반대로 노동생산력이 떨어진 결과 똑같은 양의 불변자본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게 되면 추가적 가변자본이 매이게 될 수 있다. 그런데 전에 가변자본으로서 적용되던 자본의 한 부분이 이제는 불변자본의 형태로 적용되면, 따라서 똑같은 자본의 구성부분들 사이에서 분배가 달라질 따름이라면 이것은 물론 잉여가치율과 이윤율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자본이 매이고 풀려나온다는, 여기에서 살펴보고 있는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불변자본도 역시 이미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의 가치증대나 가치감소의 결과 매이거나 풀려나올 수 있다. 이 경우를 제쳐놓고 보면 불변자본이 매이는 것은(가변자본의 한 부분이 불변자본으로 전화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노동생산력이 늘고 따라서 똑같은 노동량이 더 많은 생산물을 생산하며 그에 따라 더 많은 불변자본을 가동시키는 경우만이다. 어떤 사정에서는 이와 똑같은 일이 예컨대 농업에서와 같이 생산력이 줄어들어 똑같은 노동량이 똑같은 생산물을 생산하는데 예컨대 더 많은 씨앗이거나 거름, 물빼기시설 등 더 많은 생산수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개량과 자연력의 응용 등으로 하여 가치가 더 적은 불변자본이 전에 가치가 더 많은 불변자본이 수행한 것과 똑같은 기술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면 불변자본은 그 요소들의 가치가 감소되지 않고도 풀려나올 수 있다.

「자본론」 제2부에서 이미 본 것처럼* 상품이 화폐로 전화된 다음에 즉 팔린 다음에 이 화폐의 일정한 부분은 다시 불변자본의 소재적 요소들로, 그것도 주어진 개개 생산분야의 일정한 기술적 성격이 요구하는 비율로 다시 전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점에서 볼 때 모든 부문에서——임금, 따라서 가변자본을 제쳐놓고——가장 중요한 요소는 보조자재도 포함한 원료인데 보조자재는 광업과 일반적으로 채취공업에서와 같이 고유한 의미의 원료가 들어가지 않는 생산부문들에서 특히 중요하다. 가격 가운데서 기계의 마멸분을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은 기계가 일반적으로 아직 돌아갈 수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관념적으로 계산에 들어간다. 그런데 그 부분이 화폐로 지불되고 보상되는 것이 오늘날인가 내일인가 또는 자본의 회전기간의 어느 순간인가 하는 것은 크게 문제로 되지 않는다. 원료는 사정이 이와 다르다. 원료의 가격이 오르면 상품의 가치에서 임금을 뺀 다음에 그 가격을 완전히 보상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격변동이 심하면 재생산과정이 중단되거나 커다란 충격을 일으키며 심지어 파탄되기까지 한다. 특히 원래의 농업생산물, 유기적 자연에서 나오는 원료는 수확고 등이 변동하는 결과에 그러한 가치변동을——여기에서는 아직 신용제도의 영향은 아주 제쳐놓고 본다——일으킨다. 이 경우에 마음대로 안되는 자연조건들, 날씨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 등에 따라 똑같은 노동량이 매우 다른 사용가치량으로 표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용가치의 일정한 분량은 그에 따라 매우 다른 가격을 가질 것이다. x 라는 가치가 100파운드의 상품 a 로 표시된다면 한 파운드의 상품 a 의 가격은 $x/100$ 이며 그것이 1,000파운드의 상품 a 로 표시된다면 한 파운드의 상품 a 의 가격은 $x/1,000$ 이다. 따라서 이것은 원료의 이 가격변동의 한 요소이다. 둘째 요소는 여기에서 완전을 기하기 위하여 말해 둘 따름이지만——경쟁이나 신용제도는 여기에서는 아직 우리가 살펴보는 테두리 밖에 있으므로——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식물성 원료와 동물성 원료는 그 성장과 생산이 일정한 유기적 법칙들의 지배를 받으며

* 이 전집, 제24권, 제3편 「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 유통」을 보라. 편집부

어떤 자연적 기간들에 매어 있어서 사물의 본성으로 하여 예컨대 기계와 그 밖의 고정자본, 석탄과 광석 등과 똑같은 정도로 갑자기 늘어날 수는 없다. 기계와 그 밖의 고정자본, 석탄과 광석 등은 다른 자연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전제하면 공업이 발전한 나라에서 아주 짧은 기간에 늘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불변자본 가운데서 기계 등 고정자본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그 생산과 장성이 유기적 원료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생산과 장성보다 훨씬 앞서며 그리하여 이 원료에 대한 수요가 그 공급보다 더 빨리 늘어나고 따라서 그 가격이 오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기까지 하다. 사실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결과 다음과 같이 된다. 1) 원료가 더 먼 데서 공급되는데 그것은 오른 가격에 의해서 더 드는 수송비가 메워지지 때문이다. 2) 원료의 생산이 늘어난다. 그런데 생산물의 양은 사물의 본성에 의하여 곧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한 해가 지나야 비로소 실제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3) 전에 이용하지 않던 대용품을 이용하며 그리고 폐물을 더 경제적으로 다룬다. 가격이 오르는 것이 생산의 확대와 공급에 아주 뚜렷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대체로 벌써 전환점에 이른 것이며 그후에는 원료와 이 원료를 요소로 하는 모든 상품들의 가격이 오랫동안 줄곧 오르기만 한 결과에 수요가 떨어지며 따라서 또 원료의 가격의 움직임에서도 반작용이 일어난다. 이 반작용이 자본의 가치 감소를 통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일으키는 경련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다른 일련의 사정들이 또 생기는데 이에 대하여 꼭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선 이제까지 말한 데서 벌써 명백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면 할수록 그리고 이에 따라 불변자본 가운데서 기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을 갑자기 또 끊임없이 늘어나게 하는 수단이 커지면 커질수록, 축적이 빠르면 빠를수록(특히 번영기에) 기계와 그 밖의 고정자본의 상대적 과잉생산은 더 커지고, 식물성 원료와 동물성 원료의 상대적 과소생산은 더 잦아지며, 위에서 말한 것처럼 그러한 원료들의 가격이 오르며 또 이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며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주되는 요소의 하나가 이와같이 심한 가격변동을 일으키는 데서 생기는 급격한 변화가 더 잦아진다.

그런데 원료의 가격이 올라서 한편으로는 수요가 줄어들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는 생산이 확대되고, 저기서는 이제까지 거의 이용되지 않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았던 먼 생산지방으로부터 원료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과 함께 원료의 공급이 원료에 대한 수요를 초과하기 때문에——원래의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특히 초과한다——이 높은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 결과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원료의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 그 원료의 재생산이 지장을 받으며 그리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그것을 생산하는 나라들이 그 수출을 다시 독점하게 된다. 물론 어떤 제한이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원료의 재생산은 자극을 받아 확대된 규모에서 진행되는 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특히 이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그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기계 등이 늘어난 탓으로 진행되는 생산의 바탕, 얼마간의 동요가 있는 다음에 이제는 새로운 정상적인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어야 할 그 바탕은 최근의 회전주기 동안에 진행된 과정을 통하여 매우 확대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있어서 부차적인 원료 원천지들의 한 부분에서는 방금 늘어났을 따름인 재생산이 다시 크게 지장을 받았다. 그리하여 예컨대 수출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최근 30년 동안(1865년까지) 인도의 목화생산은 미국의 목화생산이 떨어졌을 때 늘었다가 그후에 갑자기 다시 얼마간 오랫동안 뒤걸음질치고 있다. 원료가격이 오를 때에는 산업자본가들은 모여서 생산을 조절하기 위한 협회들을 결성한다. 예컨대 1848년에 목화가격이 오른 후에 맨체스터에서 그러하였으며 아일랜드에서의 아마 생산과 관련해서도 그러하였다. 그러나 직접적인 자극이 사라지고 가장 값싼 시장에서 산다는(위에서 말한 협회들이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원료 생산물을 제공하는 나라들이 당시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그 생산물의 한때의 가격에는 관계없이 이 나라들의 생산능력을 늘이려고 할 대신에) 경쟁의 일반적 원칙이 다시 지배하게 되자, 즉 경쟁의 원칙이 다시 절대적으로 지배하게 되자 공급을 조절하는 것은 다시 가격에 내맡겨진다. 원료의 생산을 공동으로 단호하게 그리고 예견성있게 통제한다는 온갖 사상——이러한 통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언제나 헛된 염원으로 되고 말거나 직접 큰 위험과 궁지에 빠졌을 순간에 예외적으로 취하는 공동조치에 그치는 것이다——은 수요와 공급이 서로 조절될 것이라는 신념에 자리를 내준다.¹⁶⁾ 이 점에서 자본가들의 미신이 얼마나 심한지 공장감독관들까지도 그들의 보고에서 재삼 이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면 물론 또다시 원료값이 싸진다. 이것이 수요를 늘어나게 하는 데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쳐놓고 보더라도 위에서 말한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이 자극으로서 또한 이에 덧붙는다. 그리고 그 경우에 기계 등의 생산이 원료의 생산을 점차 앞서는, 위에서 말한 과정이 큰 규모에서 되풀이 된다. 원료가 양적으로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손색없이, 예컨대 질적으로 미국목화에 못지 않는 목화가 인도에서 제공되리만큼 원료가 실제로 좋아지려면 구라파의 수요가 오래 계속되고 규칙적으로 늘어나야 하며 또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한다(인도의 생산자가 그의 본국에서 처해 있는 경제적 조건들은 다 제쳐놓고 본다). 그러나 원료의 생산분야는 비약적으로만 달라진다. 즉 갑자기 늘어났다가도 다시 폭 줄어들곤 한다. 이 모든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일반의 정신도 마찬가지이지만 1861~1865년의 목화

16) 이 글을 쓴 때(1865년)로부터 모든 문명국들, 특히 미국과 독일에서 공업이 빨리 발전한 결과 세계시장에서 경쟁은 훨씬 더 심해졌다. 빠르고도 엄청나게 커진 현생산력은 이 생산력이 그 테두리 안에서 작용하여야 할 자본주의적 상품교환의 법칙들을 날에 날마다 더욱더 크게 뛰어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오늘날에는 심지어 자본가들 자신의 의식 속에까지 더욱더 스며들고 있다. 이것이 특히 두 가지 징조에서 보게 된다. 첫째로는 새로운 전반적인 보호관세열에서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수출될 수 있는 물품을 가장 잘 보호한다는 점에서 특히 종래의 보호관세주의와 구별된다. 둘째로는 큰 생산분야 전체의 공장주들이 생산을, 따라서 가격과 이윤을 조절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카르텔(트러스트)들에서 보게 된다. 이러한 실험들은 경제적으로 비교적 좋은 날씨가 계속되는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모진 바람이라도 한 번 불면 이 실험들은 휘날려버리며 생산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맡아 할 사명을 지닌 것은 확실히 자본가계급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고야 말 것이다. 그 동안은 이 카르텔들의 목적은 오직 작은 자본가들이 이제까지보다도 더 빨리 큰 자본가들에게 먹히게 하자는 데 있을 뿐이다. —F.E.

기근²⁸을 예로 들어 연구하는 것이 아주 좋은데 이때에는 재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인 원료가 한때 완전히 떨어졌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었다. 즉 공급이 넉넉하더라도 비교적 어려운 조건에서 그러하다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원료가 실제로 모자랄 수도 있다. 목화공황때에는 맨 처음에 원료의 실제적 부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산의 역사에서 현대에 아주 가까이 이르면 이룰수록 우리는 유기적 자연에서 나오는 원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올라갔다가도 그후에는 이 때문에 그 가치가 다시 떨어지면서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바뀌는 것을 더 규칙적으로 보게 되는데 특히 결정적 산업부문들에서 그러하다. 이제까지 말하여온 것에 대한 예증을 공장감독관의 보고에서 취한 다음 예들에서 보게 될 것이다.

농업을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다라도 역시 얻을 수 있는 역사의 교훈은 자본주의제도가 합리적인 농업과 모순된다는 것 또는 합리적인 농업이 자본주의제도와 양립할 수 없으며(비록 자본주의제도가 농업의 기술적 발전을 다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스스로 일하며 살아가는 소농민의 손이거나 연합한 생산자들의 통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바로 위에서 말한 예증들을 영국 공장감독관의 보고에서 들어 보자.

“영업형편은 비교적 좋다. 그러나 호경기와 불경기의 순환은 기계가 늘어남에 따라 짧아지며 또 그와 함께 원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므로营业을 하여 가는 데서 동요도 더 자주 되풀이된다. …1857년의 공황 후 지금은 신심이 회복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공황 그 자체를 거의 완전히 잊은 듯하다. 이러한 좋은 형편이 오래 가겠는가 안가겠는가 원료의 가격에 아주 크게 달려 있다. 내가 보기에는 일부 경우에는 최고한도에 이미 이른 즉 그것을 넘으면 생산이 더욱더 불리하게 되며 마침내는 전혀 이윤을 낼 수 없게 되는 최고한도에 이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가는털실공업에서 벌이가 좋았던 해들인 1849년과 1850년을 들어보면 알게 되듯이 영국산 가는 털실의 가격은 파운드당 13페니였고 오스트레일리아산은 14 내지 17페니였으며 1841~1850년의

10년을 평균하면 영국산 양털의 평균가격은 파운드당 14페니를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산은 17페니를 결코 넘지 않았다. 그러나 불리한 해였던 1857년 초에 오스트레일리아산 양털은 23페니로 팔렸다. 공황이 절정에 이르렀던 12월에는 그것이 18페니로 떨어졌으나 1858년 중에는 다시 올라 현재의 가격 21페니에 이르렀다. 영국산 양털도 역시 1857년 초에 20페니였다가 4월과 9월에는 21페니로 올랐고 1858년 1월에는 14페니로 떨어졌으며 그후 17페니까지 올랐고 그리하여 지금은 위에서 말한 10년간 평균보다 파운드당 3페니가 높다. …이것은 그러한 가격들로 하여 당한 1857년의 파산을 잊어버렸거나 이미 있는 가락들이 뽑아낼 수 있는 양털만큼밖에는 생산되지 않거나 또는 천값이 계속 올라가리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나의 경험에서 알게 된 것은 믿기 어려울만큼 짧은 기간에 가락과 직기 수가 여러 곱으로 늘었을 뿐 아니라 그것들의 운전속도도 그렇게 늘었다는 것이며 또 프랑스로의 우리 양털의 수출이 거의 똑같은 비율로 늘었는데 인구는 빨리 늘어나고 양을 기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집짐승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돈으로 바꾸려 하기 때문에 국내에서나 국외에서나 기르고 있는 양의 평균나이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모르고 어떤 유기적 법칙의 테두리 안에서만 늘어날 수 있는 생산물의 공급에 성과가 달려 있는 기업에 자기들의 운명과 자기들의 자본을 건 사람들을 볼 때 나는 자주 불안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모든 원료의 수요와 공급의 형편이…면공업에서의 많은 동요와 또한 1857년 가을 영국 양털시장의 형편 그리고 그 결과인 산업공황을 설명하여 주는 것 같다”¹⁷⁾ (R. 베이커, 『1858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56~61페이지).

요크셔의 웨스트 라이딩의 가는털실공업의 번영기는 1849~1850년이였다. 그곳의 종업원수는 1838년에 29,246명, 1843년에 37,000명, 1845년에 48,097명, 1850년에 74,891명이였다. 바로 이 지방에서 역직기수는 1838년에 2,768대, 1841년에 11,458대, 1843년에 16,870대, 1845년에 19,121대,

17) 우리가 베이커 씨와 마찬가지로 1857년의 양털공황을 원료와 제품 사이의 가격상 불균형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이 불균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징조에 지나지 않았으며 공황은 전반적인 것이었다. — F. E.

1850년에 29,539대였다(『1850년〔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60페이지). 가는털실공업의 이 번영은 1850년 10월에는 벌써 의심스러운 것으로 되기 시작하였다. 부감독관 베이커는 1851년 4월의 보고에서 리즈와 브렛포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영업형편은 얼마 전부터 매우 불만족스럽다. 가는털실 방적업자들은 1850년의 이윤을 빨리 잃고 있으며 수많은 직조업자들도 이들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다. 지금은 이전의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양털기계가 멎고 있다고 나는 생각하며 아마방적업자들도 역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으며 기계를 멈추고 있다. 섬유공업의 순환들은 지금 사실 아주 불확실하며 얼마 안가서…가락의 생산능력과 원료의 양, 그리고 인구의 증가 사이에 아무런 균형도 유지되지 않고 있다는 견해에 우리가 이르리라고 나는 생각한다”(52페이지).

면공업의 형편도 똑같다. 위에서 인용한 1858년 10월의 보고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공장들에서 노동시간이 정해진 때로부터 섬유공업의 모든 부문들에서 원료의 소비액과 생산액 그리고 임금액은 간단한 비례법에 따라 설정되게 되었다. …나는 블랙번의 현시장인 베인즈 씨가 면공업에 관하여 최근에 한 보고에서 발췌한 것을 인용하려고 하는데 그는 거기에서 자기 지방의 산업통계자료를 아주 면밀하게 모아놓고 있다.

‘매 실제적 한 마력은 정방기가 달린 450개의 자동가락 또는 200개의 스로슬가락 또는 씨실감기기계와 날음기계 그리고 풀먹임기계가 달린 40인치 폭의 천을 짜는 15대의 직기를 가동시킨다. 매 한 마력당 사용되는 노동자수는 방적의 경우에는 $2\frac{1}{2}$ 명이지만 직조와 경우에는 10명이다. 그들의 평균임금은 한 주일에 한 사람당 $10\frac{1}{2}$ 실링 남짓하다. …가공되는 평균변수는 날실은 30~32번이고 씨실은 34~36번이다. 한 주일에 생산되는 실을 가락당 13온스라고 치면 한 주일에 824,700파운드의 실이 나오며 이를 위하여 28,300파운드 스틸링의 가격을 가진 970,000파운드 즉 2,300통구리의 목화가 소비된다. …우리 지방(블랙번을 중심으로 반경 5마일 둘레의)에서는 한 주일에 44,625파운드 스틸링의 가격을 가진 1,530,000파운드 즉 3,650통구리의 목화가 소비된다.

이것은 연합왕국 전체 면방직업의 1/18이고 기계직조업 전체의 1/6이다.’

따라서 베인즈 씨의 계산에 의하면 연합왕국의 면공업의 가락총수는 28,800,000개이며 이것을 충분히 가동시키려면 해마다 1,432,080,000파운드의 목화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목화수입은 수출을 뺀 다음에 1856년과 1857년에 1,022,576,832파운드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409,503,168파운드의 부족이 생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친절하게도 나에게 이야기 해준 베인즈 씨는 블랙번 지방의 소비에 기초하여 한 해 목화소비를 계산한 것은 실의 변수뿐 아니라 기계의 우수성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하여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연합왕국의 한 해 목화의 총소비를 10억파운드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가 옳고 또 실제로 2,250만파운드의 공급초과가 생긴다면 수요와 공급은 벌써 지금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추가되는 가락과 직기들을 또 고려에 넣어야 하는데 베인즈 씨에 의하면 그 자신의 지방에서는 추가되는 가락과 직기들이 설치되고 있고 또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다른 지방들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것이다”(59, 60, 61페이지).

제3절 일반적 예증. 1861~1865년의 목화공황

앞선 시기, 1845~1860년

1845년, 면공업의 변영기. 목화가격은 매우 낮았다. 이에 관하여 L. 호너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최근 8년 동안에 나는 지난 여름과 가을처럼 그렇게 영업이 활발하였던 시기를 보지 못하였다. 그것은 특히 면방직업에서 그러하였다. 온 반 년 동안 내내 나는 공장들에 새로운 투자가 있었다는 통보를 매주 받았다. 공장들이 새로 건설되었다는 것도 있고, 얼마 안되지만 비어 있었던 공장들이 새 임차인들을 맞이하였다는 것도 있으며, 돌아가고 있는 공장들이 확장되고 그 공장들에 새로운 보다 힘센 증기기관들과 더 많은 작업기들이 설치되었다는 것도 있었다”(『1845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3페이지).

1846년 불평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다.

“별써 오래 전부터 나는 면공장주들에게서 그들의 영업형편이 좋지 않다는 불평소리가 매우 널리 퍼지고 있는 것을 듣고 있다. …최근 6주일 동안에 여러 공장들이 하루에 12시간이 아니라 보통 8시간으로 조업을 단축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널리 퍼지고 있는 것 같다. …목화가격이 크게 뛰어 올랐으며 …제품가격은 조금도 오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목화가격이 뛰어 오르기 전보다 더 낮다. 최근 4년 동안에 면공장수가 크게 늘어나서 한편으로는 원료에 대한 수요가 심히 늘어나고 한편으로는 시장에 대한 제품공급이 심히 늘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두 가지 원인은 다같이 원료의 공급과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달라지지 않은 동안은 이윤을 떨어지도록 작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원인들은 훨씬 더 심하게 작용하였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목화의 공급이 요즘 넉넉하지 못하였으며 또 한편으로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여러 국내외의 시장들에서 줄었기 때문이다”(『1848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0페이지).

원료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와 제품이 시장에 차넘치는 것은 자연 손을 맞잡고 나아간다. 그것은 그렇고 당시에 공업이 확대되고 그에 경제상태가 뒤따르게 된 것은 면공업지방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브렛포드의 기넨털실 공업지방에는 1836년에 공장이 318개밖에 없었는데 1846년에는 490개로 되었다. 이 숫자들은 생산이 실제로 늘어난 것을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있는 공장들이 동시에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특히 아마방적공장들에 들어맞는다.

“최근 10년 동안에 이 공장들은 모두 시장을 차넘치게 하는데 많건적건 한 몫들을 하였는데 지금 영업이 정체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그 때문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영업형편이 좋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공장들과 기계들이 그렇게 빨리 확대된 당연한 결과이다”(『1846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30페이지).

1847년 10월에는 화폐공황이 있었다. 할인율은 8%. 그전에 별써 철도

투기와 동인도어음의 농간이 파탄되었다. 그런데

“베이커 씨는 목화와 양모 그리고 아마에 대한 수요가 이 공업부문들이 확장된 결과 최근 몇 해 동안에 늘어났다는 매우 흥미있는 상세한 자료를 내놓고 있다. 그는 이러한 원료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은 특히 그 공급이 훨씬 평균 이하로 떨어진 시기인 만큼 이 영업부문들의 형편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데는 구태여 화폐시장의 혼란을 들지 않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견해는 내 자신의 관찰과 그리고 전문가들에게서 내가 들은 것에 의하여 확증된다. 각각 다른 이 영업부문들은 모두 할인을 아직 5%나 그 이하로 쉽게 할 수 있었던 때에 벌써 그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았다. 한편 생명주실의 공업은 넉넉하였고 그 가격도 알맞춤하였으며 따라서 영업은 활기를 띠었었는데 마침내… 최근 2~3주일 동안에 의심할 바 없이 화폐공황은 생명주실 상인들뿐 아니라 더 심하게는 그들의 주되는 단골손님들인 유행품들을 만드는 공장주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관청에서 발표한 보고를 열핏 보더라도 면공업이 지난 3년 동안에 거의 27%나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때문에 목화는 대략 파운드당 4페니에서 6페니로 값이 올랐는데 실은 공급이 늘어난 때문에 이전의 가격을 조금 넘을 따름이다. 양털공업은 1836년에 확장되기 시작하였는데 그때부터 요크셔에서는 40%만큼 늘어났으며 스코틀랜드에서는 그보다 더 늘어났다. 가는털실 공업은 그보다 더 크게 늘어났다.¹⁸⁾ 이 경우에 똑같은 기간에 74% 이상 늘어났다는 것을 계산은 보여준다. 그러므로 생털의 소비는 굉장히 늘었다. 아마공업은 1839년부터 잉글랜드에서는 약 25%, 스코틀랜드에서는 22%, 아일랜드에서는 거의 90%나 늘어났다.¹⁹⁾ 그 결과 동시에 아마의 흥작으로 하여 원료는 톤당 10파운드 스틸링만큼 값이 올랐는데 실값은 반대로 한 단에 6페니나 떨어졌다”(『1847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30, 31페이지).

-
- 18) 영국에서는 양털공업(Woolen Manufacture)과 가는털실공업(Worsted Manufacture)을 엄밀히 구별하는데 전자는 짧은 양털에서 거친 털실을 뽑아 천을 짜며(주되는 중심지는 리즈이다) 후자는 긴 양털에서 가는 털실을 뽑아 천을 짠다(주되는 곳은 요크셔의 브래트포드이다). —F. E.
- 19) 아일랜드에서 아마실을 기계로 뽑는 공업이 이렇게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당시 독일(쉴레지엔, 라우지쯔, 베스트팔렌)에서 손으로 뽑는 실로 짠 아마천의 수출은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F. E.

1849년 1848년 마지막 몇 달째부터 영업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아마가격은 앞으로 거의 어떤 정황에서도 상당한 이윤을 보장할 만큼 낮았으므로 공장주들은 끊임없이营业을 계속해 나갈 수 있었다. …양털제품 공장주들은 연초에 한때 매우 바빠 돌아왔다. …그러나 내가 염려한 것은 양털상품의 위탁판매가 실제적 수요를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며 번영하고 있는 것같이 보이는 시기 즉 완전조업의 시기가 수요가 딱 알맞는 시기와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몇 달 동안 가는털실공업은 특히 형편이 좋았다. …위에서 말한 시기의 처음에는 양털은 값이 특히 낮았다. 방적업자들은 유리한 값으로 양털을 마련하였으며 그것도 확실히 상당히 많은 양을 마련하였다. 방적업자들은 거기에서 양털가격이 봄철 경매에 따라 올랐을 때 이익을 보았으며 또 이익을 유지해갔는데 그것은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컸으며 또 확고하였기 때문이다”(『1849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42페이지).

“우리가 최근 3~4년 동안에 잉글랜드의 공업지방들의 영업형편에서 일어난 변동들을 살펴본다면 공업의 정상적 행정에 혼란을 일으키는 큰 원인이 어디엔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늘어난 기계의 놀라운 생산력이 여기에서 하나의 요소로 될 수 없겠는가?”(『1849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42, 43페이지)

1848년 11월과 1849년 5월 그리고 10월까지의 여름에 영업은 더욱더 활기를 띠었다.

“이것은 특히 브랫포드와 헬리팩스를 중심으로 모여 있는 가는털실을 원료로 하는 제조업에 들어맞는다. 이 영업은 지나간 어느 시기에도 비슷하게나마 지금과 같이 확장된 일이 없었다. …원료에 대한 투기와 앞으로 원료가 얼마나 공급될 지 모른다는 사정으로 하여 면공업은 다른 어느 영업부문보다도 전부터 더 들뜨게 되었으며 더 자주 동요를 일으키게 되었다. 면공업에서는 지금 거친 목화상품의 재고가 쌓여 있으며 이 때문에 작은 방적업자들은 불안을 느끼고 이미 손해를 보고 있으며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서 많은 업자들은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1849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64, 65페이지).

1850년 4월, 영업은 계속 상황을 이룬다. 예외 :

“바로 굵은 번수의 실과 무거운 천을 위한 원료공급이 부족한 결과, 일부 면공업부문에서는 형편이 아주 좋지 않다. …최근에 기계가 더 많이 설치된 가는털실공업에서도 이러한 반작용이 일어나지 않겠는지 염려된다. 베이커 씨의 계산에 의하면 1849년 한 해에만도 이 공업부문에서는 직기의 생산물은 40%만큼, 가락의 생산물은 25~30%만큼 늘어났으며 영업은 같은 비율로 더욱 더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다”(1850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54페이지).

1850년, 10월.

“목화가격으로 하여 계속…이 공업부문은 적지 않게 형편이 나쁘다. 특히 원료가 생산비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는 상품들의 경우에 그러하다. 생명주실의 가격이 많이 뛰어들라 이 공업부문도 많은 경우에 형편이 좋지 않다”(1850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4페이지).

여기에서는 아일랜드의 왕립 아마재배협회 위원회의 보고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보고에 의하면 아일랜드에서는 다른 농산물의 가격은 낮았는데 아가가격은 높았기 때문에 다음해에 아마생산은 크게 늘어날 것이다 (같은 보고, 31, 33페이지).

1853년, 4월, 대번영.

“나는 지난 17년 동안 직무로 하여 랭카셔 공장지대의 형편을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전반적인 번영의 시기를 본 적이 없다. 모든 부문들이 다 매우 활기를 띠고 있다”고 L. 호너는 말하고 있다(1853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9페이지).

1853년, 10월 면공업의 불경기, 과잉생산(185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5페이지).

1854년 4월.

“양털공업은 비록 활발하지는 못하였지만 모든 공장들이 완전조업을 하였다. 면공업도 마찬가지다. 가는털실공업은 지난 온 반 년 동안이나 불규칙적이었다. …아마공업에서는 크림전쟁으로 하여 러시아로부터의 아마와 잠의 공급이 줄었기 때문에 혼란이 일어났다”(『1854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37페이지).

1859년.

“스코틀랜드의 아마공업은 아직도 형편이 나쁜데…그것은 원료가 부족되고 그 값이 비싸기 때문이다. 우리가 주로 공급을 받고 있는 발크해 연안나라들에서의 흉작으로 하여 이 지방의 영업은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많은 투박한 제품들에서 아마 대신에 점차 쓰고 있는 황마는 값이 그다지 비싸지도 않고 그 양이 넉넉하다. …던디에서 기계의 약 절반은 지금 황마에서 실을 뽑고 있다”(『1859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9페이지). “원료의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아마방적업은 아직도 벌이가 썩 좋지는 않으며 다른 모든 공장들은 완전조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기계는 멎고 있는 실례들이 많다. …황마방적업은…비교적 만족할만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은 최근에 이 원료의 값이 알맞춤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1859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20페이지).

1861~1864년. 미국의 국내전쟁. 목화기근. 원료가 부족하고 값비싼 탓으로 생산과정이 중단된 가장 뚜렷한 실례.

1860년 4월.

“영업형편에 대하여 내가 기쁘게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원료의 가격은 비싸지만 견직공업을 내놓고 모든 섬유공업이 지난 반 년 동안 형편이 아주 좋았다는 것이다. …일부 면공업지방들에서는 광고를 내서 노동자들을 구하였으며 노포크와 그 밖의 농촌구들에서 그곳으로 밀려들었다. …어느 공업부문에서나 원료가 아주 부족한 것 같다. …이 부족만이 우리를 제한하고 있다. 면공업에

서는 새로 세운 공장의 수와 이미 있는 공장의 확장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수요가 지금처럼 많아본 적이 일찍이 없었을 것이다. 여기저기로 사람들은 원료를 구하려 다니고 있다”(1860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57페이지).

1860년, 10월.

“면공업과 양털공업, 아마공업 지방들의 영업형편은 좋았다. 아일랜드에서는 한 해 이전부터 아주 좋았다고까지 하는데 원료의 가격이 비싸지만 않았더라면 그보다도 더 좋았을 것이다. 아마방적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애타게 철도에 의하여 인도의 공급원천이 더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또 이에 따라 인도의 농업이 발전하며 마침내…그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만큼 아마가 공급되기를 기다리는 것 같다”(1860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37페이지).

1861년, 4월.

“영업형편은 지금 좋지 않다. …일부 면공장들은 조업을 단축하고 있으며 많은 견공장들은 부분적으로만 일하고 있다. 원료의 값은 비싸다. 거의 모든 섬유공업부문들에서 원료는 소비자대중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수준을 넘고 있다”(1861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33페이지).

1860년에 면공업에서는 과잉생산이었다는 것이 이제와서 알려졌다. 그 영향은 그후 몇 해 동안이나 느껴졌다.

“1860년에 과잉생산된 것이 세계시장에서 소화되기까지는 2년 내지 3년이 걸렸다”(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27페이지). “1860년초 동아시아의 면제품시장의 좋지 않은 형편은 평균 3만대의 역직기가 거의 전적으로 이 시장을 위한 직물을 생산하는 데 종사하고 있는 블랙번의 영업에 해당하는 반작용을 하였다. 그 결과 여기에서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목화봉쇄의 영향을 느낄 수 있게 되기 여러 달 전에 벌써 제한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다행히도 많은 공장주들이 파멸을 면하였다. 창고에 예비품을 가지고 있는 한에서 예비품은 그 가치가 올랐으며 그리하여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공황에서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가치감소를 피할 수 있었다”(『1862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28, 29, 30페이지).

1861년 10월.

“영업형편은 얼마 전부터 아주 좋지 않다. …겨울철 몇 달 동안 많은 공장들이 노동시간을 훨씬 줄이리라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은 어쨌든 예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여느 때와 같이 아메리카에서 목화를 수입하고 또 우리가 그리로 수출하는 것을 중단시킨 원인들은 아주 제쳐놓고 보더라도 최근 3년 동안에 생산이 부족 늘어났고 인도와 중국 시장들에서 혼란이 일어난 결과에 오는 겨울 동안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필연적으로 될 것이다”(『1861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9페이지).

목화폐물, 동인도목화(수라트), 노동자들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 기계의 개량, 전분과 광물에 의한 목화의 대용, 전분으로 이렇게 풀먹이는 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가는 번수 실의 방직업자들, 공장주들의 기만.

한 공장주는 나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내고 있다. “가락당 목화소비량을 재는 데서 당신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충분히 고려에 넣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즉 목화의 값이 비싸면 보통의 실(예컨대 40번까지, 주로는 12~32번)을 뽑던 방직업자도 누구나 될 수 있는 대로 가는 번수의 실을 뽑는다. 즉 전에 12번을 뽑았다면 16번을 뽑거나 16번을 뽑았다면 22번을 뽑거나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는 실로 천을 짜는 직조업자는 그만큼 더 많은 풀칠을 함으로써 자기의 직물이 보통의 무게가 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수법은 지금 참으로 수치스러운 정도로 이용되고 있다. 내가 믿을 만한 데서 들은 것이지만 보통의 수출용 속옷감으로 한 필의 무게가 8파운드인데 $2\frac{3}{4}$ 파운드가 풀이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천들에는 흔히 50%에 이르기까지 풀이 들어 있으며 그리하여 공장주는 자기의 천을 파운드당 그 원료인 실에 지불한 것보다 적은 돈을 받고 팔아 부자가 된다고 자랑하는데 이것은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1864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27페이지).

“내가 또 들은 증언에 의하면 직포공들은 자기들의 병세가 더 나빠지는 것은 풀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 풀이란 동인도 솜에서 뽑는 낱실에 쓰는 것으로서 이제는 전과 달라서 밀가루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이 밀가루 대용품은 천의 무게를 크게 늘여 15파운드의 실로 짜서 20파운드가 된다고 한다.”(『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63페이지. 이 대용품은 중국점토라고 부르는 가루활석 또는 프랑스쵸크라고 부르는 석고였다.) 직포공들의 수입은 밀가루 대용품을 낱실에 먹이는 풀로 씌으로써 매우 줄어들었다. 이 풀은 실을 무겁게는 하지만 또 실을 뻣뻣하고 약하게 만든다. 낱실의 실오리 하나하나가 낱실 구멍귀를 거쳐 직기로 들어가는데 이 낱실 구멍귀의 질긴 실오리들이 낱실을 바로잡는 것이다. 뻣뻣하게 풀먹인 낱실 때문에 낱실 구멍귀에서 실오리가 계속 끊어지는데 끊어질 때마다 그것을 고치는 데 직포공은 5분이나 시간을 빼앗긴다. 직포공은 이렇게 끊어진 것을 이제는 전보다 적어도 열 곱이나 더 자주 잇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직기는 노동시간에 그만큼 더 적게 일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같은 보고, 42, 43페이지).

“애쉬톤 스테일리브릿지, 모슬리, 올드햄 등에서는 노동시간이 옹근 3분의 1이나 줄었으며 노동시간은 매주 더 줄어든다. …노동시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동시에 많은 부문들에서 또 임금이 떨어지고 있다”(『1861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3페이지).

1861년초에 랭카셔의 일부 지구들에서 기계직포공들의 파업이 일어났다. 여러 공장주들이 임금을 5~7½% 낮추겠다고 선포하였었다. 노동자들은 임금을 그대로 두고 노동시간을 줄이라고 주장하였다. 기업주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업이 일어났던 것이다. 한 달 후에 노동자들은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도 떨어졌고 노동시간도 줄었다.

“임금을 낮추는 데 노동자들이 마침내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은 또 많은 공장들이 조업을 단축하고 있다”(『1861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23페이지).

1862년, 4월.

“노동자들의 고통은 내가 지난번에 보고한 때로부터 훨씬 심하여졌다. 그러나 것처럼 갑작스러운 그리고 것처럼 심한 고통을 것처럼 말없이 온순하게, 것처럼 참을성 있는 자제력으로 견디어낸 적은 산업역사에서 일찍이 없었다”(『1862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0페이지). “지금 완전실업자수는 1848년 당시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것 같지는 않다. 그때에 일어난 공황은 보통의 것이었으나 불안을 느낀 공장주들이 지금 매주 발표하고 있는 것과 같은 면공업 통계자료를 부랴부랴 수집하게 될 만큼 심하였다. …1848년 5월에는 맨체스터에서 면공업 노동자 총수의 15%가 실업을 당하였고 12%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었는데 70% 이상은 온전한 시간을 일하였다. 1862년 5월 28일에는 15%가 실업을 당하였고 35%가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으며 49%가 온전한 시간을 일하였다. …이웃지방들 예컨대 스톡포트에서는 불완전취업자와 완전실업자의 백분율이 그보다 높고 완전취업자의 백분율은 그보다 낮는데 그것은 바로 여기에서는 맨체스터에서보다 적은 변수의 실을 뽑고 있기 때문이다”(16페이지).

1862년 10월

“최근의 공식 통계자료에 의하면 1861년에 연합왕국에는 2,887개의 면공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2,109개는 나의 관할구역(랭카셔와 체셔)에 있었다. 나의 관할구역에 있는 2,109개 공장의 절대다수가 노동자들을 얼마 쓰지 않는 작은 것들이라는 것을 나는 물론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수가 그렇게도 많다는 것을 알고 나는 놀랐다. 392개 즉 공장 총수의 19%에서는 중기력이나 수력의 동력이 10마력도 안되고 345개 즉 16%에서는 10마력 내지 20마력이며 1,372개에서는 20마력 이상이다. …이 작은 공장주들 가운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총수의 3분의 1 이상——얼마전까지만 하여도 그들 자신이 노동자였다. 그들은 자본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주되는 부담은 나머지 2/3에게 돌아갈 것이다”(『1862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8, 19페이지).

똑같은 보고에 의하면 당시 랭카셔와 체셔의 면공업노동자들 가운데서 완전취업자는 40,146명 즉 11.3%였고 불완전취업자는 134,767명 즉 38%, 실업자는 179,721명 즉 50.7%였다. 이 가운데서 목화기근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는 부문인 가는 변수의 실을 주로 뽑는 맨체스터와 볼튼에 해당

한 숫자들을 빼면 사태는 더욱 나빠진다. 즉 완전취업자는 8.5%, 불완전 취업자는 38%, 실업자는 53.5%이다(19, 20페이지).

“가공하는 원료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본질적 차이를 가져온다. 공장주들 모두가 할 수만 있으면 싼 값으로 살 수 있는 목화를 써서 자기들의 공장을 돌아가게 하려던 이 해의 첫 몇 달 동안 전에는 보통 좋은 목화를 쓰던 공장들에 나쁜 목화가 많이 들어갔다.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차이가 매우 컸기 때문에 많은 파업이 일어났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전과 같은 도급제 임금으로는 이제는 참을 만한 하루임금을 더는 벌 수 없기 때문이다. …일부 경우에는 나쁜 목화를 써서 생기는 차액이 웅근 노동시간을 일하는 경우에도 전체 임금의 절반밖에 안되었다”(27페이지).

1863년. 4월.

“올해 안에는 완전취업할 수 있는 면공업노동자는 절반을 그다지 넘지 않을 것이다”(『1863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14페이지).

“공장들에서 지금 쓰지 않을 수 없는 동인도 목화를 쓰면서 생기는 심중한 결함은 그 경우에 기계의 속도가 펴 늦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에 이 속도를 높여서 똑같은 기계가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썼다. 그러나 속도가 늦어지면 공장주들에 못지 않게 노동자들도 영향을 받는다. 왜냐하면 많은 노동자들이 도급제 임금——방적공은 뽕은 싼 파운드에 얼마, 직포공은 잔 천 한 필에 얼마——을 받기 때문이며 또한 주일마다 임금을 받는 다른 노동자들의 경우에도 생산이 줄어든 결과에 임금이 줄어든 것이기 때문이다. 올해 안의 면공업노동자들의 수입에 관하여 내가 조사한 것과…나에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861년의 임금수준에 비하여 평균 20%, 일부 경우에는 50% 줄어든다는 것을 알게 된다”(13페이지). “수입액은…가공되는 원료의 질에 달려 있다. …노동자들의 형편은 번 임금액으로 보면 지금(1863년 10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좋다. 기계는 개량되어 있고 원료에 대한 파악도 깊어졌고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처음에 부닥쳤던 곤란을 지금은 더 험하게 처리한다. 지난 봄에 나는 프레스턴의 한 재봉학교(실업자를 위한 자선시설)에 들렀는데 한 주일에 4실링을 벌 수 있다는 공장주의

말을 듣고 얼마 전에 직물공장으로 갔던 두 젊은 처녀가 직물공장에서는 한 주일에 1실링도 벌 수 없었다고 불평을 늘어 놓으면서 학교에 다시 받아달라고 간청하였다. 나는 자동방적기로 일하는 방적공들에 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자동방적기를 두 대씩 맡아보는 노동자들은 14일 동안 옹근 노동시간을 일하여 8실링 11페니를 벌었으며 이 금액에서 집세를 공제당하는데 공장주는(인자하게도!) 집세의 절반을 선물로서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그 방적공들은 6실링 11페니를 집에 가지고 왔다. 많은 곳에서 1862년 마지막 몇 달 동안에 자동방적기로 일하는 방적공들은 한 주일에 5~9실링, 직포공들은 한 주일에 2~6실링을 벌었다. …현재 수입은 대부분의 지방들에서 더욱 많이 줄었지만 형편은 매우 좋다. …수입이 적어진 데는 인도목화가 섬유가 짧은 데다가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과 함께 그 밖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었다. 예컨대 목화폐물을 인도목화에 많이 섞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었는데 이 때문에 방적공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을 물론이다. 섬유가 짧으면 물정방기에서 나올 때와 실을 풀 때에 실오리가 끊어지기 쉬우며 또 물정방기가 제대로 움직일 수 없다. …또한 실오리에 주의를 많이 돌리지 않으면 안되므로 한 명의 여직포공이 흔히 겨우 한 대의 직기를 맡아볼 수 있고 두 대 이상을 맡아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얼마 안된다. …많은 경우에 노동자의 임금은 5%, 7½%, 10%나 줄어들었다. …많은 경우에 노동자는 어떻게 하면 원료를 잘 다루며, 어떻게 하면 보통정도의 벌이를 하겠는가 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직포공들이 때때로 부닥치게 되는 또 하나의 곤란은 그들이 나쁜 재료로 좋은 천을 만들어내야 하며 작업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임금을 잘리우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41~43페이지).

임금은 옹근 시간을 일하는 곳에서도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면공업 노동자들은 지방당국에서 구호(이것은 사실상 공장주들에 대한 구호였다. 『자본론』 제1부, 536페이지 이하를 보라*)를 받기 위하여 물빼기, 길닦기, 돌깨기, 거리포장 등 온갖 공공작업에 즐겨 나간다. 전체 부르조아지가 노동자들을 감시하였다. 아주 보잘 것 없는 품값을 주는데 노동자가 그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2분책, 223페이지 이하를 보라. 편집부

것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구호위원회는 그를 구호대상자명단에서 지워 버렸다. 노동자들은 굶어죽지 않으면 안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부르조아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헐값으로도 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만큼——이 경우에 구호위원회는 공장주들의 충직한 개노릇을 하였다——이것은 공장주 나리들의 황금시대였다. 동시에 공장주들은 정부와 비밀리에 합의하여 노동자들이 국외로 이주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방해하였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노동자들의 삶과 피에 있는 그들의 자본을 늘 마련해 두기 위해서이며 부분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서 짜내는 집세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구호위원회는 이 점에서 매우 엄격히 다루었다. 일단 일감이 주어지면 그 일감을 받은 노동자들은 곧 명단에서 지워버리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들이 그 일에 나가기를 거부한다면 그 원인은 그들의 수입이 이름뿐인 데다가 일은 아주 어려울 것이라는 데 있었다”(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97페이지).

노동자들은 공공사업법에 따라 하게 된 어떠한 종류의 작업도 즐겨 받아들였다.

“공업노동을 조직하는 원칙은 도시에 따라 매우 달랐다. 그러나 야외작업이 노동시험(labour test)이 절대로 아닌 곳들에서도 이 작업에 대한 보수는 겨우 정해진 구호액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좀 높은 데 지나지 않았으며 그리하여 그 작업은 사실상 노동시험으로 되었다(69페이지). 1863년의 공공사업법은 이 폐단을 없애고 노동자들이 독립적인 날품팔이꾼으로서 하루 품삯을 벌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법의 목적은 세 가지였다. 즉 1) 지방당국이 돈을 (국가중앙빈민구제국장의 동의를 얻어) 국고대부위원회에서 끌 수 있게 하는 것, 2) 면공업지방의 도시를 더 잘 꾸리게 하는 것, 3) 실업자들이 일거리와 보수가 될만한 임금(remunerative wages)을 얻게 하는 것.” 이 법에 따라 1863년 10월말까지 꾸어준 금액은 883,700파운드 스텔링이었다(70페이지).

하게된 작업은 주로 하수도공사, 길닦기, 거리포장, 수도용 저수지공

사 등이었다.

블랙번의 위원회 위원장 헨더슨 씨는 이에 관하여 공장감독관 레드그레이브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내고 있다.

“고난과 빈궁의 현시기에 내가 듣고 본 모든 것 가운데서 아 지방의 실업당한 노동자들이 공공사업법에 따라 블랙번의 사회가 제공하는 작업을 선선히 즐겨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나를 감동시키고 기쁘게 한 것은 없다. 전에는 기능공으로서 공장에서 일하던 면방직공들과 지금은 날품팔이꾼으로서 깊이 14~18 피트나 되는 하수도에서 일하는 방직공들보다 더 심한 대조를 생각하기는 힘들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 경우에 가족수에 따라 한 주일에 4~12실링을 벌었다. 이 굉장한 금액으로 흔히 8명의 가족을 먹여살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부르조아 속물들은 여기에서 이중의 이익을 보았다. 첫째로 그들은 그슬리고 내버려두었던 자기들의 도시를 꾸리기 위한 자금을 매우 낮은 이자로 얻었으며, 둘째로 그들은 노동자들에게 보통 주는 임금보다 훨씬 낮은 보수를 주었다).

“전에는 거의 열대지방과 같은 온도에 익숙하였고, 근육의 힘보다도 손을 재빨리, 정확히 놀리는 것이 그에게 무척 더 중요한 작업에 익숙하였으며, 지금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두 곱, 때로는 세 곱도 늘 받아오던 노동자가 이제는 하리는 일을 즐겨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한 자기희생성과 이성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영예이다. 블랙번에서 실업자들은 야외에서 하는 거의 모든 일에서 시련을 겪었다. 즉 굳고 무거운 진흙땅을 상당한 깊이로 파내는 일, 물빼기, 들깨기, 길닦기, 깊이 14, 16 때로는 20피트나 되는 하수도를 파내는 일에서 그러하였다. 이 경우에 그들은 흔히 10~12인치나 되는 진창과 물속에서 있게 되며 그때마다 그들은 축축한 찬 날씨를 무릅쓰게 되는데 잉글랜드의 어느 지방도 일반적으로 날씨가 축축하고 차지만 여기보다 더 심한 데는 없다(91, 92페이지). 노동자들의 태도는 거의 비난할 여지가 없다. …그들은 즐겨 야외노동을 받아들였으며 또 그것을 해냈다”(69페이지).

1864년 4월.

“때때로 여러 지방에서 노동자가 모자란다는 불평소리가 들려오는데 주로 예컨대 직조업과 같은 부문들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소리는 이 특수한 부문에서 노동자들 자체가 어느 정도 실제로 부족된다는 데서도 나오며 또 그에 못지 않게 쓰는 실이 나쁜 탓으로 노동자들이 벌 수 있는 임금이 적다는 데서도 나온다. 지난 달에 어떤 공장주들과 그들의 노동자들 사이에서 임금으로 하여 수많은 분쟁이 일어났다. 파업이 너무나 자주 일어난 것을 나는 유감으로 생각한다. ...공공사업법의 영향을 공장주들은 하나의 경쟁으로 여기며 그 때문에 베이컨의 지방위원회는 자기의 활동을 그만두었다. 그것은 아직 모든 공장이 다 들고 있지도 않은데 노동자들이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1864년 4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9페이지).

여하튼 공장주 나리들은 심사숙고할 때가 되었다. 공공사업법으로 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매우 늘어나서 베이컨의 채석장에서는 많은 공장노동자들이 이제는 하루에 4~5실링을 벌었다. 그리하여 공공사업은 점차 중지되었는데 공공사업은 1848년의 국민작업장²⁹의 재판이지만 이번에는 부르조아지를 위한 것이었다.

가치없는 몸에서의 실험

“나는 각각 다른 공장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실제로 번 임금(완전취업자들의)이 매우 낮다는 실례를 들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매주 똑같은 금액을 번다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심한 변동이 있는데 그것은 공장주들이 똑같은 공장에서 쓰는 목화의 종류와 그리고 목화와 그 폐물의 비례를 달리하여 끊임없이 실험해 보기 때문이다. 이른바 이 ‘섞음’이 자주 달라지며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수입은 섞은 목화의 질에 따라 오르내린다. 때때로 수입은 이전 수입의 15%에 지나지 않으며 한두 주일이 지나면 50%나 60%로 떨어진다.”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공장감독관 레드그레이브는 다음에 실천

에서 얻은 임금자료를 들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다음 실례들만 들면 여기에서는 충분하다.

직포공 A는 가족이 6명, 한 주일에 4일 일하고 6실링 8½페니를 번다. 실크기공 B는 한 주일에 4½일 일하고 6실링을 번다. 직포공 C는 가족이 4명, 한 주일에 5일 일하고 5실링 1페니를 번다. 조방공 D는 가족이 6명, 한 주일에 4일 일하고 7실링 10페니를 번다. 직포공 E는 가족이 7명, 한 주일에 3일 일하고 5실링을 번다 등등. 레드그레이브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위에서 든 자료는 주목할 만하다. 왜냐하면 그 자료는 노동이 많은 가족들에는 하나의 불행일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 노동으로 수입이 다만 줄어들 뿐 아니라 심히 떨어져서 가족이 모두 실업당할 때에 그 가족이 구호금으로 받게 될 금액에도 그 가족의 수입이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 추가적 구호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의 절대적인 수요의 아주 작은 부분을 충족시키기에도 아주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1863년 10월의 공장감독관의 보고, 50~53페이지).

“1863년 6월 5일 이후 어느 주간에도 모든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이 2일 7시간 몇 분 이상 된 적이 없다”(같은 보고, 121페이지).

공황이 시작된 때로부터 1863년 3월 25일까지 빈민구제국, 중앙구호위원회, 런던시위원회에서 지출한 금액은 거의 3백만파운드 스텔링이었다(13페이지).

“가장 가는 변수의 실을 뽑는 어떤 지방에는…방적공들은 시아일랜드 목화가 아니라 이집트 목화를 쓰게 된 결과 임금이 간접적으로 15% 떨어졌다. …인도목화와 섞어 쓰기 위하여 목화폐물을 많이 쓰는 어떤 넓은 지방에서는 방적공들은 임금이 5% 줄었고 그 밖에 또 수라트 목화와 목화폐물을 가공하게 된 결과 20~30%를 더 잃었다. 직포공들이 말아보는 직기수는 4대에서 2대로 줄었다. 그들은 1860년에는 매 직기에서 5실링 7페니를 벌었는데 1863년에는 겨우 3실링 4페니를 벌었다. …벌금(방적공에 대한)은 아메리카 목화를

쓰던 이전에는 3페니 내지 6페니였는데 지금은 1실링 내지 3실링 6페니에 이르고 있다.”

이집트 목화와 동인도 목화를 섞어 쓰는 어떤 지방에서는

“물정방기를 쓰는 방적공의 평균임금은 1860년에 18~25실링이었는데 지금은 10~18실링이다. 이 원인은 다만 목화의 질이 나빠진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정방기의 속도를 줄인 데도 있는데 이것은 실을 더 세게 꼬기 위해서이며 이에 대해서는 어느 때라면 임금표에 따르는 특별수당을 지불하였을 것이다”(43, 44, 45~50페이지). “동인도 목화의 가공은 아마 여기저기에서 공장주들에게는 유리하였을 것이지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임금표 53페이지를 보라) 노동자들은 그 때문에 1861년에 비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 수라트 목화를 늘 사용하여야 한다면 노동자들은 1861년 때와 같은 수입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목화이건 제품이건 그 가격변동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장주들의 이윤은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105페이지).

집세.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오막살이가 공장주의 것이라면 노동자들의 집세는 조업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공장주가 흔히 임금에서 떼낸다. 그런데도 이러한 건물의 가치는 떨어졌으며 작은 집들은 지금 전에 비하여 25~50%나 값싸게 빌릴 수 있다. 한 주일에 3실링 6페니를 내야 했던 오막살이를 이제는 2실링 4페니로, 때로는 그 이하로 빌릴 수 있다”(57페이지).

국외이주. 공장주들이 노동자들의 국외이주를 반대한 것은 물론이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공장주들이

“면공업의 호경기를 내다보고 자기들의 공장을 아주 유리하게 운영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해두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밖에 또 적지 않은 공장주들은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사는 집들의 소유자여서 적어도 그들의 일부는 그동안 받지 못한 집세의 한 부분을 나중에 받을 것을 무조건

타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96페이지)

의회대의원인 버날 오스본 씨는 1864년 10월 22일 자기의 선거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랭카셔의 노동자들은 고대의 철학자(스토아학파)처럼 처신하였다고 말하였다. 양치림은 아니었는가?

제 7 장 보 충

이 제1편에서 일반적으로 그렇듯이 개개 생산분야에서 차지하게 되는 이윤량은 이 분야에 투하된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액과 같다고 하자. 그렇지만 부르조아는 이윤을 잉여가치 즉 부지불 잉여노동과 같은 것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러하다.

1) 유통과정에서는 부르조아는 생산과정을 잊어버린다. 상품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실현도 포함하여——을 그는 이 잉여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생각한다. {원고에는 여기에 비어둔 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맑스가 이 점을 더 자세히 전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여 준다. —F. E.}

2) 노동을 착취하는 정도가 똑같다고 전제하면 위에서 이미 알게 된 바와 같이 신용제도로 하여 생기는 온갖 변경, 자본가들 호상간의 온갖 사기와 협잡,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이익을 보려는 노력, 그리고 또 온갖 유리한 시장선택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즉 그 사정이란 원료값이 더 싼가 덜 싼가, 원료를 능숙하게 사들이는가 그렇지 않은가, 적용하는 기계가 생산적이고 목적에 맞으며 또 값싼가, 생산과정의 여러 단계들의 전체 조직이 더 완성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원료를 낭비하는가 하지 않은가, 지도와 감독이 간단하고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있는가 하는 것 등이다. 요컨대 일정한 가변자본에 대하여 잉여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바로 이 잉여가치가 더 높은 이윤율로 표현되는가 더 낮은 이윤율로 표현되는가, 따라서 또 그것이 더 많은 이윤량을 제공하는가 더 적은 이윤량을 제공하는가 하는 것은 자본가 자신이건 그의 감독과 사무원이건 그들의 개인적 사업능력에 크게 달려 있다. 1,000파운드 스텔링의 임금의 생산물인 1,000파운드 스텔링의 똑같은 잉여가치가 A라는 기업에서는

9,000파운드 스텔링의 불변자본에 해당하고 B라는 다른 기업에서는 11,000파운드 스텔링의 불변자본에 해당한다고 하자. A의 경우에는 $p' = 1,000/10,000 = 10\%$ 이다. B의 경우에는 $p' = 1,000/12,000 = 8\frac{1}{3}\%$ 이다. 총자본은 A에서는 B에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윤을 생산한다. 왜냐하면 두 경우에 다 선대된 가변자본은 1,000이고 바로 이것에서 나온 잉여가치도 역시 1,000이며 따라서 두 경우에 다 같은 수의 노동자들을 똑같이 착취하지만 A에서는 이윤율이 B에서보다 높기 때문이다. 똑같이 노동을 착취하면서도 똑같은 잉여가치량이 이렇게 차이나게 표시되는 것 즉 이윤을 따라서 또 이윤 자체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다른 원인들에도 기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오직 전적으로 두 기업을 운영하는 수완의 차이에서만 생길 수도 있다. 바로 이 사정으로 하여 자본가는 자기의 이윤이 노동을 착취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노동의 착취와는 관계없는 다른 사정들, 특히 자기의 개인적 활동에서 나온다고 잘못 생각하며 그렇게 확신하게 된다.

이 제1편에서 서술한 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견해(로드베르투스³⁰의)가 그릇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예컨대 지대는 늘어나는데 토지면적은 의연 똑같은 지대의 경우와는 달리) 자본의 양적 변동은 이윤과 자본의 비율, 따라서 이윤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그것은 이윤의 양이 늘어나면 이윤을 계산하는 기초인 자본의 양도 늘어나며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견해는 다음의 두 경우에만 옳다. 첫째로는 다른 모든 사정들, 따라서 특히 잉여가치율이 의연 같다고 전제하고 화폐상품인 상품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이다(명목상으로만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즉 그 밖의 사정들은 같은데 가치기호가 오르내리는 경우에도 똑같이 된다). 총자본은 100파운드 스텔링이고 이윤은 20파운드 스텔링이며 따라서 이윤율은 20%라고 하자. 이제 금의 가치가 100%만큼 떨어지거나 오르면 떨어지는 경우에는 전에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던 똑같은 자본이 2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게 될 것이며 이윤은 4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즉 이윤은 전에 20파운드 스텔링으로 표시되었으나 이제는 이 화폐액으로 표시될 것이다. 오르는 경우에는 자본은 그 가치

가 50파운드 스텔링으로 떨어지며 이윤은 1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생산물로 표시된다. 그러나 두 경우에 다 $200:40=50:10=100:20=20\%$ 이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경우에 사실상 자본가치에서 양적 변동은 없을 것이며 다만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잉여가치의 화폐표현으로만 변동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m/C 즉 이윤율도 영향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경우는 가치의 크기가 실제로 변동하지만 이 변동과 함께 $V:C$ 의 비율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이다. 즉 잉여가치율은 변함이 없는 조건에서 생산수단에 지출된 자본에 대한 노동력에 지출된 자본(가동되는 노동력의 지표로 보는 가변자본)의 비율이 의연 똑같은 경우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총자본이 C 인가 nC 인가 또는 C/n 인가에 따라, 예컨대 1,000인가 2,000인가 또는 500인가에 따라 이윤율이 20%인 경우에 이윤은 첫째 경우에는 200이며 둘째 경우에는 400, 세째 경우에는 100일 것이다. 그러나 $200/1,000=400/2,000=100/500=20\%$ 이다. 즉 이윤율은 이 경우에 의연 달라지지 않는데 그것은 자본의 구성이 의연 똑같으며 자본의 양적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윤율이 늘거나 줄는 것은 적용된 자본이 늘었거나 준 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따라서 첫째 경우에는 적용되는 자본의 외관상의 양적 변동이 생길 따름이며 둘째 경우에는 실제적인 양적 변동이 생기지만 그러나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는 즉 자본의 불변부분에 대한 가변부분의 비율에는 어떠한 변동도 없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 두 경우를 제쳐놓으면 적용되는 자본의 양적 변동은 그 구성부분들의 하나에서 가치변동이 이미 일어난 결과이며 따라서(가변자본의 변동에 따라 잉여가치 자체가 변동하지 않은 한에서) 자본구성부분들의 상대적 크기가 변동한 결과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본의 양적 변동(대규모의 작업, 새로운 기계의 도입 등의 경우와 같이)은 자본의 두 유기적 구성부분들의 상대적 크기에서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경우에 그 밖의 사정들이 같다면 적용되는 자본의 양적 변동과 동시에 이윤율이 변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윤율이 느는 것은 언제나 잉여가치가 그 생산비에 비하여 즉 선대된 총자본의 크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나 절대적으로 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이윤율과 잉여가치율의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윤율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부분에서 일어나는 변동이나 자본의 절대적 크기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됨으로써 오르내릴 수 있다. 즉 선대되는 자본이 고정적 형태로 있건 유동적 형태로 있건, 그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이미 있는 자본과는 관계없이 늘거나 감소되는 결과에 선대되는 그 자본의 가치가 늘거나 감소되는 경우에 그렇게 된다. 개개 상품, 따라서 또 자본을 이루는 상품들의 가치는 그 상품 자체에 들어 있는 필요노동시간에 의하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의 재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하여 정해져 있다. 이 재생산은 원래의 생산조건들과는 다른, 어렵거나 험한 사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물적 내용에서 똑같은 자본을 재생산하는 데 사정이 달라져서 일반적으로 두 곱 또는 반대로 절반만큼 노동시간이 필요하다면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본은 전에는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200파운드 스텔링 또는 5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이 가치증대 또는 가치감소가 자본의 모든 부분들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면 이윤도 그에 따라 두 곱 또는 겨우 절반의 화폐액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치증대 또는 가치감소에 따라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달라진다면, 즉 불변자본부분에 대한 가변자본부분의 비율이 오르거나 떨어진다면 이윤율은 그 밖의 사정들이 같은 경우에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늘면 늘 것이고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 것이다. 선대된 자본의 화폐가치만이 오르거나 떨어지면(화폐의 가치가 달라진 결과에) 잉여가치의 화폐표현은 같은 비율로 오르거나 떨어진다. 이윤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제2편

이윤의 평균이윤으로의 전화

- 제8장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에서의 자본구성의 차이와
이 차이에서 오는 이윤율의 차이
- 제9장 일반적 이윤율(평균이윤율)의 형성과
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
- 제10장 경쟁에 의한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
시장가격과 시장가치, 초과이윤
- 제11장 임금의 일반적 변동이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 제12장 보충

제 8 장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에서의 자본구성 의 차이와 이 차이에서 오는 이윤율의 차이

앞편에서는 무엇보다도 잉여가치율이 의연 같은 경우에 이윤율은 달라져 오르내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장에서는 주어진 한 나라의 사회적 노동이 갈라지는 모든 생산분야들에서 노동의 착취정도, 따라서 잉여가치율 그리고 노동일의 길이는 그 크기가 같으며 수준이 같다고 전제한다.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노동을 착취하는 정도의 차이가 큰 데 대하여 말한다면 이미 A. 스미드가 자세히 증명한 바와 같이^{*)} 그 차이는 온갖 실제적인 또는 편견에서 나오는 상쇄하는 사정들로 하여 없어지며 따라서 외관상의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리하여 일반적인 관계를 연구하는 데서는 고려에 넣지 않아도 된다. 다른 차이들, 예컨대 임금수준에서의 차이는 대부분 『자본론』, 제1부의 첫머리 11페이지 *에서 이미 말한, 단순노동과 복잡노동의 차이에서 나오며 그러한 차이들로 하여 노동자들의 처지는 생산분야가 다름에 따라 매우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서로 다른 분야들에서의 노동의 착취정도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예컨대 금을 세공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날품팔이 노동자의 노동보다 보수를 많이 받는다면 금을 세공하는 노동자의 잉여노동은 날품팔이 노동자의 잉여노동보다 그만큼 많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심지어 똑같은 생산분야의 서로 다른 자본주의적 기업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임금과 노동일, 따라서 잉여가치율의 균등화는 여러 가지 지방적인 사정들로 하여 지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균등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고 모든 경제기관들이 이 생산양식에 종속하게 됨에 따라 더욱더 완전히 이루어진다. 그러한 복잡한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58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계기들을 연구하는 것은 임금에 관한 전문적인 저작들에서는 매우 중요하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을 일반적으로 연구하는 데서는 우연적이며 비본질적인 계기들로서 무시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 연구에서는 현실적 관계는 그 개념에 상응한다는 것, 또는 같은 말이지만 현실적 관계는 그것이 그 자체의 일반적 유형을 표현하는 한에서만 서술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언제나 전제로 한다.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의 잉여가치율의 차이, 따라서 노동을 착취하는 정도에서의 나라별 차이는 이 연구에서는 아무래도 좋다. 그것도 그럴 것이 바로 이 편에서 서술하려고 하는 것은 개별적인 각 나라에서 일반적 이윤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로 다른 나라별 이윤율을 비교하는 데서는 전에 전개한 것을 여기에서 전개하려는 것과 대비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먼저 나라별 잉여가치율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주어진 잉여가치율에 기초하여 나라별 이윤율의 차이를 비교하여 보면 될 것이다. 이 이윤율의 차이가 나라별 잉여가치율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한에서 이윤율의 차이는 이 장에서의 연구에서 그러하듯이 잉여가치는 어디서나 같은 것으로서, 변함없는 것으로서 전제되고 있는 사정들에 기인하지 않을 수 없다.

앞장에서 본 바와 같이 잉여가치율이 변함없다고 전제하더라도 일정한 자본에서 나오는 이윤율은 불변자본의 이러저러한 부분의 가치를 올리거나 떨어뜨리게 하는 사정들로 하여 따라서 일반적으로 불변자본을 이루는 부분과 가변자본을 이루는 부분과의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들로 하여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지적인 바와 같이 한 자본의 회전기간을 늘이거나 줄이는 사정들도 그와 비슷하게 이윤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윤의 양은 잉여가치의 양, 잉여가치 자체와 같은 것이므로 이윤의 양은 이윤율과 달라서 위에서 말한 가치변동과 관계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 가치변동으로 하여 달라지는 것은 다만 일정한 잉여가치, 따라서 또 일정한 크기의 이윤이 표현되는 율 즉 이윤의 상대적 크기, 선대된 자본의 크기에 비한 이윤의 크기만이다. 그 가치변동으로 하여 자본이 매이거나 풀려나오는 한에서는 이러한 간접적인 길을 거쳐 이윤율뿐 아니라 이윤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언제나 이미 기능을 놓고 있는 자본에만 들어맞는 것이고 새로 투하된 자본에는 맞지 않는다. 그 밖에 또 이윤 자체가 늘거나 감소하는 것은 언제나 그 가치변동으로 하여 똑같은 자본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노동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달려 있다. 즉 똑같은 자본으로 잉여가치율이 의연 같은 경우에 생산할 수 있는 잉여가치량이 얼마나 많은가 적은가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예외처럼 보이는 이 경우는 일반적 법칙과 모순되거나 일반적 법칙의 예외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히려 일반적 법칙이 적용되는 하나의 특수한 경우에 지나지 않는다.

앞면에서 본 바와 같이 노동의 착취정도가 변함없는 경우에 불변자본의 구성부분들의 가치변동에 따라, 또한 자본의 회전기간의 변동에 따라 이윤율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자연히 다음과 같이 된다. 즉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산업부문에서 적용되는 자본들이 그 회전기간이 다르거나 그 유기적 구성부분들의 가치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동시에 나란히 있는 다른 생산분야들의 이윤율은 서로 다를 것이다. 우리가 전에는 똑같은 자본에서 시간상 연달아 일어나는 변화들로서 살펴본 것을 이제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나란히 있는 투자들 사이에 동시에 존재하는 차이들로서 살펴본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1)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 2) 자본들의 회전기간의 차이.

이 점을 연구하는 데서 우리가 일정한 생산부문에 있는 자본의 구성이나 그 회전기간에 대하여 말할 때 언제나 이 생산부문에 투하된 자본의 평균적이며 정상적인 관계를 두고 말하는 것이며 또 일반적으로 일정한 생산분야의 총자본의 평균이 문제이지 이 분야에 투하된 개별적 자본들의 우연적인 차이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리고 또 잉여가치율과 노동일은 변함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 이렇게 보는 데에는 임금이 변함없다는 뜻도 들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서는 일정한 양의 가변자본은 가동되는 일정한 양의 노동력, 따라서 일정한 양의 대상화되는 노동을 표현한다. 그리하여 100파운드 스텔링이 100명의 노동자들의 한 주일 임금을 표시하며, 따라서 사실상 100명의

노동력을 보여준다면 100파운드 스텔링 $\times n$ 은 100 $\times n$ 명의 노동자들의 한 주일 임금을, 그리고 100/n파운드 스텔링은 100/n명의 노동자들의 한 주일 임금을 표시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가변자본은(임금이 주어진 경우에는 늘 그러하듯이) 일정한 총자본에 의하여 가동되는 노동의 양을 표시하는 지표로 된다. 그러므로 적용되는 가변자본의 크기의 차이들은 적용되는 노동력의 양의 차이를 표시하는 지표들로 된다. 100파운드 스텔링이 한 주일에 100명의 노동자들을 표시하며 따라서 한 주일에 60시간 노동하는 경우에 6,000노동시간을 표시한다면 200파운드 스텔링은 12,000노동시간을 그리고 50파운드 스텔링은 겨우 3,000노동시간을 표시한다.

자본의 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자본론』 제1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자본의 능동적 구성부분과 그 피동적 구성부분, 즉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율로 본다. 여기에서 두 개의 비율이 문제로 되는데 이 두 개의 비율은 어떤 사정에서는 같은 작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은 같지 않다.

첫째 비율은 기술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으며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주어진 것으로서 보아야 한다. 예컨대 하루에 일정한 양의 생산물을 생산하자면 따라서——이것으로 이미 자명한 일이지만——기계, 원료 등 일정한 양의 생산수단을 생산적으로 소비하자면 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이 표시하는 일정한 양의 노동력이 있어야 한다. 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이 일정한 양의 생산수단에 맞서게 되며 따라서 일정한 양의 산 노동이 이미 생산수단에 대상화된 일정한 양의 노동에 맞서게 된다. 이 비율은 생산분야가 다름에 따라 흔히 똑같은 한 산업에 속하는 서로 다른 부문들 사이에 서로 매우 다르다. 비록 그것이 우연히 매우 동떨어진 산업부문들에서 완전히 똑같거나 거의 똑같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이 비율은 자본의 기술적 구성을 이루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진정한 기초이다.

그러나 그 비율은 가변자본이 노동력의 단순한 지표이고 불변자본이 이 노동력에 의하여 가동되는 생산수단의 양의 단순한 지표인 한에서 서로 다른 산업부문에서 똑같을 수도 있다. 예컨대 동을 쓰는 노동과

철을 쓰는 노동이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양 사이에 값을 비율을 전제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은 철보다 값이 비싸므로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의 가치비율은 두 경우에 다를 것이며 따라서 두 기업의 총자본들의 가치구성도 다를 것이다. 기술적 구성과 가치구성의 차이는 어느 산업부문에서나 기술적 구성이 변함없는 경우에는 두 자본부분들의 가치비율은 달라질 수 있으며 또 반대로 기술적 구성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가치비율은 의연 똑같을 수 있다는 데서 나타난다. 뒤에 든 경우는 물론 적용되는 생산수단의 양과 노동력과의 비율에서 일어나는 변동이 그것들의 가치에서 일어나는 반대방향의 변동에 의하여 상쇄될 때에만 있을 수 있다.

자본의 기술적 구성에 의하여 규정되며 그 기술적 요구를 반영하는 한에서의 자본의 가치구성을 우리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라고 한다.²⁰⁾

그리하여 가변자본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이 일정한 양의 노동력, 일정한 수의 노동자들 또는 일정한 양의 가동되는 산 노동의 지표라고 전제한다. 앞편에서 본 바와 같이 가변자본의 가치량에서 일어나는 변동은 다만 똑같은 노동량의 가격이 불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잉여가치율과 노동일이 변함없고 일정한 노동시간에 대한 임금이 주어졌다고 보는 여기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불변자본의 크기에서 나오는 차이도 또한 일정한 양의 노동력에 의하여 가동되는 생산수단의 양에서 일어나는 변동의 지표일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차이는 한 생산분야에서 가동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와 다른 생산분야에서 가동되는 생산수단의 가치와의 차이에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이 두 관점을 다 살펴보아야 한다.

끝으로 다음과 같은 본질적인 사정을 지적해야 하겠다.

100파운드 스텔링이 100명의 노동자들의 한 주일의 임금이라고 하자. 한 주일 노동시간은 60시간이라고 하자. 그리고 또 잉여가치율은 100%라

20) 위에서 서술한 것은 이미 「자본론」 제1부, 제3권, 628페이지, 제23장의 첫머리에* 간단히 설명되어 있다. 제1편과 제2편에서는 이 대목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은 더욱 필요하였다. — F.E.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2분책, 268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고 하자. 이 경우에 노동자들은 60시간 가운데서 30시간은 자기자신들을 위하여 일하고, 30시간은 자본가를 위하여 무상으로 일한다. 100파운드 스텔링의 임금에는 사실상 100명의 노동자들의 매 개인의 30노동시간 즉 모두 3,000노동시간이 체화되어 있는데 그들이 일하는 다른 3,000시간은 자본가가 차지하는 10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 또는 이윤에 체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100파운드 스텔링의 임금은 100명의 노동자들의 한 주일 노동이 대상화되는 가치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역시 그것은(노동일의 길이와 잉여가치율이 주어져 있으므로) 이 자본에 의하여 100명의 노동자들이 모두 6,000노동시간 가동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그렇다는 것은 첫째로 그 자본이 1파운드 스텔링=한 주일간의 한 명의 노동자이며 따라서 100파운드 스텔링=100명의 노동자들인 만큼 가동되는 노동자들의 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둘째로 가동되는 개개 노동자는 잉여가치율이 100%로 주어져 있는 조건에서 그의 임금에 들어 있는 것의 두 곱이나 되는 노동을 하며 따라서 반 주일의 노동을 표현하는 그의 임금인 1파운드 스텔링은 옹근 한 주일의 노동을 가동시키며 또한 100파운드 스텔링은 그것에 50주일의 노동밖에 들어 있지 않지만 100주일의 노동을 가동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변자본의 가치 즉 임금액이 일정한 양의 대상화된 노동을 표시하는 한에서의 임금에 지출된 가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가 그 자본이 가동시키는 산 노동의 양의 단순한 지표인 한에서의 같은 가변자본과의 사이에 극히 본질적인 차이를 두어야 한다. 이 산 노동의 양은 언제나 가변자본에 들어 있는 노동량보다 더 크며 따라서 또 가변자본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로, 즉 한편으로는 가변자본이 가동시키는 노동자들의 수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잉여노동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는 가치로 표시된다.

가변자본을 이렇게 봄으로써 다음과 같이 된다.

총자본이 각각 700인 경우 A라는 생산분야의 한 투자에서는 100만이 가변자본에 지출되고 600은 불변자본에 지출되는데 B라는 생산분야의 한 투자에서는 600이 가변자본에 지출되고 100만이 불변자본에 지출된다고 하자. 그러면 A의 총자본 700은 100의 노동력만을 가동시키며 따라서

전에 가동한대로 하면 100주일의 노동 또는 6,000시간의 산 노동만을 가동시키는데 크기가 같은 B의 총자본은 600주일의 노동, 따라서 36,000시간의 산 노동을 가동시킨다. 그러므로 A의 자본은 겨우 50주일 또는 3,000시간의 잉여노동을 차지할 것이지만 크기가 같은 B의 자본은 300주일 또는 18,000시간의 그 자체에 들어 있는 노동의 지표일 뿐 아니라 잉여가치율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동시에 이 한계를 넘어 가동되는 여분의 노동 또는 잉여노동의 지표이기도 하다. 노동의 착취정도가 같다면 이윤은 첫째 경우에는 $100/700=1/7=14\frac{2}{7}\%$ 이며 둘째 경우에는 $600/700=85\frac{5}{7}\%$ 즉 여섯 곱의 이윤율로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둘째 경우에 이윤 자체는 여섯 곱으로 즉 A에서는 100인데 B에서는 600으로 될 것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자본으로 여섯 곱의 산 노동을 가동시키며 따라서 노동의 착취정도가 같다면 여섯 곱의 잉여가치, 따라서 여섯 곱의 이윤을 얻기 때문이다.

A에서는 700파운드 스텔링이 아니라 7,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적용되는데 B에서는 겨우 7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적용된다면 A의 자본은 유기적 구성이 의연 같은 경우에는 7,000파운드 스텔링 가운데서 1,000파운드 스텔링을 가변자본으로서 적용할 것이며 따라서 한 주일에 1,000명의 노동자들=60,000시간의 산 노동——그 가운데서 30,000시간은 잉여노동이다——을 적용할 것이다. 그러나 각각 700파운드 스텔링으로 A는 겨우 B의 6분의 1의 산 노동을 따라서 또 겨우 6분의 1의 잉여노동을 가동시키며, 따라서 또 겨우 6분의 1의 이윤을 생산할 것이다. 이윤율을 살펴본다면 자본 B는 $600/700$ 즉 $85\frac{5}{7}\%$ 인데 자본 A는 $1,000/7,000=100/700=14\frac{2}{7}\%$ 이다. 자본의 크기가 같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이윤율이 각각 다른 것은 잉여가치율이 같은 조건에서도 가동되는 산 노동의 양이 각각 다르므로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 따라서 또 이윤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한 생산분야의 기술적 조건들이 다른 생산분야의 기술적 조건들과 똑 같지만 적용되는 불변자본요소들의 가치가 더 크거나 더 적은 경우에도 사실 결과는 똑같이 된다. 두 생산분야가 똑같은 양의 기계와 원료를 가동시키기 위하여 100파운드 스텔링을 가변자본으로서 적용하며 따라서

한 주일에 100명의 노동자들을 쓰지만 기계와 원료의 값이 B에서는 A에서보다 비싸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에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에 대하여 A에서는 예컨대 200파운드 스텔링의 불변자본이 들 것이며 B에서는 400파운드 스텔링의 불변자본이 들 것이다. 그러면 잉여가치율이 100%인 조건에서 생산된 잉여가치는 두 경우에 다 100파운드 스텔링이며 따라서 이윤도 두 경우에 다 100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러나 A에서는

$\frac{100}{200c+100v} = 1/3 = 33\frac{1}{3}\%$ 인데, B에서는 $\frac{100}{400c+100v} = 1/5 = 20\%$ 이다. 사실 우리가 두 경우에 총자본의 일정한 부분을 들어본다면 B에서는 100파운드 스텔링마다 겨우 20파운드 스텔링 즉 1/5이 가변자본을 이루는데 A에서는 100파운드 스텔링마다 33 $\frac{1}{3}$ 파운드 스텔링 즉 1/3이 가변자본이다. B는 100파운드 스텔링마다 이윤을 A보다 더 적게 생산하는데 그것은 B가 A보다 더 적은 산 노동을 가동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윤율의 차이는 이 경우에도 역시 결국 투하된 자본의 100파운드 스텔링마다 그것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 따라서 또 이윤량의 차이에 귀결된다.

이 둘째번 예가 먼저 든 예와 다른 점은 다만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즉 A와 B 사이에 균등화가 이루어지자면 둘째 경우에는 기술적 토대간의 차이 같은 조건에서 A나 B나 불변자본의 가치가 달라지기만 하면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첫째 경우에는 두 생산분야에서 자본의 기술적 구성 자체가 서로 다르며 이 분야들의 균등화가 이루어지자면 기술적 토대의 해당한 변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는 자본들의 절대적 크기에는 달려 있지 않다. 문제는 언제나 100단위마다 그 가운데서 얼마만큼이 가변자본이며 얼마만큼이 불변자본인가 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백분율로 쳐서 크기가 각각 다른 자본들——또는 여기서는 결국 똑같은 것으로 되지만 크기가 같은 자본들——이 노동일이 같고 노동의 착취정도가 같은 경우에 생산하는 이윤의 양이 심히 다른 것은 이 자본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며 그것도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다름에 따라 자본의 가변부분이 서로 다르며 따라서 자본이 가동시키는 산 노동의 양이 서로 다르

고 따라서 자본이 차지하는 잉여노동——잉여가치, 따라서 이윤의 실재인——의 양도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있는 크기가 같은 총자본부분들에 크기가 다른 잉여가치의 원천들이 들어 있는데 잉여가치의 유일한 원천은 산 노동이다. 노동의 착취정도가 같은 경우에 예컨대 100의 자본이 가동시키는 노동의 양, 따라서 또 그 자본이 차지하는 잉여노동의 양은 그 자본을 이루고 있는 가변부분의 크기에 달려 있다. 백분율적 구성이 $90c+10v$ 인 한 자본이 노동의 착취정도가 같은 조건에서 백분율적 구성이 $10c+90v$ 인 한 자본과 같은 양의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생산한다면 잉여가치, 따라서 가치 일반은 노동과는 전혀 다른 원천을 가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와 함께 정치경제학의 온갖 합리적 기초는 사라지고 말 것이라는 것은 극히 명백할 것이다.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파운드 스텔링이 60노동시간에 대한 한 명의 노동자의 한 주일 임금이며 잉여가치율이 100%라고 하자. 그러면 한 명의 노동자가 한 주일 동안에 새로 생산한 가치는 모두 2파운드 스텔링과 같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하여 그러한 조건에서는 10명의 노동자들은 20파운드 스텔링 이상을 생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20파운드 스텔링 가운데서 10파운드 스텔링은 임금을 보상하므로 그 10명의 노동자들은 10파운드 스텔링 이상의 잉여가치를 창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새로 생산한 가치는 모두 180파운드 스텔링이며 임금이 90파운드 스텔링인 90명의 노동자들은 90파운드 스텔링의 잉여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윤율은 한 경우에는 10%이며 다른 경우에는 90%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가치와 잉여가치는 대상화된 노동과는 다른 어떤 것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그 구성부분들을 백분율로 표시한 크기가 같은 자본들은 불변적 요소와 가변적 요소로 같지 않게 나누어지고 같지 않은 양의 산 노동을 가동시키며 그리하여 같지 않은 양의 잉여가치, 따라서 이윤을 생산하므로 바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백분율인 이윤율은 그 자본들에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그 구성부분들을 백분율로 표시한 크기가 같은 자본들이 생산하는 이윤들이 그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이 다른 탓으로 같지 않다면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의 같지 않은 자본들의

이윤들은 각각 그 자본들의 크기에 비례할 수 없으며 따라서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의 이윤들은 각각 그 분야들에 적용된 자본들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적용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이윤이 늘어난다는 것은 백분율로 보아 이윤들이 같다는 것, 따라서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있는 크기가 같은 자본들은 그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윤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주어져 있는 똑같은 생산분야 안에서만 또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같은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만 이윤들의 양은 적용된 자본들의 양에 정비례한다. 크기가 같지 않은 자본들의 이윤들이 그 자본들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기가 같은 자본들은 크기가 같은 이윤들을 낳는다는 것 또는 모든 자본들에서 그 크기와 그 유기적 구성이 어떻든 간에 이윤율들이 같다는 것 밖에 아무 것도 의미하지 않는다.

위에서 설명한 것은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들어 있는 불변자본의 가치 더하기 그 상품에 재생산되어 있는 가변자본의 가치 더하기 이 가변자본의 증가분인 생산된 잉여가치와 같다. 잉여가치율이 주어진 경우에 잉여가치의 양은 가변자본의 양에 달려 있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100이라는 자본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는 한 경우에는 $90c+10v+10m=110$ 이며 또 한 경우에는 $10c+90v+90m=190$ 이라고 하자.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면 첫째 생산물은 110으로 팔리며 그 가운데서 10은 잉여가치 또는 부지불노동을 표시한다. 그런데 둘째 생산물은 190으로 팔리며 그 가운데서 90은 잉여가치 또는 부지불노동을 표시한다.

이것은 특히 나라별 이윤율을 서로 비교할 때에 중요하다. 구라파의 한 나라에서는 잉여가치율이 100% 즉 노동자는 하루의 절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고용주를 위하여 일하는데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는 잉여가치율이 25% 즉 노동자는 하루의 4/5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나머지 1/5은 고용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자. 그러나 그 구라파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자본의 구성이 $84c+16v$ 인데 기계 등을 적게 쓰며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양의 노동력이 생산적으로 소비하는 원료가 상대

적으로 적은 그 아시아 나라에서는 자본의 구성이 $16c+84v$ 이라고 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계산이 나온다.

구라파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가치가 $84c+16v+16m=116$ 이며 이윤율은 $16/100=16\%$ 이다.

아시아 나라에서는 생산물의 가치가 $16c+84v+21m=121$ 이며 이윤율은 $21/100=21\%$ 이다.

따라서 잉여가치율은 아시아 나라가 구라파 나라의 $1/4$ 이지만 이윤율은 아시아 나라가 구라파 나라보다 25% 이상이나 더 크다. 케어리와 바스띠아 따위들은 물론 이와 정반대되는 결론을 지을 것이다.

그것은 그렇고 나라별 이윤율의 차이는 대체로 나라별 잉여가치율의 차이에서 나온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에서 똑같은 하나의 잉여가치율에서 나오는 같지 않은 이윤율들을 비교한다.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이 다르다는 것 밖에도 즉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있는 크기가 같은 자본들이 가동시키는 노동의 양, 따라서 그 밖의 사정들이 같은 경우에는 잉여노동의 양이 서로 다르다는 것 밖에도 이윤율이 같지 않게 되는 또 하나의 원천이 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자본회전의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이다. 제4장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의 구성이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 밖의 사정들이 같은 경우에 이윤율은 자본의 회전기간에 반비례하며 또한 똑같은 가변자본도 그 회전기간이 다르면 같지 않은 양의 한 해 잉여가치를 가져온다. 따라서 회전기간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크기가 같은 자본들이 같은 기간에 생산하는 이윤의 크기가 같지 않으며 또한 서로 다른 이 분야들에서 이윤율이 서로 다른 또 하나의 이유이다.

그런데 총자본이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나누어지는 비율로 말하면 그 비율은 그 자체로서는 이윤율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비율이 이윤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경우뿐이다. 즉 한 경우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과의 비율의 차이가 자본의 가변부분과 불변부분의 비율의 차이와 일치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윤율이 서로 다른 것은 가변부분과 불변부분의 비율의 차이 때문이지 유동적 부분과 고정적 부분의 비율의 차이 때문이 아니다. 또 한 경우는 고정적

구성부분과 유동적 구성부분과의 비율의 차이로 해서 일정한 이윤이 실현되는 회전기간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이다. 자본이 서로 다른 비례로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으로 나누어진다면 이것은 물론 언제나 그 자본들의 회전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회전기간의 차이를 낳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똑같은 자본들이 이윤을 실현하는 회전기간이 서로 다르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A는 원료 등을 얻기 위하여 끊임 없이 생산물의 더 많은 부분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데 B는 더 오랜 기간 원료를 적게 쓰면서 똑같은 기계 등을 쓴다고 하자. 그렇지만 A나 B나 다 그들이 생산하는 한에서는 언제나 그들의 자본의 한 부분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A는 원료에 즉 유동자본에 돌리고 있으며 B는 기계 등에 즉 고정자본에 돌리고 있다. A는 끊임없이 자기 자본의 한 부분을 상품 형태에서 화폐형태로 전화하고 또 이 화폐형태에서 도로 원료의 형태로 전화한다. 그런데 B는 자기 자본의 한 부분을 그러한 전화없이 비교적 오랜 기간 노동도구로서 이용한다.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양의 노동을 적용한다면 그들은 한 해 동안에 가치가 같지 않은 생산물량을 팔 것이지만 두 사람의 생산물량에는 같은 양의 잉여가치가 들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선대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 그들의 이윤율은 똑같다. 비록 그들에게서는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의 비율이 서로 다르며 또한 그 회전기간도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두 자본은 회전하는 기간이

-
- 21) {제4장에서 알게 되는 바와 같이 위에서 말한 것은 A와 B의 자본들의 가치구성이 서로 다르며 그 자본들을 이루고 있는 백분율로 표시된 가변부분들이 그 회전기간에 정비례하는 즉 주어진 기간의 그 회전수에 반비례하는 경우에만 옳다. A의 자본의 백분율적 구성이 고정자본 $20c$ + 유동자본 $70c$, 따라서 $90c + 10v = 100$ 이라고 하자. 잉여가치율이 100%인 경우에 이 $10v$ 는 한 번 회전에서 $10m$ 을 생산하며 그 회전에서 이윤율은 10%이다. 그런데 B의 자본은 고정자본 $60c$ + 유동자본 $20c$, 따라서 $80c + 20v = 100$ 이라고 하자. 이 $20v$ 는 잉여가치율이 같은 경우에 한 번 회전에서 $20m$ 을 생산하며 그 회전에서 이윤율은 20%다. 즉 A의 두 곱이다. 그러나 A의 자본은 한 해에 두 번 회전하는데 B의 자본은 겨우 한 번 회전한다면 A의 자본도 한 해에 $10 \times 2 = 20m$ 으로 되며 그리하여 한 해 이윤율은 두 경우에 다 같다. 즉 20%이다. — F.E.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기간에 같은 이윤을 실현한다.²¹⁾ 회전기간의 차이는 그 자체로서는 그 차이로 하여 똑같은 자본이 주어진 기간에 차지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잉여노동의 양이 영향을 받는 한에서만 의의가 있다. 따라서 자본이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으로 같지 않게 나누어진다고 하여 반드시 회전기간이 같지 않게 되며 이것이 이번에는 이윤율을 같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면 이윤율이 같지 않게 되는 것이 문제인 한에서 그것은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으로 같지 않게 나누어지는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자본이 나누어지는 것이 이 경우에 회전기간의 차이가 이윤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줄 따름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리하여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에서 불변자본이 유동자본과 고정자본으로 서로 달리 나누어지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이윤율에 대하여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 그것은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이 결정적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며 불변자본의 가치, 따라서 또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상대적 크기는 불변자본을 이루는 부분들의 고정적 성격이나 유동적 성격에는 달려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이것은 흔히 그릇된 결론들을 짓게 하는 것이지만——고정자본이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 이것은 생산이 큰 규모로 진행된다는 것, 따라서 불변자본이 가변자본보다 훨씬 우세하다는 것 다시 말하여 적용되는 산 노동력은 그 노동력에 의하여 가동되는 생산수단의 양에 비하여 보잘 것 없다는 사실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주 옳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 주었다. 즉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에서는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이 다름에 따라 그리고 일정한 한계안에서는 자본들의 회전기간이 다름에 따라 이윤율이 같지 않으며, 따라서 또 잉여가치율이 같은 경우에도 이윤은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며, 따라서 크기가 같은 자본들은 같은 기간에 크기가 같은 이윤을 낳는다는 법칙(일반적 경향으로 보아)은 유기적 구성이 같은——회전기간이 같다고 전제하고——자본들에 대해서만 들어맞는다. 이와 같은 논의는 일반적으로 이제까지 우리가 연구해오는 데서 토대로 삼았던 것 즉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는 그러한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 한편 또 비본질적

이고 우연적이며 상쇄되는 차이들을 제쳐놓고 보면 실지로는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에서 평균이윤율의 차이란 자본주의적 생산의 전체계를 뒤집어엎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 수도 없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가치이론은 여기에서 실제적 움직임과 양립할 수 없으며 생산의 실제적 현상들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으로,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을 파악하려는 생각은 도대체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제3부의 제1편에서 알게 되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나오는 생산물의 생산에 크기가 같은 자본들이 선대된다면 이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이 어떻게 다르건 간에 이 생산물에 드는 생산비는 똑같다. 생산비에서는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차이가 자본가에게서는 없어진다. 자본가가 100파운드 스텔링을 지출하여 생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품은 그가 $90c+10v$ 를 지출하건, $10c+90v$ 를 지출하건 그에게 그만큼 비용을 들이게 한다. 그가 그 상품에 들이는 비용은 언제나 100파운드 스텔링이며 그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다. 서로 다른 생산분야에서의 생산비는 크기가 같은 자본지출에서는 생산되는 가치와 아무리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다. 생산비가 이와같이 같다는 것이 평균이윤을 낳게 하는 자본주의적 경쟁의 기초를 이룬다.

제 9 장 일반적 이윤율(평균이윤율)의 형성과 상품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은 주어진 어떤 순간에도 두 가지 사정 즉 첫째로는 적용되는 노동력과 적용되는 생산수단의 양의 기술적 비율과 둘째로는 이 생산수단의 가격에 달려 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 백분율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불변자본이 4/5이고 가변자본이 1/5로 이루어지고 있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우리는 $80c+20v$ 라는 공식으로 표시한다. 그리고 또 비교하는 경우에는 변함이 없는 잉여가치율을, 그것도 어떤 임의의 율, 예컨대 100%를 가정한다. 따라서 $80c+20v$ 인 자본은 $20m$ 의 잉여가치를 낳으며 이것은 총자본에 대하여 20%의 이윤율을 이룬다. 그런데 이 자본의 생산물의 실제적 가치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불변자본의 고정적 부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과 그 고정적 부분 가운데서 마멸분으로서 생산물의 가치에 들어가는 것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나 이 사정은 이윤율에 대하여는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에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므로 우리는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불변자본은 어디서나 다같이 몽땅 이 자본의 한 해 생산물에 들어간다고 본다. 그리고 또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있는 자본들은 그 가변부분의 크기에 비례하여 해마다 같은 양의 잉여가치를 실현한다고 본다. 따라서 회전기간이 서로 다름으로 하여 이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차이를 당분간 제쳐놓고 본다. 이 점은 나중에 보기로 한다.

투하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다음과 같이 각각 다른 다섯 생산분야들을 들자.

여기서 우리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노동의 착취정도는 같은데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서로 다름에 따라 이윤율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다.

자 본	잉여가치율	잉여가치	생산물의가치	이 윤 율
I $80c+20v$	100%	20	120	20%
II $70c+30v$	100%	30	130	30%
III $60c+40v$	100%	40	140	40%
IV $85c+15v$	100%	15	115	15%
V $95c+5v$	100%	5	105	5%

다섯 분야들에 투하된 자본의 총액은 500이며 이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의 총액은 110이며 이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총가치는 610이다. 이 500이 단 하나의 자본이고 그 가운데서 I~V는 각각 다른 그 부분들을 이를 따름이라고(예컨대 한 면공장에서 서로 다른 부분들인 솜빛질실, 준비실, 방적실, 직포실의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의 비율이 서로 다르며 전공장적인 평균비율은 앞으로 계산해보지 않으면 안되듯이) 하자. 그러면 500의 자본의 평균구성은 $390c+110v$ 또는 백분율로 $78c+22v$ 일 것이다. 100씩의 자본들을 각각 총자본의 1/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면 평균구성은 $78c+22v$ 로 될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개개 자본 100에 대한 평균잉여가치는 22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균이윤율은 22%일 것이며 끝으로 500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총생산물의 개개 5분의 1의 가격은 122일 것이다. 따라서 선대된 총자본의 개개 5분의 1의 생산물은 122로 팔리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그릇된 결론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생산비가 모든 경우에 다 100과 같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80c+20v$ 이고 잉여가치율이 100%인 경우에 100의 자본 I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총가치는 불변자본이 몽땅 한 해 생산물에 들어간다면 $80c+20v+20m=120$ 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생산분야들에서는 일정한 조건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c:v$ 의 비율이 4:1인 경우에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100씩의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는 c 가 고정적 구성부분과 유동적 구성부분으로 각각 다르게 나누어짐에 따라 각각 다르게 될 것이라는 것과 각각 다른 자본들의 고정적 구성부분은 또한 비교적 더 빨리 또는 더 느리게 마멸되며 따라서 같은 기간에도 생산물에 덧붙이는 그 가치량은 같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윤율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좋다. $80c$ 가 한 해 생산물에 내주는 가치가 80 이건 50 이건 5 이건, 따라서 한 해 생산물이 $80c+20v+20m=120$ 이건 또는 $50c+20v+20m=90$ 이건, $5c+20v+20m=45$ 이건 이 모든 경우에 생산물의 가치가 그 생산비를 넘는 초과분은 20 이며 또 이 모든 경우에 이윤율을 정하는 데서는 이 20 을 100 의 자본에 대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자본 I의 이윤율은 모든 경우에 20% 이다. 이것을 더 똑똑하게 하기 위하여 위에서와 같이 다섯 자본들에 대한 다음 표에서 생산물의 가치에 들어가는 불변자본의 부분들이 각각 다르다고 하자.

자 본	임 여 가치율	잉여가치	이윤율	c의 소비 된 부분	상품가치	생산비
I $80c+20v$	100%	20	20%	50	90	70
II $70c+30v$	100%	30	30%	51	111	81
III $60c+40v$	100%	40	40%	51	131	91
IV $85c+15v$	100%	15	15%	40	70	55
V $95c+5v$	100%	5	5%	10	20	15
계 $390c+110v$	—	110	—	—	—	—
평균 $78c+22v$	—	22	22%	—	—	—

I~V의 자본들을 다시 단 하나의 총자본이라고 보면 이 경우에도 다섯 자본들의 총액 500 의 구성은 $390c+110v$ 이며 따라서 평균구성은 똑같은 $78c+22v$ 이다. 또한 평균잉여가치도 22 이다. 이 잉여가치를 I~V의 자본들에 골고루 나눈다면 다음과 같은 상품가격들이 나올 것이다.

통털어 보면 상품들은 $2+7+17=26$ 만큼 가치 이상으로 그리고 $8+18=26$ 만큼 가치 이하로 팔리며 그리하여 잉여가치가 골고루 나누어짐으로써 또는 100 의 선대된 자본에 대한 22 의 평균이윤이 각각 I~V의 상품들의 생산비에 덧붙음으로써 가격의 배리는 서로 없어진다. 상품의 한 부분이 그 가치 이상으로 팔리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다른 부분은 그 가치 이하로 팔린다. 그리고 상품이 그러한 가격들로 팔려야만 I~V의

자 본	잉여가치	상품의 가 치	상품의 생산비	상품의 가 격	이윤율	가격과 가치의 배 리
I 80c + 20v	20	90	70	92	22%	+2
II 70c + 30v	30	111	81	103	22%	-8
III 60c + 40v	40	131	91	113	22%	-18
IV 85c + 15v	15	70	55	77	22%	+7
V 95c + 5v	5	20	15	37	22%	+17

자본들의 이윤율은 I ~ V의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2%로 될 수 있다. 가격은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서로 다른 이윤율에서 평균이 나오고 평균이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생산비에 덧붙음으로써 나오는데 이 가격이 바로 생산가격이다. 생산가격의 전제는 일반적 이윤율의 존재이며 이 일반적 이윤율은 또한 개개 특수한 생산분야의 이윤율이 이미 해당한 평균율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특수한 이윤율은 개개 생산분야에서 m/C 이며 이 제3부의 제1편에서 본 것처럼 상품의 가치에서 끌어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끌어내지 않고서는 일반적 이윤율(따라서 상품의 생산가격도)은 뜻도 내용도 없는 표상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비 더하기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계산하여 그 생산비에 덧붙인 이윤과 같다. 즉 상품의 생산가격은 상품의 생산비 더하기 평균이윤과 같다.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에서 투하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각각 다름으로 하여, 따라서 주어진 크기의 총자본에서 가변부분이 차지하는 백분율이 각각 다름에 따라 크기가 같은 자본들에 의하여 가동되는 노동량이 매우 다르다는 사정으로 하여 그 자본들이 차지하는 잉여노동의 양이 각각 매우 다르게 되며 또는 그 자본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의 양이 매우 다르게 된다. 그에 따라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의 이윤율은 처음에는 매우 다르다. 서로 다른 이 이윤율은 경쟁에 의하여 균등화되어 유일한 일반적 이윤율로 되는데 이 일반적 이윤율은 서로 다른 이 모든 이윤율의 평균이다.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어떻든 간에 이 일반적 이윤율에

따라 주어진 크기의 자본에 돌아가는 이윤을 평균이윤이라고 한다. 상품의 생산비 더하기 그 상품의 생산에 적용된(그 생산에 소비된 것뿐 아니라) 자본에 대한 한 해의 평균이윤 가운데서 그 상품의 회전조건에 따라 그 상품에 돌아가는 부분과 같은 상품의 가격이 그 상품의 생산가격이다. 예컨대 500이라는 자본 가운데서 100이 고정자본이고 그 10%가 400의 유동자본이 한 번 회전하는 기간에 마멸된다고 하자. 이 회전기간의 평균이윤은 10%라고 하자. 그러면 이 회전기간에 나오는 생산물의 생산비는 마멸분 10c 더하기 유동자본 $400(c+v)=410$ 이며 그 생산가격은 생산비 410 더하기 $50(500\text{에 대한 }10\%\text{의 이윤})=460$ 일 것이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의 자본가들은 그들의 상품을 팔 때에 이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가치를 회수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자신의 분야에서 이 상품을 생산할 때에 생산한 잉여가치, 따라서 이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통털어 모든 생산분야의 사회의 총자본이 주어진 기간에 생산하는 총잉여가치 또는 총이윤 가운데서 골고루 분배되어 사회적 총자본 가운데서 해당한 개개 부분에 돌아가는 그만한 잉여가치 따라서 이윤을 얻을 따름이다. 100씩의 선대된 자본은 각각 그 구성이 어떻든 간에 해마다 또는 다른 기간마다 이 기간에 총자본의 100마다에 돌아가는 그만한 이윤을 얻는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이윤인 만큼 각각 다른 자본가들은 주식회사의 단순한 주주처럼 서로 대하는데 주식회사에서는 이윤의 몫이 100씩의 자본에 골고루 나누어지며 따라서 각각 다른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그 몫이 그들 각자가 총기업에 집어넣은 자본의 크기에 따라서만, 각자가 총기업에 참가한 그 크기에 비례해서만, 각자의 주권수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상품가격 가운데서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된 자본가치부분들을 보상하는 부분, 따라서 이 소비된 자본가치를 되시는 데 쓰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즉 생산비를 이루는 부분은 해당한 생산분야들에서의 지불에 의하여 전적으로 규정되는데 상품가격의 다른 구성부분 즉 이 생산비에 덧붙는 이윤은 이 일정한 생산분야의 이 일정한 자본이 주어진 기간에 생산하는 이윤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생산에 적용된 사회적 총자본의 일정한 부분으로서 적용된 개개 자본에 주어진 기간 평균적으로 돌아

가는 이윤량에 의하여 규정된다.²²⁾

그리하여 자본가가 그의 상품을 그 생산가격대로 판다면 그는 생산에서 그가 소비한 자본가치의 크기만한 화폐량을 회수하며 또 그저 사회적 총자본의 일정한 부분으로서 그가 선대한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이윤을 얻게 된다. 개개 자본가의 생산비는 특수한 성격을 띤다. 이 생산비에 덧붙는 이윤은 그 해당하는 특수한 생산분야의 조건들에는 달려 있지 않으며 선대자본 100씩에 대한 단순한 평균이다.

위에서 든 예에서 서로 다른 다섯 자본 I~V가 한 사람의 것이라고 치자. 투하된 자본의 100씩마다에 얼마만큼의 가변자본과 불변자본이 상품생산에 소비되었는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I~V의 개별적 매 투자에 주어져 있으며 I~V 상품들의 이 가치부분은 더 말할 것 없이 그 상품들의 가격의 한 부분을 이룰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이 가격은 선대되고 소비된 자본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생산비들은 I~V의 상품 종류마다 서로 다를 것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소유자에 의하여 확정될 것이다. 그러나 I~V에서 생산된 각각 다른 잉여가치량 또는 이윤량으로 말하면 자본가는 그것을 그가 선대한 총자본의 이윤으로서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리하여 100씩의 자본에 돌아가는 것은 이 총이윤 가운데서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I~V의 개개 투자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생산비는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상품들에 있어서 판매가격 중 100씩의 자본마다 생산비에 덧붙는 이윤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같을 것이다. 따라서 I~V 상품들의 총가격은 그 상품들의 총가치와 같을 것이다. 즉 I~V의 생산비들의 총액 더하기 I~V에서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이윤의 총액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사실상 그 총가격은 I~V의 상품들에 들어 있는 과거 노동과 새로 덧붙는 노동 총량의 화폐 표현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사회적 규모에서 보면——모든 생산부문들을 전일체로 보면——생산된 상품들의 생산가격 총액은 그 상품들의 가치 총액과 같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이 명제와 모순되는 것 같다. 즉 그 사실이란 자

22) 세르블리에, 「부와 빈곤」, 파리, 1841년, 71~72페이지³²⁾

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생산자본의 요소들을 보통 시장에서 사며 따라서 그 요소들의 가격에는 이미 실현된 이윤이 들어 있으며 이에 따라 한 산업부문의 생산가격은 그것에 들어 있는 이윤과 함께 다른 산업부문의 생산비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온 나라 상품들의 생산비 총액을 한편에 놓고 그 나라에서 생산되는 이윤 또는 잉여가치 총액을 다른 편에 놓는다면 계산이 옳게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컨대 A라는 상품을 들어보자. 그 상품의 생산비에는 B, C, D의 이윤들이 들어 있고 B, C, D의 생산비들에는 또 A의 이윤이 들어간다고 하자. 그리하여 계산을 해보면 A의 이윤은 그 자체의 생산비 속에는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B, C, D의 이윤들도 그 자체들의 생산비 속에는 없다. 누구도 그 자체의 이윤을 그의 생산비에 넣지는 않는다. 따라서 예컨대 n 개의 생산분야들이 있고 개개 생산분야에서 얻는 이윤이 p 와 같다면 총체적인 생산분야들의 생산비는 모두 $k - np$ 이다. 따라서 총계산을 보면 한 생산분야의 이윤들이 다른 생산분야들의 생산비에 들어가는 한에서 이 이윤들은 이미 마지막 생산물의 총가격의 구성부분으로서 계산에 들어가 있으며 두 번 이윤편에 나타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이윤들이 이 이윤편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오직 그 상품 자체가 마지막 생산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그 상품의 생산가격이 다른 상품의 생산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상품의 생산비에 생산수단 생산자들의 이윤들로서 p 라는 금액이 들어가고 이 생산비에 p_1 이라는 이윤이 덧붙는다면 총이윤 $P = p + p_1$ 이다. 그러면 그 상품의 총생산비는 이윤으로서 들어가는 모든 가격부분들을 빼면 그 상품 자체의 생산비에서 P 를 댄 것과 같다.

이 생산비를 k 라고 하면 $k + P = k + p + p_1$ 로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자본론」 제1부, 제7장, 2, 182페이지*에서 잉여가치를 취급하면서 본 바와 같이 개개 자본의 생산물은 그 한 부분은 자본만을 보상하는데 다른 부분은 잉여가치만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계산을 사회의 총생산물에 적용한다면 해당하는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263페이지 이하를 보라. 편집부

면 사회를 총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예컨대 아마의 가격에 들어 있는 이윤이 두 번 즉 한 번은 아마포의 가격의 한 부분으로서 또 한 번은 아마 생산자의 이윤으로서 나타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A의 잉여가치가 B의 불변자본에 들어가는 한에서는 이윤과 잉여가치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것은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이 지불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는 부지불노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상품의 가치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만 B가 A의 잉여가치에 대하여 댓가를 지불한다는 것을 보여 줄 따름이다. 총계산에서 A의 잉여가치를 두 번 셀 수는 없다.

그러나 역시 다음과 같은 차이는 있다. 예컨대 B에서 실현된 잉여가치가 B의 생산물의 가격 속에 덧붙여 있는 이윤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기 때문에 B자본의 생산물의 가격은 그 가치와 어긋날 뿐 아니라 B자본의 불변부분을 이루는 상품들과 또 간접적으로 노동자들의 생활수단으로서 그 가변부분을 이루는 상품들에 있어서도 사정은 똑같다. 불변부분으로 말하면 그 자체는 생산비 더하기 잉여가치와 같으며 따라서 이제는 생산비 더하기 이윤과 같은데 이 이윤은 또 그것이 대신하는 잉여가치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가변자본으로 말하면 하루의 평균임금은 물론 언제나 노동자가 필요한 생활수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의 시간에 새로 생산한 가치와 같지만 그러나 이 시간 수 자체는 또 필요한 생활수단의 생산가격이 그 가치와 어긋남으로써 달라진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잉여가치가 한 상품에 더 많이 들어간 만큼 다른 상품에는 그만큼 더 적게 들어감으로써, 따라서 또 가치와 어긋나게 상품들의 생산가격에 들어 있는 것들은 서로 상쇄됨으로써 해결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일반적 법칙이 언제나 매우 복잡하고 근사하게 실현되며 지배적 경향으로서만, 결코 확정되지 않고 늘 변동되는 평균으로서만 실현된다.

일반적 이윤율은 일정한 기간, 예컨대 한 해 동안 선대자본의 100씩에 대한 서로 다른 이윤율들의 평균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일반적 이윤율에서는 서로 다른 자본들의 회전기간이 다름으로써 생기는 차이도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차이들은 평균에 의하여 일반적 이윤율이 이루어

지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의 서로 다른 이윤율에 있어서는 결정적인 계기로 된다.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대한 위에서 든 예 중에서는 개개 생산분야의 개개 자본을 100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이윤율의 백분율적 차이 따라서 또 크기가 같은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사실상 개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은 그러한 주어진 개개 생산분야에서 자본의 구성이 주어져 있으므로 적용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하지만 하나하나의 생산분야의 특수한 이윤율은 적용되는 자본이 100이건 $m \times 100$ 이건 1,000 : 10,000이건 의연 10%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이윤율은 바로 그 분야들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 따라서 이윤의 양들이 총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에 따라 각각 매우 다르므로 사회적 자본의 100에 대한 평균이윤, 따라서 평균이윤율 또는 일반적 이윤율이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자본들의 크기가 각각 다름에 따라 매우 다르다는 것은 명백하다. 네 개 자본 A, B, C, D를 들어 보자. 잉여가치율은 이 모든 경우에 다 100%라고 하자. 끝으로 총자본의 100씩에 대하여 가변자본이 A는 25, B는 40, C는 15, D는 10이라고 하자. 그러면 총자본의 100씩에 대하여 잉여가치 또는 이윤이 A는 25, B는 40, C는 15, D는 10, 도합 90으로 될 것이며 따라서 네 개 자본의 크기가 같다면 평균이윤율은 $90/4 = 22\frac{1}{2}\%$ 일 것이다.

그러나 총자본의 크기들이 $A=200$, $B=300$, $C=1,000$, $D=4,000$ 이라면 생산된 이윤은 각각 50, 120, 150, 400일 것이다. 도합 5,500의 자본에 대하여 이윤은 720 즉 평균이윤율은 $13\frac{1}{11}\%$ 일 것이다.

생산된 총가치의 양들은 A, B, C, D에서 각각 선대된 총자본의 크기가 서로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러므로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있어서는 단순한 산수적 평균을 내야 할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의 이윤율들의 차이만이 문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이 이윤율이 평균을 형성하는 데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도 문제로 된다. 그런데 이것은 개개 특수한 분야에 투하된 자본의 상대적 크기에 즉 개개 특수한 생산분야에 투하된 자본이 사회적 총자본 가운데서 어떤 부분을 이루는가에

달려 있다. 물론 총자본 가운데서 비교적 높거나 낮은 이윤율을 낳는 부분이 비교적 큰가 적은가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총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이 큰 생산분야나 그 비율이 작은 생산분야에 얼마만한 자본이 투하되어 있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 이것은 고리대금업자가 서로 다른 자본을 서로 다른 이자율로, 예컨대 4, 5, 6, 7% 등으로 꾸어주고 얻는 평균이자율과 꼭 마찬가지로, 평균율은 고리대금업자가 그의 자본을 얼마나 서로 다른 이자율로 꾸어주었는가 하는 데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리하여 일반적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규정된다.

- 1)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있는 자본들의 유기적 구성, 따라서 개별적 분야의 서로 다른 이윤율.
- 2) 서로 다른 이 분야들 사이에서의 사회적 총자본의 분배 따라서 개개 특수한 분야들에 투하된, 따라서 특수한 이윤율을 가진 자본의 상대적 크기, 즉 개개 특수한 생산분야가 사회적 총자본 가운데서 차지하는 몫의 상대적 크기.

우리는 「자본론」 제1부와 제2부에서 상품의 가치만을 문제로 삼았다. 이제는 한편으로 이 가치의 한 부분으로서 생산비가 분리되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상품가치의 전화된 형태로서 상품의 생산가격이 전개되었다.

사회적 자본의 평균구성은 $80c+20v$ 이고 한 해의 잉여가치율 $m=100\%$ 라고 하면 100의 자본에 대한 한 해의 평균이윤은 20이며 한 해의 일반적 이윤율은 20%일 것이다. 한 해 동안에 100의 자본이 생산하는 상품의 생산비 k 가 얼마이건 그 상품의 생산가격은 여하튼 $k+20$ 일 것이다. 자본의 구성이 $(80-x)c+(20+x)v$ 인 생산분야에서는 한 해에 실제로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이 분야에서 한 해에 생산된 이윤은 $20+x$ 즉 20보다 클 것이며 생산된 상품가치는 $k+20+x$ 즉 $k+20$ 보다 또는 그 상품의 생산가격보다 클 것이다. 자본의 구성이 $(80+x)c+(20-x)v$ 인 생산분야에서는 한 해에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이윤은 $20-x$ 즉 20보다 작으며 따라서 상품가치는 $k+20$ 인 생산가격보다 작아 $k+20-x$ 일 것이다. 있을 수 있는 회전기간의 차이를 제쳐놓고 본다면 상품의 생산가격은 자본의

구성이 우연히 $80c+20v$ 인 분야에서만 상품의 가치와 같을 것이다.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특수한 발전은 개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그 정도가 각각 달라서 일정한 노동량 또는——노동일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일정한 수의 노동자들이 가동시키는 생산수단의 양이 어떤가에 따라 높거나 낮게 된다. 즉 그것은 생산수단의 일정한 양이 요구하는 노동의 양에 반비례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회적 평균자본보다 불변자본의 비율이 더 많고 따라서 가변자본의 비율이 더 적은 자본을 구성이 높은 자본이라고 한다. 이와 반대로 우리는 사회적 평균자본의 경우보다 불변자본이 상대적으로 작고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자본을 구성이 낮은 자본이라고 한다. 끝으로 우리는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과 일치하는 구성을 가진 자본을 평균구성의 자본이라고 한다. 사회적 평균자본의 비율이 $80c+20v$ 라면 $90c+10v$ 의 자본은 사회적 평균보다 높으며 $70c+30v$ 의 자본은 그보다 낮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균자본의 구성이 $mc+nv$ ——여기에서 m 과 n 은 불변의 크기이며 $m+n=100$ 이다——인 경우에 $(m+x)c+(n-x)v$ 는 개별적 자본이나 자본집단의 구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표시하며 $(m-x)c+(n+x)v$ 는 그것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표시한다. 한 해에 한 번 회전한다고 전제하고 평균이윤율이 설정된 후에 이 자본들이 어떻게 기능을 노는가 하는 것을 다음 표가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I 은 평균구성을 표시하며 따라서 평균이윤율은 20%이다.

I. $80c+20v+20m$, 이윤율=20%, 생산물의 가격=120, 가치=120.

II. $90c+10v+10m$, 이윤율=20%, 생산물의 가격=120, 가치=110.

III. $70c+30v+30m$, 이윤율=20%, 생산물의 가격=120, 가치=130.

그리하여 자본 II가 생산한 상품에서는 그 가치가 그 생산가격보다 작고 자본 III이 생산한 상품에서는 생산가격이 가치보다 작으며 오직 자본의 구성이 우연히 사회적 평균구성과 같은 생산부문의 자본 I에서만 가치와 생산가격이 같다. 그런데 이러한 표식들을 일정한 경우에 적용하는 데서는 물론 기술적 구성의 차이로 해서가 아니라 불변자본의 요소의 단순한 가치변동으로 하여 c 와 v 사이의 비율이 어느 정도로 일반적 평균과 어긋나게 되는가 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제까지 설명한 것으로 하여 사실 상품의 생산비에 대한 규정은 달라

지고 있다. 원래는 상품의 생산비는 그 상품의 생산에서 소비된 상품들의 가치와 같다고 가정하였다. 그런데 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상품의 구매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생산비로 되며 그리하여 생산비로서 다른 상품의 가격 형성에 들어갈 수 있다. 상품의 생산가격은 상품의 가치와 어긋날 수 있으므로 다른 상품의 이 생산가격이 들어 있는 한 상품의 생산비도 이 상품의 총가치 가운데서 이 상품에 들어 있는 생산수단의 가치를 이루는 부분보다 높거나 낮을 수 있다. 생산비의 뜻이 이렇게 달라졌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며 따라서 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상품의 생산비가 그 상품의 생산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같다고 본다면 언제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이 점을 더 깊이 파고들 필요는 없다. 그런데 상품의 생산비가 언제나 상품의 가치보다 작다는 명제는 어쨌든 의연 옳다. 사실 상품의 생산비가 그 상품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아무리 어긋난다 하더라도 이 지나간 배리는 자본가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상품의 생산비는 주어진 것이며 자본가의 생산에는 달려 있지 않은 전제인데 그의 생산의 결과는 잉여가치 즉 생산의 생산비를 넘는 가치초과분이 들어 있는 상품인 것이다. 그런데 상품의 생산비가 상품의 가치보다 작다는 명제는 이제는 실제로 생산비가 생산가격보다 작다는 명제로 전화되었다. 생산가격이 가치와 같은 사회적 총자본에 있어서는 뒤에서 든 명제는 생산비가 가치보다 작다는, 앞에서 든 명제와 같은 것이다. 뒤에서 든 명제가 특수한 생산분야들에서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명제의 기초에는 언제나 다음과 같은 사실이 놓여 있다. 즉 사회적 총자본을 놓고 보면 이 사회적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들의 생산비는 가치보다 작으며 또한 여기에서 생산된 상품의 총량에 있어서 이 가치와 같은 생산가격보다 작은 것이다. 한 상품의 생산비는 그 상품에 들어 있는 지불노동의 양과만 일치하며 그 가치는 그 상품에 들어 있는 지불노동과 부지불노동의 총량과 일치한다. 생산가격은 지불노동의 총계 더하기 주어진 생산분야의 특수한 조건들에는 달려 있지 않는 일정한 양의 부지불노동과 일치한다.

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k+p$ 즉 생산비 더하기 이윤과 같다는 공식은

이제는 $p=kp'$ (여기에서 p' 는 일반적 이윤율)이며 따라서 생산가격은 $k+kp'$ 라고 더 정확히 규정되었다. $k=300$ 이며 $p'=15\%$ 라면 생산가격 $k+kp'=300+300^{15}/_{100}=345$ 이다.

개개 특수한 생산분야의 상품들의 생산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품들의 가치가 의연 같은(따라서 전과 똑같은 양의 죽은 노동과 산 노동이 그 상품들의 생산에 들어가는) 조건에서 주어진 생산분야의 구체적 조건들에 달려 있지 않는 일반적 이윤율의 변동으로 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경우.

2) 일반적 이윤율이 의연 같은 조건에서 주어진 생산분야 자체에서 기술적 변화의 결과이건 그 생산분야의 불변자본에 그것을 이루는 요소들로서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가 변동한 결과이건 가치변동으로 하여 달라질 수 있는 경우.

3) 끝으로 이상의 두 사정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특수한 생산분야들의 실제적 이윤율에는 끊임없이 큰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이윤율의 실제적 변화는 예외적인 경제적 비상사변으로 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닌 한에서 매우 오랜 기간에 걸치는 일련의 파동들 즉 오랜 시간이 걸려야 굳어지고 균등화되어 일반적 이윤율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파동들로 하여 펴 후에야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적 짧은 시간을 두고 볼 때에는(시장가격의 변동은 아주 제쳐놓고 본다) 언제나 생산가격의 변화는 무엇보다도 상품들의 실제적 가치변동으로 즉 상품들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의 총량의 변동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똑같은 가치들의 화폐표현에서 일어나는 단순한 변동은 여기에서는 물론 전혀 문제로 되지 않는다.²³⁾

한편 또 사회적 총자본을 놓고 보면 그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 총액(또는 화폐로 표현하여 그 상품들의 가격)이 불변자본의 가치+가변자본의 가치+잉여가치라는 것은 명백하다. 노동의 착취정

23) 코베트(『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특수방식에 관한 연구』, 런던, 1841년), 174페이지.

도가 변함없다고 가정하면 이윤율은 이 경우에 잉여가치의 양이 의연 같은 조건에서 불변자본의 가치가 달라지던가 가변자본의 가치가 달라지던가 또는 이 두 가지 것이 다 달라지며 그리하여 C 가 달라지고 따라서 m/C 즉 일반적 이윤율이 달라질 때에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느 경우나 일반적 이윤율의 변동은 불변자본이나 가변자본에 또는 이 두 가지 자본에 다 동시에 그것들을 이루는 요소들로서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변동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또 일반적 이윤율은 상품들의 가치가 의연 같은 조건에서는 노동의 착취정도가 달라지면 변동할 수 있다.

끝으로 노동의 착취정도가 의연 같은 조건에서 일반적 이윤율은 노동과정에서 기술적 변화가 일어난 결과에 적용되는 노동의 총량이 불변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달라지면 변동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적 변화는 언제나 이제는 전에 비하여 더 많거나 더 적은 노동을 들여야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변동에서 나타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그 가치변동과 함께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제1편에서 본 바와 같이 잉여가치와 이윤은 그 양적 측면에서 보는 한에서는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윤율은 처음부터 잉여가치율과 차이가 생기는데 이 차이는 우선 다른 계산형식으로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잉여가치율이 의연 같은 경우에 이윤율은 오르내릴 수 있으며 또 그 반대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실제로 자본가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윤율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은 또한 처음부터 잉여가치의 진정한 기원을 완전히 애매하게 하고 신비화한다. 그렇지만 양적 차이는 잉여가치율과 이윤율 사이에만 있었으며 잉여가치와 이윤 자체들 사이에는 없었다. 이윤율에서는 잉여가치가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고 또 총자본을 자체를 재는 척도로 삼았기 때문에 잉여가치 자체가 총자본에서, 그것도 한결같이 총자본의 모든 부분들에서 생겨난 것처럼 나타나며. 그리하여 불변자본과 가변자본 사이의 유기적 차이는 이윤이라는 개념에서는 사라져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잉여가치가 전화된 이윤으로서의 이 모습에서는 잉여가치 자체가 그 기원을 부정하며 자체의 성격을 잃었으며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한에서는 이윤과 잉여가치 사이의

차이는 다만 질적 변화, 형태변화에만 귀결되었는데 실제적인 양적 차이는 전화의 이 첫 단계에서는 이윤율과 잉여가치율 사이에서만 있고 아직 이윤과 잉여가치 사이에는 없다.

일반적 이윤율이 나오게 되고 또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각각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주어진 적용된 자본의 크기에 따른 평균이윤이 나오게 되자 사정은 달라진다.

어떤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실제로 생산된 잉여가치, 따라서 이윤이 상품의 판매가격에 들어 있는 이윤과 일치하는 것은 이제는 우연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대체로 이윤과 잉여가치는 그것들의 올뿐 아니라 실제로 그 크기가 다르다. 이제는 노동의 착취정도가 주어진 경우에 한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은 직접 개개 특수한 생산부분의 자본가에게 있어서보다 사회적 자본의 총평균이윤에 대하여, 따라서 자본가계급 일반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 개개 특수한 생산부분의 자본가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은 오직²⁴⁾ 그의 생산부문에서 생산된 잉여가치량이 평균이윤을 조절하는 하나의 규정적 계기로 되는 한에서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본가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또 사실상 그의 관심도 끌지 않는, 그의 배후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특수한 생산분야들에서의 이윤율과 잉여가치율 사이뿐 아니라 이윤과 잉여가치 사이에서 생기는 실제적인 양적 차이로 하여 이제는 여기에서 자신을 속이는 데 특수한 관심을 가지는 자본가에게 있어서 뿐 아니라 노동자들에게 있어서도 이윤의 진정한 본성과 그 기원은 완전히 가리워진다.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됨에 따라 가치규정의 기초 자체가 보이지 않게 된다. 끝으로 단순히 잉여가치가 이윤으로 전화되는 경우에 상품의 가치가운데서 이윤을 이루는 부분이 상품의 생산비로서의 다른 가치부분에 맞서게 된다면 여기에서 벌써 가치의 개념은 자본가에게서 사라지는데 그것은 자본가의 안중에 있는 것은 상품의 생산에 드는 총노동이 아니라 오직 총노동 가운데서 그가 산 생산수단이나 죽은 생산수단의 형태로

24) 여기에서 임금 인하, 독점가격 등으로 일시적인 추가이윤을 끌어낼 가능성이 제쳐놓고 본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다. [F. E.]

덧가를 지불한 부분만이며 그리하여 이윤은 자본가에게 상품의 내재적 가치 밖에 있는 그 무엇으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됨으로써 이 표상이 이제는 완전히 확증되고 확립되며 굳어진다. 그것은 특수한 생산분야를 놓고 보면 생산비에 덧붙은 이윤이 그 분야 자체에서 진행되는 가치형성과정의 한계들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 분야 밖에 있는 조건들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내적 연관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다는 사정, 아래에서 그리고 제4부³³에서 보게 되듯이 이제까지의 정치경제학은 가치 규정을 기초로 삼기 위하여 잉여가치와 이윤, 잉여가치율과 이윤율 사이의 차이들을 자의로 무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현상에서 눈에 띄는 그 차이들에 매달리기 위하여 이 가치 규정과 함께 과학적 취급의 온갖 지반을 내던졌다는 사정, 이론가들의 이러한 혼란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아주 잘 보여준다. 즉 경쟁싸움에 전적으로 사로잡혀 그 싸움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도저히 꿰뚫어보지 못하는 실천적인 자본가는 거짓외관 속에 숨어 있는 이 과정의 내적 본질과 내적 모순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제1편에서 전개한 이윤율이 오르내리는 모든 법칙들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1) 한편으로 그 법칙들은 일반적 이윤율의 법칙들이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윤율이 오르내리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많은 만큼 일반적 이윤율은 날마다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생산분야에서의 움직임은 다른 생산분야에서의 움직임을 없앨 것이며 영향들은 교차되고 마비된다. 우리는 앞으로 파동이 결국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를 연구할 것이다. 그러나 파동은 천천히 일어난다. 하나 하나의 생산분야에서 파동이 갑자기 여러 방면에서, 그 길이가 서로 다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하여 파동은 부분적으로 시간이 감에 따라 차례로 상쇄되며 그리하여 가격이 오른 다음에는 가격이 떨어지며 또 그 반대로 되며 따라서 파동은 국부적인 것으로 즉 일정한 생산분야들에만 그치며 끝으로 이러한 원인들로 하여 여러 가지 국부적 파동은 서로 상쇄된다. 개개 특수한 생산분야 안에서는 일반적 이윤율과 어긋나는 변동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어긋난 것은 한편으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상쇄되고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다른 편으로는 그렇게 어긋난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른 국부적인 파동에 의하여 없어지기 때문에 또 일반적 이윤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일반적 이윤율은 개개 특수한 분야의 평균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될 뿐 아니라 각각 다른 특수한 분야들로의 총자본의 분배에 의해서도 규정되는 것이므로 그리고 이 분배가 끊임없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이것도 역시 일반적 이윤율이 변동하는 끊임없는 원인으로 된다. 그러나 이 변동의 원인도 이 움직임의 부단성*과 전면성으로 하여 대부분 그 자체가 역시 마비된다.

2) 개개 분야에서는 기간이 짧건 길건 이 분야의 이윤율에 파동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동안에 여러 번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 파동이 굳어져 일반적 이윤율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국부적 범위를 벗어나는 뜻을 가지게 될 만큼 시간을 얻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공간적 및 시간적 한계 안에서는 제1판에서 설명한 이윤율의 법칙들이 역시 들어맞는다.

자본의 개개 부분이 똑같이 이윤을 낳는다는 이론적 견해²⁵⁾——잉여가치의 이윤으로의 첫 전화에 관한——는 하나의 실제적 사실을 표현한다. 산업자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건 즉 산업자본이 가동시키는 노동의 4분의 1이 죽은 노동이고 4분의 3이 산 노동이거나 4분의 3이 죽은 노동이고 4분의 1이 산 노동이건, 다시 말하여 산업자본이 한 경우에는 다른 경우보다 세 곱이나 되는 잉여노동을 빨아들이건 또는 세 곱이나 되는 잉여가치를 생산하건——노동의 착취정도가 같은 조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두 경우에 다 전체 생산분야의 평균구성을 눈앞에 두기 때문에 자연 사라지는 개별적 차이를 제쳐놓고 본다면——두 경우에 다 이윤은 같을 것이다. 개별적 자본가가(개개 특수한 생산분야의 자본가들 전체도 그렇지만) 그 시야는 좁지만 자기의 이윤이 다만 자기가 또는 자기 부문에서 쓰는 노동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다. 이것은 개별적 자본가의 평균이윤을 문제로 삼는 한 완전히 옳다. 이 이윤이

* 제1판에는 중단성으로 되어 있다. 맑스의 원고에 따라 고쳤다. 편집부 25) 맬더스(『정치경제학원리』, 제2판, 런던, 1836년, 268페이지).

총자본에 의한 즉 전체 자본가 패거리들에 의한 노동의 전반적 착취에서 어느 정도로 생겨나는가 하는 것은 그에게는 완전히 하나의 신비로운 일이며 부르조아 이론가들인 정치경제학자들 자신이 그것을 지금까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만큼 더욱 그러하다. 노동을 절약하는 것——일정한 생산물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뿐 아니라 취업노동자들의 수를 절약하는 것——과 죽은 노동(불변자본)을 더 많이 적용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옳은 조치로서 나타나며 처음부터 일반적 이윤율과 평균이윤을 결코 다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러므로 생산에 필요한 노동량의 감소가 이윤을 낮추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일정한 사정에서는 적어도 하나하나의 자본가에서 있어서는 이윤을 늘이는 직접적인 원천으로 된다면 어떻게 산 노동이 이윤의 유일한 원천으로 될 수 있는가?

한 생산분야에서 불변자본의 가치를 표시하는 생산비부분이 늘거나 줄어든다면 이 부분은 유통에서 나와서 처음부터 커졌거나 작아진 것으로서 상품의 생산과정에 들어간다. 한편 또 주어진 수의 노동자들이 똑같은 시간에 생산하는 생산물이 더 많거나 더 적더라도 따라서 노동자수가 의연 같은 경우에 일정한 상품량을 생산하는 데 드는 노동량이 달라지더라도 생산비 가운데서 가변자본의 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은 의연 똑같을 수 있으며 따라서 같은 크기로서 총생산물의 생산비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다 합쳐 총생산물을 이루는 개개 상품에 해당하는 노동(지불노동과 따라서 또 부지불노동)은 더 많거나 더 적으며 따라서 또 이 노동에 대한 지출이 더 많거나 더 적으며 즉 임금의 몫이 더 크거나 더 적다. 자본가가 지불하는 총임금은 의연 똑같지만 개개 상품을 놓고 계산하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상품의 생산비 가운데서 이 부분은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상품 자체에서건 그 상품을 이루는 요소들에서건 그러한 가치변동에 의하여 하나하나의 상품생산비(또는 크기가 주어진 자본이 생산한 상품 총량의 생산비)가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평균이윤이 예컨대 10%라면 그것은 의연 10%이다. 비록 이 10%가 하나하나의 상품을 놓고 보면 우리가 전제한 가치변동으로 하여 이 하나하나의 상품 생산비의 크기가 달라진 데 따라 매우 다른 크기를 표시하지만 말이다.²⁶¹

가변자본을 두고 본다면——그런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은 가변

자본이 잉여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이며, 또 자본가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서 가변자본이 노는 실제적 역할을 가리우는 모든 것이 전체 체계를 신비롭게 하기 때문이다——사태는 자본가에게는 거칠게 단순한 것으로 나타난다.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변자본이 예컨대 100명 노동자의 한 주일 임금을 표시한다고 하자. 이 100명의 노동자가 노동일이 주어진 경우에 한 주일에 생산물로 200개의 상품=200W를 생산한다면 1W에는——생산비 가운데서 불변자본이 덧붙이는 부분을 제쳐놓고 보면——100파운드 스텔링=200W이므로 $1W = 100\text{파운드 스텔링} / 200 = 10\text{실링}$ 이 든다. 그런데 노동생산력이 달라진다고 하자. 그것이 두 곱으로 되어 똑같은 수의 노동자들이 전에 200W의 두 곱을 생산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생산비가 다만 임금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에서) 이제는 100파운드 스텔링=400W이므로 $1W = 100\text{파운드 스텔링} / 400 = 5\text{실링}$ 이 든다. 이와는 반대로 생산력이 절반만큼 준다면 똑같은 노동이 생산하는 것은 겨우 200W/2일 것이다. 그런데 100파운드 스텔링=200W/2이므로 이제는 $1W = 200\text{파운드 스텔링} / 200 = 1\text{파운드 스텔링}$ 이 든다. 상품의 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의 변동, 따라서 상품의 가치에서 일어난 변동이 이제는 생산비 따라서 또 생산가격과 관련해서는 똑같은 노동시간에 똑같은 임금으로 생산하는 상품이 더 많은가 더 적은가에 따라 똑같은 임금이 더 많거나 더 적은 상품들에 각각 달리 나누어지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자본가, 따라서 또 정치경제학자에게도 보이는 것은 개개 상품에 해당하는 지불노동부분이 노동의 생산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며 따라서 또 개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은 개개 상품에 들어 있는 부지불노동도 역시 마찬가지로라는 것이며 평균이윤이 사실상 주어진 생산분야에서 빨아들이는 부지불노동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우연에 지나지 않으므로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 상품의 가치가 그것에 들어 있는 노동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사실이 이제는 이와같이 거칠고 내용없는 형태로만 나타난다.

26) 코베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런던, 1841년, 20페이지].

제 10 장 경쟁에 의한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 시장가격과 시장가치. 초과이윤.

일부 생산분야들은 평균적인 자본구성을 가진다. 즉 그 분야들의 자본 구성은 평균적인 사회적 자본의 구성과 완전히 같거나 비슷하다.

이 분야들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생산가격은 화폐로 표현된 그것들의 가치와 완전히 또는 비슷하게 일치한다. 가치는 생산가격의 수학적 한계를 이룬다. 경쟁은 사회적 자본을 각각 다른 생산분야들 사이에 분배하여 개개 분야의 생산가격이 평균구성을 가진 이 분야들의 생산가격의 본을 따라 형성되도록 즉 $k+kp'$ (생산비 더하기 생산비에 평균이윤율을 곱한 것)가 되도록 한다. 그런데 이 평균이윤율은 평균구성을 가진 생산분야 따라서 이윤이 잉여가치와 일치하는 그 분야의 이윤을 백분율로 계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윤율은 모든 생산분야들에서 똑같다. 즉 그것은 자본의 평균구성이 지배하고 있는 평균적인 생산분야들의 이윤율과 같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전체의 이윤 총액은 잉여가치 총액과 같지 않을 수 없으며 또 사회적 총생산물의 생산가격 총액은 그 가치 총액과 같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명백히 자본구성이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 사이의 균등화는 언제나 이 분야들을 자본의 구성이 평균적인 분야를——이 분야들이 사회적 총자본의 평균구성과 꼭 일치하건 다만 비슷하게 일치하건 간에——균등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구성과 비슷한 생산분야들에서도 역시 관념적인 즉 실제로는 없는 평균수준으로 쏠리는 균등화경향 다시 말하여 이 관념적인 수준을 기준으로 삼고 나가려는 경향을 보게 된다. 그리하여 이 면에서는 생산가격을 가치의 단순한 전화된 형태로 만드는 경향, 또는 이윤을 잉여가치의 단순한 부분——그런데 이 부분은 특수한 생산분야에서 생산된 잉여가치에 비례하여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 생산분야

에서 적용된 자본의 양에 비례하여 나누어지며 그리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어떠한 크기가 같은 자본량에는 사회적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 전체 가운데서 크기가 같은 몫(부분)이 들어간다——으로 전화시키는 경향이 필연적으로 지배한다.

그리하여 평균구성이거나 평균구성과 비슷한 자본들에 있어서는 생산가격이 가치와 완전히 일치하거나 비슷하게 일치하며 이윤은 그 자본들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와 일치한다. 그 밖의 모든 자본들은 그 구성이 어떠한 경쟁의 압력을 받아 평균구성의 자본들과 균등화되려고 한다. 그러나 평균구성의 자본들은 그 구성으로 보아 평균적인 사회적 자본과 완전히 같거나 비슷하게 같으므로 모든 자본들은 그 자체가 생산한 잉여가치가 얼마이건 이 잉여가치 대신에 그 상품들의 가격에서 평균이윤을 실현하려고 즉 생산가격을 실현하려고 한다.

한편 또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즉 평균이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하여 이루어지건——어디서나 이 평균이윤은 그 총액이 잉여가치 총액과 같은 평균적인 사회적 자본에 대한 이윤으로밖에 달리는 될 수 없으며 이 평균이윤이 생산비에 덧붙여 이루어지는 가격은 생산가격으로 전화된 가치로밖에 달리는 될 수 없다. 일정한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자본들이 그 무슨 이유로 해서 균등화과정에 휩쓸리지 않더라도 사태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경우에는 평균이윤이 사회의 자본 가운데서 균등화과정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하여 계산될 것이다. 평균이윤은 개개 생산분야에 투하된 자본량을 그 크기에 비례하여 나눈 잉여가치 총량으로밖에 달리는 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것은 실현된 부지불노동 전체이며 이 총량은 지불된 죽은 노동 및 산 노동과 꼭 마찬가지로 자본가들이 차지하는 상품과 화폐의 총량으로 표시된다.

여기에서 참으로 어려운 문제는 일반적 이윤율로의 이윤들의 이 균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균등화는 명백히 하나의 결과이지 출발점으로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선 명백한 것은 예컨대 화폐로 상품가치들이 평가되는 것은 다만 상품가치들이 교환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상품가치가 상품가치와 실제로 교환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적 가치대로의 상품들이 교환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맨 먼저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의 모든 상품들이 그 실제적 가치대로 팔렸다고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위에서 설명한대로 이 경우이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각각 매우 다른 이윤율들이 지배할 것이다.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리는가(즉 상품이 그것에 들어 있는 가치에 비례하여 그것의 가치대로의 가격으로 서로 교환되는가) 또는 상품이 팔려서 그것을 각각 생산하는 데 선대한 자본들의 같은 양에 크기가 같은 이윤을 가져오는 그러한 가격으로 팔리는가 하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같지 않은 양의 산 노동을 가동시키는 자본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이 같지 않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노동의 착취정도 또는 잉여가치율이 어디서나 똑같다는 것 또는 그 착취정도의 차이들은 실제적이거나 가상의(조건적인) 보상이유들로 하여 균등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것은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을 전제로 하며 노동자들이 한 생산분야에서 다른 생산분야로 끊임없이 이동함으로써 균등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일반적 잉여가치율——모든 경제법칙들과 마찬가지로 경향으로 본——을 우리는 이론을 단순화하는 것으로서 허용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적 잉여가치율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사실상의 전제이다. 비록 이러한 전제의 설정은 예컨대 잉글랜드의 농업노동자들의 거주법(settlement laws)³⁴과 같이 많은 적건 상당한 지방적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실제적 장애로 하여 일정한 지장을 받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이론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법칙들이 순수하게 전개된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언제나 어느 정도의 근사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근사성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또 이 생산양식과는 인연이 없는 이런 경제형태들의 잔재가 더 완전히 제거되면 될수록 더욱 커진다.

모든 곤란은 상품이 단순히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의 생산물로서 교환된다는 데서 생기는데 자본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또는 크기가 같은

경우에는 잉여가치 총량에 대한 같은 몫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 주어진 기간에 생산한 상품의 추가적은 이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상품들의 추가적은 자본의 생산물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상품의 가격 총액에 지나지 않는다.

결정적인 점은 우리가 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면 가장 잘 드러날 것이다. 노동자들 자신이 제각기 생산수단을 가지고 자기들의 상품을 서로 교환한다고 하자. 그러면 이 상품들은 자본의 생산물은 아닐 것이다. 서로 다른 노동부문들에서 적용하는 노동수단과 노동재료의 가치는 여러 가지 작업의 기술적 성질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다. 또한 적용하는 생산수단들의 가치가 같지 않다는 것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한 상품을 한 시간에 만들어낼 수 있는데 다른 상품은 웅근 하루가 걸려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하여 주어진 노동량에 필요한 생산수단의 양은 각각 다를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노동자들이 평균 같은 시간만큼 일하며 이 경우에 노동강도 등이 각각 다른 데서 생기는 균등화의 영향을 고려에 넣는다고 하자. 그러면 두 노동자들(각각 다른 두 노동부문의)은 그들의 하루노동의 생산물을 이루는 상품들에서 첫째로 그들의 지출 즉 그들의 노동과정에서 소비한 생산수단의 비용을 보상하였을 것이다. 이 생산수단의 비용은 그들의 노동부문의 기술적 성질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다. 두 노동자는 둘째로 같은 양의 새로운 가치 즉 하루노동일에 생산수단에 덧붙인 가치를 창조하였을 것이다. 이 새로운 가치에는 그들의 임금 더하기 잉여가치 즉 그들의 필수적 욕망의 한계를 넘는 잉여노동이 들어 있을 것이지만 이 잉여노동의 결과는 그들 자신의 것일 것이다. 자본주의적으로 표현하면 두 노동자는 똑같은 임금 더하기 똑같은 이윤 즉 예컨대 10시간의 하루노동일의 생산물로 표현된 가치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로 그들의 상품가치는 서로 다를 것이다. 예컨대 상품 I의 가치에는 소비된 생산수단분으로 상품 II보다 더 많은 부분이 들어 있다고 하고 그 밖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상품 I은 상품 II보다 더 많은 산 노동을 빨아들이며 따라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상품 II보다 더 긴 노동시간이 든다고 하자. 그리하여 이 상품 I과 상품 II의 가치는 서로 매우 다르다. 또한 노동자 I과 노동

자 II가 주어진 시간에 수행한 노동의 생산물인 상품가치들의 총액도 서로 다르다. 우리가 이 경우에 지출된 생산수단의 총가치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을 이윤율이라고 부른다면 이윤율도 I과 II에 있어서 서로 매우 다를 것이다. I과 II의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동안에 매일 소비하며 임금을 대표하는 생활수단은 이 경우에 선대한 생산수단 가운데서 우리가 다른 경우에는 가변자본이라고 부르는 부분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들은 같은 노동시간에 I과 II에서 똑같을 것이다.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I과 II는 각각 한 노동일의 생산물의 가치를 얻으므로 선대한 불변적 요소들의 가치를 뺀 다음에 그들은 같은 가치를 얻는데 그 한 부분은 생산에서 소비한 생활수단을 보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른 부분은 그것을 넘는 여분의 잉여가치로 볼 수 있다. I이 더 많은 지출을 하였다면 이 지출은 그의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이 불변적 부분을 보상하는 부분이 더 큼으로써 보상되며 따라서 또 그는 그의 생산물의 총가치 가운데서 더 큰 부분을 이 불변적 부분의 소재적 요소들로 도로 전환해야 하는데 II는 불변적 부분에 대한 수입이 적다면 그 대신 그만큼 더 적은 부분을 불변적 부분의 소재적 요소들로 도로 전환하면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 밑에서 이윤율의 차이는 아무래도 좋은데 그것은 오늘날 임금노동자에게서 짜낸 잉여가치량이 어떠한 이윤율로 표현되건 그것이 임금노동자에게는 아무래도 좋은 것과 꼭 마찬가지로, 또 국제무역에서 서로 다른 국민들에게서 보는 이윤율의 차이가 그들의 상품교환에 대하여 아무래도 좋은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리하여 가치대로 또는 가치와 비슷하게 이루어지는 상품교환은 일정한 높은 수준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생산가격대로의 교환보다 훨씬 낮은 단계를 요구한다.

서로 다른 상품들의 가격들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서로 설정되고 조절되건 간에 그 가격들의 움직임은 가치법칙에 종속된다. 상품들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가격도 떨어지며 그 노동시간이 늘어나면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다면 가격도 오른다.

그리하여 가격과 가격의 움직임이 가치법칙에 종속된다는 것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상품들의 가치를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생산가

격에 앞선 것으로 보는 것은 완전히 옳다. 이것은 생산수단이 노동자의 것인 경제형태에 들어맞으며 이러한 경제형태는 고대세계나 현대세계에서 자기의 노동으로 살아가며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민에게 있어서와 수공업자에게 있어서 볼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생산물은 똑같은 한 공동체의 성원들 사이에서가 아니라 다른 공동체들 사이에서 교환됨으로써 상품으로 발전한다는 우리가 전에* 내놓은 견해²⁷⁾와도 일치한다. 그것은 이러한 원시적 상태에 들어맞지만 노예제와 농노제에 기초하고 있는 그 후의 경제형태들에도 그리고 수공업자들의 동업조합조직에도 들어맞는다. 이것은 개개 생산부문에 고착된 생산수단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가 아주 어려우며 따라서 각각 다른 생산분야들의 호상관계가 어느 한계까지는 다른 나라들 사이나 공산주의적 공동체 사이의 호상관계와 같은 한에서 그러하다.

상품이 서로 교환되는 가격이 그 상품의 가치와 비슷하게 일치하려면 다음과 같이 되기만 하면 된다. 즉 1) 서로 다른 상품들의 교환이 순전히 우연적이거나 단 한 번의 현상으로 되지 말아야 한다. 2) 우리가 직접적인 상품교환을 놓고 보는 한에서 이 상품들이 양쪽 다 서로 수요와 비슷한 양만큼 생산되는 것인데 이것은 판매에서 얻은 호상간의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또 계속되는 교환 자체의 결과로 그렇게 된다. 3) 우리가 판매를 놓고 말하는 한에서는 어떠한 자연적 또는 인위적 독점으로 거래하는 쌍방이 가치 이상으로 팔 수 있거나 가치 이하로 팔아버리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우연적인 독점이라는 것은 우연적인 수요와 공급 관계로 하여 구매자나 판매자에게 있게 되는 독점을 말한다.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는 가정은 물론 그 상품들의 가치가 중심점으로 되어 그 주위를 그 가격들이 맴돌며 또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109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27) 1865년 당시에는 이것은 아직 맑스의 견해에 지나지 않았다. 마우러로부터 모르간에 이르기까지의 원시공동체에 관한 방대한 연구³⁵⁾가 있는 이래 오늘날에는 이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다.

— F. E.

그 가격들이 끊임없이 오르내리는 파동이 그 중심점을 따라 균등화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그 밖에 또 언제나 시장가치——이에 대해서는 후에 말하려 한다——와 서로 다른 생산자들이 생산하는 하나하나의 상품의 개별적 가치를 구별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품들 가운데서 몇몇 개별적 가치는 그 시장가치 이하(즉 그것들을 생산하는 데 시장가치가 표현하는 것보다 적은 노동시간이 든다)일 것이며 다른 상품들의 개별적 가치는 그 시장가치 이상일 것이다. 시장가치는 한편으로는 한 생산분야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평균가치로 보아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그 분야의 평균적인 조건들에서 생산되며 그 분야의 생산물의 대부분을 이루는 상품들의 개별적 가치로 보아야 한다. 특별한 결합에서만 시장가치는 가장 나쁜 조건에서나 가장 유리한 조건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에 의하여 규제되는데 이 시장가치는 또한 똑같은 종류의 상품들에 있어서는 언제나 똑같은 시장가격의 파동의 중심을 이룬다. 상품들이 평균가치대로 즉 두 극단 사이에 있는 상품량의 중간가치대로 공급되어 보통의 수요가 충족된다면 개별적 가치가 시장가치 이하인 상품들은 추가적 잉여가치 또는 초과이윤을 실현하는데 한편 개별적 가치가 시장가치 이상인 상품들은 그것들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한 부분을 실현할 수 없다.

가장 나쁜 조건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팔린다는 것은 그 상품들이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 가격이 평균적인 시장가치보다 높다면 수요는 적어질* 것이다. 가격이 일정한 조건에서는 어떤 종류의 상품들은 시장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이 달라지더라도 그 자리가 의연 똑같은 것은 다만 보다 높은 가격이 보다 적은 상품량과 맞아떨어지거나 보다 작은 가격이 보다 많은 상품량과 맞아떨어지는 경우뿐이다. 그런데 가격이 가장 나쁜 조건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에 의하여 규제되더라도 수요가 줄지 않을만큼 크다면 이러한 상품들이 시장가치를 규정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수요가 보통수준을 뛰어넘거나 공급이 보통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뿐이다.

* 제1판에서는 많아질로 되어 있다. 맑스의 원고에 따라 고쳤다. 편집부

끝으로 생산되는 상품들의 양이 평균적인 시장가치로 팔리는 상품들의 양보다 많다면 가장 좋은 조건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시장가치를 규제한다. 예컨대 이러한 부류의 상품들은 전적으로 또는 비슷하게 그 상품들의 개별적 가치대로 팔릴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가장 나쁜 조건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생산비조차 실현하지 못할 것이지만 한편 중간 정도의 조건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은 그것들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한 부분 밖에 실현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서 잉여가치에 대하여 말한 것은 생산가격이 시장가치를 대신하게 되자 생산가격에 대하여도 들어맞는다. 생산가격은 개개 분야에서 조절되며 따라서 또한 특수한 사정들에 따라 조절된다. 그러나 생산가격 자체는 또한 하나의 중심점이며 그 주변을 따라 나날의 시장가격들이 맴돌며 또 그에 따라 시장가격들이 일정한 기간에 균등화된다. (생산가격이 가장 나쁜 조건들에서 일하는 기업들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데 대해서는 리카아도를 보라.³⁶⁾)

가격들이 어떻게 조절되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지을 수 있다.

1) 가치법칙은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늘거나 줄면 생산가격들이 오르거나 떨어짐으로써 가격들의 움직임을 지배한다. 바로 이러한 뜻에서 리카아도(그는 물론 그가 말하는 생산가격이 상품의 가치와 어긋난다는 것은 느끼고 있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가 독자의 주의를 끌고자 하는 연구는 상품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그 상대적 가치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영향에 관한 것이다”(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의 원리』, 저작집, 맥켈로크 편찬, 런던, 1852년, 15페이지).

2) 생산가격을 규정하는 평균이윤은 언제나 사회적 총자본의 해당한 부분으로서의 주어진 자본에 돌아가는 잉여가치량과 그 크기가 비슷하지 않을 수 없다. 일반적 이윤율, 따라서 평균이윤이 화폐로 표현된 실제적 평균잉여가치보다 높은 화폐가치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자. 그 경우에 자본가들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는 그들이 서로 이윤율 10%로 치건 15%로 치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10%의 이윤율이 15%의 이윤율보다 더 실제적 상품가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화폐표현이 서로 더 높은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들로 말한다면(그들은 정상적인 임금을 받으며 따라서 평균이윤이 오르는 것이 임금의 실제적인 공제를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즉 자본가의 정상적인 잉여가치와 전혀 다른 것을 표현하지는 않는다고 전제되어 있으므로) 평균이윤이 오름으로써 상품가격이 오르며 이에 따라 화폐로 표현된 가변자본도 오르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선대된 총자본에 대한 실제적 잉여가치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수준을 넘어 이윤율과 평균이윤이 그와 같이 일반적으로 명목상 오르는 일은 그에 따라 임금이 오르고 또한 불변자본을 이루는 상품들의 가격이 오르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 이윤율과 평균이윤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또한 그 반대로 된다. 그런데 상품의 총가치는 총잉여가치를 규제하는데 이 총잉여가치는——파동을 지배하는 일반적 법칙으로서——평균이윤의 수준,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을 규제하므로 가치법칙이 생산가격을 규제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무엇보다 먼저 한 생산분야에서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상품들의 서로 다른 개별적 가치들에서 하나의 같은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의 자본들의 경쟁에 의해서만 서로 다른 분야들의 이윤율을 균등하게 하는 생산가격이 이루어진다. 생산가격이 형성되려면 같은 시장가치와 시장가격이 이루어지기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더 높은 발전이 필요하다.

똑같은 생산분야와 똑같은 종류, 비슷하게나마 똑같은 품질의 상품들이 그 가치대로 팔리자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로 서로 다른 개별적 가치들이 하나의 사회적 가치로, 위에서 말한 시장가치로 균등화되어 있지 않으면 안되며 그러자면 같은 종류의 상품들을 생산하는 생산자들 사이에 경쟁이 있어야 하며 또한 그들이 동시에 그들의 상품을 내놓는 시장이 있어야 한다. 같은 상품들이기는 하지만 각각 다른 개별적 색채를 띤 사정들에서 생산되어 있는 상품들의 시장가격이 시장가치와 일치하고 그보다 위로나 아래로 어긋나지 않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즉 서로 다른 판매자들이 서로 가하는 압력이 커서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킬 만한 상품량을 즉 사회가 시장가치대로 지불할 수 있을 만한 양을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생산물량이

이 수요보다 많다면 상품들은 그 시장가치 이하로 팔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반대로 생산물량이 그리 많지 않다면, 같은 말이지만 판매자들 사이의 경쟁의 압력이 그리 크지 못하여 그들이 해당한 상품량을 시장에 내갈 수 없다면 상품들은 그 시장가치 이상으로 팔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장가치가 달라진다면 총상품량이 팔릴 수 있는 조건들도 달라질 것이다. 시장가치가 떨어지면 사회적 수요(여기에서는 언제나 지불능력 있는 수요를 의미한다)는 평균하여 확대되며 어느 한계 안에서는 더 많은 상품들을 빨아들일 수 있다. 시장가치가 오르면 상품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줄어들며 빨아들이는 상품량은 적어진다. 그러므로 수요와 공급이 시장가격을 규제한다면, 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시장가격이 시장가치와 어긋나는 것을 규제한다면 다른 편으로 시장가치는 수요와 공급 관계를 또는 수요와 공급의 파동으로 하여 시장가격이 그 주변에서 흔들리게 되는 중심을 규제한다.

문제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되듯이 하나하나의 상품의 가치에 들어맞는 조건들은 이 경우에 한 종류의 상품 총량이 가치를 규정하는 조건들로서 다시 나타난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처음부터 대량생산이기 때문이며 또 덜 발전한 다른 생산양식들에서도 다수의 소규모생산자들이지만 그들의 공동생산물로서 비교적 소량으로 생산되는 상품들, 적어도 주되는 상품들이 비교적 소수의 상인들의 손을 통하여 대량으로 시장에 집중되며 한 생산부문 전체나 또는 크건 작건 그 한 부분의 공동생산물로서 쌓이고 팔리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순전히 지나가는 김에 지적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수요 즉 수요의 원칙을 규제하는 것을 제약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계급들의 호상관계이고 그 계급들의 상대적 처지이며 따라서 특히 첫째로는 총잉여가치와 임금의 관계이고 둘째로는 잉여가치가 갈라지는 서로 다른 부분들(이윤, 이자, 지대, 세금 등)의 관계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도 수요와 공급 관계는 이 관계가 기초하고 있는 바탕이 밝혀지기 전에는 절대로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보게 된다.

상품과 화폐는 둘 다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통일물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본 바와 같이(『자본론』, 제1부, 제1장, 3) 구매와 판매에서는

이 두 사명이 상반되는 양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리하여 상품(판매자)은 사용가치를 대표하고 화폐(구매자)는 교환가치를 대표한다. 상품이 사용가치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어떤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밝힌 바와 같이 판매의 첫째 전제이다. 또 하나의 전제는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량이 사회적 필요노동을 대표한다는 것. 따라서 상품의 개별적 가치(또는 이 전제 밑에서는 똑같은 것이지만 판매가격)가 그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⁸⁾

이것을 하나의 생산분야 전체의 생산물을 이루는, 시장에 있는 상품량에 적용하여 보자.

우리가 우선은 다만 한 생산부문의 전체 상품량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고 다수의 같은 상품들의 가격 총액을 합친 하나의 가격으로 본다면 사태는 가장 단순하게 표시될 것이다. 그 경우에는 하나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말한 것은 이제는 일정한 생산부문의 시장에 있는 상품량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들어맞는다. 상품의 개별적 가치가 그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상품 총량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이 들어 있으며 이 상품량의 가치는 그 시장가치와 같다는 뜻으로 실현되거나 규정된다.

이제는 이 상품들의 많은 양이 거의 똑같은 정상적인 사회적 조건들에서 생산되며 그리하여 사회적 가치가 이 양을 이루는 하나하나의 상품들의 개별적 가치라고 하자. 그리고 이 상품들의 비교적 작은 한 부분은 나쁜 조건들에서 생산되고 다른 한 부분은 좋은 조건들에서 생산되었으며 그리하여 첫째 부분의 개별적 가치는 대다수 상품들의 평균가치보다 크고 둘째 부분의 개별적 가치는 그보다 작다면, 그리고 양극이 균형을 이루며 이 두 부분의 상품들의 평균가치는 그 평균량에 속하는 상품들의 가치와 같다면 시장가치는 평균조건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²⁹⁾ 총상품량의 가치는 평균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평균조건보다 나쁜 또는 그보다 좋은 조건들에서 생산된 상품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하나하나의 상품의 가치들을 실제로 합친 것과 같다. 이 경우

28)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베를린, 1859년(이 전집, 제13권을 보라).

29)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이 전집, 제13권을 보라).

에는 상품량의 시장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이 상품에 들어 있는 필요노동시간——가 압도적인 상품의 평균량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와 반대로 시장에 나온 필요한 상품의 총량은 의연 같지만 나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가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가치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며 그리하여 나쁜 조건에서 생산된 부분이 중간에 속하는 상품량에 비해서나 다른 극에 속하는 상품량에 비해서나 상대적으로 어지간히 많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나쁜 조건들에서 생산된 상품량이 시장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를 규제한다.

마지막으로 중간에 속하는 것보다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이 그보다 나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보다 어지간히 많고 중간에 속하는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에 비해서도 어지간히 많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부분이 시장가치를 규제한다. 여기에서는 시장이 차넘쳐서 언제나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부분이 시장가격을 규제하는 경우를 제쳐놓고 본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로 삼는 것은 시장가격이 아니라——시장가격이 시장가치와 구별되는 한에서——시장가치 자체에 대한 각각 다른 규정이다.³⁰⁾

-
- 30) 따라서 지대와 관련된 슈토르흐와 리카아도 사이의 논쟁(본질로 보아 논쟁일 따름이고 실제로는 그들이 둘 다 상대방이 말한 것에 대하여 주의를 돌리지 않았다), 즉 시장가치(그들에게서는 오히려 시장가격 또는 생산가격)를 규제하는 것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인가(리카아도) 또는 이와는 반대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인가(슈토르흐)³⁷⁾ 하는 논쟁은 결국 둘 다 옳고 둘 다 옳지 않으며 또한 둘 다 중간에 속하는 경우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된다. 가격이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에 의하여 규제되는 경우에 관한 코베트의 논의를 참조하라.³⁸⁾ “그(리카아도)가 두 개의 다른 상품들, 예를 들면 한 개의 모자와 한 쥘레의 구두로 되는 두 개의 독립적인 물건이 같은 양의 노동에 의하여 생산된 경우에 그것들이 서로 교환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여기에서 상품이라는 것은 특수한 하나하나의 모자, 한 쥘레의 구두 등이 아니라 상품종류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영국에서 전체 모자들을 생산하는 총노동은 이 전체 모자들에 분할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나의 생각에는 이 점이 최초로 그리고 리카아도 학설의 전반적 서술에서 명확하

사실 I의 경우에는 엄밀히 말하여(물론 실제로는 다만 비슷하게 그리고 가지각색으로 변경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평균가치에 의하여 규제되는 전체 상품량의 시장가치는 상품들의 개별적 가치 총액과 같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가장 나쁜 조건과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들에 있어서는 이 가치가 그 상품들에 강요되는 평균가치로서 나타난다. 가장 나쁜 조건에서 생산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개별적 가치 이하로 팔지 않을 수 없으며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상품을 개별적 가치 이상으로 판다.

II의 경우에는 가장 나쁜 조건과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개별적 가치량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며 보다 나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이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엄밀히 말하여 개개 상품 또는 총상품량 가운데서 해당한 개개 부분의 평균가격 또는 시장가치는 이제서 극히 다양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개별적 가치를 합하여 나오는 총상품량의 총가치에 의하여, 그리고 이 총가치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개개 상품에 해당한 부분에 의하여 규정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나온 시장가치는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뿐 아니라 중간층에 속하는 상품들의 개별적 가치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장가치는 역시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개별적 가치보다 낮을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그 시장가치가 이 개별적 가치에 가까워지는가 또는 마침내 이 개별적 가치와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이 그 상품의 생산분야에서 차지하는 규모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런데 수요가 조금이라도 앞선다면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의 개별적 가치가 시장가격을 규제한다.

마지막으로 III의 경우와 같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이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에 비해서 뿐 아니라 중간적인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에 비해서도 더 많다고 하자. 그러면 시장가치는 평균가치 이하로 떨어진다. 가장 유리한 조건과 가장 불리한 조건 및 중간

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본다”(『정치경제학상의 용어, 특히 가치, 수요, 공급과 관련된 약간의 논쟁에 대한 고찰』, 런던, 1821년, 53~54페이지).

적인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들의 가치액을 합하여 계산되는 평균가치는 이 경우에 중간적인 것의 가치 이하이며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이 중간적인 것의 가치에 가까워지거나 멀어진다. 수요가 공급에 비하여 적으면 가장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부분은 그것이 얼마나 많은 간에 그 가격을 그 개별적 가치의 수준으로 내림으로써 억지로 우세를 차지한다. 공급이 수요를 훨씬 넘는 경우를 제쳐놓으면 시장가치는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의 이 개별적 가치와는 결코 일치할 수 없다.

여기에서 추상적으로 서술된 시장가치의 이 확정은 실제적 시장에서는 수요가 바로 제정된 가치에 따라 상품량을 빨아들일 만큼 많다고 전제하면 구매자들 사이의 경쟁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하나의 점에 이른다.

둘째로 상품이 사용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상품이 어떤 사회적 수요 이전 그것을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우리가 하나하나의 상품을 다룰 따름이었던 동안에는 우리는 이 일정한 상품——그 양은 그 가격 속에 이미 들어 있다——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것만을 고려하면 되었으며 더 나아가서 충족시켜야 할 수요의 양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이 수요의 양적 측면은 한편에 한 생산부문 전체의 생산물이 있고 다른 편에 사회적 수요가 있게 되자 본질적인 계기로 된다. 이제 이 사회적 수요의 크기 즉 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장가치에 관하여 위에서 한 규정들에서는 생산된 상품들의 양은 주어져 있어 의연 똑같은데 다만 서로 다른 조건들에서 생산되는 이 양의 구성부분들의 비율에만 변동이 있으며 따라서 똑같은 상품량의 시장가치가 서로 달리 규정된다고 치고 있다. 이 양이 보통의 공급량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상품들의 한 부분이 한때 시장에서 끌려나갈 수 있다는 것은 제쳐놓고 본다. 그런데 이 상품량에 대한 수요도 보통의 것이라면 상품은 그 시장가치대로 팔리는데 위에서 연구한 세 경우 가운데서 어느 경우가 이 시장가치를 규제하건 이에는 관계없이 그렇게 된다. 상품량은 일정한 수요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규모에서 그것을 충족시킨다. 상품량이 수요보다 적거나 많다면 시장가격은 시장가치와 어긋나게 된다.

그런데 상품량이 부족할 때에는 언제나 가장 나쁜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이 시장가치를 규제하고 상품량이 넘쳐날 때에는 언제나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이 시장가치를 규제하며 따라서 서로 다른 조건에서 생산된 상품량의 단순한 비율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 극단의 어느 하나가 시장가치를 규정한다는 데서 우선 시장가격과 시장가치가 어긋나게 된다. 생산물의 수요와 공급 사이의 차이가 크면 시장가격 역시 크게 시장가치와 아래위로 어긋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생산된 상품의 양과 시장가치대로 팔리는 상품의 양 사이의 차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 하여 생길 수 있다. 그 하나는 생산된 상품들의 양 자체가 달라져 너무 적거나 너무 많아지며 따라서 재생산에 주어진 시장가치를 규제하던 것과는 다른 규모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수요는 의연 똑같은데도 공급이 달라졌으며 따라서 상대적인 과잉생산 또는 생산부족이 생겼다. 또 하나는 재생산 즉 공급은 의연 똑같은데 수요가 떨어졌거나 높아진 것이다.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그럴 수 있다. 이 경우에 공급의 절대적 크기는 의연 똑같았지만 공급의 상대적 크기 즉 수요에 비한 그 크기는 달라졌다. 영향은 첫째 경우와 똑같은 것이지만 다만 방향이 반대이다. 끝으로 변화가 두 편에서 다 일어나지만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어나거나 방향은 똑같다 하더라도 정도가 다르게 일어난다면, 즉 한마디로 말하여 두 편 사이의 이전의 비례관계를 변동시키는 변화들이 두 편에서 다 일어난다면 종국적 결과는 언제나 위에서 살펴본 두 경우의 어느 하나에 귀착되지 않을 수 없다.

수요와 공급의 개념들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데서 참으로 어려운 것은 그 규정들이 같은 뜻의 말을 되풀이하는 것 같다는 데 있다. 우선 공급 즉 시장에 있거나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생산물을 살펴 보자. 여기에서는 전혀 쓸데없이 세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한 해 동안에 개개 산업부문에서 생산되는 상품량을 들어보자. 이 경우에 이러저러한 상품들이 많건적건 시장에는 나오지 않고 가령 그 다음해의 소비를 위하여 창고에 쌓이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은 제쳐놓고 보자. 한 해 동안의 이 재생산은 주어진 상품량이 통제로 재어지는가 또는 갯수로 재어지는가에 따라 우선 일정한 양으로——분량이나 수효로——표현된다. 우리가

대상하는 것은 사람들의 수요를 단순히 충족시키는 사용가치일 뿐 아니라 일정한 양으로 시장에 있는 사용가치이다. 둘째로 이 상품량은 일정한 시장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장가치를 우리는 개별적 상품의 시장가치나 또는 단위로 쓰는 상품척도의 시장가치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장에 있는 상품의 양과 상품의 시장가치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 연관도 없다. 예컨대 어떤 상품은 특히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상품은 특히 낮은 상품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어떤 주어진 가치액이 어떤 상품들은 매우 많은 양으로 표시되는데 다른 상품들은 매우 적은 양으로 표시될 수 있다. 시장에 있는 상품의 양과 이 상품의 시장가치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연관이 있을 뿐이다. 즉 노동의 생산성이 주어진 기초 위에서는 개개 생산분야에서 일정한 양의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일정한 양의 사회적 노동시간이 든다. 비록 이 비율은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 서로 다르기 마련이며 또 주어진 상품의 유용성 또는 이 상품의 사용가치의 특수한 본성과는 어떠한 내적 연관도 없는 것이지만 말이다. 한 종류의 상품 a 량에 b 노동시간이 든다면 다른 모든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에 na 량에는 nb 노동시간이 든다. 그리고 또 사회가 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려고 하는 한에서는 사회는 그 상품에 대하여 댓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사실 상품생산에서는 분업이 전제로 되어 있으므로 사회는 그 상품의 생산에 자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노동시간의 한 부분을 돌림으로써 그 상품의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는 그가——주어진 이 사회——처분할 수 있는 일정한 양의 노동시간에 의하여 그 상품을 산다. 분업에 의하여 이 일정한 상품의 생산에 자체의 노동을 돌리게 되는 사회의 한 부분은 자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상품들로 표시되는 사회적 노동에 의하여 댓가를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주어진 사회적 생산물에 둘러져 있는 사회적 노동의 총량 즉 사회의 총노동력 가운데서 이 생산물의 생산에 사회가 돌리는 몫, 따라서 이 생산물의 생산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한편으로 하고 사회가 주어진 일정한 생산물에 의하여 수요를 충족시키려는 규모를 다른 편으로 하는 그 사이에는 아무런 필연적 연관도 없고 다만 우연적 연관이 있을 뿐이다. 개개 상품 또는 어떤 종류의 상

품의 일정한 양마다에는 그 생산에 필요한 사회적 노동만이 들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상품 총량의 시장가치는 필요 노동만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상품이 그때의 사회적 수요를 넘는 분량만큼 생산되었다면 사회적 노동시간의 한 부분은 낭비된 것이며 그 경우에 상품의 총량은 실제로 그 속에 들어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양의 사회적 노동을 시장에서 대표한다(생산이 이 생산을 미리 규정하는 실제적인 사회적 통제를 받는 곳에서만 사회는 일정한 생산물에 돌리는 사회적 노동시간의 양과 이 생산물에 의하여 충족시키게 될 사회적 수요의 규모 사이에 연관을 맺는다). 그러므로 이 상품은 그 시장가치 이하로 팔아버리지 않으면 안되며 그 한 부분은 아주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일정한 종류의 상품 생산에 돌려진 사회적 노동의 양이 그 생산물에 의하여 충족시키게 될 사회적 수요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 작으면 그와 반대로 된다. 그러나 일정한 생산물의 생산에 돌려진 사회적 노동의 양이 충족시키게 될 사회적 수요의 규모에 맞으며 그리하여 생산된 생산물의 양이 수요가 달라지지 않는 조건에서 보통규모의 재생산에 맞는다면 상품은 그 시장가치대로 팔린다. 상품이 그 가치대로 교환되거나 팔리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상품들의 균형을 보장하는 자연법칙이다. 그 법칙에서 출발하여 가격과 가치가 어긋나는 것을 설명해야지 반대로 그렇게 어긋나는 데서 출발하여 그 법칙 자체를 끌어내서는 안된다.

그러면 사태의 다른 측면인 수요를 살펴 보자.

상품은 생산수단으로서나 생활수단으로서 구매되어 생산적 소비나 개인적 소비로 들어간다. 그런데 일부 종류의 상품은 두 가지 목적에 다 쓰일 수 있다 하더라도 사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상품에 대한 수요는 생산자(여기에서는 자본가들이다. 왜냐하면 생산수단은 자본으로 전화된다고 보기 때문이다)와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다. 이것은 우선 수요의 편에는 일정한 양의 사회적 수요가 있고 공급의 편에는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에서의 일정한 양의 사회적 생산이 그 수요에 맞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 같다. 면공업이 해마다 주어진 규모에서 재생산을 해나가자면 이제까지 쓰던 양대로 목화가 필요하며 자본의 축적에 의하여 해마다 재생산을 확대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에는 추가량의 목화가 필요하다. 생활수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노동계급이 이제까지의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자면 적어도 전과 똑같은 양의 필요한 생활수단을 다시 찾아내지 않으면 안된다. 아마 그 생활수단의 종류는 어느 정도 달라질 것이다. 또한 인구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추가량의 생활수단도 또한 필요하다. 다른 계급들에 대해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똑같이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요의 편에는 주어진 크기의 일정한 사회적 수요가 있고 이것을 채우기 위하여 일정한 양의 상품이 시장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수요의 양적 규정성은 매우 신축성 있고 변동되기 쉽다. 사회적 수요는 표면상 고정되어 있는 듯이 보일 뿐이다. 생활수단이 값싸지거나 화폐임금이 오르면 노동자들은 그 생활수단을 더 많이 살 것이며 그리하여 이 종류의 상품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아지게 될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들의 수요가 육체적 수요의 극도의 한계에도 이르지 못한 빈민 등은 완전히 체쳐놓고 본다. 다른 한편 예컨대 목화값이 싸지면 목화에 대한 자본가들의 수요는 늘어날 것이며 더 많은 추가자본이 면공업에 투하될 것이다. 이 경우에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은 생산적 소비를 위한 수요는 우리의 전제 밑에서는 자본가의 수요라는 것이며 또 자본가의 진짜 목적은 잉여가치의 생산이며 그리하여 자본가는 이것을 위해서만 일정한 종류의 상품을 생산한다는 것이다. 한편 또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가는 예컨대 목화의 구매자로서 시장에 나타나는 한에서는 목화에 대한 수요를 대표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목화의 판매자에게는 사실 구매자가 목화를 속옷감으로 만들건 솜화약으로 만들건 또는 솜으로 자기와 세상사람들의 귀를 틀어막으려고 생각하였건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자본가가 어떤 류의 구매자인가 하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친다. 목화에 대한 자본가의 수요는 그 수요가 실제로는 이윤을 얻으려는 그의 욕망을 가리운다는 사정으로 하여 본질적으로 달라진다. 시장에서 대표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욕망——수요——이 실제적인 사회적 수요와 양적으로 달라지는 한계는 물론 상품이 다름에 따라 매우 다르다. 내가 염두에 두는 차이는 실제로 수요가 제기된 상품량과 상품의 화폐가격이 달라지거나 구매자의 화폐사정 또는 생활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수

요가 제기될 상품량 사이의 차이이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과 이것으로 하여 시장가격이 시장가치와 어긋나게 되는 것을 이해하기보다 더 쉬운 것은 없다. 참으로 어려운 것은 수요와 공급의 일치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은 일정한 생산부문의 상품량이 시장가치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시장가치대로 팔릴 수 있는 그러한 비율에 있다면 수요와 공급은 일치한다. 이것이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듣게 되는 첫째 규정이다.

둘째 규정은 상품들이 그 시장가치대로 팔릴 수 있다면 수요와 공급은 일치한다는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수요와 공급은 작용하지 않게 되며 바로 그 때문에 상품은 그 시장가치대로 팔린다. 크기가 같은 힘이 반대방향으로 작용하면 그 힘들은 서로 상쇄되며 밖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은 이 두 힘의 작용으로가 아니라 달리 설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상쇄되면 수요와 공급은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게 되고 더는 시장가치에 작용하지 않으며 그리고 우리는 시장가치가 왜 다른 어떤 화폐액이 아니라 바로 이 화폐액으로 표현되는가에 대하여 전혀 알 수 없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실제적인 내적 법칙들은 명백히 수요와 공급의 호상작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여기에는 관계가 없는, 이 두 사회적 동력의 깊은 분석을 제쳐놓고 본다면). 이것은 이 법칙들이 수요와 공급이 작용하지 않게 즉 일치하게 되는 경우에만 순수하게 실현된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은 사실 결코 일치하지 않으며 일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연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과학적 견지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영으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일치한다고 본다. 그것은 어째서인가? 그것은 현상들을 합법칙적으로 그 개념에 맞는 모습으로 살펴 보기 위해서 즉 현상들을 수요와 공급의 변동으로 하여 생기는 외관과는 관계없이 살펴 보기 위해서이다. 한편으로는 또 수요와 공급의 움직임의 실제적 경향을 알아내고 그것을 어느 정도까지 확정하기 위해서이다. 균형에서 어긋나는 것이 대립적

성격을 띠며 또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는 것이 그 방향의 대립으로 하여, 그 호상간의 모순으로 하여 서로 상쇄된다. 그리하여 어떤 단 하나의 구체적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불균형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그런데 한 방향으로 어긋나는 결과에 반대방향으로 달리 어긋나게 된다——길건 짧건 일정한 기간의 움직임의 총계를 놓고 보면 공급과 수요는 끊임없이 일치한다. 그러나 지나간 움직임의 평균으로서만, 그 모순의 끊임없는 움직임으로서만 이러한 결과가 얻어진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장가치와 어긋나는 시장가격은 그 평균치를 놓고 보면 균등화되어 시장가치와 일치하는 평균으로 된다. 여기서 시장가치와 어긋나는 것들은 더하기와 덜기로서 서로 상쇄된다. 그리고 이 평균치는 결코 이론적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일정한 기간의 파동과 균형을 타산하여 투하되어 있는 자본에 있어서 실천적으로도 중요하다.

그러므로 수요와 공급 관계는 한편으로는 시장가격이 시장가치와 어긋나는 것과 다른 편으로는 이 어긋남이 없어지는 경향 즉 수요와 공급 관계의 영향이 없어지는 경향을 설명할 따름이다(가격은 있지만 가치가 없는 예외적인 상품들은 여기에서 살펴 볼 것이 아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하여 수요와 공급이 끼치는 이 영향이 없어지는 것은 매우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수요가 줄어들고 따라서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자본은 해당 부문에서 끌려나가고 그리하여 공급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또 필요노동시간을 줄이는 발명에 의하여 시장가치 자체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시장가격과 균등하게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시장가치를 넘어서면 해당한 생산부문에 자본이 너무 많이 밀려들고 생산이 늘어나 시장가격이 심지어 시장가치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또는 다른 편으로 가격이 올라 수요 자체가 줄어들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러저러한 생산부문에서 시장가치 자체가 짧건 길건 한동안 오르게 되는데 그것은 시장에서 요구되는 생산물의 한 부분이 이 동안에 비교적 나쁜 조건에서 생산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시장가격을 규정한다면 다른 편으로 시장가격 그리고

더 분석하면 시장가치는 수요와 공급을 규정한다. 수요로 말하면 이것은 명백하다. 왜냐하면 수요는 가격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여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으로 말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시장에 나오는 상품에 들어가는 생산수단의 가격은 이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를 규정하며 따라서 이 생산수단에 대한 수요를 포함하는 상품들의 공급도 규정하기 때문이다. 목화가격은 면제품의 공급에 규정적 의의를 가진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와 함께 수요의 공급은 가격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이 혼란은, 공급은 수요에 의하여 규정되고 반대로 수요는 공급에 의하여 규정되며 시장은 생산에 의하여 그리고 생산은 시장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으로 하여 더 복잡해진다.³¹⁾

범속한 경제학자까지도(주를 보라) 외부 사정들로 하여 공급이나 수요

-
- 31) 다음과 같은 영리한 논의는 그야말로 황당무계하기 그지없다. "어떤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임금과 자본, 토지의 양이 전과 달라진다면 아담 스미드가 그 상품의 자연가격이라고 부르는 것도 달라지며 또 이렇게 달라진 것과 관련하여 원래 그 상품의 자연가격이었던 가격이 그 상품의 시장가격으로 된다. 왜냐하면 공급도 수요도 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두 가지가 다 이 경우에 달라진다. 그것은 시장가치 또는 바로 A. 스미드의 저서에서 볼 수 있는 생산가격이 가치변동에 의하여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 공급은 이제는 생산비를 표시하는 것을 지불할 수 있으며 또 지불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의 수요에 완전히 상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많거나 적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급과 그리고 새로운 생산비를 고려하여 지금 설정되고 있는 실제적 수요간의 비율은 이전의 크기와 달라진다. 그 결과 아무런 지장도 받지 않는다면 공급량이 달라질 것이며 마침내 상품은 새로운 자연가격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상품이 그 자연가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그 공급이 달라지기 때문이므로 자연가격은 시장가격이 어떤 수요공급관계에 기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다른 수요공급관계에 기인하며 따라서 자연가격도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호상관계에 달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수요와 공급의 대원칙은 A. 스미드가 자연가격이라고도 하고 또 시장가격이라고도 하는 것을 규정할 사명을 지니고 있다.' — 뮐더스³⁹⁾ 『정치경제학상의 용어...약간의 논쟁에 대한 고찰』, 런던, 1821년, 60, 61페이지). 이 현명한 저자는 여기서 바로 생산비,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졌기

가 달라지지 않더라도 수요와 공급 관계는 상품의 시장가치가 달라지는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경제학자도 시장가치가 어떻든 간에 그 시장가치가 실현되려면 수요와 공급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수요와 공급 관계가 시장가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시장가치가 수요와 공급의 파동을 설명한다. 『고찰』의 저자는 주에서 인용한 부분에 이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례관계(수요와 공급의)는 우리가 수요와 자연가격이라는 것을 방금 아담 스미드를 들면서 이해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언제나 균등의 비례관계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공급이 실제적 수요 즉 자연가격보다 더 지불하려고도 하지 않고 덜 지불하려고도 하지 않는 수요와 균동할 경우에만 자연가격은 실제로 지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똑같은 상품이 서로 다른 시기에 아주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연가격을 가질 수 있지만 공급과 수요의 비례관계는 두 경우에 다 똑같을 수 있으며 즉 균등의 비례관계로 될 수 있다”(61 페이지).

따라서 똑같은 상품이 서로 다른 시기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자연가격을 가지면서도 수요와 공급이 서로 일치할 수 있고 또 일치해야 상품이 두 경우에 다 실지로 그 자연가격대로 팔리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두 경우에 다 수요와 공급 관계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지만 자연가격 자체의 크기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자연가격은 명백히 수요와 공급과는 관계없이 규정되며 따라서 결코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규정될 수는 없다.

어떤 상품이 그 시장가치대로 즉 그 상품에 들어 있는 사회적 필요노동에 비례하여 팔리자면 이 종류의 상품 총량의 생산에 사용되는 사회적

때문에 수요가 달라졌으며 따라서 수요와 공급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과 이렇게 수요가 달라지면 공급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사상가가 증명하려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즉 생산비가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하여 규제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반대로 생산비 자체가 이 관계를 규제한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다.

노동의 총량은 그 상품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즉 지불능력 있는 사회적 수요의 양과 맞지 않으면 안된다. 수요와 공급간의 비례의 변동과 일치하는 시장가격의 변동과 경쟁으로 하여, 끊임없이 개개 종류의 상품에 지출되는 노동의 총량은 이 척도에 적응되려고 한다.

상품의 수요와 공급 관계에는 첫째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의 관계, 상품과 화폐의 관계,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가 반영되며 둘째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반영된다. 비록 생산자와 소비자는 제3자인 상인들에 의하여 대표될 수도 있다. 구매자와 판매자를 살펴 보는 경우에 이 관계를 전개하기 위하여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따로따로 맞서게 하기만 하면 된다. 상품의 완전한 형태변화를 위해서는, 따라서 판매와 구매의 전과정을 위해서는 세 사람이 있으면 된다. A는 자기의 상품을 B에게 팔아 B의 화폐로 전화시키며 그리고 C에게서 상품을 사서 자기의 화폐를 상품으로 다시 전화시킨다. 전과정은 이 세 사람 사이에서 진행된다. 그리고 또 화폐를 살펴 보는 경우에는 상품은 그 가치대로 팔린다고 가정하였었다. 그것은 상품이 화폐로 되고 또 화폐에서 상품으로 도로 전화되면서 겪는 형태변화만 문제로 되었으므로 가치와 어긋나는 가격을 살펴 보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팔리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상품을 산다면 전체 형태변화가 이루어지며 상품의 가격이 그 가치 이하인가 이상인가 하는 것은 형태변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 상품의 가치는 기초로서 의연 중요하다. 왜냐하면 화폐는 이 기초에서만 개념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며 또 가격은 그 일반적 개념으로 보면 무엇보다 먼저 화폐형태의 가치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화폐를 유통수단으로서 살펴보는 경우에는 상품의 하나의 형태변화만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러한 형태변화들이 사회적으로 영키는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화폐의 유통에 그리고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의 발전에 이른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은 화폐가 유통수단의 기능을 노는 데로 넘어가는 데서와 그 결과 달라진 화폐의 모습에 대해서는 중요하지만 하나하나의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다.

그런데 공급과 수요의 경우에는 공급은 일정한 종류의 상품의 판매자

또는 생산자들의 합계와 같으며 수요는 똑같은 종류의 상품의 구매자 또는 소비자들(개인적 또는 생산적)의 합계와 같다. 그리고 이 합계들은 전일체로서, 집체적 힘으로서 서로 작용한다. 여기에서 각 개인은 사회적 역량의 한 부분으로서 집단의 한 원자로서 작용할 따름이며 바로 이 형태에서 경쟁은 생산과 소비의 사회적 성격을 드러나게 한다.

경쟁 쌍방 중에서 한때 비교적 약한 편은 동시에 각 개인이 경쟁자들의 집단과는 관계없이 활동하고 흔히 직접 그 집단에 대항하여 활동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한 개별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편인데 비교적 센 편은 늘 많건적건 단합된 전일체로서 적수와 맞선다. 일정한 종류의 상품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크면——일정한 한계 안에서——한 구매자는 다른 구매자를 이기려 하며 그리하여 모든 구매자들에 대하여 시장가치 이상으로 상품가격을 올리는데 다른 편으로 판매자들은 공동으로 높은 시장가격으로 상품을 팔려고 한다. 반대로 공급이 수요보다 크면 한 판매자는 상품을 값싸게 팔기 시작하고 다른 판매자들은 그를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데 구매자들은 공동으로 시장가치에 비하여 시장가격을 될수록 폭 떨어려고 한다. 공동으로 행동하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는 때만이다. 그런데 한편이 그 자체로서는 다른 편보다 약하게 되자 행동의 통일은 파괴되며 그리하여 각 개인은 자기의 힘으로 될수록 더 잘 해나가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또한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들보다 값싸게 생산하여 그때의 시장가격이나 시장가치 이하로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상품을 팔 수 있고 그리하여 시장에서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면 그는 그렇게 하며 그리하여 점차 다른 사람들도 보다 값싼 생산방법을 끌어들이지 않을 수 없게 하며 그렇게 되어 사회적 필요노동을 새로운 더 적은 양으로 줄이게 한다. 한편이 우세하면 이 편에 든 사람은 누구나 이득을 본다. 그리하여 이 편에 든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독점한 것처럼 된다. 한편이 다른 편보다 약해지면 누구나 자기자신의 노력으로 상대방(예컨대 더 적은 생산비로 일하는 자)보다 더 강하게 되려고 하거나 적어도 될 수 있는 한 손실을 적게 내려고 하며 이 경우에 자기 행동이 자기자

신편 아니라 자기 동료들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 하더라도 누구나 자기 이웃에 대하여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다.³²⁾

수요와 공급은 가치의 시장가치로의 전화를 전제로 하며 수요와 공급이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적용하는 한, 상품이 자본의 생산물인 한 수요와 공급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상품의 단순한 매매와는 완전히 다른 착잡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상품의 가치가 그 가격으로 형식상 전화하는 것 즉 단순한 형태변화가 아니라 시장가격이 시장가치와 그리고 나아가서는 생산가격과 일정하게 양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단순한 매매에서는 생산자들 자신이 서로 맞서면 된다. 더 깊이 분석하여 보면 수요와 공급은 사회의 총소득을 서로 나누며 그것을 소득으로서 소비하며 따라서 그 소득으로 이루어지는 수요를 제기하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한편 생산자들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이루는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자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전모를 총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상품형태로 유통에 들어간 가치량에 대하여 이와 같은 양의 가치를 다른 형태로——화폐형태로건 상품형태로건——끌어내는 것이 문제로 될 뿐 아니라 생산에 선대한 자본에 대하여 크기가 같은 다른 모든 자본——어떤 생산부문에 적용되어 있건 간에——과 똑 같은 또는 그 자본의 크기에 비례한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끌어내는 것이 문제로 되며 따라서 적어도 평균이윤을 가져오는 가격대로 즉 생산가격대로 상품을 파는 것이 문제로 된다. 자본은 이 형태에서 그 자체가 하나의 사회적 역량으로서 의식되게 되는데 개개 자본가는 사회적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그의 몫에 비례하여 이 역량 가운데서 자기의 몫을 가

32) “한 집단의 각 개인이 그 집단 전체의 이득과 소유물 가운데서 일정한 몫이나 해당한 부분보다 더 많은 것을 결코 가질 수 없다면 그는 그 이득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 단합할 것이다(수요와 공급 관계가 허용한다면 그는 그렇게 한다). 이것은 독점이다. 그러나 각 개인이 총액을 줄이는 방법에 의해서라도 자기자신의 몫의 절대액을 어떻게든 늘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는 흔히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것은 경쟁이다”(『최근 멜더스가 주장한 수요의 본성과 소비의 필요성에 관한 원리의 연구』, 런던, 1821년, 105페이지).

진다.

첫째로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 자체로서는 일정한 사용가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나오는 상품의 특수성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개개 생산분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에 문제로 되는 것은 오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 노동의 생산물에서 일정한 양의 부지불노동을 차지하는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본에 종속된 임금노동은 그 본성으로 하여 그 노동의 특수한 성격에 대하여 무관심하며 자본이 요구하는데 따라 변형되며 이 생산분야에서 저 생산분야로 내던져지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 사실 이제는 한 생산분야가 좋거나 나쁜 데서 다른 생산분야들과 다를 바가 없다. 개개 생산분야는 똑같은 이윤을 낳으며 또 개개 생산분야는 거기에서 생산된 상품이 그 무슨 사회적 수요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쓸데없을 것이다.

그러나 상품이 그 가치대로 팔린다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서는 거기에 투하된 자본량의 유기적 구성이 서로 다름에 따라 아주 각각 다른 이윤율이 나온다. 그러나 자본은 이윤율이 더 낮은 분야에서 떨어져나와 더 높은 이윤을 낳는 다른 분야에 투하된다. 이렇게 자본이 끊임없이 들락날락 함으로써, 한마디로 말하여 이윤율이 떨어지는가 올라가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 사이에 자본이 나누어짐으로써 수요와 공급 사이의 관계를 규제하며 그리하여 서로 다른 생산분야에서 똑같은 평균이윤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되게 된다. 주어진 국민사회에서 자본주의적 발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즉 그 나라의 상태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적합하면 할수록 자본은 이 균등화를 더 완전히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따라 그 조건들도 발전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은 생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전제 전체를 자체의 특수한 성격에, 자체의 내재적 법칙들에 종속시킨다.

끊임없는 불균등의 끊임없는 균등화는 첫째로 자본이 이동하기 쉬우면 쉬울수록 즉 자본이 한 생산분야와 한 곳에서 다른 분야,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 쉬우면 쉬울수록, 둘째로 노동력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한 지방의 생산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빨리 투입될 수 있으면 있을수록 더 빨리 진행된다. 첫째점은 사회 안에 상업의 완전한 자유가 있으며 자연적 독점 이외의 온갖 독점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에서 생기는 온갖 독점이 제거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또 흩어져 있는 자유로운 사회적 자본량을 개개의 자본가들과 맞서 집중시키는 신용제도가 발전하였으며 끝으로 각이한 생산분야들이 자본가들에게 종속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마지막 점은 자본주의적으로 착취를 받는 모든 생산분야에서 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가정한 이상 이미 전제 속에 들어 있다. 그러나 이 균등화 자체는 자본주의적으로 경영되지 않는 수많은 그리고 대량적인 생산분야들(예컨대 소농민에 의한 농업)이 자본주의적 기업들 사이에 끼어 있고 그 기업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더 커다란 장애에 부딪친다. 끝으로 인구밀도가 높아야 한다. 둘째점은 노동자들이 한 생산분야에서 다른 생산분야로, 한 지방의 생산지에서 다른 생산지로 이주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법률의 폐지를 전제로 한다. 또한 자기의 노동에 대한 노동자의 무관심성, 모든 생산분야에서 노동이 될 수 있는 한 단순노동으로 되는 것, 노동자들에게서 온갖 직업적 편견이 없어지는 것, 끝으로 특히 노동자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종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경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서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으로 알 수 있듯이 개개 자본가는 개개 생산분야의 자본가들 전체와 마찬가지로 전체 자본이 전체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데 참가하며 또 이렇게 참가함으로써 이 착취의 일정한 정도를 조건지으며 그리하여 일반적인 계급적 공감에서 뿐 아니라 직접 경제적으로 착취에 참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밖의 모든 사정들, 그중에서도 선대한 총불변자본의 가치가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면 평균이윤율은 총자본이 총노동을 착취하는 정도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평균이윤은 100씩의 자본이 생산하는 평균잉여가치와 일치하는데 잉여가치에 관해서 방금 말한 것은 말할 나위 없이 자명한 것이다. 평균이윤으로 말하면 이윤율을 규정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또 선대자본의 가치가 덧붙게 된다. 사실 일정한 생산분야의 자본가 또는 자본이 직접 그가

쓰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서 가지는 특별한 관심은 예외적인 지나친 노동에 의해서거나 임금을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거나 또는 적용한 노동의 예외적인 생산성에 의해서 특별한 이윤 즉 평균이윤을 넘는 이윤을 얻는 데 있다. 이것을 제쳐놓고 보면 자기의 생산분야에서 가변자본을 전혀 적용하지 않는, 따라서 노동을 전혀 쓰지 않는(물론 이런 일은 실지로 있을 수 없다) 자본가도 가변자본만을 적용함으로써 자기의 전자본을 임금에 지출하는(이것도 실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본가와 똑같이 자본에 의한 노동계급의 착취에 매우 관심을 가지며 똑같이 자기의 이윤을 부지불 잉여노동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러나 노동의 착취정도는 노동일이 주어져 있다면 평균노동강도에 달려 있으며 노동강도가 주어져 있다면 노동일의 길이에 달려 있다. 잉여가치의 높이는 따라서 가변자본의 총량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잉여가치의 크기, 따라서 이윤의 크기는 노동의 착취정도에 달려 있다. 한 분야의 자본이 총자본과는 달리 그 자본이 특별히 고용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면 개별적 자본가도 그 분야의 모든 자본가들과는 달리 그 자신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한편 또 자본의 개개 분야와 개개 자본가는 총자본이 적용하는 사회적 노동의 생산성에 똑같은 관심을 가진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이 이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첫째로 평균이윤이 표현되는 사용가치의 양이다. 그런데 이것은 이중으로 중요한데 그것은 이윤이 새 자본의 축적밀천으로도 되고 소득을 위한 소득밀천으로도 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선대된 총자본(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크기이다. 이것은 전체 자본가계급의 잉여가치 또는 이윤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면 이윤을 즉 일정한 자본량에 대한 이윤을 규정한다. 어떤 개별적 분야나 이 분야의 어떤 개별적 기업에서의 노동의 특별한 생산성은 그 생산성으로 하여 개별적 분야가 총자본에 비하여 또는 개별적 자본가가 그의 전체 분야에 비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는 한에서만 직접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자본가들의 관심을 끈다.

그리하여 우리는 여기에 호상간 경쟁에 있어서는 그렇게도 형제답지 않게 행동하는 자본가들이 왜 노동계급 전체와의 투쟁에서는 동시에 진정

한 프리메이슨적인 동맹을 형성하는가 하는 데 대한 수학적으로 정확한 증명을 얻는다.

생산가격에는 평균이윤이 들어 있다. 우리는 그것에 생산가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그것은 사실상 A 스미드가 자연가격이라고 불렀고 리카아도가 생산가격, 생산가치라고, 중농주의자들이 필요가격이라고 부른 것과 똑같은 것이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생산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설명하지 않았다——그것은 생산가격이 개개 생산분야의 상품의 공급과 재생산의 항구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³³⁾ 또한 노동시간에 의한, 상품에 들어 있는 노동량에 의한 상품가치의 규정을 거부한 바로 그 경제학자들이 어찌서 언제나 시장가격이 오르내리는 중심으로서 생산가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생산가격이 이미 완전히 외면적인 그리고 언뜻 보기에 상품가치의 불합리한 형태이며 경쟁에서 나타나는, 따라서 속된 자본가의 의식 속에, 따라서 또 속류경제학자들의 의식 속에 있는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시장가치(그런데 이에 대하여 말한 모든 것은 필요한 제한을 한다면 생산가격에도 들어맞는다)에는 개개 생산분야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서 생산하는 자들의 초과이윤율이 들어 있다. 공황과 과잉생산 일반의 경우들을 제쳐놓고 보면 이것은 모든 시장가격에 들어맞는다. 시장가격이 아무리 시장가치 또는 시장생산가격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된다. 즉 시장가격에는 똑같은 종류의 상품들에 대하여는 그것들을 생산하는 개별적 조건들이 매우 각각 다르며 따라서 그 생산비들이 매우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가격이 지불된다는 뜻이 들어 있다(인위적 독점이거나 자연적 독점이거나 보통의 의미에서 말하는 독점의 결과인 초과이윤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초과이윤은 그 밖에도 일정한 생산분야들이 그 분야들의 상품가치가 생산가격으로 전화되며 따라서 그 분야들의 이윤이 평균이윤으로

33) 멜더스(『정치경제학원리』, 런던, 1836년, 77페이지 이하).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도 나올 수 있다. 지대에 관한 편에서 우리는 초과이윤의 이 두 형태가 더욱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제 11 장 임금의 일반적 변동이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의 평균구성이 $80c+20v$ 이고 이윤은 20%라고 하자. 이 경우에 잉여가치율은 100%이다. 임금이 일반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다른 모든 사정들이 의연 같다면 잉여가치율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평균자본에 있어서는 이윤과 잉여가치는 일치한다. 임금이 25%만큼 올라간다고 하자. 똑같은 노동량을 가동시키는 데 전에는 20이 들었는데 이제는 25가 든다. 따라서 한 번 회전하는 가치는 $80c+20v+20p$ 대신에 $80c+25v+15p$ 가 된다. 가변자본에 의하여 가동되는 노동은 전이나 다름없이 40이라는 가치액을 생산한다. v 가 20에서 25로 오르면 초과분 m 또는 p 는 이제는 15에 지나지 않는다. 105에 대한 15의 이윤은 $14\frac{2}{7}\%$ 이며 이것은 새로운 평균이윤율일 것이다. 평균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상품의 가치와 일치하므로 이 상품의 생산가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이 올라 이윤은 떨어지지만 이 상품의 가치와 가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평균이윤이 20%였던 전에는 한 회전기간에 생산되는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상품의 생산비 더하기 이 생산비에 대한 20%의 이윤과 같아 즉 $k+kp' = k + \frac{20k}{100}$ 였다. 여기에서 k 는 상품에 들어가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따라 그리고 그 상품의 생산에 돌려지는 고정자본이 생산물에 떼어주는 마멸분의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른 가변의 크기이다. 이제는 생산가격이 $k + \frac{14\frac{2}{7}k}{100}$ 일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사회적 평균자본의 맨 처음의 구성인 $80c+20v$ (이것은 이제는 $76\frac{1}{2}c+23\frac{1}{2}v$ 로 되었다)보다 낮은 구성 예컨대 $50c+50v$ 인 자본을 들어보자. 이 경우에 임금이 오르기 전에 한 해 생산물의 생산가격

은 $50c+50v+20p=120$ 이었는데 간단히 하기 위하여 마멸분으로서 전체 고정자본이 한 해 생산물에 들어갔으며 회전기간은 I의 경우와 똑같다고 본다. 임금이 25%만큼 오르면 똑같은 양의 가동되는 노동에 대하여 가변자본이 50에서 $62\frac{1}{2}$ 로 늘어난다. 한 해 생산물이 이전의 생산가격인 120으로 팔린다면 $50c+62\frac{1}{2}v+7\frac{1}{2}p$ 로 될 것이며 따라서 이윤율은 $6\frac{2}{3}\%$ 로 될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평균이윤율은 $14\frac{2}{7}\%$ 이며 우리는 다른 모든 사정들이 의연 같다고 가정하였으므로 $50c+62\frac{1}{2}v$ 라는 이 자본도 위에서 지적된 이윤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112\frac{1}{2}$ 의 자본은 $14\frac{2}{7}\%$ 의 이윤율로 $16\frac{1}{4}$ 의 이윤을 얻는다. 따라서 이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의 생산가격은 이제는 $50c+62\frac{1}{2}v+16\frac{1}{4}p=128\frac{8}{14}$ 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임금이 25%만큼 오른 탓으로 똑같은 양의 똑같은 상품의 생산가격은 120에서 $128\frac{8}{14}$ 로 즉 7% 이상 올랐다.

반대로 평균자본보다 구성이 높은, 예컨대 $92c+8v$ 인 생산분야를 들어보자. 따라서 맨 처음의 평균이윤은 이 경우에도 20이며 우리가 다시 전체 고정자본이 한 해 생산물에 들어가며 회전기간은 I 및 II의 경우와 똑같다고 하면 상품의 생산가격은 이 경우에도 120이다.

임금이 25%만큼 오른 탓으로 의연 같은 노동량에 지출된 가변자본은 8에서 10으로 늘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비는 100에서 102로 늘어난 한편 평균이윤율은 20%에서 $14\frac{2}{7}\%$ 로 떨어졌다. 그런데 $100 : 14\frac{2}{7} = 102 : 14\frac{4}{7}$ 이다. 따라서 이제 102에 돌아가는 이윤은 $14\frac{4}{7}$ 이다. 그러므로 총생산물은 $k+kp'=102+14\frac{4}{7}=116\frac{4}{7}$ 로 팔린다. 따라서 생산가격은 120에서 $116\frac{4}{7}$ 로 즉 $3\frac{3}{7}$ 만큼 떨어졌다.

그리하여 임금이 25%만큼 오른 탓으로

1) 사회적 평균구성의 자본에 있어서는 상품의 생산가격이 의연 달라지지 않았으며

2) 구성이 그보다 낮은 자본에 있어서는 비록 이윤이 떨어진 것과 같은 비율로 오른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품의 생산가격은 올랐으며

3) 구성이 그보다 높은 자본에 있어서는 비록 이윤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비율로 떨어진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품의 생산가격은 떨어졌다.

평균구성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의 생산가격은 의연 똑같으며

생산물의 가치와 같으므로 모든 자본의 생산물의 생산가격 총액도 의연 똑같으며 총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가치 총액과 같다. 한편에서 오른 것과 다른 편에서 떨어진 것은 총자본으로 보면 상쇄되어 사회적 평균자본의 수준으로 된다.

상품의 생산가격이 Ⅱ의 예에서는 오르고 Ⅲ에서는 떨어진다면 잉여가치율이 떨어지는 것 또는 임금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것으로 하여 생기는 이 대립되는 영향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 경우에는 임금이 올라서 보는 손실을 상품의 가격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로 될 수 없다. 그것은 Ⅲ에서는 생산가격이 떨어져서 이윤이 떨어진 것을 자본가는 물론 보상할 수 없으며 Ⅱ에서는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이윤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또 가격이 떨어지는 두 경우에 다 이윤은 가격이 의연 달라지지 않은 평균자본의 이윤과 똑같다. 이윤은 Ⅱ에서나 Ⅲ에서나 똑같아서 $55/7$ 만큼 즉 25%를 조금 넘게 떨어진 평균이윤이다. 따라서 Ⅱ의 경우에 가격이 오르지 않고 Ⅲ의 경우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상품이 Ⅱ에서는 새로운 떨어진 평균이윤 이하로 팔릴 것이며 Ⅲ에서는 그 이상으로 팔리게 될 것이다. 노동에 지출하는 자본이 50%인가 25%인가 또는 10%인가에 따라 임금이 오르면 그 영향이 자기 자본의 $1/10$ 을 임금으로 지출하는 자와 $1/4$ 또는 $1/2$ 을 지출하는 자에 대하여 매우 다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새로 떨어진 평균이윤으로 균등화됨으로써만 자본의 구성이 사회적 평균보다 낮은가 높은가에 따라 한편으로는 생산가격이 오르고 다른 편으로는 생산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임금이 일반적으로 떨어지고 이에 따라 이윤율이 일반적으로 오르며, 따라서 평균이윤도 일반적으로 늘어나면 그 영향이 사회적 평균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어긋나는 자본의 생산물인 상품의 생산가격에 어떻게 미칠 것인가? 그 결과(리카아도는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있다)를 알려면 방금 한 설명을 거꾸로 하기만 하면 된다.

I. 평균구성의 자본 $= 80c + 20v = 100$, 잉여가치율 $= 100\%$, 생산가격 $=$ 상품가치 $= 80c + 20v + 20p = 120$, 이윤율 $= 20\%$, 임금이 4분의 1만큼 떨어지면 똑같은 불변자본이 이전의 $20v$ 가 아니라 $15v$ 에 의하여 가동될 것이

다. 그리하여 상품가치는 $80c+15v+25p=120$ 이다. v 에 의하여 생산된 노동량은 의연 달라지지 않고 다만 그 노동량에 의하여 창조된 새로운 가치가 자본가와 노동자들 사이에서 달리 분배될 따름이다. 잉여가치는 20에서 25로 늘었고 잉여가치율은 $20/20$ 에서 $25/15$ 로, 즉 100%에서 166⅔%로 올랐다. 95에 대한 이윤은 이제는 25이며 따라서 100에 대한 이윤율 $=26\frac{6}{19}$ 이다. 자본의 새로운 백분율적 구성은 이제는 $84\frac{4}{19}c+15\frac{15}{19}v=100$ 이다.

Ⅱ. 낮은 구성의 자본. 맨 처음에는 위에서와 같이 $50c+50v$ 였다. 임금이 4분의 1만큼 떨어짐으로써 v 는 $37\frac{1}{2}$ 로 줄어들며 따라서 선대되는 총자본은 $50c+37\frac{1}{2}v=87\frac{1}{2}$ 로 줄어든다. 여기에 $26\frac{6}{19}$ 라는 새로운 이윤율을 적용하면 $100:26\frac{6}{19}=87\frac{1}{2}:23\frac{1}{38}$ 이다. 전에는 120이 들었던 똑같은 상품량에 이제는 $87\frac{1}{2}+23\frac{1}{38}=110\frac{10}{19}$ 이 든다. 가격이 거의 10만큼 떨어진다.

Ⅲ. 높은 구성의 자본. 맨 처음에는 $92c+8v=100$ 이었다. 임금이 4분의 1만큼 떨어지면 $8v$ 는 $6v$ 로 줄고 총자본은 98로 준다. 이에 따라 $100:26\frac{6}{19}=98:25\frac{15}{19}$ 이다. 상품의 생산가격은 전에는 $100+20=120$ 이었는데 이제 임금이 떨어진 후에는 $98+25\frac{15}{19}=123\frac{15}{19}$ 이다. 즉 거의 4만큼 올랐다.

그리하여 보드시피 위에서 한 설명을 반대방향으로 그리고 해당한 변경만 가하면 된다. 임금이 일반적으로 떨어지면 그 결과 잉여가치와 잉여가치율이 일반적으로 오르며 따라서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다면 다른 비례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이윤율도 일반적으로 오르며 낮은 구성의 자본이 생산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떨어지고 높은 구성의 자본이 생산한 상품의 생산가격은 오른다. 결과는 임금이 일반적으로 오르는 경우와는 정반대이다.³⁴⁾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두 경우에 다 노동일의 길

34) 극히 이상한 것은 리카아도⁴⁰⁾(그는 물론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가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균등화과정을 이해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가 이 경우는 다루지조차 않았으며 다만 임금이 올라 그것이 상품의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취급한 첫째 경우만을 살펴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맹목적인 모방자의 무리⁴¹⁾

이는 모든 생활필수품들의 가격과 꼭 마찬가지로 의연 같다고 본다. 그리하여 임금이 떨어지는 것은 이 경우에 임금이 전에 노동의 정상적인 가격 이상이었거나 지금 그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만 있을 수 있다. 노동자의 일반적 소비로 들어가는 상품의 가치, 따라서 그 생산가격의 변동으로 하여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에 사태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아래에서 설명될 지대에 관한 편에서 연구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꼭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하겠다.

생활필수품의 가치변동으로 하여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진다면 위에서 말한 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가격이 달라져서 가변자본의 크기를 늘이거나 줄이는 상품들이 불변자본의 구성요소들로서 그 불변자본에도 들어가며 따라서 다만 임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한에서이다. 그러나 그 상품들이 임금에만 영향을 미치는 한에서는 이제까지 한 설명에 이 경우와 관련하여 말해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이 장 전체를 통하여 일반적 이윤율, 평균이윤의 형성, 따라서 또 가치의 생산가격으로의 전화는 주어진 사실로 보고 있다. 문제로 된 것은 오직 임금이 일반적으로 오르거나 떨어지면 주어진 것으로서 전제한, 상품의 생산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뿐이다. 이것은 이 편에서 취급하는 다른 중요한 점들에 비하면 아주 부차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 편에서 취급한 문제들 가운데서 리카아도가 고찰하고 있는, 그것도 아래에서 보듯이⁴² 일면적으로 또 불만족하게 고찰하고 있는 유일한 것이다.

들은 자명하기 그지없고 사실상 같은 뜻의 말을 되풀이하는 이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데까지도 이르지 못하였다.

제 12 장 보충

제1절 생산가격에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들

상품의 생산가격은 오직 다음과 같은 두 원인으로 해서만 달라질 수 있다.

첫째, 일반적 이윤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있을 수 있다. 즉 잉여가치의 평균을 자체가 달라지거나 또는 평균잉여가치율이 의연 그대로인데 선대된 사회적 총자본에 대한, 차지한 잉여가치 총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임금이 그 정상적인 수준 이하로 떨어지거나 그 이상으로 올라서——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은 오직 임금의 우연한 파동으로서만 보아야 한다——잉여가치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한에서 이 잉여가치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노동력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하기 때문이다. 노동력의 가치는 생활수단을 생산하는 노동의 생산성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따라서 노동자의 소비로 들어가는 상품들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고서는 떨어질 수도 오를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선대된 사회적 총자본에 대한, 차지한 잉여가치 총액의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변동은 잉여가치율에 기인하지 않으므로 그것은 총자본에 그것도 그 불변부분에 기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불변부분의 양은 기술적으로 보면 가변자본이 사들이는 노동력에 비례하여 늘거나 줄며 또 그 부분의 가치의 양은 그 부분의 양 자체가 늘거나 주는 것과 함께 늘거나 준다. 따라서 또한 그 가치의 양은 가변자본의 가치량에 비례하여 늘거나 준다. 전과 같은 양의 노동이 더 많은 불변자본을 가동시킨다면 그 노동은 더 생산적으로 된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된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생산성이 달라진다면

일정한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 경우에 다 다음과 같은 법칙이 들어맞는다. 즉 한 상품의 생산가격이 일반적 이윤율이 달라짐으로써 달라진다면 물론 그 상품 자체의 가치는 의연 달라지지 않을 수 있으나 다른 상품들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일반적 이윤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 상품의 생산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상품 자체의 가치가 달라지며, 즉 그 상품 자체를 재생산하는 데 전보다 노동이 더 많아졌거나 더 적어진 경우인데 여기에서 그 상품 자체를 그 마지막 형태로 생산하는 노동의 생산성이 달라지건 또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상품들을 생산하는 노동의 생산성이 달라지건 이에는 상관없다. 무명실의 생산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은 원료인 목화를 더 값싸게 생산하기 때문이거나 방적노동이 더 좋은 기계로 하여 더 생산적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생산가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k+p$ 즉 생산비 더하기 이윤과 같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k+kp$ 인데 여기에서 k 즉 생산비는 생산분야가 다름에 따라 일정하지 않은 크기이고 어디서나 상품의 생산에서 쓰인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가치와 같으며 p' 는 백분율로 계산한 평균이윤율이다. $k=200$ 이고 $p'=20\%$ 라면 생산가격 $k+kp'=200+200 \cdot 20/100=200+40=240$ 이다. 이 생산가격은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더라도 의연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상품의 생산가격의 모든 변동은 결국 가치변동에 귀착되지만 상품가치의 모든 변동이 다 생산가격의 변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생산가격의 다만 어떤 특수한 상품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될 뿐 아니라 모든 상품의 총가치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품 A에서의 변동은 상품 B에서의 대립되는 변동으로 하여 상쇄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일반적 비율은 의연 똑같을 수 있다.

제2절 평균구성의 상품의 생산가격

이미 본 바와 같이 생산가격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하여 가치와 어긋나게 된다.

1) 한 상품의 생산비에 덧붙여지는 것이 그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가 아니라 평균이윤이라는 사정.

2) 그리하여 상품의 가치와 어긋나는 상품의 생산가격이 다른 상품의 생산비에 그 요소로서 들어가며 그렇게 됨으로써 이미 한 상품의 생산비에는 그 상품 자체에서 평균이윤과 잉여가치의 차이로 하여 어긋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상품에 소비된 생산수단의 가치와 어긋난 것이 들어 있을 수 있다는 사정.

그리하여 평균구성의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에서도 생산비가 그 상품의 생산가격의 이 구성부분을 이루는 요소들의 가치 총액과 어긋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평균구성이 $80c+20v$ 라고 하자. 그러면 그와 같이 구성되어 있는 실제적 자본들에서 $80c$ 가 불변자본 c 의 가치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c 는 생산가격이 가치와 어긋나는 상품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20v$ 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그 가치와 어긋날 수 있을 것이다. 즉 생산가격이 가치와 차이나는 상품들에 임금을 소비하며 따라서 노동자가 이 상품들을 되사기 위하여 (이 상품들을 보상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의 생산가격이 그 가치와 일치할 때에 필요한 것보다 더 많거나 더 적은 노동시간을 일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더 많거나 더 적은 필요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평균구성의 상품들에 대하여 세운 명제들의 정당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이 상품들에 돌아가는 이윤량은 그 상품들 자체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량과 같다. 예컨대 위에서 든 구성 $80c+20v$ 인 자본의 경우에 잉여가치를 규정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이 숫자들이 실제적 가치를 표현하는가 안하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들의 호상비율 즉 v =총자본의 $1/5$ 이며 c =총자본의 $4/5$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가정한 것처럼 v 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는 평균이윤과 같다. 한편 또 이 잉여가치가 평균이윤과 같으므로 생산가격은 $\text{생산비} + \text{이윤} = k + p = k + m$ 이며 실제로 상품의 가치와 같게 된다. 즉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지더라도 이 경우에 상품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듯이 $k + p$ 는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그에 따라 이윤율 편에 반대로 떨어지거나 오르는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즉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짐으로써 상품의 가격이 이 경우에 달라진다면 평균구성의 이 분야의 이윤율은 다른 분야들의 이윤율 수준 이상이거나 이하일 것이다. 가격이 달라지지 않는 한에서만 평균구성의 분야는 다른 분야들과 같은 이윤 수준을 유지한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는 그 생산물이 그 실제적 가치대로 팔릴 때와 똑같은 사태가 실제로 생긴다. 즉 상품이 그 실제적 가치대로 팔린다면 그 밖의 사정들이 같은 경우에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지는 데 따라 이윤이 떨어지거나 오르지만 상품의 가치는 결코 달라지지 않으며 또 어떤 사정하에서도 임금이 오르거나 떨어져서 상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결코 없으며 다만 잉여가치의 크기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제3절 자본가의 보상 이유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경쟁은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이윤율을 평균이윤율로 균등화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이 분야들의 생산물의 가치를 생산가격으로 전화시킨다. 그것도 자본이 한 분야로부터 주어진 순간에 이윤이 평균수준을 넘는 다른 분야로 줄곧 넘어감으로써 그렇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되는 것은 주어진 산업부문에서 주어진 시기에 경기가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윤이 변동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산분야 사이에서 자본이 이렇게 끊임없이 들락날락 함으로써 이윤율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움직임이 있게 되는데 이 움직임은 많건 적건 서로 균등화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이윤율을 어디서나 공통

되고 일반적인 똑같은 수준으로 되게 하는 경향을 가진다.

자본의 이러한 움직임은 무엇보다도 이윤을 여기서는 일반적 평균수준 이상으로 올리고 저기서는 그 이하로 떨어뜨리는 시장가격의 상태에 기인한다. 우리는 아직 여기에서는 문제로 삼을 것이 아닌 상인자본을 당분간 제쳐놓고 보는데 상인자본은 좋아하는 물품들에 대한 갑자기 일어나는 투기의 발작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비상한 속도로 많은 양의 자본을 한 기업부문에서 끌어내며 그것을 또한 갑자기 다른 기업부문에 던져 넣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유한 의미의 생산분야——공업, 농업, 광업 등——에서는 어디서나 자본이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특히 이미 있는 고정자본 때문에 그러하다. 거기에다 경험 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컨대 면공업과 같은 산업부문에서는 한때 이윤이 비정상히 높았다면, 한때는 또 이윤이 쑥 떨어지거나 손실을 보기까지 하며 그리하여 몇 해에 걸치는 어떤 주기에 평균이윤은 다른 부문들과 거의 똑같게 된다. 그리고 자본은 이 경험에서 곧 타산하는 것을 배운다.

그러나 생산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것은 가치이며 바로 이 가치가 생산가격의 배후에 있으며 결국에는 생산가격을 규정한다는 사실, 이것은 경쟁에 의해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 대신 경쟁이 보여주는 것은 1)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는 달려 있지 않은, 따라서 또 주어진 자본이 주어진 착취분야에서 차지하는 산 노동의 양에는 달려 있지 않은 평균이윤이다. 2) 임금수준이 달라지는 탓으로 생산가격이 오르고 떨어지는 것인데 이 현상은 언뜻 보면 상품의 가치관계와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다. 3) 시장가격의 변동인데 이 변동은 주어진 기간의 상품의 평균시장가격을 시장가치로 귀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장가치와 어긋나는, 이 시장가치와는 매우 다른 시장생산가격으로 귀착시킨다. 이 모든 현상은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의 규정에도, 부지불 잉여노동으로 이루어지는 잉여가치의 본성에도 다 모순되는 것같이 보인다. 따라서 경쟁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나타난다. 표면에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완성된 모습은 이 관계의 현실적 존재에서는 따라서 또 이 관계를 해명하려는 그 담당자와 당사자들의 표상에서는 이 관계의 내적이며 본질적인 그러나 가리워진 기본내용과는 매우 다르며 사실상 그 내용을 왜곡하

며 그 내용 자체나 그 개념과도 모순된다.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이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개별적 생산분야의 각이한 이윤율들의 일반적 이윤율로의 균등화는 다만 자본을 끌어당겼다 밀쳐냈다 하는 시장가격의 역할에 의해서만 진행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평균가격과 이에 따른 시장가격이 일정한 기간 확립된 다음에는 이 균등화에서 일정한 차이들이 균등화된다는 것이 개별적 자본가들의 의식 속에 떠오르며 그리하여 자본가들은 바로 이 차이들을 곧 그들 서로가 타산하게 된다. 자본가들의 표상 속에는 이 차이들이 살아 있으며 그리하여 자본가들은 이 차이들을 보상 이유로 친다.

이 경우에 이러한 표상의 기본은 평균이윤 자체이다. 즉 크기가 같은 자본은 똑같은 기간에 크기가 같은 이윤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 표상의 바탕에는 또 다음과 같은 표상이 놓여 있다. 즉 각 생산분야의 자본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사회적 총자본이 노동자들에게서 짜내는 총잉여가치에서 한몫 보아야 한다는 것 또는 개개 자본은 다만 총자본의 한 조각으로 보아야 하며 개개 자본가는 사실상 총기업에서 그의 몫인 자본의 크기에 비례하여 총이윤에서 한몫 보는 하나의 주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표상에 근거하여 자본가의 타산이 서게 된다. 즉 예컨대 상품이 더 오랫동안 생산과정에 머물러 있거나 상품을 더 먼 시장에서 팔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 회전이 비교적 느린 자본은 그 때문에 잃은 이윤을 그래도 계산에 넣으며 따라서 가격에 덧붙임을 하여 보상을 받는다. 또한 예컨대 해운업에서와 같이 큰 위험을 겪을 수 있는 투자도 역시 가격 덧붙임으로 보상을 받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보험업이 발전하게 되면 위험은 사실상 모든 생산분야에서 같게 된다(코베트를 보라⁴⁹). 그러나 더 위험을 겪는 기업들은 더 높은 보험료를 치루며 자기들의 상품가격에서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실제로 이 모든 것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어떤 투자——그리고 모든 투자는 어느 한계 안에서는 다같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이윤이 적고 다른 투자는 이윤이 많게 되는 사정은 어느 것이나 다 단연 타당한 보상 이유로 치고 있는데 그러한 동기나 그러한 타산의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늘 경쟁

활동을 새로 벌일 필요는 벌써 없다는 것이다. 다만 자본가가 잇고 있는 것은——잇고 있다기보다는 경쟁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은——서로 다른 생산부문의 상품가격을 서로 계산하는 데서 자본가들이 서로 내세우는 이 모든 보상 이유는 전적으로 그들 모두가 각자의 자본에 비례하여 공동의 노획물인 총임여가치에 대하여 같은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자본가들에게는 그들이 얻은 이윤이 그들이 짜내는 임여가치와 다르므로 그들의 보상 이유가 총임여가치에서 균등하게 한몫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윤 자체를 창조하는 것같이 보인다. 그것은 이윤이 단순히 이러저러한 동기로 마치 상품의 생산비에 덧붙이는 데서 나오는 것같이 보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임여가치의 원천에 대한 자본가의 표상에 관하여 제7장, 116페이지*에서 말한 것은 모두 평균이윤에 대해서도 들어맞는다. 이 경우에 상품의 시장가격이 주어지고 노동의 착취가 주어진 조건에서는 생산비의 절약은 개인들의 기교, 주의력 등에 달려 있는 한에서만 문제가 다르게 선다.

* 이 책 171~172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의 법칙

제13장 법칙 그 자체

제14장 반대로 작용하는 원인들

제15장 법칙의 내적 모순의 발전

제 13 장 법칙 그 자체

임금이 주어져 있고 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면 예컨대 100이라는 가변자본은 가동되는 일정한 수의 노동자를 표시한다. 그것은 이 노동자 수의 지표이다. 가령 100파운드 스텔링이 100명의 노동자의 한 주일분 임금이라고 하자. 이 100명의 노동자가 잉여노동만큼 필요노동을 수행한다면 따라서 그들이 하루에 자본가를 위하여 즉 잉여가치의 생산을 위하여 일하는 만큼 자기자신을 위하여 즉 자기들의 임금의 재생산을 위하여 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그들이 생산하는 총가치는 200파운드 스텔링이며 그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는 100파운드 스텔링이 될 것이다. 잉여가치율 m/v 은 100%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잉여가치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변자본 c 의 크기, 따라서 총자본 C 의 크기가 서로 다름에 따라 매우 서로 다른 이윤율로 표현될 것이다. 그것은 이윤율이 m/C 이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율이 100%이라면,

$c=50, v=100$ 인 경우에는 $p'=100/150=66\frac{2}{3}\%$ 이며

$c=100, v=100$ 인 경우에는 $p'=100/200=50\%$ 이며

$c=200, v=100$ 인 경우에는 $p'=100/300=33\frac{1}{3}\%$ 이며

$c=300, v=100$ 인 경우에는 $p'=100/400=25\%$ 이며

$c=400, v=100$ 인 경우에는 $p'=100/500=20\%$ 이다.

이와같이 노동의 착취정도가 달라지지 않는 조건에서 똑같은 잉여가치율은 떨어지는 이윤율로 표현될 것이다. 그것은 불변자본의 물동량이 늘는 것과 함께 같은 비율로는 아니더라도 불변자본 따라서 총자본의 가치량도 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자본구성의 이 점차적 변화가 개별적 생산분야들에서만 일어나지 않고 당연적건 모든 생산분야들에서 또는 적어도 결정적인 생산분야들에서 일어나며 그리하여 그 변화가 일정한 사회에 속하는 총자본의 유기적 평균구성을 변동시킬 만한 것이라고 가정하면 가변자본에 비

한 불변자본의 이 점차적 증대는 잉여가치율 또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착취정도가 의연 같은 경우에 일반적 이윤율이 점차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 법칙으로 된 바와 같이 이 생산양식이 발전함에 따라 가변자본은 불변자본에 비하여, 따라서 가동되는 총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것은 다만 주어진 가치량의 가변자본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같은 수의 노동자, 같은 양의 노동력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발전하는 독특한 생산방법들로 하여 끊임없이 늘어나는 양의 노동수단인 기계와 그 밖의 고정자본, 원료와 보조자재를, 따라서 또 끊임없이 늘어나는 가치량의 불변자본을 같은 시간에 가동시키며 가공하며 생산적으로 소비한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가변자본이 불변자본, 따라서 총자본에 비하여 이렇게 더욱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적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평균적으로 더욱더 높아진다는 것과 같다. 그것은 또한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더욱더 발전한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데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이란 바로 기계와 고정자본 일반을 더 많이 적용하여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수의 노동자로 즉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원료와 보조자재가 생산물로 전화되는 데서 나타난다. 불변자본의 가치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불변자본을 소재적으로 이루는 사용가치들의 실제적 양이 늘어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 생산물의 값은 더 싸진다. 개개 생산물에는 그 자체로 보면 노동에 지출한 자본이 생산수단에 지출한 자본에 비하여 비할 바 없이 큰 낮은 생산단계에서보다 더 적은 양의 노동이 들어 있다. 따라서 이 장의 처음에 가정하여 내놓은 그 순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실제적 경향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하여 더욱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라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점점 높아지게 하는데 그 직접적 결과는 잉여가치율이 노동의 착취정도가 의연 같더라도 심지어 노동의 착취정도가 커지더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일반적 이윤율로 표현된다는 것이다(일반적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이 어찌서 이렇게 절대적 형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떨어지는 경향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이 더욱더 떨어지는 경

향은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더욱더 발전한다는 표현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독특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이윤율이 다른 이윤들로 하여서도 한때 떨어지는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함에 따라 일반적 평균잉여가치율이 떨어지는 일반적 이윤율로 표현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질로부터 하나의 자명한 필연성으로 증명된 것이다. 적용되는 산 노동의 양은 그에 의하여 가동되는 대상화된 노동 즉 생산적으로 소비되는 생산수단의 양에 비하여 끊임없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산 노동 가운데서 지불되지 않고 잉여가치로 대상화되는 부분도 적용되는 총자본의 가치량에 비하여 끊임없이 줄어드는 비율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적용된 총자본의 가치에 대한 잉여가치량의 이 비율이 이윤율이며 따라서 이윤율은 끊임없이 떨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칙은 이렇게 설명해 놓고 보면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제까지의 모든 정치경제학은 그것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나오는 한 편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모든 정치경제학은 그 현상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려고 모순된 시도들을 하면서 고심하였다. 이 법칙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아담 스미드 이래 모든 정치경제학이 풀려고 하면서도 풀지 못한 하나의 비밀이었고 A. 스미드 이래의 여러 학파들 사이의 차이는 그것을 풀려는 시도에서 서로 차이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 또 이제까지의 정치경제학은 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의 차이의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는 하였으나 결코 그 차이를 규정적으로 정식화하지 못하였으며, 결코 잉여가치를 이윤과 구별해서 서술하지 않았고 또 결코 이윤 일반을 산업이윤, 상업이윤, 이자, 지대와 같은 서로 자립화된 각각 다른 그 구성부분들과 구별하여 순수하게 서술하지 않았으며, 결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의 차이,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을 근본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까지의 정치경제학이 이 수수께끼를 결코 풀 수 없었다는 것은 수수께끼로 되지 않는다.

* 이 책 제14장을 보라. 편집부.

우리는 이윤이 서로 자립화된 각각 다른 범주들로 갈라지는 것을 서술하기에 앞서 일부러 이 법칙을 서술한다. 이윤이 서로 다른 범주의 인물들에게 돌아가는 서로 다른 부분들로 갈라지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 법칙을 따로 서술할 수 있다는 것은 곧 이 법칙이 일반적으로 그 갈라지는 것과는 그리고 그 때문에 생기는 서로 다른 이윤 범주들의 호상관계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이윤이란 잉여가치를 낳는 가변자본과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총자본과의 관계에서 표시할 따름인 잉여가치 자체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윤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선대된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 자체의 비율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며 따라서 그것은 이 잉여가치가 서로 다른 범주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든 이에는 관계가 없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의 구성 $c : v$ 가 $50 : 100$ 인 자본주의적 발전의 한 단계에서 100% 의 잉여가치율이 $66\frac{2}{3}\%$ 의 이윤율로 표현된다면 $c : v$ 가 $400 : 100$ 인 보다 높은 단계에서는 똑같은 잉여가치율이 겨우 20% 의 이윤율로 표현된다. 한 나라에서 각각 다른 연달은 발전단계들에 들어맞는 것은 각각 다른 나라들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발전단계들에도 들어맞는다. 첫번째 자본구성이 평균을 이루는 발전되지 않은 나라에서는 일반적 이윤율이 $66\frac{2}{3}\%$ 일 것이지만 훨씬 더 높은 발전단계에 있는 두번째 자본구성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20% 일 것이다.

이 두 나라의 이윤율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됨으로써 사라질 수 있으며 심지어 뒤집힐 수도 있을 것이다. 즉 덜 발전된 나라에서 노동이 생산적이 못되며 따라서 더 많은 노동량이 더 적은 양의 똑같은 상품으로 표시되고 더 많은 교환가치가 더 적은 사용가치로 표시되며 따라서 노동자가 자기 시간의 더 큰 부분을 자기자신의 생존수단 또는 그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돌리며 더 작은 부분을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 돌려 더 적은 잉여노동을 제공하며 그리하여 잉여가치율이 낮아짐으로써 그렇게 된다. 예컨대 덜 발전된 나라에서 노동자가 노동일의 $2/3$ 는 자기자신을 위하여 일하고 $1/3$ 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면 위에서 든 예의 전체 밑에서 이 똑같은 노동력은 $133\frac{1}{3}\%$ 의 보수를 받으며 겨우 $66\frac{2}{3}\%$ 의 초과분을 제공할 것이다. $133\frac{1}{3}\%$ 의 가변자본에 50 의 불변자본이 상응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잉여가치율은 $133\frac{1}{3} : 66\frac{2}{3} = 50\%$ 가 될 것이며 이윤율은 $183\frac{1}{3} : 66\frac{2}{3}$ 즉 약 $36\frac{1}{2}\%$ 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 이윤이 갈라져 나가는 각각 다른 구성부분은 우리가 아직 연구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 구성부분들이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다만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하여 둔다. 발전단계가 서로 다른 나라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나라들과 비록 노동자가 실제로 자본가에게 착취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이 아직 형태상으로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예컨대 인도인데 여기에서는 라이오트가 자립적 농민으로서 농사를 지으며 따라서 그의 생산 자체는 아직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비록 고리대금업자가 이자형태로 그에게서 그의 잉여노동뿐 아니라 자본주의적으로 말하여 그의 임금의 한 부분까지도 가로챌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을 비교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이자율의 수준으로 그 나라 이윤율의 수준을 재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노동이 아직 형태상으로 자본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이자에 전체 이윤이, 심지어 이윤보다 더 많은 것이 들어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나라들에서는 이자는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이윤의 일정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 나라들에서 이자율을 규정하는 것은 주로 이윤과는 그야말로 아무런 관련도 없고 오히려 고리대금업자가 어느 정도로 지대를 차지하는가를 표시할 따름인 그러한 관계들(고리대금업자가 지대의 소유자인 토호들에게 주는 대부)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단계가 서로 다르며 따라서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서로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정상적 노동일이 긴 나라에서보다 짧은 나라에서 잉여가치율(이윤율을 규정하는 요인의 하나)은 높을 수 있다. 첫째로, 영국의 10시간노동일이 그 강도가 높은 것으로 하여 오스트리아의 14시간노동과 맞먹는다면 노동일이 똑같이 나누어지는 조건에서 영국인의 5시간 잉여노동은 오스트리아인의 7시간 잉여노동보다 높은 가치를 세계시장에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둘째로 영국에서는 오스트리아에서보다 노동일의 더 큰 부분이 잉여노동을 이룰 수 있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법칙은——그런데 떨어지는 이윤율에는 똑같은 잉

여가치율 또는 심지어 높아지는 잉여가치율이 표현된다——달리 말하면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일정한 양의 사회적 평균자본, 예컨대 100이라는 자본을 들어보면 그 자본 가운데서 점점 더 커지는 부분이 노동수단으로 표시되며 점점 더 적어지는 부분이 산 노동으로 표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수단에 덧붙여지는 산 노동의 총량이 이 생산수단의 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므로 부지불노동과 이 부지불노동을 표시하는 가치부분도 선대된 총자본의 가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또는 지출되는 총자본 가운데서 점점 더 적은 부분이 산 노동으로 전환되며 따라서 이 총자본은 그 크기에 비하여 점점 더 적은 잉여노동을 빨아들인다. 비록 적용되는 노동 가운데서 지불부분에 대한 부지불부분의 비율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가변자본과 불변자본, 이 두 부분이 다 절대적으로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는 가변자본은 줄고 불변자본은 늘어난다는 이 사실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100이라는 자본이 $80c+20v$ 로 이루어지고 이 $20v$ 는 20명의 노동자와 같다고 하자. 잉여가치율은 100%라고 즉 노동자는 하루의 반은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하루의 반은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자. 덜 발전된 나라에서는 자본이 $20c+80v$ 이고 이 $80v$ 는 80명의 노동자와 같다고 하자. 그러나 이 노동자들은 노동일의 $2/3$ 는 자기를 위하여 일하고 $1/3$ 만을 자본가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자. 다른 모든 사정들이 같다고 하면 노동자들은 첫째 경우에는 40의 가치를 생산하고 둘째 경우에는 120의 가치를 생산한다. 첫째 자본은 $80c+20v+20m=120$ 을 생산하며 이윤율은 20%이다. 둘째 자본은 $20c+80v+40m=140$ 을 생산하며 이윤율은 40%이다. 따라서 이윤율은 둘째 경우에 첫째 경우의 두 곱이나 된다. 비록 잉여가치율은 첫째 경우에 그것이 겨우 50%인 둘째 경우의 두 곱 즉 100%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그 대신 크기가 같은 자본이 첫째 경우에는 겨우 20명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차지하는데 둘째 경우에는 80명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차지한다.

이윤율이 더욱더 떨어지는 또는 산 노동에 의하여 가동되는 대상화된 노동량에 비하여 차지하는 잉여노동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법칙은 결코

다음과 같은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즉 사회적 자본에 의하여 가동되며 착취되는 노동의 절대량, 따라서 또 사회적 자본이 차지하는 잉여노동의 절대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으며 또한 개별적 자본가들의 지휘를 받는 자본들이 늘어나는 노동량 따라서 늘어나는 잉여노동량도 지휘하며 잉여노동량은 그 자본들이 지휘하는 노동자수가 늘지 않더라도 늘어난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예컨대 200만이라는 노동인구를 들어보면 그리고 또 평균노동일의 길이와 강도 또한 임금, 따라서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비율을 주어진 것으로서 보면 이 200만명의 총노동 그리고 또한 잉여가치로 표시되는 그들의 잉여노동이 생산하는 가치량은 언제나 똑같다. 그러나 이 노동이 가동시키는 불변자본——고정적 및 유동적——의 양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와 함께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본의 늘어나는 가치에 대한 그 가치량의 비율은 떨어진다. 자본이 지휘하는 산 노동의 양은 여전히 똑같고 자본이 빨아들이는 잉여노동의 양도 똑같지만 이 비율은 떨어지며 따라서 이윤율이 떨어진다. 그 비율이 달라지는 것은 산 노동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산 노동에 의하여 가동되는 이미 대상화된 노동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줄어드는 것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사실상 가동되는 노동과 잉여노동의 절대량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은 총자본 가운데서 가변적 구성부분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분이 다만 상대적으로 즉 불변적 구성부분에 비하여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어진 노동량과 잉여노동량에 대하여 들어맞는 것은 늘어나는 노동자수에 대하여도 들어맞으며 따라서 주어진 전제들 밑에서는 지휘를 받는 노동의 늘어나는 양과 특히 그 부지불부분인 잉여노동에 대해서도 들어맞는다. 노동인구가 예컨대 200만에서 300만으로 늘어난다면, 그들에게 임금으로 지불되는 가변자본도 또한 전에는 200만이었지만 이제는 300만이고 불변자본은 400만에서 1,500만으로 늘어난다면 주어진 전제들(노동일에 변함이 없고 잉여가치율에 변함이 없는) 밑에서는 잉여노동, 잉여가치의 양은 절반만큼, 50%만큼 즉 200만에서 300만으로 늘어난다. 그렇지만 잉여노동 따라서 잉여가치의 절대량도 이와같이 50%만큼 늘었

지만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은 2:4에서 3:15로 떨어졌으며 총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표시될 것이다(단위 100만).

$$\text{I. } 4c+2v+2m; C=6, p'=33\frac{1}{3}\%$$

$$\text{II. } 15c+3v+3m; C=18, p'=16\frac{2}{3}\%$$

전보다 잉여가치량은 절반만큼 늘었는데 이윤율은 절반만큼 떨어졌다. 그러나 이윤은 사회적 자본에 대하여 본 잉여가치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이윤의 양, 이윤의 절대적 크기는 사회적으로 보면 잉여가치의 절대적 크기와 같다. 따라서 이윤의 절대적 크기, 이윤 총량은 선대된 총자본에 대한 이 이윤량의 비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일반적 이윤율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50%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자본에 의하여 적용되는 노동자들의 수, 즉 자본에 의하여 가동되는 노동의 절대량, 따라서 자본에 의하여 빨리우는 잉여노동의 절대량, 따라서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 즉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이윤의 절대량은 이윤율이 누진적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늘어날 수 있으며 누진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시적 변동을 제쳐놓고 보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본질상 동시에 축적과정이기도 하다.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그저 재생산되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는 가치량은 적용되는 노동력이 의연 변함없는 경우에도 노동의 생산성이 오름에 따라 커지며 늘어난다. 그러나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생산수단을 한 부분으로 하는 생산되는 사용가치의 양은 더 빨리 늘어난다. 그리고 추가노동을 차지함으로써 얻는 이 추가적 재부를 자본으로 도로 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추가노동의 양은 이 생산수단(생활수단도 포함하여)의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에 달려 있다. 그것은 노동과정에서 노동자가 맞다드는 것은 생산수단의 가치가 아니라 생산수단의 사용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축적 자체와 그에 따라 생기는 자본의 집적은 그 자체가 생산력을 높이는 물질적

수단이다. 그러나 생산수단의 이 증가는 노동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추가자본에 상응하며 심지어는 추가자본의 수요를 대체로 늘 초과하는 노동인구, 따라서 노동자들의 과잉인구가 생긴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추가자본이 그 지휘를 받는 노동인구에 비하여 한때 남아 돌아가면 그 영향은 이중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편으로는 임금이 오르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후대를 줄어들게 하는 파멸적 영향을 완화시키며 결혼을 쉽게 하게 함으로써 노동인구가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이다. 한편 또 그렇게 되면 상대적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방법들을 적용(기계의 도입과 개량)함으로써 인위적인 상대적 과잉인구가 훨씬 더 빨리 생기게 될 것인데 이 상대적 과잉인구는 이번에는 또 인구수가 실제로 빨리 늘어나게 하는 온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가난이 인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하나의 계기에 지나지 않는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의 본성으로 하여 자연히 자본으로 전화되게 되어 있는 생산수단의 양이 늘어나면 착취할 수 있는 노동인구는 그에 따라 늘어나며 심지어는 남아 돌아가게까지 된다. 따라서 생산과정과 축적과정이 진척되는 데 따라 차지할 수 있으며 또 실제로 차지하게 되는 잉여노동의 양과 따라서 사회적 자본이 차지하게 되는 이윤의 절대량도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생산과 축적의 똑같은 법칙들은 불변 자본의 양과 함께 그 가치를 산 노동으로 전환되는 가변자본부분의 가치보다 더욱 누진적으로 빨리 늘어나게 한다. 따라서 똑같은 이 법칙들로 하여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절대적 이윤량은 늘어나며 이윤율은 떨어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그리고 생산부문들이 많아지고 따라서 생산물들이 많아짐에 따라 전과 같은 가치량이 더욱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와 사치품으로 표시된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완전히 제쳐놓고 본다.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이 발전하여 감에 따라 노동과정이 더욱더 큰 규모로 따라서 더욱더 넓은 범위에서 진행되게 되며 그에 따라 개개 기업에서 자본선대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자본들의 집적이 늘어나는 것(그와 동시에 비록 정도는 그보다 적지만 자본가들의 수도 늘어난다)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의 물질적 조건의 하나이며 자본주의적 생산

과 축적 그 자체에 의하여 생기는 결과의 하나이다. 이와 손을 맞잡고, 호상작용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직접적인 생산자들에 대한 수탈이 더욱더 심해진다. 그리하여 개별적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더욱더 많은 노동자군을 지휘하며(그들의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하여 아무리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윤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또 이윤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차지하는 잉여가치량, 따라서 이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알만하다. 개별적 자본가들의 지휘 밑에 노동자대군이 집결되게 되는 바로 그 원인들로 하여 원료와 보조자재와 같은 적용하는 고정자본의 양이 적용하는 산 노동의 양보다 더 빨리 더 크게 불어나게 된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저 한마디 말해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노동인구가 주어진 조건에서 잉여가치율이 늘어난다면——노동일이 길어지거나 그 강도가 높아져서이건 노동생산력이 발전한 결과에 임금의 가치가 떨어져서이건——불변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잉여가치의 양, 따라서 절대적 이윤량도 늘어나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똑같은 발전, 총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축적이 다그쳐지는 데서——그런데 한편 또 축적은 반작용하여 생산력이 더 발전하고 가변자본이 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출발점으로 된다——나타나는 똑같은 법칙들, 바로 이 똑같은 발전은 일시적 변동을 제쳐놓고 보면 적용되는 총노동력이 더욱더 늘어나는 데서, 잉여가치, 따라서 이윤의 절대량이 더욱더 늘어나는 데서 표현된다.

그런데 똑같은 원인들로 하여 이윤율이 줄어드는 동시에 절대적 이윤량이 늘어나는 이중성을 띤 이 법칙 즉 주어진 조건에서 차지하는 잉여노동, 따라서 잉여가치의 양이 늘어나며 그리고 총자본 전체를 놓고 보거나 개개의 자본을 총자본의 단순한 부분으로서 보면 이윤과 잉여가치는 그 크기가 같다는 데 기초하고 있는 법칙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가?

일정한 자본액 예컨대 100을 들어 이에 대한 이윤율을 계산하여 보자.

이 100은 가령 $80c+20v$ 라는, 총자본의 평균구성을 표시한다고 하자. 이 책의 제2편에서 본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생산부문의 평균이윤율은 개개 생산부문의 특수한 자본구성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사회적 평균구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라 이윤율은 노동의 착취정도가 의연 같거나 심지어는 늘어나는 데도 떨어지며 잉여가치의 상대적 크기 즉 100이라는 선대된 총자본의 가치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 상대적 크기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100이라는 총자본이 빨아들이는 잉여가치 또는 이윤의 크기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 잉여가치율이 100%라면 $60c+40v$ 라는 자본은 40의 잉여가치량 따라서 이윤량을 생산하며 $70c+30v$ 라는 자본은 30의 이윤량을 생산하며 $80c+20v$ 라는 자본에서는 이윤이 20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잉여가치량, 따라서 이윤량과 관계되는 것이며 따라서 100이라는 총자본이 가동시키는 산 노동 일반이 더 적으며 착취정도가 의연 같은 경우에는 가동시키는 잉여노동도 더 적기 때문에 생산하는 잉여가치가 더 적게 되는 데 기인하는 것이다. 사회적 자본, 따라서 사회적 평균구성의 자본의 어떤 일정한 부분을 잉여가치를 재는 측정단위로 든다면——그런데 어떤 이윤 계산에서도 그렇게 한다——일반적으로 잉여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그것이 절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같은 것이다. 이윤율은 위에서 든 예들에서 40%에서 30%로 그리고 또 20%로 떨어진다. 그것은 사실상 같은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량, 따라서 이윤량이 절대량에서 40에서 30으로 그리고 또 20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잉여가치를 재는 자본의 가치량이 주어져 있어 100이므로 의연 같은 이 가치량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잉여가치와 이윤의 절대적 크기가 줄어든다는 다른 표현으로 될 수 있을 따름이다. 이것은 사실상 같은 뜻의 되풀이다. 그러나 이 비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 발전의 본성에서 나온다.

그러나 한편 또 주어진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 따라서 이윤이, 따라서 또 백분율로 계산한 이윤율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하는 똑같은 원인으로 하여 사회적 총자본(즉 자본가들의 총체)이 차지하는 잉여가치 따라

서 이윤의 절대량은 늘어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조건들이 이 외관상의 모순의 전제로 되는가?

사회적 자본의 부분인 100마다, 따라서 사회적 평균구성의 자본의 100마다 그 크기가 주어져 있으며 따라서 그 자본들에 있어서는 바로 이 경우에 이윤율과 이윤의 절대적 크기를 재는 자본이 불변의 크기이기 때문에 이윤율이 줄어드는 것은 이윤의 절대적 크기가 줄어드는 것과 일치한다면 이와 반대로 사회적 총자본의 크기는 개별적 자본가의 손안에 있는 자본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가변의 크기이며 이것은 전제로 한 조건들에 맞으려면 그 자본의 가변부분이 줄어드는 데 반비례하여 갈라지지 않을 수 없다.

위에서 든 예에서 자본구성이 $60c+40v$ 였을 때 그에 대한 잉여가치 또는 이윤은 40이었으며 따라서 이윤율은 40%였다. 이 구성에서 총자본이 1,000,000였다고 하자. 그러면 총잉여가치, 따라서 총이윤은 400,000일 것이다. 그런데 후에 자본구성이 $80c+20v$ 로 될 때에 노동의 착취정도가 의연 같은 경우 잉여가치 또는 이윤은 매 100에 대하여 20으로 된다. 그러나 이윤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데도 즉 매 100의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가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잉여가치 또는 이윤은 절대량으로 보면 이미 논증한 바와 같이 늘어서 예컨대 400,000에서 440,000으로 늘어난 만큼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새로운 구성에 따라 동시에 이루어진 총 자본이 2,200,000으로 늘어난 탓이다. 이윤율은 50%만큼 떨어졌는데 가동되는 총자본의 양은 120%만큼 늘어났다. 자본이 곱절로 되었을 뿐이라면 그 자본은 20%의 이윤율로 1,000,000이었던 이전의 자본이 40%의 이윤율로 생산한 것과 똑같은 양의 잉여가치와 이윤을 생산할 수 있었을 뿐일 것이다. 자본이 곱절보다 적게 늘어났다면 전에 1,000,000의 자본이 생산한 것보다 적은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생산하였을 것인데 이 이전의 자본은 이전의 구성에서 잉여가치를 400,000에서 440,000으로 늘이기 위해서는 1,000,000에서 1,100,000으로 늘기만 하면 될 것이다.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라,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력

이 발전하는 데 따라 똑같은 양의 노동력을 가동시키고 똑같은 양의 잉여노동을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양의 총자본이 필요하다는 이미 전에 내놓은 법칙⁴⁵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상대적으로 남아 돌아가는 노동인구가 생길 가능성이 발전하는데 이것은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줄어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늘어나기 때문이며 따라서 노동과 생존수단 또는 이 생존수단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 사이의 절대적인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자본주의적으로 착취하는 데서 생기는 불균형 즉 자본은 더욱더 늘어나는데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그 사이의 불균형에서 온다.

이윤율이 50%만큼 떨어지면 이윤율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윤율이 의연 같으려면 자본은 곱절로 되지 않으며 안된다. 이윤율은 떨어지는데 이윤율이 의연 같으려면 총자본이 늘어나는 것을 표시하는 곱수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표시하는 나눗수와 같지 않으면 안된다. 이윤율이 40에서 20으로 떨어지는 경우에 결과가 의연 똑같으려면 총자본은 반대로 20에서 40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이윤율이 40에서 8로 떨어진다면 자본은 8에서 40으로 즉 다섯 곱으로 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1,000,000의 자본은 40%의 이윤율로 400,000의 이윤을 생산하며 5,000,000의 자본은 8%의 이윤율로 역시 400,000의 이윤을 생산한다. 결과가 의연 똑같은 것으로 되려면 자본이 그렇게 늘어나야 한다. 반대로 결과가 늘어나려면 자본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다시 말하여 총자본을 이루는 가변부분이 총자본에 대한 그 백분율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절대치에서 의연 똑같은 뿐 아니라 늘어나기 위해서는 총자본은 백분율로 표현된 가변자본부분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높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총자본은 새로운 구성에서 노동력을 사들이는 데 이전의 가변자본부분만 아니라 이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할 만큼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100이라는 자본의 가변부분이 40에서 20으로 줄어든다면 40보다 더 많은 가변자본을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총자본이 200 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착취되는 노동인구의 양은 의연 같고 다만 노동일의 길이와 강도가 늘어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자본의 양은 늘어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구성이 달라짐에 따라 이전의 착취관계 밑에 똑같은 노동량을 적용하기 위해서만도 적용되는 자본의 양은 늘어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똑같은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이윤율이 더욱더 떨어지는 경향에서 표현되며 또 한편으로는 차지하게 되는 잉여가치 또는 이윤의 절대량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데서 표현된다. 그리하여 전체로 보면 가변자본과 이윤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라 이 두 가지 것은 다 절대적으로 늘어난다. 이 두 측면의 결과는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이윤율이 더욱더 떨어지는 것보다 더 빨리 총자본이 더욱더 늘어나는 데서 나타날 수 있을 따름이다. 자본의 구성이 높아진 조건에서 즉 불변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난 조건에서 절대적으로 늘어난 가변자본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자본은 구성이 높아진 데 비례해서만 아니라 그보다 더 빨리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때문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하면 할수록 똑같은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는 그리고 더더구나 그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자본량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는 노동생산력이 높아지면 반드시 항구적인 과잉노동인구가 뚜렷이 생기기 마련이다. 가변자본이 전에는 총자본의 $\frac{1}{2}$ 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겨우 $\frac{1}{6}$ 을 이룬다면 똑같은 노동력을 쓰기 위해서는 총자본이 세 곱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곱절로 된 노동력을 써야 한다면 총자본은 여섯 곱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법칙을 설명할 줄 모른 이제까지의 정치경제학은 개별적 자본가에게 있어서나 사회적 총자본에 있어서나 이윤량이 늘어나는 것, 이윤의 절대량이 늘어나는 것을 일종의 위안의 근거로 삼았지만 이 위안의 근거도 단순한 판에 박힌 문구와 가능성들에 기초한 것이다.

이윤량이 두 요인 즉 첫째로는 이윤율, 둘째로는 이 이윤율로 적용되는 자본의 양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윤율이 동시에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윤량이 늘어날 수 있

다는 것은 위에서 이야기된 자명한 사실을 말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조금도 전진에 도움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이윤량이 늘어나지 않아도 자본이 늘어나며 또 이윤량이 줄어드는 데도 자본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00의 25%는 25이며 400의 5%는 20에 지나지 않는다.³⁵⁾ 그러나 이윤율을 떨어지게 하는 똑같은 원인들이 축적을 즉 추가자본의 형성을 촉진한다면 그리고 개개 추가자본이 추가노동을 가동 시키며 추가잉여가치를 생산한다면 또 한편으로 이윤율이 단순히 떨어지는 것이 불변자본, 따라서 이전의 총자본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면 이 전체 과정은 신비로운 것으로 되지 않는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이윤량이 늘어나는 가능성을 없애버리기 위하여 어떻게 일부

- 35) “우리는 또한 농업에 투자되는 자본이 축적되고 임금이 올라 자본의 이윤율이 떨어지더라도 이윤 총액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매년 100,000파운드 스텔링의 축적이 되풀이될 때마다 이윤율은 20%에서 19, 18, 17%로 떨어진다고 즉 이윤율이 끊임없이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연달아 투자하는 그 자본소유자들이 얻는 이윤 총액은 더욱더 늘어나며 또 자본이 100,000파운드 스텔링일 때보다 200,000파운드 스텔링일 때에는 더 커질 것이며 자본이 300,000파운드 스텔링일 때에는 그보다 더 커질 것이며 그리하여 이윤율은 계속 떨어지지만 자본이 늘어날 때마다 이윤 총액은 늘어난다고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누진은 일정 기간에만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200,000파운드 스텔링의 19%는 100,000파운드 스텔링의 20%보다 많으며 300,000파운드 스텔링의 18%는 또 200,000파운드 스텔링의 19%보다 많다. 그러나 자본이 아주 거액으로 축적되고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후에 더 축적하더라도 이윤 총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컨대 축적이 1,000,000파운드 스텔링에 이르고 이윤율이 7%가 된다고 하면 이윤 총액은 70,000파운드 스텔링이 될 것이다. 이제 1,000,000파운드 스텔링에 100,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이 더 추가되고 이윤율이 6%로 떨어진다면 자본 총액은 1,000,000파운드 스텔링에서 1,100,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어날 것이지만 자본소유자들은 다만 66,000파운드 스텔링을 즉 4,000파운드 스텔링만큼 적게 얻을 것이다”(리카아도, 『정치경제학원리』, 저작집, 맥켈로크 편, 1852년, 제6장, 68~69페이지).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윤율이 7에서 6으로, 즉 $14\frac{2}{7}\%$ 만큼 떨어지는데 자본은 1,000,000에서 1,100,000으로, 즉 10%만큼 늘어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⁴⁶⁾

러 잘못된 계산에 매달리는가 하는 것은 후에 보게 될 것이다.⁴⁷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일반적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낳는 똑같은 원인들은 자본의 축적을 다그치며 따라서 자본이 차지하는 잉여노동(잉여가치, 이윤)의 절대적 크기 또는 총량이 늘어나게 한다. 경쟁에서는, 따라서 경쟁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모든 것이 거꾸로 나타나듯이 이 법칙——나는 겉보기에 서로 모순되는 것 같은 두 가지 현상의 이러한 내적이며 필연적인 연관을 두고 말한다——도 거꾸로 나타난다. 위에서 든 비례에서 큰 자본을 가지고 있는 자본가가, 겉으로 보기에 높은 이윤을 얻는 것 같은 작은 자본가보다 많은 이윤량을 얻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리고 또 경쟁을 아주 겉으로만 살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컨대 공황시기와 같이 어떤 사정에서 보다 큰 자본가가 시장에서 자리를 독차지하고 작은 자본가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경우에 그는 이것을 실제로 이용한다. 즉 그는 비교적 작은 자본가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자기의 이윤율을 일부러 끌어내린다. 특히 상인자본——이에 대하여는 후에 자세히 말할 것이다——도 이윤이 떨어진 것이 기업을 확대한, 따라서 자본을 늘인 결과라는 현상을 보여준다. 잘못 이해된 이 현상에 대한 진정한 과학적 해명은 후에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피상적인 견해는 개별적 기업부문들에서 그 부문들이 자유경쟁체제에 종속되어 있는가 독점체제에 종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얻는 이윤율들을 비교하는 데서도 나온다. 경쟁하는 사람들의 머리속에 못박힌 천박하기 그지없는 표상을 우리의 로셔에게서 보게 되는데 즉 이윤율이 떨어지는 이것은 더 현명하고 더 인도적이라는 것이다.⁴⁸ 여기에서는 이윤율이 줄어드는 것은 자본이 늘어나고 이와 결부하여 자본가들이 이윤율이 작아지는 경우에도 자기들의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이윤량은 커질 것이라고 타산하는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은(A. 스미드의 경우를 제쳐놓고 하는 말인데 이에 대해서는 후에 이야기하려 한다.⁴⁹) 일반적 이윤율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또 가격은 사실상 상품의 실제적 가치에다 많건적건 자의적인 이윤부분을 덧붙인 것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설익은 표상에 기초한 것이다. 이러한 표상은 그야말로 설익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경쟁에서 나타나는

거꾸로 된 모습으로 하여 필연적으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생산력의 발전으로 하여 이윤율이 떨어지는 데 따라 동시에 이윤량이 늘어난다는 법칙은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데 따라 동시에 그 상품들에 들어 있으며 그 상품들이 팔림으로써 실현되는 이윤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에서도 표현된다.

생산력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자본구성이 높아지면 더욱더 많은 양의 생산수단을 더욱더 적은 양의 노동으로 가동시키게 되므로 총생산물의 각 부분, 상품의 각 단위 또는 생산된 총상품의 측정단위로 되는 일정한 각 상품량은 더 적은 산 노동을 빨아들이며 그리고 또 거기에는 적용된 고장자본의 마멸분과 소비된 원료와 보조자재로서의 대상화된 노동이 더 적게 들어 있다. 따라서 상품의 각 단위에는 생산수단에 대상화된 노동과 생산하는 동안에 새로 덧붙여진 노동을 합한 양이 더 적게 들어 있다. 하나하나의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의 상품에 들어 있는 이윤량은 절대적 또는 상대적 잉여가치의 율이 늘어나며 늘어날 수 있다. 그 이윤량에는 새로 덧붙여진 노동이 더 적게 들어 있으나 그 노동 가운데서 부지불부분이 지불부분에 비하여 늘어난다. 그러나 일정한 한계내에서만 그렇게 된다. 생산이 발전하면서 하나하나의 상품에 새로 덧붙여진 산 노동의 총량이 매우 빨리 절대적으로 줄어드는 데 따라 그 상품에 들어 있는 부지불노동의 양도 상대적으로 즉 지불부분에 비하여는 아무리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는 줄어들 것이다. 하나하나의 상품에 해당하는 이윤량은 잉여가치율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이 이윤량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하여서만 천천히 줄어든다. 즉 불변자본의 요소들이 값싸지는 것과 그 밖에 이 책, 제1편에서 든 사정들——잉여가치율이 의연 같은 경우와 심지어 떨어지는 경우에도 이윤율을 끌어올리는 사정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

모두 합쳐서 자본의 총생산물을 이루는 개별적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주어진 노동량이 더 많은 상품량에 실현되며 따라서 개개 상품에는 전보다 적은 노동이 들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따

름이다. 원료 등 불변자본의 한 부분의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개별적 경우들(예컨대 노동생산력으로 하여 불변자본이나 가변자본의 모든 요소들의 값이 골고루 싸지는 경우)을 제쳐 놓으면 이윤율은 잉여가치율이 오름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것이다. 그것은 첫째로 새로 덧붙여진 노동의 더 적은 총량 가운데서 더 늘어난 부지불부분까지도 이전의 비교적 더 많은 총량 가운데서의 더 적은 부지불부분보다 적기 때문이며 둘째로 개별적 상품에서 자본의 구성이 더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새로 덧붙여진 노동을 표시하는 그 상품의 가치부분이 원료와 보조자재 그리고 고정자본의 마멸분을 표시하는 가치부분에 비하여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별적 상품의 가격을 이루는 서로 다른 부분들의 비율에서 일어나는 이 변동——새로 덧붙여진 산 노동을 표시하는 가격부분이 줄어 들고 전에 대상화된 노동을 표시하는 가격부분이 늘어나는 것——은 개별적 상품의 가격에서 가변자본이 불변자본에 비하여 줄어드는 것을 표현하는 형태이다. 가변자본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예컨대 100이라는 주어진 크기의 자본에 있어서 절대적이듯이 재생산되는 자본의 해당한 부분으로서의 개별적인 각 상품에 있어서도 절대적이다. 그렇지만 이윤율은 개별적 상품의 가격요소들에 대해서만 계산하면 실지와는 달리 표시될 것이다. 그것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하여 그렇게 된다.

{이윤율은 적용한 총자본에 대해서 계산되지만 일정한 기간, 실제로는 한 해를 두고 계산된다. 한 해 동안에 생산되어 실현된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총자본에 대하여 백분율로 계산한 비율이 이윤율이다. 따라서 이 이윤율은 한 해가 아니라 해당한 자본의 회전기간을 계산의 기초로 하는 이윤율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 이 자본이 비로 한 해 한 번 회전하는 경우에만 두 이윤율은 일치한다.

한편 또 한 해 동안에 얻은 이윤은 바로 그 해에 생산되어 팔린 상품들에 대한 이윤들의 합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이윤을 상품들의 생산비에 대하여 계산하면 이윤율은 p/k 인데 여기에서 p 는 한 해 동안에 실현된 이윤이며 k 는 바로 그 기간에 생산되어 팔린 상품들의 생산비의 합계이다. 이 이윤율 p/k 가 실제적 이윤율 p/C 즉 이윤량을 총자본으로 나눈 것과 일치할 수 있는 것은 $k=C$ 인 경우 즉 자본이 정확히 한 해

한 번 회전하는 경우만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한 산업자본의 서로 다른 세 개 상태를 들어보자.

I. 8,0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은 한 해에 5,000개의 상품을 생산하여 한 개 30실링씩에 팔며 따라서 한 해 회전액은 7,500파운드 스텔링이다. 이 자본은 개개 상품에서 10실링의 이윤을 얻으며 한 해에 2,500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을 얻는다. 따라서 개개 상품에는 20실링의 선대한 자본과 10실링의 이윤이 들어 있으며 따라서 이윤율은 상품 한 개당 $10/20=50\%$ 이다. 7,500파운드 스텔링의 회전액에는 5,000파운드 스텔링의 선대한 자본과 2,500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이 해당된다. 매 회전액에 대한 이윤을 p/k 는 역시 50%이다. 그런데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하면 이윤율 $p/C=2,500/8,000=31\frac{1}{4}\%$ 이다.

II. 자본이 10,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어난다고 하자. 노동생산력이 늘어난 결과에 이 자본은 한 해에 10,000개의 상품을 한 개에 20실링씩의 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하자. 이 자본이 상품을 한 개당 4실링의 이윤을 붙여 즉 24실링으로 판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한 해 생산물의 가격은 12,000파운드 스텔링인데 그 가운데서 10,000파운드 스텔링은 선대한 자본이며 2,000파운드 스텔링은 이윤이다. p/k 는 한 개당 $4/20$ 이며 한 해 회전액에 대해서는 $2,000/10,000$, 즉 두 번 다 20%이다. 총자본이 생산비 총액과 같으므로 p/C 즉 실제적 이윤율도 이번에는 20%이다.

III. 자본은 노동생산력이 끊임없이 늘어나는 조건에서 15,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어나고 이제는 한 해에 30,000개의 상품을 한 개에 13실링씩의 생산비로 생산하는데 이 상품을 한 개에 2실링의 이윤을 붙여 즉 15실링으로 판다고 하자. 따라서 한 해 회전액은 $15\text{실링} \times 30,000 = 22,500$ 파운드 스텔링인데 그 가운데서 19,500파운드 스텔링은 선대한 자본이며 3,000파운드 스텔링은 이윤이다. 따라서 $p/k=2/13=3,000/19,500=15\frac{5}{13}\%$ 이다. 그런데 $p/C=3,000/15,000=20\%$ 이다.

그리하여 보드시피 회전한 자본가치가 총자본과 같은 II의 경우에만 이윤율은 상품 한 개에 대해서나 회전액에 대해서나 총자본에 대해서 계산한 이윤율과 똑같다. 회전액이 총자본보다 작은 I의 경우에는 상품의 생산비에 대해서 계산한 이윤율은 더 높으며 총자본이 회전액보다

작은 Ⅲ의 경우에는 그것은 총자본에 대해서 계산한 실제적 이윤율보다 낮다. 이것은 이러한 모든 경우에 다 들어맞는다.

산업실천에서는 회전을 보통 부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 실현된 상품 가격의 총액이 적용된 총자본의 총액에 이를 때에 자본이 한 번 회전하였다고 본다. 그러나 자본은 실현된 상품의 생산비 총액이 총자본의 총액과 같게 될 때에만 완전히 회전을 한 번 끝낼 수 있다. —F. E.}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개별적 상품 또는 일정한 기간에 생산된 상품생산물을 그 자체로서 따로 떼어내어 단순한 상품으로서 볼 것이 아니라 선대된 자본의 생산물로서 그리고 이 상품들을 생산하는 총자본과의 관계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윤율은 생산되어 실현된 잉여가치의 양과 상품들에서 다시 나타나는 소비된 자본부분과의 비율에서뿐만 아니라 이 자본부분에 다 소비되지는 않았으나 적용되고 생산에서 계속 쓰이는 자본부분을 보탠 것과의 비율에서도 표현되지만 그러나 이윤량은 상품들 자체에 들어 있으며 그리고 상품들이 팔려 실현되어야 할 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양과만 같을 수 있다.

산업에서 노동의 생산성이 늘면 개별적 상품의 가격은 떨어진다. 개별적 상품에는 지불노동이나 부지불노동이나 할 것 없이 적은 노동이 들어 있다. 똑같은 노동이 예컨대 세 곱의 생산물을 생산한다고 하자. 그 경우에는 개별적 상품에는 2/3만큼 적은 노동이 들어간다. 그런데 이윤은 개별적 상품에 들어 있는 이 노동량의 한 부분을 이룰 수 있을 따름이므로 개별적 상품에 해당하는 이윤량은 줄어들지 않을 수 없으며 어느 한계 안에서는 잉여가치율이 올라가더라도 그렇게 된다. 자본이 착취정도가 같은 경우에 전과 똑같은 수만큼 노동자들을 쓴다면 총생산물에 해당하는 이윤량은 어떤 경우에도 맨 처음의 이윤량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더 적은 노동자들을 쓰더라도 착취정도가 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적 생산물에 해당하는 이윤량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이 생산물의 수가 늘기 때문이다. 이윤량은 의연 똑같으며 그것이 상품 총량에 달리 나누어질 따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

로 덧붙여진 노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량이 노동자들과 자본가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것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윤량은 똑같은 노동량이 적용되는 조건에서는 부지불 잉여노동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또는 노동의 착취정도가 의연 같은 조건에서는 노동자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만 또는 이 두 가지 것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에만 늘어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그러나 전제에 따라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하여 늘어나고 적용된 총자본의 크기가 늘어난다고 보는 경우——에 하나하나의 상품에는 더 적은 이윤량이 들어 있고 이윤율은 하나하나의 상품에 대하여 계산하더라도 떨어지며, 주어진 양의 추가적 노동이 더 많은 상품량으로 표시되며, 개별적 상품의 가격은 떨어진다. 추상적으로 보면 노동생산력이 늘어나 개별적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따라서 이 값싸진 상품들의 수가 동시에 늘어나는 경우에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의연 똑같을 수 있다. 즉 예컨대 생산력이 늘어 그 영향이 상품들의 모든 구성부분들에 골고루 동시에 미치며 그리하여 상품들의 총가격이 노동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떨어지며 한편 또 상품가격의 서로 다른 구성부분들의 호상비율이 의연 똑같은 경우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윤율은 불변자본, 특히 고정자본의 요소들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잉여가치율이 오르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면 오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윤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떨어진다. 그러나 개별적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만으로는 이윤율의 변동에 대한 결론을 결코 내릴 수 없다. 모든 것은 그 상품들의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자본의 총액이 얼마나 큰가 하는 데 귀결된다. 예컨대 한 엘레의 천의 가격이 3실링에서 $1\frac{1}{3}$ 실링으로 떨어진다고 하자. 한 엘레의 천의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는 실 등 불변자본분으로 $1\frac{1}{3}$ 실링, 임금분으로 $2\frac{2}{3}$ 실링, 이윤분으로 $2\frac{2}{3}$ 실링이 들어 있었는데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는 불변자본분으로 1실링, 임금분으로 $1\frac{1}{3}$ 실링, 이윤분으로 $1\frac{1}{3}$ 실링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더라도 이윤율이 의연 똑같은지 어떤지는 아직 모른다. 이것은 선대된 총자본이 늘었는가, 늘었으면 얼마나 늘었으며 그 총자본이 주어진 기간에 얼마나 더 많은 엘레의 천을 생산하게 되었는가에 달려 있다.

노동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경우에 개별적 상품이나 주어진 상품량의 가격이 떨어지고 상품수는 늘어나며 개별적 상품에 해당하는 이윤량과 주어진 상품 총량에 해당하는 이윤율은 떨어지지만 상품 총량에 해당하는 이윤량은 늘어난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본성에서 나오는 현상은 겉으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즉 개별적 상품에 해당하는 이윤량이 떨어지고 그 가격이 떨어지며 사회의 총자본이나 개별적 자본가가 생산하는 상품들의 늘어난 총수에 해당하는 이윤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자본가가 선의에서 개별적 상품에 더 적은 이윤을 붙이지만 더 많은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것을 보상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견해는 양도이윤(profit upon alienation)⁵⁰이라는 표상에 기초한 것인데 이 표상은 이번에는 또 상인자본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다.

『자본론』 제1부의 제4편과 제7편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노동생산력이 늘어나는 데 따라 상품량이 늘어나고 개별적 상품들(이 상품들이 노동력의 가격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에서)이 값싸지는 것은 그 자체로는 개별적 상품들에서 그 가격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불노동과 부지불노동의 비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경쟁에서는 모든 것이 그릇되게 즉 거꾸로 나타나므로 개별적 자본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즉 1) 그는 개별적 상품의 가격을 낮추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자기의 이윤을 낮추지만 그가 파는 상품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윤을 얻는다. 2) 그는 개별적 상품의 가격을 확정하고 곱하기에 의하여 총생산물의 가격을 규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맨 처음의 과정은 나누기의 과정이며 (『자본론』 제1부, 제10장, 281페이지*를 보라), 곱하기는 그 나누기를 전제로 하는 이차적인 것으로서만 옳은 것이다. 속류경제학자가 하는 짓이란 사실상 경쟁에 사로잡힌 자본가들의 괴이한 표상들을 그럴 듯하게 더 이론적이고 보편적인 말로 옮겨 놓으며 이 표상들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것밖에 없다.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값싸진 상품들의 늘어난 양에 해당하게 이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상 이윤량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윤율이 떨어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79~380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어지는 법칙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이윤률이 떨어지는 것이 가격이 오르는 것과 어느 정도까지 일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은 전에(『자본론』, 제1부, 280~281페이지*에서) 상대적 잉여가치와 관련하여 논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할 것이 아니다. 개량은 되었으나,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생산 방식을 적용하는 자본가는 시장가격 이하로 그러나 그의 개별적 생산가격 이상으로 판다. 그리하여 경쟁에 의하여 균등화될 때까지 그의 이윤율은 오른다. 균등화되어가는 기간에는 자본 지출을 늘일 필요성이 생긴다. 이렇게 자본 지출이 늘어나는 정도에 따라 자본가는 전부터 사용해온 노동자수의 한 부분, 아니 아마 그들 전부를 또는 심지어 전보다 더 많은 노동자수를 새로운 조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똑같거나 더 많은 이윤량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79~380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제 14 장 반대로 작용하는 원인들

이전의 모든 시기에 비하여 다만 최근 30년 동안에 이룩된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엄청난 발전을 살펴 본다면, 특히 고유한 의미의 기계뿐 아니라 사회적 생산과정의 총체에 들어가는 엄청난 양의 고정자본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제까지 경제학자들이 부닥쳐온 곤란 즉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곤란 대신에 그와 반대되는 곤란 즉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어째서 더 심하거나 더 빠르지 않은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곤란이 나선다. 일반적 법칙의 작용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그리고 이 법칙에다 다만 경향이라는 성격을 붙이는——그래서 우리는 일반적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떨어지는 경향이라고도 말하였다——반대로 작용하는 영향들이 역할을 놀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원인들 가운데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제1절 노동의 착취정도가 높아지는 것

노동의 착취정도, 잉여노동과 잉여가치의 취득은 특히 노동일의 연장과 노동의 강화에 의하여 높아진다. 이 두 가지 점은 「자본론」 제1부에서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를 논할 때에 상세히 설명하였다. 노동을 강화하는 요인들은 많은데 그 가운데는 예컨대 한 명의 노동자가 더 많은 수량의 기계를 지켜보아야 하는 경우와 같이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하여 늘어나고 따라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이 있다. 이 경우에는——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에 복무하는 대부분의 방법의 경우와 같이——잉여가치율을 높이게 하는 똑같은 원인들로 하여 주어진 크기의 적용된 총자본에 해당하는 잉여가치량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예컨대 기계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과 같은, 노동을 강화하는 다른 요인들도 있는데 기계속도가 빨라지면 똑같은 시간에 더 많은 원료를 소비하지만 고정자본을 놓고 말하면 기계는 더 빨리 마멸되지만 기계를 가동시키는 노동의 가격에 대한 기계가치의 비율은 결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특히 근대산업의 발명물인 노동일의 연장은 적용되는 노동력에 의하여 가동되는 불변자본에 대한 그 노동력의 비율을 본질적으로 달라지게 하지 않으면서 차지하는 잉여노동의 양을 늘어나게 하며 사실상 오히려 불변자본을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한다. 그 밖에 이미 논증한 바와 같이——그런데 바로 여기에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의 본래의 비밀이 있다——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방법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즉 한편으로는 주어진 노동량 가운데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잉여가치로 전화시키며 또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선대된 자본에 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노동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의 착취정도를 높일 수 있게 하는 똑같은 원인들로 하여 똑같은 총자본으로는 이전만큼 노동을 착취하지 못한다. 이 상반되는 경향들로 하여 잉여가치율이 높아지는 동시에 주어진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량이 줄어들며 따라서 이윤율이 떨어진다. 여기에서는 또한 여성노동과 아동노동의 대량적 채용에 대해서도 언급해야 하겠는데 그것은 온 가족이 받는 임금 총액이 늘어난다 하더라도——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그들은 이전보다 많은 양의 잉여노동을 자본에 제공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농업에서와 같이 적용되는 자본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으면서 단순히 생산방법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을 다그치게 하는 모든 것은 이상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 이 경우에는 가본자본을 사용하는 노동력의 지표로 보는 한에서 적용되는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하여 늘어나지는 않지만 생산물량은 적용되는 노동력에 비하여 늘어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된다. 즉 노동생산력이(노동생산물이 노동자들의 소비로 들어가진 불변자본의 요소들로 되건 매한가지다) 교통상의 장애라거나 자의적인 제한 또는 시간이 감에 따라 귀찮게 되는 제한, 일반적으로 온갖 종류의 질곡에서 해방되면서도 그 때문에 처음에는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이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이다.

발명 등이 일반화되기 전에 그것을 이용하는 자본가들에게서는 때로는 이 생산부문에서 때로는 저 생산부문에서 늘 되풀이되면서 일시 잉여가치가 일반적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이것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그러나 결국에는 이윤율을 끊임없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들의 하나로 되는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하여는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어진 크기의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은 두 인수의 곱 즉 잉여가치율에 주어진 그 율로 사용되는 노동자수를 곱한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잉여가치율이 주어진 경우에는 노동자수에 달렸고 노동자수가 주어진 경우에는 잉여가치율에 달렸으며 따라서 일반적으로 가변자본의 절대적 크기와 잉여가치율의 복합비율에 달렸다. 그런데 이미 보여준 바와 같이 상대적 잉여가치율을 높이는 똑같은 원인들로 하여 적용되는 노동력의 양은 평균해서 낮아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은 이상반되는 움직임 사이의 일정한 비율에 의존하며 그리고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특히 노동일의 연장으로 하여 생기는 절대적 잉여가치율이 높아짐으로써 약화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윤율을 연구하는 데서 일반적으로 알게 된 것은 적용되는 총자본의 양이 늘어나는 탓으로 이윤율은 떨어지지만 이윤량은 늘어난다는 것이다. 사회의 총가변자본을 놓고 보면 그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는 생산되는 이윤과 같다. 잉여가치의 절대량과 함께 그 율도 늘었다. 앞에 든 것이 늘어난 것은 사회가 적용하는 노동력의 양이 늘었기 때문이며 뒤에 든 것이 늘어난 것은 이 노동의 착취정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어진 크기, 예컨대 100의 자본으로 말하면 잉여가치량은 평균해서 줄어드는데 잉여가치율은 늘어날 수 있다. 그것은 잉여가치율은 가변자본부분의 가치가 불어나는 비율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반대로 잉여가치량은 가변자본이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율은 특히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불변자본이 전혀 늘지 않거나 또는 늘어난다 해도 가변자본과 같은 비례로는 늘지 않는 사정에서도 오르므로 잉여가치율이 오르는 것은 잉여가치량, 따라서 이윤율도 규정하는 한 개 요인이다. 이 요인으로 하여 일반적 법칙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요인으로 하여 일반적 법칙은 하나의 경향으로서 즉 절대적 관철이 반대로 작용하는 사정들로 하여 억제되고 완만해지며 약화되는 그러한 법칙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나 잉여가치율을 올리는 (노동시간의 연장까지도 대공업의 결과이다) 똑같은 원인들은 주어진 자본에 의하여 적용되는 노동력의 양을 줄어들게 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똑같은 원인들이 이윤율을 줄어들게 하고 또 이 줄어드는 과정을 완만하게 하는 경향을 가진다. 한 명의 노동자가 겨우 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합리적으로 일한다면 두 명 대신에 세 명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이 한 명은 이전에 두 명이 제공한 양의 잉여노동을 제공할 것이며 그러한 한에서는 잉여가치율은 오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세 명이 제공한 만큼은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하여 잉여가치량은 줄어든다. 그러나 잉여가치량이 줄어드는 것은 잉여가치율이 오르는 것으로 하여 보상되거나 제한된다. 노동인구 전체가 잉여가치율이 오른 조건에서 일한다면 그 인구는 의연 같다고 하더라도 잉여가치량은 늘어난다.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이것이 총자본의 크기에 비하여 사용되는 노동자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과 결부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잉여가치율이 오르는 것으로 하여 완화되거나 억제된다.

다음 논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할 것은 자본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 잉여가치량은 줄어든더라도 잉여가치율은 오를 수 있으며 잉여가치율은 떨어지더라도 잉여가치량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잉여가치량은 잉여가치율에다 노동자수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나 잉여가치율은 결코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가변자본에 대하여, 사실상 오직 한 노동일에 대하여 계산된다. 그런데 자본가치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 이윤율은 잉여가치량이 역시 늘거나 줄지 않고서는 결코 오르거나 떨어질 수 없다.

제2절 임금의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떨어지는 것

이 사정은 여기에서 경험적으로만 들어두는데 그것은 실제로 여기에서 들어야 할 다른 많은 사정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정이 자본의 일반적 분석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 책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경쟁의 서술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사정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억제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이다.

제3절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값이 싸지는 것

잉여가치율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에 또는 잉여가치율과는 관계없이 이윤율이 오르는 원인들에 관하여 이 책 제1편에서 말한 것은 모두 이 문제와 관계된다. 따라서 총자본을 놓고 보면 불변자본의 가치가 그 물량과 똑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그러하다. 예컨대 구라파의 개별적 방적공이 근대적 공장에서 가공하는 목화량은 구라파의 한 명의 방적공이 전에 물레로 가공하던 양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나 가공되는 목화의 가치는 그 양이 늘어난 것과 똑같은 비율로 늘지는 않았다. 기계와 그 밖의 고정자본도 마찬가지다. 간단히 말하면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의 양을 늘어나게 하는 똑같은 발전은 노동생산력이 오른 탓으로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가치를 줄어들게 하며 따라서 불변자본의 가치가 끊임없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고정자본의 물량 즉 똑같은 양의 노동력에 의하여 가동되는 생산수단의 물량과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는 못하게 한다. 개별적 경우에는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가치가 의연 같거나 심지어는 떨어지는데 그 요소들의 양은 늘어나는 일까지도 있을 수 있다.

공업의 발전에 따라 이미 있는 자본(즉 그 소재적 요소들)의 가치가 감소되는 것은 방금 말한 것과 관련된다. 이 가치감소도 그것이 비록 사정에 따라서는 이윤을 낳는 자본의 양을 줄임으로써 이윤량을 줄일 수 있지만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끊임없이 작용하는 원인들

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다시 보게 되는 것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낳는 똑같은 원인들이 또 이 경향의 실현을 억제한다는 것이다.

제4절 상대적 과잉인구

상대적 과잉인구가 생기는 것은 이윤율이 줄어드는 데서 표현되는 노동생산력의 발전과 떼어 수 없는 것이며 또 그 발전에 의하여 촉진된다. 상대적 과잉인구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한 나라일수록 더 눈에 띄게 된다. 상대적 과잉인구는 또 한편으로는 많은 생산부문들에서 노동이 많건적건 불완전하게 자본에 종속되는 상태가 계속되며 그리고 그것이 첫눈에 일반적 발전상태에 어울리기보다 더 오래 계속되게 되는 원인이다. 그러한 종속상태는 시장에 있거나 또는 해고된 임금노동자가 값싸며 또 그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결과이며 또한 일부 생산부문들에서 그 부문들의 성질에 따라 손노동이 기계노동으로 전화되는 데 더 완강히 반항하는 결과이다. 한편 또 새로운 생산부문 특히 사치품을 생산하는 생산부문은 흔히 다른 생산부문들에서 불변자본이 우세한 것으로 하여 생기는 바로 그 상대적 과잉인구를 바탕으로 하여 창설되는데 이 생산부문은 산 노동이라는 요소의 우세에 의거하며 점차적으로만 다른 생산부문들이 걸어온 똑같은 길을 걷는다. 두 경우에 다 가변자본이 총자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임금은 평균수준 이하이며 그리하여 이 생산부문들에서는 잉여가치율도 잉여가치량도 비상히 높다. 그런데 일반적 이윤율은 개별적 생산부문들의 이윤율이 균등화됨으로써 형성되므로 여기에서도 또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가져오는 똑같은 원인이 이 경향에 대하여 그 영향을 많건적건 마비시키는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제5절 대외무역

대외무역에 의하여 부분적으로는 불변자본의 요소들과 부분적으로는

가변자본이 전환되는 생활필수품의 값이 싸지는 한에서 대외무역은 잉여가치율을 높이고 불변자본의 가치를 낮춤으로써 이윤율을 올리는 작용을 한다. 대외무역은 생산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일반적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작용한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은 한편으로는 축적을 촉진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불변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줄어들게 하며 따라서 이윤율이 떨어지게도 한다. 또한 대외무역의 확장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유년기에는 이 생산양식의 기초였지만 이 생산양식이 발전함에 따라 이 생산양식의 내적 필연성으로 하여, 끊임없이 확대되는 시장에 대한 이 생산양식의 요구로 하여 이 생산양식 자체의 산물로 되었다. 여기에서 또다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중성을 띤 영향을 보게 된다 (리카아도는 대외무역의 이 측면을 완전히 놓쳐버렸다⁵¹).

또 하나의 문제는 그 특수성으로 하여 본래 우리의 연구대상 밖에 있는 것이지만 대외무역, 특히 식민지무역에 투하된 자본이 얻는 더 높은 이윤율로 하여 일반적 이윤율이 올라가는가 하는 것이다.

대외무역에 투하된 자본들이 더 높은 이윤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첫째로 대외무역에서는 생산조건들이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나라들에서 생산되는 상품들과 경쟁하게 되며 그리하여 발전된 나라는 자기의 상품들을 경쟁하는 나라들보다는 값싸게 판다 하더라도 그 상품들의 가치 이상으로 팔기 때문이다. 발전된 나라의 노동이 대외무역에서 보다 높은 비중을 가진 노동으로서 평가되는 한에서는 이윤율이 오르는데 그것은 질적으로 더 높은 노동으로서 댓가를 받지 않는 노동이 질적으로 더 높은 노동으로서 팔리기 때문이다. 똑같은 관계는 상품을 내보내는 나라에서도 생기고 상품을 들여오는 나라에서도 생길 수 있다. 즉 이 나라는 받는 것보다 더 많은 대상화된 노동을 현물로 주는데 그러면서도 여기에서 그 나라 자체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값싸게 상품을 받는다. 이것은 새로운 발명이 일반화되기에 앞서 그것을 이용하는 공장주가 자기의 경쟁자들보다 더 값싸게 팔면서도 자기 상품의 개별적 가치 이상으로 파는 것과 즉 그가 적용한 노동의 비교적 높은 생산력을 잉여노동으로 전화시키는 것과 똑같다. 그리하여 그는 초과이윤을 실현한다. 한편 또 식민지 등에 투하된 자본으로 말하면 그 자본이 보다 높은 이윤율을 얻

는 것은 그곳에서는 일반적으로 발전수준이 낮은 것으로 하여 이윤율이 보다 높기 때문이며 또한 노예라거나 날품팔이꾼 등을 사용함으로써 노동의 착취정도도 보다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정한 부문에 투하된 자본들이 본국으로 보내오는 이 비교적 높은 이윤이 본국에서 독점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면 어째서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에 참가하지 말아야 하며 또 어째서 그만큼 일반적 이윤율을 높이지 말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³⁶⁾ 이것은 자본이 투하되는 그러한 부문들이 자유경쟁법칙의 지배를 받는 경우에는 특히 알 수 없다. 그런데 리카아도의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외국에서 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아 얻은 화폐로 거기에서 상품들을 사서 본국으로 돌려보내며 따라서 이 상품들은 국내에서 팔리며 이 때문에 기껏하여 가장 유리한 이 생산분야들에 일시적인 특별한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환상은 화폐형태를 제쳐놓고 보면 곧 깨어진다. 유리한 조건에 있는 나라는 보다 적은 노동과 교환하여 보다 많은 노동을 돌려받는다. 비록 이 차이, 이 초과분은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교환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한 계급이 집어삼키지만 말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식민지나라에서 이윤율이 더 높기 때문에 이윤율이 더 높은 한에서는 식민지나라의 자연조건들이 유리한 경우에 상품가격이 낮으면서도 이윤율이 더 높을 수 있는 것이다. 균등화가 일어나지만 리카아도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이전 수준으로의 균등화는 아니다.

그러나 똑같은 대외무역은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발전시키고 따라서 불변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줄어들게 하며 한편 또 외국과 관련하여 과잉생산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더 나아가서는 또다시 상반되는 작용을 한다.

36) 이 점에서는 A. 스미스가 옳고 리카아도는 옳지 않다. 리카아도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은 이윤이 균등하게 되는 것은 이윤이 일반적으로 오름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나의 의견은 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부문의 이윤은 빨리 일반적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원리』) 저작집, 맥컬록 편(런던, 1852년), 73페이지).

그리하여 대체로 본 바와 같이 일반적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똑같은 원인들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막으며 완만하게 하며 부분적으로는 마비시키는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 이 반대되는 작용은 법칙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법칙을 약화시킨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은 모를 바가 아니지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완만하다는 것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법칙은 경향으로서만 작용하며 법칙의 작용은 일정한 사정 밑에서만 그리고 오랜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만 뚜렷이 나타난다.

그러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이미 여러 번 서술한 두 개 명제를 다시 한 번 되풀이하려고 한다.

첫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함에 따라 상품을 값싸게 하는 똑같은 과정이 또한 상품생산에 적용된 사회적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서 변화를 일으키며 그 결과에 이윤율도 또한 떨어뜨린다. 따라서 개별적 상품의 비용, 또 이 비용 가운데서 기계의 마멸분을 이루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가변자본에 비한 불변자본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비록 반대로 불변자본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느 것이나 다 불변자본의 소재적 요소들의 양이 의연 같거나, 늘어나는 조건에서 이윤율이 오르게 작용하며 즉 더욱더 적은 비례로 적용되는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의 가치가 그만큼 줄어들게 작용한다.

둘째, 개별적 상품들——그 총체가 자본의 생산을 이룬다——에서 그 상품들에 들어 있는 새로 덧붙은 산 노동은 그 상품들에 들어 있는 원료와 그 상품들을 만드는 데 소비된 노동수단에 대하여 더욱더 적은 비용을 차지한다는 사정, 따라서 그 상품들을 생산하는 데는 사회적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이 더 적게 들기 때문에 그 상품들에는 더욱더 적은 양의 새로 덧붙은 산 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다는 사정, 이 사정은 상품에 들어 있는 산 노동이 지불노동과 부지불노동으로 나누어지는 비율과는 관계가 없다. 그와는 반대이다. 상품들에 들어 있는 새로 덧붙은 산 노동의 총량은 줄어든다 하더라도 지불부분에 비하여 부지불부분은 지불부분이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탓으로 늘어난다. 왜냐하

면 개별적 하나하나의 상품에서 새로 덧붙은 산 노동의 총량을 줄어든 채 하는 똑같은 생산양식은 절대적 및 상대적 잉여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경향은 잉여가치율이 늘어나는 경향 따라서 노동의 착취정도가 커지는 경향과 결부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은 임금이 오르기 때문이라고——비록 예외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설명하는 것보다 더 불합리한 것은 없다. 이윤율을 이루는 관계들을 이해함으로써만 통계에 의하여 서로 다른 시기들과 서로 다른 나라들에서의 임금수준을 실지로 분석할 수 있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은 노동이 덜 생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노동이 보다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잉여가치율이 오르는 것과 이윤율이 떨어지는 이 두 가지 것은 노동의 생산성이 늘어나는 것이 자본주의적으로 표현되는 특수한 형태들에 지나지 않는다.

제6절 주식자본의 증가

위에서 든 다섯 가지 점에 또 한 가지를 더 덧붙일 수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더 깊이 들어갈 수 없다. 축적이 다그쳐지면서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전됨에 따라 자본의 한 부분은 이자율은 자본으로서만 계산되며 또 적용된다. 산업자본가는 기업이득을 얻는데 자본을 대부하는 개개 자본가는 이자로 만족한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일반적 이윤율의 높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일반적 이윤율이라고 할 때에는 $\text{이윤} = \text{이자} + \text{온갖 종류의 이윤} + \text{지대}$ 를 두고 말하는 것이며 이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은 일반적 이윤율에 대하여는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다. 그러한 뜻에서가 아니라 자본들이 큰 생산적 기업에 투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본들은 온갖 비용을 빼고나면 많건적건 이자만을, 이른바 배당금만을 가져온다는 뜻에서 한 말이다. 예컨대 철도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그 자본들은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에 참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자본들의 이윤율은 평균이윤율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 자본들이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에 참가한다면 평균이윤율은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이론적으로 문제를 살펴 본다면 그 자본들을 계산에 넣을 수 있으며 그 경우에 그 자본들은 겉으로 보기에 존재하며 자본가들에게 실제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이윤율보다 더 적은 이윤율을 얻는다.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기업에서는 가변자본에 비하여 불변자본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제 15 장 법칙의 내적 모순의 발전

제1절 개론

이 제3부의 제1편에서 본 바와 같이 잉여가치율은 그것이 이윤율로 표현될 때 언제나 실제보다 낮은 것같이 보인다. 이제 본 것처럼 오르는 잉여가치율까지도 떨어지는 이윤율로 표현되는 경향을 가진다. 이윤율은 $c=0$ 인 경우 즉 총자본이 임금으로 지출되는 경우에만 잉여가치율과 같을 것이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이 잉여가치율이 떨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불변자본의 가치와 불변자본을 가동시키는 노동력의 양과의 비율이 의연 같거나 이 노동력의 양이 불변자본의 가치에 비하여 늘어나는 경우만이다.

리카아도는 이윤율을 살펴본다고 하면서도 실은 잉여가치율만을 살펴 보고 있으며 이것도 노동일이 강도와 길이에서 불변의 크기라는 전제 밑에서만 그렇게 하고 있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과 축적이 다그쳐지는 것은 이 두 가지 것이 생산력의 발전을 표현하는 한에서는 똑같은 과정의 서로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축적에 따라 노동이 큰 규모로 집적되고 이에 따라 자본의 구성이 더 높아지는 한에서 축적은 이번에는 이윤율을 더 빨리 떨어뜨린다. 한편 또 이윤율이 떨어지면 자본의 집적이 다그쳐지며 또 비교적 작은 자본가들을 수탈함으로써 그리고 직접적 생산자들에게서 수탈할 것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것까지 수탈함으로써 자본의 집중이 다그쳐진다. 또한 그렇게 됨으로써 이윤율이 떨어짐에 따라 축적율도 떨어지지만 축적은 양적으로 보면 다그쳐진다.

또 한편 총자본의 가치가 늘어나는 원인 이윤율이 자본주의적 생산을 자극하는(자본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유일한 목적

이듯이) 한에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은 새로운 자립적 자본의 형성을 완만하게 하며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발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즉 이윤율이 떨어지면 과잉생산, 투기, 공황, 과잉인구와 함께 과잉자본이 축진된다. 따라서 리카아도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생산양식은 그 자체가 제한을 가져온다는 것을 느끼며 따라서 이 제한이 생기는 것은 생산 때문이 아니라 자연 때문이라고(지대론에서) 한다. 그러나 이윤율이 떨어지는 사실 앞에서의 그들의 공포에서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생산력의 발전에 제한을 가져온다는 느낌인데 이 제한은 부(富) 자체의 생산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독특한 제한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제한성을 띠며 그것이 역사적이며 일시적일 따름이라는 것을 증명하며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결코 부의 생산의 절대적 생산양식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단계에 가서는 부의 가일층의 발전과 충돌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물론 리카아도와 그의 학파는 이자도 들어 있는 산업이윤만을 살펴 보고 있다. 그러나 지대율도——비록 지대의 절대량은 늘고 산업이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도 늘 수 있지만——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리카아도에 앞서 지대의 법칙을 전개한 E. 웨스트⁵²를 보라). 사회적 총자본을 C 로 보고 이자와 지대를 뺀 다음에 남는 산업이윤을 p_1 , 이자를 z 그리고 지대를 r 라고 하면 $m/C = p/C = \frac{p_1 + z + r}{C} = p_1/C + z/C + r/C$ 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하는 데 따라 잉여가치의 총액 m 은 끊임없이 늘어나지만 m/C 도 C 가 m 보다 더 빨리 늘어나기 때문에 역시 끊임없이 줄어든다. 따라서 $m/C = p/C$ 나 p_1/C , z/C , r/C 은 각각 그 자체로 보면 끊임없이 작아지는데 p_1 , z , r 은 각각 그 자체로 보면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또는 p_1 은 z 에 비하여 또는 r 은 p_1 에 비하여 또는 p_1 과 z 에 비하여도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다. 총잉여가치 또는 이윤 $m = p$ 는 늘어나지만 동시에 이윤율 $m/C = p/C$ 는 떨어지는 조건에서 $m = p$ 가 갈라지는 부분들인 p_1 , z , r 의 양적 비율은 총액 m 의 테두리 안에서 임의로 달라지면서도 m 또는 m/C 의 크기

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p_1 , z , r 이 서로 달라지는 것은 m 이 서로 다른 항목들로 달리 나누어지는 데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또 일반적 이윤율인 m/C 이 떨어지더라도 총자본에 대한 개별적 산업이윤의율인 p_1/C , 이자율인 z/C 또는 지대의 비율인 r/C 은 그것들을 서로 비교해 본다면 오를 수 있다. 다만, 이 세 가지 것의 합계가 m/C 이란 조건만은 틀림이 없다. 예컨대 자본구성이 잉여가치율은 100%인 경우에 $50c+50v$ 에서 $75c+25v$ 로 달라질 때 이윤율이 50%에서 25%로 떨어지면 첫째 경우에는 1,000의 자본이 500의 이윤을 가져오며 둘째 경우에는 4,000의 자본이 1,000의 이윤을 가져올 것이다. m 또는 p 는 두 곱으로 되었으나 p_1 은 절반만큼 떨어졌다. 그리고 전에는 50% 가운데서 20은 이윤, 10은 이자, 20은 지대였다면 $p_1/C=20\%$, $z/C=10\%$, $r/C=20\%$ 였다. 이윤율이 50%에서 25%로 떨어진 경우에도 비율이 의연 똑같다면 $p_1/C=10\%$, $z/C=5\%$, $r/C=10\%$ 이다. 그런데 p_1/C 이 8%로 떨어지고 z/C 가 4%로 떨어지면 r/C 은 13%로 오를 것이다. r 의 상대적 크기가 p_1 과 z 에 비하여 오를 것이지만 p_1 은 의연 같을 것이다. 두 개의 전제 밑에서 p_1 , z , r 의 합계는 그것이 네 곱이나 되는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므로 늘어날 것이다. 어쨌든 맨 처음에는 산업이윤(더하기 이자)이 전체 잉여가치를 차지한다는 리카아도의 전제는 역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오히려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한 조건에서는 1) 전체 이윤은 처음에만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서 후에 나누어지며 2) 지대는 이윤을 넘는 초과분으로 된다.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적 기초 위에서 지대는 다시 늘어나는데 이 지대는 이윤(즉 총자본의 생산물로서 본 잉여가치)의 한 부분이지만 생산물 가운데서 자본가가 차지하는 특수한 부분은 아니다.

필요한 생산수단이 있다는 것 즉 넉넉한 자본축적을 전제로 하면 잉여가치의 창조에는 잉여가치율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 따라서 노동의 착취정도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노동인구 이외에는 다른 어떠한 제한도 없으며 또 노동인구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노동의 착취정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제한도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은 본질에 있어서 잉여생산물 또는 생산된 상품 가운데서 부지불노동이 대상화되어 있는 해당

한 부분으로 표시되는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 잉여가치의 생산——그런데 잉여가치의 한 부분이 도로 자본으로 전화되는 것 즉 축적은 이 잉여가치생산의 없어서는 안될 한 부분을 이룬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직접적 목적이며 규정적 동기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을 그것이 실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서 즉 소비나 자본가들을 위한 소비수단의 생산을 직접적 목적으로 삼는 생산으로서 묘사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렇게 묘사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의 완전한 내적 본질에서 나타나는 그 특수한 성격을 아주 보지 못하게 된다.

이 잉여가치를 얻는 것이 직접적 생산과정을 이루는데 이 직접적 생산 과정에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위에서 든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제한도 없다. 짜낼 수 있는 잉여노동량이 상품에 대상화되자 잉여가치는 생산된 것이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이렇게 생산된 것으로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제1막인 직접적 생산과정이 끝났을 뿐이다. 자본은 얼마간의 부지불노동을 빨아들였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데서 나타나는 과정의 발전에 따라 그와 같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은 엄청나게 불어난다. 이제 는 과정의 제2막이 시작된다. 총상품량 즉 총생산물은——불변자본과 가변자본을 보상하는 부분이나 잉여가치를 표시하는 부분이나——팔리지 않으면 안된다. 팔리지 않는다면 또는 일부만 팔린다면 또는 생산가격 이하의 가격으로밖에 팔리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물론 착취당하였지만 그의 착취는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착취로서 실현되지 않거나 일부 밖에 실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리하여 자본가의 자본이 일부 잃어지거나 전부 잃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직접적 착취의 조건들과 그 실현의 조건들은 같은 것이 아니다. 두 가지 조건들은 시간과 장소로 보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앞에 든 조건들은 사회의 생산력에 의해서만 제한되어 있으며 뒤에 든 조건들은 서로 다른 생산부문의 균형성과 사회의 소비력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의 소비력은 절대적 생산력에 의해서나 절대적 소비력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 분배관계에, 기초한 소비력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이 적대적 분배관계가 사회의 절대다수 대중의 소비를 어느 정도 좁은 한계

안에서만 달라지는 최저한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사회의 소비력은 축적하려는 욕망, 큰 규모로 자본을 늘리며 잉여가치를 생산하려는 욕망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이것은 생산방법 자체에서 일어나는 끊임없는 변혁, 이와 끊임없이 결부되어 있는 이미 있는 자본의 가치감소, 전반적 경쟁전 그리고 다만 유지할 목적으로 그리고 몰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개선하고 그 규모를 확대할 필연성, 이러한 것들로 하여 주어지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법칙이다. 그러므로 시장이 끊임없이 넓어지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시장의 연계와 그 연계를 규제하는 조건들은 더욱더 생산자들과는 관계가 없이 자연법칙의 모습을 띠며 더욱더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된다. 내적 모순은 생산의 외부면의 확장에 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내려 한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전하면 할수록 생산력은 더욱더 소비관계가 입각한 좁은 기초와 모순되게 된다. 이러한 모순에 찬 기초 위에서는 자본의 과잉이 늘어나는 인구의 과잉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것이 결합되어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바로 이에 따라 이 잉여가치가 생산되는 조건들과 그것이 실현되는 조건들 사이의 모순이 커지기 때문이다.

일정한 이윤율이 주어지면 이윤량은 늘 선대된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축적은 그 경우에 이 이윤량 가운데서 자본으로 도로 전화되는 부분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윤에서 자본가가 소비하는 소득을 던 것과 같으므로 이윤량의 가치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자본가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상품들 즉 일부는 자본가의 소비로, 그의 소득으로 들어가는 상품들과 일부는 자본가의 불변자본으로 들어가는 상품들이 값싼가 어떻가에도 달려 있다(임금은 이 경우에 주어진 것으로서 전제되어 있다).

노동자가 가동시키며 그 가치를 그의 노동에 의하여 유지하고 생산물로 다시 나타나게 하는 자본량은 노동자가 덧붙이는 가치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자본량이 1,000이고 덧붙인 노동이 100이라면 재생산된 자본은 1,100이다. 자본량이 100이고 덧붙인 노동이 20이라면 재생산된 자본은 120이다. 이윤율은 첫째 경우에는 10%이고 둘째 경우에는 20%이다. 그렇

지만 첫째 경우의 100에서는 둘째 경우의 20에서보다 더 많은 것이 축적될 수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자본의 흐름은 계속 자라나거나(생산력이 높아짐으로써 자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제쳐놓고 본다) 자본의 축적은 이윤율의 높이에 비례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이미 가지고 있는 양에 비례하여 진행된다. 높은 이윤율이 높은 잉여가치율에 기초하는 한에서 노동이 비생산적이다 하더라도 노동일이 아주 긴 경우에는 이윤율이 높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노동생산성은 높지 못하지만 노동자들의 수요가 아주 적으며 따라서 평균임금이 아주 낮기 때문이다. 임금이 낮아지면 노동자들의 기력도 없어질 것이다. 이윤율이 높지만 이 경우에 자본의 축적은 완만하다. 인구는 늘지 않으며 그리고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적다 하더라도 생산물에 드는 노동시간은 크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은 노동자를 적게 착취하기 때문이 아니라 적용되는 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노동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윤율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이윤량이 늘어난다면 자본가는 한 해의 노동생산물의 대부분을 자본이라는 범주로(소비된 자본의 보상분으로서) 차지하며 비교적 적은 부분을 이윤이라는 범주로 차지할 것이다. 여기에서 승려 쉐머스의 다음과 같은 환상⁵³이 나오게 된다. 즉 한 해의 생산물 가운데서 자본가들이 자본으로서 지출하는 양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본가들이 삼키는 이윤은 더욱더 큰데 여기에서 국교회는 그들이 잉여생산물의 큰 부분을 자본화하지 않고 소비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이 승려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 어쨌든 이윤량은 이윤율이 떨어지더라도 지출되는 자본이 커지는 데 따라 늘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자본의 집적을 가져오게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생산조건들이 대량의 자본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자본의 집중을 가져오게 한다. 즉 큰 자본가들이 작은 자본가들을 삼켜버리며 작은 자본가들이 자본을 잃게 된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 또다시 생산자들로부터의 노동조건의 분리로 되는데 작은 자본가들도 그들 자신의 노동이 아직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역시 생산자들이다. 자본가의 노동이란 일반적으로 그의 자본

의 크기에, 즉 그가 자본가로 되는 정도에 반비례한다. 생산자들로부터의 노동조건의 이 분리야말로 자본의 개념을 이루며 그것은 시초축적(『자본론』, 제1부, 제24장)과 함께 시작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는 과정으로서 자본의 축적과 집적에서 나타나며 마침내 여기에서 이미 있는 자본들이 몇몇 사람의 손에 집중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잃는(수탈이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 것으로서 표현된다. 이 과정은 만약 집중시키는 힘과 함께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이 끊임없이 분산시키는 작용을 하지 않는다면 얼마 안가서 자본주의적 생산을 파탄에 이르게 할 것이다.

제2절 생산확대와 가치증식의 충돌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은 이중으로 나타난다. 즉 첫째로는 이미 생산된 생산력의 크기에서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지는 생산조건들의 가치량과 물량에서 그리고 이미 축적된 생산자본의 절대적 크기에서 나타나며, 둘째로는 임금으로 지출되는 자본부분이 총자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 즉 주어진 자본의 재생산과 가치증식, 대량생산에 필요한 산 노동이 상대적으로 작은 데서 나타난다. 이것은 동시에 자본의 집적을 전제로 한다.

적용되는 노동력과 관련하여 생산력의 발전은 또 이중으로 나타난다. 즉 첫째로는 잉여노동이 늘어나는 데서 즉 노동력의 재생산에 드는 필요노동시간이 짧아지는 데서 나타나며, 둘째로는 주어진 자본을 가동시키는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노동력의 양(노동자수)이 줄어드는 데서 나타난다.

이상의 두 가지 움직임은 손을 맞잡고 진행될 뿐 아니라 서로 제약하는 것이며 똑같은 법칙이 표현되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두 움직임은 이윤율에 대하여 반대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윤의 총량은 잉여가치의 총량과 같다. $\text{이윤율} = m/C = \text{잉여가치} / \text{선대된 총자본}$ 이다. 그러나 잉여가치, 그 총액은 첫째로 그 율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둘째로는 이 율로 동시에 적용되는 노동의 양에 의하여 또는 똑같은 것이지만 가변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하나의 요인인 잉여가치율이 오르며 또 한편으로는 다른 요인인 노동자수가(상대적으로 또는 절대적으로) 준다. 생산력의 발전이 적용되는 노동의 지불부분을 줄이는 한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은 잉여가치율을 높임으로써 잉여가치를 늘린다. 그렇지만 생산력의 발전이 주어진 자본에 의하여 적용되는 노동의 총량을 줄이는 한에서는 생산력의 발전은 다른 요인인 노동자수——이 수에 잉여가치율을 곱하여 잉여가치량을 얻는다——를 줄인다. 하루 12시간씩 일하는 두 명의 노동자는 각각 2시간씩 밖에 일하지 않는 24명의 노동자와 똑같은 잉여가치량을 제공할 수 없다. 그 두 명의 노동자가 공기만을 마시고 살아갈 수 있고 따라서 자기자신을 위하여는 전혀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노동의 착취정도를 높임으로써 줄어드는 노동자수를 보상하는 것은 넘을 수 없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보상은 물론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그 현상을 없앨 수는 없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하는 데 따라 이윤율은 떨어지는데 이윤량은 적용되는 자본의 양이 늘어나는 데 따라 늘어난다. 이윤율이 주어져 있으면 자본이 늘어나는 절대량은 주어진 시기의 자본의 크기에 달려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자본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자본이 늘어나는 비율 즉 자본의 증가율은 이윤율에 달려 있다. 생산력의 증대(이것은 또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언제나 이미 있는 자본의 가치감소와 손을 맞잡고 나간다)는 그것이 이윤율을 높임으로써 한 해 생산물의 가치 가운데서 자본으로 도로 전화되는 부분을 늘이는 경우에만 직접 자본의 가치량을 늘일 수 있다. 노동생산력이 문제로 되는 한에서(이 생산력은 직접적으로는 이미 있는 자본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니 말이다) 이윤량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노동생산력이 높아짐으로써 상대적 잉여가치가 늘거나 불변자본의 가치가 주는 경우, 따라서 노동력의 재생산에 들어가거나 불변자본의 요소들로 들어가는 상품들이 값싸지는 경우만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것에는 이미 있는 자본의 가치감소가 들어 있으며 이 두 가지 것은 불변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와 손을 맞잡고 나간다. 이 두 가지 것은 이윤율이 떨어지게 하며 또 그 떨어지는

것을 완만하게 한다. 그리고 또 이윤율이 높아져서 노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한에서는 이윤율이 높아지는 것은 노동인구를 늘어나게 하며 또한 자본을 비로소 자본으로 되게 하는 착취재료를 늘어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노동생산력의 발전은 간접적으로는 이미 있는 자본가치를 늘어나게 하는 데 이바지한다. 그것은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사용가치 즉 똑같은 교환가치를 표시하고 자본의 물질적 실체, 물질적 요소들, 불변자본을 직접 이루며 가변자본을 적어도 간접적으로 이루는 소재적 대상들을 형성하는 사용가치의 양과 다양성을 늘리기 때문이다. 똑같은 자본과 똑같은 노동으로 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는——교환가치는 제쳐놓고 본다——물건들이 더 많이 생산된다. 즉 추가적 노동을 따라서 또 추가적 잉여노동을 빨아들이는 데 쓰이며 그리하여 추가자본을 이루는 데 쓰일 수 있는 물건들이 더 많이 생산된다. 자본이 지휘할 수 있는 노동량은 이 자본의 가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와 보조자재, 기계와 고정자본의 요소들, 생활수단의 양에 즉 자본의 가치는 어떠한 간에 자본을 이루는 모든 것의 양에 달려 있다. 그리하여 적용되는 노동 따라서 또 잉여노동의 양이 늘어나는 한편 재생산되는 자본의 가치도 그리고 이에 새로 덧붙여지는 추가가치도 늘어난다.

그러나 축적과정에 들어 있는 이상의 두 계기는 리카아도가 그렇게 하고 있듯이 조용히 서로 나란히 있는 것으로서만 보아서는 안된다. 그 계기들에는 모순된 경향들과 현상들로 나타나는 하나의 모순이 들어 있다. 상반되는 요인들이 동시에 서로 작용한다.

사회적 총생산물 가운데서 자본으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늘어남으로써 노동인구를 실제로 늘이는 요인들과 동시에 상대적 과잉인구를 만들어내는 요인들이 작용한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동시에 자본의 양이 늘어나며 이미 있는 자본의 가치감소가 이와 손을 맞잡고 나가는데 이 가치감소는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며 자본가치의 축적을 다그치게 한다.

생산력이 발전하는 동시에 자본의 구성이 더 높아지며 불변자본에 비하여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더 줄어든다.

이러한 서로 다른 영향들은 때로는 공간적으로 주로 나란히 나타나며 때로는 시간적으로 주로 서로 뒤따라 나타난다. 상반되는 요인들의 충돌은 주기적으로 공황의 형태를 띤다. 공황은 언제나 이미 쌓인 모순들의 일시적인 폭력적 해결에 지나지 않으며 형클어진 균형을 순간적으로 회복하는 폭력적 폭발에 지나지 않는다.

가장 일반적 형태로 나타나는 모순은 다음과 같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가치와 가치 속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를 제쳐놓고 보면 또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행되는 사회적 관계를 제쳐놓고 보면 생산력을 절대적으로 발전시키는 경향을 가지는데 한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이미 있는 자본가치를 유지하고 그것을 최고도로 증식시키는(즉 이 가치의 증가를 끊임없이 다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성은 이미 있는 자본가치를 이 가치를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삼는다는 데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이것을 이룩하는 방법들에는 이윤율의 감소, 이미 있는 자본의 가치감소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생산력을 희생으로 하는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들어 있다.

이미 있는 자본의 주기적 가치감소——이것은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새 자본의 형성에 의하여 자본가치의 축적을 다그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내재적 수단이다——는 자본의 유통과정과 재생산과정이 진행되는 주어진 관계들을 형클어뜨리며 따라서 생산과정의 갑작스러운 정체와 공황을 동반한다.

생산력의 발전과 손을 맞잡고 일어나는, 불변자본에 비한 가변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노동인구의 증가를 자극하는 동시에 끊임없이 인위적인 과잉인구를 만들어낸다. 자본의 축적은 가치면에서 보면 이윤율이 떨어지는 탓으로 완만하게 되며 그리하여 사용가치의 축적을 다그쳐 나가는 데 이 사용가치의 축적은 이번에는 다시 가치면에서 보면 축적과정을 다그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그에 내재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애쓰지만 그 앞에 이 한계가 새로, 그것도 더 큰 규모로 나서게 하는 수단에 의해서만 그것들을 극복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진짜 한계는 자본 그 자체이다. 즉 이것은 자본과 그 가치의 자체 증식이 출발점이자 종점이며 생산의 동기이자 목적이며 또 생산은 오직 자본을 위한 생산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생산수단이 생산자들의 사회의 생활과정을 끊임없이 펼쳐나가게 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자대중의 수탈과 빈궁화에 입각한 자본가치의 유지와 증식이 오직 그 안에서만 가능한 한계, 이 한계는 자본이 그 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쓰지 않을 수 없는 생산방법들 그리고 생산의 무제한한 증가, 자체 목적으로서의 생산,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무조건적인 발전에 복무하는 생산방법들과 끊임없이 모순에 빠진다. 사회적 생산력의 무제한한 발전이라는 수단은 이미 있는 자본의 가치증식이라는 제한된 목적과 줄곧 충돌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물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그에 알맞는 세계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한 역사적 수단이라면 그것은 동시에 이 생산양식의 그러한 역사적 과업과 이 생산양식에 고유한 사회적 생산관계 사이의 끊임없는 모순이다.

제3절 인구과잉 경우의 자본과잉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과 함께 개별적 자본가의 손에서 노동을 생산적으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최소한 즉 일반적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데도 필요하고 적용되는 노동시간이 상품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며 또 적용되는 노동시간이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노동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그러한 자본의 최소한이 늘어난다. 그리고 동시에 집적도 느는데 그것은 이윤율이 높지 않은 큰 자본이 이윤율이 높은 작은 자본보다 더 빨리 일정한 한계를 넘어 축적되기 때문이다. 이 늘어나는 집적은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또 이윤율을 다시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다량의 흩어져 있는 작은 자본들은 투기, 신용사기, 주식사기 등 모험의 길에 내몰리며 그리하여 이 자본들은 공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른바 자본과잉이란 본질

상 언제나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윤량으로 보충하지 못하는——새로 이루어지는, 갓 자란 결가지 자본은 언제나 그러하다——자본의 과잉 또는 그 자체만으로는 독자적 행동을 할 수 없으며 신용의 형태로 큰 기업부문의 책임자들의 처분에 내맡기는 자본들의 과잉을 말하는 것이다. 이 자본과잉은 상대적 과잉인구를 낳는 똑같은 사정들로 하여 생겨나며 따라서 이 상대적 과잉인구를 보충하는 하나의 현상이다. 비록 이 두 가지 것이 한편에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자본, 다른 편에는 실업한 노동인구라는 서로 맞선 극들에 있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과잉생산은 늘 상품의 과잉생산을 포함하고 있지만 개별적 상품의 과잉생산이 아니라 자본의 과잉생산이란 다른 아닌 자본의 과잉축적이다. 이 과잉축적(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더 아래에서 하게 된다)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전제하기만 하면 된다. 자본의 과잉생산이 어느 때에 가서 절대적인 것으로 될 것인가? 그것도 이 생산영역이나 저 생산영역 또는 몇몇 중요한 생산영역이 아니라 그 범위 전체에서 절대적인, 따라서 모든 생산영역을 다 포괄하는 그러한 과잉생산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을 위한 추가자본이 0일 때에는 자본의 절대적인 과잉생산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자본의 증식 즉 잉여노동을 차지하는 것, 잉여가치, 이윤을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 노동인구에 비하여 늘어나서 이 노동인구가 제공하는 절대적 노동시간을 늘일 수도 없고 상대적 잉여노동시간을 늘일 수도(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며 따라서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없게 되면, 다시 말해서 늘어난 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이 자본이 늘어나기 전만큼 밖에 안 되거나 그보다 적기까지 하다면 자본의 절대적인 과잉생산이 일어난 것일 것이다. 즉 늘어난 자본 $C + \Delta C$ 가 생산하는 이윤이 ΔC 만큼 늘어나기 전의 자본 C 가 생산한 것보다 많지 않거나 적기까지 할 것이다. 두 경우에 다 일반적 이윤율이 크게 그리고 갑자기 떨어질 것이지만 이번에는 생산력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가변자본의 화폐가치가 오른(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데 기인하는 그리고 그에 따라 필요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비율이 줄어든 데 기인하는 자본구성의 변동 때문일 것이다.

실제로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즉 자본의 한 부분은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늘게 되며(왜냐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자체의 가치를 증식하자면 우선 이미 기능을 높고 있는 자본을 그 자리에서 밀어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부분은 전혀 일하지 않거나 절반 밖에 일하지 않는 자본의 압력을 받아 보다 낮은 이윤율로 늘어날 것이다. 이 경우에 추가자본의 한 부분이 낡은 자본을 대신하고 그리하여 이 낡은 자본이 추가자본의 자리를 차지한다 하여도 상관의 없다. 언제나 한편에는 낡은 자본액이 있을 것이며 다른 편에는 추가자본액이 있을 것이다. 이윤율이 떨어짐에 따라 이번에는 이윤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제 밑에서는 적용되는 노동력의 양이 늘 수 없고 잉여가치율이 오를 수 없으며 따라서 또 잉여가치량도 늘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줄어든 이윤량은 늘어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적용되는 자본이 종전의 이윤율로 계속 늘어나고 따라서 이윤량이 의연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윤량은 역시 늘어난 총자본에 대하여 계산될 것이며 이윤율은 다시 떨어질 것이다. 1,000이라는 총자본이 100이라는 이윤을 낳았고 그것이 1,500으로 늘어나 후에도 역시 100이라는 이윤밖에 낳지 않는다면 둘째 경우에 1,000의 자본은 66⅔%의 이윤밖에 낳지 않는다. 종전의 자본의 가치증식은 절대적으로 줄 것이다. 1,000의 자본은 새로운 사정에서는 전에 666⅔%의 자본이 낳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낳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종전의 자본의 이 사실상의 가치감소는 투쟁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며 또 ΔC 의 추가자본은 투쟁없이 자본으로서 기능을 늘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은 명백하다. 이윤율은 자본의 과잉생산에 의한 경쟁으로 하여 떨어지지 않고 반대로 똑같은 사정들로 하여 이윤율이 떨어지고 자본이 과잉생산됨으로써 이제는 경쟁전이 벌어질 것이다. 전부터 기능을 높고 있는 자본가들은 ΔC 가운데서 자기들이 차지하게 될 부분을 자기들의 원래의 자본가치가 감소되지 않도록 그리고 생산영역에서 그 자본이 차지한 자리가 좁아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많건적건 눌러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한때 손실을 보더라도 그 부분을 적용하

여 새로운 침입자들,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경쟁자들이 추가자본을 늘려 두지 않을 수 없게 할 것이다.

△C 가운데서 새로운 자본가들이 차지하게 될 부분은 낡은 자본을 몰아내려고 한 것인데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이루어질 것이다. 즉 낡은 자본의 한 부분을 늘게 하고 낡은 자본으로 하여금 자리를 양보하게 하고 그 자체는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는 추가자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경우에만 그렇게 될 것이다.

자본이 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자체의 가치를 증식시켜야 하는 한에서 낡은 자본의 한 부분은 어떤 사정에서도 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자본이라는 그 속성으로 하여 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어떠한 부분이 바로 이렇게 늘게 되는가 하는 것은 경쟁전이 결정할 것이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동안에는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에서 본 바와 같이 경쟁은 자본가계급이 실제로 형제적 동맹으로서 작용하며 그리하여 자본가들은 각자가 집어넣은 뭉치의 크기에 비례하여 공동으로 얻은 것을 호상간에 나눈다. 그러나 벌써 이윤의 분배가 아니라 손실의 분배가 문제로 되자 각자는 필수룩 자기의 손실분을 적게 하고 남에게 넘겨씌우려고 한다. 손실은 자본가계급 전체에 있어서 피할 수 없다. 그러나 각자가 그것을 얼마나 부담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각자가 그것을 어느 정도로 부담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이제는 권력과 술책의 문제로 되며 경쟁은 이제 적대적 형제들의 투쟁으로 전화한다. 이제는 자본가들 각자의 이해관계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의 대립이 머리를 쳐드는데 이것은 전에 이 이해관계들의 동일성이 경쟁에 의하여 실제로 실현된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러면 어떻게 이 충돌이 가셔지고 자본주의적 생산의 건전한 움직임에 맞는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가? 어떻게 가셔지는가 하는 것은 이미 가셔지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는 충돌의 표현 그 자체 안에 들어 있다. 즉 추가자본 △C의 전부나 적어도 그 한 부분의 가치액만큼 자본이 늘게 되거나 심지어 부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다. 하기는 충돌의 서술 그 자체에서 이미 명백한 바와 같이 이 손실의 분배는 개별적 자본들에 결코 골고루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경쟁전에서

는 특별히 유리한 점이나 이미 차지한 지반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분배가 매우 고르롭지 못하게 그리고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한 자본은 늘게 되고 다른 자본은 없어지며 또 한 자본은 상대적 손실을 볼 따름이거나 한때 가치가 감소될 따름이거나 한다.

그러나 어쨌든 자본이 많건적건 늘게 되고 심지어는 없어짐으로써 균형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자본의 물질적 실체에 미칠 것이다. 즉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인 생산수단의 한 부분은 기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자본으로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을 시작한 기업의 한 부분은 멎을 것이다. 이 면에서 보면 시간은 모든 생산수단(토지를 내놓고)을 가차없이 나쁘게 만들지만 이 경우에 기능이 멎는 결과에 생산수단은 훨씬 더 심히 실제로 파괴될 것이다. 그러나 이 면에서의 주되는 결과는 이 생산수단이 생산수단으로서 활동하지 않게 되며 즉 생산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멎게 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주로 파괴적 작용은 그것도 가장 날카로운 성격의 파괴적 작용은 가치속성을 가진 한에서의 자본 즉 자본가치에 미칠 것이다. 자본가치 가운데서 단순히 잉여가치, 이윤의 몫을 앞으로 가질 수 있는 증서형태로 있는 부분 즉 사실상 생산에 대한 각이한 형태의 채권증서일 따름인 부분은 그 계산의 기초인 소득이 줄어지자 곧 가치가 떨어진다. 현재 있는 금과 은의 한 부분은 늘게 되며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시장에 있는 상품의 한 부분은 그 가격이 대폭 인하되지 않고서는 따라서 그 부분이 표시하는 자본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서는 그 유통과정과 재생산과정을 거칠 수 없다. 또한 고정자본의 요소들도 많건적건 가치가 떨어진다. 게다가 전제로 된 일정한 가격관계들이 재생산과정을 제약하며 따라서 재생산과정은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짐으로써 정체와 혼란에 빠진다. 재생산과정의 이 혼란과 정체는 자본의 발전과 함께 발전하며 바로 전제로 된 그 가격관계들에 입각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일정한 기한까지 지불해야 할 채무의 연쇄를 도처에서 끊어버리며 그에 따라 자본과 함께 발전한 신용체계가 무너짐으로써 더욱더 날카로워지며 그리하여 심각한 공황에 이르게 되고 갑자기 가치를 억지로 떨어뜨리며 재생산과정을 실제로 정체, 혼란시키며 그에 따라

재생산을 실제로 줄어들게 한다.

그러나 다른 요인들도 동시에 작용하였을 것이다. 생산의 정체로 하여 노동계급의 한 부분은 놀게 되었을 것이며 그렇게 됨으로써 일자리가 있는 다른 부분은 임금이 평균수준 이하로까지도 떨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떨어졌을 것인데 이러한 일은 평균임금의 조건에서 상대적 또는 절대적 잉여가치가 늘어나는 경우와 아주 똑같은 작용을 자본에 대하여 하였을 것이다. 번영기에는 노동자들의 결혼이 많아지고 그 아이들의 사망율이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 사정들로 하여 실제로 인구가 아무리 늘어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노동하는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자들의 관계에서는 이 사정들은 마치 실제로 기능을 노는 노동자들이 늘어난 것이나 다름없는 영향을 미친다. 한편 또 가격의 저락과 경쟁전의 자극을 받아 때 자본가는 새 기계, 개량된 새 작업방법, 새로운 결합을 적용함으로써 그의 총생산물의 개별적 가치를 그 생산물의 일반적 가치 이하로 떨구었을 것이다. 즉 주어진 양의 노동의 생산력을 높이고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을 낮추며 그리하여 노동자들을 해고, 요컨대 인위적인 과잉인구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불변자본의 요소들의 가치감소 자체는 이윤율을 높이게 하는 한 요소로 될 것이다. 적용되는 불변자본의 양은 가변자본에 비하여 늘어날 것이지만 이 양의 가치는 떨어질 수 있었을 것이다. 시작된 생산정체는 자본주의적 한계 안에서 그후의 생산확대를 준비할 것이다.

그리하여 순환이 새로 진행될 것이다. 기능의 정체로 하여 가치가 감소된 자본부분은 이전의 그 가치를 다시 얻을 것이다. 어쨌든 생산조건들이 확대되고 시장이 확대되며 생산력이 높아진 조건에서 똑같은 악순환이 다시 진행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한 극단적인 전제 밑에서도 자본의 절대적 과잉생산은 결코 절대적 과잉생산 일반이 아니며 생산수단의 절대적 과잉생산이 아니다. 그것은 생산수단이 자본으로서 기능을 놀며 따라서 불어난 그 양에 따라 불어난 그 가치에 비례하여 이 가치를 증식시켜야 하는, 즉 추가적 가치를 낳아야 하는 한에서의 생산수단의 과잉생산에 지나지 않는

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시 과잉생산일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건전한, 정상적 발전에 의하여 제약되어 있는 착취정도, 적어도 적용되는 자본의 양이 늘어나는 데 따라 이윤량이 늘어나게 하는 착취정도, 따라서 자본이 늘어나는 같은 정도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 특히 자본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빨리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배제하는 착취정도로 자본이 노동을 착취할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과잉생산이란 자본으로서 기능을 늘 수 있는, 즉 주어진 착취정도로 노동을 착취하기 위하여 적용될 수 있는 생산수단——노동수단과 생활수단——의 과잉생산과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이 착취정도가 일정한 한계점 이하로 떨어지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혼란과 정체, 공황, 자본의 파괴가 일어난다. 자본의 이러한 과잉생산에 어느 정도 큰 상대적 과잉인구가 동반된다는 것은 결코 모순이 아니다. 노동생산력을 높이고 상품생산물의 양을 늘이며 시장을 넓히고 자본의 축적을 양으로 보나 가치로 보나 촉진하고 이윤율을 떨어뜨린 똑같은 사정들이 상대적 과잉인구, 노동자들의 과잉인구를 낳았으며 또 끊임없이 낳는데 이 상대적 과잉인구는 노동자들이 적용될 수 있는 노동의 낮은 착취정도로 하여 또는 적어도 노동자들이 주어진 착취정도에서 남게 될 낮은 이윤율로 하여 과잉자본에 의하여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들의 과잉인구인 것이다.

자본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경우 그것은 국내에서는 절대적으로 자본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외국에서 더 높은 이윤율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은 일자리가 있는 노동인구에 대하여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어진 나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과잉자본이다. 그 자본은 그 자체로서 상대적 과잉인구와 나란히 존재하며 그리고 이것은 과잉자본과 과잉인구가 서로 나란히 존재하며 서로 제약하는 하나의 실례이다.

한편 또 축적과 결부되어 이윤율이 떨어지면 반드시 경쟁전이 벌어진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이윤량을 늘여 보상한다는 것은 사회의 총 자본에만 그리고 이미 기업을 가지고 있는 큰 자본가들에게만 들어맞는

다. 자립적으로 기능을 하는 새로운 추가자본은 마련된 그러한 보상조건들을 미리 찾아내지 못하고 그 조건들을 비로소 얻어내지 않으면 안되며 그리하여 이윤율이 떨어지면 자본들 사이에 경쟁전이 벌어지기 마련이며 그 반대로는 되지 않는다. 물론 이 경쟁전과 함께 한때 임금이 오르며 이에 따라 한때 이윤율이 더 떨어진다. 상품들의 과잉생산, 시장의 과잉에서도 똑같은 것을 보게 된다. 수요의 충족이 아니라 이윤의 생산이 자본의 목적이므로 그리고 생산물의 양이 생산의 규모에 의하여 규정되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이 목적이 이룩되고 그 반대는 아니므로 자본주의적 토대에서의 소비의 제한된 규모와 이 내재적 한계를 끊임없이 뛰어넘으려는 생산 사이에는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어쨌든 자본은 바로 상품들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자본의 과잉생산에는 상품들의 과잉생산이 들어 있다. 그러므로 상품들의 과잉생산을 부정하는 똑같은 경제학자들이 자본의 과잉생산을 인정하는것은 괴이한 사실이다. 일반적 과잉생산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 안에서 균형의 파괴만이 일어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개별적 생산부문들의 균형은 항구적인 과정으로서의 불균형에서 재현된다는 것을 의미할 따름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총생산의 연관이 생산당사자들의 집체적 이성에 의하여 이룩되고 따라서 그 이성에 복종되며 생산과정을 그들 공동의 통제 밑에 놓는 법칙으로서가 아니라 맹목적인 법칙으로서 그들에게 들쭉거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소비와 생산이 발전한 나라들에 알맞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한다. 과잉생산이 상대적일 따름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아주 옳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전체가 상대적인 생산양식에 지나지 않으며 이 생산양식의 한계는 일반적으로는 절대적이 아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있어서는, 그 기초 위에서는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인민대중에게 필요한 상품들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또 국내노동자들에게 평균량의 생활필수품을 치를 수 있기 위하여 이 수요를 외국의 먼 시장에서 찾지 않으면 안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이 특수한 자본주의적 연관에서만 과잉생산물이 그 소유자가 그것을 자본으로 다시

전화할 때에만 그것을 소비하도록 내놓을 수 있는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본가들 자신이 그들 사이에서 그들의 상품을 교환하고 소비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일반적 성격을 잊고 하는 말이며 문제는 자본의 증식이지 그것의 소비가 아니라는 것을 잊고 하는 말이다. 요컨대 불을 보듯 명백한 과잉생산 현상들에 대한 구구한 모든 의견(그 현상들은 이러한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타난다)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는 생산 일반의 한계가 아니며 따라서 또 이 특수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계도 아니라는 데로 귀결된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모순은 바로 자본이 움직이고 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특수한 생산조건들과 끊임없이 충돌하는 생산력을 절대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이 생산양식의 경향에 있다.

문제는 지금 있는 인구에 비하여 생활수단이 너무나 많이 생산되는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이다. 대중이 알맞고 사람답게 살아가기에 그것이 너무나 적게 생산되는 것이다.

문제는 인구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부분이 일자리를 얻는 데 필요한 것보다 생산수단이 더 많이 생산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반대이다. 첫째로, 사실상 일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생활조건으로 하여 남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한심한 생산양식 안에서만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노동을 하는 부분이 인구 가운데서 너무 많이 생산된다. 둘째로, 생산수단이 넉넉히 생산되지 않아 일할 수 있는 모든 인구가 매우 생산적으로 일할 수 없으며 따라서 노동시간에 적용되는 불변자본의 양과 효과성에 의하여 그들의 절대적 노동시간이 단축되지 않는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노동수단과 생활수단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어 그것들이 이윤율이 주어진 조건에서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상품들이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어 상품들 속에 들어 있는 가치와 이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를 실현하며 자본주의적 생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분배조건들과 소비관계 밑에서 새로운 자본으로 다시 전화할 수는 없으며 즉 이 과정을 끊임없이 되돌아오는 폭발없이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재부가 지나치게 많이 생산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재부가 자본주의적, 적대적 형태들로 주기적으로 생산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한계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서 나타난다.

1) 노동생산력의 발전에 의하여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은 하나의 법칙인데 이 법칙은 어느 순간에 이르면 노동생산력의 발전과 가장 날카롭게 충돌하며 따라서 끊임없이 공황에 의하여 극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2) 생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사회적 수요, 사회적으로 발전된 인간의 수요에 대한 생산의 비율이 아니라 부지불노동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대상화된 노동 일반에 대한 이 부지불노동의 비율 또는 자본주의적으로 표현하면 이윤과 그리고 적용된 자본에 대한 이 이윤의 비율 즉 일정한 수준의 이윤율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는 다른 전제 밑에서라면 도리어 전혀 불충분할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 생산의 확대에서 벌써 나타난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수요의 충족이 요구하는 데서가 아니라 이윤의 생산과 그 실현이 멎을 것을 요구하는 데서 정지된다.

이윤율이 떨어지면 개별적 자본가는 더 좋은 방법 등에 의하여 자기 상품의 개별적 가치를 그 사회적 평균가치 이하로 끌어내려 주어진 시장 가격에서 약간의 초과이윤을 얻기 위한 데로 자본의 힘을 돌린다. 한편 또 이윤의 일반적 평균수준에 의존하지 않고 그보다 높은 어떤 초과이윤을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생산방법, 새로운 투자, 새로운 보험을 미친 듯이 찾아내려고 하는 투기가 생긴다.

이윤율 즉 상대적 자본증가는 자립적으로 뭉쳐지는 새로운 모든 결합지 자본들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자본형성이 오직 이윤율을 이윤량으로 매꾸어가는 얼마되지 않는 큰 자본들에만 전적으로 있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생산의 활기를 지퍼주는 불은 꺼질 것이다. 생산은 잠들어버릴 것이다. 이윤율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추진력이다. 이윤율 내면서 생산할 수 있는 것만이 또 그 한에서만 생산된다. 이윤율이 줄어드는 데 대하여 영국 경제학자들이 겁을 먹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심지어 그러한 가능성에마저 리카아도가 불안해 하는 것은 바로 그가 자본주의적 생산의 조건들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카아도가 자본주의적 생산을 살펴보는 데서 인간에 대하여는 냉담하고 오직 생산

력의 발전——인간과 자본가치는 아무리 회생되더라도——만을 안중에 두었다고 그를 비난하는 바로 그 점이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의 역사적 과업이며 자본의 정당화인 것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자본은 무의식적으로 보다 높은 생산형태의 물질적 조건들을 창조한다. 리카아도를 불안케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자극으로 되며 축적의 조건이며 축적의 동력으로 되는 이윤율이 생산 자체의 발전에 의하여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양적 관계가 전부이다. 사실상 더 심각한 것이 그 기초에 놓여 있는데 그것을 그는 어렵듯이 느낄 뿐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결코 절대적인 생산양식이 아니라 역사적인, 물질적 생산조건들의 일정한 제한된 발전 시기에 상응하는 생산양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제한성, 그 상대성이 여기에서는 순경제학적 방식으로 즉 부르조아적 관점에서, 자본주의적 이해력의 테두리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4절 보충

노동생산력의 발전은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에서 아주 고르롭지 않으며 그것도 정도로 보아 고르롭지 않을 뿐 아니라 흔히 반대방향으로 이루어 지므로 평균이윤(=잉여가치)량이 가장 발전된 산업부문들에서의 생산력 발전으로 보아 기대할 수 있는 그 수준보다 매우 낮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로 다른 산업부문들에서의 생산력 발전이 매우 각각 다른 비례로 이루어질 뿐 아니라 흔히 반대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비단 경쟁의 무정부성과 부르조아적 생산양식의 특성 때문만이 아니다. 노동의 생산성은 자연조건들과도 결부되어 있는데 자연조건들은 흔히 사회적 조건들에 달려 있는 한에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데 따라 생산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이 분야들에서 여기에서는 진보, 저기에서는 퇴보라는 상반되는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대부분의 원료의 생산량, 즉 산림의 채벌량, 탄광, 철광산의 채굴의 규모가 계절 자체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만이라도 생각해 보라.

불변자본의 유동적 부분인 원료 등이 양적으로 언제나 노동생산력의 발전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면 고정자본인 건물, 기계, 조명, 난방시설 등은 그렇지 않다. 기계는 그 크기가 커지면 절대적으로는 값이 비싸지지만 상대적으로는 싸진다. 다섯 명의 노동자가 이전의 열 곱의 상품을 생산한다고 하여 그 때문에 고정자본에 대한 지출이 열 곱으로 되지는 않는다. 불변자본의 이 부분의 가치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늘어나지만 결코 그런 비례로 늘어나지는 않는다. 이윤율이 떨어지는 데서 표현되는 바와 같은, 가변자본에 대한 불변자본의 비율과 노동의 생산성의 발전에 따라 하나하나의 상품과 그 가격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똑같은 비율과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지적하였다.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들어가는 총노동시간 즉 과거노동시간과 산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산 노동의 몫은 줄어들고 과거노동의 몫은 늘어나지만 그러나 상품에 들어 있는 총노동량이 줄어들며 따라서 산 노동의 양은 과거노동의 양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므로써 늘어난다는 데 있다. 상품의 가치 속에 체화된 과거노동——불변자본부분——은 일부는 고정자본의 마멸분, 일부는 뭉땅 상품 속에 들어간 유동적 불변자본인 원료와 보조자재로 이루어진다. 원료와 보조자재에서 나오는 가치부분은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짐에 따라 줄어들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자재들에 대한 노동생산성은 바로 그것들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그 점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불변자본의 고정적 부분은 아주 크게 늘어나며 따라서 또 마멸로 하여 상품으로 넘어가는 그 가치부분도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노동생산력이 높아지는 가장 특징적인 점이다. 그런데 새로운 생산방법이 실제로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되려면 그 방법에 의하여 하나하나의 상품에 고정자본의 마멸로 하여 덧붙는 가치가 산 노동이 줄어든 탓으로 절약되고 저장되는 가치보다 적지 않으면 안된다. 요컨대 그 방법에 의하여 상품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으면 안된다. 자명한 일이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개별적 경우에 그러하듯이 보충적으로 마멸되는 고정자본부분 밖에도 양적으로 늘어났거나 보다 비싸진 원료나 보조자재에 해당하는 보충적인 가치부분이

상품의 가치형성에 들어가는 경우이다. 산 노동이 줄어들으로써 적어지는 가치분이 덧붙는 모든 가치분을 빼우고도 남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상품 속에 들어가는 총노동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어떤 사회적 생산조건에서도 노동생산력이 높아지는 본질적 특징으로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생산자들이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그들의 생산을 규제하는 사회에서는, 아니 단순상품생산에서까지도 노동의 생산성은 무조건적으로 또 이 척도에 따라 제어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어떠한가?

일정한 자본주의적 생산부문이 표준으로 되는 상품 한 개를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서 생산한다고 하자. 고정자본의 마멸분은 한 개에 1/2실링 또는 마르크, 원료와 보조자재에는 17½실링, 임금에는 2실링이 들어가고 잉여가치율이 100%인 경우에 잉여가치는 2실링, 총가치는 22실링 또는 마르크, 문제를 단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생산부문에서 자본의 구성은 사회적 자본의 평균구성과 같고 따라서 상품의 생산가격은 그 가치와 일치하며 자본가의 이윤은 생산된 잉여가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상품의 생산비는 $1/2 + 17\frac{1}{2} + 2 = 20$ 실링, 평균이윤율은 $2/20 = 10\%$ 이고 상품 한 개의 생산가격은 그 가치와 같아서 22실링 또는 마르크이다.

개개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산 노동을 절반으로 줄이지만 그 대신 고정자본의 마멸분으로 이루어지는 가치부분을 세 곱으로 늘이는 어떤 기계가 발명되었다고 하자. 그러면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마멸분 = 1½실링, 원료와 보조자재는 전과 같이 17½실링, 임금 1실링, 잉여가치 1실링, 모두 해서 21실링 또는 마르크. 상품은 그 가치가 이제는 1실링 떨어졌다. 새 기계는 노동생산력을 결정적으로 높였다. 그러나 자본가에게 있어서는 사태는 다음과 같이 된다. 그의 생산비는 이제는 1½실링의 마멸분, 17½실링의 원료와 보조자재, 1실링의 임금, 모두 20실링으로 전과 같다. 이윤율은 새 기계로 하여 곧 달라지지 않으므로 자본가는 생산비 외에 10% 즉 2실링을 얻게 된다. 따라서 생산가격은 달라지지 않아서 22실링이지만 가치보다 1실링 높다. 자본주의적 조건에서 생산하는 사회에서는 상품의 값이 싸지지 않았으며 새 기계는 조금도 개량되지

않았다. 따라서 자본가는 이 기계를 도입하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리고 그는 이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까지 써오던 아직 마멸되지 않은 기계를 완전히 가치없게 만들 뿐이고 그것을 단순한 고철로 만들며 따라서 틀림없는 손실을 보게 되므로 그는 그가 보기에는 이렇듯 어리석은 짓은 삼가할 것이다.

따라서 자본에 있어서는 높아진 노동생산력의 법칙은 무조건적으로 들어맞는 것이 아니다. 자본에 있어서 이 생산력이 높아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산 노동이 절약되는 경우가 아니라 다만 산 노동의 치불되는 부분이 덧붙여지는 과거노동보다 더 많이 절약되는 경우만인데 이에 대하여는 이미 「자본론」 제1부, 제13장, 2, 356~357페이지*에서 간단히 말하였다. 여기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새로운 모순에 빠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사명은 인간노동의 생산성을 거침없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위에서 든 경우와 같이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장애로 되자 이 생산양식은 이 사명에 어긋나게 된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그것이 노쇠하게 되며 더욱 더 자기 생애를 다 살고 있다는 것을 새로 증명할 따름이다.} ³⁷⁾

생산력이 높아짐에 따라 자립적인 산업기업을 성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본의 최소한은 오르는데 이것은 경쟁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비용이 많이 드는 새로운 생산설비가 일반적으로 도입되면 비교적 작은 자본들은 장차 배제된다. 서로 다른 생산분야에서의 기계발명의 초기에만 비교적 작은 자본들이 여기에서 자립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다. 한편 또 철도와 같이 불변자본의 비율이 비정상히 높은 아주 큰 기업들은 평균이윤율을 낳지 않고 그 한 부분인 이자만을 낳는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 이윤율은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 반대로 주식형태로 크게 집결된 자본은 여기에서 직접적인 적용분야를 찾아낸다.

자본이 늘어나고 따라서 자본이 축적되는 데에는 이에 따라 자본의

*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2분책, 25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37) 이것을 괄호 안에 넣은 것은 그것이 원래의 원고 속에 있는 한 개 주를 고쳐 편집한 것이지만 일부 설명에서 원문에 있는 재료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F.E.

유기적 구성부분들의 비율에서 위에서 살펴본 변화가 일어난 한에서만 이윤율의 감소가 들어 있다. 그런데 생산양식이 끊임없이 나날이 변혁됨에도 불구하고 총자본의 비교적 크거나 작은 이 부분이나 저 부분이 변하여 이 구성부분들의 주어진 평균비율의 기초 위에서 일정한 기간 축적을 계속하며 그리하여 그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어떠한 유기적 변동도 일어나지 않고 따라서 이윤율을 떨어뜨리는 원인들이 생기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이미 새로운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는데 낡은 생산방법들에 기초하여 순조롭게 자본이 이와같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따라서 또 생산이 확장되는 것이 또한 사회의 총자본이 늘어나는 것과 똑같은 비율로 이윤율이 줄어들지 않는 원인이다.

임금에 지출되는 가변자본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절대다수가 늘어나는 것은 모든 생산부문에 있는 일이 아니며 또 모든 생산부문에 골고루 있는 일이 아니다. 농업에서는 산 노동이 절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어쨌든 임금노동자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는 노동자들을 하루 12~15시간, 부리는 것이 더는 필요없게 되자 그들은 벌써 남아 돌아가게 된다. 생산력이 발전하여 노동자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든다면 즉 사실상 전체 국민이 보다 적은 시간에 그 총생산을 해나갈 수 있다면 이것은 하나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하여 인구의 대다수가 쓸데없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다시 자본주의적 생산의 특수한 한계가 나타나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이 결코 생산력의 발전과 부의 생산을 위한 절대적 형태가 아니며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생산력의 발전과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된다. 부분적으로 이 충돌은 주기적·공황으로 나타나는데 이 공황은 노동인구의 이 부분이나 저 부분이 낡은 직업에서는 넘쳐나게 됨으로써 일어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한계는 노동자들의 과잉시간이다. 사회가 얻는 절대적인 과잉시간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관심사가 아니다. 생산력의 발전이 자본주의적 생산에 중요한 것은 오직 그 발전으로 하여 노동계급의 잉여노동시간이 늘어나는 한에서이며 일반적으로 물질적 생

산을 위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리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은 모순 속에서 맴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의 축적이 늘어나는 데는 자본의 집적이 늘어난다는 뜻이 들어 있다. 그리하여 자본의 권력이 늘어나며 자본가로 인격화된 사회적 생산조건이 실제적 생산자들로부터 고립되게 된다. 자본은 더욱더 사회적 권력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권력의 기능을 노는 자가 자본가이며 또 이 권력은 각 개인의 노동이 창조할 수 있는 것과는 이제 전혀 관계가 없다. 자본은 물건으로서 그리고 이 물건을 통한 자본가의 권력으로서 사회와 맞서는 소외되고 고립화된 사회적 권력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이 전화되는 전반적 사회적 권력과 이 사회적 생산조건들에 대한 개별적 자본가들의 사적 권력 사이의 모순은 더욱더 심해지며 이 관계의 폐절을 전제로 하는데 그것은 이 모순이 동시에 생산조건들을 전반적, 공동적, 사회적 생산조건들로 개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조는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생산력이 발전에 의하여 그리고 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의하여 조건지어진다.

새로운 생산방법이 아무리 생산적이고 아무리 잉여가치율을 높이더라도 그것이 이윤율을 줄어둘게 한다면 자본가는 누구도 자진하여 그것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생산방법은 어느 것이나 상품값을 싸게 한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처음에는 그 상품을 그 생산가격 이상으로 팔며 아마도 그 가치 이상으로 팔 것이다. 그는 그 상품의 생산비와 더 높은 생산비로 생산된 다른 상품들의 시장가격 사이에 생기는 차액을 차지한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상품들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평균노동시간이 새로운 생산방법에서 필요한 노동시간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의 생산방법이 사회적 평균생산방법보다 우수한 것이다. 그러나 경쟁으로 하여 그의 생산방법은 일반화되며 일반적 법칙에 복종된다. 그리하여 이윤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며——아마도 처음에는 이 생산분야에서 그리고 다음에는 다른 생산분야들과 균등하게 된다——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자본가들의 의사에는 전혀 달려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하여 더 지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법칙은 다음과 같은 생산분야들에서도 지배한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의 소비나 노동자의 생활수단의 생산조건들로 직접적으로도 간접적으로도 들어가지 않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분야들, 따라서 상품이 아무리 값싸져도 상대적 잉여가치가 늘 수 없으며 노동력이 값싸질 수 없는 생산분야들이다(물론 이 모든 부문들에서 불변자본이 값싸지면 노동자의 착취가 의연 같은 경우에 이윤율은 오를 수 있다). 새로운 생산방법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이에 따라 이 상품들을 더 값싸게 생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실제로 제공되면 낡은 생산조건들에서 사업하는 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생산물을 그 옹근 생산가격 이하로 팔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이 상품의 가치가 떨어졌으며 그들이 이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이 사회적 필요노동시간을 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여——이것은 경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그들도 또한 불변자본에 대한 가변자본의 비율이 줄어드는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다.

기계의 적용이 그 기계로 생산하는 상품들의 가격을 싸게 만드는 모든 사정들은 결국 언제나 하나하나의 상품이 빨아들이는 노동량을 줄이는 것으로 되며 둘째로는 하나하나의 상품에 그 가치가 들어가는, 기계의 마멸부분을 줄이는 것으로 된다. 기계의 마멸이 완만하면 할수록 그 마멸분은 그만큼 더 많은 상품들에 나누어지며 그 기계는 재생산 기한에 이르기까지 그만큼 더 많은 싼 노동을 대신한다. 두 경우에 다 가변자본에 비한 고정적 불변자본의 양과 가치는 늘어난다.

“다른 모든 사정들이 같다면 한 국민이 그 이윤에서 저축하는 힘은 이윤율의 변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윤율이 높으면 크고 이윤율이 낮으면 적다. 그러나 이윤율이 떨어지면 다른 모든 사정들이 같지 않다. …이윤율이 낮으면 보통 영국에서처럼 인구수에 비하여 축적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이윤율이 높으면 폴란드, 러시아, 인도 등에서처럼 인구수에 비하여 낮은 축적이 보다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리처드 존스, 『정치경제학』, 런던, 1833년 50~51 페이지).

존스는 이윤율이 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축적에 대한 욕망과 축적 능력은 늘어난다고 옳게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로 상대적 과잉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둘째로 노동의 생산성이 늘어남에 따라 똑같은 교환가치로 표시되는 사용가치의 양이 늘어나며 따라서 자본의 물질 요소들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세째로 생산부문이 다양화되기 때문이다. 네째로 신용체계, 주식회사 등이 발전하며 이에 따라 심지어 화폐의 소유자가 산업자본가가 되지 않고도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다섯째로 수요와 치부욕이 늘기 때문이다. 여섯째로 고정자본의 투하량이 늘기 때문이다. 등등.

자본주의적 생산의 세 가지 주요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수단이 몇 사람의 손에 집중되고 이 때문에 생산수단은 직접 일하는 노동자들의 소유로 되지 않게 되며 반대로 생산의 사회적 역량으로 전화된다. 처음에는 자본가들의 사적 소유로 있으면서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자본가들은 부르조아 사회의 후견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후견의 모든 열매를 집어삼킨다.

2) 협업, 분업, 자연과학과의 노동의 결합에 의한 사회적 노동으로서의 노동 자체의 조직.

두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대립적 형태들로지만 사적 소유와 사적 노동을 폐절한다.

3) 세계시장의 형성.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 발전하는 인구에 비한 굉장한 생산력 그리고 같은 비율로는 아니더라도 인구보다 훨씬 빨리 늘어나는 자본가치(그 물질적 실체뿐 아니라)의 증가는 늘어나는 부에 비하여 더욱더 좁아지는 기초. 이 굉장한 생산력이 작용하는 기초와 그리고 더욱더 불어나는 이 자본의 가치증식조건과 모순된다. 이 때문에 공황이 일어난다.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의 전화(상인자본)

제16장 상품거래자본

제17장 상업이윤

제18장 상인자본의 회전 가격

제19장 화폐거래자본

제20장 상인자본의 역사적 고찰

제 16 장 상품거래자본

상인자본 또는 상업자본은 두 가지 형태 또는 두 가지 종류인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 갈라지는데 우리는 이제 자본의 기본구조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한에서 그 자본들을 더 상세히 특징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한 것은 근대정치경제학이 가장 우수한 그 대표자들에게서까지도 상업자본을 직접 산업자본과 혼동하며 상업자본의 두드러진 특성을 사실상 완전히 보지 않고 넘어가기 때문이다.

상품자본의 움직임은 『자본론』 제2부에서* 분석되었다. 사회의 총자본을 살펴보면 언제나 그 한 부분은, 비록 언제나 새로운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양적으로도 변동하지만, 화폐로 넘어가야 하는 상품들로서 시장에 있으며 또 다른 한 부분은 상품으로 넘어가야 할 화폐로 시장에 있다. 사회의 총자본은 언제나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 즉 이 형태변화의 과정 속에 있다. 유통과정에서 있는 자본의 이 기능이 일반적으로 특수한 자본의 특수한 기능으로서 자립화되고 분업에 의하여 특수한 종류의 자본가들에게 떠맡기는 기능으로서 고정되는 한에서 상품자본은 상품거래자본 또는 상업자본으로 된다.

운수업과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있는 상품의 보관과 분배를 어느 정도로 유통과정 안에서 계속되는 생산과정으로서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다(『자본론』 제2부, 제6장 유통비, 제2절, 및 제3절). 상품자본의 유통에 끼어드는 이것들은 부분적으로 상인자본 또는 상품거래자본의 독특한 기능들과 혼동되며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이 실천에서도 이 독특하고 특수한 기능들과 결부되어 있다. 비록 사회적 분업의 발전에

* 이 전집, 조문판, 제24권, 103~117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따라 상인자본의 기능은 완전히 자립화되며 즉 위에서 든 기능들과 동떨어져 자립적으로 이 기능들과 맞서는 것으로 되지만 말이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의 이 특수한 모습의 특수한 차이를 규정하여야 하며 따라서 우리는 위에서 든 기능들을 사상하여야 한다. 유통과정에서만 기능을 하는 자본, 즉 상품거래자본이 부분적으로 위에서 든 기능들을 자체의 기능과 결합시키고 있는 한에서 이 자본은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는다. 위에서 든 기능들을 떼어버리고 멀리 한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상업거래자본의 순수한 형태를 얻게 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상품자본으로서의 자본의 정제와 유통분야 안에서, 시장에서 자본이 상품자본으로서 거치는 형태변화——사고파는 것으로 되며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와 화폐자본의 상품자본으로의 전환인 형태변화——는 산업자본의 재생산과정, 따라서 그 총생산과정의 한 국면을 이루지만 산업자본은 동시에 유통자본으로서의 자체의 이 기능에서 생산자본으로서의 그 자체와 구별된다. 유통자본과 생산자본은 똑같은 자본의 서로 구별되는 존재형태들이다. 사회적 총자본의 한 부분은 유통자본으로서의 이 존재형태로 줄곧 시장에 있으며 늘 이 형태변화의 과정에 있다. 비록 개개 자본에서는 상품자본으로서의 그 정제와 그 형태변화 자체는 끊임없이 사라지며 또 끊임없이 새로 나오는 과도적 계기, 연속되는 그 생산과정의 과도적 단계를 이를 따름이다. 그러므로 또 비록 시장에 있는 상품자본의 요소들은 끊임없이 상품시장에서 끌려나가며 또한 끊임없이 생산과정의 새로운 생산물로서 상품시장에 되돌아 오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그런데 상품거래자본은 다름 아니라 끊임없이 시장에 있으며 늘 형태변화과정에 있고 또 늘 유통분야를 벗어나지 않는 이 유통자본의 한 부분의 전화된 형태인 것이다. 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품매매의 한 부분은 끊임없이 직접 산업자본가 자신들 사이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한 부분을 우리의 연구에서는 완전히 사상한다. 그것은 상인자본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는, 그 특수한 본성을 꿰뚫어보는 데는 그것이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한편 또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미 제2부에서 그것을 남김없이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상품거래자는 자본가 일반으로서는 우선 일정한 화폐액의 대표자로서, 이 금액을 선대한다. 즉 그는 이 금액을 x (맨 처음의 가치액)에서 $x + \Delta x$ (이 금액에다 그에 대한 이윤을 더한 것)로 전화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자본가 일반으로서뿐 아니라 바로 상품거래자로서의 그에게 있어서는 자명한 것이지만 그의 자본은 맨 처음에 화폐자본의 형태로 시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는 상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거래하고 상품의 움직임을 매개할 뿐이며 상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그는 그것을 처음에 사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화폐자본의 소유자로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 상품거래자가 3,000파운드 스텔링을 가지고 이것을 거래자본으로서 적용한다고 하자. 그는 이 3,000파운드 스텔링으로 예컨대 30,000엘레의 아마천을 한 엘레에 2실링씩으로 아마천 공장주에게서 산다. 그는 이 30,000엘레를 판다. 연평균이윤율이 10%이고 그가 모든 경비를 뺀 다음에 10%의 한 해 이윤을 얻는다면, 연말에 이 3,000파운드 스텔링이 그에게서는 3,300파운드 스텔링으로 된다. 그가 어떻게 이 이윤을 얻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후에 가서야 취급할 문제이다. 여기에서는 우선 그의 자본이 움직이는 형태만을 살펴보려고 한다. 그는 3,000파운드 스텔링으로 끊임없이 아마천을 사서 끊임없이 이 아마천을 판다. 즉 팔기 위하여 사는 이 조작, 자본의 단순한 형태인 $G-W-G'$ 를 늘 되풀이하는데 이것은 자본이 유통과정에 전적으로 매여 있고 이 자본 자체의 움직임과 기능 밖에 있는 생산과정을 위한 중간단계로 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그러면 산업자본의 단순한 하나의 존재형태로서의 상품자본과 이 상품거래자본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아마천 공장주로 말하면 그는 상인의 화폐로써 자기 아마포의 가치를 실현하였고 자기 상품자본의 형태변화의 첫 국면인 상품자본의 화폐로의 전화를 수행하였으며 이제는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다면 그 화폐를 실, 석탄, 임금 등으로, 한편 또 자기 소득을 소비하기 위한 생활수단 등으로 다시 전화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의 지출을 제쳐놓고 본다면 재생산과정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아마천의 생산자인 그에게서는 아마천의 화폐로의 형태변화 즉

아마천의 판매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아마천 자체에 있어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마천은 여전히 그 첫 형태변화를 수행해야 할, 즉 팔려야 할 상품자본으로서 시장에 있다. 이 아마천에서는 그 소유자가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것이 없다. 아마천은 그 자체의 사명으로 보면, 과정에서 차지하는 그 지위로 보면 여전히 상품자본이며 팔릴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그것이 전에는 생산자의 손에 있었다면 지금은 상인의 손에 있을 따름이다. 아마천을 파는 즉, 그 형태변화의 첫 국면을 매개하는 기능은 전에는 생산자가 그것을 생산하는 기능을 다 수행한 후에도 생산자가 역시 수행해야 할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그 기능이 생산자에서 상인에게 넘어가서 상인의 특수한 업으로 전환되었다.

아마천 생산자가 3,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30,000엘레를 새로 시장에 내놓는 데 필요한 기간에 상인이 30,000엘레를 팔지 못한다고 하자. 상인은 그것을 새로 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팔리지 않은, 즉 아직 화폐자본으로 전화되지 않은 30,000엘레의 아마천을 창고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경우에 정체가 일어나며 재생산이 중단된다. 물론 아마천 생산자는 추가적인 화폐자본을 댈 수 있어서 그것을 30,000엘레가 팔리는 것과는 관계없이 생산자본으로 전화하고 그리하여 생산과정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아도 사태는 달라지지 않는다. 30,000엘레의 생산에 선대한 자본이 문제인 한에서 이 자본의 재생산과정은 중단되었으며 또 중단된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사실상 명백한 것은 상인이 하는 조작들이란 생산자의 상품자본을 화폐로 전화하려면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작들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유통과정과 재생산과정에서의 상품자본의 기능들을 매개하는 그러한 조작들이란 것이다. 독립적인 상인 대신에 생산자의 단순한 대리자가 전적으로 이 판매와 또한 구입에 종사하게 된다면 이 연관은 한순간도 가리워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상품거래자본은 화폐로의 전화과정을 거쳐야 할, 시장에서 상품자본의 기능을 수행하여야 할 생산자의 상품자본과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다만 이 기능이 생산자가 부차적으로 하는 조작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품거래자라는 특수한 종류의 자본가가 전적으로

말아 하는 조작으로서 나타나며 특수한 투자의 분류로서 자립화된다.

어쨌든 이것은 상품거래자본의 특수한 유통형태에서도 보게 된다. 상인은 상품을 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다. 이것은 $G-W-G'$ 이다. 단순한 상품유통에서는 또는 산업자본의 유통과정으로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상품유통 $W'-G-W$ 에서도 유통은 한푼한푼의 화폐가 두 번 사람의 손을 바꿈으로써 매개된다. 아마천 생산자는 자기의 상품인 아마천을 팔고 그것을 화폐로 전화한다. 구매자의 화폐는 아마천 생산자의 손으로 넘어간다. 아마천 생산자는 바로 이 화폐로 실, 석탄, 노동 등을 사며 아마천의 가치를 아마천의 생산요소들을 이루는 상품들로 다시 전화하기 위하여 똑같은 화폐를 다시 지출한다. 그가 사는 상품은 그가 파는 상품과 똑같은 것이 아니며 똑같은 종류의 것도 아니다. 그는 생산물을 팔았고 생산수단을 샀다. 그런데 상인자본의 움직임에서는 사태가 다르다. 아마천 거래자는 3,000파운드 스텔링으로 30,000엘레의 아마천을 산다. 그는 화폐자본(3,000파운드 스텔링과 이윤)을 유통에서 다시 끌어내기 위하여 이 30,000엘레의 아마천을 판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똑같은 화폐가 두 번 아니라 똑같은 상품이 두 번 자리를 바꾼다. 똑같은 상품이 판매자의 손에서 구매자의 손으로 넘어와서 이제는 판매자로 된 구매자의 손에서 다른 구매자의 손으로 넘어간다. 그 상품은 두 번 팔리며 일련의 상인들이 끼어드는 경우에는 더 여러 번 팔릴 수 있다. 그리고 똑같은 상품이 바로 이렇게 되풀이하여 팔려야, 두 번 자리를 바꿔야 비로소 첫번째 구매자가 상품을 사는 데 선대한 화폐를 회수하며 그리하여 그에게 화폐가 되돌아오는 것이 매개된다. 한 경우 $W'-G-W$ 에서는 똑같은 화폐가 두 번 자리에서 바꿈으로써 상품이 한 모습으로 팔리고 다른 모습으로 취득된다. 다른 경우 $G-W-G'$ 에서는 똑같은 상품이 두 번 자리를 바꿈으로써 선대한 화폐가 유통에서 다시 회수된다. 바로 이 점에서 상품이 생산자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가더라도 아직 그것이 종국적으로 팔리지는 않는다는 것, 상인은 파는 조작——또는 상품자본의 기능의 매개——을 더 계속할 따름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생산자본가에서 $W-G$ 로 되는, 즉 상품자본의 일시적 모습을 띤 그의 자본의 단순한 기능으로 되는 것이 상인에게서는 $G-W-G'$, 즉 그가 선대한

화폐자본의 특수한 가치증식과정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상품의 형태변화의 한 국면이 여기에서는 즉 상인과 관련해서는 $G-W-G'$ 로서, 따라서 특수한 종류의 자본의 전개로서 나타난다.

상인은 상품, 즉 아마천을 생산적 소비자(예컨대 표백업자)이건 아마천을 사사용으로 이용하는 개인이건 이에 관계없이 소비자에게 종국적으로 판다. 그리하여 선대한 자본이(이윤과 함께) 그에게로 돌아오며 그는 조작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만일 아마천을 살 때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만 기능을 하고 그리하여 상인이 아마천을 인수한 후 여섯 주가 지나서 지불해도 좋다면,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가 판다면 그는 자신이 화폐자본을 선대하지 않고도 아마천 생산자에게 지불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아마천을 팔지 못한다면 그는 아마천을 받은 즉시로 지불하지 않고 만기가 되었을 때 3,000파운드 스텔링을 선대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가격이 떨어져서 그가 아마천을 사들일 때의 가격 이하로 판다면 그는 모자라는 부분을 자기자신의 자본에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상품거래자본에 자립적으로 기능을 하는 자본이라는 성격을 붙이는 것은 무엇인가? 자신이 자기 상품을 파는 생산자의 손에서는 상품거래자본이 그것이 유통분야에 있으면서 취하는, 생산과정의 특수한 국면에서의 그의 자본의 특수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는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상품거래자본에 자립적으로 기능하는 자본의 성격을 부여하는 것인가?

첫째로, 상품자본이 그 생산자와는 다른 대리인의 손에서 화폐로서의 그 종국적인 전화, 즉 그 첫째 형태변화를 하며 상품자본으로서의 그에게 고유한 기능을 시장에서 수행한다는 것, 그리고 상품자본의 이 기능이 상인의 조작들에 의하여, 상인이 사고파는 것에 의하여 매개되며 그리하여 이 조작이 산업자본의 나머지 기능들과 동떨어진, 따라서 자립화된 특수한 업으로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적 분업의 특수한 한 형태이며 그리하여 자본의 재생산의 특수한 한 국면, 이 경우에는 유통에서 수행해야 할 기능의 한 부분이 생산자와 구별되는 특수한 유통대리인의 전문적인 기능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 특수한 업은 재생산

과정에 있는 산업자본과 다른, 그리고 산업자본에 대해서 자립적인 특수한 자본의 기능으로서는 아직 결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상품거래가 산업자본가의 단순한 상업출장원이나 그 밖의 직접적 대리인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그 업은 특수한 자본의 기능으로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둘째 계기가 더 있어야 한다.

둘째로, 자립적인 유통대리인인 상인이 화폐자본(자기자신의 것이거나 또는 꾸는 것인)을 자기의 위치에서 선대함으로써 둘째 계기가 있게 된다. 재생산과정에 있는 산업자본에 있어서는 단순히 $W-G$, 즉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 또는 단순한 판매로서 표시되는 것이 상인에게서는 $G-W-G'$ 로서 즉 똑같은 상품의 구매와 판매로서 표시되며 따라서 살 때에는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팔 때에는 그에게로 되돌아오는 화폐자본의 환류로서 표시된다.

상인이 생산자에게서 상품을 사는 데 자본을 선대하는 한에서 상인에게서 $G-W-G$ 로서 표시된다는 것은 언제나 $W-G$, 즉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이며 언제나 상품자본의 첫째 형태변화이다. 비록 똑같은 행위가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또는 재생산과정에 있는 산업자본에 있어서 $G-W$ 즉 화폐가 상품(생산수단)으로 다시 전화되는 것으로서 또는 형태변화의 둘째 국면으로서 표시될 수 있지만 말이다. 아마천 생산자에게서는 $W-G$ 즉 상품자본의 화폐자본으로의 전화는 첫째 형태변화였다. 이 행위가 상인에게서는 $G-W$, 즉 그의 화폐자본의 상품자본으로의 전화로서 표시된다. 상인이 이제 아마천을 표백업자에게 판다면 이것은 표백업자에게서는 $G-W$ 즉 화폐자본의 생산자본으로의 전화 또는 상인의 상품자본의 둘째 형태변화를 표시한다. 그러나 이것은 상인에게서는 $W-G$ 즉 그가 산 아마천을 팔았다는 것을 표시한다. 그러나 사실상 아마천 공장주가 만들어낸 상품자본은 이제와서야 비로소 종국적으로 팔린 것이다. 또는 상인의 이 $G-W-G$ 는 두 생산자들 사이의 $W-G$ 에서 하나의 매개하는 과정일 따름이다. 또는 아마천 공장주가 판 아마천의 가치의 한 부분으로 실 거래자에게서 실을 산다고 하자. 그리하여 이것은 아마천 공장주에게서는 $G-W$ 이다. 그러나 실을 파는 상인에게서는 그것은 $W-G$, 즉 실의 재판매이다. 그리고 상품자본으로서의 실 자체에

대하여 말하면 그것은 실이 유통분야에서 소비분야로 넘어가게 하는 실의 중국적인 판매 즉 실의 첫째 형태변화를 중국적으로 마감짓는 $W-G$ 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상인이 산업자본가에게서 사건 산업자본가에게 팔건 그의 $G-W-G$, 즉 상인자본의 순환은 언제나 재생산되는 산업자본의 과도적 형태로서의 상품자본 자체에 대하여 다만 $W-G$, 즉 다만 상품자본의 첫째 형태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할 따름이다. 상인자본의 $G-W$ 는 산업자본가에게서는 동시에 $W-G$ 일 따름이지만 산업자본가가 생산한 상품자본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상품자본이 산업가의 손에서 유통대리인의 손으로 넘어간 데 지나지 않는다. 상인자본의 $W-G$ 만이 기능을 노는 상품자본의 중국적인 $W-G$ 이다. $G-W-G$ 는 상품자본의 마지막 중국적인 판매를 매개하는 데 지나지 않는 똑같은 상품자본의 두 행위 $W-G$, 상품자본의 연달은 두 판매일 따름이다.

따라서 상품자본이 상품거래자본에서 자립적 종류의 자본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은 상인이 화폐자본을 선대하기 때문인데 이 화폐자본은 그것이 전적으로 상품자본의 형태변화, 상품자본으로서의 그 기능 즉 화폐로의 그 전화를 매개하는 일을 하며 또 그것이 상품을 끊임없이 사고팔아 그렇게 함으로써만 자본가로서 가치를 증식하며 자본으로서 기능을 한다. 이것이 상품거래자본의 전문적인 조작이다. 산업자본의 유통과정을 매개하는 이 활동은 상인이 조작하는 화폐자본의 전문적인 기능이다. 이 기능에 의하여 상인은 자기의 화폐를 화폐자본으로 전화하며 그리하여 그의 G 는 $G-W-G'$ 의 모습을 띠며 또 똑같은 과정에 의하여 그는 상품자본을 상품거래자본으로 전화한다.

상품거래자본은 그것이 상품자본의 형태로 있는 한에서는, 또 그동안에는——사회적 총자본의 재생산과정을 놓고 본다면——형태변화과정에 아직 시장에 있으며 그리고 산업자본 가운데서 이제는 상품자본으로서 존재하고 기능을 노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따라서 이제 총자본의 재생산과정과 관련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은 상인이 선대하였으며 전적으로 사고파는 데만 쓰이고 따라서 결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형태 밖에는 다른 형태를 띠지 않으며 결코 생산자본의 형태를 띠지 않고 언제나 자본의 유통분야에 처박혀 있는 화폐자본뿐이

다.

생산자인 아마천 공장주가 자기의 30,000엘레를 3,000파운드 *스털링으로 상인에게 팔자 그는 그렇게 하여 손에 들어온 화폐로 필요한 생산수단을 사며 그의 자본은 다시 생산과정에 들어간다. 그의 생산과정은 계속되며 중단되지 않는다. 그에게서는 그의 상품이 화폐로 전화되었다. 그러나 아마천 자체로서는 그 전화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아마천은 아직 중국적으로 화폐로 다시 전환되지 않았으며 아직 사용가치로서 생산적 소비이건 개인적 소비이건 소비로 들어가지 않았다. 아마천 생산자가 맨 처음에 시장에서 대표하였던 똑같은 상품자본을 이제는 아마천 거래자가 시장에서 대표한다. 아마천 생산자에게서는 형태변화과정이 짧아졌지만 다만 상인의 손에서 그 과정은 계속되게 되었다.

만약 아마천 생산자가 자기의 아마천이 실제로 상품이 아니게 될 때까지, 즉 아마천이 마지막 구매자인 생산적 소비자나 개인적 소비자에게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면 안된다면 그의 재생산과정은 중단될 것이다. 또는 그의 재생산과정을 중단하지 않으려면 그는 자기의 조작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자기의 아마천외 비교적 적은 부분을 실, 석탄, 노동 등 요컨대 생산자본의 요소들로 전화하고 비교적 큰 부분을 화폐예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의 자본의 한 부분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있는 동안 다른 부분은 생산과정을 계속할 수 있게 되며 그리하여 한 부분이 상품으로서 시장에 나올 때 다른 부분은 화폐형태로 되돌아오도록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상인이 끼어들어도 아마천 생산자는 자기의 자본을 이렇게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상인이 끼어들지 않으면 유통자본 가운데서 화폐예비금의 형태로 있는 부분은 언제나 생산자본의 형태로 쓰이는 부분에 비하여 크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에 따라 재생산규모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제는 생산자가 그렇게 할 대신에 자기 자본의 비교적 큰 부분을 끊임없이 원래의 생산과정에 적용하고 비교적 적은 부분을 화폐예비금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사회적 자본의 다른 한 부분이 상인 자본의 형태로 끊임없이 유통분야에 있다. 그 부분은 늘 상품을 사고

또 파는 데만 적용된다. 그리하여 이 자본을 손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뀐 것으로만 보인다. 상인이 3,000파운드 스텔링으로 아마천을 사서 팔려고 할 대신에 이 3,000파운드 스텔링을 자신이 생산적으로 적용한다면 사회의 생산자본은 늘어날 것이다. 그 경우에는 물론 아마천 생산자는 자기 자본의 어지간히 큰 부분을 화폐예비금으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이제는 산업자본가로 된 상인도 역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한편 또 상인이 그대로 상인으로 남아 있다면 생산자는 파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하며 이 시간을 생산과정을 감시하는 데 돌릴 수 있는데 상인은 자기의 시간을 모두 파는 데 쓰지 않으면 안된다.

상인자본이 필요한 비율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1) 분업의 결과에 전적으로 사고파는 데 쓰이는 자본(상품을 사들이기 위한 화폐 외에 상인의 기업운영에 필요한 노동, 상인의 불변자본인 창고건물, 운수수단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도 이에 속한다)이 산업자본가가 자기 기업의 상인적 부분 전체를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될 경우의 그러한 자본보다 작다는 것.

2) 상인이 전적으로 이 사업에 달라붙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로 보면 그의 상품이 더 일찍 화폐로 전화될 뿐 아니라 상품자본 자체가 생산자의 손에 있을 때보다 더 빨리 그 형태변화를 이룩한다는 것.

3) 전체 상인자본을 산업자본과의 관계에서 살펴본다면 상인자본의 한 회전은 한 생산분야의 많은 자본들의 회전뿐 아니라 서로 다른 생산분야의 일련의 자본들의 회전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인정하여야 한다. 첫째 경우는 예컨대 아마천 거래자가 자기의 3,000파운드 스텔링으로 한 아마천 생산자의 생산물을 사고 똑같은 생산자가 똑같은 분량의 상품을 다시 시장에 내놓기 전에 다시 판 다음에 어떤 다른 아마천 생산자나 여러 아마천 생산자들의 생산물을 사서 이것을 다시 팔며 그리하여 똑같은 생산분야의 서로 다른 자본들의 회전을 매개하는 경우이다. 둘째 경우는 상인이 예컨대 아마천을 판 다음에 이제는 비단을 사며 따라서 다른 생산분야의 자본의 회전을 매개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산업자본의 회전은 유통기간으로 하여

제한될 뿐 아니라 생산기간으로 하여서도 제한된다는 것이다. 상인자본의 회전은 상인자본이 일정한 종류의 상품만을 취급하는 한에서 한 산업자본의 회전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생산부문의 모든 산업자본들의 회전에 의하여 제한된다. 상인은 한 사람의 아마천을 사서 팔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상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에 다른 사람의 아마천을 사서 팔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상인자본이 한 생산부문에 투하된 자본들의 서로 다른 회전들을 차례로 매개할 수 있다. 그리하여 상인자본의 회전은 한 개별적 산업자본의 회전들과 같지 않으며 따라서 이 개별적 산업자본가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될 화폐예비금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한 생산분야의 상인자본의 회전은 물론 이 생산분야의 총생산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그 회전은 물론 이 생산분야의 개별적 자본의 생산 한계나 그 회전기간——이 회전기간이 생산기간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다. A가 석 달 걸려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내놓는다고 하자. 상인이 그것을 사서 가령 한 달 안에 판 다음에 그는 다른 생산자의 똑같은 생산물을 사서 팔 수 있다. 또한 상인은 예컨대 한 차지농업가의 곡물을 판 다음에 똑같은 화폐로 둘째 차지농업가의 곡물을 사서 팔 수 있다 등등. 상인의 자본의 회전은 그가 주어진 기간, 예컨대 한 해 동안에 차례차례 사서 팔 수 있는 곡물량에 의하여 제한된다. 그런데 차지농업가의 자본의 회전은 유통기간에는 관계없이 한 해 동안 걸리는 생산기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똑같은 상인자본의 회전은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의 자본의 회전들도 역시 훌륭히 매개할 수 있다.

똑같은 상인자본이 서로 다른 회전들에서 서로 다른 상품자본들을 연달아 화폐로 전화하는 데 쓰이고 따라서 그 상품자본들을 차례로 사고파는 한에서 이 상인자본은 화폐가 일반적으로 주어진 기간에 일련의 유통을 통하여 상품들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화폐자본으로서 상품자본에 대하여 수행한다.

상인자본의 회전은 크기가 같은 한 산업자본의 회전 또는 한 번의 그 재생산과 같지 않으며 오히려 똑같은 생산분야이건 서로 다른 생산분야

이건 일련의 그러한 자본들의 회전들을 합한 것과 같다. 상인자본이 빨리 회전하면 할수록 총화폐자본 가운데서 상인자본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은 그만큼 더 작으며 상인자본이 느리게 회전하면 할수록 그 부분은 그만큼 더 크다. 생산이 덜 발전하면 할수록 일반적으로 유통에 들어온 상품의 총액에 비하여 상인자본의 총액은 더 크지만 절대적으로는 또는 발전한 상태에서의 상인자본의 총액에 비해서는 그만큼 더 작다. 반대인 경우에는 또 그 반대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발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의 화폐자본의 가장 큰 부분이 상인의 손에 있으며 그리하여 상인의 재산은 화폐재산으로서 다른 것들에 맞선다.

상인이 선대하는 화폐자본의 유통속도는 1) 생산과정이 갱신되고 각각 다른 생산과정들이 서로 맞물리는 속도 2) 소비의 속도에 달려 있다.

상인자본이 위에서 살펴본 회전만을 하자면 반드시 그 가치 전체량만큼 먼저 상품을 사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팔아야 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고 상인은 동시에 이 두 가지 조작을 한다. 그 경우에 그의 자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한 부분은 상품자본으로 이루어지며 다른 부분은 화폐자본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한 곳에서는 사들임으로써 자기의 화폐를 상품으로 전화한다. 그는 다른 곳에서는 판매함으로써 상품자본의 다른 부분을 화폐로 전화한다. 한편으로는 그의 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 그에게 되돌아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품자본이 그에게 흘러들어온다. 한 형태로 있는 부분이 크면 클수록 다른 형태로 있는 부분은 그만큼 더 작다. 이 부분들은 서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며 균등하게 된다.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 적용되는 것과 결부하여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적용되고 이에 기초하여 신용체계가 자라나면 상인자본의 화폐부분은 이 상인자본이 수행하는 거래액에 비하여 더욱더 줄어든다. 내가 3,000파운드 스텔링분의 포도주를 석 달 후 지불하기로 하고 사서 석 달이 지나기 전에 이 포도주를 현금을 받고 판다면 이 거래에는 한 푼도 선대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에 또 아주 명백한 것은 이 경우에 상인자본으로서 나타나는 화폐자본은 화폐자본의 형태로 있는, 화폐의 형태로 되돌아오고 있는 산업자본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3,000파운드 스텔링분의 상품을 석 달 후 지불받기로 하고 판 생산자가 그에 대한 어음 즉 채무

증서를 은행업자에게서 할인할 수 있다는 것은 사태를 조금도 달라지게 하지 않으며 상품거래자의 자본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상품의 시장 가격이 그 사이에 예컨대 1/10만큼 떨어진다면 상인은 아무런 이윤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대체 3,000파운드 스텔링은 고사하고 2,700파운드 스텔링 밖에는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지불하기 위하여 300파운드 스텔링을 돌려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 300파운드 스텔링은 가격차를 매우기 위한 예비금으로서만 기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생산자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생산자 자신이 떨어지는 가격으로 판다면 그 역시 300파운드 스텔링을 잃을 것이며 예비자본 없이는 생산을 종전의 규모로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이다.

아마천 거래자는 3,000파운드 스텔링분의 아마천을 공장주에게서 산다. 공장주는 이 3,000파운드 스텔링 가운데서 예컨대 2,000파운드 스텔링은 실을 사들이는 데 지불한다. 그는 이 실을 실 거래자에게서 산다. 공장주가 실 거래자에게 지불하는 화폐는 아마천 거래자의 화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마천 거래자는 그 대신 이 금액만큼의 상품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화폐는 공장주 자신의 자본의 화폐형태이다. 실 거래자의 손에서는 이 2,000파운드 스텔링이 이제는 되돌아온 화폐자본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2,000파운드 스텔링이 어느 정도로 그렇게 되며 또 어느 정도로 그것이 아마천이 벗어버린 화폐형태이고 실이 띤 화폐형태인 이 2,000파운드 스텔링과 구별되는 것인가? 실 거래자가 신용으로 사서 지불기한이 되기 전에 현금을 받고 팔았다면 이 2,000파운드 스텔링에는 산업자본가 자체가 그 순환과정에서 떠는 화폐형태와 구별되는 것으로서의 상인자본은 한 톨도 들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상품거래자본이 상인의 손에서 상품자본이나 화폐자본의 모습으로 있는 산업자본의 단순한 형태가 아닌 한에서 그것은 화폐자본 가운데서 상인 자신에게 속하는 상품들을 사고파는 데 돌려쓰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생산에 선대한 자본 가운데서 화폐예비금, 구매수단으로서 늘 산업자본가들의 손에 있어 늘 그들의 화폐자본으로서 유통하지 않으면 안될 부분을 줄어든 규모에서 표시한다. 이 부분이 이제는 줄어들어 상인자본가들의 손에 있으며 그러한 것으로서 유통과정에서 기능을 한다. 그것은 총자본 가운데에서

——소득으로 지출되는 몫을 제쳐놓고 보면——재생산과정이 계속 진행되도록 끊임없이 구매수단으로서 시장에서 유통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재생산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리고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이 발전하며 할수록 즉 신용체계가 발전하면 할수록 총자본에 비하여 그만큼 더 작다.³⁸⁾

상인자본은 다름 아니라 유통분야에서 기능을 노는 자본이다. 유통과정은 총재생산 과정의 한 국면이다. 그러나 유통과정에서는 아무런 가치

-
- 38) 상인자본을 상인자본으로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램제이는 상인자본을 운수업과 동일시하고 상업을 상품의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의 운수(「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에딘버러, 1836년), 19페이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렇게 동일시한 것은 이미 베리(「정치경제학에 관한 고찰」(쿠스토디 편찬, 이탈리아 경제학자 저작집, 현대부, 제15권, 32페이지), 제4절)와 세이(「정치경제학개론」, 제1권, (파리, 1817년), 14, 15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S.P. 뉴만은 자기의 저서 「정치경제학원리」(앤더버 및 뉴욕, 1835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회의 현경제제도 밑에서 상인이 하는 일 즉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서서 생산자에게 자본을 선대하고 그 대신 생산물을 받으며 이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넘겨주고 그 대신 자본을 회수하는 일은 사회의 경제적 과정을 쉽게 하고 또 취급하는 생산물에 가치를 덧붙인다”(174페이지). 그리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는 상인이 끼어들으로써 화폐와 시간을 절약한다. 이 봉사에는 자본과 노동이 선대되어야 하며 보수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이 봉사가 생산물에 가치를 덧붙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똑같은 생산물도 소비자의 손에서는 생산자의 손에서보다 더 값나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에게서는 세이에게서와 똑같은 상업이 “엄밀히 말하여 하나의 생산행위”(175페이지)로서 나타나고 있다. 뉴만의 이 견해는 근본적으로 그릇된 것이다. 상품의 사용가치는 소비자의 손에서는 생산자의 손에서보다 큰데 그것은 사용가치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손에서 비로소 실현되기 때문이다. 사실 상품의 사용가치는 상품이 소비분야로 넘어가야지 비로소 실현되고 기능을 늘게 된다. 생산자의 손에서는 상품의 사용가치가 잠재적 형태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품에 대하여 두 번 즉 먼저 그 교환가치에 대하여, 그리고 그 다음에 따르 더 그 사용가치에 대하여 지불하지는 않는다. 나는 상품의 교환가치를 지불함으로써 그 사용가치를 차지한다. 그리고 교환가치는 상품이 생산자나 중개자의 손에서 소비자의 손으로 넘어간다고 하여 조금도 늘어나지 않는다.

도 생산되지 않으며 따라서 또 아무런 잉여가치도 생산되지 않는다. 똑같은 가치량의 형태변화가 진행될 뿐이다. 사실상 다른 아닌 상품의 형태변화가 진행될 따름이며 이 상품의 형태변화 그 자체로서는 가치창조나 가치변동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생산된 상품이 팔리는 데서 잉여가치가 실현된다면 그것은 잉여가치가 이미 상품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둘째번 행위 즉 화폐자본이 상품(생산요소들)과 다시 교환되는 데서도 구매자에 의하여 아무런 잉여가치도 실현되지 않고 여기에서 다만 화폐가 생산수단 및 노동력과 교환됨으로써 잉여가치의 생산이 준비될 따름이다. 도리어 이 형태변화들에 유통기간——자본이 도대체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며 따라서 또 아무런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 기간——이 든다면 이 기간은 가치창조를 억제하며 따라서 이윤율로 표현된 잉여가치는 바로 유통기간의 길이에 반비례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인자본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다. 즉 직접적으로는 생산하지 않는다. 상인자본이 유통기간을 짧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한에서 상인자본은 간접적으로 산업자본가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가 늘어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상인자본이 시장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고 자본들 사이의 분업을 매개하며 따라서 자본이 더 큰 규모로 사업할 수 있게 하는 한에서 상인자본의 기능은 산업자본의 생산성을 높이며 그 축적을 다그친다. 상인자본이 유통기간을 짧게 하는 한에서 그것은 선대한 자본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 즉 이윤율을 올린다. 상인자본이 자본 가운데서 화폐자본으로서 늘 유통분야에 있게 될 부분을 적게 하는 한에서 그것은 생산과정에 직접 적용되는 자본부분을 늘린다.

제 17 장 상업이윤

「자본론」 제2부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이 유통분야에서 노는 순수한 기능들——즉 산업자본가가 우선 자기 상품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다음에 이 가치를 상품의 생산요소들로 다시 전화하기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작들, 상품자본의 형태변화를 매개하기 위한 조작들인 $W'-G-W$, 따라서 팔고사는 행위들——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 도리어 이 조작들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이 객관적으로는 상품과 관련하여, 주관적으로는 자본가들과 관련하여 가치와 잉여가치의 형성에 제한으로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상품자본 그 자체의 형태변화를 두고 본다면 그것은 물론 상품자본의 한 부분이 상품거래자본의 모습을 띠거나 또는 상품자본의 형태변화를 매개하는 조작들이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의 특수한 업으로서 또는 화폐자본의 한 부분의 전적인 기능으로서 나타난다고 하여 결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자본가들 자신들이 팔고 사는 것——그런데 상품자본의 형태변화 $W'-G-W$ 는 이에 귀착된다——이 아무런 가치나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는 조작들이라면 그 조작들을 산업자본가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수행한다고 하여 그 조작들이 가치나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조작들로 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사회의 총자본 가운데서 재생산과정이 유통과정에 의하여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화폐자본으로서 늘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 이 화폐자본이 가치도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면 이 화폐자본을 산업자본가가 아니라 다른 부류의 자본가가 똑같은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유통에 내던진다고 하여 이 화폐자본이 가치나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속성들을 얻을 수는 없다. 상인자본이 어느 정도로 간접적으로 생산적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이미 말한 바 있으며 후에 더 상세히 논할 것이다.

따라서 상품의 보관, 발송, 운반, 분류, 선별과 같은 상품거래자본과

결부될 수 있는 모든 이질적인 기능들을 제쳐놓고 팔기 위하여 산다는 상품거래자본의 진짜 기능에 국한한다면 상품거래자본은 가치도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고 다만 가치와 잉여가치의 실현을 매개할 따름이며 그와 동시에 상품들의 실제적 교환,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의 상품들의 이행, 사회적 물질대사를 매개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산업자본의 유통국면은 생산과 다름없이 재생산과정의 한 국면을 이루므로 유통과정에서 자립적으로 기능을 노는 자본도 서로 다른 생산부문들에서 기능을 노는 자본과 다름없이 연평균이윤을 얻지 않으면 안된다. 상인자본이 산업자본보다 더 높은 율의 평균이윤을 얻는다면 반대로 될 것이다. 상인자본의 한 부분이 산업자본으로 전화될 것이다. 어떠한 종류의 자본도 그 사명, 그 기능을 상인자본보다 더 쉽게 바꿀 수는 없다.

상인자본 자체는 아무런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므로 평균이윤의 형태로 상인자본에 돌아오는 잉여가치는 총생산적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의 한 부분을 이룬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제는 문제가 상인자본이 생산적 자본에 의하여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이윤 가운데서 그에 돌아오는 부분을 어떻게 끌어오는가 하는 것이다.

상업이윤이 상품의 가치 이상으로 그 가격이 단순히 덧붙여진 것, 명목상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은 외관에 지나지 않는다.

상인이 자기의 이윤을 그가 파는 상품의 가격에서만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또 그가 자기의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 이윤이 그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 사이의 차액, 사는 가격을 넘는 파는 가격의 초과분과 같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더욱 명백하다.

상품을 산 후에 그것을 팔기 전에 추가적 비용들(유통비)이 상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한 비용들이 들어간다면 사는 가격을 넘는 파는 가격의 초과분이 이윤 하나만을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연구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우선 그러한 비용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친다.

산업자본가에게 있어서는 그의 상품들의 파는 가격과 사는 가격의 차액은 그 상품들의 생산가격과 그 생산비의 차액과 같으며 또는 사회적 총자본을 놓고 보면 상품들의 가치와 자본가들에게의 그 생산비와의 차

액과 같은데 이 차액은 또 상품들에 대상화된 노동의 총량과 상품들에 대상화된 지불노동의 양과의 차이에 귀착된다. 산업자본가가 산 상품들이 다시 팔 수 있는 상품들로서 시장에 다시 내던져지기에 앞서 그 상품들은 생산과정을 거치는데 이 생산과정에서 상품들의 가격 가운데서 나중에 이윤으로서 실현되어야 할 구성부분이 비로소 생산된다. 그러나 상품거래자에게서는 사정이 다르다. 상품들은 그것들이 유통과정에 있는 동안에만 그의 손 안에 있다. 그는 다만 생산적 자본가가 시작한 상품들의 판매, 그 가격의 실현을 계속 할 따름이며 따라서 상품들이 새로 잉여가치를 빨아들일 수 있는 어떠한 중간과정도 거치게 하지 않는다. 산업자본가는 이제까지 생산된 잉여가치 또는 이윤을 유통에서 실현할 뿐인데 이와는 반대로 상인은 유통에서 또 유통을 통하여 자기의 이윤을 실현할 뿐 아니라 비로소 얻어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상인은 그에게 산업자본가가 상품들의 생산가격대로 또는 총상품자본을 놓고 보면 상품들의 가치대로 판 그 상품들을 그 생산가격 이상으로 팔고 상품가격에 명목상의 추가분을 붙이며 따라서 총상품자본을 놓고 보면 그것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팔고 상품들의 실제적 가치를 넘는 명목가치의 이 초과분을 주머니에 집어넣는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여 상품들을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파는 조건에서이다.

이 덧붙이형태를 이해하기는 아주 간단하다. 예컨대 한 엘레의 아마천에 2실링이 든다고 하자. 내가 그것을 다시 팔아 10%의 이윤을 얻어야 한다고 하면 나는 그 가격에다 10%를 덧붙이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그 1엘레를 2실링 2 $\frac{2}{5}$ 페니로 팔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경우에 그 실제적 생산가격과 그 판매가격의 차액은 2 $\frac{2}{5}$ 페니이며 이것은 2실링에 대하여 10%의 이윤이다. 그러면 내가 구매자에게 파는 그 1엘레의 가격은 실제로는 1%엘레분의 가격이다. 또는 똑같은 것으로 되지만 그것은 내가 구매자에게 10/11엘레만을 2실링을 받고 팔았으며 1/11엘레는 자기에게 남겨둔 것과 똑같다. 한 엘레의 가격을 2실링 2 $\frac{2}{5}$ 페니로 계산하면 사실상 나는 2 $\frac{2}{5}$ 페니로 1/11엘레를 되살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은 상품의 가격을 명목상으로 올려 잉여가치와 잉여생산물에서 한몫보기 위한 돌음길일 것이다.

이것은 얼핏 보아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상품의 가격에 덧붙이기를 하여 상업이윤이 실현된 것이다. 그리고 이윤이 상품의 가격을 명목상으로 올리는 데서 또는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파는 데서 생긴다는 전체 표상은 사실상 상업자본의 견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더 세밀히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한 외관이라는 것을 곧 알게 되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지배적인 것으로서 전제하면 상업이윤이 이러한 식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여기에서 문제는 언제나 평균일 따름이지 개별적 경우는 아니다). 우리는 어째서 상품거래자가 자기의 상품을 10%만큼 그 생산가격 이상으로 판매함으로써만 자기의 상품에 대한 이윤을 예컨대 10%로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가? 그것은 이 상품의 생산자인 산업자본가(산업자본의 인격화로서 외부세계에 대하여 언제나 생산자로서 나타나는)가 상품을 상인에게 그 생산가격대로 팔았다고 우리가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상품거래자가 지불한 상품의 구매가격이 그 생산가격, 결국은 그 가치와 같으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가격, 결국은 그 가치가 상인에게서 생산비를 표시한다면 사실상 상인의 구매가격을 넘는 그의 판매가격의 초과분——이 차액만이 그의 이윤의 원천을 이룬다——은 상품의 생산가격을 넘는 그 상업가격의 초과분이 아닐 수 없으며 결국은 상인은 모든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팔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어째서 산업자본가가 상인에게 상품을 그 생산가격대로 판다고 가정하였는가? 또는 더 정확히 말하면 이 가정에서 전제로 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상업자본(여기에서는 아직 상업자본을 상품거래자본으로서만 문제로 삼는다)은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 이윤율을 서술하는 데서 필연적으로 이 전제로부터 출발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상업자본 자체는 그때에 아직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둘째로 평균이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도 우선은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의 산업자본가가 실제로 생산하는 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균등화로서 전개하여야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상인자본에서는 생산에는 참가하지 않으면서 이윤에는 참가하는 자본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전의 서술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한 해 동안에 선대된 총산업자본은 $720c + 180v = 900$ (가령 백만파운드 스텔링)이고 $m' = 100\%$ 라고 하자. 따라서 생산물은 $720c + 180v + 180m$ 이다. 그리고 이 생산물 또는 생산된 상품자본을 W 라고 하면 이 생산물의 가치 또는 생산가격(두 가지 것이 상품 전체로 보면 일치하므로)은 1,080이며 총자본 900에 대한 이윤율은 20%이다. 이 20%는 위에서 한 설명에 의하면 평균이윤율이다. 그것은 잉여가치가 이 경우에 특수한 구성을 가진 이러저러한 자본에 대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평균구성을 가진 총산업자본에 대하여 계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W = 1,080$ 이고 이윤율은 20%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900파운드 스텔링의 산업자본에 100파운드 스텔링의 상인자본이 더 덧붙으며 이 상인자본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산업자본과 똑같은 몫을 이윤에 대하여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려고 한다. 전제에 의하면 상인자본은 총자본 1,000의 $1/10$ 이다. 따라서 상인자본은 총잉여가치 180에 대하여 $1/10$ 의 몫을 가지며 그리하여 18%의 율로 이윤을 얻는다. 따라서 사실상 총자본의 다른 $9/10$ 사이에서 나누어야 할 이윤은 162에 지나지 않는다. 즉 900의 자본에 대하여 역시 18%이다. 따라서 산업자본 900의 소유자들이 상품거래자들에게 파는 W 의 가격은 $720c + 180v + 162m = 1,062$ 이다. 따라서 상인이 자기의 자본 100에 18%의 평균이윤을 덧붙인다면 그는 상품들을 $1,062 + 18 = 1,080$ 으로 즉 상품들의 생산가격으로 또는 총상품자본을 놓고 보면 그 가치대로 판다. 비록 상인은 자기의 이윤을 유통에서만 그리고 유통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의 구매가격을 넘는 그의 판매가격의 초과분에 의해서만 얻지만 말이다. 그렇지만 그는 상품들을 그 가치 이상으로 또는 그 생산가격 이상으로 파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상품들을 그 가치 이하로 또는 그 생산가격 이하로 산업자본가들에게서 샀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인자본은 그것이 총자본에서 이루는 부분에 비례하여 결정적으로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 평균이윤율이 18%라고 말한다면 총자본의 $1/10$ 이 상인자본이 아니고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이 $1/10$ 만큼 떨어지지 않았다면 평균이윤율은 20%일 것이다. 이와 함께 또 생산가격의 더 상세하고 제한적인 규정이 나온다. 생산가격이란 전과 같이 상품의 가격 = 상품의 비용(상품에 들어 있는 불변자본과 가변

자본의 가치) + 그에 대한 평균이윤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 평균이윤이 이제는 달리 규정된다. 평균이윤은 총생산적 자본이 생산하는 총이윤에 의하여 규정되지만 이 총생산적 자본에 대해서만 계산하지 않고——그리하여 이 총생산적 자본이 위에서와 같이 900이고 이윤이 180이면 평균이윤율은 $180/900=20\%$ 로 될 것이다——총생산적 자본+상업자본에 대해 계산하여 900이 생산적 자본이고 100이 상업자본이라면 평균이윤율은 $180/1,000=18\%$ 이다. 따라서 생산가격은 $k(\text{비용})+20$ 이 아니라 $k(\text{비용})+18$ 이다. 평균이윤율에는 이미 총이윤 가운데서 상업자본에 돌아가는 부분이 계산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총상품자본의 실제적 가치 또는 생산가격은 $k+p+h$ (h 는 상업이윤)이다. 따라서 생산가격 또는 산업자본가 자신이 파는 가격은 상품의 실제적 생산가격보다 작다. 또는 상품 전체를 놓고 보면 산업자본가계급이 그것을 파는 가격들은 그 가치보다 작다. 그리하여 위에서 든 예에서는 $900(\text{비용})+900$ 에 대한 18% 즉 $900+162=1,062$ 이다. 이제 상인이 그에게 100의 비용이 든 상품을 118로 판다면 그는 물론 18% 를 덧붙인다. 그러나 그가 100으로 산 상품은 118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는 그 때문에 그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파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생산가격이라는 표현을 위에서 설명한 더 정확한 뜻으로 쓰려고 한다. 그러면 산업자본가의 이윤은 상품의 생산비를 넘는 그 생산가격의 초과분과 같다는 것 그리고 이 산업이윤과 달리 상업이윤은 상인에게서 구매가격인 상품의 생산가격을 넘는 판매가격의 초과분과 같다는 것. 그러나 상품의 실제적 가격은 상품의 생산가격+상인(상업)이윤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산업자본이 다만 상품의 가치 속에 이미 잉여가치로서 들어 있는 이윤을 실현하듯이 상업자본이 이윤을 실현하는 것은 잉여가치 또는 이윤이 모두 산업자본에 의하여 상품가격 속에 실현되지는 않기 때문이다.³⁹⁾ 그리하여 상인의 판매가격이 구매가격을 넘는 것은 그 판매가격이 총가치 이상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매가격이 총가치 이하이기 때문이다.

39) 존 벨러스(『빈민, 공업, 상업, 식민 및 비도덕에 관한 논문집』, 런던 1699년, 10페이지).

따라서 상인자본은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데는 참가하지 않지만 잉여가치를 평균이윤으로 균등화하는 데는 참가한다. 그러므로 일반적 이윤율에는 이미 상인자본의 몫으로 돌아가는 잉여가치에서 뺀 것 즉 산업자본의 이윤에서 뺀 것이 들어 있다.

이제까지의 서술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1) 상인자본이 산업자본에 비하여 크면 클수록 산업이윤의 율은 더 작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된다.

2) 제1편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윤율은 언제나 실제적 잉여가치율보다 작은 율을 표현한다면 즉 노동의 착취정도를 언제나 너무 작게 표현하여 예컨대 위에서 든 경우 $720c+180v+180m$ 에서 100%의 잉여가치율을 겨우 20%의 이윤율로 표현한다면 이 관계는 상인자본에 돌아가는 몫을 계산에 넣을 때 평균이윤율 자체는 다시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 경우에는 20%가 아니라 18%로 나타나는 만큼 더욱더 벌어진다. 따라서 직접 착취하는 자본가의 평균이윤율은 이윤율을 실제보다 작게 표현한다.

다른 모든 사정들이 의연 같다고 전제하면 상인자본의 상대적 규모는 그 자본의 회전속도에 반비례하며 따라서 재생산과정 일반의 에네르기에 반비례한다(그러나 여기에서 중간층거래자(Zwerggattung)인 소매상인의 자본은 예외이다). 과학적 분석과정에서는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의 출발점으로 되는 것은 산업자본들과 그 자본들의 경쟁이며 후에 가서야 비로소 상인자본이 끼어드는 것으로 하여 시정, 보충, 변경된다. 역사적 발전과정에서는 사태가 정반대이다. 맨 먼저 상품들의 가격을 값진적건 그 상품들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본은 상업자본이고 맨 먼저 일반적 이윤율이 형성되는 분야는 재생산과정을 매개하는 유통분야이다. 상업이윤이 맨 처음에는 산업이윤을 규정한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도입되고 생산자 자신이 상인으로 될 때에 비로소 상업이윤은 총잉여가치 가운데서 사회적 재생산과정에서 쓰이는 총자본의 해당하는 부분으로서의 상업자본의 몫에 돌아가는 그러한 부분으로 귀착된다.

상인자본이 끼여들으로써 이윤이 보충적으로 균등화되는 데서 보게 된 것은 상품의 가치 속에는 상인이 선대한 화폐자본분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 요소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상인이 그의 이윤을 얻게 되는 가

격에 대한 덧붙이는 상품의 가치 가운데서 생산적 자본이 상품의 생산가격에 가산하여 넣지 않고 제쳐놓은 부분과 같을 따름이라는 것이다. 즉 이 화폐자본은 산업자본가의 고정자본, 소비되지 않고 따라서 그 가치가 상품가치의 어떠한 요소도 이루지 않는 한에서의 그 고정자본과 사정이 같다. 즉 상인은 상품자본의 구매가격에서 그 상품자본의 생산가격인 G 를 화폐로 보상한다. 상인의 판매가격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 $G + \Delta G$ 인데 이 ΔG 는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상품가격에 대한 덧붙이를 표현한다. 따라서 상인이 상품을 판다면 ΔG 외에 그가 상품을 사들이는 데서 선대한 맨 처음의 화폐자본이 그에게로 되돌아온다. 여기에서 다시 알 수 있는 것은 상인의 화폐자본은 일반적으로 다름 아니라 화폐자본으로 전화된 산업자본가의 상품자본인데 이것은 산업자본가가 상인에게가 아니라 직접 마지막 소비자에게 팔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상품자본의 가치량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상인의 화폐자본은 사실상 마지막 소비자에 의한 상품의 지불을 앞당길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까지 가정하여 온 바와 같이 상인이 아무런 비용도 쓰지 않을 경우, 즉 상인이 생산자에게서 상품을 사는 데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는 화폐자본 외에는 유동자본이건 고정자본이건 상품의 형태변화, 구매와 판매과정에서 다른 어떠한 자본도 선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만 옳다. 그러나 유통비를 살펴보는 데서(『자본론』, 제2부, 제6장) 본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 유통비는 부분적으로는 상인이 다른 유통대리인들에게 넘겨줘줄 수 있는 비용으로서 나타나며 부분적으로는 직접 상인의 특수한 업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나타난다.

이 유통비가 어떠한 종류의 것이건, 그것이 순전한 상인의 업 자체에서 생기며 따라서 상인의 특수한 유통비에 속하건 또는 그것이 발송, 운수, 보관 등과 같이 유통과정 안에서 뒤따라 덧붙는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비용들을 표시하건 그것은 상인의 편에서는 상품구매에 선대한 화폐자본 외에 언제나 이 유통수단들을 사들이고 그에 대한 지불을 하기 위하여 선대한 추가자본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비용요소는 유동자본으로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상품의 판매가격에 덧붙는 요소로서 전부 들어가며 고정자본으로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그 마멸정도에 따라

들어간다. 그러나 그것은 상인의 순수한 유통비와 마찬가지로 상품의 가치를 이루는 요소로서 들어간다. 그러나 유동자본이건 고정자본이건 이 모든 추가자본은 일반적 이윤율을 형성하는 데 들어간다.

상인의 순수한 유통비(따라서 발송, 운수, 보관 등을 위한 비용은 제쳐놓고)는 상품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즉 상품에서 화폐로이건 화폐에서 상품으로이건 그 가치를 실현하며 상품들의 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들이다. 이 경우에 유통행위를 하는 동안에 계속 될 수 있으며 상인적인 일이 그와 완전히 떨어져서 존재할 수 있는 생산과정들은 아주 제쳐놓고 본다. 예컨대 실제적 운수업과 발송업은 거래와는 아주 다른 경영부문들일 수 있고 또 사실 그러한데 이와 마찬가지로 사고 팔아야 할 상품들도 또한 창고와 그 밖의 공공장소에 쌓여 있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하여 생기는 비용들은 상인이 그 비용들을 선대해야 하는 한에서 제3자들이 상인에게 가산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상인자본이 가장 순수하게 그리고 다른 기능들과 가장 적게 엉켜서 나타나는 원래의 도매 상업에서 볼 수 있다. 운수업자, 철도업자, 선박업자는 상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는 내용들은 사고파는 데 드는 비용들이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 비용들은 결국 계산, 부기, 시장비, 통신비 등이다. 이에 필요한 불변자본은 사무소, 종이, 우편요금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밖의 비용들은 상업임금노동자들을 쓰는 데 선대되는 가변자본이다(발송비, 운수비, 관세 등은 부분적으로는 상인이 상품을 사들이는 데 그것들을 선대한다고, 따라서 그것들은 그에게서는 구매가격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비용들은 상품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데 드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든다. 그것들은 순수유통비이다. 그것들은 직접적 생산과정에는 들어가지 않고 유통과정에 들어가며 따라서 총재생산과정에 들어간다.

이 비용들 가운데서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유일한 부분은 가변자본에 지출되는 부분이다(그 밖에 연구해야 할 것은 첫째로 필요노동만이 상품의 가치에 들어간다는 법칙은 유통과정에서는 어떻게 들어맞는가, 둘째로 상인자본에서는 축적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세째로 상인자본은

사회의 실제적 총재생산과정에서 어떻게 기능을 노는가 하는 것이다).

이 비용들은 생산물이 상품으로서 떠는 경제적 형태에서 생긴다.

산업자본가들 자신이 그들의 상품을 서로 직접 팔기 위하여 잃는 노동시간, 따라서 객관적으로 말하여 상품의 유통기간이 이 상품들에 아무런 가치도 전혀 덧붙이지 않는다면 이 노동시간을 산업자본가들이 아니라 상인이 들인다고 하여 이 노동시간이 다른 성격을 얻지 않는다는 것은 명백하다. 상품(생산물)의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의 상품(생산수단)으로의 전화는 산업자본의 필요한 기능이며 따라서 사실상 인격화된 자체의 자본가의 필요한 조작이다. 그러나 이 기능들은 가치를 늘이지도 않으며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도 않는다. 상인이 이 조작들을 수행함으로써 또는 유통분야에서의 자본의 기능들을 생산적 자본가가 수행하지 않게 된 후에 그 기능들을 매개함으로써 상인은 다만 산업자본가를 대신하여 나선 셈이다. 이 조작들에 드는 노동시간은 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 필요한 조작들에 쓰이지만 아무런 가치도 덧붙이지 않는다. 상인이 이 조작들을 수행하지 않는다면(따라서 또 그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그의 자본을 산업자본의 유통대리인으로서 적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산업자본가의 끊어진 기능을 더 이어가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자본가로서 그가 선대한 자본에 비례하여 산업자본가계급이 생산하는 이윤량에서 한몫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잉여가치 총량에서 한몫 보기 위하여, 그가 자본가로서 선대한 것을 증식하기 위하여 상인자본가가 임금노동자를 쓸 필요는 없다. 그의 기업과 그의 자본이 보잘 것 없다면 그 자신이 그가 쓰는 유일한 노동자일 수 있다. 그에게 지불되는 것은 이윤 가운데서 상품의 구매가격과 그 실제적 생산가격의 차이에서 생기는 부분이다.

그런데 한편 또 상인이 선대한 자본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그가 실현하는 이윤은 높은 보수를 받는 기능임금노동자의 임금보다 전혀 크지 않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그보다 작을 수도 있다. 사실 상인과 함께 생산적 자본가의 직접적 상업대리인들인 구입원, 판매원, 출장원들이 기능을 놓고 있는데, 이들은 임금의 형태로건 또는 팔 때마다 받는 이윤배당금(Provision, Tantieme)의 형태로건 상인과 똑같거나 그보다 많은 수입

을 얻는다. 첫째 경우에는 상인이 자립적인 자본가로서 상업이윤을 집어 넣는다. 둘째 경우에는 산업자본가의 임금노동자인 사무원에게 임금의 형태로건 그를 직접적 대리인으로 하는 산업자본가의 이윤에 대한 비례적 몫의 형태로건 이윤의 한 부분이 지불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 그의 주인은 산업이윤도 상업이윤도 다 집어넣는다. 그러나 유통대리인 자신에게 그의 수입이 단순한 임금으로서 그가 수행하는 노동에 대한 보수로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의 이윤의 크기가 높은 보수를 받는 노동자의 임금과 같을 뿐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경우 그의 수입원천은 오직 상업이윤이다. 그것은 그의 노동이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통조작이 길어지면 산업자본가로서는 다음과 같이 된다.

1) 산업자본가가 생산과정 자체의 지휘자로서의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받는 만큼 그는 시간의 손실을 본다. 2) 그의 생산물이 화폐형태나 상품형태로 유통과정, 즉 생산물의 가치가 불어나지 않으며 직접적 생산과정이 중단되는 과정에 더 오래 머물게 된다. 직접적 생산과정이 중단되지 않게 하려면 생산을 제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 화폐자본을 선대하여 생산과정이 늘 똑같은 규모로 계속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어쨌든 이제까지의 자본으로 더 작은 이윤을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이윤을 얻기 위하여 추가적 화폐자본을 선대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 이것은 산업자본가 대신에 상인이 나서더라도 마찬가지다. 산업자본가가 유통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대신에 상인이 그렇게 한다. 산업자본가가 유통을 위하여 추가자본을 선대하지 않으면 안될 대신에 상인이 그렇게 한다. 또는 똑같은 것이지만 산업자본의 더 큰 부분이 끊임없이 유통과정을 떠돌아다닐 대신에 상인의 자본이 전적으로 유통과정에 집중된다. 산업자본가가 더 적은 이윤을 생산할 대신에 산업자본가는 자기 이윤의 한 부분을 상인에게 떼어주지 않으면 안된다. 상인자본이 필요한 한도에 머무르는 한에서 자본의 기능이 이렇게 나누어짐으로써 더 적은 시간을 유통과정에 들리게 되고 유통과정을 위하여 더 적은 추가자본을 선대하게 되며 총이윤에서 상업이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손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작아

진다. 위에서 든 예 $720c+180v+180m$ 에서 100의 상인자본이 함께 있게 되어 산업자본가가 162 즉 18%의 이윤을 얻게 된다면 따라서 18을 빼게 된다면 필요한 추가자본은 상인자본의 이러한 자립화가 없이는 아마 200이 될 것이며 그 경우에는 산업자본가의 총선대금이 900이 아니라 1,100으로 될 것이고 따라서 180의 잉여가치에 대하여 이윤율은 겨우 $16\frac{4}{11}\%$ 일 것이다.

그런데 그 자신이 상인인 산업자본가가 유통 중에 있는 그의 생산물이 화폐로 다시 전화되기 전에 새로운 상품을 사는 데 쓰는 추가자본 외에도 자기의 상품자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따라서 유통과정을 위하여 또 자본(사무소 비용과 상업노동자의 임금)을 선대하였다면 이 지출은 비록 추가자본은 이루지만 잉여가치는 이루지 않는다. 그것들은 상품의 가치에서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상품가치의 한 부분은 다시 이 유통비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추가적 잉여가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총자본을 놓고 보면 이것은 사실상 그 총자본의 한 부분이 가치증식과정에 들어가지 않는 부차적 조작들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사회적 자본의 이 부분이 끊임없이 이 목적을 위하여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된다. 개별적 자본가와 산업자본가계급 전체에 있어서는 그렇게 됨으로써 이윤율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똑같은 양의 가변자본을 가동시키는 데 필요한 한에서 추가자본을 덧붙일 때마다 생기는 결과이다.

그런데 유통 자체와 결부된 이러한 추가비용들을 산업자본가가 아니라 상인자본가가 들이는 한에서 이윤율은 역시 이렇게 줄어드는데 다만 그 정도가 적어지며 또 그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제는 사태가 다음과 같이 된다. 즉 상인은 이러한 비용들이 들지 않을 때 필요하였을 자본보다 더 많은 자본을 선대하며 또 이 추가자본에 대한 이윤은 상업이윤 총액을 늘이고 따라서 상인자본은 산업자본과 함께 평균이윤율을 균등화하는데 더 큰 규모로 들어가며 따라서 평균이윤이 떨어진다. 위에서 든 우리의 예에서 100의 상인자본 외에 50의 추가자본이 문제로 되고 있는 비용들을 위하여 선대된다면 180의 총잉여가치가 이제는 900의 생산적 자본 더하기 150의 상인자본, 모두 1,050에 대하여 나누어진다. 따라서 평균이

윤율은 $17 \frac{1}{7} \%$ 로 떨어진다. 산업자본가는 상품을 상인에게 $900 + 154 \frac{2}{7} = 1,054 \frac{2}{7}$ 로 팔며 상인은 그것을 $1,130 (1,080 + \text{그가 다시 보상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분 } 50)$ 으로 판다. 어쨌든 자본이 상인자본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결부하여 상업비가 집중되고 따라서 상업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제 문제는 상인자본가, 여기에서는 상품거래자가 쓰는 상업임금노동자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상업노동자는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임금노동자이다. 첫째로, 그의 노동을 소득으로서 지출하는 화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상인의 가변자본으로 사며 따라서 또 개인적 봉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인이 선대한 자본의 가치증식을 위하여 사는 한에서 그러하다. 둘째로, 그의 노동력의 가치, 따라서 그의 임금이 다른 모든 임금노동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노동생산물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수한 노동력의 생산비와 재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상업노동자와 산업자본이 직접 쓰는 노동자 사이에는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사이 따라서 산업자본가와 상인 사이에 생기는 것과 똑같은 차이가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상인은 단순한 유통대리인으로서 가치도 잉여가치도 생산하지 않으므로(왜냐하면 상인이 자기의 잡비에 의하여 상품에 덧붙이는 추가가치는 이전부터 존재한 가치의 덧붙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이 경우에 상인이 그 불변자본의 이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서지만 말이다) 그가 똑같은 기능을 노는 데서 쓰는 상업노동자도 그를 위하여 직접 잉여가치를 창조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산적 노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업노동자들의 임금도 노동력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상인은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치부하는 것이 아니며 그는 자기의 비용을 계산하는 데서 그가 노동에 대하여 다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넣지 않는다고 보는데 다시 말하면 상인은 자기의 사무원 등을 속여먹음으로써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상업임금노동자들을 놓고 말할 때 그들이 직접 잉여가치(이윤은 잉여가치의 전화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를 생산하지 않는 데도 어떻게 직

접 고용주를 위하여 이윤을 생산하는가를 설명하는 데 바로 난점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 문제는 사실상 상업이윤의 일반적 분석에 의하여 이미 해결되었다. 산업자본은 그것이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은 상품 속에 들어 있으며 상품에서 실현된 노동을 팔아서 이윤을 얻는데 이와 꼭 마찬가지로 산업자본은 상품 속에(그 상품의 생산에 지출된 자본이 총산업자본의 해당한 부분으로서 기능을 노는 한에서) 들어 있는 부지불노동에 대한 댓가를 생산적 자본에 전부 지불하지 않으면서도 상품이 팔릴 때 아직 상품 속에 들어 있으며 자체가 댓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댓가를 지불케 함으로써 이윤을 얻는다. 잉여가치에 대한 상인자본의 관계는 잉여가치에 대한 산업자본의 관계와는 다르다. 산업자본은 남의 부지불노동을 직접 차지함으로써 잉여가치를 생산한다. 상인자본은 이 잉여가치의 한 부분을 산업자본에서 넘겨 받음으로써 그 부분을 차지한다.

산업자본은 가치를 실현하는 그 기능에 의해서만 재생산과정에서 자본으로서 기능을 놀며 따라서 기능을 노는 자본으로서 총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에서 한몫을 끌어낸다. 상업자본의 이윤량은 개별적 상인에게서는 그가 이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자본량에 달렸으며 상인은 그 사무원의 부지불노동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은 자본을 사고파는 데 적용할 수 있다. 상업자본가는 그의 화폐를 자본으로 되게 하는 기능 자체를 대부분 그의 노동자들이 놀게 한다. 이 사무원의 부지불노동은 잉여가치를 창조하지는 않지만 그에게 잉여가치를 차지하게 하는데 이것은 이 자본에 대하여는 결과로 보아 똑같다. 따라서 그 부지불노동은 그 자본에 있어서 이윤의 원칙이다. 그렇지 않다면 상인의 업은 결코 대규모로는, 결코 자본주의적으로는 운영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의 부지불노동이 생산적 자본을 위하여 직접 잉여가치를 창조하듯이 상업임금노동자의 부지불노동은 상업자본으로 하여금 그 잉여가치에서 한몫 보게 한다.

난점은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상인자본의 노동시간과 노동은 상인에게 이미 생산된 잉여가치에서 한몫 보게 하지만 결코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이 아니므로 상인이 상업노동력을 사들이는 데 지출하는 가변자본은 사

정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다. 이 가변자본을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선대되는 상인자본에 넣어야 하는가? 넣어서는 안된다면 이것은 이윤율의 균등화의 법칙과 모순되는 것 같다. 100만을 선대자본으로서 볼 수 있다면 어느 자본가가 150을 선대하겠는가? 넣어야 한다면 이것은 상업자본의 본질과 모순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종류의 자본이 자본으로서 기능을 노는 것은 그것이 산업자본처럼 남의 노동을 가동시킴으로써가 아니라 그 자체가 활동함으로써 즉 사고파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며 바로 이에 대해서만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만 상업자본이 생산한 잉여가치의 한 부분을 넘겨 받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연구해야 한다. 상인의 가변자본유통에서의 필요노동의 법칙. 상인의 노동은 그 불변자본의 가치를 어떻게 유지하는가. 총재생산과정에서 상인자본이 노는 역할. 끝으로 한편으로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으로, 다른 편으로는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으로 갈라지는 것.)

상인이 누구나 전적으로 그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만 회전시킬 수 있는 자본만큼만 가지고 있다면 상인자본은 끝없이 세분화될 것이다. 이 세분화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과 더불어 생산적 자본의 생산규모와 조각이 늘어남에 따라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자본 사이의 불균형은 더 심해질 것이다. 자본이 생산분야에서 집중되는 데 따라 자본은 유통분야에서 분산될 것이다. 산업자본가의 순전히 상인적인 일은 따라서 그의 순전히 상인적인 지출은 그가 예컨대 100명의 상인을 상대로 할 대신에 1,000명의 상인을 상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끝없이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상인자본의 자립화에서 나오는 이익의 큰 부분이 잃어질 것이다. 순전히 상인적인 비용 외에 품별, 발송 등 다른 유통비용도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산업자본에 관한 것이다. 이제는 상인자본을 살펴보자. 첫째로, 순전히 상인적인 노동에 관하여 보자. 큰 숫자로 계산한다고 하여 작은 숫자로 계산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드는 것은 아니다. 100파운드 스텔링씩 10번 구입하면 1,000파운드 스텔링분을 한 번 구입하는 시간의 열 곱이 든다. 10명의 소상인들을 대상한다면 한 명의 대상인을 대상하는 것보다 열곱의 통신비, 종이, 체신요금이 든다. 상업

기업소에서 분업이 세밀히 되어 누구는 부기를 하고, 누구는 출납을 보며, 누구는 통신을 맡아 하며, 누구는 사들이고, 누구는 팔며, 누구는 출장을 나가는 등 이렇게 하면 노동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하며 그리하여 도매상업에서 쓰는 상업노동자수는 기업의 규모에 비하여 전혀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상업에서는 산업에서보다 훨씬 더 기능이 큰 규모에서 진행되건, 작은 규모에서 진행되건, 이에는 관계없이 똑같은 기능이 똑같은 노동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또 상인의 기업에서는 역사적으로 산업작업장에서보다 일찍이 집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음에는 불변자본에 대한 지출을 보자. 100개의 작은 사무소는 한 개의 큰 사무소보다 비용이 형편없이 더 들며 100개의 작은 창고는 한 개의 큰 창고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등 적어도 선대해야 할 내용으로서 들어가는 운수비는 상인의 기업에서는 세분화에 따라 늘어난다.

산업자본가는 자기 기업의 상업부분에 더 많은 노동과 유통비를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똑같은 상인자본도 수많은 작은 상인들에게 나누어지면 이 세분화로 하여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할 것이며 그 밖에 또 똑같은 상품자본을 회전시키는 데 더 큰 상인자본이 필요할 것이다.

상품들을 사고파는 데 직접 투하되는 총상인자본을 B 라고 하고 그에 따라 상업보조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데 지출되는 가변자본을 b 라고 하면 $B+b$ 는 상인이 누구나 보조자없이 해나가는 경우, 따라서 자본의 한 부분이 b 에 투하되지 않는 경우의 총상인자본 B 보다 작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난점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였다.

상품의 판매가격은 1) $B+b$ 에 대한 평균이윤을 지불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이것은 이미 $B+b$ 가 일반적으로 맨 처음의 B 의 줄어든 것이며 b 가 없는 경우에 필요한 상인자본보다 작은 것을 표시한다는 것으로 하여 해명되었다. 그러나 이 판매가격은 2)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b 에 대한 이윤 외에도 지불된 임금 즉 상인의 가변자본 b 도 보상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뒤에 말한 이것이 난점인 것이다. b 는 가격의 새로운 구성부분을 이루는가 그렇지 않으면 $B+b$ 로 얻은 이윤 가운데서 상업노

동자에 대해서만 임금으로 나타나고 상인 자신에 대해서는 그의 가변자본의 단순한 보상분으로서 나타나는 부분에 지나지 않는가? 뒤에 든 경우에는 상인이 자기가 선대한 자본 $B+b$ 에 대하여 얻은 이윤은 일반적이윤율에 따라 $(B+b)$ 즉 그가 임금의 형태로 지불하지만 그 자체는 아무런 이윤도 낳지 않는 b 를 더한 것에 돌아가는 이윤이다.

사실 b 의 한도(수학적 의미에서)를 알아내는 것이 문제이다. 우선 난점이 어디 있는가를 정확히 확정하자. 상품을 직접 사고파는 데 지출하는 자본을 B 라고 하고 이 기능을 노는 데서 쓰이는 불변자본(물적 거래비)을 K 라고 하며 상인이 지출하는 가변자본을 b 라고 하자.

B 의 보상은 결코 난점이 아니다. 그것은 상인으로서의 실현된 구입가격이며 공장주로서는 생산가격에 지나지 않는다. 상인은 이 가격을 지불하며 다시 살 때 그는 B 를 그의 판매가격의 한 부분으로서 다시 받는다. 이 B 외에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B 에 대한 이윤도 얻는다. 예컨대 상품에 100파운드 스텔링이 들고 이에 대한 이윤이 10%라고 하자. 그러면 상품은 110으로 팔린다. 상품에는 이미 전에 100이 들었다. 100의 상인자본은 그 상품에 10을 덧붙일 따름이다.

그 다음에 K 를 들어보면 이것은 기껏하여 생산자가 팔고 사들이는 데서 쓸 불변자본부분과 크기가 같지만 실은 그보다 적다. 그러나 그것은 생산자가 직접 생산에서 소비하는 불변자본에 대한 추가분을 이룰 것이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상품의 가격에서 끊임없이 보상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같은 것이지만 상품 가운데서 해당한 부분이 이 형태로 끊임없이 지출되지 않으면 안되며 사회의 총자본을 놓고 보면 이 형태로 끊임없이 재생산되지 않으면 안된다. 선대한 불변자본의 이 부분은 직접 생산에 투하된 불변자본 전체량과 마찬가지로 이윤율에 제한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산업자본가가 자기 기업의 이 상업부분을 상인에게 맡기는 한에서 산업자본가가 이 자본부분을 선대한 필요는 없다. 그 대신 상인이 그것을 선대한다. 이것은 명목상 그러할 뿐이다. 상인은 그가 소비한 불변자본(물적 거래비)을 생산하지도 않으며 재생산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불변자본의 생산은 어떤 산업자본가들의 특수한 기업활동 또는 그 한 부분으로서 나타나며 그리하여 이 산업자본가들과 생활수단을 생

산하는 자본가들에게 불변자본을 제공하는 자본가들과 똑같은 역할을 논다. 따라서 상인은 첫째로 이 불변자본을 보상받으며 둘째로 이에 대한 이윤을 얻는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것으로 하여 산업자본가들의 이윤은 줄어든다. 그러나 분업과 결부된 집적과 절약으로 하여 줄어드는 정도는 산업자본가 자신이 이 자본을 선대하였을 때보다 작다. 이윤율이 덜 줄어드는 것은 그렇게 선대되는 자본이 더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는 판매가격이 $B+K$ +이윤($B+K$ 에 대한)으로 이루어진다. 판매가격의 이 부분은 결코 난점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b 즉 상인이 선대한 가변자본이 등장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판매가격은 $B+K+b$ +이윤($B+K$ 에 대한)+이윤(b 에 대한)으로 된다.

B 는 구매가격을 보상할 뿐이며 B 에 대한 이윤 외에는 아무런 부분도 이 가격에 덧붙이지 않는다. K 는 K 에 대한 이윤뿐 아니라 K 자체를 덧붙인다. 그러나 K +이윤(불변자본의 형태로 선대된 유통비부분인 K 에 대한)+해당한 평균이윤은 산업자본가의 손에서는 상업자본가의 손에서 보다 클 것이다. 평균이윤이 줄어드는 것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즉 선대된 산업자본에서 $B+K$ 를 빼고 계산한 완전한 평균이윤에서 $B+K$ 에 대한 평균이윤을 뺀 것이 상인에게 지불되고 그리하여 이 뺀 것이 특수한 자본인 상인자본의 이윤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b +이윤(b 에 대한) 또는 이윤율을 10%로 보고 있는 주어진 경우에 $b+1/10b$ 는 사정이 다르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난점이 있다.

상인이 b 로 사는 것은 우리의 전제에 의하면 다만 상인적 노동 즉 자본유통의 기능들인 $W-G$ 와 $G-W$ 를 매개하는 데 필요한 노동이다. 그러나 상업적 노동은 자본이 상인자본으로서 기능을 놀기 위하여, 자본이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와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를 매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노동이다. 그것은 가치를 실현하기는 하지만 아무런 가치도 창조하지 않는 노동이다. 그리고 자본이 이 기능들을 수행하는 한에서만, 따라서 자본가가 이 조작들, 이 노동을 자기의 자본을 가지고 수행하는 한에서만 이 자본은 상인자본으로서 기능을 놀며 일반적 이윤율을 규제하는 데 참가한다. 즉 총이윤에서 자체의 배당금을 끌어낸다.

그러나 b +이윤(b 에 대한)에서는, 첫째로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것으로 보이며(산업자본가가 상인에게 상인 자신의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건 상인에게서 지불을 받는 사무원의 노동에 대하여 지불하건 마찬가지므로), 둘째로 상인 자신이 수행해야 할 이 노동에 지불한 금액에 대한 이윤이 지불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인자본은, 첫째로 b 를 돌려받으며, 둘째로 i 에 대한 이윤을 받는다.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것은 상인자본이, 첫째로 상인적인 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게 하는 노동에 대한 보수를 지불케 하기 때문이며, 둘째로 상인자본이 자본으로서 기능을 노는 것으로 하여 즉 상인자본이 기능을 노는 자본으로서의 자체에 대하여 이윤으로 보수가 지불되는 노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이윤을 지불케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것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 $B=100$, $b=10$, 이윤율=10%라고 하자. $K=0$ 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구매가격 가운데서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고 이미 처리된 이 요소를 필요없이 다시 계산에 넣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판매가격은 $B+P+b+P(=B+Bp'+b+bp')$ 여기에서 p' 는 이윤율) $=100+10+10+1=121$ 일 것이다.

그러나 b 를 상인이 임금으로 지출하지 않는다면—— b 는 상업노동 즉 산업자본가가 시장에 내놓는 상품자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노동에 대하여 지불될 따름이므로——사태는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B=100$ 으로 사거나 팔기 위하여 상인은 자기의 시간을 들일 것인데 이것이 그가 들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가정하자. b 또는 10이 대표하는 상업노동은 그에 대한 보수를 임금으로 지불하지 않고 이윤으로 지불한다면 또 하나의 상인자본 100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i 에 대한 $10\%=b=10$ 이기 때문이다. 이 둘째 $B=100$ 은 추가적으로 상품의 가격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것의 10%는 물론 들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100씩의 두 개 조작 200으로 상품을 $200+20=220$ 에 사는 것으로 될 것이다.

상인자본은 유통과정에서 기능을 노는 산업자본의 한 부분의 자립화된 형태와 다른 것이 절대로 아니므로 상인자본과 관련된 모든 문제들은 다음과 같이 하여 풀지 않으면 안된다. 즉 상인자본에 독특한 현상들이 아직 자립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아직 산업자본과의 직접적 연관에서,

산업자본의 변종에 고유한 현상으로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에서 문제를 우선 제기하여야 한다. 사무소가 작업장과 다른 것처럼 상업자본은 줄곧 유통과정에서 기능을 논다. 따라서 바로 이곳, 산업자본가 자신의 사무소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b 를 우선 연구하여야 한다.

우선 이 사무소는 산업작업장에 비하면 언제나 보잘 것 없이 작은 것이다.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것은 명백하다. 즉 생산의 규모가 확대되는데 따라 상품자본의 모습으로 있는 생산물을 판다거나 들어온 화폐를 다시 생산수단으로 전화하며 또 모든 것을 계산하는 것과 같은 상업자본의 유통과정에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할 상업조작들은 늘어난다. 가격계산, 부기, 출납, 통신은 모두 이에 속한다. 생산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산업자본의 상인조작들, 따라서 가치와 잉여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동과 그 밖의 유통비도 결코 비례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만큼 커진다. 그리하여 원래의 사무소 성원인 상업임금노동자들을 쓸 필요가 있게 된다. 이 노동자들을 위한 지출은 임금의 형태로 한다 하더라도 생산적 노동에 사들이는 데 지출되는 가변자본과는 구별된다. 그 지출은 직접 잉여가치를 늘이지 않으면서 산업자본가의 지출, 선대해야 할 자본의 양을 늘인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창조된 가치를 실현하는 데만 쓰이는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지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다른 모든 지출과 마찬가지로 이 지출도 이윤율을 줄어들게 한다. 왜냐하면 선대되는 자본은 늘지만 잉여가치는 늘지 않기 때문이다. 잉여가치 m 은 의연 다름없는데 선대되는 자본 C 는 $C + \Delta C$ 로 늘어난다면 이윤율 m/C 대신에 그보다 작은 이윤율 $m/(C + \Delta C)$ 이 나온다. 따라서 산업자본가는 이 유통비를 불변자본에 대한 그의 지출과 꼭 마찬가지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한다. 그리하여 산업자본과 그의 상업적 임금노동자들과의 관계는 그의 생산적 임금노동자들과의 관계와는 똑같지 않다. 다른 모든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에 이 생산적 노동자들을 많이 쓰면 쓸수록 생산은 더 늘어나며 잉여가치 즉 이윤은 더 커진다.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된다. 생산규모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실현해야 할 가치, 따라서 잉여가치가 크면 클수록, 따라서 생산되는 상품자본이 크면 클수록 사무소 비용은 상대적으로는 아니라 하더라도 절대적으로는 그만큼 더

늘어나며 일종의 분업이 더 늘어난다. 이윤이 어느 정도로 이 지출의 전제로 되는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봉급이 늘어남에 따라 그 한 부분을 이윤에서 몇 프로 떼내어 상업일꾼에게 지불한다는 데서 나타난다. 일부는 가치의 계산과 결부되어 있고 일부는 가치의 실현과, 일부는 실현된 화폐를 다시 생산수단으로 전화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는 매개하는 조작들에 지나지 않는 노동, 따라서 그 규모가 생산되어 실현해야 할 가치의 크기에 달려 있는 노동, 이러한 노동이 직접적인 생산노동과 마찬가지로 각각 이 가치의 크기와 양의 원인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그 결과로서 작용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다른 유통비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많은 것을 재고 달며 포장하고 수송하려면 많은 상품이 있어야 한다. 포장노동, 수송노동 등의 양은 그 활동의 대상인 상품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상업노동자는 직접 잉여가치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노동의 가격은 그의 노동력의 가치, 따라서 그 생산비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한편 노동력의 긴장, 지출, 마모와 같은 노동력의 행동에서의 발현은 다른 모든 임금노동자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노동력의 가치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임금은 그가 자본가를 도와 실현하는 이윤의 양에 결코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가 자본가에게 값을 치르게 하는 것과 그가 자본가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 크기가 각각 다르다. 그가 자본가에게 이윤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가 직접 잉여가치를 창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분적으로 부지불노동을 수행하는 한에서 잉여가치의 실현비용을 줄어들게 하여주기 때문이다. 원래의 상업노동자는 임금노동자 가운데서 보수가 높은 부류, 그의 노동이 평균노동 이상인 기능노동의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그 임금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진전함에 따라 평균노동에 비하더라도 떨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사무소 안에서의 분업 때문인데 이것으로 하여 노동능력이 일면적으로만 발전하게 되며 이러한 발전에는 자본가로서는 부분적으로 전혀 비용이 들지 않는다. 그것은 노동자들의 기능은 그 기능 자체에 의하여 발전하며 게다가 분업에 따라 기능이 일면적으로 되면 될수록 그 발전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자본주

의적 생산양식이 학습방법 등을 실무에 더 적응하게 하면 할수록 과학과 인민교육의 발전에 따라 예비교육인 상업지식과 언어지식 등이 더욱더 빨리, 더 쉽게, 더 일반적으로, 더 값싸게 재생산되기 때문이다. 인민교육의 보급은 이러한 종류의 노동자들을 전에는 그러한 일에서 배제되어 있었고 더 나쁜 생활양식에 물젖어 있던 부류에서 보충할 수 있게 한다. 게다가 인민교육의 보급으로 하여 사람들이 더 밀려들게 되며 이에 따라 경쟁이 더 심해진다. 그러므로 일부 예외는 있지만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진전함에 따라 이 사람들의 노동력은 가치가 감소된다. 그들의 노동능력은 느는데 그들의 임금은 떨어진다. 자본가는 더 많은 가치와 이윤을 실현해야 할 때에는 이 노동자들의 수를 늘린다. 이 노동이 늘어나는 것은 언제나 잉여가치가 느는 결과이지 결코 그 원인이 아니다.³⁹⁻¹⁾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문제는 둘로 갈라진다. 한편으로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으로서의(따라서 더 나아가 규정하면 상업자본으로서의) 자본의 기능들은 산업자본의 일반적인 규정적 형태들이다. 또 한편으로 특수한 자본들, 따라서 또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이 전적으로 이 기능들을 수행한다. 그리하여 이 기능들은 자본의 가치증식의 특수한 분야로 된다.

상업기능과 유통비는 상업자본에서만 자립화되어 있다. 산업자본이 유통과 접촉하는 측면은 산업자본 자체가 끊임없이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의 형태로 정재하는 데 있을 뿐 아니라 작업장과 나란히 사무소가 있는 데에도 있다. 그러나 그 측면이 상업자본에서는 사무소가 그 유일한 작업장을 이룬다. 유통비의 형태로 적용되는 자본부분은 도매상인에게서는 산업가에게서보다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때 산업작업장에

39-1) 상업 프롤레타리아트의 운명에 대하여 1865년에 쓴 이 예언이 얼마나 옳았는가 하는 것은 그 후 모든 상업조직들에 능숙하고 3~4개 나라말에 능통하면서도 런던 시에서 한 주일에 25실링——기능있는 단야공의 임금보다도 훨씬 낮은——으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수백 명 독일인 사무원들의 이야기가 잘 말하여준다. 원고에는 두 페이지의 빈 데가 있는데 이것은 이 점을 더 상세히 전개해야 할 것이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밖에 「자본론」, 제2부, 제6장 「유통비」, 105~113페이지[이전집, 조문판, 제24권, 제4장, 153~161페이지]를 지적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맑스는 이미 이와 관련된 많은 것을 언급하였다. —F. E.

있는 자체의 사무소 외에 전체 산업자본가계급이. 그렇게 쓰지 않으면 안되었을 자본부분이 개별적 상인들의 손에 집적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 개별적 상인들은 유통기능들이 계속되도록 마음을 쓰면서 그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유통비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에는 유통비가 비생산적 비용으로 나타나며 또 그러하다. 상인에게서 유통비가 그의 이윤의 원천으로서 나타나며 이 이윤은 일반적 이윤율을 전제로 하면 유통비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이 유통비로 하게 되는 지출은 상업자본으로서는 생산적 지출이다. 따라서 상업자본이 사는 상업노동도 상업자본으로서는 직접적인 생산노동이다.

제 18 장 상인자본의 회전. 가격

산업자본의 회전은 산업자본의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의 통일이며 따라서 총재생산과정을 포괄한다. 그런데 상인자본의 회전은 사실상 상품자본의 자립화된 움직임에 지나지 않으므로 다만 상품의 형태변화의 첫째 국면인 $W-G$ 를 특수한 자본이 자체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으로서 표시할 따름이며 상인의 관점에서 본 $G-W-G$ 는 상인자본의 회전을 표시한다. 상인은 사고 즉 그의 화폐를 상품으로 전화하고 그 다음에 팔며 즉 똑같은 상품을 다시 화폐로 전화하며 이와같이 끊임없이 되풀이하여 간다. 유통 안에서는 산업자본의 형태변화가 언제나 W_1-G-W_2 로서 표시된다. 즉 생산된 상품 W_1 을 팔아 들어온 화폐를 새로운 생산수단인 W_2 를 사기 위하여 이용한다. 이것은 W_1 과 W_2 의 실제적 교환이며 그리하여 똑같은 화폐가 두 번 사람의 손을 바꾼다. 화폐의 움직임이 각각 다른 두 종류의 상품들인 W_1 과 W_2 의 교환을 매개한다. 그러나 상인에게는 즉 $G-W-G'$ 에서는 반대로 똑같은 상품이 두 번 사람의 손을 바꾼다. 상품은 화폐가 상인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을 매개할 따름이다.

예컨대 상인자본이 100파운드 스텔링인데 상인이 이 100파운드 스텔링으로 상품을 사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을 110파운드 스텔링으로 판다면 100이라는 그의 이 자본은 한 번 회전한 것이며 한 해 회전수는 이 움직임 $G-W-G'$ 가 한 해에 얼마나 자주 되풀이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의 차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다 제쳐놓고 본다. 그것은 이 비용들이 우리가 여기에서 우선 살펴보아야 할 형태에는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주어진 한 상인자본의 회전수는 단순한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유통이 되풀이되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 열 번 유통하는 똑같은 탈러 은화로 그 가치가 있는 상품을 열 번 사듯이 예컨대 상인의

똑같은 화폐자본 100으로는 열 번 회전하면서 그 가치가 있는 상품들을 열 번 사며 따라서 모두 열 곱의 가치가 있는 1,000의 상품자본을 실현한다. 그러나 차이는 다음과 같은 데 있다. 즉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유통에서는 똑같은 화폐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거치고 따라서 똑같은 기능을 여러 번 수행하며 그리하여 유통하는 그 화폐의 양을 그 유통속도로 매꾼다. 그러나 상인에게서는 얼마만한 분량의 화폐로 이루어지건간에 똑같은 화폐자본, 똑같은 화폐가치가 되풀이하여 그 가치액만큼의 상품자본을 사서 팔며 따라서 똑같은 사람의 손에서 되풀이하여 $G + \Delta G$ 로서 즉 가치 더하기 잉여가치로서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자본회전으로서의 상인자본 회전의 특징이다. 상인자본은 그것이 유통에 던져넣는 화폐보다 더 많은 화폐를 유통에서 끊임없이 끌어낸다. 어쨌든 상인자본의 회전이 빨라지는 데 따라(신용제도가 발전하면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기능도 우세하게 된다) 똑같은 화폐량의 유통도 빨라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상품거래자본의 회전의 되풀이는 결코 사고파는 것의 되풀이와 다른 것을 표현하지 않지만 산업자본 회전의 되풀이는 총재생산과정(소비과정을 포함한)의 주기성과 갱신을 표현한다. 그런데 상인자본에서는 이것은 외부적 조건으로서만 나타난다. 산업자본은 상인자본의 회전이 빠를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끊임없이 상품들을 시장에 내놓고 또 상품들을 시장에서 다시 끌어내지 않으면 안된다. 재생산과정이 일반적으로 느리면 상인자본의 회전도 느리다. 상인자본은 생산자본의 유통을 매개함으로써 그 유통기간을 단축한다. 그러나 상인자본은 산업자본의 회전기간에 역시 하나의 제한을 이루는 생산기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생산기간은 상인자본의 회전에 대한 첫째 제한이다. 그러나 둘째로 재생산에 의하여 생기는 생산적 소비로 하여 이루어지는 제한들을 제쳐놓고 보면 상인자본의 회전은 결국 총개인적 소비의 속도와 규모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품자본 가운데서 소비밀천으로 들어가는 모든 부분이 그 속도와 규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한 상인이 똑같은 상품을 언제나 다른 상인에게 팔고 이러한 종류의 유통이 투기시기에는 매우 활발하게 보일 수 있는 상인세계 안에

서의 회전은 아주 제쳐놓고 보면) 상인자본은 첫째로 생산자본에서의 W-G 국면을 줄인다. 둘째로 근대적 신용체계에서는 상인자본이 사회의 총화폐자본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상인자본은 이미 산 것을 종국적으로 팔기 전에 자체의 구입을 되풀이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우리의 상인이 직접 마지막 소비자에게 팔진, 그렇지 않고 이 두 사람 사이에 12명이나 되는 다른 상인들이 끼어 있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끊임없이 온갖 주어진 제한을 넘어 추진될 수 있는 재생산과정의 신축성이 매우 큰 조건에서는 재생산과정은 생산 자체에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거나 매우 신축성있는 제한을 받을 뿐이다. 따라서 상품의 성질 자체로 하여 생기는 W-G와 G-W의 분리 외에도 여기에서는 허구적인 수요가 생긴다. 상인자본의 움직임은 자립화됨에도 불구하고 유통분야 안에서의 상업자본의 움직임과 다른 것이 결코 아니다. 그러나 상인자본은 자립화됨으로써 어느 한계 안에서는 재생산과정의 제한에 의존하지 않고 움직이며 따라서 재생산과정을 그 제한을 넘어 밀고 나가기까지 한다. 안으로는 매어 있고 밖으로는 자립화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상인자본은 내부적 연관이 강제적으로 공황에 의하여 회복되는 점까지 이르게 한다.

공황은 맨 먼저 직접적 소비와 관계가 있는 소매업에서 나타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도매업과 이 도매업에 사회의 화폐자본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제공하는 은행분야들에서 나타나고 터지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 때문이다.

공장주는 실제로 수출업자에게 팔 수 있으며 이 수출업자는 또한 자기의 외국손님에게 팔 수 있으며 수입업자는 자기의 원료를 공장주에게 팔고 공장주는 자기의 생산물을 도매업자에게 팔 수 있다 등등. 그러나 어디인가 보이지 않는 여기저기에 상품은 팔리지 않은 채로 있게 된다. 또는 모든 생산자들과 중간상인들의 저장품이 점차 차넘치게 된다. 소비는 바로 그러한 때에 최고점에 이른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한 상업자본가가 많은 다른 상업자본가들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이며 부분적으로는 상업자본가들이 고용하는 노동자들이 다 일자리를 얻어 보통 때보다 더 많이 지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가들의 수입이 늘어나는 데 따라 그들의 지출도 또한 늘어난다. 그 밖에도 이미 본 바와 같이(『자본론』,

제2부, 제3편) 불변자본과 불변자본 사이에 끊임없는 유통이 일어나는데 (축적이 축진되는 것은 제쳐놓고 보더라도) 이 유통은 그것이 개인적 소비에 들어가지 않는 한에서 한편으로는 개인적 소비에 달려 있지 않은 것이지만 종국적으로는 개인적 소비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다. 왜냐하면 불변자본의 생산은 결코 불변자본 자체를 위하여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개인적 소비로 들어가는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분야들에서 더 많은 불변자본이 사용됨으로써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불변자본의 생산은 내다보이는 수요에 끌려 한동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부문들에서는 상인들이나 산업가들의 경기가 매우 좋다. 먼 시장에서 파는 상인들(또는 국내에서도 예비품을 저장한 상인들)의 지출이 매우 더디고 보잘 것 없는 양으로 되돌아와 은행들이 지불을 독촉하거나 사들인 상품에 대한 어음이 상품이 팔리기 전에 만기가 되자 공황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강제판매 즉 지불하기 위한 판매가 시작된다. 그와 함께 겉보기의 번영을 단번에 끝장내는 파국이 닥쳐온다.

그러나 상인자본의 회전의 외면성과 불합리성은 똑같은 상인자본의 회전이 아주 서로 다른 생산자본들의 회전을 동시에 또는 차례로 매개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하다.

그러나 상인자본의 회전은 서로 다른 산업자본들의 회전을 매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품자본의 형태변화의 상반되는 국면들도 매개할 수 있다. 상인은 예컨대 아마천을 공장주에게서 사서 그것을 표백업자에게 판다. 따라서 이 경우에 똑같은 상인자본의 회전, 사실상 아마천의 실현인 똑같은 $W-G$ 는 서로 다른 두 산업자본들에서의 상반되는 두 국면을 표시한다. 상인이 일반적으로 생산적 소비를 위하여 파는 한에서 그의 $W-G$ 는 언제나 어떤 산업자본의 $G-W$ 를 표시하며 그의 $G-W$ 는 언제나 다른 어떤 산업자본의 $W-G$ 를 표시한다.

이 장에서 그러하듯이 상인이 상품을 사들이는 데 지출하는 금액 외에 선대하는 자본부분인 유통비 K 를 빼놓는다면 물론 상인이 이 추가자본에 대하여 얻는 추가이윤인 $\angle K$ 도 떨어져나간다.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것이 상인자본의 이윤과 회전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고 하는 경우에 극히 논리적이며 수학적으로 옳은 방식이다.

1파운드의 사탕의 생산가격이 1파운드 스텔링이라면 상인은 100파운드 스텔링으로 100파운드의 사탕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가 한 해 동안에 이 양을 사서 팔며 연평균이윤율이 15%라면 그는 100파운드 스텔링에 15파운드 스텔링을 덧붙일 것이며 1파운드의 사탕의 생산가격인 1파운드 스텔링에는 3실링을 덧붙일 것이다. 따라서 그는 1파운드의 사탕을 1파운드 스텔링 3실링으로 팔 것이다. 반대로 1파운드의 사탕의 생산가격이 1실링으로 떨어진다면 상인은 100파운드 스텔링으로 2,000파운드의 사탕을 살 것이며 1파운드를 1실링 $14\frac{1}{5}$ 페니로 팔 것이다. 사탕매매업에 지출한 100파운드 스텔링의 자본에 대한 한 해 이윤은 전과 다름없이 15파운드 스텔링일 것이다. 다만 상인은 한 경우에는 100파운드를, 다른 경우에는 2,000파운드를 팔지 않으면 안된다. 생산가격이 높거나 낮은 것은 이윤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지만 매 파운드의 사탕의 판매가격 가운데서 상업이윤으로 되는 부분의 크기 즉 상인이 일정한 양의 상품(생산물)의 가격에 덧붙이는 크기에는 아주 큰 결정적 의의를 가진다. 한 상품의 생산가격이 낮으면 상인이 그 구매가격에 즉 일정한 양의 그 상품에 선대하는 금액도 적으며 따라서 이윤율이 주어진 조건에서는 그가 이 주어진 양의 값싼 상품에서 얻는 이윤 총액도 적다. 또는 똑같은 것으로 되지만 상인은 그 경우에 예컨대 100이라는 주어진 자본으로 많은 양의 이 값싼 상품을 살 수 있으며 그가 100에서 얻는 총이윤 15는 이 상품량의 개개 부분에 조금씩 나누어진다. 생산가격이 높으면 이와 반대로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은 상인이 거래하는 상품을 생산하는 산업자본의 생산성이 높은가 낮은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예컨대 한때의 네델란드 동인도회사처럼 상인이 독점자이며 동시에 생산도 독점하고 있는 경우들을 빼놓으면 상인이 개개의 상품에 대하여 적은 이윤으로 많은 상품을 팔려고 하는가, 많은 이윤으로 적은 상품을 팔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 상인의 의사에 달렸다는 흔히 돌아가는 표상보다 더 엉터리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상인의 판매가격에 대한 두 가지 제한은 다음과 같다. 즉 한편으로는 상품의 생산가격인데 상인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또 한편으로는 평균이윤율인데 상인은 이것도 역시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상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 그가 값비싼 상품을

거래하려고 하는가, 값싼 상품을 거래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뿐인데 그러나 여기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크기와 다른 사정들이 또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상인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정도에 달린 것이지 상인의 의향에 달린 것이 아니다. 생산을 독점한 옛 네덜란드 동인도회사처럼 순전히 상인적인 회사만이 기껏하여 자본주의적 생산의 초기에나 맞는 방법을 아주 사정이 달라졌는데도 계속하려고 생각할 수 있었다.⁴⁰⁾

위에서 말한 널리 퍼진 편견은 어쨌든 이윤 등에 관한 모든 그릇된 표상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한 상업의 관점과 상인적 편견에서 생기는 것인데 그러한 편견이 유지되는 것은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경쟁의 현상들인데 그러나 이 현상들은 총상인자본에 한몫씩 끼어든 개별적 상인들 사이에서 상업이윤이 나누어지는 것과만 관계가 있다. 예컨대 한 상인이 자기의 적수를 거꾸러뜨리기 위하여 값싸게 파는 경우이다.

둘째로, 로서 교수 따위의 경제학자가 라이프찌히에서 아직도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판매가격에 변동을 일으킨 것은 현명성과 인간성⁵⁴⁾이라는 이유였으며 생산양식 자체의 변혁의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세째로, 노동생산력이 높아진 결과에 생산가격이 떨어지고 따라서 또 판매가격이 떨어지면 흔히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빨리 늘어나며 이에 따라

40) “일반적 법칙에 의하면 가격이 어떻든 간에 이윤은 언제나 똑같다. 이윤은 밀물, 썰물에 떠있는 물체처럼 제 자리를 유지한다.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상인은 가격을 올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을 내린다”(코베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런던, 1841년, 20페이지)——여기에서는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듯이 보통의 상업만을 문제로 삼고 있으며 투기는 문제가 아니다. 투기를 살펴보는 것은 상업자본의 분류에 관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는 테두리를 벗어난다. “상업이윤은 자본에 덧붙여지는 가치이며 이것은 가격에는 달려 있지 않은 것이다. 둘째 것(투기이윤)은 자본가치나 가격 자체의 변화에 기초한 것이다”(같은 책, 128페이지).

시장가격도 오르며 그리하여 판매가격은 평균이윤보다 많은 이윤을 낳는다는 것이다.

내째로, 어떤 상인은 더 많은 자본을 자기의 기업에서 더 빨리 회전시키기 위하여 판매가격을 끌어내릴 수 있다(이것은 언제나 그가 가격에 붙이는 보통의 이윤을 끌어내리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상인들 자체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쟁과만 관계되는 것들이다.

이미 『자본론』 제1부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가격이 높고 낮은 것은 주어진 자본에 의하여 생산되는 잉여가치량도 잉여가치율도 규정하지 않는다. 비록 주어진 노동량에 의하여 생산되는 상대적 상품량이 어떤가에 따라 하나하나의 상품가격과 따라서 또 이 가격의 잉여가치부분이 크거나 작지만 말이다. 개개 상품량의 가격은 그 가격이 가치에 상응하는 한에서 이 상품에 대상화된 노동의 총량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적은 노동이 많은 상품에 대상화되면 하나하나의 상품가격은 낮으며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는 적다. 상품에 체화된 노동이 지불노동과 부지불노동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따라서 이 상품가격 가운데서 얼마만한 양이 잉여가치를 표시하는가 하는 것은 이 총노동량 따라서 상품의 가격과도 아무런 관계도 없다. 그러나 잉여가치율은 개별적 상품의 가격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의 절대량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적 크기 즉 똑같은 상품에 들어 있는 임금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의 상품에서 잉여가치의 절대적 크기는 작더라도 잉여가치율은 클 수 있다. 하나하나의 상품에서 잉여가치의 이 절대적 크기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동의 생산성에 달려 있으며 그 다음에야 비로소 노동이 지불노동과 부지불노동으로 나누어지는 데 달려 있다.

그런데 상업에서의 판매가격에서는 생산가격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진 전제이다.

상업에서 상품가격이 이전에 높았던 것은 1) 생산가격이 높았던 탓 즉 노동의 생산성이 낮았던 탓이며 2) 일반적 이윤율이 없었던 탓인데 이것은 상인자본이 자본들의 전반적 움직임에 의하여 돌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잉여가치량을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멎은 것은 이 두 측면으로 보아 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한 결과

이다.

상업부문이 다른 데 따라 상인자본의 회전은 더 길거나 더 짧으며 따라서 한 해 동안의 회전수가 더 크거나 더 작다. 똑같은 상업부문 안에서는 경제순환의 국면이 다른 데 따라 회전은 더 빠르거나 더 더디다. 그러나 평균회전수가 있게 되는데 이것은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상인자본의 회전은 산업자본의 회전과 다르다. 이것은 사태의 본성에서 나온다. 즉 산업자본의 회전의 한 국면이 원래의 상인자본 또는 적어도 그 한 부분의 완전한 회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상인자본의 회전은 또 이윤 및 가격 규정에 대한 관계에서도 다르다.

산업자본의 회전은 한편으로는 재생산의 주기성을 표현하며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시장에 내던져지는 상품량은 이에 달려 있다. 한편으로는 또 유통기간이 제한——늘어날 수 있는 제한이지만——을 조성하는데 이 제한은 생산과정의 규모에 작용함으로써 가치와 잉여가치의 형성에 일정하게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회전은 한 해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에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적극적 요소로서는 아니지만 제한하는 요소로서——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반대로 상인자본에서는 평균이윤율은 주어진 크기이다. 상인자본은 이윤 즉 잉여가치를 창조하는 데 직접 참가하지는 않으며 상인자본이 총자본에서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산업자본이 생산한 총이윤량에서 배당되는 것을 끌어내는 한에서만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자본론』 제2부 제2편에서 든 바와 같이 산업자본의 회전수가 크면 클수록 그 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이윤의 양은 그만큼 더 크다. 그런데 물론 일반적 이윤율이 형성됨으로써 총이윤은 서로 다른 자본들 사이에 나누어지는데 그 자본들이 총이윤의 생산에 직접 참가하는 데 비례해서가 아니라 그 자본들이 총자본에서 얼마만한 부분들을 이루는가에 따라 즉 그 자본들의 크기에 비례하여 나누어진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사태의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총산업자본의 회전수가 크면 클수록 이윤량 즉 한 해에 생산되는 잉여가치의 양은 그만큼 더 크며 따라서 그 밖의 사정들이 같으면 이윤율도 그만큼 더 크다. 상인자본은 사정이 다르다. 상인자본에서 이윤율은 그 크기가 주어져 있는데 '이 크기는 한

편으로는 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이윤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며 또 한편으로는 총산업자본의 상대적 크기에 의하여 즉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선대되는 자본의 총액에 대한 총산업자본의 양적 비율에 의하여 규정된다. 총산업자본의 회전수는 물론 총자본에 대한 총산업자본의 비율에 즉 유통에 필요한 상인자본의 상대적 크기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미친다. 왜냐하면 필요한 상인자본의 절대적 크기와 그 상인자본의 회전속도가 반비례한다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상인자본의 상대적 크기 즉 총자본에서 상인자본이 차지하는 몫은 다른 모든 사정들이 같다면 총자본의 절대적 크기에 의하여 규정된다. 총자본이 10,000이고 상인자본이 그 1/10이라면 상인자본은 1,000이며 총자본이 1,000이라면 그 1/10은 100이다. 그리하여 상인자본의 상대적 크기는 똑같다 하더라도 그 절대적 크기는 총자본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총자본의 1/10이라는 상인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주어진 것으로서 본다. 그런데 상인자본의 이 상대적 크기 자체는 또 회전에 의하여 규정된다. 회전이 빠르면 상인자본의 절대적 크기는 예컨대 첫째 경우에는 1,000파운드 스텔링이고 둘째 경우에는 100파운드 스텔링이며 따라서 그 상대적 크기는 1/10이다. 회전이 더디면 그 절대적 크기는 가령 첫째 경우에는 2,000이고 둘째 경우에는 200이다. 그러므로 그 상대적 크기는 총자본의 1/10에서 1/5로 늘었다. 상인자본의 평균회전을 짧게 하는 사정들, 예컨대 운수수단의 발전은 그만큼 상인자본의 절대적 크기를 줄이며 따라서 일반적인 이윤율을 높인다. 반대의 경우에는 또 그 반대로 된다. 이전의 사회관계에 비하여 발전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상인자본에 이중으로 작용한다. 즉 똑같은 상품량이 더 적은 양의, 실제로 기능을 노는 상인자본으로 회전된다. 상인자본의 회전이 빨라지고 그 기초인 재생산과정의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산업자본에 대한 상인자본의 비율이 줄어든다. 또 한편으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하는 데 따라 모든 생산이 상품생산으로 되고 따라서 모든 생산물이 유통대리인의 손에 들어오는 데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이 덧붙는다. 즉 생산자 자신이 직접 현물로 소비하던 많은 생산물과 돈을 받지 않고 하던 많은 일들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소규모로 진행된 이전의 생산 방식에서는 생산자들의 아주 많은

부분이 자기들의 상품을 직접 소비자들에게 팔았으며 또는 소비자들의 개인적 주문을 받고 일하였다. 그러므로 이전의 생산방식들에서는 상업자본은 그것이 회전시키는 상품자본에 비하여 크지만 상업자본은

1) 절대적으로는 작다. 그것은 총생산물의 비할 나위 없이 작은 부분이 상품으로서 생산되어 상품자본으로서 유통에 들어와 상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상업자본이 작은 것은 상품자본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상업자본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그 회전이 더 더딘 것으로 해서만이 아니며 또 그것이 회전시킨 상품량에 비해서만은 아니다. 상업자본이 더 큰 것은 이 상품량의 가격, 따라서 또 그에 선대해야 할 상인자본이 노동의 생산성이 비교적 낮은 결과에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보다 더 크며 따라서 똑같은 가치가 더 적은 상품량으로 표시되기 때문이다.

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더 많은 상품량이 생산될 뿐 아니라(여기에서 이 상품량의 가치가 줄어든다는 것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 똑같은 생산물량 예컨대 곡물량이 더 많은 상품량을 이룬다. 즉 그 가운데서 더욱더 많은 부분이 상업에 들어온다. 그 결과 어쨌든 상인자본의 양이 늘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예컨대 해운업, 철도, 전신 등 유통에 투하되는 모든 자본이 늘어난다.

3) 그러나 자본들의 경쟁에서 풀어야 할 관점이지만 기능을 늘지 않는 상인자본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진전에 따라, 소매업에 쉽게 침투되는 데 따라, 투기가 성행하고 풀려나오는 자본이 넘쳐나는 데 따라 늘어난다.

그러나 총자본에 비한 상인자본의 상대적 크기를 주어진 것으로서 전제하면 서로 다른 상업부문들에서의 회전의 차이는 상인자본의 몫에 돌아가는 총이윤의 크기에도 일반적 이윤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인의 이윤은 그가 회전시키는 상품자본의 양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 회전을 매개하기 위하여 선대하는 화폐자본의 크기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한 해의 일반적 이윤율이 15%이고 상인이 100 파운드 스텔링을 선대한다면 그의 자본이 한 해에 한 번 회전하는 경우에 그는 자기의 상품을 115파운드 스텔링으로 판다. 그의 자본이 한 해

에 다섯 번 회전한다면 그는 100으로 사들이는 상품자본을 한 해에 다섯 번 103으로 팔 것이며 따라서 한 해에는 500의 상품자본을 515로 팔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선대자본 100에 대하여 한 해의 이윤은 전과 다름없이 15로 된다. 그렇지 않다면 상인자본은 그 회전수에 비례하여 산업자본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낳는 것으로 될 것인데 이것은 일반적 이윤율의 법칙과 모순된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상업부문들에서의 상인자본의 회전수는, 상품들의 상업가격에 직접 영향을 준다. 상업에서의 가격덧붙이 즉 주어진 자본의 상업이윤 가운데서 하나하나의 상품의 생산가격에 덧붙이는 부분의 높이는 서로 다른 영업부문들의 상인자본의 회전수 또는 회전속도와 반비례한다. 상인자본이 한 해에 다섯 번 회전한다면 그 자본은 같은 가치의 상품자본에 대하여 한 해에 한 번밖에 회전하지 못하는 다른 상인자본이 같은 가치의 상품자본에 덧붙이는 것의 1/5밖에 덧붙이지 않는다.

서로 다른 상업부문들의 자본의 평균회전기간이 판매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다음과 같은 것으로 된다. 즉 상인자본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 한 해의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상인자본의 상인적 조작의 특수한 성격과는 관계없이 규정되어 있는 똑같은 이윤량이 이 회전속도에 비례하여 똑같은 가치의 상품량에 서로 다르게 나누어져서 예컨대 한 해에 다섯 번 회전하는 경우에는 상품가격에 $15/5=3\%$ 가 덧붙여지는데 한 해에 한 번 회전하는 경우에는 15%가 덧붙여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상업부문들의 상업이윤율이 똑같더라도 그 부문들의 회전기간에 비례하여 상품들의 판매가격은 이 상품들의 가치에 대하여 계산되는 전혀 다른 백분율만큼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산업자본의 회전기간은 생산되는 하나하나의 상품가치의 크기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비록 회전기간이 착취받는 노동의 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어진 자본이 주어진 기간에 생산하는 가치와 잉여가치의 양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말이다. 생산가격을 놓고 본다면 이 사실은 가리워지고 달리 보이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오직 서로 다른 상품들의 생산가격이 위에서 설명한 법칙들에 따라 그 상품들의 가치와 어긋나기 때문이다. 총생산과정, 총산업자본이 생산하는 총상품량을 살

떠본다면 일반적 법칙이 확증된다는 것을 곧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자본에서 가치형성에 대한 회전기간의 영향을 더 세밀히 살펴보면 상품들의 가치는 그 상품들에 들어 있는 노동시간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일반적 법칙과 정치경제학의 기초로 돌아가게 되는데 상업가격에 미치는 상인자본의 회전의 영향은 다음과 같은 현상들을 보여준다. 즉 중간고리들을 아주 자세히 분석하지 않고서는 순전히 제멋대로 가격을 규정하는 것처럼 즉 자본이 한 해 동안에 일정한 양의 이윤을 갑자기 얻으려고 마음먹은 그것에 의하여 그저 가격이 규정되는 것처럼 보인다. 즉 회전의 이 영향으로 하여 마치도 유통과정 자체가 어느 한계 안에서는 생산과정과 관계없이 상품의 가격을 규정하는 것같이 보이는 것이다. 재생산의 총과정에 대한 온갖 피상적인 뒤집힌 견해들은 상인자본을 살펴보는 데서 그리고 상인자본의 독특한 움직임이 유통대리인들의 머리속에서 불러일으키는 표상들에서 나온 것들이다.

독자들이 유감스럽게 이 점을 인정한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현실적, 내적 연관의 분석은 아주 복잡하고 꼼꼼한 일이라면, 눈으로 볼 수 있고 현상으로 나타날 뿐인 움직임을 현실적인 내적 움직임으로 되게 하는 것이 과학이 할 일이라면 자본주의적 생산대리인과 유통대리인의 머리속에서 생산법칙들과 완전히 어긋나며 외관적인 움직임이 의식에서 표현된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생산법칙들에 대한 표상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이다. 상인이나 증권투기업자나 은행업자의 표상들은 완전히 왜곡된 것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공장주의 표상들은 그들의 자본의 유통행위로 하여 그리고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로 하여 왜곡되어 있다.⁴¹⁾ 경쟁은 이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역시 완전히 왜곡된 역할을 한다. 가치와 잉여가치의 한계들이 주어져 있다면 자본들의 경쟁이 어떻게 가치를 생산가격으로 더 나아가서는 상

41) 다음에 드는 지적은 아주 소박하지만 동시에 아주 옳다. “그러므로 똑 같은 상품도 판매자가 다르면 그 가격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정에 근거하여 아주 흔히 부정확한 계산이 있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펠러와 오데르만, 『상인적 산술의 전체』, 제7판, 1859년, 451페이지) 이것은 가격규정이 얼마나 순이론적인가 즉 추상적인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업가격으로 전화하며 잉여가치를 평균이윤으로 전화하는가를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한계들이 없으면 경쟁이 왜 일반적 이윤율을 그 한계가 아니라 이 한계로, 1,500%가 아니라 15%로 되게 하는가 하는 것을 절대로 알 수 없다. 경쟁은 일반적 이윤율을 기껏하여 하나의 수준으로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준 자체를 규정하기 위한 요소는 경쟁에는 절대로 없다.

따라서 상인자본의 입장에서는 회전 자체가 가격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또 한편으로 산업자본의 회전속도는 그것이 주어진 자본으로 하여금 많건적건 노동을 착취할 수 있게 하는 한에서 이윤량에 대하여,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데 상업자본에서는 이윤율이 외적으로 주어져 있으며 이윤율과 잉여가치의 형성의 내적 연관은 완전히 사라지고 있다. 똑같은 산업자본이 그 밖의 사정들이 의연 같은 경우 특히 유기적 구성이 같은 경우에 한 해에 두 번이 아니라 네 번 회전한다면 이 산업자본은 두 곱의 잉여가치, 따라서 이윤을 생산한다. 이것은 이 자본이 회전을 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보다 완성된 생산양식을 독점하게 되자 또 독점하고 있는 동안에는 뚜렷이 나타난다. 반대로 서로 다른 상업부문들에서 회전기간이 다른 것은 일정한 상품자본의 한 회전에서 얻는 이윤이 이 상품자본들을 회전시키는 화폐자본의 회전수에 반비례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윤은 작아도 회전은 빨리라는 것은 바로 소매상점 주인이 지켜야 할 원리 중의 원리이다.

어쨌든 개개 상업부문의 상인자본의 회전에 관한 이 법칙은——서로 보충하는 더 빠른 회전과 더 더딘 회전의 교체를 제쳐놓고 보더라도——이 부문에 투하된 총상인자본의 평균회전에 대해서만 들어맞는다는 것은 자명하다. B와 똑같은 부문에서 활동하는 A라는 자본의 회전수는 평균회전수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다른 자본들의 회전수는 이에 따라 더 적거나 더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이 부문에 투하된 상인자본 총량의 회전은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개별적 상인이나 소매상인에게는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는 이 경우에 추가이윤을 얻는데 그것은 산업자본가가 평균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생산할 때에 추가이윤을 얻는 것과 똑같다. 경쟁으로 하여 할 수 없으면 그는 자기의

이윤을 평균수준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자기의 동료들보다 값싸게 팔 수 있다. 그가 빨리 회전시킬 수 있는 조건 예컨대 판매장소를 살 수 있다면 그는 그것에 대하여 특별세를 지불할 수 있다. 즉 그의 초과이윤의 한 부분이 지대로 전화된다.

제19장 화폐거래자본

화폐가 산업자본과 상품거래자본의 유통과정——이제는 이 상품거래자본도 덧붙일 수 있다(이 상품거래자본이 산업자본의 유통운동의 한 부분을 담당하여 그 운동을 자체의 고유하고 독특한 운동으로서 수행하는 만큼)——에서 수행하는 순전히 기술적인 운동은 그것이 이 운동을 그리고 이 운동만을 자체의 독특한 조작으로서 하는 특수한 자본의 기능을 늘게 자립화되면 이 자본을 화폐거래자본으로 만든다. 산업자본 더 자세히는 또 상품거래자본의 한 부분은 화폐자본 일반으로서뿐 아니라 이 기술적 기능을 노는 화폐자본으로서도 늘 화폐형태로 있을 것이다. 이제는 총자본에서 일정한 부분이 화폐자본형태로 분리되고 자립화되는데 이 부분의 자본주의적 기능은 전적으로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의 모든 계급들을 위하여 이 조작들을 수행하는 데 있다. 상품거래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자본의 형태로 유통과정에 있는 산업자본의 한 부분이 분리되어 재생산과정의 이 조작들을 나머지 전체 자본을 위하여 수행한다. 따라서 이 화폐자본의 운동은 역시 재생산과정에 있는 산업자본의 자립화된 한 부분의 운동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이 새로 투하되는 경우에만 또 그 한에서만——축적의 경우에도 그렇지만——화폐형태의 자본은 운동의 출발점 및 종점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일단 과정에 들어선 개개 자본에서는 출발점이나 종점이 통과점으로서 나타날 뿐이다. 산업자본이 생산분야에서 나와 다시 생산분야로 들어갈 때까지 형태변화 $W'-G-W$ 를 거쳐야 하는 한에서는 이미 단순상품유통의 경우에 본 바와 같이 G 는 사실상 형태변화의 한 국면이 끝난 결과이며 이 국면과 맞서며 이 국면을 보충하는 국면의 출발점으로 될 뿐이다. 그리고 상업자본에서는 산업자본의 $W-G$ 가 언제나 $G-W-G$ 로서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업자본에서도 그것이 일단 기능을 늘게 되

자 실지 과정은 줄곧 $W-G-W$ 이다. 그러나 상업자본은 $W-G$ 와 $G-W$ 행위들을 동시에 한다. 즉 한 자본은 다른 자본이 $G-W$ 단계에 있는데 $W-G$ 단계에 있을 뿐 아니라 똑같은 자본이 생산과정의 연속성으로 하여 끊임없이 사는 동시에 끊임없이 판다. 똑같은 자본이 줄곧 동시에 두 단계에 있다. 그 한 부분은 화폐로 전화되고 그후에 상품으로 도로 전화되는데 다른 부분은 동시에 상품으로 전화되고 그후에 화폐로 도로 전화된다.

여기에서 화폐가 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노는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노는가 하는 것은 상품교환의 형태에 달려 있다. 두 경우에 다 자본가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화폐를 지불해야 하며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화폐를 지불받아야 한다. 화폐를 지불하고 화폐를 받아들이는 순전히 기술적인 이 조작은 그 자체로서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노는 한에서는 차액을 계산하고 청산하는 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노동이다. 이 노동은 하나의 유통비로 되며 결코 가치를 창조하는 노동이 아니다. 이 노동은 어떤 특수한 부류의 대리인들이나 자본가들이 나머지 전체 자본가들의 계급을 위하여 수행함으로써 짊어진다.

자본의 일정한 부분은 끊임없이 퇴장화폐, 잠재적 화폐자본으로서 있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구매수단의 예비금, 지불수단의 예비금, 적용되기를 기다리는 화폐형태로 있는 유평자본이 그것이다. 그리고 자본의 한 부분은 끊임없이 한 형태로 되돌아온다. 이 때문에 돈을 받아들이고 지불하고 부기를 하는 외에도 퇴장화폐를 보관할 필요가 있게 되는데 이것 역시 하나의 특수한 조작이다. 따라서 이것은 사실상 퇴장화폐가 끊임없이 유통수단과 지불수단으로 풀려나가는 것이며 또한 팔려서 들어오고 지불기한이 되어 들어오는 화폐로 퇴장화폐가 도로 형성되는 것이다. 자본의 기능 자체와는 분리되어 화폐로서 존재하는 자본부분의 이 끊임없는 움직임. 이 순전히 기술적인 조작은 특수한 노동과 비용, 유통비를 들이게 하는 것이다.

분업으로 하여 자본의 기능들에 의하여 생긴 이 기술적 조작들은 될 수 있는 한에서 전체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어떤 부류의 대리인들이나 자본가들에 의하여 전적으로 그들만이 노는 기능들로서 수행되며 또는

그들의 손에 집중된다. 여기에서도 상인자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분업은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특수한 기업으로 되며 또 그것이 특수한 기업으로서 전체 계급의 화폐기구를 위하여 수행되기 때문에 집중되며 대규모로 실시된다. 그런데 또 이 특수한 기업 안에서 서로 독립한 각각 다른 부문들로 갈라짐으로써 그리고 이 부문들 안에서 전문적인 기구가 나오게 됨으로써(큰 사무소, 수많은 부기원, 출납원, 심화되는 분업) 분업이 일어난다. 화폐의 지불과 접수, 차액청산, 당좌계정에 올리기, 화폐의 보관 등은 이 기술적 조작들을 필요하게 하는 행위들과 분리되면 이 기능들을 노는 데 선대하는 자본을 화폐거래자본으로 만든다.

서로 다른 조작들이 특수한 기업으로 자립화되어 화폐거래업이 생기는데 이 조작들은 화폐 자체가 서로 달리 규정되는 데로부터, 따라서 또 자본이 화폐자본의 형태로 놀아야 할 화폐의 기능들로부터 나온다.

화폐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서로 다른 공동체 사이에서 생산물들이 교환되는 데서 발전한다는 것을 나는 전에 지적하였다.⁴²⁾

그러므로 화폐거래업, 화폐상품의 거래업은 우선 국제적 교역에서부터 발전한다. 서로 다른 나라들에 특수한 주화가 있게 되자 외국에서 사들이는 상인들은 자기 나라의 주화를 그 지방의 주화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서로 다른 주화들을 세계화폐로서의 순은덩어리나 순금덩어리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 근대적 화폐거래업의 자연발생적 기초의 하나로 보아야 할 돈 바꾸는 업이 나왔다.⁴³⁾ 이로

42) 칼 맑스, 『정치경제학비판』, 베를린, 1859년, 27페이지(이 전집, 러시아어 판, 제13권, 36~37페이지를 보라).

43) “주화들이 무게와 품위로 보나 주조권을 가진 군주들과 도시들의 찍은 도장으로 보나 차이가 큰 데로부터 벌써 하나의 주화로 청산하는 것이 필요하였던 상업에서는 어디서나 한 지방의 주화를 쓸 필요성이 생겼다. 외국시장으로 여행하는 상인들은 현금으로 지불하기 위하여 순은덩어리나 또 순금덩어리를 가지고 다녔다. 또한 돌아갈 때에는 그들은 손에 들어온 지방주화를 은덩어리나 금덩어리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돈바꾸는 업, 귀금속 덩어리를 지방주화와 바꾸거나 그 반대로 하는 일은 매우 널리 퍼진 수입이 좋은 업으로 되었다(윌만, 『중세기의 도시제도』

부터 교환은행들이 발전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은(또는 금)이 유통하는 주 화와 달리 세계화폐로서——지금은 은행화폐 또는 상업화폐로서——기능을 논다. 어음업이 한 나라의 돈 바꾸는 업자가 다른 나라의 돈 바꾸는 업자에게 단순히 여행자에게 지불할 것을 지시하는 한에서 그것은 이미 로마와 회랍에서 원래의 돈 바꾸는 업에서부터 발전한 것이었다.

상품(사치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으로서의 금은의 거래는 금, 은 덩어리거래(Bullion trade) 즉 세계화폐로서의 화폐 기능들을 매개하는 거래의 자연발생적 기초를 이룬다. 이 기능들은 전에 설명한 바와 같이(『자본론』 제1부, 제3장, § Ⅱ) 두 가지다. 즉 국제적 지불들을 청산하기 위해서와 이자를 벌기 위한 자본의 이동으로 하여 각각 다른 하나의 유통분야들 사이를 화폐가 왔다갔다 하는 것, 그와 함께 귀금속의 생산치로부터 세계시장으로 움직이고 서로 다른 나라의 유통분야들 사이에 공급이 분배되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17세기의 대부분에 걸쳐 아직 금세공인이 은행업자의 기능을 놀았다. 국제적 지불들의 청산이 어떻게 어음거래 등으로 더 발전하는가 하는 것은 유가증권업과 관련된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제1부, 본, 1826년, 437, 438페이지). “교환은행이라는 이름은 …어음, 어음중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각종 화폐의 바꾸기에서 나왔다. 1609년에 암스테르담 교환은행이 창설되기 전에 네덜란드의 상업도시들에는 벌써 돈바꾸는 업자와 돈바꾸는 집, 심지어는 교환은행도 있었다. …이 돈바꾸는 업자가 하는 일은 외국상인들이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수많은 각종 주화들을 법적으로 봉용할 수 있는 주화들과 바꿔주는 것이었다. 그들의 활동범위는 점점 넓어졌다. …그들은 당시의 금고업자이며 은행업자로 되었다. 그러나 금고업과 돈바꾸는 업을 겸하는 것을 암스테르담 정부는 위험하다고 보고 이 위험을 미리 막기 위하여 공권력을 가지고 돈바꾸는 업도 금고업도 하게 될 큰 시설을 하나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이 시설이 이름난 1609년의 암스테르담 교환은행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니스, 제노바, 스톡홀름, 함부르크의 교환은행들도 일차적으로 각종 화폐를 바꿀 필요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서 함부르크 은행만이 오늘도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것은 자체의 주화제도가 없는 이 상업도시에서는 그러한 시설에 대한 필요를 아직도 느끼기 때문이다. …”(비제링, 『국민경제실무수첩』, 암스테르담, 1860~1861년, 제1권, 247~248페이지).

전혀 도외시한다. 간단히 말하여 신용업의 모든 특수한 형태들은 여기에 서는 아직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

세계화폐로서는 민족화폐가 자기의 민족적 성격을 벗어던진다. 한 나라의 화폐는 다른 나라의 화폐로 표현되며 그리하여 모든 화폐는 그 내용이 금이나 은으로 되는데 이 금이나 은은 동시에 세계화폐로서 유통하는 두 상품들로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그것들의 가치의 호상비율로 환원된다. 이것을 매개하는 것을 화폐거래업자는 자기의 특수한 업으로 삼는다. 이와같이 돈 바꾸는 업과 금은덩어리 거래는 화폐거래의 시초 형태들이며 민족화폐와 세계화폐로서의 화폐의 두 가지 기능에서 생긴다.

상업 일반에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심지어는 자본주의 이전의 생산양식들에서도 다음과 같이 된다.

첫째로, 화폐가 퇴장화폐로서 쌓인다. 즉 자본 가운데서 늘 화폐형태로 있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지불수단과 구매수단의 예비밀천으로서 쌓인다. 이것은 퇴장화폐의 첫째 형태이며 이 형태에서 그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다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상업자본이 발전하는 조건에서 이루어진다. 두 가지 것은 국내유통에도 국제유통에도 들어 맞는다. 이 퇴장화폐는 끊임없이 유통하여 끊임없이 유통으로 흘러들어가고 끊임없이 유통에서 되돌아온다. 그런데 퇴장화폐의 둘째 형태는 화폐형태로 쉬고 있는, 한때 쓰이지 않고 있는 자본인데 이에겐 새로 축적되었으나 아직 투하되지 않은 화폐자본이 속한다. 이 화폐퇴장 자체에 필요한 기능들은 무엇보다 먼저 화폐의 보관, 부기 등이다.

둘째로, 사는 경우의 화폐의 지출과 파는 경우의 화폐의 접수, 화폐의 지불과 지불금의 접수, 지불금의 청산 등이다. 이 모든 것을 화폐거래업자는 상인들과 산업자본가들을 위하여 우선 금고업자로서 수행한다.⁴⁴⁾

44) “금고업자제도는 아마 네델란드의 상업도시들처럼 그 맨 처음의 자립적 성격을 그렇게도 순수하게 보존하고 있는 곳은 없을 것이다(암스테르담의 금고업자제도의 기원에 관하여는 루차크, 『네델란드의 부』, 라이덴, 1782년, 제2분책, 111을 보라). 그 기능은 부분적으로 옛 암스테르담 교환은행의 기능과 일치한다. 금고업자는 그의 봉사를 받으려는 상인들에게서 일정한 액수의 화폐를 받고 그 대신 그들에게 자기의 장부에서

화폐거래업은 대부기능과 신용거래가 그 밖의 기능들과 결부되자 완전히 발전하며 그 최초의 맹아에서도 벌써 언제나 그러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이자불는 자본을 취급하는 다음 편에서 말하겠다.

금 또는 은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옮기는 금은덩어리 거래 자체는 상품거래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데 상품거래의 결과는 국제지불상태와 서로 다른 시장들에서의 이자율 상태를 표현하는 환자시세에 의하여 규정된다. 금은덩어리 거래업자 자신은 이 결과를 매개할 뿐이다.

화폐를 살펴본 데서 즉 화폐의 움직임과 그 형태의 규정이 어떻게 단순상품유통으로부터 발전하는가를 살펴보는 데서 이미 본 바와 같이(『자

이 액수만큼 신용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들의 채무청구서를 그에게 보내오면 그는 그들 대신에 그것을 징수하고 그 금액을 그들의 돈자리계시의 오른쪽에 올린다. 이와 반대로 그는 그들의 지도서(금고업자 어음—kassiers briefjes)에 대하여 지불하고 그들의 돈자리계시의 왼쪽에 올린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것과 내준 것에 대하여 그는 얼마간의 수수료를 계산하는데 이 수수료는 그를 거쳐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어지간해야만 그의 노동에 알맞는 보수로 된다. 둘이 다 똑같은 금고업자와 거래하는 두 상인들 사이에서 지불들을 청산해야 할 때에는 그러한 지불들은 매우 간단히 서로의 장부에 올림으로써 처리되는데 금고업자는 그날그날 그들이 서로 청구한 것들을 청산한다. 따라서 본래의 금고업은 이렇게 지불들을 매개하는 것이 본업이다. 따라서 그것은 산업기업, 투기, 없는 신용을 여는 것을 배제한다. 왜냐하면 금고업에서는 금고업자가 자기의 장부에서 계시를 연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의 잔고를 넘어 지불하지 않는 것을 규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비체링, 같은 책, 243, 244페이지). 베니스의 금고조합에 관하여: “필요에 의하여 그리고 현금을 이리저리 운반하기가 다른 지방들에서보다 더 까다로운 베니스의 지형으로 하여 이 도시의 도매상인들은 해당한 보증과 감시와 관리 밑에 금고조합들을 내왔다. 이러한 조합의 성원들은 일정한 금액을 맡기고 자기들의 채권자들에게 어음을 내주었다. 그 다음에 그 어음에 대하여 지불된 금액을 올리게 된 장부의 채무자의 계시에서 떼구었으며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잔고에 덧붙여 넣었다. 이것은 이른바 환치은행의 최초의 맹아였다. 이 조합들은 옛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합들을 12세기에 나온 것으로 본다면 그것들을 1171년에 설립한 국채시설과 혼동하는 것이다”(윌만, 같은 책, 453~454페이지).

본론』, 제1부, 제3장)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 유통하는 화폐량의 움직임은 상품의 형태변화 그 규모와 속도에 의하여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자체가 총재생산과정의 한 계기에 지나지 않는 상품의 형태변화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화폐재료인 금과 은을 생산지로부터 얻는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결국 직접적인 상품교환으로 즉 상품으로서의 금, 은과 다른 상품들과의 교환으로 되며 따라서 그 자체는 철이나 그 밖의 금속들의 교환으로 얻은 것이나 다름없이 상품교환의 한 계기이다. 그러나 세계시장에서의 귀금속들의 움직임으로 말하면(여기에서는 이 움직임이 상품자본의 형태로도 진행되는 자본의 대부분을 표현하는 한에서 그 움직임은 제쳐놓고 본다) 이 움직임은 국내의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움직임이 국내의 상품교환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과 똑같이 국제적 상품교환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귀금속들이 한 나라의 유통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유통분야로 들락날락 하는 것은 그 원인이 다만 국내 주화의 가치감소에 있건 복본위제에 있는 한에서는 화폐유통 자체와는 인연이 없는 것이며 단순히 국가가 제멋대로 일으킨 혼란을 바로잡는 것이다. 끝으로 퇴장화폐의 형성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국내상업을 위한 것이건 대외무역을 위한 것이건 구매수단이나 지불수단의 예비밀천인 한에서 또한 그것이 한때 늘고 있는 자본의 단순한 형태인 한에서 그것은 두 경우에 다 유통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가라앉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유통 전체가 그 규모, 그 형태들, 그 움직임들로 보아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그 자체가 자본의 유통과정(여기에는 소득의 지출이 소매상업에서 실현되는 한에서 자본과 소득의 교환, 소득과 소득의 교환이 들어 있다)을 표시할 따름인 상품유통의 단순한 결과라면 화폐거래업이 다만 상품유통의 단순한 결과, 상품유통이 나타나는 방식인 화폐유통을 매개할 뿐이 아니라는 것은 아주 자명하다. 이 화폐유통 자체는 상품유통의 한 계기로서 화폐거래업에는 주어진 것이다. 화폐거래업이 매개하는 것은 상품유통의 기술적 조작들인데 이 조작들을 화폐거래업은 집중하고 간략히 하고 단순화한다. 화폐거래업은 퇴장화폐를 형성하지 않고 이 화폐퇴장이 자유의사에서 생긴(따라서 쓰이지 않는 자본을 표현하거

나 재생산과정의 혼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한에서 이 화폐퇴장을 경제적으로 최소한으로 되게 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한다. 왜냐하면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을 위한 예비밀전은 만약 그것을 전체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관리하면 개개 자본가가 따로따로 관리하는 경우보다 그리 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화폐거래업은 귀금속들을 사지 않고 상품거래업이 귀금속들을 사는 한에서 그것들의 분배를 매개할 따름이다. 화폐거래업은 화폐가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노는 한에서 차액들을 쉽게 청산하게 하며 차액들을 청산하는 인위적인 기구에 의하여 이에 필요한 화폐량을 적게 한다. 그러나 화폐거래업은 호상지불의 연관도 그 규모도 규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은행들과 어음교환소들에서 서로 교환되는 어음들과 수표들은 완전히 독립한 업들을 표시하며 주어진 조작들의 결과들이다. 문제는 다만 이 결과들을 기술적으로 더 잘 청산하는 것이다.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 유통하는 한에서 매매의 규모와 그 수는 화폐거래업에는 전혀 달려 있지 않은 것이다. 화폐거래업은 그러한 거래를 동반하는 기술적 조작들을 짧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 회전에 필요한 현금의 양을 적게 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화폐거래업은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보는 순수한 형태에서는 즉 신용업과 분리된 형태에서는 상품유통의 한 계기 즉 화폐유통의 기술적 측면과 화폐유통에서 생기는 화폐의 각이한 기능들과 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 점이 화폐거래업을 상품거래업과 즉 상품의 형태변화와 상품교환을 매개하는 또는 상품자본의 이 과정을 산업자본과 떨어진 한 자본의 과정으로서 나타내게까지 하는 상품거래업과 본질적으로 구별케 한다. 그러므로 상품거래자본이 화폐가 두 번 사람들의 손을 바꾸며 그럼으로써 상품교환을 매개하는 $W-G-W$ 와는 반대로 상품이 두 번 자리를 바꾸며 그럼으로써 화폐가 되돌아오는 $G-W-G$ 라는 하나의 독특한 형태를 보여준다면 화폐거래자본에서는 그러한 특수한 형태를 전혀 지적할 수 없다.

화폐유통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매개하는 데서 화폐자본을 어떤 특수한 부류의 자본가들이 선대하며 화폐자본이 그렇지 않다면 상인들과 산업자

본가들 자신이 이 목적을 위하여 선대하지 않으면 안될 추가자본을 줄여
든 규모로 표시하는 그러한 자본인 한에서 자본의 일반적 형태인 $G-G'$
는 여기에도 있게 된다. G 를 선대함으로써 선대하는 자에게 $G+\Delta G$ 가
생겨난다. 그러나 이 경우에 $G-G'$ 의 매개는 형태변화 자체의 본질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그 기술적 계기와만 관련된다.

화폐거래업자들이 다루게 되는 화폐자본의 양은 유통 중에 있는 상인
들과 산업가들의 화폐자본이며 화폐거래업자들이 수행하는 조작들은 이
들이 매개하는 상인들과 산업가들의 조작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분
명하다.

또한 화폐거래업자들의 이윤이 잉여가치에서 떼낸 것이라는 것도 명백
한데 그것은 그들이 이미 실현된 가치(채무를 청구하는 형태로 실현될
뿐인 경우에도)를 다룰 따름이기 때문이다.

상품거래업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도 기능의 이중화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화폐유통과 결부된 기술적 조작들의 한
부분은 상품거래업자들과 상품생산자들 자신이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제20장 상인자본의 역사적 고찰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의 화폐축적의 특수한 형태는 다음 편에서 비로소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전개하여 온 것으로부터 자연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광업, 농업, 축산업, 가공공업, 운수업 등이 사회적 분업에 의하여 생겨난 산업자본의 결가지들이며 따라서 그 특수한 투하분야들을 이루는 것과 비슷하게 상인자본을——상품거래자본의 형태이건 화폐거래자본의 형태이건 간에——산업자본의 하나의 특수한 종류로 보는 것보다 더 엉터리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벌써 개개 산업자본은 그것이 자체의 재생산과정의 유통분야에 있는 동안에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으로 있으면서 이 두 형태의 상인자본의 전적인 기능들로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더라도 그러한 거친 견해는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에서는 생산자본으로서의 산업자본과 유통분야에 있는 똑같은 자본과의 차이가 자립화되는데 그것은 자본이 여기에서 한때 가지는 일정한 형태들과 기능들이 떨어져나온 한 자본부분의 자립적 형태들과 기능들로서 나타나며 전적으로 이 자본부분과만 관련되기 때문이다. 산업자본의 전화된 형태와 그리고 서로 다른 산업부분들의 본성으로 하여 나오는 생산자본의 소재적 차이들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다른 것이다.

경제학자는 일반적으로 형태의 차이들을 거칠게 살펴보고 소재적 측면에서만 형태의 차이들에 사실상 관심을 가지는데 이렇게 거칠다는 것 밖에도 속류경제학자에게서는 이렇게 혼동하는 바탕에 두 가지 사정이 더 놓여 있다. 첫째로 속류경제학자는 상업이윤과 그 모든 특성을 설명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로 속류경제학자는 무엇보다 먼저 상품유통과 따라서 화폐유통을 자체의 기초로 전제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특수한 형태에서 나오는 상품자본과 화폐자본, 더 나아가서는 상품거래자본과 화폐거래자본의 형태들을 생산과정 자체에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모습들로서 끌어내려고 변호론적으로 애쓴다는 것이다.

상품거래자본 및 화폐거래자본과 알곡농사의 차이가 알곡농사와 축산업 및 가공업의 차이와 다른 것이 없다면 생산과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반적으로 같은 것이며 또 특히 사회적 생산물이 사회성원들 사이에서 생산적 소비를 위해서나 개인적 소비를 위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마치고기의 소비가 축산업에 의하여 매개되고 옷가지의 소비가 그 제조업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을 수 없듯이 상인들과 은행업자들에 의하여 영원히 매개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아주 명백하다.⁴⁵⁾

스미드, 리카아도 등과 같은 대경제학자들은 자본의 기본형태인 산업자본을 살펴보고 유통자본(화폐자본과 상품자본)은 사실상 그 자체가 개개 자본의 재생산과정에 있는 한 국면인 한에서만 살펴보고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의 독특한 종류의 자본으로써 상인자본에 맞다들자 어쩔 바를 몰랐다. 산업자본을 살펴보는 데서 끌어낸 가치형성, 이윤 등에 관한 명제들은 직접 상인자본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상인자본을 사실상 완전히 제쳐놓았으며 산업자본의 한 종류로서만 그에 언급하

-
- 45) 현명한 로서가 머리에서 짜낸 바에 의하면⁵⁵ 어떤 사람들이 상업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매개로서 특징짓는다면 사람들은 그와 마찬가지로 생산 자체를 소비의 매개(누구와 누구 사이의?)로서 특징지을 수 있을 것이며 이로부터 물론 상업자본은 농업자본이나 공업자본과 마찬가지로 생산자본의 한 부분으로 된다. 따라서 사람은 생산함으로써만 자기의 소비를 매개할 수 있으며(라이프찌히에서 교양을 받지 않아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는 '자연의 부를 차지하려면 노동이 필요하다(이것을 매개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 물론 생산의 특수한 사회적 형태에서 나오는 사회적 매개는——그것이 매개이기 때문에——절대적 필연성이라는 성격과 또 그러한 지위를 가지게 된다. 매개라는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어쨌든 상인은 사실 생산자와 소비자(생산자와 떨어진 소비자, 즉 생산하지 않는 소비자는 당분간 고려 밖에 둔다) 사이의 매개자가 아니라 이 생산자들 호상간의 생산물의 교환을 매개하는 자이며 상인이 없이도 언제나 얼마든지 진행되는 교환의 중개자에 지나지 않는다.

고 있다. 리카아도가 대외무역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있듯이 그들이 특별히 상인자본을 취급하는 경우에 그들은 상인자본이 아무런 가치도(따라서 또 아무런 잉여가치도) 창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에 들어맞는 것은 국내상업에도 들어맞는다.

이제까지는 상인자본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관점에서 또 그 한계 안에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인뿐 아니라 상업자본도 자본주의적 생산양식보다 오랜 것이며 사실상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 된 자본의 자유로운 존재형태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화폐거래업과 그에 선대한 자본이 발전하는 데는 도매상업과 나아가서는 상품거래자본의 존재 밖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다만 이 상품거래자본이다.

상업자본은 유통분야에 간혀 있으며 그 기능은 전적으로 상품교환을 매개하는 데 있기 때문에 상업자본이 존재하는 데는——직접적 물물교환에서 생기는 발전되지 않은 형태들은 제쳐놓고 본다——단순상품유통과 화폐유통에 필요한 것 밖에는 다른 어떤 조건들도 필요없다. 또는 단순상품유통과 화폐유통이 오히려 상업자본의 존재조건이다. 상품으로서 유통에 들어가는 생산물들이 어떠한 생산양식에 기초하며 생산되었건——원시공동체에 기초하였건 노예제생산 또는 소농민적, 소부르조아적 생산 또는 자본주의적 생산에 기초하였건——그 때문에 그 생산물들의 상품으로서의 성격은 달라지지 않으며 그 생산물들은 상품으로서 교환과정과 그에 따르는 형태변화들을 거쳐야 한다. 상인자본이 매개하는 극들은 그 극들이 화폐와 화폐의 움직임에 대하여 주어져 있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상인자본에 대하여는 주어져 있는 것이다.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생산이 온통 상품생산이건 또는 자영하는 생산자들이 자체 생산으로 직접 수요를 충족시키고 남는 것만이 시장에 나오건 이 극들이 상품들로서 있다는 것이다. 상인자본은 그에 미리 주어졌던 전제들로서의 이 극들, 상품들의 움직임을 매개할 따름이다.

생산된 것이 상업으로 들어가며 상인의 손을 거치는 규모는 생산양식

에 달렸으며 그 규모가 최대한에 이르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충분히 발전하여 생산물이 오직 상품으로서만 생산되며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서는 생산되지 않는 경우이다. 한편 또 어떤 생산양식에 기초하건 상업은 생산자들(여기에서는 생산물의 소유자라고 이해하여야 한다)의 소비나 퇴장화폐를 늘이기 위하여 교환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남아돌아가는 생산물이 생산되도록 촉진한다. 따라서 상업은 생산이 더욱더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이라는 성격을 띠게 한다.

상품들의 형태변화, 상품들의 움직임은 1) 소재적으로는 서로 다른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2) 형태상으로는 상품의 화폐로의 전화인 판매와 화폐의 상품으로의 전화인 구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인자본의 기능은 결국 이러한 기능들, 구매와 판매에 의한 상품들의 교환에 귀결된다. 따라서 상인자본은 다만 상품교환을 매개할 따름이지만 이 상품교환을 처음부터 다만 직접적 생산자들 사이의 상품교환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노예관계, 농노관계, 공납관계(원시공동체들을 살펴보는 한에서)에서는 생산물의 소유자, 따라서 그 판매자는 노예 소유자, 봉건영주, 공물을 받는 국가이다. 상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고 판다. 구매와 판매는 상인의 손에 집중되며 그렇게 됨으로써 구매와 판매는 구매자(상인으로서의)의 직접적 수요와 결부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상인이 상품교환을 매개하는 생산분야들의 사회적 조직이 어떠한 간에 상인의 재산은 언제나 화폐재산으로서 존재하며 그의 화폐는 늘 자본으로서 기능을 논다. 이 자본의 형태는 늘 똑같이 $G-W-G'$ 이다. 즉 교환가치의 자립적 형태인 출발점이고 교환가치를 늘이는 것이 자립적 목적이다. 상품교환 자체와 그것을 매개하는 조작들——생산과 떨어졌으며 비생산자가 수행하는——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일반적 사회형태로 있는 교환가치로서의 부를 늘이는 수단일 따름이다. 추동하는 동기와 규정하는 목적은 G 를 $G+\Delta G$ 로 전화하는 것이다. $G-G'$ 라는 행위를 매개하는 행위들인 $G-W$ 와 $W-G'$ 는 다만 G 의 $G+\Delta G$ 로의 이전화의 과도적 계기들로서 나타난다. 상인자본의 특징적인 움직임으로서의 이 $G-W-G'$ 는 사용가치의 교환을 최종목적으로 하는 생산자 자신들 사이의 상품거래인 $W-G-W$ 와 구별된다.

그러므로 생산이 발전되지 않으면 않을수록 화폐재산은 상인들의 손에 더 집중될 것이며 또는 더 상인재산의 특수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는——즉 자본이 생산 자체를 틀어쥐고 생산에다 완전히 달라진 특수한 형태를 부여하자——상인자본은 특별한 기능을 노는 자본으로서만 나타난다. 이전의 모든 생산양식들에서는——그리고 생산이 생산자의 생활수단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될수록——상인자본은 자본의 주되는 기능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자본이 생산 자체를 굴복시키기 훨씬 전에 어쩌서 상인자본이 자본의 역사적 형태로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는 조금도 어렵지 않다. 상인자본의 존재와 어느 수준까지의 그 발전은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발전하기 위한 역사적 전제이다. 즉 1) 화폐재산이 집중되는 전제조건으로서 그러하며 2)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상업을 위한 생산을 전제로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손님에게 파는 것이 아니라 대량적으로 팔며 따라서 또 자기의 개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구매행위를 자기의 구매행위로 집중하는 상인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또 상인자본의 모든 발전은 생산이 더욱더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이라는 성격을 띠게 하며 생산물을 더욱더 상품으로 전화하도록 생산에 작용을 한다. 그렇지만 상인자본의 발전 그 자체는 아래에서 곧 상세히 보게 되겠지만 한 생산양식이 다른 생산양식으로 넘어가게 하며 또 그렇게 넘어가는 것을 설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자본주의적 생산 안에서는 상인자본이 이전의 그 자립적 존재로부터 떨어져서 자본투하 일반의 한 특별한 계기로 되며 이윤의 균등화는 상업자본의 이윤율을 일반적 평균수준으로 되게 한다. 상인자본은 이제는 생산자본의 대리자의 기능을 놀 따름이다. 상인자본의 발전에 따라 이루어지는 특별한 사회관계는 이제는 더는 규정적인 것이 아니다. 반대로 상인자본이 지배하는 데서는 낡아빠진 관계가 지배한다. 이것은 똑같은 한 나라 안에서도 볼 수 있는데 예컨대 순상업도시들은 공업도시들보다 이전의 관계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⁴⁶⁾

자본이 상인자본으로서 자립적으로 우세하게 발전한다는 것은 생산이

자본에 굴복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자본이 그와 인연이 먼 그리고 그와 관계가 없는 사회적 생산형태에 기초하여 발전한다는 것과 뜻이 같다. 따라서 상인자본의 자립적 발전은 사회의 일반적인 경제발전과 반비례한다.

자본의 지배적 형태로서의 자립적 상인재산은 유통과정이 그 극들에 대하여 자립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극들이란 교환하는 생산자들 자신이다. 이 극들은 유통과정에 대하여 자립적이며 이 유통과정은 그 극들에 대하여 자립적이다. 이 경우에 생산물은 상업에 의하여 상품으로 된다. 다름 아닌 상업이 이 경우에 생산물의 상품화를 발전시키는 것이며 생산된 상품이 그 움직임으로 상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본은 비로소 자본으로서 유통과정에 나타난다. 유통과정에서 화폐가 자본으로 발전한다. 유통에서 생산물이 비로소 교환가치로서, 상품과 화폐로서 발전한다. 자본은 그것이 유통과정의 극들인, 유통에 의하여 매개되는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을 지배하기를 배우기에 앞서 유통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또 거기에서 형성되지 않을 수 없다. 화폐 유통과 상품유통은 내부구조로 보아 아직 주로 사용가치의 생산에 둘러지고 있는, 매우 다양한 조직들의 생산분야들을 매개할 수 있다. 유통과정에서 생산분야들이 제3자를 통하여 서로 결부되는데 유통과정의 이 자립화는 두 가지 것을 표현한다. 한편으로는 유통이 아직 생산을 틀어잡지 않고 생산에 대하여 주어진 전제로서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생산과정이 유통을 아직 단순한 계기로서 자체에 받아들이지

-
- 46) W. 키셀바하 씨(『중세기 세계무역의 경로』, 1860년)는 사실상 아직도 상인자본이 자본 일반의 형태인 세계의 표상들 속에서 살고 있다. 그는 근대적 의미의 자본에 대하여는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씨가 자기의 『로마의 역사』에서 자본과 자본의 지배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근대역사에서 본래의 상업신분과 상업도시들은 또한 정치적으로 반동적이며 토지귀족 및 금융귀족과 동맹하여 산업자본을 반대하여 나온다. 예컨대 리버풀의 정치적 역할을 맨체스터와 버밍엄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라. 산업자본의 완전한 지배는 곡물판세⁵⁶ 등의 폐지 이후에야 비로소 영국의 상인자본과 금융귀족(moneyed interest)에 의하여 인정되었다.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이 두 가지 것이 다 이루어진다. 생산 과정은 완전히 유통에 의거하며 유통은 생산의 단순한 상품으로서 생산된 생산물의 실현이고 상품들로서 생산된, 생산물의 생산요소들의 보상이다. 유통에서 직접 나오는 자본형태인 상업자본은 여기에서 이제는 재생산과정에 있는 자본형태들의 하나로서 나타날 따름이다.

상인자본의 자립적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정도와 반비례한다는 법칙은 베니스인, 제노바인, 네델란드인 등에서와 같은 중개상업(carrying trade)에서 가장 잘 나타나는데 따라서 이러한 나라들에서는 주되는 이득을 자기 나라 생산물들을 수출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상업과 그 밖의 경제가 아직 발전하지 않은 공동체들이 생산물의 교환을 매개하며 그리고 교환에 들어선 두 생산국들을 착취하는 데서 얻는다.⁴⁷⁾ 여기에서 우리가 대상하는 것은 상인자본에 의하여 매개되는 극들인 생산분야들과 떨어져 있는 순수한 상인자본이다. 상인자본 형성의 주되는 원천은 이리하다. 그러나 중개상업의 이러한 독점과 따라서 이 상업 자체는 쌍방에서 착취를 받아왔고 발전하지 못한 탓으로 중개상업 존재의 바탕이었던 그러한 민족들이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쇠퇴한다. 중개상업에서는 이것이 한 특수한 상업부문들의 쇠퇴로서 나타날 뿐 아니라 순수한 상업 민족들의 우세의 쇠퇴로서, 그리고 이 중개상업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그 민족들의 상업적 부 일반의 쇠퇴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전함에 따라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특수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어쨌든 상인자본이 직접 생산을

47) “상업도시의 주민들은 더 부유한 나라들로부터 세공품들과 값비싼 사치품들을 수입하였고 그리하여 대토지소유자들의 허영심에 불을 질렀다. 대토지소유자들은 이러한 상품들을 게걸스럽게 샀고 그 댓가를 자기들의 영지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원료생산물로 지불하였다. 그리하여 이 시기 구라파 대부분의 상업은 한 나라의 원료생산물과 공업이 발전한 나라의 공업생산물을 교환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제품이 매우 널리 사용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어지간히 늘어나자 상인들은 수송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비슷한 제조업들을 자국에 설치하기 시작하였다”(A. 스미드, 『제국민의 부』, 제1권, 런던, 1776년, 제3부, 제3장, 489, 490페이지).

들어쥐고 있는 곳에서 상인자본이 어떻게 주인행세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식민지경제 일반(이른바 식민지체계)뿐 아니라 특수하게는 옛 네델란드 동인도회사의 경영이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상인자본의 움직임은 $G-W-G'$ 이므로 상인의 이윤은, 첫째로 유통과정 안에서만 진행되는 행위들에 의하여 나오며 따라서 구매와 판매라는 두 행위에서 나오며, 둘째로 그 이윤은 마지막 행위 즉 판매에서 실현된다. 따라서 이것은 양도이윤(profit upon alienation)⁵⁷이다. 얼핏 보면 생산물이 그 가치대로 팔리는 동안에는 순수한 독립적인 상업이윤은 있을 수 없는 것같이 보인다. 비싸게 팔기 위하여 값싸게 사는 것이 상업의 법칙이다. 따라서 등가물들의 교환이 상업의 법칙은 아니다. 가치개념의 전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것은 서로 다른 상품들이 모두 가치이며 따라서 화폐인 한에서 즉 질적으로 보아 한결같이 사회적 노동의 표현인 한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모든 상품들은 그 가치의 크기가 같지 않다. 생산물이 서로 교환되는 양적 비율은 처음부터 완전히 우연적인 것이다. 생산물이 상품형태를 띠는 것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이며 즉 똑같은 제3의 것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교환과 교환을 위한 규칙적인 재생산은 이 우연성을 더욱더 없앤다. 그러나 처음부터 생산자들과 소비자들에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양자들 사이의 매개자인 상인, 화폐가격들을 비교하며 차액을 차지하는 상인에게서 그렇게 된다. 상인은 그 자신의 움직임에 의하여 등가성을 정한다.

상업자본은 처음에는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 그리고 그것에 의하여 창조되지 않는 전제들인 극들 사이를 매개하는 움직임을 할 따름이다.

상품유통의 형태인 $W-G-W$ 그 자체에서 화폐가 다만 가치척도와 유통수단으로서뿐 아니라 상품의, 따라서 또한 부의 절대적 형태로서, 퇴장화폐로서 나오며 또한 화폐의 보존과 화폐로의 그 증식이 자체 목적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인자본의 유통형태인 $G-W-G'$ 그 자체에서 화폐, 퇴장화폐는 그저 양도됨으로써 보존되고 증식되는 그 무엇으로서 나온다.

고대의 상업민족들은 세계와 세계 사이의 잠 사이에 있는 신들처럼⁵⁸

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폴란드 사회의 폴란드 사람들 사이에 끼어 사는 유대인들처럼 살고 있었다. 최초의 자립적인 크게 발전한 상업도시들과 상업민족들의 상업은 순전한 중개상업으로서 미개한, 생산하는 민족들에 바탕을 두었으며 이 민족들 사이에서 그 도시들과 민족들은 매개자로서 역할을 놀았다.

자본주의사회 직전에는 상업이 산업을 지배한다. 근대사회에서는 그 반대이다. 상업은 물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회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상업은 향락과 생존을 생산물의 직접적 사용보다는 판매에 더 의존하게 함으로써 생산을 더욱더 교환가치에 종속시킬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업은 낡은 관계들을 해체한다. 상업은 화폐유통을 늘린다. 상업은 벌써 생산의 초과분을 틀어쥔 뿐 아니라 생산 자체를 야금야금 파먹어 들어가며 생산부문 전체를 자체에 종속시킨다. 그러나 이 해체작용은 생산하는 사회의 본성에 크게 의존한다.

상업자본이 발전되지 못한 나라들의 생산물교환을 매개하는 동안에는 상업이윤은 속여넘기고 속여먹는 것으로써 나타날 뿐 아니라 사실상 대부분이 속여넘기고 속여먹는 데서 나온다. 상업자본이 여러 나라들의 생산가격들 사이의 차액에 의하여(그런데 이 점에서 상업자본은 상품가치들의 균등화와 확정에 영향을 미친다) 살아나간다는 것은 제쳐놓고 보더라도 위에서 든 생산양식들에서는 상인자본이 잉여생산물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생산이 아직 기본적으로 사용가치를 생산하는 데 돌려지고 있으며 그 경제적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유통에 들어오는 생산물부분의 판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생산물을 그 가치대로 파는 것이 부차적 의의밖에 가지지 않는 공동체들 사이의 중개자로서 그것을 차지하며 또 부분적으로는 위에서 든 이전의 생산양식들에서는 상인과 거래하는 잉여생산물의 주되는 소유자들인 노예소유자, 봉건영주, 국가(예컨대 동방의 전제군주국가)가 표시하는 부에 상인이 덧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차지하는데 이것은 이미 A. 스미드가 봉건시대에 대하여 위에서 인용한 부분에서 옳게 알아차린 바와 같다. 따라서 상업자본이 압도적 우세를 차지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 자본은 약탈체제를 표시하며⁴⁸⁾ 따라서 고대나 근대의 상업민족들에서의 상업자본의 발전이 폭력

적 약탈, 해적, 노예약탈, 식민지의 노예화와 직접 결부되어 있는 것은 공연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카르타고와 로마에서 그랬으며 후에는 베니스인, 포르투갈인, 네델란드인 등이 그러하였다.

상업과 산업자본의 발전은 이르는 곳마다 생산을 교환가치를 위한 생산으로 되게 하고 교환가치의 양을 늘이며 교환가치를 다양하게 하고

-
- 48) “지금 상인들은 귀족이나 도적놈들에 대한 원망이 대단하다. 그것은 상인들이 커다란 위협을 무릅쓰고 거래하지 않으면 안되는 데다가 붙잡히고 매맞고 세금을 물고 약탈을 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정의를 위하여 그런 짓을 당한다면 물론 상인들은 거룩한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나 상인들이 그토록 비법적인 일과 비기독교적인 도덕질과 강도질을 온 세상에 걸쳐 그들 호상간에서까지도 저지르고 있으니 부당하게 얻은 것처럼 큰 재물을 다시 잃거나 약탈당하며 게다가 상인들 자신이 골통을 얻어맞거나 붙잡히도록 하느님이 마련하신다 한들 무엇이 이상하겠는가. …그리고 군주들은 이처럼 옳지 않은 상거래를 옹당한 권력으로 처벌하고 자기들의 신하들을 상인들이 것처럼 염치없이 약탈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군주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기사들과 도적놈들을 써서 그들을 통하여 상인들의 옳지 않은 짓을 처벌하는 것이며 그들이 하느님의 악마로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마치 하느님이 이집트 땅과 온 세상에 악마들을 시켜 재앙을 주거나 적들을 시켜 멸망케 하듯이 말이다. 이렇듯 하느님은 어떤 나쁜 놈을 시켜 다른 나쁜 놈을 쓸어버리는데 그렇다고 기사들이 상인들보다 작은 도적놈들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한 명의 기사는 한 해에 한두 번, 한두 명에게서 도적질하는데 상인들은 매일같이 온 세상에서 도적질하고 있으니 말이다.”——“너희들의 군주들은 도적의 무리가 되었다는 이사야의 예언에 따르라, 그들은 한 굴덴이나 반 굴덴을 훔친 도적은 목을 매게 하고 온 세상을 약탈하는 놈들과는 한통속이 되어 실제로 다른 어떤 도적놈들보다 더 마음놓고 훔치고 있으니 참으로 큰 도적들이 작은 도적들의 목을 맨다는 속담이나 로마의 원로원 의원 카토의 말대로 하찮은 도적들은 칼을 쓰고 옥에 갇혀 있으나 공적 도적들은 황금과 비단을 감고 다닌다는 말은 사실 그대로이다. 그러나 하느님은 이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무엇이려 여쭙겠는가? 하느님은 그가 예제키엘의 입으로 여쭙던 바와 같이 하실 것이니 군주들과 상인들, 이 도적 저 도적 할 것 없이 한 도시가 불타버릴 때 납과 청동이 곧 녹아버리듯이 하나로 녹여버려서 군주들도 상인들도 더는 없게 하실 것이다”(마틴 루터, 『상거래와 고리대에 대하여』, 1524년).⁵⁹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며 화폐를 세계화폐로 발전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상업은 서로 다른 모든 형태들에서 주로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으로 되고 있는, 이미 존재하는 생산조직들에 많건적건 분해작용을 한다. 그러나 넓은 생산양식의 이러한 분해작용이 얼마나 클 것인가 하는 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 넓은 생산양식의 공고성과 내부조직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분해과정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즉 어떠한 새로운 생산양식이 넓은 생산양식들 대신에 나타나는가 하는 것은 상업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생산양식들 자체의 성격에 달려 있다. 고대세계에서는 상업의 작용과 상인자본의 발전의 결과 언제나 노예제경제가 나왔으며 그런데 출발점이 어떤가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생존수단의 생산에 둘러진 부가경제적 노예제도가 잉여가치의 생산에 둘러진 노예제도로 전화되었을 따름이다. 그런데 근대세계에서는 그 결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나온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 자체는 상업자본의 발전에 의하여 또 이와는 전혀 다른 사정들로 하여 나왔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의 산업 그 자체가 농업에서 떨어져나오자 도시산업의 생산물은 처음부터 상품이며 따라서 그것을 팔려면 상업의 매개를 필요로 하였다는 것은 사태로 보아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리하여 상업이 도시의 발전에 의거하고 한편 또 도시의 발전은 상업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산업의 발전이 어느 정도로 상업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사정들에 달려 있다. 고대로마에서는 후의 공화제시기에 벌써 상인자본이 고대세계의 어느 때보다도 발전하였지만 산업의 발전은 조금도 없었다. 그런데 코린트와 구라파 및 소아시아의 그 밖의 회람 도시들에서는 산업이 크게 발전함에 따라 상업도 발전하였다. 한편 또 상업정신과 상업자본의 발전은 도시의 발전과 그 조건들과는 정반대로 흔히 바로 정착하지 않는 유목민족들에게서 볼 수 있었다.

16세기와 17세기에 지리적 발견들에 따라 상업에서 일어났으며⁶⁰ 상인자본을 빨리 발전시킨 대혁명들이 봉건적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다그치는 데서 하나의 주되는 계기를 이룬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그런데 바로 이 사실이 전혀 그릇된 견해

들을 낳았던 것이다. 세계시장이 갑자기 넓어진 것, 유통하는 상품의 품종이 늘어난 것, 구라파 국민들 사이에서 아시아의 생산물과 아메리카의 재물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벌인 경쟁, 식민지체제, 이러한 것들은 생산의 봉건적 제한들을 타파하는 데 근본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근대적 생산양식은 그 첫 시기인 공장제 수공업시기에 그를 위한 조건들이 중세기 동안에 마련된 곳에서만 발전하였다. 예컨대 네델란드와 포르투갈을 비교하여 보라.⁴⁹⁾ 그리고 16세기와 부분적으로는 17세기에도 상업의 급속한 확장과 새로운 세계시장의 조성이 낳은 생산양식들의 몰락과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면 이것은 거꾸로 일단 조성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일어났던 것이다. 세계시장 자체는 이 생산양식의 기초를 이룬다. 한편 줄곧 큰 규모로 생산할,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내재하는 필연성은 세계시장을 끊임없이 넓히며 그리하여 이 경우에 상업이 산업을 혁명화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이 상업을 끊임없이 혁명화한다. 상업의 지배도 이제는 '크건작건 대산업의 조건들이 우세한 것과 결부되어 있다. 예컨대 영국과 네델란드를 비교하여 보라. 지배적 상업국민으로서의 네델란드의 몰락의 역사는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에 종속되는 역사이다. 자본주의에 앞선 국민적 생산양식들의 내부적 공고성과 조직이 상업의 분해작용에 가로놓는 장애들은 인도 및 중국과의 영국인들의 교역에서 뚜렷이 보게 된다. 인도 및 중국에서는 생산양식의 광범한 기초가 영세농과 가내공업의 통일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에다 또 인도에서는 토지의 공동소유에 기초한 촌락공동

- 49) 네델란드의 발전에 다른 사정들은 제쳐놓고 보더라도 고기잡이와 제조업과 농업에 기초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은 이미 18세기의 저술가들이 밝혀 놓았다. 예컨대 매쉴을 보라.⁶⁾ 아시아의 상업과 고대의 상업, 중세의 상업의 규모와 의의를 과소평가한 이전의 견해와는 반대로 지금은 그것을 유별나게 과대평가하는 것이 유행으로 되었다. 18세기초의 영국의 수출입을 살펴보고 오늘날의 그것과 대비하면 그러한 표상에서 가장 잘 벗어날 수 있다. 그렇지만 당시에도 영국의 수출입은 이전의 다른 어떤 상업민족의 수출입보다 비할 바 없이 큰 것이었다(A. 앤더슨,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상업사의 연대기적 서술」[제2권, 런던, 1764년, 261페이지 이하]을 보라.)

체의 형태가 덧붙는데 이 촌락공동체는 중국에서도 또한 시초적인 형태였다. 인도에서 영국인들은 곧 이 작은 경제적 공동체들을 부수기 위하여 지배자로서 그리고 지대를 받는 자로서 자기들의 직접적인 정치경제적 권력을 사용하였다.⁵⁰⁾ 여기에서 영국인들의 상업이 생산양식을 혁명화하는 작용을 한다면 그것은 다만 영국인들이 자기들의 값싼 상품에 의하여 공업생산과 농업생산의 이 통일의 원래의 불가분적인 부분을 이루는 방적업과 직조업을 없애버리고 그리하여 공동체들을 부숴버리는 한에서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영국인들은 이 분해공작을 점차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 직접적인 정치적 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중국에서는 이보다 더 천천히 공동체가 붕괴되어 갔다. 농업과 제조업이 직접 결합된 데서 얻게 되는 큰 절약과 시간절약으로 하여 여기에서 대공업의 생산물은 그야말로 완강한 저항을 받게 되는데 대공업의 생산물 가격에는 대공업의 이르는 곳마다에 파고 들어가는 유통과정의 잡비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의 상업과는 반대로 러시아의 상업은 아시아적 생산의 경제적 기초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⁵¹⁾

봉건적 생산양식으로부터의 이행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생산자가 농업자연경제와 중세기 도시산업의 동업조합으로 결합된 수공업과 맞서 상인이며 자본가로 된다. 이것은 참으로 혁명적인 길이다. 또는 상인이 직접 생산을 들어준다. 과도적 단계로서의 이 길의 역사적 의의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예컨대 17세기의 영국의 모직천 장사꾼은 아직 자립적이었던 직조업자들을 자기의 통제 밑에 넣고 그들에게 털실을 팔아주고 짠 천을 사갔다——역시 이 길은 그 자체로서는 낡은 생산

50) 한 민족의 역사에서 실패로 돌아간, 참으로 터무니없는(실제로는 수치스러운) 경제적 실험들을 보여준 것이 더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도에서 한 영국인들의 경영이다. 영국인들은 벵갈에서는 영국식 대토지소유의 만화를 그려 놓았고, 동남인도에서는 영세한 토지소유의 만화를 그려 놓았으며 서북부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한에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인도의 경제적 공동체를 그 자체의 만화로 만들어 놓았다.

51) 러시아가 전적으로 국내시장과 그와 인접한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하는 독자적인 자본주의적 생산을 발전시키려고 필사적 노력을 한 이래로 이 사정도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F. E.

양식의 변혁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이 길이 오히려 낡은 생산양식을 자체의 전제조건으로서 보존하고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컨대 19세기 중엽까지도 프랑스의 비단공업, 영국의 양말공업 및 레이스공업에서 공장주는 대부분이 이름만 공장주였지 실제로는 단순한 상인이었으며 직조업자들을 그들의 낡은 분산된 방식으로 계속 일하게 하고 그들을 실지로 일 시킨 상인으로서만 그들을 지배하였다.⁵²⁾ 이러한 관계는 어디서나 현실적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길을 가로막으며 이 생산양식이 발전하는 데 따라 몰락한다. 이 관계는 생산양식은 변혁하지 않으면서 직접적 생산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킬 뿐이고 이들을 직접 자본의 지배를 받는 임금노동자들보다 더 나쁜 조건 밑에서 일하는 단순한 임금노동자로, 프롤레타리아로 전화하며 낡은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이들의 잉여노동을 차지한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수공업적으로 운영되는 런던의 가구제작업의 한 부분에도 똑같은 관계가 있다. 이 제작업은 특히 타워 햄릿 구역에서 매우 널리 운영된다. 전체 생산이 서로 독립한 수많은 부문들로 나누어져 있다. 어떤 기업은 의자만을 만들고 또 어떤 기업은 책상만을, 또 어떤 기업은 옷장만을 만든다. 그러나 이 기업들 자체는 장공 몇 명을 거느린 작은 장주에 의하여 어느 정도 수공업적으로 운영된다. 그렇지만 직접 개인을 대상으로 일하기에는 생산이 너무 많다. 생산물을 사는 사람은 가구상점의 소유자들이다. 토요일에는 장주가 이들을 찾아가서 자기의 생산물을 파는데 이 경우에 전당포에서 이러저러한 저당물의 금액에 대하여 흥정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이 가격에 대하여 흥정이 벌어진다. 이 장주들은 다음 주에 쓰기 위한 원자재를 다시 사며 임금을 지불할 수 있기 위해서도 그 주에 팔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서는 이 장주들은 실제로 상인과 그들 자신의 노동자들 사이의 중개인에 지나지 않는다. 상인이 잉여가치의 가장 큰 부분을 주머니에 넣는 진짜 자본가이다.⁵³⁾ 전에 수공업적으로 운영되었거나 농촌산업의

52) 라인지방의 리본 및 레이스 제조업과 비단직조업에 대해서도 사정은 같다. 크레펠트 근방에는 이 농촌의 손 직조업자들과 도시의 공장주들과 교역을 위하여 따로 철길까지 놓았으나 그후 기계직조업으로 하여 이 철길은 손 직조업자들과 함께 놀게 되었다.—F. E.

부업부문으로서 운영되었던 부문들이 공장제 수공업으로 넘어오는 경우에도 그와 비슷하다. 이러한 소규모의 자립적 생산의 기술발전수준에 따라——수공업적 생산에서도 쓸 수 있는 기계를 이 소규모의 자립적 생산에서 사용하는 곳에서는——대공업에로의 이행도 가능하다. 기계를 손으로 돌리지 않고 증기로 돌린다. 예컨대 최근시기 영국의 양말제조업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은 세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첫째로, 상인이 직접 산업가로 된다. 상업에 기초한 수공업부문들에서 그러하며 특히 상인이 15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이탈리아로 끌어들였듯이 외국에서 원료 및 노동자들과 함께 상인이 끌어들이는 사치품생산에서 그러하다. 둘째로, 상인이 작은 장주들을 자기의 중개인(middlemen)으로 삼거나 직접 자립적인 생산자에게서 사기도 한다. 상인은 명목상으로는 자립적인 생산자를 그대로 두어두며 그의 생산양식을 변동시키지 않는다. 세째로, 산업가가 상인으로 되고 직접 상업을 위하여 대규모로 생산한다.

중세기에 상인은 포페가 옳게 말하고 있듯이⁵³ 동업조합원들이나 농민들이 생산한 상품들을 단순히 옮겨놓는 자였다. 상인은 산업가로 되거나 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수공업적인 작은 산업, 특히 농촌의 작은 산업을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게 한다. 한편 또 생산자가 상인으로 된다. 예컨대 천을 짜는 장주가 자기가 쓰는 털을 조금씩 차례로 상인에게서 얻어 자기의 장공들의 도움으로 이 상인을 위하여 털실을 가공할 대신에 장주 자신이 털이나 털실을 사서 자기의 천을 상인에게 판다. 생산요소들은 장주 자신이 산 상품들로서 생산과정에 들어간다. 그리고 천을 짜는 업자는 개별적 상인이나 일정한 단골손님들을 위하여 생산할 대신에 이제 는 전체 상업계를 위하여 생산한다. 생산자 자신이 상인이다. 상업자본은 이제야 비로소 유통과정을 밟는다. 원래 상업은 동업조합수공업과 농촌가내공업과 봉건적 농업을 자본주의적 생산으로 전화하기 위한 전체

53) 이 제도는 1865년 이래 훨씬 더 큰 규모로 발전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것은 「고한제도에 관한 상원특별위원회 제1차보고」(런던, 1888년)를 보라. —F. E.

었다. 상업은 생산물을 상품으로 발전시키는데 부분적으로는 상업이 생산물을 위하여 시장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렇게 하며, 부분적으로는 상업이 새로운 상품등가물들을 제공하며 생산에 새로운 원료와 보조자재를 제공하고 이에 따라 시장과 세계시장을 위한 생산에 기초하건 세계시장에서 나오는 생산조건들에 기초하건 처음부터 상업에 기초한 생산부문을 열어 놓음으로써 그렇게 한다. 공장제 수공업이 어느 정도 강화되면——대공업은 더더구나 그러하네——그 자체는 이번에는 시장을 조성하고 시장을 그 상품들에 의하여 들어온다. 이제는 상업이 시장의 끊임없는 확대를 생활조건으로 하는 산업생산에 복무하게 된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대량생산은 이미 있는 시장을 차넘치게 하며 따라서 끊임없이 이 시장을 확대하며 그 시장의 테두리를 뚫고 나간다. 이 대량생산을 제한하는 것은 상업(이것이 다만 이미 있는 수요를 표현하는 한에서)이 아니라 기능을 높고 있는 자본의 크기와 노동생산력의 발전정도이다. 산업자본가는 끊임없이 세계시장을 대상하며 자기자신의 생산비를 자기 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의 시장가격들과 비교하고 또 끊임없이 비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비교는 이전시기에는 거의 전적으로 상인들이 할 일이었으며 그렇게 되어 산업자본에 대한 상업자본의 지배를 보장하였다.

맨 처음으로 근대적 생산양식을 이론적으로 취급한 중상주의는 필연적으로 상업자본의 움직임에서 자립화되어 있는 유통과정의 피상적인 현상들에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따라서 현상의 외관만을 틀어쥐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상업자본이 자본 일반의 첫 자유로운 존재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또 부분적으로는 상업자본이 봉건적 생산의 맨 처음의 변혁시기, 근대적 생산의 성립시기에 끼친 우세한 영향 때문이다. 진정한 근대정치경제학은 이론적으로 유통과정을 살펴보는 데로부터 생산과정을 살펴보는 데로 넘어가는 데서 비로소 시작된다. 이자불는 자본도 물론 아주 옛 자본형태이다. 그러나 중상주의가 왜 이자불는 자본으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도리어 그에 논쟁적으로 대하였는가에 대하여는 후에 보게 될 것이다.

이자와 기업이득으로의 이윤의 분할. 이자붙는 자본

- 제21장 이자붙는 자본
- 제22장 이윤의 분할. 이자율 이자의 자연율
- 제23장 이자와 기업이득
- 제24장 이자붙는 자본형태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표면화
- 제25장 신용과 의제자본
- 제26장 화폐자본의 축적. 이자율에 미치는 그 영향
- 제27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신용의 역할
- 제28장 유통수단의 자본. 투크와 플라톤의 견해

제21장 이자불는 자본

일반적 이윤율 또는 평균이윤율을 맨 처음에 살펴보는 데서는(이 책, 제2편) 이것은 아직 완성된 모습을 띤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윤의 균등화가 아직 그저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에 투하된 산업자본들의 균등화로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것은 상업자본이 이 균등화에 참가하는 것과 상업이윤을 논한 앞 편에서 보충되었다. 일반적 이윤율과 평균이윤율은 이제는 전보다 더 좁은 테두리 안에서 나타난다. 앞으로 전개하여 가는 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이제부터 일반적 이윤율 또는 평균이윤에 대하여 말할 때, 그것은 뒤에 말한 의미에서 즉 평균이윤율의 완성된 모습과 관련해서만 말한다는 것이다. 이 평균이윤율은 이제는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서 똑같으므로 이 평균이윤을 문제로 하는 한에서는 앞으로 산업이윤과 상업이윤을 구별할 필요도 또한 더 이상 없다. 자본이 산업자본으로서 생산분야에 투하되건 상업자본으로서 유통분야에 투하되건 그 자본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똑같은 연평균이윤을 낳는다.

여기에서 어떤 가치액이 실제로 화폐로 존재하건 상품으로 존재하건 그 가치액의 자립적 표현으로 본 화폐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자본으로 전화될 수 있으며 이렇게 전화됨으로써 주어진 가치에서 그 자체를 불리는, 그 자체를 늘리는 가치로 된다. 그 화폐는 이윤을 낳는다. 즉 그 화폐는 자본가로 하여금 일정한 양의 부지불노동, 잉여생산물과 잉여가치를 노동자들로부터 끌어내며 차지할 수 있게 한다. 그리하여 화폐는 그것이 화폐로서 가지고 있는 사용가치 외에 추가적 사용가치, 즉 자본으로서 기능을 노는 사용가치를 얻는다. 그 화폐의 사용가치는 이 경우에 바로 그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어 낳는 이윤에 있다. 잠재적 자본으로서의, 즉 이윤을 낳는 수단으로서의 이 속성으로 하여 화폐는 상품으로, 그러나 특수한 종류의 상품으로 된다. 결국 같은 것이지만

자본으로서의 자본이 상품으로 된다.⁵⁴⁾

연평균이윤율이 20%라고 하자. 그러면 1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를 가진 한 기계는 평균조건 밑에서 그리고 평균수준의 지식과 합목적적 활동으로 자본으로서 쓰이면 20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을 낳을 것이다. 따라서 100파운드 스텔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파운드 스텔링에서 120파운드 스텔링을 얻을 수 있는, 또한 20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을 낳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는 100파운드 스텔링의 잠재적 자본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한 해 동안 그 100파운드 스텔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이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실제로 자본으로 적용한다면 그는 이 다른 사람에게 20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을, 즉 이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이게 하지 않으며 이 다른 사람이 아무런 등가도 지불하지 않는 잉여가치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이 다른 사람이 그 100파운드 스텔링의 소유자에게 연말에 가령 5파운드 스텔링을, 즉 생산된 이윤의 한 부분을 지불한다면 이 다른 사람은 그것으로 100파운드 스텔링의 사용가치를, 즉 20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을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인, 자본으로서의 그 기능의 사용가치를 지불하는 것이다. 이 화폐의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이윤부분을 이자라고 하는데, 따라서 이 이자는 이윤 가운데서 기능을 노는 자본이 제 주머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부분의 특별한 이름, 특별한 항목에 지나지 않는다.

그 100파운드 스텔링을 가진다는 것이 그 소유자에게 그의 자본이 생산한 이윤의 한 부분인 이자를 차지할 힘을 준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100파운드 스텔링을 주지 않는다면 이 다른 사람은 이윤을 생산할 수 없을 것이며 도대체 이 100파운드 스텔링에 대한 자본가로서 기능을 놀 수 없을 것이다.⁵⁵⁾

길바트와 함께(주를 보라) 여기에서 자연적 정의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생산의 대리자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거래들의 정의

54) 여기에서 경제학자들이 사태를 바로 그렇게 이해하는 몇 개 구절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신들(잉글랜드 은행)은 자본이라는 상품을 거래하는 대상인들인가?”라고 이 은행의 한 이사는 「은행법에 관한 보고」(1857년, 하원(104페이지))를 위한 증인신문에서 질문을 받았다.

는 이 거래들이 생산관계의 자연적 귀결에 기초하고 있다. 이 경제적 거래들이 참가자들의 자원적인 행동으로서, 그들의 공동의사의 표명으로서, 그리고 쌍방에 다 국가가 강요할 수 있는 계약으로서 나타나는 법적 형식들은 그야말로 형식일 따름이지 그 자체가 이 거래의 내용을 규정할 수 없다. 그 법적 형식들은 이 내용을 표현할 따름이다. 이 내용은 그것이 생산양식에 상응하며 그에 적합한 한에서 정당하다. 이 내용은 그것이 생산양식과 모순되는 한에서는 부당하다. 노예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부당하다. 상품의 질을 속이는 것도 역시 부당하다.

그 100파운드 스텔링은 산업자본으로서건 상업자본으로서건 자본으로서 기능을 늘기 때문에 20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을 낳는다. 그러나 자본으로서 이렇게 기능을 노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조건은 그것이 자본으로서 지출되며 따라서 그 화폐가 생산수단의 구입에(산업자본의 경우) 또는 상품의 구입에(상업자본의 경우) 지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폐가 지출되려면 그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 100파운드 스텔링의 소유자인 A가 그것을 자기의 개인적 소비에 지출하거나 퇴장화폐로서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기능을 노는 자본가인 B가 자본으로서 지출할 수 없을 것이다. B는 자기의 자본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A의 자본을 지출한다. 그러나 B는 A의 자본을 A의 동의 없이는 지출할 수 없다. 따라서 맨 처음에 그 100파운드 스텔링을 자본으로서 지출하는 것은 사실상 A이다. 비록 자본가로서의 A의 전체 기능은 그 100파운드 스텔링을 자본으로서 이렇게 지출하는 데 그치지만 말이다. 이 100파운드 스텔링을 살펴보는 한에서 B가 자본가로서 기능을 노는 것은 오직 A가 그에게 그 100파운드 스텔링을 맡기고 따라서 그것을 자본으로서 지출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자불는 자본의 독특한 유통을 살펴보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연구해야 할 것은 이자불는 자본이란 상품으로서 팔리는, 즉 그것을 아

55) “이윤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화폐를 꾸는 사람이 쥐어주는 사람에게 이윤의 한 부분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자연적 정의의 자명한 원리이다”(길바트, 『은행업의 역사와 원리』, 런던, 1834년, 163페이지).

주 주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꺾주는 그러한 고유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출발점은 A가 B에게 대부하는 화폐이다. 이 대부는 저당을 잡을 수도 있고 잡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당을 잡는 형태는 상품이나 어음, 주식 등과 같은 채무증서를 잡고 선대한 것을 예외로 하면 더 낫은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형태들은 여기에서는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서 문제로 하는 것은 보통형태의 이자붙는 자본이다.

B의 손에서 화폐는 실지 자본으로 전화되고 $G-W-G'$ 의 운동을 거치며 그 다음에 G' 로서, 즉 $G+\Delta G$ 로서 A에게로 되돌아오는데 여기에서 ΔG 는 이자를 표시한다. 간단히 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당분간 자본이 비교적 오랜 기간 B의 손에 머물고 이자는 기한이 될 때마다 지불되는 경우를 제쳐놓는다.

따라서 운동은 다음과 같다.

$$G-G-W-G'-G'$$

여기에서 이중으로 나타나는 것은 1)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지출이며 2) 실현된 자본으로서, G' 또는 $G+\Delta G$ 로서 화폐가 되돌아오는 것이다.

상업자본의 운동 $G-W-G'$ 에서는 똑같은 상품이 두 번 손을 바꾸거나 상인이 상인에게 파는 경우에는 여러 번 손을 바꾼다. 그러나 똑같은 상품의 그러한 자리바꿈은 어느 것이나 상품을 사거나 파는 형태변화를 보여준다. 비록 상품이 종국적으로 소비로 들어갈 때까지 이 과정이 몇 번이고 되풀이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이다.

또 한편 $W-G-W$ 에서는 똑같은 화폐가 두 번 자리를 바꾸지만 이 자리바꿈은 상품이 먼저 화폐로 전화되고 그 다음에 화폐에서 다시 다른 상품으로 전화되는 상품의 완전한 형태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반대로 이자붙는 자본에서는 G의 첫번째 자리바꿈은 상품의 형태변화나 자본의 재생산의 어떠한 계기도 결코 아니다. G의 자리바꿈은 비로소 두번째 지출에서, 그 화폐로 상업을 운영하거나 그 화폐를 생산 자본으로 전화하는 기능을 노는 자본가의 손에서 그러한 계기로 된다. G의 첫번째 자리바꿈은 이 경우에 다름 아니라 A에게서 B에게로 화폐를 양도하는 것 또는 넘겨주는 것을 표현하며 이 양도는 보통 일정한 법적

형식들과 조건들을 준수하는 데서 이루어지는 양도이다.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이 이중 지출에서 첫번째 지출은 A가 B에게 단순히 화폐를 넘겨주는 것인데 이 이중의 지출에 상응하여 화폐가 이중으로 되돌아온다. 화폐는 G' 또는 $G + \Delta G$ 로서 운동에서 기능을 노는 자본가 B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때 B는 그것을 다시 A에게 넘겨주지만 이제 이윤의 한 부분과 함께 실현된 자본으로서, $G + \Delta G$ 로서 넘겨주는데 여기에서 ΔG 는 전체 이윤과 같지 않고 이윤의 한 부분인 이자와 같다. 화폐는 다만 B가 그것을 지출한 것으로서, 기능을 노는 자본으로서, 그러나 A의 소유물로서만 B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화폐가 완전히 되돌아오려면 B는 그것을 다시 A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그러나 B는 자본액 외에 그가 이 자본액으로 얻은 이윤의 한 부분을 이자라는 이름 밑에 A에게 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A는 B에게 그 화폐를 다만 자본으로서 즉 운동에서 유지될 뿐 아니라 그 소유자에게 잉여가치를 가져다 주는 가치로서 주었기 때문이다. 화폐는 그것이 기능을 노는 자본으로 있는 동안까지만 B의 손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화폐가 되돌아옴에 따라 즉 기한이 다 지난 후에는 그것은 자본으로서 기능을 놀지 않게 된다. 그러나 그 화폐는 더는 기능을 놀지 않는 자본으로서 의연히 법률상 그 소유자인 A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안된다.

과는 형식이 아니라 이 상품 즉 상품으로서의 자본에 독특한 꿰주는 형식——어쨌든 다른 거래들에서도 보게 되는——은 벌써 자본이 이 경우에 상품으로서 나타난다는 또는 화폐가 자본으로서 상품으로 된다는 규정에서 나온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본 것(『자본론』, 제2부, 제1장)이지만 여기에서 간단히 상기시킬 것은 자본은 유통과정에서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으로서 기능을 논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형태에서는 자본은 자본으로서는 상품으로 되지 않는다.

생산자본이 상품자본으로 전화되자 그것은 시장에 내던져지고 상품으로서 팔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단순히 상품으로서 기능을 논다. 자본가는 여기에서는 구매자가 상품의 구매자로서만 나타나듯이 상품의

판매자로서만 나타난다. 생산물은 상품으로서 유통과정에서 팔림으로써 자체의 가치를 실현하고 화폐로서의 자체의 전화된 모습을 띠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상품을 소비자가 생활수단으로서 사건, 자본가가 생산수단으로서 자본의 구성부분으로서 사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상품자본은 유통행위에서는 자본으로서가 아니라 상품으로서만 기능을 논다. 그것이 단순한 상품과 달리 상품자본인 것은 1) 그것이 이미 그 속에 잉여가치를 배고 있으며 따라서 그 가치의 실현은 동시에 잉여가치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품으로서의, 일정한 가격을 가진 생산물로서의 그것의 단순한 정제는 달라지지 않는다. 2) 상품으로서의 상품자본의 이 기능은 자본으로서의 그것의 재생산과정의 한 계기이며 따라서 상품으로서의 그것의 운동은 그것에 의하여 수행되는 과정의 부분운동에 지나지 않는 동시에 자본으로서의 그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자본으로서의 운동으로 되는 것은 판매행위 자체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판매행위가 자본으로서의 이 일정한 가치액의 총운동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본은 화폐자본으로서는 사실상 단순히 화폐로서 즉 상품(생산요소들)의 구매수단으로서 작용할 따름이다. 이 화폐가 이 경우에 동시에 자본의 한 형태인 화폐자본으로 되는 것은 구매행위에 즉, 그것이 화폐로서 수행하는 실제적 기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매행위가 자본의 총운동과 연관되어 있는데 기인한다. 왜냐하면 자본이 화폐로서 수행하는 이 행위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품자본과 화폐자본이 실제로 기능을 놀며 실제로 과정에서 그 역할을 노는 한에서 상품자본은 이 경우에 상품으로서만, 화폐자본은 화폐로서만 작용할 따름이다. 형태변화의 어느 한 개별적 계기에서도 그 자체로 보면 자본가는 상품이 그에게는 자본을 표시하지만 상품을 자본으로서 구매자에게 팔지 않으며 또는 자본가가 화폐를 자본으로서 판매자에게 내주지 않는다. 두 경우에 다 자본가는 상품을 단순히 상품으로서 내주며 화폐를 단순히 화폐로서, 상품의 구매수단으로서 내준다.

자본이 유통과정에서 자본으로서 나타나는 것은(자본은 생산과정에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종속되고 잉여가치를 생산함으로써 자본으로서 나타나는데) 오직 모든 과정의 전반적 연관에서만, 출발점이 동시에 되돌아가는 점으로서 나타나는 계기에서, $G-G'$ 또는 $W-W'$ 에서만이다. 그러나 출발점으로 되돌아가는 이 계기에서는 매개하는 과정은 사라져 있다. 여기에 있는 것은 G' 또는 $G+\Delta G$ 이며(ΔG 만큼 늘어난 가치액이 이제 화폐형태로 존재하건, 상품형태나 생산요소들의 형태로 존재하건, 상품형태나 생산요소들의 형태로 존재하건) 이 화폐액은 맨 처음에 선대한 화폐액 더하기 이것을 넘는 초과분인 실현된 잉여가치와 같다. 그리고 자본이 실현된 자본으로서, 늘어난 가치로서 존재하는 바로 이 되돌아가는 점에서는——되돌아가는 점이 쉬는 점으로서 고정된다고 생각되거나 실제로 고정되는 한에서——이 형태에서는 자본은 결코 유통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전과정의 결과로서 유통에서 회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본이 다시 지출된다면 그것은 결코 자본으로서 제3자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상품으로서 그에게 팔거나 상품의 댓가인 단순한 화폐로서 그에게 내준다. 자본은 자체의 유통과정에서는 결코 자본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오직 상품이나 화폐로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 경우에 다른 사람을 위한 자본의 유일한 정재형태이다. 상품과 화폐는 이 경우에 상품이 화폐로 전화되고 화폐가 상품으로 전화되는 한에서, 구매자나 판매자에 대한 그것들의 실제적 관계에서 자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본가 자신에 대한(주관적으로 보아) 그것들의 관념적 관계에서만 또는 재생산과정의 계기로서만(객관적으로 보아) 자본이다. 실제적 운동에서 자본이 자본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유통과정이 아니라 오직 생산과정에서, 노동력의 착취과정에서이다.

그러나 이자불는 자본에서는 사정이 다르며 바로 이 점에 이자불는 자본의 특수한 성격이 있다. 자기의 화폐를 이자불는 자본으로서 적용하려는 화폐소유자는 그 화폐를 제3자에게 내주고 그것을 유통에 내놓으며 그것을 자본으로서의 상품으로 만드는데 자기자신을 위한 자본으로서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자본으로서도 그렇게 한다. 화폐는 다만 그것을 내주는 사람에게서만 자본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제3자에게 처음부터 자본으로서, 즉 잉여가치, 이윤을 낳는 사용가치를 가진 가치로서

양도된다. 즉 운동에서 유지되며 기능을 논 다음에는 그것을 처음에 내 준 사람, 이 경우에는 화폐소유자에게로 되돌아가는 가치로서 양도된다. 따라서 이 가치는 일시적으로만 화폐소유자에게서 떠나며 그 소유자가 가지고 있다가 일시적으로만 기능을 노는 자본가의 소유로 넘어간다. 즉 지불되거나 팔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될 따름이다. 다시 말하여 일정한 기한이 된 다음에는 첫째로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 오며, 둘째로는 잉여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인 사용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실현된 자본으로서 되돌아온다는 조건에서만 양도된다.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상품은 그 속성에 따라 고정자본이나 유동자본으로서 대부된다. 화폐는 두 형태로 다 대부될 수 있는데 고정자본으로서 대부되는 경우는 예컨대 종신연금의 형태로 상환되며 그리하여 이자와 함께 언제나 자본의 한 부분도 되돌아온다. 어떤 상품들은 그 사용가치의 본성에 따라 고정자본으로서만 대부될 수 있다. 예컨대 집, 배, 기계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대부되는 모든 자본은 그 형태가 어떻든, 그리고 그 사용가치의 본성으로 하여 그 반환이 어떻게 변경되든 언제나 화폐자본의 특수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 대부되는 것은 언제나 일정한 화폐이며 또 이 화폐액에 근거하여 이자도 계산되기 때문이다. 대부되는 것이 화폐도 아니고 유동자본도 아니라면 그것이 상환되는 방식도 고정자본이 되돌아오는 방식과 같다. 대부자는 주기적으로 이자와 고정자본 자체의 소비된 가치의 한 부분, 주기적 마멸분에 해당하는 등가를 받는다. 그리고 기한이 다 되었을 때 대부된 고정자본에서 소비되지 않은 부분은 현물로 되돌아온다. 대부된 자본이 유동자본이라면 그 자본 역시 유동자본이 되돌아오는 방식대로 대부자에게로 되돌아온다.

따라서 되돌아오는 방식은 매번 재생산되는 자본과 그 자본의 특수한 종류들의 실제적인 순환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되는 자본의 상환은 반환의 형태를 띤다. 그것은 그 자본의 선대, 양도가 대부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원래의 화폐자본만을 취급하는데 대부되는 자본의 다른 형태들은 모두 그 화폐자본에서 갈라져나온다.

대부되는 자본은 두 번 되돌아온다. 즉 그것은 재생산과정에서 기능을 노는 자본가에게로 되돌아오며 그 다음에 또 한 번 대부자인 화폐자본가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그 자본의 진정한 소유자, 그 법률상의 출발점에 반환되는 것으로서 되돌아오는 것이 되풀이된다.

실제적 유통과정에서는 자본이 언제나 오직 상품이나 화폐로서 나타나며 자본의 운동은 결국 일련의 구매와 판매로 된다. 간단히 말하여 유통과정은 결국 상품의 형태변화로 된다. 재생산과정 전체를 놓고 보면 사태가 다르다. 우리가 화폐에서 출발하면(그런데 상품에서 출발하더라도 똑같다.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상품의 가치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따라서 상품 자체를 화폐의 견지에서 보기 때문이다) 일정한 화폐액이 지출되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느 정도 불어나서 되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 선대된 화폐액에 대한 보상분이 잉여가치가 덧붙여 되돌아온다. 그 화폐액은 일정한 순환운동을 거쳐 유지되고 늘어났다. 그런데 화폐는 그것이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한에서 바로 자체를 유지하고 자체를 늘이는 이 화폐액으로서 대부되는 것이며 이 화폐액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약간의 덧붙이와 함께 되돌아오며 언제나 다시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 있다. 그 화폐는 화폐로서도, 상품으로서도 지출되지 않고 따라서 그것이 화폐로서 선대되는 경우에는 상품과 교환되지도 않고 그것이 상품으로서 선대되는 경우에는 화폐를 받고 팔리지 않으며 그것은 자본으로서 지출된다.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을 총체로서 그리고 통일체로서 보면 자본이 그 자체에 대한 관계, 자본이 표시되는 그 관계——이 관계에서는 자본이 화폐를 낳는 화폐로서 나타난다——는 이 경우에는 매개하는 중간운동없이 단순히 화폐의 성격으로서, 화폐의 규정성으로서 화폐와 유착된다. 그리고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 대부될 때에는 이 규정성에서 화폐가 양도된다.

프루동은 화폐자본의 역할을 묘하게 보고 있다(『신용의 무보상성, F. 바스띠아와 프루동의 논쟁』, 파리, 1850년). 그 때문에 대부는 팔리는 것이 아니므로 프루동에게는 대부가 나쁜 것으로 보인다.

이자를 받는 대부는

“파는 대상에 대한 소유권은 결코 양도하지 않으면서 똑같은 대상을 늘 새로 팔고 그에 대한 가격을 늘 새로 받는 능력이다”(9페이지⁶³).

화폐, 집 등 대상은 사고 팔 때처럼 소유자를 바꾸지는 않는다. 그러나 프루동은 화폐를 이자불는 자본의 형태로 내줄 때에는 그에 대한 어떠한 등가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사고 파는 개개 행위에서는, 일반적으로 교환이 진행되는 한에서는 대상이 실지로 양도된다. 팔리는 대상의 소유는 매번 양도된다. 그러나 여기서 가치는 양도되지 않는다. 팔 때에는 상품은 양도되지만 그 가치는 양도되지 않으며 그 가치는 화폐의 형태로 또는 이 경우에는 화폐의 다른 형태에 지나지 않는 채무증서나 지불명의의 형태로 반환된다. 살 때에는 화폐가 양도되지만 그 가치는 양도되지 않으며 그 가치는 상품의 형태로 보상된다. 전체 재생산과정에서 산업자본가는 똑같은 가치를 자기 손에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잉여가치를 제쳐놓고 보면) 다만 그 형태가 서로 다를 따름이다.

교환 즉 대상들의 교환이 진행되는 한에서는 아무런 가치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똑같은 자본가는 똑같은 가치를 언제나 자기 손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잉여가치가 자본가에 의하여 생산되는 한에서는 어떠한 교환도 진행되지 않는다. 교환이 진행되자 잉여가치는 이미 상품 속에 들어 있다. 하나하나의 교환행위들을 살펴보지 않고 자본의 총순환 $G-W-G'$ 를 살펴보면 일정한 가치액이 끊임없이 선대되고 이 가치액 더하기 잉여가치 또는 이윤이 유통에서 회수된다. 이 과정의 매개는 물론 단순한 교환행위들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화폐를 대부하는 자본가의 이자는 바로 자본으로서의 G 의 이 과정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프루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자를 파는 모자 제조업자는 사실상…그 가치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고 받는다. 그러나 화폐를 대부하는 자본가는…자기의 자본을 고스란히 회수할 뿐만이 아니다. 그는 자본보다 더 많이, 그가 교환에 던져넣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 그는 자본을 넘어 이자를 받는다”(69페이지).

여기에서 모자 제조업자는 화폐를 대부하는 자본가에 맞선 산업자본가를 대표한다. 프루동은 어떻게 산업자본가가 상품을 그 가치대로 팔 수 있는가(생산가격에 의한 균등화는 이 경우에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프루동은 이해하고 있다), 또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그가 교환에 던져넣는 자본을 넘어 이윤을 받는가 하는 비밀을 명백히 모르고 있다. 100개의 모자의 생산가격이 115파운드 스텔링이고 이 생산가격이 우연히 모자들의 가치와 같으며 따라서 모자들을 생산하는 자본은 사회적 평균 구성을 가진 자본이라고 하자. 이윤이 15%라면 모자 제조업자는 자기의 상품들을 115파운드 스텔링인 그 가치대로 팔아서 15파운드 스텔링의 이윤을 실현한다. 그가 모자들에 들이는 비용은 모두 100파운드 스텔링이다. 그가 자기자신의 자본으로 생산하였다면 그는 초과분 15파운드 스텔링을 다 제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대부를 받은 자본으로 생산하였다면 그는 이 15파운드 스텔링 가운데서 아마 5파운드 스텔링을 이자로 떼주어야 한다. 그렇다고 하여 모자의 가치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으며 다만 이 가치 속에 이미 들어 있는 잉여가치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르게 나누어질 따름이다. 따라서 이자를 지불한다고 하여 모자의 가치는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프루동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자에 맞지 않는 것이다.

“상업에서는 자본의 이자가 노동자의 임금에 덧붙여 상품의 가격을 구성하므로 노동자가 자기자신의 노동의 생산물을 되살 수는 없다.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자가 지배하는 조건에서는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원칙이다”(105페이지).⁵⁶⁾

프루동이 자본의 본성을 얼마나 이해하지 못하였는가 하는 것은 그가

56) 그러므로 프루동의 판단에 의하면 집, 화폐 등은 자본으로서 대부되지 않고 상품으로서 “...원가대로”(43, 44페이지) 양도된다. 루터는 프루동보다 좀 높아서 있었다. 그는 이윤을 얻는 것은 대부나 구매의 형태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상업에서도 고리대업이 생긴다. 그러나 이것은 단번에 말하기에는 너무나 벅하다. 지금은 다만

자본 일반의 운동을 이자불는 자본의 독특한 운동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글이 보여준다.

“이자가 축적됨으로써 화폐자본은 일련의 교환을 거쳐 늘 그 원천으로 되돌아오므로 똑같은 사람이 하는 대부는 언제나 똑같은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온다”(154페이지).

그러면 프루동에게 이자불는 자본의 독특한 운동에서 수수께끼로 남는 것은 무엇인가? 구매, 가격, 대상의 양도라는 점주들과 여기에서 잉여가치가 나타나는 직접적 형태, 요컨대 여기에서 자본으로서의 자본이 상품으로 되었으며 따라서 판매가 대부로 전화되고 가격이 이윤의 몫으로 전화된 현상이다.

자본이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총순환을 하는 자본을 특징적인 운동이다. 이것은 결코 이자불는 자본의 특징만은 아니다. 이자불는 자본에서 특징적인 것은 매개하는 순환과 떨어진, 돌아오는 외적인 형태뿐이다. 대부하는 자본가는 등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자본을 내주며 그것을 산업자본가들에게 넘겨준다.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본의 실지 순환과정의 행위가 아니며 다만 산업자본가가 실현해야 할 이 순환을 준비할 따름이다. 화폐의 이러한 첫 자리바꿈은 형태변화의 어떠한 행위도, 구매도 판매도 표현하지 않는다. 아무런 교환도 진행되지 않고 아무런 등가도 얻어지지 않는 만큼 소유권은 양도되지 않는다. 화폐가 산업자본가의 손에서 대부하는 자본가의 손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자본을 내준 맨 처음의 행위를 보충할 따름이다. 자본은 화폐형태로 선대되어 순환과정을 거쳐 다시 화폐형태로 산업자본가에게로 되돌아간다. 그러나 자본은 지출된 때에 그의 것이 아니었으므로 되돌아간 때에도 그의 것이 아니다. 재생산과정을 거친다고 하여 이 자본

한 가지 즉 대부하는 고리대업에 대해서만 말하려 한다. 이 고리대업을 처리한 후에 우리는 응당(가까운 앞날에) 상업적 고리대업에 대해서도 논할 것이다”(M. 루터,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도록 승려들에게 주는 지시」, 위템베르그, 1540년).

이 산업자본가의 소유로 전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그는 그 자본을 대부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자본을 대부자의 손에서 채무자의 손으로 넘겨주는 맨 처음의 지출은 자본의 실제적 재생산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다만 그것을 준비할 따름인 하나의 법률상 거래이다. 되돌아온 자본을 다시 채무자의 손에서 대부자의 손으로 넘겨주는 반환은 맨 처음의 법률상 거래를 보충하는 둘째번 법률상 거래이다. 맨 처음의 거래는 실제적 과정을 준비하며 둘째번 거래는 실제적 과정이 끝난 후에 뒤따라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대부하는 자본의 출발점과 종점, 그것을 내주고 돌려주는 것은 자본의 실제적 운동의 전후에 진행되며 그 실제적 운동 자체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법률상 거래들에 의하여 매개되는 자의적인 운동으로서 나타난다. 자본이 맨 처음부터 산업자본가의 것이었고 따라서 그의 소유로서 꼬에게로만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자본의 실제적 운동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을 것이다.

맨 처음에 하는 준비행위에서 대부자는 자기의 자본을 채무자에게 내준다. 둘째번에 뒤따라 하는 마감행위에서는 채무자가 자본을 대부자에게 돌려준다. 쌍방 사이의 거래만이 문제인 한에서——그리고 잠시 이자를 제쳐놓고 보면——따라서 대부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대부되는 자본 자체의 운동만이 문제인 한에서는 이 두 행위(자본의 실제적 재생산운동의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랜 것으로 하여 서로 떨어지는)가 이 모든 운동을 포괄한다. 그리고 돌려준다는 조건으로 내주는 이 운동은 일반적으로 꾸주고 또 대부받는 운동이며 화폐나 상품을 조건부로만 양도하는 이 특수한 형태의 운동이다.

화폐가 자본가에게로 되돌아오고 자본이 그 출발점으로 되돌아오는 자본 일반의 특징적 운동은 이자불는 자본에서는 그 운동의 형태인 실제적 운동과는 떨어진 순전히 외적인 모습을 띤다. A는 자기의 화폐를 화폐로서가 아니라 자본으로서 내준다. 이 경우에 자본은 아무런 변화도 없다. 자본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갈 따름이다. 화폐가 실제로 자본으로 전화되는 것은 B의 손에서 비로소 이루어진다. 그러나 A에게는 단순히 B에게 내준 것만으로 화폐는 자본으로 되어 있다. 자본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서 실제로 되돌아오는 것은 B의 경우에만 있다. 그러나 A에

게서는 양도할 때와 똑같은 형태로 되돌아온다. 자본은 B의 손에서 다시 A의 손으로 되돌아간다. 화폐를 얼마동안 내주고 쥐주는 것과 이자(잉여가치)를 붙여 도로 받는 것이 이자붙는 자본 자체에 고유한 운동의 모든 형태이다. 대부된 화폐가 자본으로서 하는 실제적 운동은 대부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 밖에 있는 조작이다. 이 거래들 자체에서는 매개하는 과정은 사라져 있고 볼 수 없으며 직접 들어 있지도 않다. 자본은 특종의 상품으로서 또 독특한 양도방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되돌아오는 것이 이 경우에는 또 일정한 일련의 경제적 행위의 귀결과 결과로서 표현되지 않고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한 법률상 계약의 결과로서 표현된다. 되돌아오는 시기는 재생산과정의 진행에 달려 있다. 이자붙는 자본에서는 그것이 자본으로서 되돌아오는 것이 대부자와 채무자 사이의 단순한 협약에 달려 있는 것같이 보인다. 그리하여 이 거래와 관련하여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이 더는 생산과정에 의하여 규정되는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고 마치 대부된 자본이 결코 화폐형태를 잃지 않은 것처럼 나타난다. 사실상 이 거래들은 자본이 실제로 되돌아오는 것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그 거래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실천에서도 언제나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본이 실제로 제때에 돌아오지 않으면 채무자는 대부자에 대한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보조원천을 찾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의 단순한 형태——A라는 금액으로서 지출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 중간기간 밖에는 다른 어떠한 매개도 없이 $A + \frac{1}{x}A$ 의 금액으로 되돌아오는 화폐——는 실제적 자본운동의 불합리한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자본의 실제적 운동에서 그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은 유통과정의 한 계기이다. 맨 처음에 화폐는 생산수단으로 전화된다. 생산과정은 생산수단을 상품으로 전화한다. 그 상품이 필립으로써 생산수단은 화폐로 도로 전화되고 이 형태로 자본을 맨 처음에 화폐형태로 선대한 자본가의 손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이자붙는 자본에서는 되돌아오는 것은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자본의 소유자와 어떤 둘째 사람 사이의 법률상

거래의 결과이다.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내주는 것과 반환하는 것뿐이다. 그 사이에 진행되는 것은 모두 사라져 있다.

그러나 화폐는 자본으로서 선대되면 그것을 선대하는 자에게로, 즉 그것을 자본으로서 지출하는 자에게로 되돌아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G-W-G'$ 는 자본의 내재적 운동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그 때문에 화폐소유자는 화폐를 자본으로서 즉 자체의 시점으로 되돌아가며 운동하는 동안에 가치로서 유지되고 또 늘리는 속성을 가진 것으로서 대부할 수 있는 것이다. 화폐소유자가 화폐를 자본으로서 내주는 것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된 후에 그것이 그 시점으로 되돌아오며 따라서 바로 화폐가 채무자 자신에게로 되돌아오므로 채무자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화폐를 내주는 것은 화폐가 실제로 자본으로서 쓰이며 실제로 그 시점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화폐가 자본으로서 하는 실제적 순환이 채무자가 화폐를 대부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법률상 거래의 전제이다. 채무자가 화폐를 자본으로서 지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와 관계된 문제이다. 대부자는 화폐를 자본으로서 귀주는 것이며 화폐는 그러한 것으로서 자본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기능에는 화폐형태로 그 시점으로 되돌아오기까지의 화폐자본의 순환이 들어 있다.

가치액이 화폐로서 또는 상품으로서 기능을 노는 유통행위인 $G-W$ 와 $W-G'$ 는 그 가치액의 총운동의 매개하는 과정들, 하나하나의 계기들에 지나지 않는다. 그 가치액은 자본으로서 $G-G'$ 라는 모든 운동을 수행한다. 그 가치액은 화폐로서 또는 그 어떤 형태의 가치액으로서 선대되며 가치액으로서 되돌아온다. 화폐의 대부자는 그 화폐를 상품을 사는 데 지출하는 것이 아니며 또는 가치액이 상품으로 존재한다면 그 상품을 화폐를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자본으로서, $G-G'$ 로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체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가치로서 선대한다. 대부자는 사거나 팔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귀준다. 따라서 귀주는 이것은 가치를 화폐나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자본으로서 양도하는 데 상응하는 형태이다. 그렇다고 하여 귀주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과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거래형태로 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제까지는 대부하는 자본의 소유자와 산업자본가 사이에서의 대부하는 자본의 움직임만을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자를 연구해야 한다.

대부자는 자기의 화폐를 자본으로서 지출한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가치액은 자본이며 그러므로 그것은 그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러나 대부하는 가치액이 그에게로 단순히 되돌아오는 것은 그 가치액이 자본으로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대부된 가치액의 단순한 반환일 것이다. 선대된 가치액이 자본으로서 되돌아오려면 그것은 운동 중에 자체를 유지할 뿐 아니라 자체를 불리고 그 가치량이 늘어나야 하며 따라서 잉여가치와 함께 $G + \Delta G$ 로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ΔG 는 여기에서 이자 즉 평균이윤 가운데서 기능을 노는 자본가의 손에 남지 않고 화폐자본가의 것으로 되는 부분이다.

화폐가 자본으로서 화폐자본가에 의하여 양도된다는 것은 화폐가 $G + \Delta G$ 로서 그에게 반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자본은 대부되는 기간이 끝나야 비로소 반환되지만 이자는 그 기간의 일정한 시기에 지불되는데 그 형태를 이제는 특별히 또 살펴보아야 한다.

화폐자본가가 채무자인 산업자본가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화폐자본가가 실제로 그에게 양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양도하는 행위만이 화폐의 대부를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양도로, 즉 상품으로서의 자본의 양도로 되게 한다.

이렇게 양도됨으로써만 화폐대부자의 자본은 상품으로서 제3자에게 내주게 되며 다시 말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자본으로서 제3자에게 내주게 된다.

일반적인 판매에서는 무엇이 양도되는가? 팔리는 상품의 가치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는 그 형태가 달라질 따름이기 때문이다. 이 가치는 실제로 화폐의 형태로 판매자의 손으로 넘어가기 전에 관념적으로 가격으로서 상품 속에 존재한다. 똑같은 가치와 똑같은 가치량은 이 경우에 형태를 바꿀 따름이다. 그것들은 한 번은 상품형태로 존재하였고 또 한 번은 화폐형태로 존재한다. 실제로 판매자가 양도하는 것, 따라서 또 구매자의 개인적 소비나 생산적 소비로 넘어가는 것은 상품의 사용가치이며 사용가치로서의 상품이다.

그런데 화폐자본가가 대부하는 동안 양도하며 차용자인 산업자본가에게 내주는 사용가치란 무엇인가? 그것은 화폐가 자본으로 전화되어 자본으로서 기능을 늘 수 있으므로, 따라서 화폐가 그 맨 처음의 가치량을 보존할 뿐 아니라 그것이 움직이는 동안에 일정한 잉여가치를, 평균이윤(이 이상이나 이하는 이 경우에는 우연적인 것으로서 나타난다)을 내놓으므로 하여 화폐가 얻은 사용가치이다. 다른 상품들에서는 사용가치가 결국 소비되며 따라서 상품의 실체와 그와 함께 그 가치도 사라진다. 그런데 자본이라는 상품은 그 사용가치가 소비됨으로써 그 가치와 사용가치가 유지될 뿐 아니라 늘어나기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본으로서의 화폐의 이 사용가치——평균이윤을 낳는 능력——를 화폐자본가는 산업자본가에게 양도하는 기간에 그는 대부한 자본에 대한 처분권을 산업자본가에게 내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대부되는 화폐는 산업자본가에 대한 관계에서 본 노동력과 어떤 비슷한 점이 있다. 산업자본가는 대부받은 자본의 가치는 단순히 반환하는데 노동력의 가치는 지불할 따름이다. 산업자본가에게서 노동력의 사용가치는 노동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노동력이 들이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이윤)를 낳는다는 것이다. 가치의 이 초과가 산업자본가에게서의 노동력의 사용가치이다. 대부되는 화폐자본의 사용가치도 또한 그와 같이 그 가치를 붙이고 늘이는 능력으로서 나타난다.

화폐자본가는 사실상 사용가치를 양도하며 그럼으로써 그가 내주는 것은 상품으로서 내주는 것으로 된다. 그러한 한에서 상품 그 자체와 완전히 비슷하다. 첫째로 한 사람의 손에서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은 가치이다. 단순한 상품, 상품 그 자체의 경우에는 똑같은 가치가 구매자와 판매자의 손에 남는데 다만 그 형태가 다를 뿐이다. 즉 그들이 다 거래전이나 후나 그들이 양도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구매자는 상품형태로, 판매자는 화폐형태로 가지고 있다. 차이는 다음과 같다. 즉 대부의 경우에는 화폐자본가만이 이 거래에서 가치를 내주는 유일한 사람이지만 그는 그 가치를 앞으로의 반환에 의하여 보존한다. 대부에서는 한편만이 가치를 내주므로 한편만이 가치를 받는다. 둘째로.

한편에서는 실제적 사용가치를 양도하고 다른 편에서는 그것을 받아 쓴다. 그러나 여느 상품과 달리 이 사용가치 자체가 가치이다. 즉 화폐가 자본으로서 쓰임으로써 나오는 가치량 가운데서 화폐의 맨 처음의 가치량을 넘는 초과분이다. 이윤이 이 사용가치이다.

대부되는 화폐의 사용가치는 자본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것으로서 평균적인 사정들에서 평균이윤을 낳는다는 것이다.⁵⁷⁾

그러면 산업자본가가 지불하는 것은 무엇이며 따라서 대부되는 자본의 가격은 무엇인가?

매씨(Massie)에 의하면

“채무자가 대부받은 화폐에 대하여 이자로서 지불하는 것은 대부받은 화폐가 낳을 수 있는 이윤의 한 부분이다.”⁵⁸⁾

일반적인 상품의 구매자가 사는 것은 그 상품의 사용가치이고 그가 지불하는 것은 그 상품의 가치이다. 화폐의 채무자가 사는 것도 역시 자본으로서의 그 화폐의 사용가치이다. 그러나 그가 지불하는 것은 무엇인가? 확실히 다른 상품들을 구매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들의 가격 또는 가치는 아니다. 대부자와 채무자 사이에서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와 같이 가치의 형태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그리하여 이 가치가 한 번은 화폐의 형태로 존재하고 또 한 번은 상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주는 가치와 돌려받는 가치가 똑같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표시된다. 가치액인 화폐를, 동가를 받지 않고 내주

57) “이자를 받는 정당성은 채무자가 그가 대부받은 화폐에서 이윤을 얻는 데 가 얻지 못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폐를 옮겨 적용하는 경우에 그것이 이윤을 낳는가 낳지 못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제원인에 관한 논술, 이 문제에 대한 윌리엄 페티 경과 로크 씨의 견해의 고찰』, 런던, 1750년, 49페이지. 이 익명으로 나온 책의 저자는 J. 매씨이다).

58) “부자들은 자기들의 화폐를 스스로 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꾸주는 데 그것은 이윤을 얻게 하고 이렇게 얻은 이윤의 한 부분을 소유자를 위하여 남기도록 하기 위해서이다”(같은 책, 23, 24페이지).

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것을 돌려받는다. 대부자는 똑같은 가치가 그의 손에서 채무자의 손으로 넘어간 다음에도 의연 그 가치의 소유자이다. 단순한 상품교환에서는 화폐는 늘 구매자의 편에 있다. 그러나 대부에서는 화폐가 늘 판매자의 편에 있다. 판매자는 화폐를 일정한 기간 내주는 자이며 자본의 구매자는 화폐를 상품으로서 받는 자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화폐가 자본으로서 기능을 놀며 따라서 선대되는 한에서이다. 채무자는 화폐를 자본으로서, 즉 자체를 불리는 가치로서 준다. 그러나 이것은 처음에는 선대되는 순간의 시점에 있는 모든 자본과 마찬가지로 다만 그 자체로서의 자본이다. 그것은 사용됨으로써 비로소 자체의 가치를 불리며 자본으로서 실현된다. 그러나 채무자는 실현된 가치로서 따라서 가치 더하기 잉여가치(이자)로서 그것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잉여가치는 오직 채무자가 실현한 이윤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즉 이윤 전체가 아니라 오직 그 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채무자에게서 채용한 자본의 사용가치는 그것이 그에게 이윤을 놓아준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자는 사용가치를 양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채무자에게 이윤이 다 돌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는 사용가치를 양도받은 데 대하여 지불할 것이 없을 것이며 그는 선대받은 화폐를 대부자에게 자본으로서, 실현된 자본으로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화폐로서만 반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화폐는 $G + \Delta G$ 로서만 실현된 자본이기 때문이다.

대부자와 채무자 둘이 다 똑같은 화폐액을 자본으로서 지출한다. 그러나 그 화폐액은 채무자의 손에서만 자본으로서 기능을 논다. 이윤은 똑같은 화폐액이 자본으로서 두 사람에게서 이중으로 정재한다고 하여 두 곱으로 되지는 않는다. 그 화폐액은 이윤이 나누어짐으로써만 두 사람에게서 자본으로서 기능을 놀 수 있다. 대부자에게 돌아가는 부분을 이자라고 한다.

모든 거래는 전제에 의하면 두 부류의 자본가들 즉 화폐자본가와 산업자본가 또는 상업자본가 사이에서 진행된다.

여기에서 자본으로서의 자본은 상품이라는 것 또는 여기에서 문제로 되고 있는 상품은 자본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여

기에서 나타나는 모든 관계는 단순한 상품의 관점에서는 또는 자체의 재생산 관점에서 상품자본으로서 기능을 노는 한에서의 자본의 관점에서도 불합리할 것이다. 여기에서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꿔주고 꾸는 것은 상품자본의 특수한 본성에서 나오는 차이이다. 여기에서 지불되는 것이 상품의 가격이 아니라 이자라는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 이자를 화폐자본의 가격이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이것은 상품의 가격이라는 개념과 전혀 모순되는 불합리한 가격형태이다.⁵⁹⁾ 여기에서 가격은 이러저러하게 사용가치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지불되는 일정한 화폐액이라는 순전히 추상적이며 내용없는 형태로 되고만다. 그런데 가격은 그 개념상 화폐로 표현된 이 사용가치의 가치와 같다.

자본의 가격으로서의 이자란 애당초 전혀 불합리한 형태이다. 이 경우에는 한 상품이 두 가지 가치를 가진다. 즉 한 번은 가치를 가지며 다음에는 이 가치와 다른 가격을 가진다. 그러나 가격이란 가치의 화폐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자본은 우선 다른 아닌 화폐액이며 또는 화폐액으로써 확정된 일정한 상품량의 가치이다. 상품이 자본으로서 대부되면 그 상품은 어떤 화폐액의 탈을 쓴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으로서 대부되는 것은 얼마만큼의 파운드의 목화가 아니라 목화의 형태로 그 가치로서 존재하는 얼마만큼의 화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본의 가격은 토렌스 씨가 생각하고 있듯이(위에서 든 주 59를 보라) 통화로서의 자본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화폐액으로서의 자본과 관련된다. 그런데 어떻게 가치액이 그 자체의 가격 외의 즉 그 자체의 화폐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가격 외의 가격을 가진다는 말인가? 그것도 그럴 것이 가격이란 상품의 사용가치와 구별되는 상품의 가치이기 때문이다(시장가격의 경우에도 그러한데 시장가격과 가치의 차이는 질적인 것이 아니라

59) “가치(value)라는 표현은 그것을 통화[유통수단]에 적용하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2) 앞날에 들어올 똑같은 통화액과 구별되는, 실지 손 안에 있는 통화, 또한 통화의 가치는 이자율에 의하여 채어지며 이자율은 대부할 수 있는 자본량과 그 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된다”(R. 토렌스 대령, 『1844년 은행특별법의 운용에 관하여』, 제2판, [런던], 1847년, {5, 6페이지}).

다만 양적인 것이며 다만 가치량과만 관련된 것이다). 질적으로 가치와 다른 가격이란 터무니없는 모순이다.⁶⁰⁾

자본은 그 가치를 늘임으로써 자본으로서의 자체를 표시한다. 자본의 증식정도는 자본이 자본으로서 실현되는 양적 정도를 표현한다. 자본이 낳는 잉여가치 또는 이윤——그 율 또는 높이——은 그것을 선대된 자본의 가치와 비교함으로써만 잴 수 있다. 그러므로 이자율은 자본의 증식정도가 큰가 작은가 하는 것도 이자액 즉 총이윤 가운데서 그 자본에 들어가는 부분을 선대된 자본의 가치와 비교함으로써만 잴 수 있다. 그러므로 가격이 상품의 가치를 표현한다면 이자는 화폐자본의 증식을 표현하며 따라서 바로 그 화폐자본에 대하여 대부자에게 지불되는 가격으로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프루동이 하고 있듯이 화폐에 의하여 매개되는 교환 즉 구매와 판매의 단순한 관계들을 여기에 곧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얼마나 엉터리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 전제는 바로 화폐가 자본으로서 기능을 놀며 따라서 자본 그 자체로서, 잠재적 자본으로서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 자체가 여기에서 상품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그 자본이 시장에 제공되고 화폐의 사용가치가 실제로 자본으로서 양도되는 한에서이다. 그러나 자본의 사용가치는 이윤을 낳는다는 것이다. 화폐나 상품의 자본으로서의 가치는 화폐나 상품으로서의 그것들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그 소유자들을 위하여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에 의하여 규정된다. 자본의 생산물은 이윤이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화폐가 화폐로서 지출되는가 자본으로서 선대되는가 하는 것은 화폐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화폐 또는 상품은 그 자체로서, 잠재적으로 자본인데 이것은 노동력이 잠재적으로 자본인 것과 똑같다. 왜냐하면 1) 화폐는 생산요소들로 전화될 수 있고 또

60) “화폐 또는 유통수단의 가치라는 말을 상품의 교환가치도, 자본의 사용가치도 표시하기 위하여 구별없이 쓰는 경우에 이 말이 애매한 것이 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원인이다”(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77페이지). 그러나 가치 그 자체(이자)가 자본의 사용가치로 된다는 주되는 혼란(사태의 본질 자체에 있는)을 투크는 보지 못하고 있다.

실지 그러한 것처럼 생산요소들의 단순히 추상적인 표현이며 가치로서의 생산요소들의 정재이기 때문이며 2) 부의 소재적 요소들은 잠재적으로는 이미 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은 또 그 소재적 요소들을 보충하는 그 대립물 즉 그것들을 자본으로 만드는 것——임금노동——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 이미 있기 때문이다.

소재적 부의 대립적인 사회적 성격——소재적 부가 임금노동으로서의 노동과 맞서 있다는 것——은 생산과정과 떨어져서 이미 자본소유 그 자체에 표현되어 있다. 그런데 이 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과 떨어지더라도 이 생산과정의 끊임없는 결과이며 또 이 끊임없는 결과로서 이 생산과정의 끊임없는 전제인데 이 계기는 화폐와 또한 상품이 그 자체로, 잠재적으로, 잠재적으로 자본이라는 점에, 화폐와 상품이 자본으로서 팔릴 수 있다는 점에 또 그것들이 이 형태에서 남의 노동을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남의 노동을 차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자체를 불리는 가치라는 점에 표현된다. 여기에서 또 명백해지는 것이지만 남의 노동을 차지할 수 있게 하는 근거이며 그 수단으로 되는 것은 바로 이 관계이지 등가로 되는 자본가의 그 어떠한 노동도 아니다.

그리고 또 이윤이 이자와 본래의 이윤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상품의 시장가격과 꼭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따라서 경쟁에 의하여 조절되는 한에서 자본은 상품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사점과 마찬가지로 차이점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상품의 시장가격은 그 생산가격과 일치하게 된다. 즉 그 경우에는 상품의 가격이 경쟁과는 관계없이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적 법칙에 의하여 규제되게 된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변동들은 시장가격이 생산가격과 어긋나는 것을 설명할 뿐이며 이 어긋나는 것은 서로 상쇄되며 그리하여 얼마만큼의 비교적 오랜 기간을 두고 보면 평균시장가격은 생산가격과 같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이 힘들은 작용하지 않게 되고 서로 상쇄되며 그렇게 되면 가격규정의 일반적 법칙은 하나하나의 경우의 법칙으로서도 나타난다. 그 경우에는 시장가격은 그 움직임의 평균으로서만이 아니라 이미 그 직접적인 정재에서 생산양식 자체의 내재적 법칙에 의하여 규제되어 있는 생산가격과 일치한다. 임금의 경우

에도 마찬가지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수요와 공급의 작용은 멎으며 임금은 노동력의 가치와 같다. 그러나 화폐자본의 이자는 사정이 다르다. 여기에서는 경쟁으로 하여 법칙에서 어긋남이 규정되지 않으며 경쟁이 지시하는 것 밖에는 나누는 데서 어떠한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보게 되겠지만 어떠한 자연적 이자율도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자연적 이자율이란 자유경쟁에 의하여 확정되는 율을 말한다. 이자율에는 어떠한 자연적 한계도 없다. 경쟁으로 하여 어긋남과 변동이 규정될 뿐이 아닌 경우에는, 따라서 서로 반작용하는 힘들이 균형을 이루어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일이 전혀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규정되어야 할 것은 그 자체로서는 법칙이 없는 것이며 자의적인 것이다. 상세한 것은 다음 장에 서술되어 있다.

이자불는 자본에서는 모든 것이 외부적으로 나타난다. 즉 자본의 선대는 단순히 자본이 대부자에게서 채무자에게로 넘어가는 것으로서 나타나며, 실현된 자본이 되돌아오는 것은 채무자에게서 대부자에게로 단순히 도로 넘어오는 것, 이자와 함께 반환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내재적인 규정도 그러하다. 즉 이윤율은 선대된 자본가치에 대한, 한 번의 회전에서 얻는 이윤의 비율에 의하여 규정될 뿐 아니라 이 회전기간, 자체의 길이에 의하여도, 따라서 산업자본이 일정한 기간에 낳는 이윤으로서도 규정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이자불는 자본에서는 완전히 외부적으로 나타나며 그리하여 일정한 기간에 대하여 대부자에게 일정한 이자가 지불된다.

낭만주의적인 아담 윌러는 그에게 예사로 되어 있는, 사물의 내부적 연관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국가관리술의 기본』, 베를린, 1809년〔제3부〕, 138페이지).

“물건의 가격을 규정하는 데서는 시간이 문제로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자를 규정하는 데서는 주로 고려된다.”

그는 상품의 가격을 규정하는 데 생산기간과 유통기간이 어떻게 참가하는가 그리고 바로 그 참가로 하여 어떻게 자본의 주어진 회전기간의

이윤율이 규정되는가, 이자율이 어떻게 바로 주어진 기간의 이윤에 의하여 규정되는가 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의 통찰력이란 언제나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수박 겉핥기이며 이것을 가지고 주제넘게도 신비롭고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데 있을 뿐이다. .

제 22 장 이윤의 분할. 이자율. 이자의 자연율

이 장의 대상은 일반적으로 후에 취급하게 될 모든 신용 현상들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세세히 연구할 수 없다. 대부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의 경쟁과 그 결과 화폐시장에서 비교적 짧은 동안 일어나는 변동들은 우리가 살펴보는 범위를 벗어난다. 산업의 경기순환기에 이자율이 거치는 순환을 서술하자면 이 경기순환 자체를 미리 서술하여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서는 할 수 없다. 세계시장에서 이자율이 어느 정도 근사하게 균등화되는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자불은 자본의 자립적 모습과 이윤으로부터 이자가 자립화되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친다.

이자는 우리가 이제까지 전제해온 데 의하면 산업자본가가 화폐자본가에게 지불해야 할 이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자의 최대한계는 이윤 자체인데 이 경우에 기능을 노는 자본가에게 돌아갈 부분은 0일 것이다. 개별적 경우에는 이자가 사실상 이윤보다 클 수 있지만 그 경우에는 이윤에서 지불될 수는 없는데 이런 경우들을 제쳐놓고 보면 아마 이윤에서 후에 아래에서 설명하게 될 감독비(wages of superintendence)로 될 부분을 뺀 것을 이자의 최대한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자의 최소한계는 전혀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자는 얼마든지 임의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때에는 반대로 작용하는 사정들이 연이어 나타나서 이자를 이 상대적인 최소한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자본을 쓴 데 대하여 지불되는 금액과 이 자본 자체 사이의 비율은 화폐로 낸 이자율을 표현한다. 이자율은 1) 이윤율과 2) 총이윤이 대부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나누어지는 비율에 달려 있다”(『이코노미스트』⁶⁴, 1853년 1월 22일)

“채무자가 끈 돈에 대하여 이자로서 지불하는 것은 끈 돈이 낳을 수 있는 이윤의 한 부분이므로 이 이자는 언제나 그 이윤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을 수 없다”(매쉴, 『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제원인에 관한 논술』, 런던, 1750년, 49페이지).

맨 먼저 총이윤과 그 가운데서 이자로서 화폐자본가에게 지불되어야 할 부분 사이에 어떤 고정된 비율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자는 총이윤이 오르내리는 대로 오르내리며 이 총이윤은 일반적 이윤율과 그 변동에 의하여 규정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예컨대 평균이윤율이 20%이고 이자가 이윤의 1/4이라면 이자율은 5%일 것이며 평균이윤율이 16%라면 이자는 4%일 것이다. 이윤율이 20%인 경우에 이자는 8%로 오를 수 있을 것이며 그래도 산업자본가는 이윤율이 16%이고 이자율이 4%인 경우와 똑같은 이윤을, 즉 12%를 얻을 것이다. 이자가 겨우 6%나 7%로 오른다면 그래도 산업자본가는 이윤의 큰 부분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자가 평균이윤의 어떤 변함없는 부분과 같다면 일반적 이윤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총이윤과 이자 사이의 절대적 차액은 그만큼 크며 따라서 총이윤 가운데서 기능을 노는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그만큼 크게 될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결과도 반대로 될 것이다. 이자가 평균이윤의 1/5이라고 하자. 10의 1/5은 2이다. 총이윤과 이자의 차액은 8이다. 20의 1/5은 4이다. 차액은 $20-4=16$ 이다. 25의 1/5은 5이며 차액은 $25-5=20$ 이다. 30의 1/5은 6이며 차액은 $30-6=24$ 이다. 35의 1/5은 7이며 차액은 $35-7=28$ 이다. 여기에서 이자율은 4, 5, 6, 7%로 각각 다르지만 언제나 총이윤의 겨우 1/5 즉 20%를 표현할 것이다. 따라서 이윤율이 다르면서 다른 이자율이 총이윤의 똑같은 부분들을 또는 총이윤에서 똑같은 백분율 부분을 표현할 수 있다. 이자의 비율이 그와 같이 변함없는 경우에는 산업이윤(총이윤과 이자의 차액)은 일반적 이윤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더 클 것이며 반대의 경우에는 결과도 반대로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사정들이 같다고 하면 즉 이자와 총이윤 사이의 비율이 어느 정도 변함없다고 가정하면 기능을 노는 자본가는 이윤율의 높이에 정비례하여 더 높거나 더 낮은 이자를 지불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지불하

려고 할 것이다.⁶¹⁾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윤율의 높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반비례하므로 한 나라에서 이자율이 높거나 낮은 것은 이자율의 차이가 실제로 이윤율의 차이를 표현하는 한에서 산업발전의 수준에 똑같이 반비례하게 된다. 후에 보게 되겠지만 늘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뜻에서는 이자가 이윤에 의하여, 더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자가 조절되는 이 방식은 이자의 평균수준에도 들어맞는다.

어쨌든 평균이윤율은 이자를 종국적으로 규정하는 최대한계라고 보아야 한다. 이자를 평균이윤과 관련시켜보아야 하는 사정을 우리는 곧 더 상세하게 살펴볼 것이다. 이윤과 같은 어떤 주어진 크기의 전체를 두 사람 사이에서 나누어야 할 전체의 크기인데 이 이윤의 크기는 평균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일반적 이윤율, 따라서 예컨대 100이라는 주어진 크기의 자본에 대한 이윤의 크기가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면 이자의 변동은 명백히 곧 자본으로 사업하는 기능을 노는 자본가에게 남는 이윤 부분의 변동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부지불노동에 의하여 새로 생산된 가치인 나누어야 할 이윤의 크기를 규정하는 사정들은 이 두 부류의 자본가들 사이에서의 이윤의 분할을 규정하는 사정들과는 아주 다르며 흔히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⁶²⁾

근대산업은 평온한 상태, 활기증진, 번영, 과잉생산, 파국, 정체, 평온한 상태 등 이러한 회전순환 속에서 움직이는데 이 순환을 더 상세히 분석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이 회전순환을 살펴보면 대체로 번영기나 초과이윤의 시기에는 낮은 이자율이 상응하고 번영에서 다음 순환단계에로의 이행기에는 이자가 올라가며 공황시기에

61) “자연적 이윤율은 하나하나의 기업들의 이윤에 의하여 조절된다(때때, 같은 책, 51페이지).

62) 원고에는 여기에 다음과 같은 지적이 있다. “이 장을 서술해가는 데서 알게 되겠지만 이윤분할의 법칙들을 연구하기에 앞서 우선 양적 분할이 어떻게 질적 분할로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앞장에서 이렇게 하는 데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이자를 이윤의 일정한 부분으로 보고 그 부분을 정확히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F. E.)

는 이자가 최대한으로 올라가 극단한 고리대수준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⁶³⁾ 1843년 여름부터 결정적인 변영이 시작되었는데 이자율은 1842년 봄에 아직 4½%였던 것이 1843년 봄과 여름에는 2%로 떨어졌으며⁶⁴⁾ 9월에는 1½%로까지 떨어졌다(길바트[「은행업에 관한 실무론」, 제5판, 런던, 1849년, 제1권], 166페이지). 그후 1847년 공황기에는 이자율이 8% 이상으로 올랐다.

한편 또 낮은 이자가 정채와 일치할 수 있고 천천히 오르는 이자가 활기증진과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이자율은 공황기에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는데 이 시기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지불하기 위하여 대부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때에는 이자가 오르는 데 따라 유가증권의 사세가 떨어지므로 자유로운 화폐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자붙는 증권을 헐값으로 손에 넣는데 아주 좋은 기회로 되며 그러한 증권은 정상적인 사태에서는 이자율이 다시 떨어지자 적어도 그 평균가격에 틀림없이 다시 이를 것이다.⁶⁵⁾

그러나 이윤율의 변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그것도 다음과 같은 두 개의 주되는 원인으로 하여 그러하다.

I. “자본은 생산적 투하 밖에는 결코 차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치더라도 이자율은 총이윤의 율에 어떠한 변동이 없어도 변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민

63) “불경기시기의 직후인 제1기에는 화폐가 넉넉하고 투기는 없다. 제2기에는 화폐가 넉넉하고 투기가 성행한다. 제3기에는 투기가 식기 시작하고 화폐를 찾게 된다. 제4기에는 화폐가 귀하고 불경기가 시작된다”(길바트, 같은 책, 제1권, 149페이지).

64) 투크는 이것을 “지난 해들에 유리한 투자가 없은 데 따른 필연적 현상인 과잉자본의 축적 때문이며 퇴장화폐가 나돌게 된 때문이며 또 영업의 전망에 대한 확신이 회복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1839년부터 1847년까지의 가격사」, 런던, 1848년, 54페이지).

65) “어떤 은행업자의 오랜 한 고객은 30만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있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를 거절당하였다. 그가 지불정지를 알리기 위하여 막 떠나려 할 때 은행업자는 그에게 그 유가증권을 15만파운드 스텔링에 사줄 터이니 그럴 필요가 없지 않겠는가고 말하였다”(H. 로이), 「환자시세론, 1844년의 은행법」, 런던, 1864년, 80페이지).

의 부가 발전하는 데 따라 자기 선조의 노동으로 하여 밀천을 가지게 되고 그 이자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고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청·장년기에는 열성껏 일하다가 늙어서는 물리나와 저축한 금액의 이자로 편안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나라의 부가 늘어나는 데 따라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벌써 어지간한 자본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적은 자본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재산을 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랜 부유한 나라들에서는 새로 개발되는 가난한 나라들에서보다 국민의 자본 가운데서 소유자가 스스로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부분이 사회의 총생산적 자본에 대하여 더 큰 비율을 차지한다. 영국에는 금리생활자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금리생활자 부류가 늘어나는 데 따라 자본을 대부하는 자들의 부류도 늘어난다. 그것은 두 부류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램제이,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에딘버러, 1836년), 201~202페이지).

Ⅱ. 신용체계의 발전과 이에 따라 사회의 모든 계급들이 저축한 화폐를 모두 산업가들과 상인들의 은행업자들을 통하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부단히 늘어난 것, 그리고 이 저축이 화폐자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양으로 더욱더 집적된다는 것도 또한 이자율에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더 말하려 한다.

이자율의 규정에 관하여 램제이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자율은

“일부는 총이윤의 율에 달렸고 또 일부는 총이윤이 이자와 기업이득(profits of enterprise)으로 나누어지는 비례에 달렸다. 이 비례는 자본의 대부자와 채무자 사이의 경쟁에 달려 있다. 이 경쟁은 예견되는 총이윤율의 영향을 받지만 전적으로 그 율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은 아니다.⁶⁶⁾ 경쟁이 전적으로 그것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 생산적으로 투자하려는 어떠한 의

66) 이자율은 대체로 평균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엉터리없는 사기협잡이 낮은 이자율과 결부되는 일이 흔히 많다. 예컨대 1844년 여름에 있었던 철도에서의 사기협잡의 경우가 그렇다.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은 1844년 10월 16일에야 비로소 3%로 올라갔다.

도도 없이 대부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며, 또 한편으로는 대부할 수 있는 국민의 총자본의 크기는 총이윤의 어떠한 변동에도 관계없이 나라의 부가 변동하는 데 따라 변하기 때문이다”(램제이, 같은 책, 206~207페이지).

평균이자율을 알려면 1) 큰 산업경기순환시의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그 평균을 계산하여야 하며 2) 비교적 오랜 기간 자본이 대부되는 그러한 투자들에서의 이자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한 나라에서 지배하는 평균이자율——끊임없이 변동하는 시장율과 다른——은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도 전혀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영역에는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자연적 이윤율, 자연적 임금율과 같은 뜻의 자연적 이자율이란 전혀 없다. 이미 매씨는 이에 대하여 아주 옳게 지적하고 있다(49페이지).

“이 경우에 의문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이윤의 얼마만한 부분이 대부자의 것으로 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채무자들과 대부자들만이 일반적으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옳고 그른 것은 공동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은——평균이윤율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면——여기에서는 아무런 의의도 전혀 없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다는 공식에 의거하는(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실천적으로도 옳다) 경우들에는 이 공식은 경쟁과는 관계가 없는 오히려 경쟁을 규정하는 기본법칙을 찾아내기 위한 공식(조정하는 한계 또는 한계로 되는 크기를 찾아내기 위한 공식)으로써 쓰이며 경쟁의 실천에, 경쟁의 현상들에 그리고 거기에서 생기는 표상들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한 공식으로 쓰인다. 또 그것은 역시 피상적인 표상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경쟁에서 나타나는 경제관계의 내적 연관에 대한 표상에 이르게 하는 공식으로서 쓰인다. 그것은 경쟁에 따르는 변동들에서 이 변동들의 한계에 이르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나 평균이자율에서는 그렇지 않다. 경쟁조건이 평균정도이며 대부자와 채무자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졌는데 어쩌서 대부자에게 그의 자본에 대하여 3, 4, 5% 등의 율로 이자를 주어야 하는가 또는 총이윤의 20%나 50%가 되는 일정한 부분을 주어야 하는지 전혀 아무런 근거도 없다. 여기에서 경쟁 그 자체가 결정적인 역할을 노는 경우에도 규정은 그 자체가 우연적인 것이며 순경험적인 것이며 오직 현학적이거나 환상적인 경우에만 이 우연적인 것을 그 무슨 필연적인 것으로 내놓을 수 있다.⁶⁷⁾ 은행입법과 상업공황에 관한 1857년 및 1858년 의회보고들에서 잉글랜드 은행, 런던의 은행업자들, 지방은행업자들 그리고 직업적 이론가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율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대고 있는 것을 듣기보다 더 흥미있는 것은 없는데 여기에서 그들은 예컨대 “대부되는 자본에 의하여 지불되는 가격은 이 자본의 공급이 변동하는 데 따라 변해야 한다”느니, “높은 이자율과 낮은 이자율은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없다”느니 하는 평범한 케케묵은 말밖에는 더 하지 못하였다.⁶⁸⁾ 관습, 법률상의 전통 등도 경쟁

67) 예컨대 G. 옵다이크는 자기의 저서 『정치경제학개론』(뉴욕, 1851년)에서 5%의 이자율의 일반성을 영원한 법칙들의 작용으로 설명하려는 아주 헛된 시도를 하고 있다. 칼 아른드 씨는 자기의 저서 『독점정신과 공산주의에 대립하는 자연적 민족경제학, ...』(하나우, 1845년)에서 어리석기 그지없이 생각하고 있다. 여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물질적 부의 자연적 창조과정에는 아주 문명한 나라들에서 이자율을 어느 정도라도 조절할 일종의 사명을 지닌 현상은 단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곧 구라파의 산림들이 해마다 자라남으로써 목재량이 늘어나는 비율이다. 이 성장은 나무의 교환가치와는 전혀 관계없이(나무가 그 교환가치와는 관계없이 자라난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100에 대한 3 내지 4의 비율로 이루어진다. 따라서(즉 나무의 교환가치가 아무리 나무의 성장에 달려 있다 하더라도 나무의 성장은 그 교환가치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그것이(이자율이) 현재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 이르고 있는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것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124, 125페이지). 이것은 산림에서 자라는 이자율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 발견자는 개세(dog tax)의 철학자⁶⁵⁾로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음으로써 우리의 과학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고 있다.

68) 잉글랜드 은행은 물론 언제나 자유시장에서 지배하는 율을 고려하지만 금이 흘러들어오고 흘러나가는 데 따라 그 할인율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 “그리하여 할인율의 변동을 노리는 그 할인율에 대한 투

자체와 마찬가지로 평균적인 이자율——이것이 평균수로서 존재할 뿐 아니라 사실상의 크기로서 존재하는 한에서——의 규정에 작용한다. 평균적인 이자율은 이자를 계산하여야 해결되는 많은 소송사건들에서 벌써 합법적인 것으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평균적인 이자율의 한계는 어째서 일반적 법칙에서 끌어낼 수 없는가고 묻는다면 대답은 간단히 이자의 본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자는 평균이윤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똑같은 자본이 이중으로 규정되어 나타난다. 즉 대부자손에서는 대부자본으로서와 기능을 노는 자본가들의 손에서는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자본이 기능을 노는 것은 한 번만이며 그 자체가 이윤을 생산하는 것도 한 번만이다. 생산과정 자체에서는 대부할 수 있는 자본으로서의 자본의 성격은 아무런 역할도 놀지 않는다. 이 이윤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것은 어떤 회사의 공동의 이윤이 그 회사의 서로 다른 출자자 사이에 백분율로 나누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경험에서 오는 것이며 우연의 영역에 속하는 사실이다. 이윤율의 규정은 본질적으로 잉여가치와 임금으로의 생산된 가치의 분할에 기초하는데 이 분할에서는 두 개의 아주 다른 요소들인 노동력과 자본이 규정적으로 작용한다. 잉여가치와 임금은 서로 제한하는 두 개의 독립적 가변량의 함수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질적 차이에서 생산된 가치의 양적 차이가 나온다. 후에 보게 되겠지만 지대와 이윤으로의 잉여가치의 분할에서도 똑같이 된다. 이자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없다. 이제 곧 보게 되겠지만 반대로 여기에서 질적 차이는 잉여가치의 똑같은 부분의 순 양적인 분할에서 나온다.

이제까지 설명해온 것에서 자연적 이자율이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일반적 이윤율과는 대립되는 평균이자율의 한계, 또는 끊임 없이 변동하는 시장이자율과는 다른 평균이자율의 한계는 어떤 일반적 법칙에 의하여 확정할 수 없다면——왜냐하면 자본의 두 소유자 사이에

기가 이제는 화폐중심지(즉 런던의 화폐시장)의 대자본가들의 주되는 일의 하나로 되어 있다" ([H. 로이], 『환자시세론』, 113페이지).

서로 다른 명의로 총이윤이 나누어지는 것만이 문제이므로——반대로 이자율은 평균적인 이자율이건 그 시장율이건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경우에는 일반적 이윤율의 경우와는 전혀 달리 고르롭고 일정하고 명확한 크기로서 나타난다.⁶⁹⁾

이자율과 이윤율의 관계는 상품의 시장가격과 그 가치의 관계와 같다. 이자율이 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한에서 그것은 언제나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지 개별적 산업부문들에서 지배할 수 있는 특수한 이윤율, 더구나 개별적 자본가가 어떤 특수한 사업분야에서 얻을 수 있는 초과이윤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⁷⁰⁾ 그러므로 일반적 이윤율은 사실상 경험적인 주어진 사실로서 평균이자율에서 나타난

69) “상품들의 가격은 끊임없이 변동한다. 상품들은 모두 그 용도의 종류가 각각 다르다. 그러나 화폐는 모든 목적에 다 쓰인다. 같은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상품들은 그 질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현금은 언제나 가치가 같으며 또는 같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자라는 말로 부르는 화폐의 가격은 어떤 다른 물건의 가격보다도 더 큰 확고성과 균등성을 가지고 있다”(J. 스튜어트, 『정치경제학원리연구』, 파리, 1789년, 제4권, 27페이지).

70) “그렇지만 이윤 분할의 이 규칙은 개개 대부자와 채무자 한명한명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자와 채무자 일반에게 적용된다. …눈에 띄이게 이득이 크거나 작은 것은 수완이 있는 데 대한 보상이며 또한 예견성이 없는 데 대한 댓가인데 대부자는 이러한 것들과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왜냐하면 대부자는 예견성이 없다고 하여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며 또 수완이 있다고 하여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똑같은 상공업분야에 종사하는 개별적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한 것은 개별적인 상공업분야에도 적용된다. 어떤 사업부문이건 거기에서 활동하는 상인들과 산업가들이 대부받은 자본으로 똑같은 나라의 다른 상인들과 산업가들이 얻는 보통의 이윤보다 더 많이 번다면 초과이윤은 그들의 것으로 되는 것이지——비록 초과이윤을 얻기 위하여 보통의 수완과 예견성 밖에는 필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화폐를 대준 대부자의 것으로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부자들은 일반적 이자율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어떤 산업부문이나 상업부문에 자기의 화폐를 대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자들은 그들의 화폐로 얻은 이익이 얼마나 되건 일반적 이자율보다 더 많이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매씨, 같은 책, 50, 51페이지).

다. 비록 평균이자율이 일반적 이자율의 순수한 또는 매우 믿음직한 표현은 아니라 하더라도 말이다.

물론 이자율 자체는 여러 부류의 채무자들이 제공하는 담보 종류에 따라 또 채무기간의 길이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담보의 종류마다 보면 어느 주어진 순간에도 이자율은 한결같다. 따라서 담보 종류의 차이로 하여 이자율의 고정된 한결같은 모습은 달라지지 않는다.⁷¹⁾

평균적인 이자율은 개개 나라에서 비교적 오랜 시기를 놓고 보면 변함 없는 크기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개별적 이율율은 끊임없이 변동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이율율은 비교적 오랜 시기가 지나야만 달라지며 한 분야의 변동은 다른 분야의 반대되는 변동에 의하여 상쇄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반적 이율율이 상대적으로 변함없다는 것은 바로 평균적인 이자율(average rate or common rate of interest)이 어느 정도 변함없다는 데서 나타난다.

그러나 끊임없이 달라지는 시장이자율로 말하면 그것은 상품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어느 순간에는 일정한 크기로서 나타난다. 왜냐하면 화폐시장에서는 모든 대부자본이 총량으로서 기능을 노는 자본과 늘 맞서 있으며 따라서 한편으로는 대부자본의 공급과 다른 편으로는 이에 대한 수요와의 비율이 그때그때의 이자의 시장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71) 은행의 할인율	5%
시장할인율, 60일 기한의 어음	3 ⁵ / ₈ %
시장할인율, 3개월 기한의 어음	3 ¹ / ₂ %
시장할인율, 6개월 기한의 어음	3 ⁵ / ₁₆ %
어음증매인에 대한 대부, 하루 기한	1~2%
어음증매인에 대한 대부, 한 주일 기한	3%
주식증매인에 대한 대부, 두 주일 기한, 마지막 할인율	4 ³ / ₄ ~5%
예금이자(은행)	3 ¹ / ₂ %
예금이자(할인소)	3~3 ¹ / ₄ %
똑같은 하루에 이 차이가 얼마나 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1889년 12월 9일 런던 시장의 위에서 든 이자율이 보여준다. 이것은 시티(City)의 형편에 대한 12월 10일자 「매일소식」 ⁶⁶⁾ 의 기사에서 취한 것이다.	

신용업이 발전하고 이와 결부하여 그것이 집중되어 대부자본이 일반적, 사회적 성격을 가지게 되며 대부자본을 한꺼번에, 동시에 화폐시장에 내던지게 되면 될수록 더욱 그렇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일반적 이윤율은 언제나 개별적 이윤율들이 균등화되는 경향으로서만, 그 움직임으로서만 존재한다. 자본가들의 경쟁——그 자체가 바로 균등화의 이 움직임인 것이다——은 결국 그것이 이윤이 비교적 오랜 기간 평균 이하인 분야들에서 점차 자본을 끌어내어 이윤이 평균 이상인 분야들에 점차 공급한다는 데 있으며 또는 추가자본이 점차 각각 다른 비례로 이 분야들 사이에 나누어진다는 데 있다. 이것은 서로 다른 이 분야들에 자본을 끌어들이고 끌어내는 부단한 변동인 것이지 결코 이자율이 규정되는 경우와 같이 자본 전체량의 동시적인 작용이 아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자율은 자본은 상품과는 절대로 다른 범주이지만 특수한 종류의 상품으로 되고 따라서 이자는 이자율은 자본의 가격으로 되며 이 가격은 어느 상품들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매번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고정된다. 그러므로 시장이자율은 끊임없이 변동하는 것이지만 주어진 매순간에는 상품들의 그때그때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고정되고 한결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화폐자본가들은 이 상품을 공급하고 기능을 노는 자본가들은 이 상품을 사며 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이룬다. 일반적 이윤율로 이윤이 균등화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일은 없다. 한 분야에서의 상품들의 가격이 생산가격 이하이거나 이상이면(이 경우에 각종 상업활동에 독특한 그리고 산업경기순환의 서로 다른 국면들과 관련된 변동들은 제쳐놓고 본다) 균등화는 생산이 확대되거나 제한됨으로써 일어난다. 즉 개별적 생산분야에 자본이 들어오거나 거기에서 나감으로써 산업자본들이 시장에 내놓는 상품량이 늘거나 줄어들으로써 일어난다. 상품들의 시장가격이 생산가격으로 이렇게 균등화됨으로써 개별적 이윤율들이 일반적 이윤율 또는 평균이윤율에서 어긋난 것들이 고쳐진다. 이 과정은 이자율은 자본처럼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 그 자체로서 구매자에게 대한 상품으로 되는 그러한 성격을 결코 또 떨 수도 없다. 이 과정이 나타나는 한에서는 이 과정은 평균이윤이 직접 고정화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상품의 시장가격들이 생산가

격에 따라 변동되고 균등화되는 데서 나타난다. 일반적 이윤율을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1) 총자본이 생산하는 잉여가치이며 2) 총자본의 가치에 대한 이 잉여가치의 비율이며 3) 경쟁인데 그러나 다만 개별적 생산분야에 투하된 자본들이 그 크기에 비례하여 이 잉여가치에서 비교적 균등한 배당을 끌어내려고 하는 움직임인 한에서의 경쟁이다. 따라서 일반적 이윤율은 사실상 수요와 공급 관계에 의하여 직접, 매개됨이 없이 규정되는 시장이자율과는 전혀 다른, 그리고 그보다 훨씬 복잡한 원인들에 의하여 규정되며 따라서 이자율과 같이 명확한 주어진 사실이 아니다.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의 개별적 이윤율은 그 자체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확실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그 개별적 이윤율이 나타나는 한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 이윤율들의 균일성이 아니라 차이성이다. 그러나 일반적 이윤율 자체는 경험할 수 있고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제적 이윤율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지 않고 이윤의 최저한계로서 나타날 따름이다.

이자율과 이윤율의 이러한 차이를 지적하면서 그래도 이자율의 확정에 유리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정들은 제쳐놓고 본다. 즉 그것은 1) 이자율은 자본이 역사적으로 앞서 존재하였다는 것과 전통적으로 물려받는 이자율이 존재하였다는 것, 2) 세계시장이 한 나라의 생산조건들과는 관계없이 이윤율에 미치는 영향에 비하여 이자율의 확정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다.

평균이자율은 직접 주어진 사실로서 나타나지 않고 연구한 결과에 비로소 확정할 수 있는, 상반되는 변동들이 균등화된 종국적 결과로서 나타난다. 이자율은 이와 다르다. 공인된 것이지만 이자율은 적어도 한 지방에서는 날마다 고정되어 있으며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에서는 조작하는 데서 전제로 되며 그리고 계산항목으로서 쓰이기까지 한다. 2, 3, 4, 5%의 이자를 낳는 것이 1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매 화폐액의 일반적 능력으로 된다. 기상통보가 기압계와 온도계의 눈을 알려주기보다 더 정확하게 증권소식은 이러저러한 자본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폐시장에 있는 즉 일반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본을 위하여 이자율의 수준을 알려준다.

화폐시장에서는 대부자와 채무자가 맞서 있을 뿐이다. 상품은 화폐라는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본이 특수한 생산분야나 유

통분야에 투하되는 데 따라 떠는 온갖 특수한 자본의 모습들은 사라져 있다. 자본은 여기에서는 자립적 가치에서 차이가 없는, 그 자체가 고르로운 모습, 즉 화폐의 모습으로 존재한다. 각이한 분야들 사이의 경쟁은 여기에서는 볼 수 없다. 각이한 분야들은 모두 화폐의 채무자로서 함께 나타나며 자본도 일정한 종류와 그 적용방식에는 아랑곳없는 형태로 모든 각이한 분야들과 맞서 있다. 산업자본은 개별적 분야들 사이의 움직임과 경쟁에서만 그 자체가 전체 계급의 공동자본으로서 나타난다면 여기에서는 자본은 실제로 그 전체량이 자본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서 전체 계급의 공동자본으로서 나타난다. 한편 또 화폐자본은 화폐시장에서 실제로 그 특수한 적용방식과는 관계없는 공동의 요소로서 각 개별적 분야의 생산의 필요에 따라 서로 다른 분야들 사이에, 자본가 부류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모습을 띤다. 게다가 대산업의 발전에 따라 화폐자본은 그것이 시장에 나타나는 한에서는 더욱더 시장에 있는 자본의 이러저러한 부분의 소유자인 개별적 자본가를 대표하지 않고 집적되고 조직화된 양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양은 실제적 생산과는 전혀 달리 사회적 자본을 대표하는 은행업자들의 통제를 받게 된다. 그리하여 수요의 형태로 말하면 대부자본에 한 계급 전체가 맞서듯이 공급으로 말하면 그 자본 자체가 통틀어 대부자본으로서 나타난다. 일정한 이자율에 비하여 일반적 이윤율이 애매모호한 것으로 되는 몇 가지 이유는 이상과 같다. 이자율도 물론 그 크기가 변하지만 이자율은 모든 채무자들에게 고르롭게 변함으로써 모든 채무자들에게 늘 고정된 주어진 크기로서 맞선다. 화폐의 가치가 변하더라도 화폐는 여전히 모든 상품들에 대하여 같은 가치를 가지듯이, 상품들의 시장가격이 날마다 변하더라도 그 상품의 시세를 날마다 정하는 데 지장이 없듯이 그 이자율이 변하더라도 정해놓고 화폐의 가격으로서 그 시세를 정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것은 여기에서는 자본 자체가 상품으로서 화폐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그 가격의 고정화가 다른 모든 상품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시장가격의 고정화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이자율이 늘 일반적 이자율로서 이만한 화폐에 대하여 이만한 것으로서, 양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표시된다. 그런데 이윤율은 상품들의 시장가격이 같은 경우에 똑같은 분야 안에서조

차 개별적 자본이 바로 이 상품들을 생산하는 조건들이 서로 다름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적 자본에 대한 이윤율은 상품의 시장가격에 의하여 규정되지 않고 시장가격과 생산비의 차액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서로 다른 이 이윤율들은 처음에는 똑같은 생산분야 안에서,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분야들 자체 사이에서 오직 끊임없는 변동을 통하여 균등화될 수 있다.

(후에 추고하기 위하여 적어두는 것). 신용의 특수한 형태, 아다시피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 기능을 늘 대신에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논다면 상품은 양도되지만 그 가치는 후에 가서야 비로소 실현된다. 그 지불이 상품을 다시 판 후에야 비로소 있게 된다면 이 판매는 구매의 결과로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그 판매에 의하여 구매가 실현된다. 또는 판매가 구매의 수단으로 된다. 둘째로 채무증서, 어음 등은 채권자를 위한 지불 수단으로 된다. 세째로 채무증서들의 상쇄는 화폐를 대신한다.

제23장 이자와 기업이득

이자란 앞의 두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원래 다름 아니라 이윤 즉 잉여 가치 가운데서 기능을 노는 자본가인 산업가나 상인이 그 자신의 자본이 아니라 대부받은 자본을 적용하는 한에서 이 자본의 소유자이며 대부자에게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으로서 나타나며 또 원래 그러한 것이며 또 실제로 의연 그러한 것이다.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만을 적용한다면 이윤을 그렇게 나누는 일은 없으며 이윤은 모두 그의 것이다. 사실 자본의 소유자들이고 그 자본을 스스로 재생산과정에 적용하는 한에서는 그들은 이자율을 규정하는 경쟁에 참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벌써 이 점에 이자율이 규정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이자라는 범주 그 자체가 산업자본의 움직임과는 얼마나 인연이 먼가 하는 것이 나타난다.

“이자율이란 일정한 금액의 화폐자본을 한 해 동안 또는 한 해보다 더 오래거나 더 짧은 기간 사용한 데 대하여 채무자는 지불하고 대부자는 받는데 만족하는 비례액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자본의 소유자가 그 자본을 실제로 재생산에 적용한다면 그는 채무자수에 대한 그 비례가 이자율을 규정하는 자본가들의 수에는 들지 않는다”(T. 투크, 『1793년부터 1837년까지의 가격사』, 제2권, 런던, 1838년, 355~356페이지).

사실 자본가들이 화폐자본가와 산업자본가로 갈라져야만 이윤의 한 부분이 이자로 전화되고 일반적으로 이자라는 범주가 생기며 또 이 두 부류 자본가들 사이에 경쟁이 벌어져야만 이자율이 생긴다.

자본이 산업자본가 자신의 것이고 그리하여 그가 자본을 대부자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전제하더라도 자본이 재생산과정에서 기능을 노는

동안 그 산업자본가가 개인으로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이 자본 자체가 아니라 그가 소득으로서 지출할 수 있는 이윤뿐이다. 그의 자본이 자본으로서 기능을 노는 동안 그 자본은 재생산과정에 속하며 거기에 고착된다. 산업자본가가 바로 그 자본의 소유자이지만 그것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그가 그것을 노동을 착취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이용하는 동안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화폐자본가도 사정은 똑 같다. 그의 자본이 대부되어 있고 따라서 화폐자본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자본은 그에게 이윤의 한 부분인 이자를 가져오지만 그는 본전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가 자본을 예컨대 한 해 또는 몇 해 동안 대부하고 어느 기한을 두고 이자는 받되 자본은 반환받지 않는다면 바로 그렇게 나타난다. 그러나 반환받더라도 이 경우에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가 자본을 되돌려 받는다면 그 자본이 그를 위하여 자본, 이 경우에는 화폐자본의 작용을 하여야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것을 늘 새로 대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본이 그의 손에 있는 동안에는 그 자본은 이자가 붙지 않으며 자본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 그 자본이 이자가 붙으며 자본으로서 작용하는 동안에는 그 자본은 그의 손에 있지 않다. 여기에는 자본을 무한정 대부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므로 보존키트를 반대하는 투크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다. 그는 보존키트에게서 인용한다(『금속, 지폐 및 신용통화』, 런던, 1842년, 73페이지)

“이자율이 1%에 이르기까지 떨어진다면 대부받은 자본은 자기의 자본과 거의 같을(on a par) 것이다.”

이에 대하여 투크는 다음과 같은 주석을 붙이고 있다.

“이러한 또는 이보다도 더 낮은 이자로 꾸는 자본은 자기의 자본과 거의 같을 수 있다는 주장은 아주 의심스러운 것이어서 그 주장이 그렇게도 총명하고 주제의 개별적인 점에서는 그렇게도 정통한 저술가에게서 나오지 않았다면 신중하게 고려할 만한 것이 못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반환이 대부자본의 전제라는 사정을 간과하였거나 그다지 중요하게 보지 않은 것이 아닌가?” (T.

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제2판, 런던, 1844년, 80페이지)

이자가 0이라면 자본을 대부분은 산업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으로 사업하는 산업자본가와 같은 처지에 놓일 것이다. 두 자본가는 다 똑같은 평균이윤을 차지할 것이며 꾼 자본이건 자기의 자본이건 자본은 그것이 이윤을 생산하는 한에서만 자본으로서 작용한다. 반환이라는 조건은 이 점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자율이 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따라서 예컨대 1%로 떨어진다면 그만큼 더 꾼 자본은 자기의 자본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된다. 화폐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 존재해야 하는 동안에는 그것은 늘 다시 대부되지 않으면 안되며 그것도 현행 이자율로, 가령 1%의 이자율로 그리고 늘 똑같은 산업자본가와 상업자본가 계급들에게 대부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자본가들이 자본가들로서 기능을 노는 동안에는 꾼 자본으로 기능을 노는 자본가와 자기의 자본으로 기능을 노는 자본가와의 차이는 다만 전자는 이자를 지불하여야 하는데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 후자는 이윤을 다 차지하는데 전자는 $p-z$ 를, 즉 이윤 덜기 이자를 차지한다는 것뿐이다. z 가 영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더 $p-z$ 는 p 에 가까워지며 따라서 그만큼 더 두 자본가는 같은 입장에 놓인다. 전자는 자본을 반환하고 새로 꾸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후자는 그의 자본이 기능을 놀아야 하는 동안에는 그 자본을 역시 늘 새로 생산과정에 선대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과정과는 관계없이 그 자본을 처리할 수 없다. 이 밖에 남은 유일한 차이는 자명한 것이지만 후자는 자기 자본의 소유자이고 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된다. 순이윤과 이자로의 이윤의 이순전히 양적인 분할이 어떻게 질적인 분할로 전변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여 자기자신의 자본만을 적용하고 꾼 자본은 적용하지 않는 자본가도 어떻게 자기의 총이윤의 한 부분을 이자라는 특별한 범주에 넣고 그러한 것으로서 특별히 계산하게 되는가? 따라서 또한 꾼 자본이건 아니건 모든 자본은 어떻게 이자붙는 자본으로서와 순이윤을 가져오는 자본으로서의 자기 자체와 구별되게 되는가?

이러한 식의 이윤의 우연적인 양적 분할이 어느 것이나 다 질적 분할

로 전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컨대 일부 산업자본가들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연합하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정한 협약에 따라 이윤을 그들 사이에서 나눈다. 다른 산업자본가들은 자기들의 기업을 따로, 동업자없이 운영한다. 뒤에 든 이 산업자본가들은 자기들의 이윤을 두 범주로 즉 한 부분은 개인적 이윤으로, 다른 부분은 있지도 않는 동업자들을 위한 회사이윤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양적 분할이 질적 분할로 전화하지 않는다. 소유자가 여러 명의 법률상 인격들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분할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제기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자가 형성되는 실제적 출발점에 더 좀 오래 머물지 않으면 안된다. 즉 화폐자본가와 생산적 자본가가 법률상 서로 다른 인격들로서만이 아니라 재생산과정에서 전혀 서로 다른 역할들을 노는 인물들로서 또는 그들의 손에서 똑같은 자본이 실제로 이중의, 완전히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인물들로서 실제로 맞선다고 보는 데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자는 다만 자본을 대부하며 후자는 그것을 생산적으로 적용한다.

순 자본으로 일하는 생산적 자본가에게서는 총이윤을 두 부분으로 즉 그가 대부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이윤에서 그 자신의 몫을 이루는, 이자를 넘는 초과분으로 갈라진다. 이 뒤에 든 부분은 일반적 이윤율이 주어져 있으면 이자율에 의하여 규정되며 이자율이 주어져 있으면 일반적 이윤율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또 총이윤 즉 전체 이윤가치의 실제적 크기가 개개 구체적인 경우에 아무리 평균이윤과 어긋난다 하더라도 기능을 노는 자본가에게 속하는 부분은 이자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 이자는 일반적 이자율에 의하여 고정되어 있고(특수한 법률상 계약을 제쳐놓고 보면) 생산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따라서 생산과정의 결과인 총이윤이 얻어지기 전에 주어진 것으로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본의 원래의 특수한 생산물은 잉여가치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이윤이다. 그러나 순 자본으로 일하는 자본가에게서는 이 생산물은 이윤이 아니라 이윤 덜기 이자, 즉 이윤 가운데서 이자를 지불한 후에 그에게 남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윤의 이 부분은

그에게서 필연적으로 기능을 노는 한에서의 자본의 생산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그에게서는 현실적이다. 왜냐하면 그는 오직 기능을 노는 자본으로서의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 자본이 기능을 노는 한에서 그 자본의 인격화이며 또 그 자본은 이윤을 가져오면서 산업이나 상업에 투하되며 그리고 그 적용자가 그 자본으로 주어진 사업부문에서 하게 된 조작들을 수행하는 한에서 기능을 노는 것이다. 따라서 그가 총이윤에서 대부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맞서 이윤 가운데서 그에게 돌아가는 아직 남는 부분은 필연적으로 산업이윤 또는 상업이윤의 형태를 띠며 또는 이 두 가지 것을 포괄하여 표현한다면 기업이익의 모습을 띤다. 총이윤이 평균이윤과 같으면 이 기업이익의 크기는 전적으로 이자율에 의하여 규정된다. 총이윤이 평균이윤과 어긋나면 그 차액은(양편에서 이자를 뺀 후에) 한때 어긋나게 모든 정황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개별적 생산분야의 이윤율이 일반적 이윤율과 어긋나게 하는 정황이건 어떤 개별적 자본가가 일정한 분야에서 얻는 이윤이 이 특수한 분야의 평균이윤과 어긋나게 하는 정황이건 상관없다. 그런데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윤율은 생산과정 자체 안에서는 잉여가치에 달려 있을 뿐 아니라 생산수단의 구매가격이라거나 평균수준보다 더 생산적인 방법들이라거나 불변자본의 절약 등 그 밖의 많은 사정들에도 달려 있다. 그리고 생산가격을 제쳐놓고 보면 이윤율은 특수한 정황에 달려 있으며 개별적인 매 기업거래에서는 자본가의 교활성과 경영능력이 더 큰가 작은가에, 자본가가 얼마나 생산가격 이상으로 사고 팔며 또 그 이하로 사고 파는가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유통과정 안에서 총이윤 가운데서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큰가 더 적은가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경우에 총이윤의 양적 분할은 질적 분할로 전화되며 그리고 양적 분할 자체가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가, 능동적 자본가가 그 자본으로 어떻게 경영하며 그 자본이 기능을 노는 자본으로서 즉 그가 능동적 자본가로서 기능을 노는 결과에 얼마만한 총이윤을 그에게 가져오는가에 달려 있는 만큼 더욱 그렇게 된다. 기능을 노는 자본가는 이 경우에 자본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 보고 있다. 자본의 소유는 그에 대하여 대부자인 화폐자본가로 되고 있다. 따라서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화폐자본가에게

지불하는 이자는 총이윤 가운데서 자본소유 자체에 돌아가는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이와는 달리 이윤 가운데서 능동적 자본가에게 돌아가는 이윤 부분은 이제는 전적으로 그가 재생산과정에서 그 자본으로 수행하는 조작들 또는 기능들, 따라서 특히 그가 기업가로서 산업이나 상업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에서 나오는 기업이득으로서 나타난다. 따라서 그에 대해서는 이자가 자본소유의 단순한 열매로서, 일하지 않고, 기능을 놀지 않는 한에서 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 추상된 자본 그 자체의 열매로서 나타난다. 그런데 그에게는 기업이득은 전적으로 그가 그 자본으로 수행하는 기능들의 열매로서, 자본의 운동과 진전과정의 열매로서 나타나며 이 진전과정은 이제는 그에게 화폐자본가가 생산과정에서 활동하지 않으며 거기에 참가하지 않는 데 맞서 그 자신의 활동으로서 나타난다. 총이윤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질적으로 갈라져 이자는 생산과정과는 관계가 없는 자본 그 자체의 열매, 자본소유의 열매인데 기업이득은 진전과정에 있는 자본, 생산과정에서 작용하는 자본의 열매, 따라서 자본의 적용자가 재생산과정에서 노는 능동적 역할의 열매라는, 이렇듯 질적으로 갈라지는 것은 결코 단순히 한편으로는 화폐자본가와 다른 편으로는 산업자본가의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자는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이며 따라서 생산과정에 앞서 그리고 생산과정 밖에서 단순한 자본소유를 대표하는 대부자인 화폐자본가에게로 흘러가지만 기업이득은 자본을 소유하지 않은 자인, 단순히 기능을 노는 자본가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곧 자본으로 일하는 한에서의 산업자본가에 있어서나 자기의 자본을 스스로 적용하지 않는 한에서의 화폐자본가에 있어서나 똑같은 자본에 대한, 따라서 그 자본이 낳는 이윤에 대한 서로 다른 권리명의를 가진 서로 다른 두 인물들 사이로의 총이윤의 단순한 양적 분할이 전화하는 것이다. 이제는 이윤의 한 부분은 그 자체로서 한 규정의 자본에 돌아가는 열매로서, 이자로서 나타나며 다른 부분은 그와 상반되는 규정의 자본의 특수한 열매로서, 따라서 기업이득으로서 나타난다. 한 부분은 전적으로 자본소유의 산물로 나타나며 다른 부분은 전적으로 그 자본의 기능의 산물로, 진전과정의 자본의 산물로 또는 능동적 자본가가

노는 기능의 산물로 나타난다. 총이윤의 그 두 부분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원천에서 나온 이상 그 두 부분들이 이와같이 결정화되고 서로 자립화되는 것이 이제는 전체 자본가계급에 대해서와 전체 자본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능동적 자본가가 적용하는 자본이 곧 것이건 아니건 마찬가지이며 또는 화폐자본가의 것인 자본을 그 자신이 적용하건 말건 마찬가지다. 개개 자본의 이윤, 따라서 또 자본들 사이의에서의 균등화에 근거한 평균이윤은 질적으로 서로 다른 두 부분, 서로 자립적이며 서로 독립한 부분들로 즉 둘 다 특별한 법칙들에 의하여 규정되는 이자와 기업이익으로 갈라지거나 분해될 수 있다. 곧 자본으로 일하는 자본가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자본으로 일하는 자본가도 자기의 총이윤을 자본의 소유자로서의 자기자신에게 자기 자본을 대부하는 대부자로서의 그에게 돌아가는 이자와 그리고 능동적이며 기능을 노는 자본가로서의 그에게 돌아가는 기업이익으로 나눈다. 그리하여 자본가가 실제로 다른 자본가와 나누어야 하건 말건 그것은 질적 분할로서의 이 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된다. 자본의 적용자는 자기의 자본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와 그 적용자라는 두 인격으로 갈라진다. 그의 자본 자체가 그 자본이 낳는 이윤의 범주들과 관련하여 자본——소유, 그 자체로서 이자를 낳는, 생산과정 밖에 있는 자본과 그리고 과정 중에 있는 자본으로서 기업이익을 낳는 생산과정 안에 있는 자본으로 갈라진다.

이와같이 이자가 확정되어 이제는 산업가가 남의 자본으로 일하는 경우에만 있는, 생산에는 아무래도 좋은 총이윤의 분할로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산업가가 자기의 자본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그의 이윤은 이자와 기업이익으로 갈라진다. 이에 따라 순전히 양적인 분할이 질적인 분할로 된다. 산업가가 자기 자본의 소유자인가 아닌가 하는 우연적인 사정과는 관계없이 분할이 일어난다. 이자와 기업이익은 이윤 가운데서는 서로 다른 인물들에게 나누어지는 부분들일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이윤의 두 범주들인데 이것들은 자본에 대하여 서로 다른 관계에 있으며, 따라서 자본의 서로 다른 규정성에 대한 관계에 있다.

이제는 이자와 기업이익으로서의 총이윤의 이 양적 분할이 일단 질적

분할로 되자 어째서 그 양적 분할이 전체 자본과 전체 자본가계급에 대한 질적 분할이라는 이 성격을 띠게 되는가 하는 이유들을 아주 명백히 알게 된다.

첫째로, 산업자본가의 다수는 서로 자기의 자본과 꾀 자본으로 일하며——비록 그 비율은 다르다 하더라도——또 자기의 자본과 꾀 자본의 비율은 시기가 다름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순한 경험적인 사정에서 벌써 그렇게 된다.

둘째로, 총이윤의 한 부분이 이자의 형태로 전화됨으로써 그 다른 부분이 기업이득으로 전화된다. 사실상 이 다른 부분은 이자가 특별한 범주로서 존재하게 되자 총이윤 가운데서 이자를 넘는 초과분이 띠는 대립되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총이윤이 어떻게 이자와 기업이득으로 갈라지는가 하는 연구는 모두 결국 총이윤의 한 부분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이자로서 결정화되고 자립화되는가 하는 연구로 된다. 그러나 이자불는 자본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그에 따르는 자본과 이윤에 대한 표상이 었기 훨씬 전에 이미 완성된 오랜 형태로서 존재하며 따라서 이자도 자본이 낳은 잉여가치의 이미 완성된 형태로서 존재한다. 그러므로 아직도 인민들의 표상에서는 화폐자본, 이자불는 자본이 원래의 자본으로서 주되는 자본으로서 통하고 있다. 한편 또 이자로 지불되는 것은 화폐 그 자체라는 매씨(Massie)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배하고 있던 표상도 거기에서 온 것이다. 대부되는 자본이 실제로 자본으로서 적용되건 말건 이자를 낳는다——다만 소비하기 위하여 꾸는 경우에도 이자를 낳는다——는 사정으로 하여 이 자본형태가 자립적인 것이라는 표상이 굳어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초기에 이자는 이윤에 대하여 그리고 이자불는 자본은 산업자본에 대하여 자립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18세기 중엽에야 비로소 이자가 총이윤의 단순한 한 부분이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다는 것(매씨에 의하여 그리고 그후에는 흄에 의하여⁶⁷⁾)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때에야 비로소 그러한 발견이 필요하였다는 것이다.

세째로, 산업자본가가 자기의 자본으로 일하건 꾀 자본으로 일하건 산업자본가에게는 화폐자본가계급이 특별한 부류의 자본가들로서 맞서며,

화폐자본이 자립적인 종류의 자본으로서 맞서며 그리고 이자가 이 특수한 자본에 따르는 자립적인 잉여가치형태로서 맞선다는 사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질적으로 보면 이자는 자본의 단순한 소유가 제공하는 잉여가치, 자본의 소유자가 재생산과정 밖에 있더라도 자본 그 자체가 낳는 잉여가치, 따라서 자체의 과정에서 떨어진 자본이 낳는 잉여가치다.

양적으로 보면 이윤 가운데서 이자를 이루는 부분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 그 자체들과 관련해서가 아니라 화폐자본과 관련하여 나타나며 잉여가치의 이 부분의 율인 이자율로 하여 이 관계가 굳어진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자율은 그것이 일반적 이윤율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으로 규정되기 때문이며 둘째로 이자율은 상품들의 시장가격과 마찬가지로 틀어질 수 없는 이윤율과는 달리 확고한 것으로 어떠한 변동 속에서도 고정되고 명백하며 그리고 늘 주어진 비율로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모든 자본이 산업자본가들의 손에 있다면 어떠한 이자도 어떠한 이자율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총이윤의 양적 분할이 떠는 자립적 형태로 하여 그 질적 분할이 있게 된다. 산업자본가를 화폐자본가와 비교해 볼 때 산업자본가를 화폐자본가와 구별케 하는 것은 오직 총이윤 가운데서 이자율로 하여 경험적으로 주어지는 크기로서 나타나는 평균이자를 넘는 초과분으로서의 기업이득뿐이다. 한편 또 그 산업자본가를 낀 자본이 아니라 자기의 자본으로 경영하는 산업자본가와 비교하면 뒤에 든 산업자본가는 이자를 지불하지 않고 자신이 차지함으로써 오직 화폐자본가로서만 앞에 든 산업자본가와 구별된다. 두 경우에 다 산업자본가에게서는 총이윤 가운데서 이자와 구별되는 부분은 기업이득으로서 나타나며 이자 자체는 자본 자체가 낳는 잉여가치로서, 따라서 또 자본이 생산적으로 적용되지 않고도 낳게 될 잉여가치로서 존재한다.

개별적 자본가를 놓고 볼 때 이 점은 실제로 옳다. 자기의 자본을 이자부는 자본으로 대부하려 하는가, 그렇지 않고 생산자본으로 적용하며 스스로 그 가치를 불리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그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자본이 화폐자본으로서 이미 그 시점에 있건 이제부터 그것을 화폐자본으로 전화하여야 하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그러나 전반적

으로 즉 사회의 전체 자본에 적용하는 경우에는——그런데 일부 속류경제학자들은 심지어 화폐자본의 소유 그 자체를 이윤의 근거로 내놓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이것은 물론 어리석은 것이다. 총자본 가운데서 화폐로 존재하는 비교적 적은 부분을 제쳐놓고 보면 총자본은 생산수단의 형태로 있는데 이 생산수단을 사서 그 가치를 불리는 사람도 없이 총자본이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는 것은 물론 엉터리없는 것이다. 그보다 더 엉터리없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 자본이 생산자본으로서 기능을 놀지 않고도, 즉 잉여가치——그 한 부분이 바로 이자이다——를 창조하지 않고도 이자를 낼 것이라는 것이며 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자본주의적 생산없이도 제 길을 걸을 것이라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자본가들이 그들의 자본을 화폐자본으로 전화하려고 한다면 그 양과 화폐자본은 엄청나게 가치가 감소될 것이며 이자율도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며 많은 자본가들은 곧 자기들의 이자로 살아갈 수 없게 될 것이며 따라서 도로 산업자본가로 전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마 말한 바와 같이 개별적 자본가는 그 누구나 다 바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적 자본가는 그가 자기의 자본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도 자기의 평균이윤 가운데서 평균이자와 같은 부분을 생산과정과는 관계없이 얻는, 자기 자본 그 자체의 열매로 보며 그리고 이자로 자립화된 그 부분과는 달리 총이윤 가운데서 이자를 넘는 초과분을 단순히 기업이득으로 본다.

네째로, {원고는 공백으로 되어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윤 가운데서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곧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부분은 이윤 가운데서 온갖 자본 그 자체가——그것이 곧 것이건 아니건——이자라는 이름으로 낳는 부분의 자립적인 모습으로 전화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평균이자율의 수준에 달렸다. 이 부분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이제는 다만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자기 자본의 소유자인 한에서 이자율을 규정하는 데서 서로 경쟁하지 않는다는——적어도 능동적으로는——점에서 보게 된다. 이윤에 대하여 서로 다른 권리명의를 가지고 있는 두 인물들 사이에서의 이윤의 순전한

양적 분할은 자본과 이윤 그 자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같이 보이는 질적 분할로 전화되었다. 왜냐하면 이미 본 바와 같이 이윤의 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자형태를 띠게 되자 평균이윤과 이자의 차액 즉 이윤 가운데서 이자를 넘는 초과부분은 이자와 맞서는 기업이득의 형태로 전화되기 때문이다. 이자와 기업이득이라는 이 두 형태는 서로 맞서는 데서만 존재한다. 따라서 이 형태들은 둘 다 각각 다른 범주, 항목 및 이름으로 고정된 잉여가치의 부분들에 지나지 않지만 잉여가치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된 것이다. 이윤의 한 부분이 이자로 전화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기업이득으로서 나타난다.

이윤이란 여기에서는 언제나 평균이윤을 말한다. 그것은 개별적 이윤이건 서로 다른 생산분야들의 이윤이건 어긋나는 것, 즉 경쟁전(competitive struggle)과 그 밖의 사정들에 따라 평균이윤 또는 잉여가치의 분할에서 이렇게나 저렇게나 달라지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래도 좋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 전체에도 들어맞는다.

그런데 이자는 자본소유 그 자체가 재생산과정 밖에 있는 단순한 대부자에게 가져다 주건 자기 자본을 스스로 생산적으로 쓰는 소유자에게 가져다 주건 이에 관계없는 순이윤——램제이는 그것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이다. 그러나 자본이 뒤에 든 소유자에게도 이 순이윤을 가져다 주는 것은 그가 기능을 노는 자본가인 한에서가 아니라 그가 화폐자본가 즉 기능을 노는 자본가로서의 자기자신에 대한, 이자불는 자본으로서의 그 자신의 자본의 대부자인 한에서이다. 화폐와 가치 일반의 자본으로서의 전화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끊임없는 결과이듯이 그것의 자본으로서의 정제는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끊임없는 전제이다. 생산수단으로 전화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여 그것은 끊임없이 부지불노동을 지휘하며 따라서 상품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을 그 소유자를 위한 잉여가치의 생산으로 전화한다. 따라서 이자는 가치 일반——일반적인 사회적 형태를 띤 대상화된 노동——이 실제적 생산과정에서 생산수단의 모습을 띠며 자립적인 권력으로서 산 노동력과 맞서며 그리고 부지불노동을 차지하는 수단이라는 것, 또 그것이 그러한 권력으로 되는 것은 남의 소유물로서

의 노동자와 맞서기 때문이라는 것의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편 임금노동에 이렇게 맞선다는 것은 이자형태에서는 사라져 있다. 왜냐하면 이자불는 자본 그 자체는 임금노동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노는 자본과 맞서기 때문이며 대부자본가 그 자신은 재생산과정에서 실지로 기능을 노는 자본가와 직접 맞서는 것이지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 생산수단을 박탈당하고 있는 임금노동자와 맞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자불는 자본은 기능으로서의 자본에 맞서는 소유로서의 자본이다. 그러나 자본이 기능을 놀지 않는 한에서는 그것은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으며 노동과 대립하지 않는다.

한편 또 기업이득은 임금노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만 대립한다.

첫째로, 평균이윤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면 기업이득의 율은 임금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기업이득의 율은 이자율에 반비례하여 높거나 낮다.⁷²⁾

둘째로, 기능을 노는 자본가는 기업이득을 요구하는 자기의 권리를, 따라서 기업이득 자체를 자기가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는 데로부터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활동하지 않는 소유로서 존재한다고 규정된 형태에 맞서 자본이 기능을 논다는 데로부터 끌어낸다. 이것은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대부를 받은 자본으로 조작하며 그리하여 이자와 기업이득이 각각 다른 두 인물들에게 돌아가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립으로 나타난다. 기업이득은 재생산과정에서 자본이 기능을 노는 데서, 따라서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산업자본과 상업자본의 이 기능들을 매개하는 조작들, 활동에서 나온다. 그러나 기능을 노는 자본을 대표하는 자는 이자불는 자본을 대표하는 자와 같은 일하지 않고 보수만 받는 자가 아니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자본가가 생산과정도 유통과정도 관리한다. 자본가가 스스로 하건 그렇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72) “기업이득은 자본의 순이윤에 달려 있는 것이지 자본의 순이윤이 기업이득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렘제이,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214 페이지, . 렘제이에게서 순이윤이란 언제나 이자를 의미한다).

시켜 하건 생산노동을 착취하는 데는 노력이 든다. 따라서 그의 기업이익은 그에게는 자본소유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오히려 소유자가 아니라 일꾼으로서 그가 노는 기능의 결과로서 이자와 맞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의 머리속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상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즉 그의 기업이익은 임금노동과 그 무슨 대립을 이루기는 커녕, 남의 부지불노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는 커녕 도리어 그 자체가 다른 아닌 임금이고 감독임금(wages of superintendence of labour)이며 여느 임금노동자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이라는 표상이다. 그것은 1) 그것이 보다 복잡한 노동이기 때문이며 2) 그 자신이 자기에게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자본가로서의 그의 기능은 잉여가치 즉 부지불노동을, 그것도 가장 경제적인 조건에서 생산하는 데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여 완전히 가리워진다. 즉 그 사실이란 그가 자본가로서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고 자본의 단순한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에게 이자가 돌아간다는 것, 그런데 오히려 기업이익은 그가 기능을 노는 데 쓰는 자본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기능을 노는 자본가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윤, 따라서 잉여가치가 갈라지는 두 부분의 대립적 형태로 하여 이자와 기업이익은 잉여가치의 부분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잉여가치의 분할은 잉여가치의 본성과 그 기원과 그 존재조건들을 변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다.

재생산과정에서는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임금노동자에 대하여 남의 소유로서의 자본의 대표자로 나서며 화폐자본가는 기능을 노는 자본가를 대표하면서 노동을 착취하는 데 참가한다. 능동적 자본가는 노동자들에 대하여 생산수단의 대표자로서만 자기의 기능을 낼 수 있고 자기를 위하여 노동자들을 일시키며 또는 생산수단을 자본으로서 기능을 낼게 할 수 있다는 사정, 바로 이 사정은 재생산과정에서의 자본의 기능과 재생산과정 밖에서의 자본의 단순한 소유 사이의 대립으로 하여 망각되게 된다.

사실 이윤 즉 잉여가치의 두 부분이 이자와 기업이익으로서 떠는 형태에서는, 노동과의 어떠한 관계도 표현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 관계는 노동과 이 두 부분의 총계, 전체, 통일로서의 이윤 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잉여가치 사이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윤이 나누어지는 비율과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기초인 각각 다른 권리명의를 이윤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며 이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자본가가 기능을 노는 데 쓰는 자본의 소유자라면 그는 전체 이윤 또는 잉여가치를 차지한다. 자본가가 이렇게 이윤을 다 차지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부분을 법률상의 소유자로서의 제3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는 그야말로 아무래도 좋은 것이다. 그리하여 이윤이 두 부류의 자본가들 사이에 나누어지는 근거는 그 후의 모든 분할은 어쨌든 간에 자본 그 자체가 재생산과정에서 끌어내는, 나누어야 할 이윤, 잉여가치가 존재하는 근거로 점차 전화된다. 이자는 기업이득에 맞서고 기업이득은 이자에 맞서며 두 가지 것이 서로 맞서지만 노동에는 맞서지 않는다는 데로부터 기업이득 더하기 이자 즉 이윤, 나아가서는 잉여가치는 무엇에 근거하는가 하는 것으로 된다. 그 두 부분의 대립적 형태에라고! 그러나 이윤은 그것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그리고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문제로 될 수 있기 전에 생산되는 것이다.

이자불는 자본은 대부된 화폐가 실제로 자본으로 전화되고 이자를 그 한 부분으로 하는 초과분이 생산되는 한에서만 이자불는 자본으로 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자본에 생산과정과는 관계없이 이자불는 속성이 붙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노동력도 그것이 노동과정에서 활동하고 실현되는 경우에만 가치를 창조하는 그 힘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노동력이 그 자체로, 잠재력으로, 능력으로서 가치를 창조하는 활동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과정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정의 전제로 되고 있다는 것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으로서 노동력을 산다. 노동력을 생산적으로 부릴 뿐만 아니라 예컨대 봉사 등 순전히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도 살 수 있다. 자본도 마찬가지다. 채무자가 자본을 자본으로서 이용하는가 즉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자본에 내재하는 속성을 실제로 발휘케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그의 문제이다. 그가 지불하는 것은 두 경우에 다 그 자체로, 가능성으로 보아 자본이라는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이다.

이제는 기업이득을 더 상세히 보기로 하자.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자본의 특수한 사회적 규정성의 계기——다른 사람의 노동에 대한 지휘라는 속성을 가진 자본소유——가 고정되고 따라서 이자가 잉여가치 가운데서 자본이 이와 관련하여 낳는 부분으로 나타남으로써 잉여가치의 다른 부분인 기업이득은 필연적으로 자본으로서의 자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자라는 표현에서 이미 특별한 존재방식을 얻은, 자본의 특수한 사회적 규정성과는 떨어져 생산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본과 떨어진 생산과정은 노동과정 일반이다. 그러므로 산업자본가는 자본소유자와는 달리 기능을 노는 자본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본과 떨어져 기능을 노는 일꾼으로서, 노동과정 일반의 단순한 담당자로서, 노동자로서, 그것도 임금노동자로서 나타난다.

이자 그 자체는 바로 노동조건들이 자본으로서 사회적으로 노동과 맞서며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개인적 권력으로, 노동을 지배하는 개인적 권력으로 전화되어 정제한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자는 남의 노동의 생산물을 차지하는 수단으로서 자본소유 그 자체를 표시한다. 그러나 이자는 자본의 이 특성을 생산과정 밖에서 자본에 돌아가는 것으로서 그리고 결코 생산과정 자체의 특수한 자본주의적 규정성의 결과가 아닌 것으로서 표시한다. 이자는 자본의 이 특성을 노동과 직접 맞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노동과 관계없이 다만 한 자본가의 다른 자본가에 대한 단순한 관계로서 표시한다. 즉 자본과 노동 자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순 외적인 규정으로서 표시한다. 따라서 자본의 대립적 성격이 자립적 표현을 띠는 이윤의 특별한 모습인 이자에서는 이 대립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본에서 완전히 추상되게 그 대립적 성격이 표현된다. 이자는 두 자본가 사이의 관계이지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관계는 아니다.

한편 또 이 이자형태는 이윤의 다른 부분에 기업이득, 나아가서는 감독임금이라는 질적 형태를 띠게 한다. 자본가 그 자신이 수행해야 하며 그리고 바로 노동자와 구별되고 노동자와 맞선 자본가로서 하여야 하는 특별한 기능들은 노동기능들로서 나타난다. 자본가는 그가 자본가로서 노동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본가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도 역시 노동하기 때문에 잉여가치를 창조한다. 따라서 잉여가치의 이 부분은 결코 벌써 잉여가치인 것이 아니라 그 반대물인 수행한 노동에 대한 등가이다. 자본의 소외된 성격, 자본이 노동과 맞서는 것은 실제적 착취과정의 저편으로 즉 이자불는 자본으로 옮겨지므로 이 착취과정 자체는 단순한 노동과정으로서 나타나며 여기에서는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노동자와 다른 노동을 수행할 따름이다. 그리하여 착취하는 노동과 착취당하는 노동은 둘 다 노동으로서 같은 것이다. 착취하는 노동도 착취당하는 노동과 마찬가지로 역시 노동이다. 이자에는 자본의 사회적 형태가 붙지만 중립적이며 차별없는 것으로 표현되는 사회적 형태가 붙는다. 기업이득에는 자본의 경제적 기능이 붙지만 이 기능의 일정한, 자본주의적 성격이 추상되어 붙는다.

이 경우에 자본가의 의식 속에는 이 제3부, 제2편에서 말하여둔, 이윤이 평균이윤으로 균등화되는 데서 드는 보상이유와 똑같은 것이 생겨난다. 잉여가치의 분배에 규정적인 영향을 주는 이 보상이유는 자본주의적 표상방식으로 하여 이윤이 발생하는 이유로 그리고(주관적으로) 이윤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된다.

기업이득이 노동에 대한 감독임금이라는 표상은 기업이득이 이자와 맞서는 데서 생기는데 이 표상은 사실상 이윤의 한 부분이 임금으로서 분리될 수 있고 또 실제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또는 더 정확히 말하여 그와 반대로 임금의 한 부분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초 위에서는 이윤의 없어서는 안될 구성부분으로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또한 근거를 찾는다. 이 임금의 한 부분은 이미 A. 스미드가 옳게 알아낸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이윤(이자와 기업이득의 합계로서의)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윤 가운데서 남는 부분에서 순전히, 자립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기업의 규모 등으로 보아 관리인에게 특별임금을 줄 수 있을 만큼 분업이 되어 있는 사업부문들의 관리인의 봉급으로 나타난다.

감독하고 지도하는 노동은 직접적 생산과정이 사회적으로 결합된 과정의 모습을 띠고 자립적 생산자들의 노동이 따로따로 떨어져 진행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필연적으로 있게 된다.⁷³⁾ 그러나 그 노동은 이 중성을 띤다.

한편 여러 개인들이 협력하여 일하는 모든 노동에서는 필연적으로 과정의 연관과 통일이 교향악의 지휘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지휘하는 의사로 나타나며 그리고 작업장의 부분노동이 아니라 전체 활동과 관련된 기능들로 나타난다. 이것은 어떠한 결합된 생산양식에서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하나의 생산노동이다.

한편 또 상인의 업무를 아주 제쳐놓고 보면 이 감독노동은 직접적 생산자로서의 노동자와 생산수단의 소유자가 대립하는 데 기초한 모든 생산양식에 반드시 있게 된다. 이 대립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감독노동이 노는 역할은 노예제도에서 절정에 이른다.⁷³⁾ 그러나 감독노동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도 없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생산과정의 동시에 또한 자본가가 노동력을 소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제국가들에서 감독노동과 정부의 전면적 간섭이 두 측면 즉 모든 공동체의 본성에서 나오는 공동사업의 수행과 정부와 인민대중의 대립에서 나오는 특수한 기능들을 다 포괄하는 것과 똑같다.

노예제도를 직접 관찰한 고대의 저술가들에게서는 감독노동의 두 측면이 실천적으로도 그러하였지만 이론상으로도 뿔뿔히 떨어져 있어 있었는데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절대적인 생산양식으로 여기는 근대경제학자들에게서도 똑같다. 한편 또 내가 곧 하나의 실례를 들어 보여주겠지만 근대적 노예제도를 변호하는 자들은 감독노동을 노예제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서 이용할 줄 아는데 이것은 다른 경제학자들이 임금노동제도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감독노동을 이용할 줄 아는 것과 똑같다.

카토시대의 관리인(villicus) :

“영지의 노예신분(familia rustica)의 우두머리에는 영지관리인(villicus von

73) “감독은 이 경우에는(토지의 소유자인 농민의 경우에는) 전혀 필요없다”(J. E. 케언즈, 『노예제도』, 런던, 1862년, 48페이지).

74) “노동의 성질로 하여 노동자들(즉 노예들)을 넓은 지역에 나누어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하는 자의 수와 따라서 이 감독에 필요한 노동의 비용은 그에 따라 늘어날 것이다”(J. E. 케언즈, 같은 책, 44페이지).

villa)이 있어 그가 받아들이고 내주며, 사고 팔며, 주인의 지시를 받고 주인이 없을 때에는 명령도 하고 처벌도 하였다. …관리인은 물론 다른 노예들보다 자유로웠다. 마고의 책들에서는 관리인이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으며 따로 돈도 가질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카토는 관리인이 여성관리인과 결혼할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였다. 관리인만은 행실이 좋은 경우에는 주인에게서 자유를 얻을 가망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점에서는 그들 모두가 다같은 가내신분을 이루고 있었다. …관리인 자신도 그렇지만 노예는 누구나 필요한 것들을 주인에게서 어느 기간을 두고 정해진 율로 공급받았으며 그것으로 겨우 살아가야 하였다. …그 양은 노동에 따라 정해졌으며 그 때문에 예컨대 노예들보다 훨씬 노동을 한 관리인은 노예들보다 더 적게 받았다”(몸젠 『로마사』, 제2판, 제1권, 1856년, 809~810페이지).

아리스토텔레스 :

“왜냐하면 주인——자본가——은 노예를 얻는 데서——노동을 사는 권력을 주는 자본소유에서——가 아니라 노예를 이용하는——노동자, 오늘날은 임금노동자를 생산과정에서 사용하는——데서 주인답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식에는 위대한 것이나 고귀한 것은 전혀 없다. 즉 노예가 수행할 줄 알아야 할 것을 주인은 명령할 줄 알아야 한다. 주인이 스스로 이에 애쓸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인이 이 영예를 지니며 주인 자신은 국사에 전념하거나 철학을 한다”(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베케리 판, 1837년, 제1부, 제7장).

지배는 정치영역에서나 경제영역에서나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지배하는 기능들을 맡기는데 이것은 곧 경제영역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노동력을 소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솔직하게 말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다. 즉 이러한 감독노동은 큰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므로 주인은 재산이 넉넉하게 되면 이 애쓰는 영예를 관리인에게 맡긴다는 것이다.

지도하고 감독하는 노동은 그것이 온갖 결합된 사회적 노동의 본성으로 하여 생기는 기능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소유자와 단순한 노동력의 소유자와의 대립에서——노동력이 노예제도에서와 같이 노동자 자신과

함께 팔리건 또는 노동자 자신이 자기의 노동력을 팔며 따라서 생산과정
이 동시에 자본에 의한 그의 노동의 소비과정으로서도 나타나건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직접적 생산자의 예속에서 생기는 이 기능은 흔히 이
관계 자체를 정당화하는 충분한 이유로 되고 있으며 또한 착취 즉 남의
부지불노동을 차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흔히 자본의 소유자가 옹당히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미합중국의 노예제
도를 옹호하여 나선 변호사 오코너라는 자가 1859년 12월 19일 뉴욕의
한 모임에서 남부를 위한 정의라는 기치 밑에 한 연설보다 더 훌륭히
표시된 적은 없다.

그는 요란한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데 여러분, 흑인이
노예의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은 자연 그 자체 때문입니다. 흑인은 단단하며
노동할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흑인에게 이 센 힘을 준 자연은 그에게 관리할
능력도 노동할 의사도 주지 않았습니다(박수갈채). 그 이능 것도 주지 않았습
니다! 흑인에게 노동할 의사를 주지 않은 바로 이 자연은 이 의사를 강요할
주인은 그에게 주었으며 그가 태어난 풍토에서 그 자신을 위해서나 그를 관리
하는 주인을 위해서나 쓸모있는 종으로 되게 할 주인은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연이 흑인에게 마련해준 처지에 흑인을 그대로 두고 그를 관리할 주인을
그에게 주는 것은 결코 부정의가 아니라고 나는 주장합니다. 흑인에게 노동을
시키며 또한 그를 관리하고 그를 그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쓸모있게 만들기
위하여 주인이 들이는 노동과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바치도록 한다고
하여 결코 흑인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뉴욕 매일연단』, 1859년
12월 20일, 7~8페이지).

그런데 임금노동자에게도 노예와 마찬가지로 그에게 노동을 시키고 그
를 관리하기 위한 주인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지배와 예속관
계를 전제로 한다면 임금노동자가 그 자신의 임금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그 밖에 그를 지배하고 감시하는 노동에 대한 보수인 감독임금을 생산하
며 또한 그를 관리하고 그를 그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쓸모있게 만들기
위하여 주인이 들이는 노동과 재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바치도록 강요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감독하고 지도하는 노동이 사회의 적대적 성격에서, 즉 자본이 노동을 지배하는 데서 생기며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과 마찬가지로 계급대립에 기초한 모든 생산양식에 공통적인 한에서 그 노동은 자본주의제도에서는 모든 결합된 사회적 노동이 개개인에게 특별한 노동으로서 말기는 생산적 기능들과 직접, 뿔레야 뿔 수 없이 뒤섞여 있다. 에피트로포스(epitropos)* 또는 봉건적 프랑스에서 불려온 레지쉴르(regisseur)의 임금은 이윤과는 전혀 다른 것이고, 그러한 모든 경우에 산업자본가들은 일에서 사정을 고려하거나 철학을 연구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다 하더라도, 그러한 감독노동자들에게 보수를 보장할 만큼 대규모로 사업이 운영되고 작동될 때는 언제나 숙련노동자의 임금의 형태를 취한다.

유어 씨⁷⁵⁾는 “산업체계에서 쓸모있는 기능을 노는 것은” 산업자본가가 아니라 산업감독이라는 견해를 이미 밝혔다. 상업부분의 관심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앞서 전장(前章)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말했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은 자본소유주와는 전혀 다른 감독노동을 항상 손쉽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자본가 자신이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필요 없게 되었다.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그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를 소지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지휘자로서의 의무 이외에는 다른 음악가의 임금문제를 다룰 필요도 없다. 협동조합공장들은 자본가들이 높다란 자리에서 바라볼 때, 대지주가 불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것에 못지않게 생산에서 자본가 자신이 쓸모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자본가의 노동이 순전히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원천이 되는 것이 아닌 까닭에; 따라서 자본이 중지할 때 자본가의 노동 그 자체는 중지되지 않으므로; 그것이 오로지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기능에만 자신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그러므로 그것은 노동과정의 사회적 형태에서, 그리고 공동의 성과를 추구하는 많은 협동 및 결합에서 자본주의적 껍질을 깨뜨리자마자 형성되는 것은 바로 독립적 자본이다. 이러한 노동이, 자본

* 고대 회랍의 관리인. 편집부

75) A. Ure, 「공장주의 철학」 불어판, 1836년 1월, 67페이지에서 동시에 공장들의 이러한 서정시인은 대부분의 공장주들이 그들이 작동시키는 기계에 대하여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주의적 노동으로 혹은 자본가의 기능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평민(vulgus)은 자본주의 생산의 일주(一週)에서의 발전된 형태를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산업자본가는 화폐자본가에 비하면 노동자이다. 그러나 자본가적 의미에서의 노동자, 즉 타인 노동의 착취자로서의 노동자이다.

그가 노동에 대해 주장하고 지불하는 자신의 임금은 타인노동의 전유된 양에 정확하게 일치하며, 이러한 노동의 착취율에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착취가 요구하는 노력의 크기에, 그리고 관리자에게 보통의 급료로 이전할 수 있는 노력의 크기에는 좌우되지 않는다. 개개의 공황 후에 영국의 공장지구에는 낮은 임금을 받고 이전의 자기자신의 소유 공장을 감독할 충분한 수의 전 공장주들이 생겨나는데, 종종 그 공장의 새로운 소유주는 공장주들의 채권자들이다.⁷⁶⁾

상업적 산업적 경영자의 임금은 자본주의적 주식회사에서는 물론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적 공장에서도 기업의 이익과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다. 경영자의 임금과 기업이윤의 분리는 다른 때에는 순전히 우연이었지만 여기서는 항상적이다. 협동조합공장에서 감독노동의 적대적 성격은 사라지게 되는데 노동자들에게 대치되는 자본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지불해주는 경영자로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신용체계의 발전과 함께 발전한——은 이러한 경영노동을 자본의 소유권——그것이 자기 소유이든 빌린 것이든——으로부터 비롯되는 직무와는 분리하려는 경향을 점점 더 많이 보여주고 있다. 마치 부르조아 사회의 발전이 봉건시대에는 토지소유자의 것이었던 판사와 관리 기능을 토지소유자로부터 분리시켰던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단순한 자본소유자, 화폐자본가는 기능자본가와 대면해야 하고 화폐자본 그 자체는 신용의 등장과 함께 은행에 집중되어

76) 내가 아는 어떤 경우는 1868년 공황 이후 파산한 공장주가 이전에 그가 고용했던 노동자들 소유의 공장에 임금노동자로 되었다. 그 공장은 파산 이후 노동자들의 협동조합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이전의 소유주는 관리자로 고용되었다. —F. E.

원래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은행이 대여하게 되므로, 또 다른 한편으로 자본——그것이 빌린 것이건 혹은 다른 것이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없는 단순한 경영자가, 기능하는 자본가에 속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사무를 보는 자만이 남으며 자본가는 쓸모없는 인물로서 생산과정에서 사라진다. 영국의 협동조합공장들이 발표한 공공계산서⁷⁷⁾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만 이 공장들은 때로는 개인공장주들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지불하였지만 이윤은 나머지 노동자들의 임금과 똑같이 지출된 가변자본의 한 부분을 이루는 관리인의 임금을 뺀 후에도 평균이윤보다 컸다. 이 모든 경우에 이윤이 더 높았던 원인은 불변자본의 적용에서 많은 절약을 한 데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 경우에 평균이윤(=이자+기업이득)이 사실상 또 명백히 관리임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크기로서 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윤이 평균이윤보다 컸으므로 기업이득도 다른 경우보다 컸던 것이다.

일부 자본주의적 주식기업들, 예컨대 주식은행들(Joint Stock Banks)에서도 똑같은 현상을 보게 된다. 런던 앤드 웨스트민스터 은행은 한 해 배당금으로 1863년에 30%를 지불하였으며 런던합동은행과 그 밖의 은행들은 15%를 지불하였다. 여기에서는 총이윤에서 관리인들의 봉급 밖에도 예금에 대하여 지불되는 이자가 빠져 있다. 이 경우에 이윤이 높은 것은 예금에 비하여 불입자본이 얼마 안된다는 것으로써 설명된다. 예컨대 런던 앤드 웨스트민스터 은행에서는 1863년에 불입자본은 100만 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예금은 14,540,275파운드 스텔링이었다. 런던합동은행에서는 1863년에 불입자본은 100만 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예금은 14,540,275파운드 스텔링이었다. 런던합동은행에서는 1863년에 불입자본은 60만 파운드 스텔링이었는데 예금은 12,384,173파운드 스텔링이었다.

기업이득을 감독임금 또는 관리임금과 혼동하는 것은 원래 이자를 넘는 이윤의 초과분이 이자와 맞서 떠는 특수한 형태 때문이다. 이윤을 잉여가치로서 즉 부지불노동으로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가 자신이

77) 이 책을 쓴 것은 1865년이므로 여기에서 인용한 계산서는 기껏해야 1864년까지의 것이다. —F. E.

수행한 노동에 대한 임금으로서 표시하려는 변호론적 의도로 하여 더욱 그렇게 혼동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사회주의자들은 이윤을 이론상 그래야 할 것으로 즉 단순한 감독임금으로 실제로 되게 하라는 요구를 대치시켰다. 그리고 이론적인 미화에 대치된 이 요구는 한편으로는 수많은 산업관리인과 상업관리인 계급이 형성되는 데 따라 이 감독임금이 다른 모든 임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수준과 일정한 시장가격을 가지게 되면 될수록,⁷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감독임금이 기능노동에 대한 모든 임금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훈련을 받은 노동력의 생산비를 떨구는 일반적 발전에 따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욱 불쾌하게 되었다.⁷⁹⁾ 노동자들 편에서는 협동조합이 발전하고 부르주아지 편에서는 주식기업들이 발전하는 데 따라 기업이득을 관리임금과 혼동하는 마지막 구실도 서지 않게 되었으며 이윤은 사실상 이론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즉 단순한 잉여가치, 아무런 평가도 지불되지 않는 가치, 실현된 부지불노동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실지 노동을 착취하고 그 착취의 열매는 그가 곧 자본으로 사업하는 경우에는 이자와 이자를 넘는 이윤의 초과분인 기업이득으로 나누어진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기초 위에서는 주식기업들에서 관리임금과 관련된 새로운 협잡이 벌어지는데 실제적인 관리인들과 나란히 또 그들 위에

78) “기업주는 그의 임금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노동자이다. 이 점에서는 기업주의 이해관계는 그의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러나 이와 함께 기업주는 또 자본가가 아니면 자본가의 대리인이며 이 점에서는 그의 이해관계는 결정적으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와 맞선다” (호치스킨, 「자본의 요구에 대한 노동의 옹호…」, 런던, 1825년, 27페이지).

“이 나라의 산업노동자들 사이에서 교육이 널리 보급되어 전문가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거의 모든 주인들과 기업주들의 노동과 기능의 가치는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 (30페이지).

79) “인습적인 제한이 일반적으로 완화되고 교육을 받기가 쉽게 된 결과에 무기능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능노동자의 임금이 떨어지게 된다” (J. S. 밀, 「정치경제학원리」, 제2판, 제1권, 런던, 1849년, 479페이지).

관리와 감시를 맡은 수많은 역원들이 나타나며 이들의 관리와 감독이란 사실상 주구들을 약탈하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구실일 따름이다. 이에 대해서는 「시티 또는 런던 실업제의 생리학, 증권시장과 찻집에 대한 스케치」(런던, 1845년)에 매우 흥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있다.

“은행업자들과 상인들이 여덟 개나 아홉 개의 각각 다른 회사들을 관리하는데 참가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버는가 하는 것을 다음의 예에서 볼 수 있다. 티모시 에이브라함 커티스 씨가 파산되어 재판소에 제출된 개인계산서를 보면 중역직이라는 항목에 해마다 800~900파운드 스텔링의 소득이 있었다. 커티스 씨는 잉글랜드 은행과 동인도회사의 중역이었으므로 어느 주식회사나 그를 중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였었다”(81, 82페이지).

그러한 회사들의 중역이 매주 열리는 회의 때마다 받는 보수는 적어도 1기니(21마르크)이다. 재판소에서 심리한 파산건을 보면 이 감독임금은 보통 이 명목상의 중역들이 실제로 하는 감독노동에 반비례한다.

제24장 이자붙는 자본형태에서의 자본주의적 관계의 표면화

이자붙는 자본에서 자본주의적 관계는 가장 뚜렷이 표면화되고 가장 물질적인 형태를 띠게 된다.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G-G'$ 즉 더 많은 화폐를 낳는 화폐이며 두 극을 매개하는 과정이 없이 자체를 증식하는 가치이다. 상인자본 $G-W-G'$ 에서는 적어도 자본 운동의 일반적 형태가 있다. 물론 이 운동이 유통분야를 벗어나지 못하지만 말이다. 따라서 이윤은 단순한 양도이윤으로서 나타나지만 그러나 역시 이윤은 사회적 관계의 산물로서 표시되는 것이지 단순한 물건의 산물로서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상인자본의 형태는 역시 하나의 과정을, 상반되는 국면들의 통일을 표시하며 상반되는 두 행위인 상품들의 구매와 판매로 갈라지는 하나의 운동을 표시한다. 이 운동은 이자붙는 자본의 형태인 $G-G'$ 에서는 사라져 있다. 예컨대 1,000파운드 스텔링을 자본가가 대부하고 이자율이 5%라면 자본으로서의 1,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는 한 해 동안에 $C+Cz'$ ——여기에서 C 는 자본이고 z' 는 이자율 따라서 이 경우에는 $5\%=5/100=1/20$ 이다——즉 $1,000+1,000 \times 1/20=1,050$ 파운드 스텔링이다. 자본으로서의 1,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는 1,050파운드 스텔링이다. 즉 자본은 단순한 양이 아니다. 자본은 양적 관계 즉 자체를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잉여가치를 생산한 본전으로서의 그 자체에 대한 주어진 가치로서의 본전의 관계이다. 그리고 이미 본 바와 같이 자기의 자본으로 기능을 늘린 뿐 자본으로 기능을 늘린 모든 능동적 자본가들에게서는 자본으로서의 자본은 바로 직접 자체를 증식하는 가치로서 표시된다.

$G-G'$. 여기에서 자본의 맨 처음의 시점을 보게 되는데 공식 $G-W-G'$ 에서 화폐는 결국 두 극인 $G-G'$ 로 되며 여기에서는 $G'=G+\Delta G$ 즉 더 많은 화폐를 낳는 화폐가 표시되어 있다. 이것은 무의미한 개괄로

요약되어 있는, 자본의 맨 처음의 일반적인 공식이다. 이것은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통일되어 있으며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잉여가치를 낳게 되어 있는 완성된 모습으로 있는 자본이다. 이자율은 자본의 형태에서는 이것이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에 의하여 매개되지 않고 직접 나타난다. 자본은 그 자체가 늘어나는 즉 이자의 신비로운, 자체 창조적인 원천으로서 나타난다. 물건(화폐, 상품, 가치)은 이제는 단순한 물건으로서 이미 자본이며 자본은 단순한 물건으로서 나타난다. 총재생산과정의 결과가 물건 자체에 있는 속성으로서 나타난다. 화폐 즉 늘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있는 상품의 소유자가 그것을 화폐로 지출하려고 하는가, 자본으로 꾸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소유자의 마음에 달렸다. 그러므로 이자율은 자본에서는 그 자체를 증식하는 가치, 화폐를 낳는 화폐라는 이 자동적인 물신은 순수하게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자본은 이 형태에서는 그것이 생겨난 어떠한 흔적도 더는 가지고 있지 않다. 사회적 관계가 물건의 즉 화폐의 그 자체에 대한 관계로서 완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화폐가 자본으로 실제로 전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화의 내용없는 형태만을 보게 된다. 노동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화폐의 사용가치는 여기에서는 가치를 창조하는 것, 즉 화폐 자체에 들어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화폐로서의 화폐는 이미 잠재적으로 자체를 증식하는 가치이며 그러한 것으로서 대부되는데 이 대부분은 이 독특한 상품의 판매형태이다. 배가 주렁주렁 달리는 것이 배나무의 속성인 것과 똑같이 가치를 창조하는 것, 이자를 낳는 것이 화폐의 속성이다. 그리고 그러한 이자율은 물건으로서 화폐대부자는 자기의 화폐를 판다. 그러나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심지어 실제로 기능을 노는 자본도 이것이 마치도 기능을 노는 자본으로서가 아니라 자본 그 자체로서, 화폐자본으로서 이자를 낳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과 같은 관계도 왜곡된다. 이자는 이윤 즉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짜내는 잉여가치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자가 자본의 원래의 열매로서, 맨 처음의 것으로서 나타나며 이윤은 이제는 기업이익의 형태로 전화되어 재생산과정에서 덧붙는 부속물,

덧붙이로서 나타난다. 여기에서 자본의 물신적 모습과 자본물신의 표상은 완성된다. $G-G'$ 에서 보게 되는 것은 자본의 무개념적 형태이고 생산관계가 극도로 뒤집힌 것이며 물화된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자불는 자본의 모습, 자본이 그 자체의 재생산과정의 전제로 되어 있는, 자본의 단순한 모습이며, 재생산과는 관계없이 화폐 또는 상품이 그 자체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능력이며, 자본의 신비화의 가장 뚜렷한 형태이다.

자본을 가치, 가치창조의 자립적 원천으로 표시하려고 하는 속류경제학에 있어서 물론 이 형태는 그야말로 바라마지 않던 떡이며 이윤의 원천을 더는 알아볼 수 없는 그리고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결과가 과정 자체와 분리되어 자립적 정재를 얻는 형태이다.

화폐자본에서 비로소 자본은 자체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속성이 그때그때의 이자율로 표시되어 있는 일정한 가격을 가지는 상품으로 된다.

이자불는 자본으로서, 그것도 이자불는 화폐자본이라는 직접적 형태(여기에서 우리와 관계가 없는, 이자불는 자본의 다른 형태들은 이 형태에서 다시 나오는 것들이며 이 형태를 전제로 하는 것들이다)에서 자본은 그 순수한 물신적 형태를 즉 주자로서의, 팔 수 있는 물건으로서의 $G-G'$ 를 얻는다. 첫째로, 이렇게 되는 것은 자본이 화폐로 계속 정재하기 때문인데 이 화폐형태에서는 자본의 모든 규정성은 사라져 있으며 자본의 실제적 요소들은 볼 수 없다. 그것도 그럴 것이 화폐는 바로 사용가치들로서의 상품들의 차이, 따라서 또 이 상품들과 이 생산조건들로 이루어지는 산업자본들의 차이도 사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화폐는 가치, 이 경우에는 자본이 자립적인 교환가치로서 존재하는 형태이다. 자본의 재생산과정에서는 화폐형태는 일시적인 계기, 단순한 과도적 계기이다. 그런데 화폐시장에서는 자본은 늘 이 형태로 존재한다. 둘째로, 역시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이 낳은 잉여가치는 여기에서는 자본 그 자체의 것으로 나타난다. 자라나는 것이 나무들에 고유한 것으로 보이듯이 화폐를 낳는 것이 화폐자본으로서의 형태를 띤 자본에 고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자불는 자본에서는 자본의 운동이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히 요약된

다. 매개하는 과정은 빠져 있다. 그리하여 1,000이라는 자본이 그 자체는 1,000인데 어느 기간이 지나서는 1,100으로 전화되는 물건으로서 고정되어 있다. 마치 움 속에 있는 포도주가 어느 기간이 지나서는 그 사용가치를 더 늘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자본은 이제에는 물건이지만 그것은 물건으로서의 자본이다. 화폐는 이제에는 애정⁶⁹에 휩싸여 있다. 일단 화폐가 대부되거나 재생산과정에 투하되면(화폐가 그 소유자로서의 기능을 노는 자본가에게 기업이득과는 따로 이자를 낳는 한에서) 화폐에는 그것이 잠자건 말건, 집에 있건 여행을 하건, 낮이건 밤이건 이자가 붙는다. 그리하여 이자붙는 화폐자본에서는(그리고 모든 자본은 그 가치표현으로 보면 화폐자본이며 또는 이제에는 화폐자본의 표현으로 보게 된다) 화폐퇴장자의 경건한 염원이 실현된다.

이자가 이와같이 하나의 물건에서와 같이 화폐자본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야말로(자본에 의한 잉여가치의 생산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나타난다) 루터로 하여금 소박하게 고리대를 반대하여 그렇게도 외치게 한 것이다. 그는 일정한 기한이 되었는데도 반환되지 않음으로써 또 지불하여야 할 대부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거나 대부자가 예컨대 채마밭을 사서 얻었을 수도 있는 이윤을 같은 이유로 하여 잃어버린 경우에 이자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렇게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그것(100겔덴)을 뺀 것으로 하여 한편으로는 지불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또 살 수 없으며 따라서 이래저래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초래된 손실과 놓친 이익이라는 이중의 손해라고 하는 것이다. … 그들은 어느 누가 100겔덴을 꾸어 줌으로써 손해를 보고 이 손해에 대하여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듣고 이 기회를 놓칠세라 매 100겔덴에 대하여 그러한 이중의 손해를 본 데 대한 배상 즉 지불을 받지 못함으로 하여 입은 손실과 사지 못하여 놓친 채마밭으로 하여 입은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으며—마치도 그 100겔덴에 그러한 이중의 손해에 대한 배상이 붙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그리하여 100겔덴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그들은 내주고 입지도 않은 그러한 이중의 손해에 대하여 계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며 또 증명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 꾸며낸 손해를 이웃

의 화폐로 보상받는 자, 바로 네가 고리대금업자이다. 그러한 손해를 법률가들은 진실치 않은, 환상에서 나오는 손해라고 부른다. 각자가 제멋대로 꾸며내는 손해이다. ...

따라서 지불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한다면 필연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확실치 않은 것을 확실한 것으로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한 고리대가 몇 해 안가서 온 세상을 삼켜버리지 않겠는가?...

대부자가 당하지 말아야 할 불행은 그의 의사와는 달리 우연적으로 생겼다. 고리대 거래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심지어는 반대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렇게 하여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 의하여, 그들의 근심과 위험과 손해의 댓가로 부유하게 되어 나태와 안일 속에서 호의호식하려 한다. 자기는 따뜻한 구들에 앉아 자기의 100겔덴으로 하여금 자기를 위하여 벌게 하면서도 그것이 대부금이라는 것으로 하여 아무런 위험도 근심도 없이 제 돈주머니를 불리니 친구들이여 누가 이것을 바라지 않겠는가?" (M. 루터, 『고리대를 반대하여 설교하도록 승려들에게 주는 지시』, 위템베르그, 1540년)

자본이 그 자체를 재생산하고 재생산과정에서 늘이는 가치이며, 자본의 타고난 속성으로 하여 즉 스콜라 철학자들이 말하는 숨은 소질로 하여 영원히 보존되고 늘어나는 가치라는 표상은 연금술사의 모든 환상도 무색케 하는 프라이스 박사의 황당한 착상을 낳았는데 피트는 이 착상을 진지하게 믿고 감채기금⁷⁹에 관한 그의 법률에서 그의 재정경리의 기초로 삼았다.

"복리가 붙는 화폐는 처음에는 천천히 늘어난다. 그러나 늘어나는 율은 계속 빨라지므로 얼마간의 기간이 지나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진다.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하였을 때 5%의 복리로 대부된 1페니는 오늘날에는 전적으로 순금으로 된 1억 5천만개의 지구에 들어 있을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늘어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리로 대부되었다면 1페니는 똑같은 기간에 겨우 7실링 4½페니 미만으로 되었을 것이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부는 먼저 돈 길이 아니라 뒤에 돈 길을 걸어 재정을 개선하는 편을 택하였다."⁸⁰⁾

프라이스는 자기의 『상속지불…에 대한 고찰』(런던, 1772년)에서 한수 더 뜬다.

“우리의 구세주가 탄생할 때(아마도 예루살렘 사원에서) 6%의 복리로 대부분 1실링은 온 태양계가 토성의 궤도와 같은 직경을 가진 공으로 되었을 때 거기에 들어 있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늘어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언제나 곤란한 처지에서 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국가는 그의 이해관계가 요구할 수 있는 짧은 기간에 가장 적은 저축으로 가장 큰 채무도 지불할 수 있기 때문이다”(13, 14페이지).

-
- 80) 리처드 프라이스, 『국채문제에 관하여 공중에게 호소함』, 런던, 1772년 [19페이지]. 프라이스는 소박하게 재치있는 말을 하고 있다. “화폐를 복리로 늘이자면 그것을 단리로 꾸지 않으면 안된다”(R. 해밀턴, 『대영국의 국채의 발생과 증가에 대한 연구』, 제2판, 에딘버러, 1814년(133페이지)를 보라). 그렇다면 꾸는 것은 무릇 개인으로서도 가장 확실한 치부수단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예컨대 100파운드 스텔링을 한 해 이자 5%로 꾸다면 연말에 5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하여야 하며 이렇게 1억 년 동안 계속 꾸다 하더라도 나는 그동안 해마다 언제나 100파운드 스텔링 밖에는 대부할 수 없으며 또한 해마다 5파운드 스텔링을 지불해야 한다. 나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는 내가 100파운드 스텔링을 꾸서 105파운드 스텔링을 대부할 수는 결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에서 나는 그 5%를 지불하여야 하는가? 새로 꾸어서거나 또는 내가 국가라면 세금을 받아서이다. 그러나 산업자본가가 화폐를 꾸다면 그는 가령 15%의 이윤의 경우에 5%는 이자로서 지불하고 5%는 소비하며(비록 그의 식욕은 그의 소득이 늘어나는 데 따라 늘어나지만) 5%는 자본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5%의 이자를 끊임없이 지불하자면 이미 15%의 이윤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어 간다면 이윤율은 위에서 이미 말한 이유로 하여 가령 15%에서 10%로 떨어진다. 그러나 프라이스는 5%의 이자율은 15%의 이윤율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으며 자본이 축적되는 데도 15%의 이윤율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결코 실제적 축적과정을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화폐가 복리로 되돌아오도록 그것을 대부하는 것만을 문제로 하고 있다. 화폐가 어떻게 되돌아오기 시작하는가 하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래도 좋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이자불는 자본이 타고난 속성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국채에 대한 얼마나 훌륭한 안내서인가!

프라이스는 단순히 기하급수에서 나오는 숫자의 방대성에 황홀했던 것이다. 그는 자본을 재생산과 노동의 조건들은 고려하지 않고 스스로 활동하는 자동기로서, 스스로 자체를 늘이는 단순한 숫자로서 보았기 때문에(맬더스가 인간을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으로 본 것과 똑같이⁷¹⁾) 그는 $s=c(1+z)^n$ 라는 공식에서 자본증식의 법칙을 발견하였다고 망상하였다. 이 공식에서 s 는 자본+복리의 합계이고 c 는 선대된 자본이며 z 는 이자율(백분율로 표현된)이고 n 은 과정이 진행되는 횟수(年數)이다.

피트는 프라이스 박사가 신비화한 것을 아주 진지하게 대한다. 1786년에 하원은 국가가 쓰기 위하여 1백만파운드 스텔링을 세금으로 뺏아들일 것을 결의하였다. 피트가 신봉한 프라이스에 따르면 물론 인민들에게 세금을 들쭉워 뺏아들인 금액을 축적하며 국채를 복리의 비결에 의하여 없애버리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하원의 그 결의에 이미 곧 피트가 내놓은 법률이 나왔는데 이 법률은

“효과를 잃은 종신연금과 함께 기금이 한 해 4백만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어날 때까지”(3세, 제26년도 예, 제31장⁷²⁾)

25만파운드 스텔링씩 축적할 것을 명령하였다.

피트가 국채상환기금에 들릴 금액을 늘일 것을 제의한, 1792년의 자기 연설에서 그가 영국의 상업이 우세한 원인들로서 든 것은 기계, 신용 등이지만

“가장 광범하고 가장 오래가는 원인은 축적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천재인 스미드의 저작에서 완전히 전개되었고 충분히 설명되었으며 …자본의 이 축적은 적어도 한 개 이윤의 한 부분이라도 남겨두어 본전을 늘이고 다음해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본전을 이용하여 계속 이윤을 내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이다.”

프라이스 박사의 도움을 받아 피트는 이와같이 스미드의 축적론을 채무의 축적에 의한 인민의 치부론으로 만들어버렸으며 유쾌하게도 국채를

지불하기 위하여 한없이 국채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근대은행업의 아버지인 조시아 차일드에게서 다음과 같은 것을 본다.

“100파운드 스텔링은 10%의 복리로 70년이 지나면 102,400파운드 스텔링으로 될 것이다”(『상업과 …에 관한 논술, …』, 차일드에 의한 번역, 암스테르담 및 베를린, 1754년, 115페이지, 1669년에 쓴 것).

프라이스 박사의 견해가 얼마나 경솔하게 근대경제학에 스며 있는가 하는 것은 『이코노미스트』지의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보게 된다.

“저축된 자본의 모든 부분에 대한 복리의 자본이 모든 것을 삼켜버려 소득의 원천인 세상의 모든 부가 오래 전에 자본의 이자로 되었을 정도이다. …지금 모든 지대는 이전에 토지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자의 지불이다”(『이코노미스트』, 1851년, 7월 19일).

다시 말하면 이자불는 자본으로서의 자본에는 일반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모든 부가 속하며 자본이 이제까지 얻은 모든 것은 모든 것을 삼키는 자본의 식욕에 대한 분할지불이다. 자본의 타고난 법칙들에 의하면 인류가 일찍이 제공할 수 있었던 모든 잉여노동은 자본에 속한다. 이것이야말로 물로크⁷³다.

끝으로 낭만주의적 필러의 다음과 같은 횡설수설을 더 든다.

“프라이스 박사가 말하는 복리의 엄청난 증가 또는 스스로 커지는 인간의 힘의 엄청난 증가는 여러 세기를 통하여 달라지거나 형클어지지 않은, 한결같은 질서를 전제로 한다. 자본이 나뉘어 수많은 여러 개의 가지들로 갈라지게 되자 힘의 축적의 총과정은 새로 시작된다. 자연은 힘의 증가시기를 개개 노동자에게(!) 평균 20년 내지 25년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자는 자기의 생활경로에서 물러서서 이제는 노령의 복리에 의하여 얻은 자본을 새로운 노동자에게 넘겨주며 대체로 여러 노동자들이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은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자본의 고유한 복리를

끌어내기 전에 우선 활기 띠게 하고 적용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가 얻는 엄청난 양의 자본은 아주 불안정한 사회에서도 오랜 해들을 거쳐 점차 쌓이게 되며 노동을 직접 넓혀가는 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어지간한 금액에 이르게 되자 뛰준다는 이름으로 다른 개인, 노동자, 은행, 국가에 넘어가며 그 다음에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자본을 실제로 가동시켜 그 자본에서 복리를 끌어내고 대부를 준 자에게 단리를 지불할 의무를 쉽게 질 수 있다. 끝으로 생산 또는 절약의 법칙만이 작용한다면 인간의 힘과 그 생산물은 그렇게 엄청나게 늘어나갈 수 있지만 이에 소비, 욕망, 낭비의 법칙이 반작용한다”(A. 윌러, 『국가관리술의 기본』, 제3부, 147~149페이지).

몇 줄 안되는 글에서 이 이상 더 엉터리없는 것을 지킬 일 수는 없다. 노동자와 자본가, 노동력의 가치와 자본의 이자 등의 가소로운 혼동은 둘째치고도 윌러는 복리를 얻기 위하여 자본이 대부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윌러가 하는 짓은 갖가지 낭만주의에 특징적인 것이다. 낭만주의의 내용은 사물을 아주 곁핍기로 보는 데서 나오는 평범한 편견들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그릇되고 하찮은 내용이 그 다음에 신비화하는 표현방식에 의하여 높여지고 시로 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본의 축적과정은 이윤(잉여가치) 가운데서 자본으로 도로 전화되는, 즉 새로운 잉여노동을 빨아들이는 데 쓰이는 부분을 이자라고 부를 수 있는 한에서 복리의 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 모든 우연한 혼란들을 제쳐놓고 보면, 재생산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이미 있는 자본의 큰 부분의 가치가 끊임없이 많건적건 감소된다.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은 그 상품의 생산에 처음에 드는 노동시간이 아니라 그 상품의 재생산에 드는 노동시간이며 이 노동시간은 사회적 노동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줄곧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비교적 높은 발전단계에서는 이미 있는 자본은 자본 저축의 오랜 과정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비교적 매우 짧은 재생산기간의 결과로서 나타난다.⁸¹⁾

2) 이 책의 제3편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이윤율은 자본의 축적이 늘어

81) 밀과 케어리 및 로서의 이에 대한 오해에 기초한 주석을 보라.⁷⁴

나고 그에 따라 사회적 노동생산력이 늘어나는데——이것은 바로 불변자본부분에 비하여 가변자본부분이 상대적으로 더욱 줄어드는 데서 표현된다——따라 줄어든다. 한 명의 노동자에 의하여 가동되는 불변자본이 열 곱으로 되는 경우에 똑같은 이윤율을 내기 위하여는 잉여노동시간이 열 곱으로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러자면 곧 전체 노동시간, 아니 하루의 24시간을 모두 자본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프라이스가 말하는 누진적으로 늘어나간다는 것의 기초에는 그리고 무릇 복리로 모든 것을 삼키는 자본이라는 것의 기초에는 이윤율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표상이 놓여 있는 것이다.⁸²⁾

잉여가치와 잉여노동이 동일한 것으로 하여 자본의 축적에 질적 한계가 놓이게 된다. 이 한계는 총노동일, 주어진 생산력의 발전수준과 인구수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그 인구수는 동시에 착취할 수 있는 노동일의 수를 제한한다. 이와 반대로 잉여가치를 이자라는 무개념적 형태로 이해하면 한계는 다만 양적인 것이며 그리하여 자본의 축적은 어떠한 한계도 능가한다.

그러나 이자율은 자본에서 자본물신의 표상이 완성되는데 이 표상은 축적된 노동생산물, 그것도 화폐로서 고정되어 있는 그 노동생산물에 타고난 신비로운 속성으로 하여 순전히 자동적으로 기하급수로 잉여가치를 낳는 힘이 있다고 보는데 그리하여 이 축적된 노동생산물은 「이코노미스트」지가 생각하고 있듯이 모든 시대의 세상의 모든 부를 웅당 자체의 것으로 이미 아주 오래 전부터 할인하여 왔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과거노동의 생산물, 심지어는 과거노동 자체가 그 자체로서 현재의 또는 미래의 산 잉여노동의 한 부분을 이미 그 속에 배고 있다. 그런데 아다시피 사실상 과거노동의 생산물의 가치가 유지되며 따라서 그 가치가

82) “그러나 어떠한 노동, 어떠한 생산력, 어떠한 예지, 어떠한 기술도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복리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모든 저축은 자본가의 소득에서 이루어지며 그리하여 실제로 이 요구는 계속 제기되지만 노동생산력도 역시 계속 그 요구를 충족시키기를 거부한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일종의 균형이 이루어진다”(『자본의 요구에 대한 노동의 옹호』(런던, 1825년), 23페이지, 호지스킨의 저서).

재생산되는 것도 그 생산물이 산 노동과 접촉하는 결과에 지나치 않으며
 둘째로, 산 잉여노동에 대한 과거노동의 생산물의 지배는 바로 과거노동
 이 자립적으로 산 노동과 맞서고 그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일정한
 사회적 관계인 자본주의적 관계가 보존되는 한에서만 계속된다.

제 25 장 신용과 의제자본

신용업과 신용업이 자체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도구들(신용화폐 등)의 상세한 분석은 우리의 계획 밖에 있다. 여기에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일반을 특징짓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점들만을 들어 말해야 한다. 그 경우에는 산업신용과 은행업자 신용만을 문제로 삼아야 한다. 이 신용의 발전과 공적 신용의 발전과의 연관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나는 이미(『자본론』, 제1부, 제3장, 3, 1) 어떻게 단순상품유통에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기능이 이루어지고 따라서 상품생산자와 상품거래자 사이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가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었다. 상업의 발전과 유통을 고려함으로써만 생산하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발전에 따라 신용업의 이 자연발생적 기초는 확대되고 일반화되며 발전된다. 대체로 화폐는 이 경우에 지불수단으로서만 기능을 논다. 즉 상품은 화폐를 받고 팔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한에 지불한다는 문서상의 약속을 받고 팔린다. 우리는 간단히 하기 위하여 이 지불약속을 통틀어 어음이라는 일반적 범주로 총괄할 수 있다. 그러한 어음 자체는 기한이 되어 지불될 날짜까지 다시 지불수단으로서 유통한다. 그리고 그러한 어음은 고유한 상업화폐를 이룬다. 어음들이 결국 채권과 채무가 같게 되어 상쇄되는 한에서 그 어음들은 절대적으로 화폐로서 기능을 논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종국적으로 화폐로 전화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생산자들과 상인들이 이렇게 서로 선대하는 것이 신용의 원래의 기초를 이루듯이 그들의 유통도구인 어음은 원래의 신용화폐인 은행권 등의 기초를 이룬다. 은행권 등은 금속화폐이건 국가지폐이건 화폐의 유통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의 유통에 기초한다.

W. 리담(요크셔의 은행업자), 『통화에 관한 편지집』, 제2판, 런던, 1840년 :

“나는 1839년 온 한 해 동안의 어음 총액이 528,493,842파운드 스텔링이었다고 본다(그는 외국 어음액은 전체의 약 1/7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같은 해에 동시에 유통한 어음의 금액은 132,123,460파운드 스텔링이었다고 본다(55~56페이지).” “어음은 유통수단 가운데서 나머지 모든 유통수단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금액을 이루는 구성부분이다”(3~4페이지). “어음이라는 이 엄청난 상부구조는 은행권과 금의 총액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토대 위에서 있다(!) 그리고 사건들이 일어나 이 토대가 너무나 좁아지면 이 상부구조의 견고성과 그 존재까지도 위험에 빠진다”(8페이지). “전체 유통수단(그는 은행권을 두고 말한다)과 곧 현금으로 지불한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모든 은행들의 채무액을 어림잡아 보면 그 금액은 1억 5,300만인데 이 금액은 법률에 의하여 금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금은 1,400만밖에 없다”(11페이지). “화폐가 남아돌아가게 되고 이자율이나 할인율이 낮은 것을 막지 않는다면 어음은 통제할 수 없다. 이자율과 할인율이 낮기 때문에 어음의 한 부분이 생겨나는 것이며 어음이 크게 그리고 위험하게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어음이 얼마만큼 실지 거래 즉 실지 사고파는 데서 생겨나는가 또 얼마만한 부분이 인위적으로(fictitious) 만들어지고 유통하기 위한 어음만으로 이루어지는가 즉 지불기한이 되기 전에 현재의 어음을 갈아치우기 위하여, 그리하여 순전한 유통수단으로 의제자본을 조작하기 위하여 발행되는 어음만으로 이루어지는가를 가려낼 수는 없다. 화폐가 남아돌아가고 값높은 시기에는 그러한 일이 엄청난 정도에까지 이른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43~44페이지).

J. W. 보즌키트, 『금속, 지폐 및 신용통화』, 런던, 1842년 :

“어음교환소(여기에서 런던의 은행업자들은 들어온 수표와 지불기한이 된 어음들을 서로 교환한다)에서 매 영업일에 청산되는 지불액은 평균 300만파운드 스텔링 이상인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나날의 화폐예비금은 20만파운드 스텔링을 그닥 넘지 않는다”(86페이지). (1889년에 어음교환소의 총교환액은 76억 1,875만파운드 스텔링 즉 영업일을 대략 300일로 보면 하루 평균 2,550만파운드 스텔링에 이르렀다. —F. E. } “어음은 그것이 양도한다는 서명으로 소유권을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넘기는 한에서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폐

와는 독립한 유통수단(currency)이다”(92~93페이지). “평균하여 유통하는 개개 어음에는 두 차례의 양도서명이 있으며 따라서 개개 어음은 그것이 지불기한이 되기 전에 두 차례의 지불을 청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양도서명만으로 1839년 한 해 동안에 5억 2,300만의 두 곱 즉 10억 5,600만, 하루 300만 이상의 금액에 이르는 소유권 이전을 어음이 매개한 것으로 된다. 그러므로 어음과 예금은 함께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소유권이 옮겨감으로써 화폐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하루 적어도 1,800만파운드 스텔링의 금액에 이르는 화폐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확실하다”(93페이지).

투크는 신용 일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신용이란 아주 간단히 말하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폐이건 또는 일정한 화폐액으로 평가된 상품이건 일정한 자본액을 맡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신임이며 이 자본액은 늘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는 반환되어야 한다. 자본이 화폐로 즉 은행권으로 대부되거나 현금신용으로 또는 거래하는 상대방에 대한 지도서로 대부되거나 할 것 없이 자본을 사용한 값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에 몇 프로가 덧붙는다. 상품을 신용으로 주는 경우에는 관계자들 사이에서 그 가치액이 확정되고 그것을 넘겨주는 것이 파는 것으로 되는데 지불되어야 할 확정된 금액에는 자본을 사용한 데 대해서와 만기가 될 때까지 당하게 되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 들어 있다. 이와 같은 신용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정한 만기일에 지불할 데 대한 증서들이 교부된다. 그리고 이 증서들 또는 계약서들은 대부자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화폐형태로건 상품형태로건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로 이 어음들의 만기 전에 더 값있게 꾸거나 살 수 있는 수단으로 되는데 그것은 그들 자신의 신용이 어음에 있는 다른 서명자와 신용에 의하여 높아지기 때문이다”(『통화원리의 연구』, 87페이지).

Ch. 꼬클랭, 『산업에서의 신용과 은행에 대하여』, 『신구대륙평론』⁷⁵, 1842년, 제31권[797페이지] :

“어느 나라에서나 신용거래의 대다수는 산업관계 자체의 범위 안에서 진행된다. …원료의 생산자는 이 원료를 가공하는 공장주에게 선대하고 그에게서

지불계약서를 받는다. 이 공장주는 자기의 한 작업부분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비슷한 조건들로 자기의 생산물을 더 가공하지 않으면 안되는 다른 공장주에게 선대하며 이렇게 되어 신용은 한 사람에게서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른 사람에게로 더욱더 뻗어나간다. 도매상인은 소매상인에게 상품을 선대하는데 그 자신도 공장주나 중개업자에게서 상품을 선대받는다. 누구나 한 손으로는 꾸고 다른 손으로는 쥐주는데 때로는 화폐를 그렇게 하지만 그보다는 흔히 생산물을 그렇게 한다. 그리하여 산업관계에서는 서로 물려 있고 사방으로 엮갈려 있는 선대의 끊임없는 교환이 진행된다. 이렇게 서로서로의 선대가 다양해지고 늘어나는 바로 여기에 신용의 발전과 그 힘의 진정한 뿌리가 있다.”

신용업의 다른 측면은 화폐거래의 발전과 연결되는데 화폐거래의 발전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물론 상품거래의 발전과 보조를 맞춘다. 앞편(제19장)에서 본 바와 같이 상인들의 예비금의 보관, 화폐를 받아들이고 내주며 국제적 지불을 하는 기술적 조작들, 따라서 금은 덩어리의 거래는 화폐거래업자의 손에 집중된다. 이 화폐거래와 연결되어 신용업의 다른 측면인 이자붙는 자본 또는 화폐자본의 관리가 화폐거래업자의 특별한 기능으로서 발전한다. 화폐를 꾸고 쥐주는 것은 화폐거래업자들의 특별한 업으로 된다. 화폐거래업자들은 화폐자본을 실제로 쥐주고 꾸는 사람들 사이의 매개자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은행업자의 업은 이 측면에서 보면 쥐줄 수 있는 화폐자본을 대량으로 자기의 손에 집중하고 그리하여 개별적 화폐대부자가 아니라 은행업자들이 모든 화폐대부자들의 대표들로서 산업자본가, 상업자본가와 맞서는 데 있다. 은행업자들은 화폐자본의 전반적 관리자로 된다. 한편 또 은행업자들은 전체 상업계를 대상하여 줌으로써 모든 대부자들에게 채무자들을 집중시킨다. 은행은 한편으로는 화폐자본의 집중대부자들의 집종을 표시하며 다른 편으로는 차용자들의 집종을 표시한다. 은행의 이윤은 일반적으로 그가 쥐주는 것보다 낮은 이자로 꾸는 데 있다.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자본은 여러 가지 길을 통하여 그 은행들에 흘러들어온다. 우선 은행들은 산업자본가들의 출납을 맡아 보므로 개개 생산자와 상인이 예비금으로 가지고 있거나 지불되어 그에게로 흘러드는

화폐자본이 은행들의 손에 집중된다. 그리하여 이 예비금은 대부할 수 있는 화폐자본으로 전화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상업계의 예비금은 공동의 예비금으로서 집중되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예비금으로서 늘게 될 화폐자본의 한 부분이 대부되어 이자 붙는 자본으로서 기능을 논다. 둘째로 은행들의 대부자본은 은행들에 대부할 것을 내맡기는 화폐자본가들의 예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또 은행체계의 발전에 따라 특히 은행들이 예금이자를 지불하게 되자 모든 계급들의 저금과 잠시 쓰이지 않는 화폐는 은행들에 집중되게 된다. 따로따로는 화폐자본으로서 작용할 수 없는 작은 금액들이 큰 금액으로 뭉쳐 하나의 화폐역량을 이룬다. 이렇게 작은 금액들을 모아들이는 것은 은행체계의 특별한 작용으로서 원래의 화폐자본가와 채무자 사이에서 은행체계가 중개하는 것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 끝으로 점차적으로만 소비될 소득들도 은행들에 맡기게 된다.

대부(여기에서는 원래의 상업신용만을 문제로 삼는다)는 어음을 할인하는 것 즉 어음을 만기가 되기 전에 화폐로 전화하는 것으로 진행되며 또 다음과 같은 각종 형태의 선대로 진행된다. 즉 그 형태는 개인에게 신용으로 주는 직접적 선대, 이자붙는 증권, 국가증권, 각종 주권을 담보로 하는 선대, 특히 배집증권, 도크 창고증권 그 밖의 확인된 상품소유명의에 대한 선대, 예금잔고를 넘는 초과지불에 의한 선대 등이다.

그런데 은행업자가 주는 신용은 각종 형태로 주어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은행들 앞으로 발행하는 어음, 다른 은행들 앞으로 떼는 수표, 직접적 신용개시, 끝으로 은행권을 발행할 권한이 있는 은행들의 경우에는 그 은행의 은행권으로 주어질 수 있다. 은행권이란 다른 아니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언제나 지불될 수 있으며 은행업자의 사적 어음을 대신하는 그 은행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어음이다. 마지막으로 든 신용형태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특히 놀라웁고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종류의 신용화폐는 단순히 상업유통에서 나와 일반적 유통으로 들어와 여기에서 화폐로서 기능을 놀기 때문이며 또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은행권을 발행하는 주되는 은행들은 국립은행과 사립은행의 기묘한 혼합물로서 사실상 국가신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은행들의 은행권은 정도

의 차이는 있으나 어쨌든 법적인 지불수단이기 때문이며 또 은행권은 유통하는 신용기호를 표시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은행업자가 취급하는 것은 신용 그 자체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행업자는 다른 모든 형태의 신용도 취급하는데 그가 그에게 맡긴 화폐를 현금으로 선대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사실상 은행권은 도매상업을 위한 주화에 지나지 않으며 은행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예금이다. 이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다.

은행의 특수한 형태들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신용기관들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는 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없다.

“은행업자들의 임무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다. … 1) 자본을 당장 사용하지 않는 사람로부터 모아들여 그것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또는 넘겨주는 것이다. 2) 고객들의 소득에서 예금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소비품을 위한 지출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먼저 든 것은 자본의 유통이고 뒤에 든 것은 유통수단(currency)의 유통이다. 첫째 업무는 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적이고 다른 편으로는 자본의 분배이다. 둘째 업무는 그 지구의 지방적 목적을 위한 유통의 조절이다”(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36, 37페이지).

제28장에서 이 곳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위원회보고』, 제8권, 「상업곤궁」, 제2권, 제1부, 1847~1848년, 증언록. (앞으로 「상업곤궁」, 1847~1848년으로 인용한다.⁷⁶⁾ 40년대에는 런던에서 어음을 할인하는 데서 수많은 경우에 은행권 대신에 한 은행이 다른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유효기간이 21일짜리 어음이 사용되었다(지방은행업자 J. 피스의 증언, 제4636, 4645호). 똑같은 보고에 의하면 은행업자들은 화폐가 부족하면 그들의 고객에게 지불하는 데 예사로 그러한 어음을 주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받는 사람이 은행권을 바라면 그는 이 어음을 다시 할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즉 은행은 화폐를 만들어내는 일종의 특전을 가진 셈이다. 존스 로이드 상회(Jones, Loyd and Co.)는 화폐가 부족되고 이자율이 5%를 넘기만 하면 아득한 옛날부터 이런

방식으로 지불하여 왔다. 고객은 그러한 은행의 어음을 즐겨 받았는데 그것은 존스 로이드 상회의 어음은 그 자신의 어음보다 할인하기가 쉬웠기 때문이다. 이 상회의 어음은 흔히 20~30명의 손을 거쳤다(같은 보고, 제901~904, 905, 992호).

이 모든 형태들은 지불을 받을 권리를 넘겨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데 쓰인다.

“어떠한 형태의 신용이건 때로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것은 거의 없다. 이 형태가 은행권이건 어음이건 수표이건 과정은 본질적으로 똑같으며 결과도 똑같다”(플라톤, 『통화의 조절』, 제2판, 런던 1845년, 38페이지). “은행권은 신용의 작은 화폐이다”(51페이지).

다음 것은 J. W. 길바트 『은행업의 역사와 원리』(런던, 1834년)에서 인용한 것이다.

“은행 자본은 두 부분으로 즉 고정자본(invested capital)과 꾀 은행자본(banking capital)으로 이루어진다”(117페이지). “은행자본 또는 꾀 자본은 다음과 같은 세 방도로 얻어진다. 1) 예금을 받는 것, 2) 자체 은행권의 발행, 3) 어음의 발행, 한 사람이 나에게 100파운드 스텔링을 거저 꿔주고 내가 이 100파운드 스텔링을 다른 어떤 사람에게 4%의 이자로 꿔준다면 나는 한 해 동안에 이 거래로 4파운드 스텔링을 얻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내가 지불을 약속한 것(나는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 I promise to pay는 것이 영국의 은행권들에 보통 써 있는 말이다)을 그것을 나에게 연말에 가서 반환하되 그것에 대하여 마치 내가 그에게 100파운드 스텔링을 꿔준 것과 똑같이 4%를 나에게 지불한다면 나는 이 거래로 4파운드 스텔링을 얻는다. 그리고 또 지방도시에 있는 한 사람이 나에게 100파운드 스텔링을 가져오되 내가 21일 후에 이 금액을 런던에 있는 어떤 제3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 동안에 그 화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자는 다 나의 이윤으로 될 것이다. 이상은 은행의 업무를 그리고 예금과 은행권, 어음에 의하여 은행자본이 조성되는 방도를 적절하게 요약한 것이다”(117페이지). “은행업자의 이윤은 일반적으로 그가 꾀 자본액 또는 은행자본액에 비례한다.

은행의 실제적 이윤을 확정하기 위하여는 총이윤에서 고정자본에 대한 이자를 빼야 한다. 그 나머지가 은행이윤이다”(118페이지). “은행업자가 자기 고객들에게 주는 선대는 다른 사람들의 화폐로 하는 것이다”(146페이지). “은행권을 발행하지 않는 은행업자들은 바로 어음의 할인으로 은행자본을 조성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할인업무에 의하여 예금을 늘인다. 런던의 은행업자들은 자기들에게서 예금계시를 가지고 있는 상사들에게만 할인하여 준다”(119페이지). “거래하는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고 이 어음의 전액에 대하여 이자를 지불한 상사는 적어도 이 금액의 한 부분을 이자를 받지 않고 그 은행에 두어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방도로 은행업자는 자기가 선대하여 준 화폐에 대하여 돌아가는 이자율보다 높은 율의 이자를 받고 자기에게 남겨둔 나머지에 의하여 은행자본을 조성한다”(120페이지).

예비금, 예금, 수표의 절약에 대하여

“예금은행들은 꺾주는 화폐의 돈자리 옮기기에 의하여 유통수단의 사용을 절약하고 적은 금액의 실제적 화폐로 큰 금액의 거래들을 처리한다. 이렇게 풀려나온 화폐는 은행업자가 자기의 고객들에게 할인 등으로 선대하여 주는 데 쓰인다. 그러므로 꺾주는 화폐의 돈자리 옮기기는 예금제도의 효과성을 높인다”(123, 124페이지). “서로 거래하는 두 고객들이 자기들의 계산자리를 똑같은 은행업자에게서 가지고 있건 각각 다른 은행업자에게서 가지고 있건 상관없다. 왜냐하면 은행업자들은 자기들의 수표를 서로 어음교환소에서 교환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돈자리 옮기기에 의하여 예금제도는 금속화폐를 전혀 쓰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각자가 은행에 예금계산자리를 가지고 모두 자기의 지불을 모두 수표로 한다면 이 수표가 유일한 유통수단으로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은행업자들의 손에 화폐가 있다고 치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수표는 아무런 가치도 없을 것이다”(124페이지).

지방의 거래가 은행들에 집중되는 것은 1) 지점은행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지방은행들은 관할지구의 작은 도시들에 지점들을 가지고 있다. 2) 대리점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각 지방은행은 런던에 대리점을 두고 거기에서 자기 은행의 은행권이나 어음으로 지불하고 또 런던의 주민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계산자리에 집어 넣는 화폐를 받아들인다”(127페이지). “은행업자는 누구나 다른 은행의 은행권을 받아들이면 그것을 다시 내놓지 않는다. 큰 도시에서는 어디서나 은행업자들이 한 주일에 한두 차례 모여서 은행권을 교환한다. 나머지는 런던 앞으로 내는 위체에 의하여 지불된다”(134페이지). “은행의 목적은 거래를 쉽게 하는 것이다. 거래를 쉽게 하는 모든 것은 투기도 쉽게 한다. 거래와 투기는 많은 경우에 밀접히 결부되어 있어서 거래가 어디서 끝나고 투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하기 어렵다. …은행들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자본을 얻기가 더 쉽고 또 더 값싸다. 자본이 값싸면 투기가 성하는데 이것은 고기와 맥주가 값싸면 포식과 주정이 성하는 것과 똑같다”(137, 138페이지). “자기의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들은 언제나 이 은행권으로 지불하므로 그 은행들의 할인업무는 전적으로 은행권을 발행하여 얻는 자본으로 진행되는 것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은행업자는 물론 그가 할인하여 준 모든 어음에 대하여 그 자신의 은행권으로 지불할 수 있지만 그의 손에 들어와 있는 어음의 9/10는 현실적 자본을 대표할 수 있다. 사실 그 자신은 이 어음들에 대하여 오직 그 자신의 지폐만을 준다 하더라도 그 지폐가 반드시 그 어음들이 만기가 될 때까지 유통에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어음들은 만기가 될 때까지 석 달 동안이나 유통할 수 있지만 은행권은 사흘이면 되돌아올 수 있다”(172페이지). “고객들이 예금잔고를 넘어 끌어내는 것은 예사로 되고 있는 업무사항이다. 사실상 이 목적으로 하여 현금신용이 보장된다. …현금신용은 개인보중에 의하여 보장될 뿐 아니라 유가증권을 맡기는 것으로도 보장된다”(174, 175페이지). “상품을 담보로 선대하는 자본은 어음을 할인하여 선대하는 자본과 똑같은 작용을 한다. 한 사람이 100파운드 스텔링을 자기의 상품을 담보로 하여 꾸다면 그것은 그가 100파운드 스텔링의 어음을 받고 그 상품을 팔며 그 다음에 어음을 은행업자에게서 할인받는 경우와 똑같다. 그러나 선대를 받으면 그는 자기의 상품을 시세가 좋아질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절박한 목적을 위하여 화폐를 얻으려고 하다가 당하게 될 회생을 피할 수 없다”(180, 181페이지).

『통화이론의 검토…』(에딘버러, 1845년), 62, 63페이지 :

“내가 오늘 A에게 1,000파운드 스텔링을 맡기면 내일에는 그것이 다시 지출되어 B에게서 예금으로 된다는 것은 논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모레는 그것이 B에 의하여 다시 지출되어 C에게서 예금으로 되며 이렇게 끝없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똑같은 1,000파운드 스텔링이 수없이 옮겨짐으로써 절대로 확정할 수 없는 무한한 예금액으로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국의 모든 예금의 10분의 9는 은행업자들의 장부상의 부기항목 외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은행업자들은 제각기 거기에 자기 부분이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유통하는 화폐{게다가 거의 지폐뿐!}가 3백만파운드 스텔링을 결코 넘지 않는 스코틀랜드에서 예금은 2천 7백만파운드 스텔링이나 된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갑자기 예금을 찾으려고 달려들지(a run on the banks) 않는 동안에는 똑같은 1,000파운드 스텔링이 이리저리 돌아가면서 그만큼 쉽게 역시 확정할 수 없는 금액을 청산할 수 있다. 내가 오늘 한 기업가에게 나의 채무를 청산하는 데 쓰는 똑같은 1,000파운드 스텔링이 내일에는 다른 상인에 대한 이 기업가의 채무를 청산할 수 있고 모레는 은행에 대한 이 상인의 채무를 청산하며 이렇게 끝없이 나갈 수 있으므로 똑같은 1,000파운드 스텔링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이 은행에서 저 은행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거액의 예금을 청산할 수 있다.”

{이미 본 바와 같이 길바트는 1834년에 벌써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었다.

“거래를 쉽게 하는 모든 것은 투기도 쉽게 한다. 거래와 투기는 많은 경우에 밀접히 결부되어 있어서 거래가 어디서 끝나고 투기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말하기 어렵다.”

팔리지 않은 상품을 담보로 하는 선대를 얻기가 쉬우면 쉬울수록 그러한 선대를 더 많이 받게 되며 우선 상품을 담보로 하는 화폐선대를 받기 위해서라도 상품을 만들거나 이미 만든 상품을 먼 시장에서 팔아버리려는 시도가 더 많아진다. 한 나라의 전체 상업계가 얼마나 그러한 현혹에 사로잡힐 수 있으며 그리고 그후에 그것이 어떻게 끝나는가에 대한 적절한 실례로 되는 것은 1845~1847년의 영국의 상업사이다. 우리는 여기에

서 신용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다음에 드는 실례를 설명하기 위하여 미리 몇 가지 간단한 지적만을 하여 두려고 한다.

1837년 이래 거의 끊임없이 영국의 상업을 억눌러왔던 불경기는 1842년 말에야 물러서기 시작하였다. 그 다음 두 해 동안 영국의 공업상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는 더욱더 늘었다. 1845~1846년은 최고의 번영기였다. 1843년에는 아편전쟁⁷⁷에 의하여 중국은 영국의 상업에 문을 열어놓았다. 새로운 시장은 원래 급격히 양양된 공업에, 특히 면공업의 양양에 새로운 충격을 주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산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3억의 인간을 입혀야 한다”고 당시 맨체스터의 한 공장주는 필자인 나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새로 설치되는 모든 공장건물, 증기기관, 방적기계, 직기로도 대량적으로 흘러들어오는 랭카셔의 잉여가치를 빨아들이기에는 부족하였다. 사람들은 생산을 늘일 때와 똑같은 정열을 가지고 철길 부설에 열중하였다. 공장주들과 상인들의 투기열은 우선 여기에서 충족되었는데 그것도 벌써 1844년 여름부터이다. 사람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즉 첫번째 불입의 청산에 돈이 자라는 한 주식에 옹모하였다. 다음번 불입에는 자금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다음번 지불기한이 닥쳐왔을 때에는——「상업곤궁」, 1848~1857년, 질문 제1059호에 의하면 1846~1847년 철도에 투하된 자본은 7천 5백만파운드 스텔링에 이르렀다——신용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으며 또 상회의 원래의 기업도 대부분이 역시 신용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이 원래의 기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미 가능한 한계를 넘어섰다. 높은 이윤에 끌려 현재 있는 유동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업무들이 더 확장되었다. 그러나 쉽게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값싼 신용이 도움을 주었다.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은 낮아서 1844년에는 $1\frac{3}{4}\sim 2\frac{3}{4}\%$, 1845년에는 10월까지 3% 이하였다가 얼마 동안 5%까지(1846년 2월) 올랐고 그 다음에는 다시 떨어져 1846년에는 $3\frac{1}{4}\%$ 까지 되었다. 잉글랜드 은행의 지하실에는 전례없이 많은 금액의 금예비가 있었다.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들의 국내시세는 모두 전례없이 높은 수준에 있었다. 그러니 왜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며 어째서 빨리 달라붙지 않겠는가? 왜 영국제품들에 혹하고 있는 외국시장들에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란 상품

은 모두 보내지 않겠는가? 또한 어쩌서 공장주 자신이 극동에서 실과 천을 팔고 그 대신에 얻은 상품들을 영국에서 되팔아 이중의 이익을 보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선대를 받으면서 인도와 중국으로 대량적으로 위탁판매하는 제도가 생겼는데 이 제도는 얼마 안가서 곧 단순히 선대를 받기 위한 위탁판매제도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아래의 주들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지만 필연적으로 시장이 대량적으로 차고넘치며 파국을 가져오는 결과로 그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파국은 1846년의 흉작의 결과로 들이닥쳤다. 영국 특히 아일랜드는 먹을 것, 그 중에도 곡물과 감자를 엄청나게 수입해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제공한 나라들은 그 댓가로 극히 보잘 것 없는 양으로 영국의 공업생산물을 공급받을 뿐이었다. 귀금속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적어도 9백만파운드 스텔링의 금이 외국으로 나갔다. 이 총액 가운데서 7백50만이 잉글랜드 은행의 퇴장한 현금에서 나갔는데 그 때문에 화폐시장에서 누리던 이 은행의 행동의 자유는 크게 마비되었다. 나머지 은행들은 예비금을 잉글랜드 은행에 두고 있었으며 그들의 예비금은 사실상 잉글랜드 은행의 예비금과 같은 것이었는데 이 은행들도 이제는 역시 그들의 화폐유통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빠르고 거침없이 은행들로 흐르던 지불의 흐름이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그 다음에는 전반적으로 정체에 빠졌다.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은 1847년 1월에는 아직 3~3½%였었는데 첫 파국이 일어난 4월에는 7%로 뛰어올랐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다시 한 번 한때 약간 완화되었으나(6.5%, 6%) 다시 흉작이 되자 파국은 새로 그리고 더 심하게 일어났다. 잉글랜드 은행의 공식적인 최저할인율이 10월에는 7%로, 11월에는 10%로 올랐다. 즉 절대다수의 어음이 엄청난 고리대적 이자를 물지 않고서는 할인받을 수 없게 되었거나 전혀 더는 할인받을 수 없게 되었다. 전반적인 지불정지는 일련의 일류급 상사들과 아주 많은 중소급 상사들을 파산케 하였다. 잉글랜드 은행 자체도 1844년의 교활한 은행법⁷⁶에 의하여 받게 된 제한들로 하여 파산당하지 않을 수 없는 위험에 빠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전반적인 요청에 의하여 정부는 10월 25일에 은행법을 정지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잉글랜드 은행에 들썩워졌던 불합리한 법적 질곡을 제거하였다. 그리하여 이 은행은 가지고 있는 은행권을 거침없이 유통에 내놓을 수 있었다. 이 은행의 은행권은 사실상 국가의 신용에 의하여 보장되었고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그에 따라 곧 화폐의 긴장은 결정적으로 완화되기 시작하였다. 물론 아직도 절망상태에 빠진 많은 크고 작은 상회들이 파산하였으나 위기의 절정은 극복되었고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은 12월에 다시 5%로 떨어졌으며 1848년에 벌써 새로운 기업이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이 활기로 하여 1849년에 일어난 대륙의 혁명운동은 수그러졌으며 50년대에는 처음으로 전례없는 산업의 번영을 보게 되었으나 그 다음에는 또 1857년의 파국이 들이닥쳤다. —F. E.)

I. 1847년의 공황이 일어난 동안에 국가증권과 주식의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진 데 대해서는 1848년에 상원에서 발표한 한 공문서가 밝히고 있다. 이에 의하면 1847년 10월 23일에 유가증권의 떨어진 가치는 그 해 2월의 형편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유가증권.....	93, 824, 217파운드 스텔링
도크와 운하주식.....	1, 358, 288파운드 스텔링
철도주식.....	19, 579, 820파운드 스텔링
도합	114, 762, 325파운드 스텔링

II. 동인도와 거래에서는 이제는 상품이 구매되었기 때문에 어음을 발행한 것이 아니라 할인할 수 있는 즉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이 거래에서의 사기협잡에 대해서는 1847년 11월 24일의 『맨체스터 가디언』⁷⁹지에 아래와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런던에 있는 A는 B를 통하여 맨체스터에 있는 공장주 C에게서 상품을 사서 동인도에 있는 D에게로 실어 보낸다. C가 B 앞으로 발행한 6개월 기한의 어음으로 B는 C에게 지불한다. B도 또한 A 앞으로 발행하는 6개월 기한의 어음에 의하여 보상된다. 상품이 배에 실리자 A도 또한 배짐증권으로 D 앞으로 6개월 기한의 어음을 발행한다.

“따라서 구매자와 집의 임자 둘 다 그들이 상품값을 실제로 지불하기 몇 달 전에 자금을 손에 넣는다. 그리고 그렇게 지루한 거래에서는 회수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구실로 이러한 어음을 기한이 되면 갹신하는 것이 아주 보통이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러한 거래에서 손실을 보면서도 거래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났다. 관계자들이 손실을 보면 볼수록 새로운 선대를 받아 이전의 투기들에서 잃은 자본을 매우기 위하여 사야 할 필요는 더 크게 되었다. 이제는 사들이는 것이 더는 수요가 공급에 의하여 조절되지 않게 되었고 어떤 상회이건 그 금융업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 측면에 지나지 않는다. 이편에서 공업상품을 수출하는 데서 있었던 일이 저편에서는 생산물을 사들여 배에 실어보내는 데서 있었다. 어음을 할인받을 만큼 신용이 넉넉한 인도에 있는 상사들은 사탕, 인디고, 비단실이나 목화를 샀는데 이것은 그 구매가격들이 최근의 런던의 가격들에 비하여 이윤을 약속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런던의 상사 앞으로 발행한 이전의 어음이 곧 기한이 다 되어 그것을 매우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한 집의 사탕을 사고 그 값을 런던의 상사 앞으로 발행한 10달 기한의 어음으로 지불하며 배집증권을 우편으로 보내기보다 더 간단한 것이 있었겠는가? 배에 실렸을까 말까 한 이 상품에 대한 배집증권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상품 자체가 두 달도 못되어 룬바드거리⁸⁰에서 담보로 되었으며 이 상품에 대하여 발행한 어음의 기한이 되기 8달 전에 런던의 상사는 화폐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할인하여 주는 은행들이 배집증권과 도크 창고증권을 담보로 화폐를 선대하고 인도의 상사들이 마인싱 레인⁸¹에 있는 건실한 상회들 앞으로 발행한 어음을 제한없는 금액에 이르기까지 할인할 만큼 화폐를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중단이나 곤란없이 진행되었다.”

{이 사기협잡방법은 인도에서 오고 또 인도로 가는 상품들이 뚝배로 희망봉을 돌아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동안에는 성행하였다. 그 상품들이 수에즈 운하를 그것도 기선으로 거쳐 오가게 된 이후로는 의제자본을 만들어내는 이 방법은 상품들이 오가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그 기초를 잃었다. 그리고 전신으로 하여 영국의 기업가는 인도시장형편을, 인도의 상인들은 영국시장형편을 그날그날로 알게 된 이후로는 이 방법은 전혀 쓸 수 없게 되었다.—F. E.}

Ⅲ. 아래의 글은 이미 인용한 바 있는 보고 「상업곤궁」(1847~1848년)에서 딴 것이다.

“1847년 4월 마지막 주에 잉글랜드 은행은 리버풀의 왕실은행에 앞으로는 이 은행과의 할인거래를 절반액으로 줄이겠다고 통고하였다. 이 보도는 아주 나쁜 영향을 주었다. 왜냐하면 요즘 리버풀에서 지불은 현금보다도 훨씬 더 어음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전에는 자기들이 넘겨받은 어음을 지불하기 위하여 보통 많은 현금을 은행에 가지고 왔던 상인들이 요즈음에 와서는 그들 자신이 목화화 다른 생산물들에 대하여 받은 어음만을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심하여졌으며 따라서 거래는 어려워졌다. 은행이 상인들 대신에 지불하여야 하였던 넘겨받은 어음들은 대체로 외국 앞으로 발행된 것들이었으며 이제까지는 대부분 생산물의 댓가로 받은 지불금에 의하여 청산되었었다. 상인들이 이전의 현금 대신에 지금 가지고 온 어음들은 그 유효기간이 각각 다르고 종류도 각이하였으며 그 상당한 수는 발행날짜후 석달 기한의 은행어음들이었고 그 많은 것들은 목화화 대한 것들이었다. 이 어음들은 은행어음인 경우에는 런던의 은행업자들이 넘겨 받았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브라질, 미국, 캐나다, 서인도 등과 거래하고 있었던 각종 상인들이 넘겨 받았다. …상인들은 서로 어음을 발행하지 않았고 리버풀에서 생산물들을 산 국내 고객들이 런던의 은행들 앞으로 발행한 어음으로나 런던의 그 밖의 상사들 앞으로 발행한 어음으로나 또 그 어느 누구 앞으로 발행한 어음으로 값을 치렀다. 잉글랜드 은행의 통고로 하여 팔린 외국생산물에 대한 어음의 유효기간이 짧아지게 되었는데 전에는 그 유효기간은 흔히 석달을 넘었다” (26, 27페이지).

영국에서 있었던 1844~1847년의 번영기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맨 처음의 큰 철도투기열과 결부되어 있었다. 이 철도투기열이 사업 일반에 미친 영향에 관해서는 위에서 인용한 보고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1847년 4월에는 거의 모든 상사들은 자기들의 상업자본의 한 부분을 철도에 투하함으로써 자기들의 영업을 많건적건 망치게 하기(to starve their

business) 시작하였다”(41, 42페이지). “개인들과 은행업자들 보험회사들이 철도주식을 담보로 하여 예컨대 8%나 되는 높은 이자율로도 돈을 썼다”(66, 67페이지). “이 상사들은 철도에 그렇게 막대한 선대를 하였기 때문에 그 대신에 자기들의 원래의 영업을 계속해나가기 위하여 은행들에서 어음을 할인받아 너무 많은 자본을 꾸지 않을 수 없었다”(67페이지). (질문:) “당신은 철도주식에 대한 불입들로 하여{화폐시장에서}(1847년) 4월과 10월에 조성된 긴장상태가 훨씬 촉진되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대답:) “그것들로 하여 4월에 조성된 긴장상태가 촉진된 것은 그다지 없다고 나는 믿는다. 나의 생각으로는 그것들로 하여 4월, 아니 아마 여름에 이르기까지 은행업자들은 약화되었다기보다 오히려 강화되었다. 왜냐하면 그 불입들처럼 그렇게 빨리 화폐를 실제로 쓰는 일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에 대부분의 은행들은 연초에 상당히 많은 철도자금을 손에 넣었다”(이 점은 「상업근궁」, 1848~1857년에 나와 있는 은행업자들의 수많은 증인들에 의하여 확증된다). 이 철도자금은 여름에는 점차 풀려서 12월 31일에는 아주 적어졌다. 10월에 조성된 긴장상태의 한 원인은 은행들의 손에 있는 철도자금이 점차 줄어든 것이었다. 4월 22일과 12월 31일 사이에 우리의 손에 있는 철도자금은 3분의 1만큼 줄었다. 대영국 전체에서 철도주식에 대한 불입들은 이러한 영향을 미쳤다. 그 불입들로 하여 은행들의 예금은 점차 끌려나갔다”(43, 44페이지).

사무엘 거니(이름난 오버랜드 거니 상회의 사장)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1846년에 철도에 대한 자본수요가 크게 늘어났지만 그 때문에 이자율이 오르지는 않았다. 작은 금액들이 뭉쳐 큰 금액으로 되었으며 이 큰 금액이 우리의 시장에서 사용되었다. 그리하여 대체로 그 결과에 시티의 화폐시장에는 많은 화폐가 들어왔고 화폐가 그렇게 끌려나가지는 않았다”(159페이지).

리버풀의 주식은행 이사인 A. 호지슨은 어음이 얼마나 은행업자들의 예비금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우리의 모든 예금의 9/10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모든 화폐를 매일과 같이 지불기한이 되는 어음들로 우리의 금고에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었다. …그리하여 공황기간에 매일 지불기한이 되는 어음은 매일 우리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금액과 거의 맞아떨어질 정도였다”(53페이지).

투기어음

(제5092호) “어음들(팔린 목화에 대한)은 주로 누가 넘겨 받았는가?” {이 저서에서 여러 번 이름이 나온 면공장주인 R. 가드너:} “상품거간꾼들이다. 상인은 목화를 사서 그것을 거간꾼에게 넘겨주고 이 거간꾼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며 그것을 할인케 한다.” (제5094호) “그리고 이 어음들은 리버풀의 은행들로 가서 거기에서 할인되는가?” “그렇다. 그리고 다른 데로 가서도 그렇게 된다. …주로 리버풀의 은행들의 동의를 받은 이러한 융자가 없었더라면 내 생각 같아서는 지난 해에 목화값은 파운드당 1½페니나 2페니 더 썼을 것이다.” (제600호) “당신은 엄청난 수의 어음들이 리버풀에 있는 목화거간꾼들 앞으로 투기업자들에 의하여 발행되어 유통하였다고 말하였다. 목화 밖에 다른 식민지 생산물들에 대한 어음을 담보로 한 당신들의 선대에 대해서도 똑같은가?” {리버풀의 은행업자인 A. 호지슨:} “모든 종류의 식민지 생산물이 그렇지만 특히 목화가 그렇다.” (제601호) “당신은 은행업자로서 이러한 종류의 어음을 멀리 하려고 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그러한 어음을 적당한 분량만큼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정당한 어음이라고 본다. …이러한 종류의 어음은 흔히 연기된다.”

1847년 동인도—중국시장에서의 사기협잡. 찰스 터너(리버풀에 있는 한 일류급 동인도 상회의 사장):

“모리셔스 섬에서의 거래와 그와 비슷한 거래들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거간꾼들은 상품들이 도착한 후에 이 상품들에 대하여 발행된 어음들을 지불하기 위하여 상품들을 담보로 선대를 받고—이것은 완전히 제대로 하는 것이다—또 배집증권을 담보로 선대를 받아가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들은 생산물이 배에 실리기도 전에, 일부 경우에는 생산물이 제조되기도 전에 생산물을 담보로 선대를 받았다. 예컨대 나는 한 구체적인 경우

에 캘커타에서 6,000~7,000파운드 스텔링분의 어음을 샀다. 이 어음의 대금은 모리셔스에서 사탕을 재배하는 데 도움이 되게 그곳으로 갔다. 어음은 영국으로 왔으며 그 절반 이상이 지불을 거절당하였다. 이어 이 어음을 지불해야 할 그 사탕의 배집이 마침내 도착하였을 때에는 이 사탕은 이미 제3자에게 그것이 배에 실리기도 전에 아니 사실상 그것이 정제되기도 전에 벌써 담보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78페이지). “동인도시장으로 보낼 상품은 지금은 공장주에게 현금으로 그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것은 크게 말할 것도 못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구매자가 런던에 얼마간의 신용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런던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고 할인율이 지금 낮은 런던에서 그것을 할인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하여 얻은 화폐로 공장주에게 지불한다. …상품을 인도로 실어보낸 사람이 그 대신에 인도에서 보내오는 물건을 손에 넣을 수 있기까지는 적어도 12달이 걸린다. …10,000 내지 15,000파운드 스텔링을 가지고 인도와 거래하는 사람은 런던의 한 상사에서 상당한 금액의 신용을 얻을 것이다. 그 사람은 이 상사로 보내게 한다는 조건으로 이 상사에 1%를 주고 그 상사 앞으로 어음을 발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경우에 런던의 그 상사는 실제로 현금으로 선대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합의가 쌍방간에 남모르게 되어 있다. 즉 인도에서 대신에 보내오는 물건이 도착할 때까지 어음이 연기되는 것이다. 그 어음은 리버풀, 맨체스터, 런던에서 할인되며 그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스코틀랜드의 은행들이 가지게 된다”(79페이지). (제786호) “요즘 런던에서 파산한 한 상사가 있다. 장부를 검사한즉 다음과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 맨체스터에 한 상회가 있고 캘커타에 또 하나의 상회가 있다. 이 상회들은 런던의 상사에 20만파운드 스텔링만큼 신용을 터놓았다. 즉 이 맨체스터의 상회와 거래하는 업자들은 캘커타에 있는 상회로 글라스고와 맨체스터에서 상품들을 위탁판매로 보내고 런던의 상사 앞으로 20만파운드 스텔링의 금액의 어음을 발행하였다. 동시에 캘커타에 있는 상회도 런던의 상사 앞으로 20만파운드 스텔링분의 어음을 발행한다는 협약이 있었다. 이 어음은 캘커타에서 팔렸고 그 대금으로 다른 어음을 샀으며 이 어음은 런던으로 보내져서 런던에 있는 상사로 하여금 글라스고나 맨체스터의 상회들이 처음에 발행한 어음을 지불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하나의 거래로 하여 600만파운드 스텔링분의 어음이 세상에 나왔다.” (제971호) “현재 캘커타에서 한 상사가 한 배집(런던으로 가는)을 사고 이에 대하여 런던에서 그 상사와

어음거래를 하는 업자 앞으로 발행한 그 자체의 어음으로 지불하며 배집증권이 런던으로 보내진다면 이 배집증권은 곧 그 업자들이 롬바드거리에서 선대를 받는 데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상사는 그와 어음거래를 하는 업자에게 어음을 지불해야 하기 전에 여덟 달이나 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IV. 1848년에 1847년의 공황의 원인들을 연구하기 위한 상원비밀위원회가 열렸었다. 그러나 이 위원회에서 한 증언들은 1857년에야 비로소 발표되었다(『곤궁의 원인들을 연구하기 위하여 임명된 상원비밀위원회에서 한 증언록』, 1857년, 『상업곤궁』, 1848~1857년에서 인용한다). 여기에서 리버풀 연합은행의 이사인 리스트 씨는 특히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2444호) “1847년 봄에 신용은 전례없이 커졌다. …왜냐하면 기업가들은 자기들의 자본을 기업에서 철도로 옮겨 놓았으며 그러고도 기업은 종전과 같은 규모로 계속 확장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누구나 아마 처음에는 철도주식을 팔아 이윤을 얻고 그리하여 기업자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후 아마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는 전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던 곳에서 신용을 자기 기업에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어 신용이 확장되게 되었다.”

(제2500호) “넘겨받은 은행들에 손실을 끼친 이 어음들은 주로 곡물에 대한 것이었는가 목화에 대한 것이었는가?” … “곡물, 목화, 사탕 등 갖가지 생산물에 대한 어음들이었다. 아마 기름을 빼놓으면 그때에 가격이 떨어지지 않은 것은 거의 없었다.” (제2506호) “어음을 넘겨받는 거간꾼은 담보로 되는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충분한 보상을 받지 않고는 어음을 넘겨받지 않는다.”

(제2512호) “생산물에 대하여 두 가지 어음이 발행된다. 첫째 종류에 속하는 것은 국외에서 수입업자 앞으로 발행되는 원래의 어음이다. …이렇게 생산물에 대하여 발행되는 어음은 흔히 생산물이 도착하기 전에 기한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은 상품이 도착되어도 자본을 넉넉히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팔 수 있을 때까지 상품을 거간꾼에게 담보로 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 경우에 곧 그 상품을 담보로 하여 리버풀의 상인은 거간꾼 앞으로 다른 종류의 어음을 발행한다. …그 경우에 거간꾼이 상품을 가지고 있는가, 상품을 담보로 그가 얼마나 선대하였는가를 거간꾼에게서 확인하는 것이 은행업자의

일로 된다. 은행업자는 손실을 보는 경우에 그것을 메울만한 담보가 거간꾼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2516호) “우리는 외국으로부터 어음을 또한 받는다. …어느 누가 외국에서 영국 앞으로 발행된 어음을 사서 그것을 영국에 있는 상사로 보낸다. 우리는 어음을 보고서는 그것이 적당하게 발행된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이 생산물을 대표하는가 그렇지 않고 헛 것인가를 알 수 없다.”

(제2533호) “거의 모든 종류의 외국생산물이 팔렸지만 손실이 크다고 당신은 말하였다. 이 생산물에 대한 부당한 투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그것은 수입한 것을 없애치울만한 소비가 없는데 지나치게 많이 수입하였기 때문이었다. 모든 점으로 보아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제2534호) “10월에는…생산물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었다.”

파국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구제하라(sauve qui peut)는 전반적 외침이 어떻게 번지는가에 대하여 같은 보고에서 일류 급의 박식가이며 위신있고 노련한 퀘이커 교도인 오버랜드, 거니회사 사장 사무엘 거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1262호) “파국이 지배할 때 기업가에게서 문제로 되는 것은 그가 자기의 은행권을 어떤 가격으로 투하할 수 있겠는가, 또는 그가 자기의 국고증권이나 3%의 이자가 붙는 공채를 팔 때 손실이 1%인가 2%인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일단 공포에 사로잡히면 이득이나 손실은 그에게서 문제가 아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려고 하건 자신의 안전에 애쓴다.”

V. 두 시장이 서로 넘쳐나는 데 대하여 동인도 거래를 하는 상인인 알렉산더 씨는 1857년의 은행법에 관한 하원위원회(『은행위원회』, 1857년에서 인용한다)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4330호) “지금 내가 맨체스터에서 6실링을 지출하면 나는 인도에서 5실링을 되받는다. 내가 인도에서 6실링을 지출하면 나는 런던에서 5실링을 되받는다.”

따라서 인도시장은 영국으로 하여 넘쳐나게 되고 영국시장은 인도로 하여 똑같이 넘쳐나게 된다. 그것도 1847년의 쓰라린 체험을 겪은지 열 해도 될까말까 한 1857년 여름에 그러하였다.

제 26 장 화폐자본의 축적. 이자율에 미치는 그 영향

“영국에서는 추가적 부의 끊임없는 축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결국 화폐형태를 띠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나 화폐를 얻으려는 염원 다음에 가는 가장 절실한 염원은 이자나 이윤을 가져오는 어떤 종류의 투자에 의해서건 다시 그 화폐형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왜냐하면 화폐로서의 화폐는 아무 것도 가져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넘쳐나는 자본이 끊임없는 흘러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그 활동면이 점차로 충분히 확장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투하될 데를 찾는 화폐의 주기적 축적에 부닥치지 않을 수 없는데 이 축적은 사정에 따라 그 의의가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다. 여러 해 동안 국채는 영국의 넘쳐나는 부를 빨아들이는 큰 수단이었다. 1816년에 국채가 그 최대한에 이르러 더는 남아돌아가는 부를 빨아들이지 않게 되자 해마다 적어도 2천 7백만이라는 금액이 투하될 다른 데를 찾았다. 게다가 여러 가지 자본반환이 있었다. …큰 자본이 있어야 해나갈 수 있고 때때로 남아돌아가는 쓰이지 않는 자본을 끌어들이는 기업들이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는 절대로 필요하다. 그것은 보통의 투자부문들에서 쓰일 여지를 찾을 수 없는, 주기적으로 쌓이는 사회의 남아돌아가는 부를 끌어내기 위해서이다”(『통화이론의 검토』, 런던, 1845년, 32~34페이지).

1845년의 형편에 대해서는 바로 그 책에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물가가 불경기의 가장 낮은 수준에 비하여 올랐다. …3% 이자율은 국채는 거의 액면대로 값이 나간다. …잉글랜드 은행의 지하실에 있는 금은 전에 거기에 저장된 금액을 뛰어 넘는다. 모든 종류의 주식의 거의 전례없는 가격에 이르고 있으며 이자율은 거의 이름만일 만큼 떨어져 있다. …이 모든 것은 지금 쓰이지 않은 부가 영국에 또다시 산같이 쌓여

있다는 것과 또다시 투기열의 시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같은 책, 36페이지).

“금의 수입이 대외무역에서 이득의 확실한 징표는 아니라 하더라도 명백히 이 금수입의 한 부분은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면 그러한 이유를 표시한다”(J. G. 험바드, 『통화와 나라』, 런던, 1843년, 40~41페이지). “한 시기에 기업상태는 늘 좋고 물가도 좋고 화폐유통은 넉넉한데 흉작으로 하여 500만의 금을 수출하고 그 금액만큼 곡물을 수입하게 되었다고 하자. 유통(곧 알게 되겠지만 유통수단을 의미하지 않고 쓰이지 않는 화폐자본을 의미한다.—F. E.)은 똑같은 금액만큼 줄어들 것이다. 개인들은 그래도 같은 분량의 유통수단을 가지고 있을 지 모르지만 은행들에 맡기고 있는 상인들의 예금과 화폐거간꾼들의 은행잔고와 은행들의 금고에 있는 예비금은 모두 줄어들 것이며 쓰이지 않는 자본액의 이러한 감소의 직접적 결과에 이자율은 예컨대 4%에서 6%로 오를 것이다. 기업은 건전하므로 신용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신용은 전보다 높이 평가될 것이다”(같은 책, 42페이지). “물가가 일반적으로 떨어지면 남아돌아가는 화폐는 늘어나는 예금의 형태로 은행들로 되흘러오며 쓰이지 않는 자본이 넘쳐나 이자율은 최저한으로 떨어지며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다가 마침내 물가가 오르거나 기업이 활기를 띠게 되어 활동을 멈추고 있는 화폐가 쓰이게 되며 또는 외국의 유가증권이나 외국의 상품에 투하됨으로써 그 화폐가 흡수된다”(68페이지).

다음 것은 『상업곤궁』, 1847~1848년에 관한 의회보고에서 다시 발췌한 것이다. 1846~1847년의 흉작과 기근의 결과 식량을 많이 수입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수입이 수출을 크게 초과하였다. …그 때문에 은행들에서 화폐가 어지간히 흘러나갔으며 어음을 할인해야 할 사람들이 할인거간꾼들에게로 더 몰려갔다. 거간꾼들은 더 엄격히 따져보기 시작하였다. 이제까지 받아오던 융자가 아주 엄중하게 제한되었고 약한 상사들 사이에서 파산이 있었다. 전적으로 신용에만 매달렸던 상사들이 결국 파산되었다. 이 때문에 전부터 벌써 느껴왔던 불안이 커졌다. 은행업자들과 그 밖의 업자들은 자기들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어음과 그 밖의 유가증권을 은행권으로 바꾸는 일이 이전처럼 확신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융자를 더욱더 제한

하였으며 흔히 전혀 중지하기까지 하였다. 그들은 많은 경우에 그들 자신의 채무를 앞으로 갚기 위하여 자기들의 은행권을 감추었다. 그들은 은행권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불안과 혼란은 나날이 늘어났으며 존 러셀 경의 편지가 없었더라면 전반적인 파산이 있었을 것이다”(74, 75페이지).

러셀의 편지는 은행법을 정지시켰다. 위에서 말한 바 있는 찰스 터너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일부 상사들은 큰 자금을 가지고 있으나 그 자금은 유동적이 못된다. 그 상사들의 자본은 모두 모리셔스 섬의 토지소유자나 인디고 또는 사탕 공장들에 폭 잠겨 있다. 그 상사들이 일단 50만 내지 60만파운드 스텔링의 채무를 진 다음에는 그에 대한 어음을 지불할 유동자금이 그 상사들에 없으며 결국 그 상사들이 신용을 받아야만 그리고 이 신용이 넉넉한 한에서만 어음을 지불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81페이지).

위에서 말한 바 있는 S. 거니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제1664호) “현재(1848년) 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며 화폐가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다.” (제1763호) “이자율이 그렇게 뛰어나르게 된 것을 자본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은행권을 손에 넣기가 어렵다는 공포(the alarm) 때문이었다.”

1847년에 영국은 적어도 900만파운드 스텔링의 금을 수입한 식료품값으로 외국에 지불하였다. 그 가운데서 750만은 잉글랜드 은행에서 나갔고 150만은 그 밖의 원천들에서 나갔다(301페이지). 잉글랜드 은행총재인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3800호) “1847년 10월 23일에는 공채와 운하 및 철도 주식들은 벌써 114.752, 225파운드 스텔링만큼 그 가치가 떨어졌었다”(312페이지).”

같은 모리스는 다음과 같이 G. 벤틴크 경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제3846호) “각가지 증권과 생산물에 투하된 모든 자본이 똑같은 식으로 가치가 감소하였다는 것, 원료인 목화와 명주실과 양털을 똑같은 헐값으로 대륙으로 보냈다는 것, 그리고 사탕과 커피와 차는 경매에 부쳐졌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식량의 막대한 수입으로 하여 금이 흘러나간 데 대처하기 위하여 국민이 상당한 희생을 바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제3848호) “그러한 희생을 바쳐 금을 회수하기보다 잉글랜드 은행의 금고 속에 있는 8백만파운드 스텔링에 손을 대는 편이 더 좋았으리라고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영웅주의에 대하여 주석을 달아보자. 디즈레일리는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이며 이전의 총재였던 W. 코튼 씨에게 따져 묻는다.

“1844년에 잉글랜드 은행의 주주들이 받은 배당금은 얼마였는가?” “한 해 7%였다.” “그러면 1847년의 배당금은?” “9%이다.” “은행은 올해에 주주들을 대신하여 소득세를 무는가?” “그렇다.” “1844년에도 그랬는가?” “아니다.”⁸³⁾ “그렇다면 이 은행법(1844년의)은 주주들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여 왔다. … 그 결과 새로운 법의 실시 이후 주주들의 배당금은 7%에서 9%로 올랐고 그 밖에도 소득세를 전에는 주주들이 물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지금은 은행이 묻는 말인가?” “아주 옳은 말이다” (제4356~제4361호).

1847년의 공황시기 은행들의 화폐퇴장에 관하여 지방은행업자의 한 사람인 피스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4605호) “잉글랜드 은행이 그 이자율을 더욱더 올리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공포가 전반적인 것으로 되었다. 지방은행들은 가지고 있는 화폐액과 또한 은행권액을 늘였다. 여느 때는 아마 수백파운드의 금이나 은행권 밖에 가지고

83) 즉 전에는 먼저 배당금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지불할 때에 주주들에게서 각기 소득세를 땀다. 그러나 1844년 후에는 먼저 소득세를 은행의 총이익에서 물고 그 다음에 소득세가 면제된(free of income tax) 배당금을 분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명목상으로는 똑같은 백분율이라도 나중에 든 경우에는 세금액만큼 높다. —F. E.

있지 않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곧 몇 천 파운드를 금고와 책장 속에 쌓아두었다. 그것은 할인과 시장에서의 어음의 유통능력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화폐를 쌓아두게 되었다.”

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제4691호) “그 때문에 최근 12해 동안에 원인은 어쨌든 간에 결과는 여하튼 생산적 계급 일반에 유리하였다기보다는 고리대금업자와 화폐거래업자에게 유리하였다.”

화폐거래업자가 공황의 시기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대하여 투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워릭셔와 스탠포드셔의 금속제품 제조업에서는 1847년에 아주 많은 상품주문이 취소되었다. 그것은 공장주가 자기의 어음을 할인받으면서 지불해야 할 이자율이 그의 이윤을 몽땅 삼키고도 성에 차지 않을 정도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5451호).

이제는 전에 인용한 바 있는 다른 회의보고 「하원에서 상원에 회부한 은행법특별위원회보고, 1857년」(앞으로는 「은행위원회」, 1857년으로서 인용한다)을 들어보자. 여기에서 잉글랜드 은행의 이사이며 통화주의⁸²를 신봉하는 자들 가운데서 주되는 인물인 노만 씨는 심문시에 이렇게 말하였다.

(제3635호) “당신은 이자율이 은행권의 양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에 대한 수요와 그 공급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는 은행권과 경화 밖에 무엇이 들어간다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본의 보통 정의는 생산에서 사용되는 상품 또는 봉사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3636호) “당신이 이자율에 대하여 말할 때 당신은 자본이라는 말에 상품들을 다 포함시키는지요?” “생산에서 사용되는 상품들은 다 포함

시킨다.” (제3637호) “당신이 이자율에 대하여 말할 때 자본이라는 말 속에 그 모든 것을 포함시킵니까?” “그렇다. 한 면공장주에게 그의 공장에서 쓸 목화가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그는 아마 그가 거래하는 은행업자에게서 선대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하여 받은 은행권을 가지고 리버풀로 가서 그 목화를 살 것이다. 그에게 실제로 필요한 것은 목화이지 은행권이나 금은 목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그에게 필요하다. 또는 그의 노동자들에게 지불하기 위한 자금이 그에게 필요하다면 그때에는 다시 은행권을 꾸고 이 은행권으로 그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노동자들로서는 먹을 것과 살림집이 필요하며 화폐는 그것들의 댓가를 치루기 위한 수단이다.” (제3638호) “그러나 그 화폐에 대하여 이자가 지불되는 것이 아닌지?” “물론 우선은 그렇다. 그러나 다른 경우를 들어보라. 공장주가 은행에서 선대를 받지 않고 외상으로 목화를 산다고 하면 그때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의 가격과 기한이 될 때까지 외상으로 사는 경우의 가격과의 차액이 이자의 척도일 것이다. 전혀 세상에 화폐가 없어도 이자는 존재할 것이다.”

이 우쭐대는 떠벌림은 통화주의의 이 거장에게 아주 알맞다. 무엇보다 먼저 은행권이나 금은 무엇인가를 사는 수단이며 그리고 사람들은 은행권이나 금을 그 자체 때문에 꾸는 것이 아니라는 발견은 천재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자율은 무엇에 의하여 조절되는가 하는 것으로 되지 않으면 안된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그 공급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사람들은 이제까지 상품에 대한 수요와 그 공급은 상품의 시장가격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상품의 시장가격이 의연 같더라도 이자율은 아주 다를 수 있다. 그런데 그 밖에도 현명성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화폐에 대하여 이자가 지불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옳은 지적인데 이 지적에는 물론 다음과 같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즉 전혀 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은행업자가 받는 이자는 이 상품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공장주들은 이 화폐를 아주 각각 다른 시장들에서, 따라서 생산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에 대한 수요와 공급관계가 아주 각각 다른 시장들에서 지출하면서도 이 화폐를 같은 이자율로 얻지 않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 똑똑하기 그지없는 천재는 공장주가 목화를 외상으로 산다면 “그때에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의 가격과 기한

이 될 때까지 외상으로 사는 경우의 가격과의 차액이 이자의 척도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와 반대이다. 천재인 노만은 현행이자율의 조절을 천재인 노만은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현행이자율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의, 가격과 기한이 될 때까지 외상으로 사는 경우의 가격과의 차액의 척도인 것이다. 우선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묵화는 그 가격대로 팔려야 하는데 이 가격은 시장가격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으며 이 시장가격은 또한 수요와 공급 상태에 의하여 조절되어 있다. 가격이 1,000파운드 스텔링이라고 하면 사고 파는 것이 문제인 한에서는 공장주와 묵화기간꾼 사이의 거래는 이것으로 다 처리된다. 그런데 둘째 거래가 덧붙는다. 이것은 대부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이다. 1,000파운드 스텔링의 가치가 묵화로 공장주에게 선대되며 공장주는 그 가치를 예컨대 석 달 안에 화폐로 반환해야 한다. 그 경우에 1,000파운드 스텔링에 대한 석 달 동안의 이자는 시장이자율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이 이자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의 가격에 대한 덧붙이를 이룬다. 묵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묵화의 가치 즉 1,000파운드 스텔링을 석 달 동안 선대하는 것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묵화 자체가 그와 같이 화폐자본으로 전화되는 이 사실이 노만 씨에게는 전혀 화폐가 세상에 없어도 이자는 존재할 것이라는 증명으로 된다. 전혀 화폐가 없으면 어쨌든 일반적 이윤율도 없을 것이다.

우선 자본이 생산에서 사용되는 상품이라는 표상은 속된 것이다. 이 상품이 자본으로서 나타나는 한에서는 자본으로서의 그 가치는 상품으로서의 그 가치와는 달리 그 상품을 생산적으로나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얻어지는 이윤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이윤율은 무조건 언제나 구매되는 상품의 시장가격과 그 상품에 대한 수요와 그 공급과 일정한 관계가 있지만 전혀 다른 사정들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리고 이자율은 일반적으로 그 한계가 이윤율이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노만 씨는 바로 이 한계가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곧바로 우리에게 말해야 할 것이다. 이 한계는 자본의 다른 모든 형태들과 구별되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와 그 공급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또 화폐자본에 대한 수

요와 그 공급은 어떻게 규정되는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물적 자본의 공급과 화폐자본의 공급 사이에는 어떤 숨은 관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화폐자본에 대한 산업자본가의 수요는 실제적 생산의 사정들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같이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하여 해명하여 줄 대신에 노만 씨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화폐 그 자체에 대한 수요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지혜를 대준다. 그리고 이 지혜를 대주는 것은 오직 그와 오버스톤과 그 밖의 통화주의 예언자들의 속심에는 인위적인 입법적 간섭에 의하여 유통수단 그 자체에서 자본을 만들어 내고 이자율을 올리려고 애쓰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오버스톤 경, 일명 사무엘 존스 로이드에게로 넘어가서 그가 나라에 자본이 귀하게 되자 그의 화폐에 대하여 10%를 받아내는 이유를 왜 설명하지 않으면 안되는가를 보자.

(제3653호) “이자율의 변동은 두 원인 중의 하나인 자본의 가치변동에서 생겨거나”

(훌륭하다! 자본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말하여 다름 아닌 바로 이자율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이자율의 변동이 이자율의 변동에서 생기는 것이다! 자본의 가치는 앞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 결코 달리는 이해되지 않는다. 또는 그렇지 않고 오버스톤 씨가 자본의 가치라는 것을 이윤율로 이해한다면 이 심오한 사상은 이자율은 이윤율에 의하여 조절된다는 것으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에 있는 화폐액의 변동에서 생긴다. 이자율의 모든 큰 변동——변동의 지속과 폭으로 보아——은 결국 틀림없이 자본의 가치변동에 귀착된다. 이 사실에 대한 실천적 예증으로는 1847년과 또 최근 두 해(1855~1856년)에 이자율이 오른 것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을 수 없다. 이미 있는 화폐액의 변동에서 생기는 보다 작은 변동은 그 폭으로 보나 그 지속으로 보아 작은 것이다. 그러한 변동은 흔한 것이며 또 흔할수록 더 빨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다시 말하여 그것은 오버스톤 따위의 은행업자들을 치부케 하는 것이다. 친절한 사무엘 거니는 이에 대하여 상원위원회 앞에서 아주 천진난만하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상업곤궁』, 1848~1857년).

(제1324호) “당신은 지난 해에 있었던 이자율의 큰 변동은 은행업자들과 화폐거래업자들에게 유리하였다는 의견에 찬동하는가 어떤가?” “화폐거래업자들에게 유리하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업상의 모든 변동은 정통하고 있는 사람에게는(to the knowing man) 유리하다.” (제1325호) “그렇지만 이자율이 높으면 은행업자는 자기의 우수한 고객들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결국 손실을 볼 것이 아닌가?” “아니다. 그 영향은 눈에 떨 정도는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야말로 아주 멋진 말이다.

이미 나라에 있는 화폐액이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다시 언급할 것이다. 그러나 오버스톤이 여기에서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 1847년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10월 이전에는 화폐가 부족한 것으로 즉 그가 위에서 말한 대로 이미 있는 화폐의 양으로 해서는 아무런 걱정도 없었다)는 여러 가지 원인들로 하여 늘어났다. 곡물값이 비싸진 것, 목화값이 오른 것, 과일생산으로 하여 사탕이 팔리지 않게 된 것, 철도투기와 파산, 대외시장들이 면제품으로 차넘친 것, 위에서 서술한 바 있는 단순한 어음놀음을 목적으로 한 인도로의 무리한 수출과 인도로부터의 무리한 수입.* 이 모든 것들로 하여, 공업에서의 과일생산과 그와 못지 않게 농업에서의 생산부족, 따라서 아주 각각 다른 원인들로 하여 화폐자본에 대한 즉 신용과 화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원인들은 생산과정 자체의 진행에 있었다. 그러나 원인들이 무엇이든 간에 이자율 즉 화폐자본의 가치를 오르게 한 것은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였다. 화폐자본의 가치는 그것이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고 오버스톤이 말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같은 뜻의 말의 되풀이인 것이다. 그러나 그가 여기에서 자본의

* 이 책 495~498페이지를 보라.

가치를 이자율이 오르는 원인으로서는 이윤율이 오르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 명제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윤이 떨어지더라도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 따라서 자본의 가치는 오를 수 있다. 화폐자본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 화폐자본의 가치는 오른다. 오버스톤이 논증하려고 하는 것은 1847년의 공황과 그에 따르는 높은 이자율이 이미 있는 화폐의 양과는 즉 그가 내세우는 1844년의 은행법의 규정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이다. 비록 오버스톤이 조성한 것인 잉글랜드 은행의 예비금이 말라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하여 1847~1848년의 공황에 화폐파국이 덧붙은 한에서 사실상 그러한 관계가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화폐자본이 부족하였는데 그 원인은 이미 있는 자금에 비하여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은 데 있었다. 그리고 이 화폐자본의 부족은 흉작과 지나친 철도부설, 특히 면제품의 과잉생산, 인도와 중국과의 사기적 거래, 투기, 지나친 사탕수입 등으로 하여 재생산과정이 형클어져 폭발에 이르렀다. 곡물이 킬터당 120실링이었을 때 그것을 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60실링으로 떨어진 지금에 와서는 그들이 초과지불한 60실링이 부족하였으며 그에 따라 곡물을 담보로 하여 선대를 받을 때 그만한 액의 신용이 부족하였다. 은행권이 부족하여 그들이 곡물을 120실링이었던 이전의 가격대로 화폐로 전환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사탕을 너무 많이 수입하여 이것이 거의 팔릴 수 없게 된 사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화폐자본(floating capital)을 철도에 잠겨 놓고 본래의 업에서 그것을 매꾸기 위하여 신용에 의거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오버스톤에게서는 자기의 화폐의 가치가 오른 것을 의식한 것(a moral sense of the enhanced value of his money)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화폐자본의 가치가 이렇게 오른 데 따라 다른 편에서는 현실적 자본(상품자본과 생산자본)의 화폐가치는 떨어졌다. 자본의 가치가 한 형태에서 오른 것은 자본의 가치가 다른 형태에서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버스톤은 각각 다른 종류의 자본의 이 두 가치를 단 하나의 자본가치 일반으로 같이 보려고 하며 그것도 이 두 가치를 유통수단 즉 이미 있는 화폐의 부족에 맞세워 그렇게 하려고 한다. 그러나 똑같은 화폐자본액도 아주

각각 다른 양의 유통수단으로 대부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가 든 1847년의 예를 들어보자. 잉글랜드 은행의 공식 할인 이자율은 1월에는 $3\sim 3\frac{1}{2}\%$, 2월에는 $4\sim 4\frac{1}{2}\%$, 3월에는 대체로 4% , 4월 (파국이 일어난)에는 $4\sim 7\frac{1}{2}\%$, 5월에는 $5\sim 5\frac{1}{2}\%$, 6월에는 대체로 5% , 7월에는 5% , 8월에는 $5\sim 5\frac{1}{2}\%$, 9월에는 5% 였다가 $5\frac{1}{4}\%$, $5\frac{1}{2}\%$, 6% 로 조금씩 달라졌으며, 10월에는 5 , $5\frac{1}{2}$, 7% , 11월에는 $7\sim 10\%$, 12월에는 $7\sim 5\%$ 였다. 이 경우에 이자가 오른 것은 이윤들이 줄어들고 상품들의 화폐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버스톤이 여기에서 1847년에 이자율이 오른 것은 자본의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자본의 가치를 여기에서 화폐자본의 가치로만 이해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화폐자본의 가치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자율인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우꼬리가 들어나서 자본의 가치를 이윤율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1856년의 높은 이자율로 말하면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이자를 이윤에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자본에서 지불하는 일종의 신용놀이꾼들이 나타난 하나의 징조였다는 것을 오버스톤은 사실상 모르고 있었다. 그는 1857년의 공황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에 “거래는 아주 건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제3722호) “이자율이 올라서 기업이윤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첫째로 이자율이 오랫동안 계속 오르기도 드문 일이며, 둘째로 이자율이 오랫동안 계속 오르고 또 어지간히 오른다면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본질상 자본의 가치가 오르는 것인데 자본의 가치는 왜 오르는가? 이윤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우리는 마침내 자본의 가치란 무슨 뜻인가를 알게 된다. 어쨌든 이윤율은 비교적 오랫동안 높은 대로 있지만 기업이득은 떨어지고 이자율은 올라서 이자가 이윤의 대부분을 삼켜버릴 수 있다.

(제3724호) “이자율이 오르는 것은 우리 나라의 기업이 엄청나게 확장되고 이윤율이 크게 오른 결과였다. 그런데 이자율이 오른 것으로 하여 그 자체의 원인들이었던 바로 그 두 가지 것이 없어지고 투덜거린다면 그것은 말할 여지조차 없는 논리적인 불합리이다.”

그런데 이것은 그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을 때와 똑같이 논리적이다. 즉 이윤율이 오른 것은 투기로 하여 상품가격이 오른 결과였는데 가격이 올라서 그 자체의 원인 즉 투기가 없어진다고 투덜거린다면 그것은 논리적인 불합리이다. 그 무엇으로 하여 그 자체의 원인이 마침내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은 높은 이자율에 홀린 고리대금업자에게만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것이다. 로마인의 위대성은 그 노획물의 원인이었으며 그 노획물로 하여 그 위대성은 없어졌다. 부는 사치의 원인이며 사치는 부를 없애는 작용을 한다. 얼마나 교활한가! 백만장자이며 벼락부자가 된 이 귀족의 논리가 온 영국땅에서 자아낸 존경보다 더 잘 오늘날의 부르조아 세계의 천치성을 특징짓는 것은 없다. 어쨌든 높은 이윤율과 기업의 확장이 높은 이자율의 원인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높은 이자율이 높은 이윤의 원인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문제는 바로 이 높은 이자(공황 중에 실제로 본 바와 같은)가 높은 이윤율이 오래 전에 사라진 후에도 오래 끌지 않았는가 또는 심지어 비로소 절정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다.

(제3718호) “이자의 할인율이 훨씬 오른 것으로 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자본의 가치가 늘어난 탓인데 자본의 가치가 이렇게 늘어난 원인들은 누구나 아주 명백하게 알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이미 언급한 사실이지만 이 은행법이 실시되어 온 13년 동안에 영국의 거래는 4,500만파운드 스텔링에서 1억 2,000만파운드 스텔링으로 늘었다. 이 간단한 숫자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사변들을 회상하여 보라. 이렇게 굉장히 거래를 늘이게 한, 자본에 대한 엄청난 수요를 생각하여 보라. 또한 이 막대한 수요에 대한 공급의 자연적 원천, 즉 나라의 그해그해의 저축이 최근 3~4년 동안에 이득없는 군사비에 소비되어 왔다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사실 말이지 나는 이자율이 훨씬 더 높지 않은 데 놀라고 있다. 다시 말하여 나는 이러한 거창한 조작들의 결과에

자본의 부족이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지 않은 데 놀라고 있다.”

논리를 사랑하는 우리 고리대금업자는 얼마나 놀라운 말재간을 부리는가! 여기에서 그는 또다시 자본의 오른 가치라는 것을 들고 나온다! 그는 한편에서는 재생산과정이 이렇게 엄청나게 확장되었으며, 따라서 현실적 자본이 이렇게 엄청나게 축적되었고 다른 편에서는 거래가 그와 같이 거창하게 늘어나게 함으로써 엄청난 수요가 생긴 자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생산이 이렇게 거창하게 늘어난 그 자체가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생산이 그렇게 늘어난 것이 수요를 늘이는 동시에 공급도 늘이며 심지어는 화폐자본의 공급도 늘인 것이 아니겠는가? 이자율이 매우 높이 올랐다면 그것은 오직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그 공급보다도 더 빨리 늘었기 때문인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산업생산이 확장됨에 따라 신용체계에 기초한 그 운영도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산업이 실제로 확장되어 용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으며 이 용자에 대한 수요를 두고 우리의 은행업자는 자본에 대한 엄청난 수요라고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수출거래를 4,500만에서 1억 2,000만으로 늘어나게 한 것은 물론 자본에 대한 단순한 수요의 확장이 아니다. 그리고 오버스톤이 크림전쟁으로 하여 죄다 써버린 나라의 그해그해의 저축이 이 커다란 수요에 대한 공급의 원천을 이룬다고 말할 때 그는 또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가? 첫째로, 그렇다면 소소한 크림전쟁과는 전혀 다른 전쟁시기였던 1792~1815년에 영국은 무엇으로 축적하였는가? 둘째로, 그 자연적 원천이 말라버린다면 그때에는 자본은 어떠한 원천에서 흘러나오는가? 아다시피 영국은 다른 국민들에게서 돈을 꾸지 않았다. 그런데 자연적 원천과 함께 또 인위적인 원천이 있다면 한 나라에서 자연적 원천은 전쟁에 쓰고 인위적인 원천은 기업에 쓴다는 것이야말로 더없이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남은 화폐자본밖에 없었다면 높은 이자율로 하여 그 화폐자본의 효과성이 두 곱으로 될 수 없었겠는가? 오버스톤 씨는 나라의 그해그해의 저축(이 경우에 소비되었다는)이 다만 화폐자본으로만 전화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

러나 현실적 축적이 없었다면 즉 생산이 올라가고 생산수단이 늘어나지 않았다면 화폐형태를 띤 채권의 축적이 이 생산에 무슨 소용이 있었겠는가?

오버스톤은 높은 이윤으로 하여 자본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으로 하여 그것이 오르는 것과를 뒤섞고 있다.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는 이윤율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원인들로 하여 오를 수 있다. 오버스톤 자신이 이 수요가 1847년에 현실적 자본의 가치가 떨어진 결과에 오른 실례를 들고 있다. 그의 마음에 드는 대로 그는 자본의 가치를 현실적 자본에 관련시키기도 하고 화폐자본에 관련시키기도 한다.

우리의 은행왕의 성실치 못한 태도는 그가 훈장식으로 강조하는 그의 협애한 은행업자로서의 관점과 함께 또 다음과 같은 데서 보게 된다.

(제3728호 질문:) “당신의 의견에 의하면 할인율은 상인에게는 큰 의의가 없다고 말하였는데 당신은 얼마면 보통의 이윤율이라고 보는지 말하여 줄 수 없는가?”

오버스톤 씨는 이에 대답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제3729호) “평균이윤율이 7~10%라고 보면 할인율이 2%에서 7%나 8%로 달라지면 이윤율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 않은가?”

(질문하는 사람이 기업이익의 율과 이윤율을 뒤섞고 있으며 이윤율이 이자와 기업이익의 공동 원천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자율은 이윤율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지만 기업이익은 건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오버스톤의 대답:) “첫째로 상업가들은 자기들의 이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할인율은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러한 경우에 오히려 자기들의 기업을 멈출 것이다.”

(물론 망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말이다. 기업가들은 자기들의 이윤이 높은 동안에는 지불하려고 하기 때문에 할인율을 지불하고 자기들의 이윤이 낮은 동안에는 지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할인율을 지불하는 것이다.)

“할인이란 무엇인가? 왜 사람들은 어음을 할인받는가? …더 큰 자본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그만 두어라! 잠겨둔 자본이 화폐로 되돌아오는 것을 앞당기고 기업이 떼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기한이 된 지불을 떼우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가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이 잘 돌아가는 경우만이거나 기업이 잘 돌아가지 않을 때에도 남의 자본으로 투기를 하는 경우만이다. 할인은 결코 단순히 기업을 확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들은 더 큰 자본을 장악하려고 하는가? 그들은 이 자본을 적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째서 그들은 이 자본을 적용하려고 하는가? 이 자본이 이윤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할인율이 그들의 이윤을 삼켜버린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이윤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이 우쭐대며 논리를 자랑하는 자는 기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만 어음을 할인받으며 기업이 이윤을 내기 때문에 기업이 확장된다고 본다. 첫째 전제는 잘못된 것이다. 어느 기업가는 그의 자본의 화폐형태를 앞당기며 그렇게 하여 재생산과정이 계속되게 하기 위하여 할인받는다. 기업을 확장하거나 추가자본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주는 신용을 그가 받는 신용으로 상쇄하기 위해서이다. 그가 그의 기업을 신용을 받아 확장하려고 한다면 어음을 할인받는 것은 그에게 그닥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할인이 그의 손에 이미 있는 화폐자본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바꿔놓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오히려 더 오랜 기간의 확고한 대부를 받으려고 한다. 어쨌든 신용놀이꾼은 물론 자기의 헛

어음을 할인하여 받을 것인데 그것은 자기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한 어지러운 사업을 다른 어지러운 사업으로 매우기 위해서이다. 이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자본을 차지하기 위해서이다.

오버스톤 씨는 그와 같이 할인을 추가자본을 꾸는 것과(자본을 대표하는 어음을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본 다음에 답변에 말문이 막히자 곧 뒤걸음친다.

(제3730호, 질문:) “상인들은 한 번 사업에 손을 댄 이상 이자율이 한때 오르더라도 하는 일을 얼마동안은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는가?” (오버스톤:) “어떤 거래에서 누구나 높은 이자율이 아니라 낮은 이자율로 자본을 얻을 수 있다면 사태를 이 제한된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 대신 오버스톤 씨가 자본을 이제는 갑자기 자기의 은행자본으로만 생각하고 따라서 그에게서 어음을 할인받는 사람을 그 사람의 자본이 상품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의 자본의 화폐형태는 이 경우에 오버스톤 씨가 다른 화폐형태로 옮겨놓는 어음이기 때문에 자본이 없는 사람으로 본다면 그것은 제한되지 않은 관점이다.

(제3732호) “1844년의 은행법과 관련하여 이자율과 잉글랜드 은행의 금예비와의 대략적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말하여 줄 수 없는가? 잉글랜드 은행에 있는 금이 9백만이나 1천만에 이르렀을 때 이자율이 6%나 7%였고 그것이 1천 6백만에 이르렀을 때 이자율이 약 3 내지 4%였던 것은 사실인가?” (질문자는 오버스톤에게 잉글랜드 은행에 있는 금보유량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의 이자율을 자본의 가치에 의하여 규정되는 한에서의 이자율로 설명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이 그렇다면 그때에는 나의 의견으로는 1844년에 취한 대책보다 더 단호한 대책을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저장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자율이 낮아진다면 그때에는 이 의견대로 일에 달라붙어 저장금을 한없이 늘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자를 영으로 끌어내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질문을 제기한 케일리는 이 재치있는 말에 조금도 당황함이 없이 계속하여 묻는다.

(제3733호) “만약 그렇다 하고 5백만의 금이 잉글랜드 은행에 반환된다고 가정하면 다음 여섯 달 동안에 저장금이 아마 1천6백만에 이를 것인데 그렇게 되어 이자율이 3 내지 4%로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때에 이자율이 떨어진 것은 사업이 크게 줄어든 때문이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자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자율이 최근에 많이 오른 것은 사업이 크게 확장된 것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고 나는 말하였다.”

그러나 케일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저장금이 줄어든 것과 함께 이자율이 오른 것이 사업이 확장된 것을 표시하는 것이라면 저장금이 늘어난 것과 함께 이자율이 떨어진 것은 사업이 줄어든 표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오버스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다.

(제3736호 질문:) “당신(원문에는 언제나 Your Lordship, 각하로 되어 있다)은 화폐는 자본을 얻기 위한 도구라고 말하였다고 생각한다”(이렇게 화폐를 자본을 얻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것은 일토당토 않다. 화폐는 자본의 형태이다). “저장금(잉글랜드 은행의)이 줄어든 경우에 큰 곤란은 오히려 자본가들이 화폐를 얻을 수 없다는 데 있지 않은가? (오버스톤:) “아니다. 자본가는 화폐를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화폐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본가가 아니다. 어째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이 화폐에 의하여 자본가 아닌 사람들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자본가의 자본을 얻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바로 오버스톤은 공장주와 상인은 자본가가 아니며 자본가의 자본은 화폐자본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3737호)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자본가가 아닌가?” “어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자본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여기에서 그의 입은 얼어붙고 만다.

그런데 상인들의 어음은 그들이 팔거나 배에 실어보내는 상품을 대표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그는 받는다. 이러한 어음이 은행권이 금을 대표하는 것과 똑같이 상품의 가치를 대표한다는 것을 그는 부인한다(제3740호, 제3741호). 이것은 파렴치한 일이다!

(제3742호) “화폐를 얻는 것이 상인의 목적이 아닌가?” “그렇다. 어음을 발행할 때 화폐를 얻는 것은 목적이 아니다. 어음을 할인받을 때 화폐를 얻는 것이 목적이다.”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상품을 신용화폐의 한 형태로 전화하는 것이며 어음을 할인받는 것은 이 신용화폐를 다른 화폐 즉 은행권으로 전화하는 것이다. 어쨌든 오버스톤 씨는 여기에서 어음을 할인받는 목적은 화폐를 얻는 것임을 인정한다. 전에는 그는 자본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추가자본을 얻기 위하여 할인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3743호) “당신의 진술대로 1825년과 1837년 그리고 1839년에 일어난 것과 같은 파국의 조건에서 상업계의 큰 소원은 무엇인가? 실업가들은 자본을 손에 넣자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합법적 지불화폐를 손에 넣자는 것인가?” “그들은 자기들의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자본을 손에 넣자는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신용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의 상품을 가격 이하로 팔아버리지 않아도 되게 자기들 앞으로 발행된 기한이 된 어음을 위한 지불수단을 얻는 것이다. 그들 자신에게 전혀 자본이 없다면 그들은 물론 지불수단과 함께 동시에 자본도 얻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등가물을 내지 않고 가치를 얻기 때문이다. 화폐 그 자체에 대한 요구는 늘 가치를 상품이나 채권의 형태에서 화폐의 형태로 바꾸려는 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황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자본을 꾸는 것과 할인받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할인받는 것은 화폐청구권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즉 현실적 화폐로 단순히 전화하는 것이다.

{편집자인 나는 여기에서 하나의 지적을 삽입하려고 한다.

노만에게서나 로이드-오버스톤에게서나 은행업자는 언제나 자본을 선대하는 자로서 나서고 그의 고객은 자본을 그에게 요구하는 자로서 나선다. 예컨대 오버스톤은 사람들은 “자본을 얻기를 바라기 때문에”(제3729호) 은행업자에게서 어음을 할인받는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 누구나 “낮은 이자로 자본을 얻을 수 있다”(제3730호)면 그것은 그에게 매우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화폐는 자본을 얻기 위한 도구”(제3736호)이며 또 파국이 일어났을 때 기업계의 큰 소원은 “자본을 얻은 것(제3743호)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자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로이드-오버스톤의 모든 혼란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에서 아주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은행업자가 영업을 하는 고객에게 주는 것을 그는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객에게 전에 없었으며 또는 고객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에 추가적으로 선대해주는 자본이라는 것이다.

은행업자는 화폐형태로 놓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분배자로서——대부하는 형태로——늘 나타남으로써 그가 화폐를 내주는 모든 기능은 대부처럼 그에게는 생각된다. 그가 지불하여 주는 모든 화폐가 그에게는 선대처럼 나타난다. 은행업자가 화폐를 직접 대부하는 데 지출한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옳다. 은행업자가 화폐를 어음을 할인하는 데 지출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은행업자 자신에게는 어음의 지불기한이 될 때까지 선대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은행업자의 머리속에는 선대가 아닌 어떠한 지불도 할 수 없다는 표상이 굳어진다. 그것도 그 선대라는 것이 이자나 이윤을 얻을 목적으로 한 모든 화폐투하를 경제학적으로 보아 개인으로서의 해당한 화폐소유자가 기업가로서의 자기자신에게 하는 선대로 보는 단순히 그러한 뜻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업자가 고객에게 금액을 대부하는 식으로 넘겨주어 이 금액이 고객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늘이게 한다는 일정한 뜻에서 말하는 선대이다.

바로 이 표상이 은행사무실에서 정치경제학에 옮겨져 은행업자가 현금을 자기 고객의 처분에 내맡기는 것이 자본인가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화폐, 유통수단, 통화인가 하는 착잡한 논쟁문제를 일으켰다. 본질상 간

단한 이 논쟁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은행 고객의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은행의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받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은행이 고객에게서 담보를 받지 않고 그의 개인적 신용만을 보고 그에게 대부하여 준다면 사태는 명백하다. 고객은 그가 이제까지 적용해온 자본에 대한 추가로서 일정한 가치량의 선대를 무조건 받는다. 그는 그 선대를 화폐형태로 받으며 따라서 화폐를 받을 뿐 아니라 화폐자본도 받는다.

그가 유가증권 등을 담보로 바치고 선대를 받는다면 그것은 반환을 조건으로 화폐가 그에게 지불된다는 뜻에서의 선대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본의 선대는 아니다. 왜냐하면 유가증권도 자본을 대표하며 그것도 선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받는 사람은 그가 담보로 내는 것보다 더 적은 자본가치를 받는다. 이것은 그가 추가자본을 얻는 것으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가 이 거래를 하는 것은 그에게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자본은 이미 유가증권으로 그가 가지고 있다——그에게 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본의 선대가 아니라 화폐의 선대로 된다.

선대가 어음의 할인으로 진행된다면 선대라는 형태도 사라진다. 단순한 구매와 판매가 진행되는 것이다. 어음은 뒷면에 있는 양도한다는 수표에 의하여 은행의 소유로 넘어가며 화폐는 고객의 소유로 넘어간다. 고객이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로 되지 않는다. 고객이 어음이나 그 밖의 신용도구로 현금을 구매한다면 이것은 고객이 자기의 목화나 철이나 곡물과 같은 그 밖의 상품으로 현금을 구매한 때나 조금도 다른없는 선대이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자본의 선대란 전혀 문제로 될 수 없다. 상인들 사이의 온갖 매매는 자본의 이전이다. 그러나 자본의 이전이 호상간에서 진행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리고 뒤에 치르기로 하고 진행되는 경우에만 선대로 된다. 따라서 어음이 헛어음인 경우에만 어음할인에 의한 자본선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헛어음은 팔린 상품을 전혀 대표하지 않으며 그 정체를 알기만 하면 어느 은행업자도 그것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상적인 할인거래에서는 은행의 고객은 자본으로도 화폐로

도 선대를 받지 않으며 팔린 상품에 대한 화폐를 받는다.

따라서 고객이 은행에 자본을 요구하여 받는 경우들은 그가 화폐를 선대받거나 은행에서 사는 경우들과 아주 명백히 구별된다. 그리고 특히 로이드-오버스톤 씨는 담보없이 자기의 자금을 선대하는 일은 극히 드물었으므로(그는 맨체스터에 있는 나의 상회⁸¹와 거래하는 은행업자였다) 관대한 은행업자들이 자본이 없는 공장주들에게 많은 자본을 선대한다는 그의 미사여구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는 것도 또한 명백하다.

어쨌든 제32장에서 맑스도 본질상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상인과 생산자가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단순히 화폐로 바꿀 수 있다는 데 대한 수요이다. 그렇지 않은 한에서는 즉 지불수단의 선대가 자본가들에게 화폐형태를 줄 뿐 아니라 지불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없는, 어떠한 형태의 등가물도 다 주는 한에서는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화폐자본에 대한 수요이다.” 그리고 또 제33장에서는 “화폐가 은행들에 집중되는 발전된 신용제도에서는 은행들이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화폐를 선대한다. 이러한 선대는 유통 중에 있는 화폐와만 관련된다. 그것은 유통수단의 선대이지 이 유통수단에 의하여 유통되는 자본의 선대는 아니다.” 이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을 채프만 씨도 할인거래에 대한 위에서 든 견해를 확인하고 있다.

『은행위원회』, 1857년: “은행업자는 어음을 가지고 있다. 은행업자는 어음을 산다.” 증언, 질문 제5139호.

어쨌든 우리는 제28장에서* 또한번 이 문제로 돌아갈 것이다. —F.E.)

(제3744호) “당신은 자본이라는 말을 실지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말하여 줄 수 없는가?” {오버스톤의 대답:} “자본은 여러 가지 상품들로 이루어지는데 이 상품들에 의하여 영업이 진행된다(capital consists of various commodities,

* 이 책 553~556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by the means of which trade is carried on). 고정자본과 유동자본이 있다. 당신의 선박, 당신의 도크, 당신의 조선소는 고정자본이고 당신의 식량, 당신의 옷 등은 유동자본이다.”

(제3745호) “금이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은 영국에 해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이 말을 합리적인 뜻으로 쓴다면 그렇지 않다.” (리카아도의 낡은 화폐 이론이 나온다)… “자연스러운 사태에서는 세계의 화폐가 일정한 비례로 세계 각국에 나누어진다. 이 비례는 (화폐가) 그렇게 나누어져서 한 나라와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들 사이의 거래가 단순한 교환거래가 되는 그런 식의 비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배를 헝클어뜨리는 영향이 때때로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있으면 한 나라의 화폐의 한 부분이 다른 나라들로 흘러나간다.” (제3746호) “당신은 지금 화폐라는 말을 쓰고 있다. 내가 당신의 말을 전에 옳게 이해하였다면 당신은 그것을 자본의 상실이라고 불렀다.” “내가 무엇을 자본의 상실이라고 불렀는가?” (제3747호) “금이 흘러나가는 것을 그렇게 불렀다.” “아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당신이 금을 자본으로서 취급한다면 금이 흘러나가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자본의 상실이다. 금이 흘러나가는 것은 세계화폐를 이루는 귀금속의 일정한 부분을 내주는 것이다.” (제3748호) “당신은 전에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은 자본의 가치가 달라진 단순한 징표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말하였다.” (3749호) “그리고 할인율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의 금예비가 달라짐에 따라 달라진다고도 말하지 않았는가?” “말하였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화폐의 양(이라고 그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현실적 금의 양을 의미한다)이 달라져서 일어나는 이자율의 변동은 아주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제3750호) “그렇다면 할인율이 어느 때의 올 이상으로 비교적 오랫동안 그러나 한때만 올랐다면 자본이 줄었다고 말하려는가?” “어떤 의미에서는 줄었다. 자본과 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의 비율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마 그것은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지 자본량이 준 때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실 방금 위에서는 자본을 화폐나 금과 같은 것으로 보았으며 또 조금 전에는 이자율이 오르는 것을 상업활동이나 자본의 축소가 아니라 그 확대에서 나오는 높은 이자율로 설명하였다.)

(제3751호) “당신이 여기에서 특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어떠한 자본인가?” “그것은 전적으로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어떠한 자본인가 하는 데 달려 있다. 그것은 국민이 자기들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자본인데 이 사업이 곱으로 늘어나면 그 사업을 계속하여 나가는 데 쓰이는 자본에 대한 수요자 크게 늘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잔피를* 부리는 이 은행업자는 먼저 사업을 곱으로 늘리고 다음에 곱으로 늘이는 사업에 쓰이는 자본에 대한 수요를 두 곱으로 한다. 그는 언제나 사업을 곱으로 늘이기 위하여 더 큰 자본을 로이드 씨에게 요구하는 자기의 고객만을 안중에 둔다.)

“자본은 다른 모두 상품과 같다”(그러나 자본은 바로 로이드 씨의 의견에 의하면 상품들의 총체와 다른 것이 아니다). “자본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진다”(따라서 상품들은 두 번 즉 한 번은 상품들로서, 또 한 번은 자본으로서 그 가격이 달라진다).

(제3752호) “할인율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잉글랜드 은행의 금고 속에 있는 금의 저장액의 변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것이 당신이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인가?” “아니다.” (제3753호) “당신은 잉글랜드 은행에 자본의 저장에 크게 쌓이는 동시에 할인율이 높았던 실례를 하나 들 수 있는가?” “잉글랜드 은행에 쌓이는 것은 자본이 아니라 화폐이다.” (제3754호) “당신은 이자율이 자본의 양에 달려 있다고 말하였다. 당신은 어떤 자본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잉글랜드 은행에 금의 저장에 많이 쌓이는 동시에 이자율이 높았던 실례를 하나 들 수 있는지 말하여 줄 수 없겠는가?” “잉글랜드 은행에 금이 쌓이는 것과 낮은 이자율이 일치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있음직한 일이다”(어이쿠!) “왜냐하면 자본(즉 화폐자본,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시기인 1844년과 1845년은 변영기였다)에 대한 수요가 적은 시기는 자본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이나 도구가 자연 축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3755호) “그렇다면 당신은 할인율과 잉글랜드 은행의 금고 속에 저장된 금의 양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원칙적 의의를 가지는 관련이 아니다”(그러나 1844년의 그의 은행법은 바로 이자율을 잉글랜드 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 조절하는 것을 그 은행의 원칙으로 삼고 있

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상 일치할 수 있다(there may be a coincidence of time).” (제3758호) “그렇다면 당신은 이 나라에서 화폐가 부족한 시기에 높은 할인율로 하여 상인들이 겪고 있는 곤란은 자본을 얻는 데 있는 것이지 화폐를 얻는 데 있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인가?” “당신은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을 뒤섞고 있지만 나는 그것들을 그렇게 한 데 합치지는 않는다. 곤란은 자본을 얻는 데 있으며 곤란은 또한 화폐를 얻는 데도 있다. … 화폐를 얻는 곤란과 자본을 얻는 곤란은 각이한 두 진행단계에서 보는 똑같은 곤란이다.”

여기에서 다시 올라가며 단단히 걸렸다. 첫째 곤란은 어음을 할인받거나 상품을 담보로 선대를 받는 것이다. 이 곤란은 자본을 또는 자본에 대한 상업상의 가치기호를 화폐로 전화하는 데 있다. 그런데 이 곤란은 무엇보다도 높은 이자율에서 표현된다. 그런데 화폐를 이미 받았다고 치면 둘째 곤란은 어디에 있는가? 지불하는 것만이 문제라면 자기의 화폐를 내놓기 곤란해 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또 사는 것이 문제라면 공황 시기에 이러저러한 상품을 사들이는 것을 곤란해 할 사람이 있겠는가? 그리고 이것이 곡물이거나 목화이거나 그 값이 비싼 특별한 경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 곤란은 화폐자본의 가치 즉 이자율에서가 아니라 상품의 가격에서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곤란은 그 사람이 상품을 살 화폐를 이제는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극복되고 있는 것이다.

(제3760호) “그러나 할인율이 높아지면 화폐를 얻기가 더 곤란하지 않은가?” “그렇게 되면 화폐를 얻기는 더 곤란하지만 문제는 화폐를 손에 넣는 것이 아니다. 화폐는 근대문명의 복잡한 조건에서 자본을 얻기가 더 곤란하게 되는 형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 형태가 은행업자의 주머니에 이윤을 가져온다.)

(제3763호) (오버스톤의 대답 :) “은행업자는 한편으로는 예금을 받아들이고 다른 편으로는 이 예금을 자본의 형태로…사람들의 손에 맡김으로써 이 예금을 적용하는 중개인이다.”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는 그가 자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게 된다. 그는 화폐를 맡김으로써 또는 좀 점잖게 말하여 그가 화폐를 이자

를 받고 대부함으로써 화폐를 자본으로 전화한다.

오버스톤 씨는 전에 할인율의 변동은 잉글랜드 은행의 금저장액의 변동이나 이미 있는 화폐의 양과 본질적으로는 관련이 없고 기껏하여 시간상 일치한다고 말하였다는데 그는 다음과 같이 되풀이 한다.

(제3805호) “홀러나감으로써 국내의 화폐가 줄어들면 화폐의 가치가 오르는데 잉글랜드 은행은 화폐가치의 이 변동에 맞추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따라서 자본으로서의 화폐가치의 변동에, 다시 말하면 이자율의 변동에 맞추어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상품들과 비교한 화폐로서의 화폐가치는 의연 똑같은 때문이다). 이것을 기술적으로 말하면 잉글랜드 은행은 이자율을 올린다는 것이다.”

(제3819호) “나는 두 가지 것을 결코 뒤섞지 않는다.”

그 두 가지 것이란 화폐와 자본인데 그가 뒤섞지 않는 것은 그가 그들을 구별한 적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제3834호) “나라에 필요한 식량(1847년의 곡물) 값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고 그리고 사실상 자본이었던 그 금액은 막대하였다.”

(제3841호) “할인율의 변동은 의문의 여지없이 금예비(잉글랜드 은행의) 상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예비의 상태는 국내에 이미 있는 화폐량의 증감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화폐의 증감에 따라 화폐의 가치는 오르내리며 잉글랜드 은행의 할인율도 이에 맞추어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오버스톤은 그가 제3755호에서 단연 부정한 것을 인정한다.

(제3842호) “두 가지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가지 것이란 발행부에 있는 금의 양과 은행부에 있는 은행권 예비액이다. 여기에서 그는 이자율의 변동을 화폐량의 변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경우에 그는 그릇되게 말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하는 화폐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비액은 줄어들 수 있다. 사람들의 손에 더 많은 은행권이 들어가지만 금속의 저장량이 줄어들지 않는 경우에 그러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 이자율은 오른다. 왜냐하면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자본은 1844년의 은행법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말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법령으로 하여 이 은행의 두 부서는 서로 독자적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제3859호) “높은 이윤율은 늘 자본에 대한 큰 수요를 낳는다. 자본에 대한 큰 수요는 자본의 가치를 올릴 것이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드디어 높은 이윤율과 자본에 대한 수요 사이의 관련을, 오버스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런데 1844~1845년에 예컨대 면공업에서 이윤율이 높았는데 그것은 면제품에 대한 수요는 센 반면에 목화값은 계속 낮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본의 가치(그런데 위에서 오버스톤이 규정한 대로 하면 자본이란 각 개인의 사업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목화의 가치는 공장주들로서는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윤율이 높았기 때문에 면공장주들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화폐를 꾸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화폐자본에 대한 그들의 수요가 늘어났을 것이고 그 밖의 것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제3889호) “금은 화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것은 종이가 은행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과 똑같다.”

(제3896호) “그렇다면 유통 중에 있는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의 변동은 금 저장액의 변동에 따라야 한다는, 1840년에 논증한 당신의 명제를 당신이 포기한다고 이해하여도 좋겠는가?” “오늘날의 우리의 지식상태로 보아 유통하는 은행권에다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예비로 있는 은행권을 보태지 않으면 안되는 …한에서 나는 그 명제를 포기한다.”

아주 멋진 말이다. 잉글랜드 은행이 저장하고 있는 금에다 1천 4백만

을 더한 만큼의 지폐를 찍어낼 수 있다는 자의적인 규정으로 하여 물론 이 은행의 은행권 발행은 금저장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의 지식상태가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법에 따라 잉글랜드 은행이 만들어낼 수 있는(그리고 발행부가 은행부에 넘겨주는) 은행권의 양, 금저장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는 잉글랜드 은행의 두 부서 사이에서의 유통은 잉글랜드 은행의 문 밖에서의 은행권의 유통의 변동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실제적 유통은 이제는 은행의 관리에는 아무래도 좋은 것으로 되며 실제적 유통과의 차이를 예비금에서 보게 되는 이 은행의 두 부서 사이의 유통만이 결정적인 것으로 된다. 외부세계에 이 유통이 중요한 것은 다만 이 은행이 은행권 발행의 법정한도에 얼마나 접근하고 있는가 또 이 은행의 고객들이 은행부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더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예비금이 보여주는 한에서만이다.

오버스톤이 성실하지 못한 두렵한 실례를 다음에 든다.

(제4243호) “자본의 양은 우리가 최근 몇 해 동안에 할인율의 변동에서 본 바와 같이 자본의 가치를 달라지게 할 정도로 다달이 변동한다고 당신은 생각하는가?” “자본의 수요와 공급 관계는 의심할 바 없이 짧은 기간에도 변동할 수 있다. …프랑스가 내일이라도 거액의 차관을 얻겠다고 발표한다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곧 영국에서 화폐의 가치에 즉 자본의 가치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제4245호) “프랑스가 갑자기 그 무슨 일 때문에 3천만어치의 상품이 필요하다고 발표한다면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간단한 표현을 쓴다면 자본에 대한 큰 수요가 있게 될 것이다.”

(제4246호) “프랑스가 받은 차관으로 사려고 하는 자본과 프랑스가 이것을 사는 데 쓰는 화폐는 각기 서로 다른 것이다. 그 가치를 달라지게 하는 것은 화폐인가 아닌가?” “이전의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 문제는 이 위원회 회의실보다 학자의 연구실에 더 적합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이것으로 그는 물러서는데 그러나 연구실로 물러서는 것은 아니다.⁸⁴⁾

84) 자본문제에서의 오버스톤의 개념 혼란에 관한 더 상세한 것은 제32장의 마감에 있다. (F. E.)

제 27 장 자본주의적 생산에서의 신용의 역할

신용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지적한 것들은 결국 다음과 같다.

I. 이윤율의 균등화를 매개하기 위하여 또는 전체 자본주의적 생산이 발 붙이고 있는 이 균등화과정을 매개하기 위하여 신용이 필연적으로 형성된다는 것.

II. 유통비가 적어진다는 것.

1) 주되는 유통비의 하나는 그 전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의 화폐 그 자체이다. 화폐는 신용으로 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절약된다.

ㄱ. 대부분의 거래에서 화폐는 전혀 쓸모 없게 된다.

ㄴ. 유통수단의 유통이 촉진된다.⁸⁵⁾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2)에서 말하게 될 것과 일치한다. 즉 한편으로 이 촉진은 기술적이다. 다시 말하면

85) “프랑스 은행의 은행권의 평균유통액은 1812년에 106,538,000프랑, 1818년에 101,205,000프랑이었는데 화폐유통액 즉 모든 수입과 지출의 총액은 1812년에 2,837,712,000프랑, 1818년에 9,665,030,000프랑이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1818년의 화폐유통과 1812년의 그것과의 비례는 3:1이었다. 유통속도를 크게 조절하는 것은 신용이다. ...흔히 화폐시장이 몹시 긴장한 것과 유통수단이 꼭 차 있는 것이 어째서 일치하는가 하는 것은 이것으로 설명된다”(『통화이론의 검토』, 6페이지). “1833년 9월과 1843년 9월 사이에 대영국에서는 300에 가까운 은행이 나와 자체의 은행권을 발행하였다. 그 결과 은행권의 유통액이 250만이나 줄어들었다. 그것은 1833년 9월말에는 36,035,244파운드 스텔링이었고 1843년 9월말에는 33,518,544파운드 스텔링이었다”(같은 책, 53페이지). “스코틀랜드에서는 유통속도가 놀랄만큼 빨라서 잉글랜드에서는 420파운드 스텔링이 있어야 처리되는 똑같은 양의 화폐거래를 100파운드 스텔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같은 책, 55페이지. 이 마지막 이야기는 조작의 기술면에만 관련된다).

소비를 매개하는 실제적 상품거래의 크기와 양이 의연 같은 경우에 더 적은 양의 화폐 또는 화폐기호가 똑같은 일을 한다. 이것은 은행업의 기술과 관련되어 있다. 한편 또 신용은 상품의 형태변화의 속도를 촉진하며 이에 따라 화폐유통의 속도도 촉진한다.

ㄷ. 지폐가 금화를 대신한다.

2) 신용이 유통의 또는 상품의 형태변화의, 더 나아가서는 자본의 형태변화의 하나하나의 국면을 촉진하며 따라서 재생산과정 일반을 촉진한다(한편 또 신용은 사고파는 행위들이 더 오랫동안 서로 떨어질 수 있게 하며 따라서 투기의 바탕으로 된다). 예비금이 줄어드는 것은 두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즉 한편으로는 유통 중에 있는 유통수단이 적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자본 가운데서 늘 화폐형태로 있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이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⁸⁶⁾

Ⅲ. 주식회사의 형성. 이에 따라

1) 생산의 규모가 굉장히 커졌고 개별적 자본으로서는 불가능한 기업들이 나왔다. 동시에 전에는 정부기업체들이었던 그런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들로 된다.

2) 그 자체가 사회적 생산양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사회적 집적을 전제로 하는 자본이 여기에서는 직접 개인적 자본에 맞서는 사회적 자본(직접 연합된 개인들의 자본)의 형태를 띠며 그 기업들은 사적 기업에 맞서는 사회적 기업들로서 나타난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자체의 테두리 안에서 사적 소유로서의 자본을 폐기하는 것이다.

3) 실제로 기능을 노는 자본가가 남의 자본에 단순한 지배인, 관리인으로 전화되며 자본의 소유자는 순수한 소유자, 순수한 화폐자본가로 전화된다. 이들이 얻는 배당금이 이자와 기업이득을, 즉 전체 이윤을 포함하는 경우에조차(왜냐하면 지배인의 봉급은 일정한 종류의 기능노동의 단순한 임금이며 또는 그러한 임금이어야 하기 때문인데 이 기능노동

86) “은행들이 나오기 전에는 유통수단의 기능을 노는 데 필요한 자본액은 실제적 상품유통에 필요한 액보다도 언제나 컸다”(『이코노미스트』, 1845년 [3월 15일], 238페이지).

의 가격은 다른 모든 노동의 가격과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에서 조절된다.) 이 전체 이윤은 다만 이자의 형태로 즉 자본소유에 대한 단순한 보수로서만 얻어지는 것이며 그리하여 이 자본소유는 실제적인 재생산과정에서 노는 기능과 완전히 떨어지는데 이것은 지배인으로서의 이 기능이 자본소유와 떨어지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 이윤은(이제는 그 한 부분 즉 꾸는 사람의 이윤이라는 데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자만이 아니다) 단순히 남의 잉여노동을 차지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잉여노동은 생산수단이 자본으로 전화되는 데서 즉 생산수단이 실제적 생산자들과 떨어지는 데서, 생산수단이 남의 소유로서 위로는 지배인으로부터 아래로는 밑바닥의 낄품팔이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실지 생산에 참가하는 모든 개인과 맞서는 데서 생겨난다. 주식회사에서는 기능이 자본의 소유와 떨어져 있으며 따라서 노동도 생산수단의 소유 그리고 잉여노동의 소유와 완전히 떨어져 있다.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최고도로 발전한 결과이며 자본이 다시 생산자들의 소유로 그러나 이제는 따로따로 떨어진 생산자들의 사적 소유로가 아니라 연합된 생산자들의 소유로, 직접적인 사회적 소유로 전화되는 필연적 통과점이다. 한편 또 주식회사는 이제까지 아직 자본의 소유와 결부되어 있는, 재생산과정에서의 모든 기능이 연합된 생산자들의 단순한 기능으로, 사회적 기능으로 전화되는 통과점이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전에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다음과 같은 점을 더 지적하여 두어야 하겠다. 이윤은 이 경우에 순전히 이자의 형태를 띠므로 그러한 기업들은 다만 이자만을 낚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으며 바로 이것이 일반적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 이유의 하나이다. 그것은 불변자본이 가변자본에 비하여 엄청나게 큰 비율을 이루는 이 기업들이 일반적 이윤율의 균등화에 반드시 참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맑스가 이 글을 쓴 이후 아다시피 주식회사의 두 곱, 세 곱이나 되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기업들이 발전하였다. 대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날 생산은 나날이 빨라지는 속도로 늘어날 수 있는 데 비하여 이 늘어나는 생산물을 위한 시장의 확대는 점점 더 완만하여진다. 산업에서 몇 달 동안에 생산되는 것을 시장은 몇 해 걸려야 겨우 빨아들일 수 있다.

거기에는 보호관세정책에 의하여 개개 공업국은 다른 나라들, 특히 영국에 대하여 문을 닫아매고 국내생산을 더욱 인위적으로 높이고 있다. 그 결과 만성적 과잉생산이 전반적 현상으로 되고 물가가 억눌리며 이윤이 떨어지고 심지어 완전히 없어지기까지 한다. 요컨대 오랫동안 자랑해온 자유경쟁은 끝장나며 그야말로 비참한 파산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파산은 개개 나라에서 일정한 부문의 대산업가들이 생산을 조절하기 위하여 카르텔로 연합한 데서 바로 나타난다. 카르텔 위원회가 개개 기업이 생산해야 할 양을 똑바로 정하고 들어오는 주문을 마지막으로 나눈다. 개별적 경우에는 일시적이지만 국제 카르텔까지도 나왔다. 예컨대 영국과 독일의 흑색 금속기업을 연합한 카르텔이 그러하였다. 그러나 생산의 사회화의 이 형태도 아직 충분한 것은 아니었다. 개별적 회사들의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하여 이 회사들은 너무나도 자주 깨졌으며 경쟁은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생산의 발전단계로 보아 그렇게 할 수 있는 개별적 부문들에서는 이 기업부문의 전체 생산을 통일적으로 지도하는 하나의 큰 주식회사로 집중하게 하는 데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이것이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으며 구라파에서는 이제까지의 가장 뚜렷한 실례는 알카리 연합 트러스트인데 이것은 영국의 전체 알카리 생산을 하나의 유일한 회사에 집중시켰다. 30개가 넘는 개별적 공장의 이전 소유자들은 그들의 전체 설비의 댓가로 총액 약 500만파운드 스텔링의 평가가치를 주식으로 받았는데 이 금액이 이 트러스트의 고정자본을 표시한다. 기술적 관리는 의연 그때까지 하던 사람들이 하지만 영업상의 지도는 증역회에 집중되어 있다. 약 100만파운드 스텔링의 유동자본(floating capital)은 주문에 의한 실현을 위하여 일반 사람들에게서 모집되었다. 그리하여 이 트러스트의 총자본은 600만파운드 스텔링이다. 그리하여 영국에서는 전체 화학공업의 기초를 이루는 이 부문에서 경쟁이 독점으로 바뀌었으며 온 사회, 국민에 의한 앞날의 수탈이 더할 나위 없이 잘 마련되어 있다—F. E.}

이것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폐기이며 따라서 자기 자체를 폐기하는 모순인데 이 모순은 우선 새로운 생산형태로 넘어가는 단순한 과도점으로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러한 모순으

로서 자체 현상에서도 나타난다. 그것은 어떤 분야들에서는 독점을 낳으며 따라서 국가의 간섭을 요구한다. 그것은 새로운 금융귀족 즉 발기인, 창립자, 이름만인 중역 등과 같은 새로운 종류의 기생충들을 재생산한다. 또한 그것은 창립, 주식발행, 주식거래와 관련된 사기협잡의 전체계를 재생산한다. 이야말로 사적 소유의 통제가 없는 사적 생산이다.

IV. 주식은 자본주의제도 자체에 기초한 자본주의적인 사적 산업의 폐기이며 그것이 확대되어 새로운 생산분야들을 틀어쥐는 정도에 따라 사적 산업을 없애는데 이 주식을 제쳐놓고 보더라도 신용은 개별적 자본가 또는 자본가로 볼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한계 안에서 남의 자본과 남의 소유, 따라서 남의 노동에 대한 절대적 처분권을 준다.⁸⁷⁾ 자기의 자본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이 실지로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세상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본 자체는 신용이라는 상부구조의 기초로 된다. 이것은 특히 사회생산물의 거의 모든 부분이 그 손을 거치는 도매상업에 해당된다. 모든 척도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안에서는 그래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모든 변명은 여기에서는 사라진다. 투기를 하는 도매상인은 자기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의 소유물로 모험을 한다. 또한 자본이 절약에서 나온다는 말도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투기를 하는 자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절약하여 줄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최근 전 프랑스는

87) 에컨대 타임스⁸⁵⁾에서 1857년과 같은 공황의 해의 파산자명단을 보고 파산자들의 재산과 그들의 채무액을 비교하여 보라. “사실 자본과 신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구매력이란 투기시장에 대하여 실지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도이다”(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79페이지). “어떤 사람이 그의 일상적 사업에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고 그의 부문에서 두터운 신용을 얻고 있다는 평이 있다면 그는 그가 제공하는 상품의 시세가 오르리라는 낙관적 의견을 가질 때 그리고 투기를 시작하고 해가면서 제반 사정이 그에게 유리할 때 그의 자본에 비하여 참으로 엄청난 금액의 구매를 할 수 있다”(같은 책, 136페이지). “공장주, 상인 등은 모두 자기 자본을 훨씬 넘는 거래를 하고 있다. …자본은 오늘날 그 어떤 영업거래의 한계라기보다 오히려 두터운 신용을 받는 기초이다”(『이코노미스트』, 1847년 (11월 20일), 1, 333페이지).

파나마 사기꾼들을 위하여 모두 15억프랑을 절약하여 주었다. 파나마 사기⁶⁴가 있기 20년 전에 그 전모가 여기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는가! —F.E.) 자본에 고유한 사치는 금욕이라는 말과는 너무나 모순되는데 이 사치 자체가 이제는 신용의 수단으로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비교적 발전하지 못한 단계에서는 아직도 일정한 의미를 가진 표상들이 여기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하게 된다. 잘되나 못되나 여기에서는 자본들이 집중되게 되며 따라서 수탈이 엄청난 규모에 이르게 된다. 수탈은 여기에서는 직접적 생산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중소자본가들 자신에까지 미친다. 이 수탈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출발점이다. 수탈을 하는 것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목적이며 특히 모든 개인들에게서 생산수단을 수탈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생산수단은 사회적 생산이 발전하는 데 따라 사적 생산의 수단, 사적 생산의 생산물로 되지 않으며 오직 연합된 생산자들의 손에서만 생산수단으로 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그들의 사회적 생산물이듯이 그들의 사회적 소유로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수탈은 자본주의제도 자체 안에서는 적대적 모습으로 몇몇 적은 사람들이 사회적 소유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신용은 이 적은 사람들이 더욱더 순 도박꾼의 성격을 가지게 한다. 소유권은 여기에서는 주식의 형태로 있으므로 소유권의 움직임과 이동은 증권도박의 단순한 결과로 되는데 증권도박에서는 잔 고기들은 상어의 밥이 되며 양은 증권시장 승냥이들의 밥이 된다. 주식에는 벌써 사회적 생산수단이 개인의 소유로서 나타나는 낡은 형태의 대립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식형태로의 전화 자체는 의연히 자본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전화는 사회적 부로서의 부의 성격과 개인적 부로서의 부의 성격 사이의 모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순을 다만 새로운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할 따름이다.

노동자들 자신의 협동조합공장은 물론 어디서나 그 실제적 조직에서는 이미 있는 제도의 모든 결합을 재생산하며 또 재생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더라도 낡은 형태의 테두리 안에서 그 낡은 형태의 첫 돌파구로 된다. 그런데 이 공장의 테두리 안에서 자본과 노동의 대립은 없어진다. 비록 처음에는 다만 조합으로서의 노동자들이 그들 자신에 대하여 자본가이며

즉 생산수단을 그들 자신의 노동을 착취하기 위하여 쓴다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협동조합공장은 물질적 생산력과 그에 따르는 생산형태들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 어떻게 자연적으로 한 생산양식에서 새로운 생산양식이 생기며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다. 협동조합공장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생겨나는 공장제도 없이는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며, 또 바로 이 생산양식에서 생겨나는 신용체계 없이도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신용체계는 자본주의적 개인기업들이 자본주의적 주식회사들로 점차 변화되는 주되는 기초를 이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한 협동조합기업들이 많은 적진 국민적 규모로 점차 확대되는 수단으로 된다. 자본주의적 주식기업들은 협동조합공장들과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연합적 생산양식으로 넘어가는 형태로 보아야 하는데 다만 앞에선 것에서는 대립이 부정적으로 폐기되며 뒤에 든 것에서는 긍정적으로 폐기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신용의 발전과 그 속에 들어 있는 자본주의적 소유의 잠재적 폐기를 주로 산업자본과 관련시켜 살펴보았다. 우리는 다음 장들에서 신용을 이자불는 자본 그 자체와 관련시켜 살펴볼 것이며 또한 이자불는 자본에 대한 신용의 영향과 여기에서 신용이 떠는 형태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수하게 경제학적인 성격 몇 가지를 더 지적을 하여야 하겠다.

먼저 다음과 같은 것만을 지적한다.

신용이 과잉생산과 상업에서의 지나친 투기의 주되는 공간으로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다만 본성으로 보아 신축성 있는 재생산과정이 여기에서 무리하게 극도에까지 이르기 때문이며 또한 사회적 자본의 큰 부분이 그 자본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에 의하여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그러한 것으로 하여 자본의 소유자 자신이 기능을 노는 한에서 그가 자기 자본의 한계를 걱정하는 것과는 전혀 달리 기업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 즉 자본주의적 생산의 적대적 성격에 기초한 자본의 가치증식은 실제적이며 자유로운 발전을 일정한 한계까지만 할 수 있게 하며 따라서 사실상 생산의 내재적 질곡과 제한을 이루는데 이 질곡과 제한은 끊임없이 신용에 의하여 극복된다는

것을 증명할 따름이다.⁸⁸⁾ 신용은 물질적 생산력의 발전과 세계시장의 형성을 촉진하는데 새로운 생산형태의 물질적 기초로서의 이 발전과 형성을 일정한 높은 정도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역사적 과업이다. 동시에 신용은 이 모순의 강제적 폭발인 공황을 다그치며 이에 따라 낡은 생산양식의 해체요소들을 강화한다.

· 신용체계에 내재하는 이중적 성격: 그 하나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동력 즉 남의 노동을 착취하여 치부하는 것을 순수하고 엄청난 도박과 사기의 체계로 발전시키며 사회적 부를 착취하는 얼마 되지 않는 자들의 수를 더욱더 줄이는 것이며 또 하나는 새로운 생산양식으로 넘어가는 형태를 이루는 것인데 이 이중성이야말로 로(Law)부터 이삭 페레이어에 이르기까지의 신용의 주되는 설교자들에게 사기꾼과 예언자라는 유쾌한 범벅이성격을 띠게 하는 것이다.

88) T. 켈머스 (『…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글라스고, 1832년)

제 28 장 유통수단과 자본. 투크와 플라톤의 견해

투크⁸⁹⁾와 월슨 그 밖의 사람들이 유통수단과 자본을 구별하는 데서는 화폐로서의, 화폐자본 일반으로서의 유통수단과 이자붙는 자본(영어에서 말하는 moneyed capital)으로서의 유통수단의 차이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그 구별은 결국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있다.

유통수단은 한편으로는 그것이 소득의 지출을 매개하며 따라서 개인적 소비자와 소매상인——이 소매상인의 범주에는 소비자에게 즉 생산적 소비자 또는 생산자와 구별되는 개인적 소비자에게 파는 모든 상인을 넣어야 할 것이다——사이의 거래를 매개하는 한에서는 주화(화폐)로서 유통한다. 이 경우에 화폐는 끊임없이 자본을 보상한다 하더라도 주화의 기능을 늘면서 유통한다. 한 나라에 있는 화폐의 일정한 부분은 그것이

89) 우리는 여기에서 투크의 해당 부분을 원문으로 들어둔다. 그것은 390페이지(이 책, 469페이지)에서 독일어로 발췌·인용되고 있다. "The business of bankers, setting aside the issue of promissory notes payable on demand, may be divided into two branches, corresponding with the distinction pointed out by Dr. (Adam) Smith of the transactions between dealers and dealers, and between dealers and consumers. One branch of the bankers' business is to collect *capital* from those who have not immediate employment for it, and to distribute or transfer it to those who have. The other branch is to receive deposits of the *incomes* of their customers, and to pay out the amount, as it is, wanted for expenditure by the latter in the objects of their consumption ...the former being a circulation of *capital*, the latter of *currency*(은행업자들의 업무는 요구자에게 지불되는 채무증서의 발행을 제쳐놓는다면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담) 스미드 박사가 거래를 상인들끼리 하는 거래와 상인과 소비자

끊임없이 달라지는 하나하나의 단위 화폐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언제나 이 주화의 기능을 노는 데 바쳐진다. 이와는 반대로 화폐가 구매수단(유통수단)으로서건 지불수단으로서건 자본의 양도를 매개하는 한에서는 그것은 자본이다. 따라서 화폐가 주화와 구별되게 하는 것은 구매수단으로서의 그 기능도 아니며 지불수단으로서의 그 기능도 아니다. 왜냐하면 상인과 상인 사이에서도 그들이 서로 현금으로 사는 한에서는 화폐는 구매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 상인과 소비자 사이에서도 신용이 제공되어 소득이 처음에 소비되고 그 다음에 지불되는 한에서는 화폐는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별은 둘째 경우에는 이 화폐가 한편 즉 파는 사람을 위하여 자본을 보상할

사이의 거래로 나누는 것과 들어맞는다. 은행업자들의 업무의 하나는 자본을 당장 사용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모아들여 그것을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또는 넘겨주는 것이다. 그 업무의 또 하나는 고객들의 소득에서 예금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소비품을 위한 지출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다. …먼저 든 것은 자본의 유통이고 뒤에 든 것은 유통수단의 유통이다.”)(투크, 「통화원리의 연구」, 런던 1844년, 36페이지). 첫째 업무는 the concentration of capital on the one hand and the distribution of it on the other(한편으로는 자본의 집적이고 다른 편으로는 자본의 분배이다). 둘째 업무는 administering the circulation for local purposes of the district(그 지역의 지방적 목적을 위한 유통의 조절)이다(같은 책, 37페이지). 키니어는 다음에서 문제를 옳게 파악하는 데 훨씬 가까와지고 있다. “화폐는 본질상 서로 다른 두 조작을 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상인들끼리 교환하는 수단으로서의 화폐는 자본을 넘겨주는 도구이다. 즉 화폐로 있는 일정한 자본액과 상품으로 있는 같은 자본액이 교환된다. 그러나 임금을 지불하는 데 지출되며 또 상인과 소비자 사이에서 사고 파는 데 지출되는 화폐는 자본이 아니라 소득이다. 이것은 전체 사회의 소득 가운데서 일상적 지출에 사용되는 부분이다. 이 화폐는 계속되는 일상적 사용에서 유통하며 이 화폐만을 엄밀한 의미에서 유통수단(currency)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의 선대는 전적으로 은행이나 그 밖의 자본소유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 그것은 꾸는 사람이 언제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통수단의 액은 사회의 수요에 달려 있으며 이 수요의 테두리 안에서 화폐는 일상적 지출을 위하여 유통한다”(J. G. 키니어, 「공황과 통화」, 런던 1847년 (3~4페이지)).

뿐만 아니라, 다른 편 즉 사는 사람에 의하여 자본으로서 지출되고 선대된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 구별은 사실상 소득의 화폐형태와 자본의 화폐형태와의 구별이지 유통수단과 자본과의 구별은 아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운데서, 양적으로 일정한 부분은 상인들끼리를 매개하는 것으로서도 소비자와 상인 사이를 매개하는 것으로서도 유통하며 따라서 그것은 이 두 기능에서 다같이 유통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투크의 견해에서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고 있다.

1) 기능의 규정들을 혼동함으로써 생기는 혼란.

2) 두 기능을 함께 늘면서 유통하는 화폐의 양에 관한 문제를 끌어들이므로써 생기는 혼란.

3) 두 기능을 늘면서,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두 분야에서 유통하는 유통수단의 분량호상간의 상대적 비율에 관한 문제를 끌어들이므로써 생기는 혼란.

1)에 대하여, 기능의 규정들을 혼동한 데 대하여 즉 화폐는 한 형태에서는 유통수단(currency)이고 다른 형태에서는 자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하여, 화폐가 이 기능 또는 저 기능을 노는 데 쓰이는 한에서는 즉 소득을 실현하거나 또는 자본을 넘겨주는 데 쓰이는 한에서는 그것은 사고 팔고 하는 데서나 또는 지불하는 데서 구매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서 또 넓은 의미에서는 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논다. 더 나아가서 화폐가 그것을 내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의 계산에서 가지는 규정 즉 화폐가 그에게서 자본을 표시하거나 소득을 표시한다는 규정은 이 점에는 절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사실은 또한 이중으로 나타난다. 두 분야에서 유통하는 화폐종류는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똑같은 단위화폐 예컨대 5파운드 은행권은 한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번갈아 두 기능을 다 수행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해서도 즉 소매상인은 그가 자기의 구매자에게서 받는 주화의 형태로만 자기의 자본에 화폐형태를 띠게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불가피하다. 본래의 보조주화는 소매업분야에서 주로 유통한다고 볼 수 있다. 소매상인은 보조주화를 끊임없이 거스름 돈으로 사용하며 또 그것을 손님들의 지불에서 끊임없이 회수한다. 그러나 그는 또한 가치척도인 화폐 즉 금속제 주화

를 받으며 따라서 영국에서는 파운드 스텔링짜리와 심지어는 은행권 특히 잔 금액의 은행권 즉 예컨대 5파운드짜리와 10파운드짜리 은행권을 받는다. 그는 이 금화와 은행권 및 여분의 보조주화를 매일 또는 매주일 자기의 은행에 예금하고 자기의 은행예금에 대한 수표로 그가 사들인 것의 값을 지불한다. 그러나 이 똑같은 금화와 은행권은 또한 끊임없이 소비자로서의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 의하여 그들의 소득의 화폐형태로서 은행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시 끌려나오며(예컨대 공장주들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잔돈을 끌어낸다) 또 끊임없이 소매상인에게로 되돌아간다. 그리하여 그것들은 이 소매상인들을 위하여 그들의 자본의 일부를,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소득의 일부도 새로 실현한다. 이 마지막 사정은 중요한데 투크는 이것을 전혀 놓치고 있다. 화폐가 화폐자본으로서 재생산과정의 시초에 지출될 때에만(『자본론』, 제2부, 제1편*) 자본가치는 순전히 자본가치로서 존재한다. 왜냐하면 생산된 상품 속에는 지출된 자본만이 아니라 이미 잉여가치도 들어 있기 때문이다. 상품은 잠재적인 자본일 뿐 아니라 이미 실현된 자본이며 소득원천이 합쳐져 있는 자본이다. 따라서 소매상인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화폐 대신에 내주는 그의 상품은 그에게서는 자본 더하기 이윤이며 자본 더하기 소득이다.

그리고 또 유통하는 화폐는 소매상인에게 되돌아감으로써 그의 자본의 화폐형태를 되살아나게 한다.

따라서 소득 유통으로서의 유통과 자본 유통으로서의 유통과의 구별을 유통수단과 자본의 구별로 전화하는 것은 전혀 그릇된 것이다. 투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그가 단순히 자체의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업자의 입장에 서 있기 때문이다. 끊임없이 일반 사람들의 손에 있으며 (늘 다른 은행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유통수단으로서 기능을 노는 그 은행업자의 은행권의 액은 그에게는 종이와 인쇄비 밖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은행권은 그 은행업자 자신 앞으로 발행한 유통하는 채무증권(어음)이지만 이것은 그에게 화폐를 가져다주며 그리하여 그의 자본의 가치를 늘이는 수단으로 된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신의

* 이 전집, 조문판, 제24권, 37~38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자본이건 곧 자본이건 간에 그의 자본과는 다르다. 따라서 그에게는 유통수단과 자본의 특수한 구별이 생겨난다. 그러나 이 구별은 이 개념들 자체의 의미와는, 더구나 투크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개념들의 의미와는 아무런 공통성도 없다.

화폐가 소득의 화폐형태로서 기능을 노는가 자본의 화폐형태로서 기능을 노는가 하는 화폐의 규정에서의 차이는 우선 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성격을 조금도 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화폐는 이 기능을 놓진 저 기능을 놓진 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쨌든 화폐는 그것이 소득의 화폐형태로서 나타날 때에는 본래의 유통수단(주화, 구매수단)으로서 더 많이 기능을 논다. 그것은 구매와 판매가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며 또 소득을 지출하는 사람들의 대다수인 노동자들은 신용으로 쓸 수 있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유통수단이 자본의 화폐형태를 이루는 상업계의 거래에서는 부분적으로 [자본의] 집적 때문에, 또 부분적으로는 우세한 신용체계 때문에 화폐는 주로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논다. 그러나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와 구매수단(유통수단)으로서의 화폐와의 구별은 화폐 자체에 있는 구별이지 화폐와 자본의 구별은 아니다. 소매상업에서는 동화와 은화가 더 많이 유통하고 도매상업에서는 금화가 더 많이 유통한다고 하여 은화 및 동화를 한편으로 하고 금화를 다른 편으로 하는 이 양자간의 구별이 유통수단과 자본의 구별인 것은 아니다.

2)에 대하여, 두 기능을 함께 늘면서 유통하는 화폐의 양에 관한 문제를 끌어들인 데 대하여, 화폐가 구매수단으로서건 지불수단으로서건 유통하는 한에서는——이 두 분야 가운데서 어느 분야에서 유통하건 또 그 기능이 소득을 실현하건 자본을 실현하건 그와는 관계없이——유통하는 화폐량에 대해서는 전에 단순상품유통을 연구할 때에(『자본론』, 제1부, 제3장, 2, 1) 설명한 법칙이 들어맞는다. 유통속도, 따라서 일정한 기간에 똑같은 화폐가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 똑같은 기능을 되풀이 하는 횟수, 동시에 사고파는 따라서 지불되는 양, 유통되는 상품의 가격 총액, 끝으로 똑같은 기간에 청산되어야 할 지불차액——이 모든 것이 두 경우에 다 유통하는 화폐 즉 통화(currency)의 양을 규정한다. 이렇

게 기능을 노는 화폐가 지불하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에게서 자본을 표시하는가 또는 소득을 표시하는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좋으며 이것으로 하여 사태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는다. 화폐의 양은 단순히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의 그 기능에 의하여 규정된다.

3)에 대하여, 두 기능을 늘면서 따라서 재생산과정의 두 분야에서 유통하는 유통수단의 분량호상간의 상대적 비율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두 유통분야에는 내적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지출해야 할 소득의 양은 소비의 크기를 나타내며 다른 편으로는 생산과 상업에서 유통하는 자본량의 크기는 재생산과정의 크기와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사정이 두 기능 또는 두 분야에서 유통하는 화폐량에 대해서는 또는 영국사람들이 자기네 은행용어로 말하는 유통의 양에 대해서는 각각 다르게 작용하며 심지어는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기까지 한다. 그리하여 이것이 투크에게 유통수단과 자본을 어리석게 갈라놓게 하는 새로운 구실로 된다(화폐학파*의 양반들이 서로 다른 두 사물을 혼동한다는 사정이 결코 그 사물들을 서로 다른 개념들로 서술하기 위한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재생산과정이 크게 팽창하고 촉진되며 약동하는 번영기에는 노동자들은 완전히 취업한다. 대체로 임금도 오르며 상업순환의 다른 시기에 평균수준 이하로 임금이 떨어진 것이 어느 정도 메워진다. 동시에 자본가의 소득도 많이 늘어난다. 소비는 전반적으로 늘어난다. 상품가격도 적어도 주요한 사업부문들에서는 정해놓고 오른다. 따라서 유통하는 화폐의 양은 적어도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늘어나는데 그것은 유통속도가 빨라지면 유통수단의 양이 늘어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사회적 소득 가운데서 임금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은 원래 산업자본가가 가변자본의 형태로 따라서 언제나 화폐형태로 선대하기 때문에 번영기에는 이 부분이 유통하는 데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화폐를 두 번 즉 한 번은 가변자본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로서 또 한 번은 노동자의 소득의 유통에 필요한 화폐로서 계산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들에게 임금으로 지불되는 화폐는 소매거래에 지출되며 그리하여 작은 순환들에서 여러 가지 중간거래를 매개한 다음에 소매상인의 예금으로서 대체로

매주일 은행에 되돌아간다. 번영기에는 산업자본가들에게 화폐가 순조롭게 돌아가며 그리하여 그들이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들의 가변자본의 유통에 더 많은 화폐가 필요하다고 하여 화폐를 유통할 그들의 필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 결과는 번영기에는 소득을 지출하는 데 쓰일 유통수단의 양이 훨씬 많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을 넘겨주는 데 필요한 유통, 따라서 자본가들 자신 사이에서만 필요한 유통에 관하여 말한다면 경기가 좋은 시기는 동시에 신용이 아주 신축성이 있고 또 신용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시기이다. 자본가와 자본가 사이의 유통속도는 직접 신용에 의하여 조절되며 따라서 지불을 청산하는 데 필요한 유통수단의 양은 물론이고 현금으로 사는 필요한 유통수단의 양도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이 양은 절대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는 재생산과정이 팽창된 데 비하면 어떠한 사정에서도 줄어든다. 한편으로는 비교적 많은 액의 지불이 화폐의 매개가 전혀 없이도 청산되며 또 한편으로는 재생산과정이 매우 활기를 띠게 되어 구매수단으로서도 지불수단으로서도 똑같은 화폐량의 움직임이 빨라진다. 똑같은 양의 화폐에 의하여 더 많은 수의 개별적 자본들이 되돌아오게 된다.

대체로 이러한 시기에는 화폐의 유통은 충분한(full) 것으로 나타난다. 비록 첫째 부분(소득의 지출)은 절대적으로 늘어나는데 둘째 부분(자본의 양도)은 적어도 상대적으로는 줄어들지만 말이다.

화폐가 되돌아오는 것은 재생산과정을 살펴보면서(『자본론』, 제2부, 제1편) 이미 본 바와 같이 상품자본이 화폐로 다시 전화되는 $G-W-G'$ 를 표시한다. 화폐형태로 되돌아오는 것은 신용으로 하여 산업자본가의 경우나 상인의 경우나 실지로 되돌아오는 때와는 관계가 없게 된다. 산업자본가나 상인은 각각 신용으로 판다. 따라서 그들의 상품은 그들을 위하여 화폐로 다시 전화되기 전에 즉 그들 자신에게 화폐형태로 되돌아오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다. 또 한편 그들은 모두 신용으로 사며 따라서 그들의 상품의 가치는 그것이 실제 화폐로 전화되기 전에 기한이 되어 상품가격이 지불되기 전에 그들에게서 생산자본으

로이건 상품자본으로이건 다시 전화된다. 그러한 번영기에는 자본은 쉽고 순조롭게 되 돌아온다. 소매상인은 도매상인에게, 도매상인은 공장주에게, 공장주는 원료공급자에게 등으로 기일 안에 정확히 지불한다. 자본이 빨리 또 확실하게 되 돌아오는 것 같은 외관은 실지로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된 다음에도 오랫동안 일단 진행되고 있는 신용으로 하여 유지되는데 그것은 신용에 의하여 되 돌아오는 것이 실지로 되 돌아오는 것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자기 고객들이 화폐보다도 어음으로 더 많이 물게 되자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위에서 든——398페이지*——리버풀 은행 중역의 증언을 보라.

내가 전에 지적한 것을 여기에 또 끼워넣어야 하겠다.

“신용이 유행하는 시기에는 화폐의 유통속도가 상품가격이 오르는 속도보다 더 빨라지는데 신용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상품가격이 화폐의 유통속도보다 더디게 떨어진다”(『정치경제학비판』, 베를린, 1859년, 83, 84페이지). **

공황기에는 형편이 반대로 된다. 유통 I 은 줄어들고 물가는 떨어지며 임금도 또한 떨어진다. 취업노동자수는 줄어들고 거래량이 줄어든다. 이와는 반대로 유통 II 에서는 신용이 줄어드는 데 따라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곧 더 자세하게 논하려고 한다.

재생산과정이 정체되면 신용도 줄어드는데 이렇게 되면 소득의 지출인 I 에 드는 유통수단의 양은 줄어들지만 자본의 양도인 II 에서는 그것이 늘어난다는 것은 조금도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이 명제가 플라톤과 또 다른 사람들이 내세운 다음과 같은 명제와 어느 정도로 같은가 하는 것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와 추가적 유통수단에 대한 수요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이것들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일은 흔하지 않다.”⁹⁰⁾

* 이 책 497 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 이 전집, 노문판, 제13권, 88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우선 명백한 것은 위에서 든 두 경우의 첫째 경우에서 유통하고 있는 유통수단의 양이 늘어나지 않을 수 없는 변영기에는 유통수단에 대한

- 90) "A demand for capital on loan and a demand for additional circulation are quite distinct things, and not often found associated" (플라톤, 『통화의 조절』, 런던, 1845년, 82페이지, 제5장의 표제). "화폐유통에 대한(즉 자본의 대부에 대한) 수요가 추가적 유통수단에 대한 수요와 같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이 두 가지가 흔히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큰 잘못이다. 이 개개 수요는 자체에 고유한 사정에서 생겨나는 것이며 서로 매우 다른 것이다. 모든 것이 변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이 높으며 물가가 오르고 또 공장들이 분망할 때에는 추가적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통 유통수단의 추가적 공급이 필요한데 이 추가적 기능들은 지불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는 필연성과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주로 상업순환의 그후 단계에서, 여러 가지 곤란이 나타나기 시작할 때, 시장에 상품이 차넘치고 되돌아오는 것이 지연되는 때에는 이자가 오르며, 자본을 선대받으려는 요구가 은행에 강하게 제기된다. 은행은 보통 자본을 선대하는 데 자체의 은행권으로 하는 외에 다른 수단이 없으며 따라서 은행권의 발행을 거절한다는 것은 융자를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다. 그러나 일단 융자가 승인되면 모든 것은 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진행된다. 대부는 그대로 남아 있고 유통수단은 쓰이지 않을 때에는 그 유통수단은 발행자에게 되돌아온다. 따라서 의회보고를 열핏 보기만 하여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지만 잉글랜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액은 흔히 그 은행권 유통액과 일치하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따라서 이 대은행의 실례도 지방은행업자들이 체험한 다음과 같은 규칙을 확증하여 준다. 즉 어떠한 은행도 수요——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통 은행권이 유통된다——의 한계를 넘어서 자체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그러나 은행이 이 한계를 넘어서 선대하려 한다면 자체의 자본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그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일부를 팔거나 또는 받아들인 화폐를——다른 경우라면 그것을 유가증권에 투하하였을 것이지만——이를 위하여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칙을 확증하여 준다. 내가 이전의 한 페이지에서 인용한 바 있는, 1833~1840년간의 의회보고에 의하여 작성된 표는 이 진리를 확증하여 주는 실례들을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실례들 가운데서 두 가지는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어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다. 1837년 1월 3일, 신용을 유지하며 화폐시장의 곤란에 대처하기 위하여 잉글랜드 은행의 자금이 극도로 긴장되었을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명백한 것은 한 공장주가 더 많은 자본을 화폐형태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은행에 있는 자기의 돈자리에서 더 많은 금이나 은행권을 끌어낸다고 하여 그 때문에 자본에 대한 그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그가 자기의 자본을 지출하는 이 특수한 형태에 대한 그의 수요가 늘어날 따름이라는 것이다. 수요는 다만 그가 자기의 자본을 유통에 던져넣는 기술적 형태와만 관련되어 있다. 이것은 예컨대 신용의 발전이 각각 다른 경우에 똑같은 가변자본, 똑같은 양의 임금이 한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보다도 더——예컨대 잉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보다도 더, 독일에서는 잉글랜드에서보다도

때 대부와 할인에 의한 이 은행의 선대액이 17,022,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엄청난 금액에 이른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금액은 전쟁 이래 가장 높은 것이며 그 동안에 17,076,000파운드 스텔링이라는 낮은 수준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던 은행권 발행 총액과 같은 것이다! 한편 또 1833년 6월 4일에는 은행권 유통액이 18,892,000파운드 스텔링인데 은행이 가지고 있는 사적인 유가증권액은 972,000파운드 스텔링을 넘지 않으며 이것은 최근 반세기 동안의 가장 낮은 숫자는 아니더라도 이에 가까운 숫자이다!”(폴라톤, 같은 책, 97, 98페이지).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demand for pecuniary accomodation)가 월슨, 투크 등이 자본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수요(demand for gold)와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잉글랜드 은행총재 웨젤린 씨의 다음과 같은 증언에서 알 수 있다. 이 금액(3일 동안 계속 매일 100만의)을 넘지 않는 어음을 할인해 주어도 만약 일반 사람들이 보다 많은 액의 실제로 돌아가는 유통수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예비액(은행권의)은 줄지 않을 것이다. 어음 할인으로 발행된 은행권은 은행들을 거쳐 또 예금에 의하여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한 거래들이 금의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또는 국내에서 일반 사람들이 자기의 은행권을 은행에 물어넣지 않고 내놓지 않는 것과 같은 파국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비액은 그러한 막대한 거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잉글랜드 은행은 매일 150만을 할인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가면서도 은행의 예비액은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은행권은 예비금으로서 되돌아오며 여기에서 유일하게 달라지는 것은 다만 한 돈자리에서 다른 돈자리로 넘어가는 것뿐이다”(『은행권에 관한 보고』, 1857년, 증언 제241, 500호).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은행권은 신용이 넘어가는 수단으로서 쓰일 따름이다.

더——많은 양의 유통수단을 필요로 하는 것과 똑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촌경리에서는 재생산과정에서 활동하는 똑같은 자본이 자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화폐량은 계절이 다름에 따라 서로 다르다.

그러나 플라톤이 들고 있는 것과 같은 대답은 옳지 않다. 그가 말하고 있다시피 정채기와 번영기는 대부에 대한 큰 수요로 하여 구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 수요가 번영기에는 쉽게 충족되며 불경기에 들어가서는 그 충족이 어렵다는 것으로 하여 구별되는 것이다. 정채기에 신용에 쪼들리게 되는 것은 바로 번영기에 신용체계가 방대하게 발전한 탓이며 따라서 또 대부자본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컸던 탓이며 또 그러한 시기에 대부자본이 수월하게 제공된 탓이다. 따라서 두 시기를 특징짓는 것은 대부에 대한 수요가 많은가 적은가 하는 차이가 아니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 시기는 무엇보다 먼저 번영기에는 소비자와 상인 사이의 유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우세하며 침체기에는 자본가들 사이의 유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우세하다. 침체기에는 첫째 수요는 줄어들고 둘째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데 플라톤과 또 다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잉글랜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securities)——대부 담보물과 어음——액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이 은행의 은행권 유통액은 줄어들며 또 반대의 경우에는 그 반대로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가증권액은 화폐유통——할인하여 준 어음과 그리고 잘 팔리는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선대——의 크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플라톤은 위에서 인용한 곳(주 90, 435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즉 잉글랜드 은행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securities)액은 대체로 그 은행권 유통액과 반대방향으로 변동하는데 이것은 개인은행들이 체험한 규칙 즉 어떠한 은행도 자기 고객들의 수요에 의하여 규정되는 일정한 액을 넘어서 자기 은행권을 발행할 수 없으며 만약 은행이 이 액을 넘어서 선대하려고 한다면 자체의 자본에서 하지 않으면 안되며 따라서 유가증권을 팔거나 또는 받아들인 화폐를——다른 경우라면 그것을 유가증권에 투하

* 이 책 544 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하였을 것이지만——이를 위하여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 규칙을 확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플라톤이 자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자본이란 무엇인가? 잉글랜드 은행은 물론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지불증서인 자기 자체의 은행권으로는 디는 선대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은행은 무엇으로써 선대하는가? 이 은행은 예비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 즉 국가증권, 주식과 그 밖의 이자붙는 유가증권을 팔아얻은 대금으로 선대한다. 그런데 이 은행은 이 증권들을 팔아 무엇을 얻는가? 화폐 즉 금이나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법적 지불수단인 한에서의 은행권들이다. 따라서 이 은행이 선대하는 것은 어쨌든 화폐이다. 그런데 이제 이 화폐는 이 은행의 자본의 한 부분을 이룬다. 이 은행이 금을 선대한다면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명백하다. 은행권들을 선대한다면 이제는 이 은행권들이 자본을 표시한다. 왜냐하면 이 은행은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실제적인 가치를, 이자붙는 증권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개인은행들에서는 유가증권을 판매함으로써 흘러들어오는 은행권들이 대부분 오직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이거나 자기 자체의 은행권일 수 있다. 왜냐하면 다른 은행권들은 유가증권의 지불에서는 거의 접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 자체가 그렇게 한다면 이 은행이 자기 자체의 은행권을 회수하는 데는 자본이 즉 이자붙는 증권이 든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은행은 유통에서 자기 자체의 은행권을 끌어낸다. 따라서 이 은행이 이 은행권을 다시 발행하거나 이 은행권 대신에 같은 액만큼의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한다면 그 은행권은 이제는 자본을 표시한다. 그것도 그 은행권은 그것이 자본가들에게 선대되는 경우이나 또는 그것이 후에 그러한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가 줄 때에 유가증권을 얻는 데 다시 사용되는 경우이나 다같이 자본을 표시한다. 이 모든 경우에 자본이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다만 은행업자들이 의미하는 대로만 쓰이고 있으며 은행업자가 자기의 단순한 신용보다도 많은 액을 쥐주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다시피 잉글랜드 은행은 자기의 모든 선대를 자기의 은행권으로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 유통액은 보통 이 은행

이 가지고 있는 할인어음과 대부 담보물이 늘어나는 데 따라, 따라서 이 은행의 선대액이 늘어나는 데 따라 줄어든다면 유통하고 있는 은행권은 어떻게 되며 그것은 이 은행으로 어떻게 되돌아오는가?

무엇보다 먼저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가 국민적 수지균형의 적자 때문에 생겨나고 따라서 금이 흘러나가게 된다면 사태는 매우 간단하다. 어음은 은행권으로 할인된다. 은행권은 잉글랜드 은행 자체의 발행부에서 금과 교환되고 그 금은 수출된다. 이것은 마치도 잉글랜드 은행이 어음을 할인할 때에 은행권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금을 지불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와 같은 수요의 증가——어떤 경우에는 700만 내지 1,000만 파운드 스텔링에 이르는——는 물론 국내유통에는 단 한 장의 5파운드 은행권도 더 불어나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우에 잉글랜드 은행은 자본을 선대하는 것이지 유통수단을 선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첫째로는 이 은행이 선대하는 것은 신용이 아니라 실제적인 가치이며 이 은행 자체의 또는 이 은행에 맡겨진 자본의 일부라는 것이다. 둘째로는 이 은행이 선대하는 것은 국내유통을 위한 화폐가 아니라 국제유통을 위한 화폐 즉 세계화폐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화폐는 언제나 퇴장화폐의 형태로, 금속이라는 구체성을 띠고, 가치의 형태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퇴장화폐를 자체의 화폐형태로 삼는 가치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 금은 잉글랜드 은행에 대해서도 금을 수출하는 상인에 대해서도 자본 즉 은행자본 또는 상인자본을 표시하지만 금에 대한 수요는 자본에 대한 수요로서가 아니라 화폐자본의 절대적 형태에 대한 수요로서 생긴다. 이 수요는 바로 외국시장들이 실현되지 않은 영국의 상품자본으로 차 있는 순간에 생긴다. 따라서 이 경우에 요구되는 것은 차본으로서의 자본이 아니라 세계시장의 일반적 상품의 형태인 화폐로서의 자본이다. 그리고 이것은 귀금속으로서의 화폐의 원래의 형태이다. 따라서 금이 흘러나간다는 것은 폴라톤, 투크 등이 말하듯이 단순한 자본문제가 아니라 화폐문제——특수한 기능을 하는 화폐문제이기 는 하지만——이다. 그것이 화폐학파의 대표자들이 주장하듯이 국내유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그것이 폴라톤과 그 밖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단

순한 자본문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은 국제적 지불수단의 형태를 띤 화폐문제이다.

“이 자본(국내의 홍작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사들인 수백만 킬터의 밀의 가격)을 상품으로 보내는가 화폐로 보내는가 하는 것은 거래의 본성에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플라톤, 같은 책, 131페이지).

그러나 이것은 금이 흘러나가는가 안나가는가 하는 문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 자본은 귀금속의 형태로 보내는데 그것은 자본을 상품형태로는 전혀 보낼 수 없거나 또는 보낸다 하여도 매우 큰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근대적 은행제도가 금이 흘러나가는 데 대하여 느끼는 불안은 귀금속이 유일하게 진정한 재부라고 보는 중금주의의 대표자들이 한때 몽상하던 모든 것을 훨씬 넘고 있다. 예컨대 1847~1848년 공황에 관한 의회위원회에서 한 잉글랜드 은행총재 모리스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들어보자.

(제3846호, 질문:) “내가 재고품(stocks)과 고정자본의 가치가 줄어들었다고 말할 때에 모든 종류의 재고품과 생산물에 지출된 모든 자본이 같은 방식으로 그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것, 그리고 목화나, 명주실이나 양털을 똑같은 헐값으로 대륙으로 보냈다는 것, 그리고 사탕, 커피, 차가 경매되는 경우와 같이 큰 손해를 보면서 팔렸다는 것을 당신들은 모르고 있는가?” “식료품을 많이 수입한 결과에 금이 흘러나가는 데 대처하기 위하여 이 나라가 상당한 희생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은 불가피하였다.” (제3848호) “그러한 희생을 내면서 금을 회수하려 하기보다는 잉글랜드 은행의 금고 속에 있는 800만파운드 스텔링에 손을 대는 것이 더 좋았으리라고 당신은 생각하지 않는가?” “아니다. 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오로지 금만이 실제적인 재부라고 보고 있다.

플라톤이 인용한 투크의 다음과 같은 발견 즉

“만족할 만한 설명을 할 수 있게 하는 한두 개의 예외를 제쳐놓는다면 최근

반세기 동안에 환자시세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이에 따라 금이 흘러나간 것은 모두 유통수단의 비교적 낮은 상태와 완전히 일치하였고 반대의 경우에는 결과도 반대였다”(플라톤, 121페이지).

라는 발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즉 이렇게 금이 흘러나가는 것은 대개 활기증진과 투기시기 후에

“이미 시작된 붕괴의 신호로서 나타나며 시장에 상품이 차넘치고 우리 나라의 제품에 대한 외국의 수요가 줄어들며 회수가 늦어지는 표시로서 나타나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필연적 결과는 상업에서는 불신임, 공장의 폐쇄, 노동자들의 기아, 산업과 기업의 전반적 침체이다”(129페이지).

이것은 물론 동시에 화폐학파의 대표자들의 주장 즉 마치

“유통수단이 충분하면 금이 흘러나가고 유통수단이 적으면 금이 흘러들어온다.”

는 주장에 대한 가장 훌륭한 논박이다.

이와는 반대로 잉글랜드 은행에는 대개 번영기에 방대한 금예비가 있지만 이 예비는 언제나 번영기에 뒤따르는 침체와 불경기시기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금이 흘러나가는 것과 관련된 모든 현명한 논의는 결국 다음과 같다. 즉 국제적 유통수단 및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는 국내적 유통수단 및 지불수단에 대한 수요와 다르다는 것(따라서 또한 자연히 플라톤이 112페이지에서 말하고 있듯이 “흘러나간다는 것은 유통수단에 대한 국내적 수요가 반드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귀금속을 국외로 내보내는 것 즉 그것을 국제적 유통에 내보내는 것은 은행권이나 주화를 국내적 유통에 던져넣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으로 된다. 어쨌든 내가 이미 전에 명백히 한 바와 같이 국제적 지불을 위한 예비금으로서 집적된 퇴장화폐의 운동은 유통수단으로서

의 화폐운동과는 절대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 물론 이 경우에는 내가 화폐의 본성에서 끌어낸 퇴장화폐의 여러 가지 기능 즉 국내에서 기한이 된 지불을 위한 지불수단의 예비금으로서의 기능, 유통수단의 예비금으로서의 기능, 끝으로 세계화폐의 예비금으로서의 기능, 이 모든 기능을 단 하나의 예비금이 맡게 되어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데 그렇게 맡게 되기 때문에 또한 일정한 사정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에서 국내로 금이 흘러나가는 것과 국외로 흘러나가는 것이 결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한 이 퇴장화폐가 완전히 자의적으로 맡게 되는 또 하나의 기능 즉 신용체제와 신용화폐가 발전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은행권을 바꾸어주는 것을 보증하는 밀천으로 된다는 기능으로 하여 문제는 더 복잡하게 된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다음과 같은 것이 덧붙는다. 즉 1) 유일한 중앙은행에 전국적 예비금이 집중된다는 것. 2)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한으로 이 예비금을 줄인다는 것. 플라톤의 다음과 같은 하소연도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다(143페이지).

“영국에서는 잉글랜드 은행의 금예비가 거의 없어져간다고 보일 때마다 그야말로 매우 불안하고 소란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에 비하여 대륙의 나라들에서는 환자시세의 변동이 보통 매우 조용히 쉽게 지나가는 것을 볼 때 이 점에서 금속통화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금이 흘러나가는 것을 제쳐놓는다면 은행권을 발행하는 은행, 따라서 예컨대 잉글랜드 은행은 자기의 은행권 발행액을 늘이지 않고 어떻게 그가 제공하는 화폐유통액을 늘일 수 있겠는가?

은행 밖에 있는 모든 은행권은 그것이 유통하고 있건 개인들의 금고 속에서 잠자고 있건 이 은행 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유통하고 있으며 즉 그의 소유 밖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은행이 자기의 할인과 저당대부 즉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선대를 늘인다면 그 때문에 발행된 은행권은 이 은행으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 이 전집 제23권, 조문판, 제1분책, 174~176페이지를 보라. 편집부

그 은행권은 유통액을 늘이는데 바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 돌아오는 것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첫째로 은행은 유가증권을 받고 A에게 은행권을 지불한다. A는 이것으로 B에게 기한이 다 된 어음을 지불하고 B는 그 은행권을 다시 이 은행에 예금한다. 이 은행권의 유통은 이것으로 끝나지만 대부는 남아 있다.

“대부는 남아 있으며 그리고 유통수단은 그것이 필요없게 되면 그 발행자에게로 되 돌아온다”(플라톤, 97페이지).

은행이 A에게 선대한 은행권은 이제는 이 은행에 되 돌아왔다. 그런데 은행은 A의 채권자 또는 A가 할인받는 어음의 지불인의 채권자이며 그리고 이 은행권으로 표시된 가치액만큼 B의 채무자이다. 따라서 B는 은행의 자본 가운데서, 해당한 부분을 지배한다.

둘째로 A는 B에게 지불하고 B 자신 또는 B에게서 다시 은행권을 지불받는 C는 이 은행권으로 기한이 된 어음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은행에 지불한다. 이 경우에 은행은 그 자체의 은행권으로 지불을 받았다. 그리하여 거래는 이것으로 끝난다(A가 은행에 상환할 때까지에는).

그러면 A에 대한 은행의 선대는 어느 정도까지 자본의 선대로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까지 단순한 지불수단의 선대로 볼 수 있는가?⁹¹⁾

(이 점은 선대 자체의 본성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세 경우를 연구해야 한다.

첫째 경우, A는 아무런 담보도 제공하지 않고 개인신용으로 은행에서 선대금을 받는다. 이 경우에 그는 지불수단을 선대받을 뿐 아니라 또한

91) 원문에서 이 다음 문장들은 그대로는 연계가 잘 이해되지 않으므로 그 다음 대괄호의 마지막까지는 편집자가 새로 고쳐 쓴 것이다. 다른 곳에서 또 이러한 연계문제는 이미 제26장(이 책 519~521페이지)에 언급되어 있다.—F. E.

무조건 새로운 자본도 선대받는데 그는 반환할 때까지 이 자본을 자기 사업에서 추가자본으로서 이용하고 증식시킬 수 있다.

둘째 경우, A는 은행에 유가증권 즉 국채증권이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예컨대 빚가의 3분의 2까지의 현금선대를 받았다. 이 경우에 그는 자기에게 필요한 지불수단을 받았으나 아무런 추가자본도 받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은행에서 받은 것보다 더 큰 자본가치를 은행에 내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큰 자본가치는 한편으로는 이자불는 일정한 형태에 투하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면하여 그에게 필요한 지불수단으로는 이용될 수 없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A는 그것을 팔아 직접 지불수단으로 전화해서는 안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 유가증권은 특히 예비자본으로서 기능을 놀 사명이 있었으며 그리하여 그는 유가증권을 바로 그러한 예비자본으로서의 기능을 놀게 하였다. 따라서 A와 은행 사이에서는 일시 서로 자본의 양도가 있었으며 A는 아무런 추가자본도 받지 않았으나(반대이다!) 물론 그에게 필요한 지불수단은 받았다. 그런데 은행은 이 거래는 화폐자본을 대부형태로 일시 고착시켰으며 화폐자본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전화시켰는데 이 전화야말로 은행업무의 본질적 기능인 것이다.

세째 경우, A는 은행에서 어음을 할인하여 받고 할인료를 뺀 나머지 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 경우에 그는 유동적이 아닌 형태의 화폐자본을 은행에 팔아 유동적 형태의 가치액을 받았으며 또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어음을 팔아 현금을 얻었다. 어음은 이제 은행의 소유물이다. 이 사실은 어음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으로 양도수표를 한 A가 그 금액에 대하여 은행 앞에 책임진다고 하여 조금이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책임을 그는 다른 양도수표자들 및 어음발행자와 함께 지게 된다. 이들에 대하여 그도 또한 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아무런 선대도 진행되지 않으며 여느 구매와 판매나 전혀 다름없는 것이 진행된다. 그러므로 A는 은행에 아무것도 상환할 필요는 없으며 은행은 지불기한이 되면 어음에서 들어오는 돈으로 지출을 메운다. 이 경우에도 A와 은행 사이에서는 서로 자본의 양도가——그것도 다른 모든 상품을 사고파는 때와 똑같은——있었으며 바로 그렇기 때문

에 A는 아무런 추가자본도 받지 않은 것이다. 그에게 필요하였고 또 그가 받은 것은 지불수단이었다. 그리고 그가 지불수단을 받은 것은 은행이 그에게 그의 화폐자본의 한 형태인 어음을 다른 형태인 화폐로 전화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자본선대가 문제로 될 수 있는 것은 첫째 경우만이다. 둘째 경우와 세째 경우에는 기껏하여 어떠한 자본지출에서도 자본을 선대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만 자본선대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은행은 A에게 화폐자본을 선대한다. 그러나 A의 경우에 그것이 화폐자본으로 되는 것은 기껏하여 그것이 그의 자본 일반의 한 부분이라는 의미에서이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본래의 자본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지불수단으로서 받으며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불수단을 마련하는 여느 어떠한 상품판매도 다 자본을 선대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F. E.}

은행권을 발행하는 개인은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즉 그 은행의 은행권이 지방적 유통에 남아 있지도 않고 또 예금형태로나 기한이 된 어음의 상환으로 그 은행 자체에 되돌아오지도 않는다면 이 은행권은 이 개인은행에서 그것과 교환으로 금이나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을 지불받지 않으면 안되는 사람들의 손에 들어간다. 그리하여 이 경우에는 이 개인은행의 은행권의 선대는 사실상 잉글랜드 은행의 은행권의 선대 또는 이 은행으로 보면 같은 것이지만 금의 선대를 대표하며 따라서 그 은행의 은행자본의 한 부분을 대표한다. 잉글랜드 은행 자체나 은행권 발행의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다른 어떤 은행이건 그 자체의 은행권을 유통에서 회수하며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선대하여 내주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을 팔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경우에는 이 은행들 자체의 은행권은 이 은행들의 동원된 은행자본의 한 부분을 대표한다.

유통수단이 순금속인 경우에도 1) 금이 흘러나감으로써(여기에서는 금이 적어도 부분적으로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명백하다 —F. E.) 금고가 텅 빌 수 있으며 동시에 2) 금은 주로 지불을 결제(지나간 거래의 청산)하기 위해서만 은행에 요구될 것으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한 이 은행의 선대는 매우 늘어날 수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예금의 형태로나 기한이 된 어음의 상환으로 이 은행에 돌아올 것이다. 그리하여 한편으로 잉글랜드 은행의 서류함에 유가증권의 양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이 은행의 전체 퇴장화폐는 줄어들 것이며 또 한편 이 은행은 그가 전에는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금액을 이제는 그의 예금자들의 채무자로서 가지고 있게 될 것이며 끝으로 유통수단의 총량은 줄어들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선대는 은행권으로 실시되며 따라서 적어도 은행권 발행액이 일시 늘어난다는 것을——즉시로 다시 줄어드는 하지만——전제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은 은행권 대신에 A에게 장부상의 신용을 더 줄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 은행의 채무자인 A는 이 은행의 가상적인 예금자로 된다. A는 자기의 채권자에게 은행 앞으로 발행하는 수표로 지불하고 이 수표를 받은 사람은 이것을 다시 자기의 은행업자에게 지불하며 이 은행업자는 이것을 어음교환소에서 자기 앞으로 발행된 수표와 교환한다. 이 경우에는 은행권이 전혀 끼어들지 않으며 전체 거래는 이 은행이 행사해야 할 청구권이 이 은행 자체 앞으로 발행된 수표로 결제되고 이 은행의 실제적인 보상은 A에 대한 신용청구권에 있다는 사실에 그친다. 이 경우에 이 은행은 A에게 자기의 은행자본의 한 부분을 선대하였는데 그것은 자기 자체의 채권을 선대하였기 때문이다.

화폐유통에 대한 이 수요가 자본에 대한 수요인 한에서 그것은 다만 화폐자본에 대한 은행업자의 입장에서 본 자본에 대한 수요 즉 금에 대한——외국으로 금이 흘러나가는 경우——또는 국립은행의 은행권에 대한 수요일 따름인데 이 국립은행의 은행권은 개인은행으로서는 동가물을 주고 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은행으로서는 자본을 표시한다. 또는 끝으로 금이나 은행권을 얻기 위하여 팔지 않으면 안되는 이자불는 유가증권인 국가증권, 주식 등이 문제라고 하자. 그런데 이 유가증권이 국가증권인 경우에는 이 국가증권을 산 사람에게만 그것이 자본이며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이 국가증권이 그의 구매가격을, 그 증권에 지출된 그의 자본을 대표한다.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자본

도 아니며 하나의 단순한 채권이다. 그것이 토지저당증서라면 그것은 앞으로 지대를 받을 수 있는 단순한 증명서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이 주식이라면 그것은 앞으로 잉여가치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단순한 소유명의에 지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은 실제적인 자본도 아니며 자본의 아무런 구성부분도 아니며 또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또 이러한 거래들에 의하여 은행에 속하는 화폐는 예금으로 전화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이 은행은 그 화폐의 소유자가 아니라 채무자로 되며 다른 명의에 근거하여 화폐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이 은행 자체로서는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하여 국내에 있는 예비자본, 심지어는 화폐자본의 양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본은 다만 화폐자본으로서만 나타나며 그것이 실제적인 화폐형태로 있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한 자본명의로 나타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은행자본이 부족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이 실제적 자본이 줄어든 것과 혼동되기 때문인데 실제적 자본은 이러한 경우에 오히려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형태로 남아돌아가며 시장을 압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통수단의 총량은 의연 같거나 줄어드는 조건에서 어떻게 은행이 담보로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의 양이 늘어날 수 있으며 따라서 또한 은행이 더욱더 늘어나는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간단히 설명된다. 그런데 바로 화폐가 부족되는 이러한 시기에는 이 유통수단의 총량은 다음과 같이 이중으로 제한을 받는다. 즉 1) 금이 흘러나감으로 하여 2) 단순한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로 하여 제한을 받는데 이 둘째 경우에는 발행된 은행권이 곧 되돌아오거나 또는 은행권을 전혀 발행하지 않고 은행의 장부상의 신용에 의하여 거래가 처리되며 따라서 단순한 신용거래에 의하여 지불——그 지불의 청산이 거래의 유일한 목적이다——이 매개된다. 화폐가 다만 지불들을 결제하기 위해서만 기능을 노는 경우에(그런데 공황기에 선대를 받는 것은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불하기 위해서이며 새로 거래를 시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나간 거래를 청산하기 위해서이다) 화폐의 유통량은 보잘 것 없으며 그것은 심지어 이 결제가 순 신용조작에

의해서 뿐 아니라 화폐가 일정하게 참가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도 보잘 것 없으며 따라서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가 큰 경우에도 유통수단을 늘이지 않고 방대한 양의 이 거래들이 실시될 수 있다는 것은 화폐의 특성이자다. 그러나 잉글랜드 은행이 제공하는 화폐유통이 크게 늘어나는 동시에 이 은행의 은행권의 유통액은 의연 그대로이거나 줄어들기까지 한다는 단순한 사실은 명백히 폴라톤, 투크 등이(화폐유통을 대부자본 capital on loan, 추가자본을 꾸는 것과 같이 보는 그들의 오류로 하며) 생각하고 있듯이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노는 화폐(은행권)의 유통이 늘어나지 않고 넓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매수단으로서의 은행권의 유통은 그러한 큰 유통이 요구되는 사업의 정체기에는 줄어드는 만큼 지불수단으로서의 그것의 유통은 늘어날 수 있지만 유통수단의 총액, 구매수단과 지불수단으로서 기능을 노는 은행권의 총액은 의연 그대로이거나 심지어 줄어들 수도 있다. 발행하는 은행으로 곧 되돌아가는 은행권이 지불수단으로서 유통하는 것은 그 경제학자들의 눈에 전혀 유통이 아닌 것이다.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유통이 늘어나는 정도가 구매수단으로서의 화폐유통이 줄어드는 정도보다 높다면 구매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노는 화폐량이 어지간히 줄어든다 하더라도 총유통액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공황의 일정한 순간에는 즉 신용이 완전히 붕괴된 경우에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품과 유가증권을 팔 수 없을 뿐 아니라 어음도 할인받을 수 없으며 현금지불 또는 상인이 말하는 카싸(kassa) 밖에는 아무 것도 통용되지 않는다. 폴라톤 등은 지불수단으로서의 은행권의 유통이 그러한 화폐기근시기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은 이러한 현상을 우연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권을 가지려는 치열한 경쟁의 실례들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파국시기의 특징이며 또 때로는 1825년 말과 같이 금이 계속 흘러나가도 갑자기——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지만——발행액을 늘이게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실례들을 낮은 환율시세에 따르는 자연적 또는 필연적 현상의 하나로 볼 수는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한 경우의 수요는 유통수단(구매수단으로서의 유통수단

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에 대한 수요가 아니라 퇴장화폐에 대한 수요이며, 금이 오랫동안 흘러나간 다음에 공황의 마지막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생기는, 크게 놀란 은행업자와 자본가들 편에서의(따라서 지불수단의 예비로서의) 수요이며 금이 흘러나가는 것이 끝나는 징조이다(플라톤, 같은 책, 130페이지).

지불의 연쇄가 갑자기 끊어지는 경우에 화폐가 상품에 맞서 어떻게 가치의 순수한 관념적인 형태에서 가치의 물적인 그리고 동시에 절대적인 형태로 바뀌는가 하는 것은 이미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를 살펴볼 때에(『자본론』, 제1부, 제3장, 제3절, 1) 이미 설명하였다. 거기에서 이에 대한 몇 가지 실례를 바로 주 100과 101에서 들었다. 이렇게 끊어지는 것 자체는 부분적으로는 신용이 흔들리고 이에 따르는 사정들 즉 시장에 상품이 차넘치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며 생산이 중단되는 등의 결과이며 부분적으로는 그것들의 원인이다.

그러나 플라톤이 구매수단으로서의 화폐와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의 구별을 유통수단(currency)과 자본과의 그릇된 구별로 바꾸어 놓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런데 그 기초에는 또다시 유통수단에 관한 편협한 은행업자적인 표상이 놓여 있는 것이다.

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대체 이러한 곤란한 시기에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자본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불수단이라는 규정된 형태의 화폐인가? 이것은 아다시피 논쟁문제이다.

우선 옹색한 상태가 금이 흘러나가는 데서 나타나는 한에서는 명백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국제적 지불수단이다. 그러나 국제적 지불수단이라는 규정된 형태의 화폐는 현실적인 금속으로서의 금이며 그 자체가 가치이며 가치량인 실체이다. 그것은 동시에 자본이다. 그러나 그것은 상품 자본으로서의 자본이 아니라 화폐자본으로서의 자본이며, 상품형태의 자본이 아니라 화폐(그것도 완전무결한 의미에서의 화폐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화폐는 세계시장의 일반적 상품으로서 존재한다) 형태의 자본이다. 이 경우에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화폐에 대한 수요와 자본에 대한 수요와의 대립은 없다. 대립은 화폐형태로 있는 자본과 상품형태로 있는 자본 사이에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요구되는 자본형태 또 자본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형태는 자본의 화폐형태이다.

금(또는 은)에 대한 이러한 수요를 제쳐놓고 본다면 그러한 공황기에 어떻게든 자본이 부족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예컨대 곡물값이 오르고 목화가 부족되는 등의 비상사태에서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결코 그러한 시기에 반드시 또는 정해 놓고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화폐유통에 대한 수요가 높다고 하여 처음부터 그러한 자본부족이 있다고 결론할 수는 없다. 그와 반대이다. 시장은 상품으로 차넘치고 있으며 상품자본으로 넘쳐 있다. 따라서 어쨌든 상품자본의 부족으로 웅색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후에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 1 맑스가 이 시기에 러시아의 사료에서 발췌한 것은 그 일부가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맑스·엔겔스 문헌집 제11권(모스크바, 1948년), 제12권(모스크바, 1952년), 제13권(모스크바, 1955년)을 보라. —19
- 2 다음과 같은 의회보고를 두고 말한다 :
1) 「상업위기에 관한 비밀위원회 제1차보고 : 증언록 붙음, 1848년 6월 8일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인쇄」; 2) 「상인계급의 곤궁의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상원비밀위원회의 보고와 은행권의 발행을 조절하는 법률이 그 곤궁에 끼친 영향. 증언록과 부록 붙음, 1848년 7월 28일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인쇄(1857년에 재판)」 —20
- 3 다음과 같은 의회보고를 두고 말한다 : 「은행법특별위원회보고, 위원회 회의록, 증언록, 부록 및 색인 붙음, 1857년 7월 30일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인쇄」; 「은행법특별위원회보고, 위원회 회의록, 증언록 부록 및 색인 붙음, 1858년 7월 1일 하원의 지시에 의하여 인쇄」. —20
- 4 엔겔스는 「잉여가치학설사」를 「자본론」 제4권으로서 출판하려던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05~1910년에 카우츠키가 「잉여가치학설사」를 출판하였는데 그는 수없이 저자의 원고를 제멋대로 고치거나 순서를 바꾸거나 빼거나 하였다. 맑스의 「잉여가치학설사」의 새 판은 1954~1961년에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직속 맑스-레닌주의 연구소에 의하여 러시아어로 출판되었다. —20
- 5 「국민경제학 및 통계학 연지」 두 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 1863년 예나에서 창간되었다. 1872년부터 1890년까지는 부르쥬아 경제학자 콘라드의 편집으로, 1891년부터 1897년까지는 부르쥬아 경제학자 렉시스의 편집으로 나왔다. —20
- 6 한계효용설 맑스의 노동가치이론에 맞서 19세기 70년대에 나온 부르쥬아-변호론적 속류경제이론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치의 기초로 되는 것은 사회적 필요노동이 아니라 이른바 상품의 한계효용인데 이 한계효용은 구매자의 절실한 욕망을 가장 적게 충족시키는 상품의 효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들. 반영한다. 이 '한계효용설'의 신봉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노동가치이론은 틀린 것인데, 왜냐하면 실제로 가격은 가치와 일치하지 않으며 또 가치는 보통상품의 희귀성과 같은 우연적이며 생산과 관련되지 않은 사정들과 그 밖의 사정들에 의하여 규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하에서 고용되는 노동력의 착취를 은폐시키는 수단의 하나로서 '한계효용설'은

현대 부르조아 정치경제학에 널리 퍼져 있다. —22

- 7 W. 레시스, 「본위화폐문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독일제국의 입법, 행정 및 국민경제 연지』, 제5판, 제1분책, 1881년, 87~132페이지에 실림), 「독일제국의 입법, 행정 및 국민경제」 두 주일에 한 번 나오는 잡지, 1871년에 창간되었다. 이 이름으로 1877년부터 1912년까지 부르조아 경제학자 G. 쉬몰러의 편집하에 라이프찌히에서 발간되었다.

복본위제 두 주화인 금화와 은화가 동시에 화폐의 기능을 하는 화폐제도, —23

- 8 A. 로리아의 논문 「칼 맑스」를 두고 말한다. 이 논문은 「과학, 문학 및 예술의 새 선문집」(로마, 1883년, 4월, 509~542페이지)에 발표되었다. 「과학, 문학 및 예술의 새 선문집」 자유주의적 경향성을 가진 이탈리아의 문학, 예술 및 정론 잡지로서 1866년부터 1876년까지는 플로렌스에서 한 달에 한 번, 1878년부터 1943년까지는 로마에서 한 달에 두 번씩 발간되었다. —29

- 9 로리아는 「자본론」 제1권의 불어판을 이용하였는데 이 판의 제11장은 독어 판의 제9장 「잉여가치의 율과 양」에 해당한다. —30

- 10 「자본론」 제2권에 대한 엥겔스의 머리말을 두고 말한다. —31

- 11 들까마라 도니체티의 가극 「사랑의 술」에 나오는 인물, 협잡꾼과 사기꾼의 전형이다.

스가나텔 몰리에르의 희극 「돈 주앙」에 나오는 인물, 돈 주앙의 종, 교활하면서도 겁장이인 협잡꾼의 전형이다. —33

- 12 잡지 「신시대」, 1887년 제3호, 123~127페이지에 실린 논문 '슈타벨링 씨의 논문 「자본의 집적이 임금과 노동착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두고 말한다.

「신시대」 독일사회민주당의 정치-이론 잡지, 슈투트가르트에서 1883년부터 1890년 10월까지 한 달에 한 번 발행되었고, 1890년 10월부터 1923년 가을까지 한 주일에 한 번 발행되었다. 잡지의 편집자는 1883년부터 K. 카우츠 키였고 1917년 10월부터 1923년 가을까지는 H. 쿠노우였다. 1885년부터 1894년까지 엥겔스는 이 잡지에 일련의 논문을 써냈으며 늘 조언을 주어 잡지의 편집을 도왔고 이 잡지가 맑스주의에서 물러서는 데 대하여 여러 번 비판하였다. 엥겔스가 세상을 떠난 후부터 이 잡지에는 수정주의자들의 논문이 계통적으로 실리게 되었다. 세계 제1차대전 시기에 이 잡지는 중앙주의적 입장을 취하여 사실상 사회배외주의자들을 지지하였다. —34

- 13 G. 램제이 「부의 분배에 관한 논술」, 에딘버러, 1836년, 184페이지. —52

- 14 18세기에 화학에서 지배하였던 연소설에 의하면 물질이 불타는 것은 그 물질 속에 있는 특수한 물질인 연소가 그 물질이 불타 때에 그 물질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기 속에서 쇠를 달굴 때에 그 쇠의 무게가 늘어난다는 것이 확장되었는데도 연소설의 지지자들은 연

소에는 부수의 무게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프랑스의 화학자 A. L. 라부아지에가 이 연소설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는 불타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되는 것이 불타는 과정이라고 옳게 설명하였다. 연소설에 관해서는 「자본론」 제2권에 대한 엥겔스의 머리말을 보라. —53

- 15 프루동은 1849년 1월에 인민은행을 세우려고 하였다. 프루동은 이 은행을 통하여 평화적 방법으로 자기의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의 사회주의란 결국 대부이자를 없애며 또 생산자가 자기의 노동소득의 완전한 등가물을 받는 기초 위에서 화폐없는 교환을 실시하려는 것이었다. 이 은행은 세운 지 두 달 후에 파산되었다. 맑스는 「철학의 빈곤, 프루동 씨의 「빈곤의 철학」에 대한 대답」에서 프루동의 견해를 상세히 비판하였다(이전집, 조문판, 제4권, 73~210페이지를 보라). —53
- 16 맑스는 자기의 저작 「잉여가치학설서」에서 잉여가치율에 관한 맬더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말하고 있다(칼 맑스, 「잉여가치학설서」 제3부, 조문판, 1977년, 22~25페이지를 보라). —62
- 17 맑스는 다음과 같은 저서를 두고 말한다. A. 유어, 「공장철학, 또는 대영국 공장제도의 과학적, 도덕적, 상업적 경제학」, 제2판, 런던, 1835년. —103
- 18 프랑스의 역사가 링케는 이 가설을 다음과 같은 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민법이론, 또는 사회의 기본원리」, 제2권, 런던, 1767년, 제5부, 제20장(이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44페이지, 주 152도 참조.) —108
- 19 로치데일(맨체스터의 공업지구)의 노동자들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이 사상적 영향을 받아 1844년에 정의로운 전구자협회라는 이름으로 소비협동조합을 결성하였는데 이것이 영국과 다른 나라들에서 노동자들이 협동조합운동의 시작으로 되었다. —108
- 20 죽이는 것이 살인은 아니다(killing no murder) 이것은 영국에서 널리 쓰이던 말인데 17세기 중엽 영국의 부르조아 혁명시기에 나온 「죽이는 것이 살인은 아니다」라는 소책자의 표제에서 나왔다. 소책자의 저자인 수평주의자 섹스비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의 호민관 올리버 크롬웰을 가혹한 폭군이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라고 호소하였으며 이 살해를 정당화하였다. —113
- 21 다음과 같은 저서들을 두고 말한다. A. 유어, 「공장철학 또는 대영국 공장제도의 과학적, 도덕적, 상업적 경제학」, 제2판, 런던, 1835년; C. 바베지, 「기계와 공장제 생산의 경제에 관하여」, 런던, 1832년, 280~281페이지. —130
- 22 R. 토렌스, 「부의 생산에 관한 논술」(런던, 1821년) 29페이지 이하를 보라(칼 맑스, 「잉여가치학설서」, 조문판, 제3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년 61~75페이지 참조). —133
- 23 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런던, 1821년), 131~138 페이지를 보라. —133

- 24 영국에서는 이른바 곡물법(1815년, 1822년, 1828년)에 근거하여 곡물관세를 받았다. 곡물법은 대토지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곡물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곡물법을 둘러싼 산업 부르주아지와 토지귀족 사이의 투쟁은 1846년에 이 법이 폐지됨으로써 끝났다. 곡물법의 폐지는 토지귀족에 대한 타격이었으며 영국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을 빠르게 하였다. —133
- 25 10시간 노동법안은 소년과 소녀 및 여성노동자에게만 해당되었다. 이 법안은 1847년 6월 8일에 영국의회에서 채택되고 1848년 5월 1일에 법률로서 실시되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공장주의들은 이 법률을 무시하였다. 자세한 것은 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1분책, 339~342페이지를 보라. —140
- 26 C. 바베지, 「기계와 공장제 생산의 경제에 대하여」, 런던, 1832년, 280~281페이지. —140
- 27 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 1821년, 제2장. —141
- 28 1861~1865년의 목화기근 또는 목화공황 미국의 국내전쟁시기 북부의 함대가 남부의 노예소유자들을 봉쇄하였기 때문에 미국목화의 수출이 끊어졌으며 그 결과 영국과 일부 다른 나라들의 면공업에서는 목화가 아주 떨어졌는데 이것을 그렇게 부른다. 목화기근은 과잉생산공황 직전에 있었으며 이 공황과 영졌다. 구라파의 면공업은 많은 부분이 파비되었으며 그리하여 노동자들의 처지는 매우 나빠졌다. 1862년에 영국에서는 가락과 직기 총수의 5분의 3이 멎었으며 2~3년 동안에 면공업 노동자의 75% 이상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실업을 당하였다. 노동자들의 처지는 60년대 초에 구라파를 휩쓴 흉작으로 더욱 어렵게 되었다. —149
- 29 1848년의 국민작업장 프랑스의 실업자를 위하여 하게 된 공공사업, 주로 토목공사의 조직형태이다. 이 작업장은 1848년 2월혁명 후 프랑스 임시정부의 법령으로 창설되었다. 그 목적은 당시 노동자들 속에서 인기가 있던 소부르조아 사회주의자 루이 블랑의 노동조직이념을 혈돋으며 한편으로는 또 군대식으로 조직한 국민작업장 노동자들을 혁명적 프롤레타리아트를 반대하는 투쟁에 이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계급을 분열시키려는 도발적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고 또 국민작업장 노동자들이 갈수록 혁명적 기분에 휩싸이게 되었기 때문에 부르조아 정부는 국민작업장을 없애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파리 프롤레타리아트의 커다란 분격을 자아냈으며 파리에서 6월폭동을 일으키게 한 하나의 동기로 되었다. 폭동을 진압한 다음에 까베냐크 정부는 1848년 7월 3일에 국민작업장을 해산한다는 법령을 채택하였다. —166
- 30 로드베르투스, 「폰 키르히만에게 보내는 사회문제에 관한 편지: 리카아도의 지대론에 대한 반박과 새로운 지대론의 논거」(베를린, 1851년) 125페이지를 보라. 맑스는 이윤율에 관한 로드베르투스의 이론을 「잉여가치학설사」(제2

- 부,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년, 57~74페이지)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172
- 31 A. 스미드, 「제국민의 부의 본성과 원인의 연구」(제1편, 런던, 1776년)의 제10장을 두고 말한다. —177
- 32 맑스는 일반적 이윤율의 형성에 관한 세르블리에의 견해를 「임여가치학설사」에서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칼 맑스, 「임여가치학설사」, 제3부,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년, 400~411페이지를 보라). —196
- 33 칼 맑스의 저작 「임여가치학설사」(「자본론」, 제4부)를 두고 말한다. 주4를 보라. —206
- 34 거주법 1662년부터 영국에서 실시된 법률인데 이 법률에 의하여 농업노동자들은 사실상 이주할 권리를 빼앗겼다. 이 법률은 또한 빈민구제법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가난한 농업노동자들을 재판의 결정으로 그들의 출생지와 거주지에 돌려보낼 것을 규명하였다. 이 법률은 노동자들이 자유로이 이주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주가 노동자의 임금을 최대한에 이르기까지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였다. —213
- 35 다음과 같은 저작들을 두고 말한다. G. L. 마우러, 「공동체, 농가, 촌락 및 도시의 구조와 사회권력의 역사에 대한 서문」, 뮌헨, 1854년; 「독일의 공동체 구조의 역사」, 에르랑겐, 1856년; 「독일의 장원, 개인농가 및 농가 구조의 역사」, 제1권~제4권, 에르랑겐, 1862~1863년; 「독일의 촌락구조의 역사」, 제1권~제2권, 에르랑겐, 1865~1866년; 「독일의 도시구조의 역사」, 제1권~제4권, 에르랑겐, 1869~1871년.
L. H. 모르간, 「고대사회 또는 야만에서 미개를 거쳐 문명에 이르는 인류의 진화과정에 관한 연구」, 런던, 1877년. —216
- 36 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60~61페이지. —218
- 37 이 견해들은 다음과 같은 저서들에서 볼 수 있다. 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60~61페이지; G. 슈토르흐, 「정치경제학독본」, 또는 국민의 번영을 규정하는 원칙의 설명, 제2권, 쾰크트-베체르부르크, 1815년, 78~79페이지(이에 대해서는 또 칼 맑스의 저작 「임여가치학설사」, 제2부,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년, 85페이지를 보라). —222
- 38 T. 코베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대한 연구, 또는 상업과 투기의 원리에 관한 해설」, 런던, 1841년, 42~44페이지. —222
- 39 익명으로 나온 저작 「정치경제학상의 용어, 특히 가치, 수요, 공급과 관련된 약간의 논쟁에 대한 고찰」의 저자는 이 책에서 맬더스의 「정치경제학원리」의 제1판(런던, 1820년) 75페이지를 인용하고 있다. —232
- 40 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36~41페이지. —244

- 41 맹목적인 모방자의 무리들(Servum pecus imitatorum) 이것은 호라티우스의 편지(1부, 편지 19)에 있는 말 “오, 모방자들이여, 맹목적인 무리여!”(O imitatores, servum pecus!)를 바꿔 말한 것이다. —244
- 42 여기에서는 맑스가 「잉여가치학설사」 가운데서 임금의 변동이 생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리카아도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절을 두고 말한다(칼 맑스,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 1966년, 175~188페이지를 보라). —245
- 43 T. 코베트, 「개인의 부의 원인과 그 취득방식에 관한 연구 또는 상업과 투기의 원리에 관한 해설」(런던, 1841년), 100~102페이지를 보라. —252
- 44 맑스는 「잉여가치학설사」를 두고 말하고 있다(칼 맑스,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년, 423~457, 526~530페이지를 보라). —259
- 45 자본주의적 축적의 절대적인 일반적 법칙을 말한다. 맑스는 이 법칙을 「자본론」, 제1권에서 정식화하였다(이 전집, 조문판, 제23권, 제2분책, 제23장, 302페이지를 보라). —269
- 46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Hinc illae lacrimae) 로마의 극작가 푸블리우스 테렌티우스의 희극 「안드로스의 처녀」(제1막, 제1장)에 나오는 말이다. —271
- 47 주 44를 보라. —272
- 48 W. 로서, 「인민경제체계」, 제1권: 「국민경제학기본」, 정정·보충된 제3판, 슈투트가르트와 아우그스부르그, 1858년, 제108절, 192페이지를 보라. —272
- 49 맑스는 A. 스미드의 이윤론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에서 하고 있다(칼 맑스, 「잉여가치학설사」, 제2부, 조선로동당출판사, 1966년, 205~218페이지를 보라). —272
- 50 양도이윤(profit upon alienation) 제임스 스튜어트의 말인데(「정치경제학원리연구」, 제1권, 런던, 1805년, 244페이지), 이에 의하면 자본가의 이윤은 상품을 그 가치 이상으로 파는 데서 나온다는 것이다. 맑스는 이것을 「잉여가치학설사」에서 분석하고 있다(칼 맑스, 「잉여가치학설사」, 제1부, 조선로동당출판사, 1962년, 8~10페이지를 보라). —278
- 51 D. 리카아도,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제3판, 런던, 1821년, 제7장. —287
- 52 (E. 웨스트), 「토지에 대한 자본의 적용에 관한 논술, 알곡수입을 아무리 제한하여도 쓸데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적 포함, 옥스포드 대학의 한 학우의 저서」, (런던, 1815년). —249
- 53 T. 쉐머스, 「사회의 도덕적 상태 및 도덕적 전망과 관련된 정치경제학에 관하여」, 제2판, 글라스고, 1832년, 88~89페이지 이하. —298
- 54 주 48을 보라. —368

- 55 W.로서, 『인민경제체계』, 제1권:『국민경제학기본』, 정정·보충된 제3판, 슈투트가르트와 아우그스부르그, 1858년, 제60절, 103페이지를 보라.
—388
- 56 주 24를 보라. —392
- 57 주 50을 보라. —394
- 58 대체로 유물론자이고 무신론자인 고대회람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견해에 의하면 세계가 수많은 있다는 것이다. 이 세계들은 자체의 자연법칙에 의하여 생겨나고 존재한다. 신은 존재한다 하여도 세계 밖에, 즉 세계와 세계 사이에 있으며 따라서 우주의 발전에도 인간생활에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394
- 59 맑스는 『명예박사 마르틴 루터 씨의 저서 제7부』(위템베르그, 1589년), 296, 297페이지에서 루터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396
- 60 맑스는 당시의 지리적 대발견으로 하여 15세기 말부터 제노바, 베니스를 비롯한 북부 이탈리아 도시들의 역할이 보잘 것 없이 크게 떨어진 것을 말한다. 이 지리적 대발견이란 쿠바, 하티티, 바하마 제도의 발견, 북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아프리카의 남쪽 끝을 돌아 인도로 가는 바닷길의 발견, 끝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의 발견 등이다. —397
- 61 [J. 매씨], 『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제원인에 관한 논술. 이 문제에 대한 윌리엄 페티 경과 로크 씨의 견해의 고찰』, 런던, 1750년, 60페이지.
—398
- 62 I. H. M. 포페, 『과학이 발생한 때로부터 18세기 말까지의 공학사』 제1권, 피팅겐, 1807년, 70페이지. —401
- 63 이 인용문은 신문 『인민의 목소리』의 편집자의 한 사람이며 저서 『신용의 무보상성』에 들어 있는 「첫 편지」를 쓴 샤를 프랑소아 쉐베의 말이다. 『인민의 목소리』 프루동이 내던 일간신문, 1849년 10월 1일부터 1850년 5월 14일까지 파리에서 발행되었다. —414
- 64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경제문제와 정치문제에 관한 영국의 주간 잡지, 1843년부터 런던에서 발행되었다. 대산업 부르조아지의 기관지이다.
—429
- 65 맑스는 K. 아른트를 비꼬아 '개세의 철학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이 저자가 자기 저서에서 특별히 한 절을 할당해서 (제88절, 420~421페이지) 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는 것을 논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435
- 66 『매일소식』(The Daily News) 영국의 자유주의적 신문이며 산업 부르조아지의 기관지이다. 이 이름으로 1846년부터 1930년까지, 런던에서 발행되었다.
—438
- 67 [J. 매씨], 『자연적 이자율을 지배하는 제원인에 관한 논술. 이 문제에 대한 윌리엄 페티 경과 로크 씨의 견해의 고찰』(런던, 1750년)과 D. 흄의

『이익에 관하여』(1752년)을 보라. 『이익에 관하여』는 흄, 데이비드,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논문집』, 신판, 제2권, 도덕, 정치, 문학 연구와 관련된 제1권(런던, 1764년)에 들어 있다(이에 대하여는 또 칼 맑스의 『임여가치학설사』, 제1부, 조선로동당출판사, 1962년, 510~517페이지를 보라). —450

- 68 『뉴욕매일연단』(New-York Daily Tribune) 1841년부터 1924년까지 발행된 미국 신문이다. 1840~50년대에 이 신문은 진보적 입장에 서서 노예소유제도를 반대하고 나섰다. 1851년 8월부터 1862년 3월까지 맑스는 이 신문에 기고하였다. 엥겔스는 맑스의 요청으로 이 신문에 많은 논설을 써보냈다. 1848~1849년 혁명 후에 닥쳐온 구라파의 반동시기에 맑스와 엥겔스는 당시 널리 보급된 진보적 신문을 이용하여 자본주의사회의 죄상을 구체적 자료로 폭로하였다. 미국의 국내전쟁시기에 이 신문에 기고하던 맑스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맑스가 『뉴욕매일연단』과 관계를 끊게 된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편집부 내에 노예소유자와의 타협을 지지하여 나선 자들의 세력이 커졌고 이 신문이 진보적 입장에서 물러선 것이었다. 그후 이 신문은 더욱더 우경화하였다. —451
- 69 피테, 『파우스트』, 제1부, 제5장(『라이프찌히에 있는 아우에르바흐의 무덤』)에 나오는 말. —470
- 70 피트의 감채기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이 전집, 『논문판, 제12권, 462~463페이지를 보라. —471
- 71 (T. R. 맬더스), 『인구원리에 관한 논술』, 런던, 1798년, 25~26페이지를 보라. —473
- 72 다음과 같은 문헌을 두고 말한다. 『매 분기 말에 위원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주어 그것을 국채를 줄이는 데 쓰도록 하기 위한 조례』(조지 3세, 제26년, 제31장) —474
- 73 몰로크 고대 페니키아와 카르타고의 종교에서 태양의 신이다. 신자들은 아이를 제물로 이 신에게 바쳤다. 후에 와서 몰로크는 끔찍한 힘을 상징하였다. —474
- 74 맑스는 다음과 같은 저서들을 두고 말한다. J. S. 밀, 『정치경제학원리 및 사회철학에의 그 일부의 적용』, 제2판, 제1권, 런던, 1849년, 91~92페이지. H. C. 케어리, 『사회과학의 원리』, 제3권, 필라델피아, 1859년, 71~73페이지; W. 로서, 『인민경제체계』, 제1권: 『국민경제학기본』, 정정·보충된 제3판, 슈투트가르트와 아우그스부르크, 1858년, 제45절. —475
- 75 『신구대륙평론』(Revue des deux Mondes) 1829년부터 파리에서 발행된 부르조아적 문학, 예술평론의 반월간잡지. —481
- 76 주 2의 1)을 보라. —484
- 77 동인도회사가 중국무역을 독점하지 못하게 된 후에(1833년) 영국의 개인상인들이 중국시장에 몰입듯이 밀려들었다. 특히 아편의 밀무역의 큰 자리를

- 차지하였는데 영국정부는 이것을 극력 지지하여 주었다. 영국정부는 중국의 법률과 국가적 이익을 의식적으로 유리하였으며 중국사람들을 대량적으로 아편중독자로 만들어 그들의 건강을 해치게 하였다. 중국 당국은 이 마취제를 자기 나라에 밀수입하는 것을 반대하여 단호한 행동으로 나왔는데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영국사람들은 제1차 아편전쟁(1839~1842년)을 시작하였다. 이 전쟁의 결과로 중국은 불평등한 약탈적 협정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 —489
- 78 1844년 은행법의 내용과 의의는 이 권의 제34장 「통화주의와 1844년의 영국 은행입법」을 보라. —490
- 79 「맨체스터 가디언」(The Manchester Guardian) 영국의 부르조아 신문으로서 1821년에 맨체스터에서 창간되었다. 자유무역주의자들의 기관지였으며 나중에는 자유당의 기관지로 되었다. —491
- 80 롬바드거리 런던의 금융중심지의 한 거리인데 여기에는 많은 큰 은행들이 있다. 런던화폐시장의 대명사로 되고 있다. —492
- 81 마인심 레인 런던에 있는 식민지상품의 도매상업의 중심으로 되고 있는 한 거리. —492
- 82 통화주의(Currency principle) 또는 화폐학과 화폐수량설을 들고 나온 학파의 한 변종. 이 학파는 상품의 가치와 가격을 유통분야의 화폐량이 규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학파는 안정된 화폐유통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으며 이를 위한 유일한 수단은 은행권을 반드시 금준비로 보장하며 귀금속의 수출입에 적응하게 화폐의 발행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화폐학파는 그릇된 이론적 전제에서 출발하여 생산과잉으로 일어나는 경제공황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그들의 이른바 화폐유통법칙의 위반에 있다고 보았다. 화폐학파의 학설은 19세기 전반기에 영국에서 떠돌았다. 그러나 이 학설에 의거하려는 영국정부의 시도(1844년의 은행법)는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으며, 이 학설이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으며 실천적 목적에도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을 확증하였을 따름이다(또한 이 제3권, 제34장 「통화주의와 1844년의 은행입법」을 보라). —505
- 83 에르멘-앵겔스 상회를 두고 말한다. —521
- 84 파나마 사기 프랑스의 고위급 정치가, 관리, 언론계 인사들이 망라되었던 사기사건. 기사이며 기업가였던 페르디낭 드 르셰프스는 1879년에 프랑스에, 파나마 지협을 횡단하는 운하를 파는 데 자금을 댈 주식회사를 세웠다. 1888년 말에 이 회사가 무너졌는데 그 결과 작은 주주들이 대량적으로 망하고 수없이 파산되었다. 회사는 그 진실한 재정형편을 감추기 위하여 주주들이 낸 자금을 남용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누구보다도 먼저 이전의 몇몇 프랑스 총리대신들과 그 밖의 고위급 인사들에게 바쳤는데 이 사실이 늦게야 1892년에 알려졌다. 민사재판소는 이 추악한 파나마 사건을 호지부지해버렸으며 다만 회사의 우두머리였던 르셰프스와 이류급 인사들에게만

죄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534

85 『타임스』(The Times) 영국에서 가장 큰 보수적 경향의 일간신문으로서
1785년에 런던에서 창간되었다. —533

86 주 82를 보라. —542

자본론 제Ⅲ권 (1)

백의신서 14

인쇄일 : 1989년 7 월 28일

발행일 : 1989년 8 월 8 일

펴낸이 : 이 상 돈

펴낸곳 : 도서출판 白 衣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91-12

전화 : 965-7187

등록 : 서울 제 5 - 145호 (88. 6. 25.)

* 파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값 6,200 원